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386-1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

제4집
2009~201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

제4집

2009~2011



발 간 사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한 지 만 10년을 맞아 성장기를 넘어 성숙기에 접어들니
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국민과 외국인의 진정사건은 2012년 5월말
현재 총 5만 9천여 건에 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제도의 개선 권고와 의견표명, 인권침해 및 차별의 진정사건에 대한 구제조
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이 결정례집은 2004년에 출간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1집』과 2007년
에 출간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2집』, 2009년에 출간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3집』에 이어 2009년, 2010년, 2011년 세 해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한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한 결정문을 수록하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4
집』으로 발간합니다. 제4집은 제1집, 제2집, 제3집과 마찬가지로 인권정책, 인권
침해 및 차별시정의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발간하였습니다. 한정된 지면으로 인하
여 모든 결정사례를 담지는 못했지만 분야별·유형별 분류를 통해 가장 전형적인
사례들을 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출범한 직후부터 2004년까지 위원회가 내린 결정사례를 담은 제1집
이 국가와 사회에서의 인권보장의 원칙과 평등대우의 원칙을 확인하는 사례의 소
개였다면, 2005~2006년의 결정을 담은 제2집은 그러한 토대 위에 국민의 인권
신장을 보다 확고하게 다지는 사례모음이라고 할 수 있고, 2007~2008년의 결정
사례를 모은 제3집은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례모음이라고 할 수 있으며, 2009~2011년의 결정사례는 우리 국민
의 인권신장이 확인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사회의 인권문제가 심화되고 반복
되는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인권정책분야의 주요 내용으로는 강제철거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 북한인권 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설치 결정 및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의견표명 등 주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대한 권고와 의견을 담았습니다.

■ 인권침해분야에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들에 대한 검찰, 경찰, 군대, 국정원 등 국가권력으로부터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권리구제활동과 더불어 구금시설과 정신보건시설, 그리고 지자체를 비롯한 행정기관들을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된 인용사례들을 중심으로 기관유형별·침해행위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담았습니다.

■ 차별행위분야에서는 성희롱 등 성차별 사건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연령차별 금지법 시행의 영향이 미친 장애차별 사건과 나이차별 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병력에 의한 차별과 학력차별 등도 지난 3년간 위원회 결정에서 많은 사례가 나타났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사유의 차별사건에 대한 결정례를 많이 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결정례집이 모든 국가기관 종사자, 인권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및 관계 전문가, 그리고 일반국민에게도 유익한 자료로 쓰이길 바랍니다.

2012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일 러 두 기

- 이 결정레집에는 2009년 1월 초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인용 결정한 1,421건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97건을 선정하여 실었습니다.
- 사건 및 결정 내용을 한번 보고 알 수 있도록 결정사항과 결정요지를 각 결정문의 윗부분에 실었습니다.
- 결정문은 가능한 한 원문 그대로 게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인격권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기관, 주소 등을 비실명 또는 익명 처리를 하였고, 일부 맞춤법을 벗어난 표현 등은 바로잡았습니다. 또한 지면 관계상 ‘관계법령’ 중 생략하여도 맥락상 큰 무리가 없는 부분은 생략 하였습니다.



대 목 차

제1장 검찰·경찰 관련 · 1

1. 수사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등
2. 적벌절차 위반
3. 시설 및 처우
4. 피해자 등 보호조치 소홀
5.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 침해
6. 집회 및 시위 관련
7. 기타

제2장 구금시설관련 · 391

1. 생명권 침해
2. 서신 및 집필
3. 시설 및 처우
4. 의료
5. 기타

제3장 군 관련 · 483

제4장 외국인 관련 · 585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 675

제6장 기타기관 • 721

1. 인격권 침해 및 가혹행위
 2. 정보인권
 3. 학교에서의 체벌 및 두발단속
 4. 기타
-



목 차

제[1]장

검찰, 경찰 관련

1. 수사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등

1

2009. 2. 25.자 09진인10결정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3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얼굴에 비닐봉지 씌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선 지구대 근무자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주취자의 자해예방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조치 및 ○○지구대장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09. 5. 14.자 09직인1결정

[○○경찰서 ○○지구대 피의자 뇌사(사망) 사건] 9

【1】검찰총장에게 ○○경찰서 ○○지구대 경위 김○○와 경사 최○○을 「형법」 제268조 규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하고

【2】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상 필요한 주취자 보호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주취자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안전조치에 적합한 장구를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3】 ○○지방경찰청장에게 가해자들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주의 조치를, ○○지구대 직원을 총괄·감독하는 생활안전과장 및 해당 지구대장에게는 각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2009. 6. 23.자 08진인2602결정

[밤샘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29

【1】 경찰청장에게, 감찰조사 시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심야 감찰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2】 ○○지방경찰청장에게, 감찰조사 시 진정 관련 사례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2010. 1. 11.자 09진인215결정

[용산 철거민 사망관련 과잉진압 및 부당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38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정○○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관련 소속 검사들에 대하여 심야조사 등 피의자 소환조사 시 준수하여야 할 헌법상의 원칙과 현행 준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5

2010. 6. 15.자 10직인1, 10진정2420, 10진인2543(병합) 결정

[경찰의 고문관련 직권조사] 57

【1】 검찰총장에게, 경찰관 연번 1, 2, 3, 4, 5(별지 1)에 대하여 피해자 연번(별지 2) 1, 2, 3, 4, 5, 6, 7, 8에 대한 고문 및 폭행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피해자 연번(별지 2) 9~피해자 연번 22

에 대한 고문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2】경찰청장에게, 피해자 연번(별지 2) 1~피해자 연번 22에 대한 고문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그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 사례

6

2011. 1. 31.자 10진정777300결정

[경찰의 과잉단속 등에 의한 인권침해] 88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례

7

2011. 9. 8.자 10진정0419800 결정

[경찰의 고문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102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형법」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한 사례

2. 적법절차 위반

1

2009. 12. 7.자 08진인3598결정

[구속사실 미통지에 따른 인권침해] 117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구속영장이 집행된 경우 구속영장 집행자의 구속사실 통지의무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령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구속사실이 미 통지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 2** 2010. 1. 25.자 09진인4260결정
[부당증거 수집 등에 의한 인권침해] 124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 3** 2010. 11. 26.자 10진정124000결정
[부당한 임의동행 및 권리 미고지에 따른 인권침해] 131
피진정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 조치 권고한 사례
- 4** 2011. 6. 15.자 11진정0009600결정
[경찰의 체포사실 미통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 137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구속사실을 가족 등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시설 및 처우

- 1** 2010. 12. 27.자 10방문400결정
[2010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142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의 처우 등에 대한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0. 10. 6.부터 2010. 10. 27.까지 서울부산 등 7개 광역시 및 경상북도, 강원도 소재 18개 경찰서 유치장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서 유치장의 여성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변호인 접견실을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11. 9. 28.자 10진인0721900

[유치장 수용환경으로 인한 인권침해] 146

경찰청장에게 유치장내 난방 및 온수 공급에 대한 기준과 관련 대책의 마련을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 혹한기 및 비혹한기에 유치장내 적정온도 유지와 온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피해자 등 보호조치 소홀

1

2009. 9. 14.자 08진인2316결정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154

【1】○○○○소방서장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2】피진정인 1의 감독기관인 ○○○○도지사에게 주문 1항의 권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하고,

【3】소방방재청장에게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09. 10. 26.자 09진인2888 등 20건 병합결정

[유치장 임산부 및 산모 보호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164

【1】○○○○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유치장 구금 및 심야조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2】○○○○경찰서장에게, 유치장 피구금자들이 유치장 내 CCTV설치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안내 및 고지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3】○○○○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수사책임자인 피진정인 박○○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2010. 11. 26.자 10진정109800결정

[청소년 피의사건 조사시 보호조치 미흡 등 인권침해] 195

피진정인은 미성년자를 수사할 때 필요한 미성년 피의자의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규정들을 무시하고 미성년자를 수사할 때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진정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한 사례

5.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 침해

1

2009. 5. 14.자 09진인984결정

[인격권 침해 등 인권침해] 203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고 그 여죄를

추궁한다는 사유로 옥설까지 한 행위는 비록 진정한이 피의자의 신분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진정한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한 사례

2

2009. 8. 31.자 08진인215결정

[부당한 전과조회 및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207

근거 없이 진정한의 전과를 조회하고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아,

【1】국정원 김○○에 대해 징계조치 하고,

【2】동대문경찰서장에게 권○○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2009. 11. 23.자 09진인1874결정

[판사의 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214

피진정인의 ‘버릇없다’는 표현은 사회통념상 40대인 피진정인이 69세인 진정한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없기에 피진정인은 법정지휘권 행사범위를 벗어난 위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한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고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2010. 4. 26.자 09진인4149결정

[옥설에 의한 인권침해] 218

○○지방법원 ○○군법원 소속 피진정인의 반말과 옥설에 대하여 ○○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

고한 사례

5

2010. 4. 12.자 09진인752결정

[공직기강교육 장소에서 경위서 및 사유서 낭독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222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교육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경위 설명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다짐의 변’을 발표하도록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피진정인 및 피진정기관 소속 인사 담당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 사례

6

2011. 7. 27.자 11진정0265200, 11진정0290200(병합) 결정

[경찰의 사생활 침해 등] 228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피정인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수행 중 피의자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7

2011. 9. 28.자 11진정0307000, 11진정0107100(병합) 결정

[현장검증 시 피의자 얼굴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234

경찰청장에게 현장검증 시 피의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현장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한 사례

6. 집회 및 시위 관련

1

2009. 8. 5.자 09진인2841결정

[(주)○○자동차 농성자에 대한 강제진압 등] 240

피진정인에게, 2009. 8. 5. (주)○○자동차 ○○공장에서 진행 중인 강제진압은 경찰의 진압업무 수행 및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농성노동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09. 8. 31.자 08진인2825/08진차877/08진차874(병합)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253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 2, 3, 4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중증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진압 업무 시 휠체어와 분리하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관련 방침의 수립 권고한 사례

3

2009. 8. 31.자 08진인3072결정

[장애인 집회관련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268

검찰총장에게 장애인 집회시위 중 방패로 얼굴을 찍어 폭행한 행위를 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범죄혐의를 수사할 것을 의뢰한 사례

4

2009. 10. 5.자 09진인2363 외 54건(병합)

[(주)○○자동차 농성 및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 276

【1】 피진정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최소한

의 식수와 소화전 등의 차단 및 집단적 폭행의 방관 등으로 인해 농성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2】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즉시 사실 확인을 하고,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련 장비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3】검찰총장에게 해당 진압 경찰관들의 「형법」 제125조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 의뢰한 사례

5

2009. 12. 28.자 08진인3187결정

[색소물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304

경찰청장에게 색소물포 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색소물포 사용을 자제 할 것을 권고한 사례

7. 기타

1

2010. 3. 8.자 09진인3563결정

[상사의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312

○○해양경찰서장에게, 소속 기관 경찰관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조속히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관리시스템을 점검·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10. 4. 12.자 10진인152결정

[전경 폭행 및 은폐 등에 의한 인권침해] 33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6, 9, 12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피진

정인 4, 5, 7, 8, 10, 11에 대해 주의조치하며, 소속 전·의경대원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전·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시스템을 점진·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2011. 9. 19.자 11직권300, 11직권500, 11직권600, 11진정800(병합) 결정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347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및 관련 제도·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권고하고,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현행 전·의경 제도의 폐지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지원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2009. 6. 5.자 09진인1177결정

[선임의경 구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378

【1】○○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장○○외 1명에 대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조속히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하고

【2】○○○○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김○○외 2명에게 각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전·의경대원들에 대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련 전·의경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제[2]장

구금시설 관련

1. 생명권 침해

1

2009. 11. 9.자 08진인4669결정

[사망과 관련한 인권침해] 393

알코올중독에 따른 금단증상이 발생한 수용자에 대해 강박을 실시하고,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지 못하여 진료를 실시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인권침해로 판단하여, 재발 방지, 관련자 징계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요청을 권고한 사례

2. 서신 및 집필

1

2009. 5. 11.자 09진인862결정

[미결수용자 전화사용 횟수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401

수형자에 비해 미결수용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전화 통화 제한 조치를 인권침해로 보안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10. 9. 15.자 09진인0004729·10진정0100700·10진정0145000 병합결정

[교정 시설의 부당한 서신 검열로 인한 인권침해] 410

광범위한 서신 검열 관행에 대한 시정권고로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서신관련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교정시설에 보급하고 담당자들을 교육할 것, 향후 이와 같은 부당한 처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직원 교육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권고한 사례

3. 시설 및 처우

1

2010. 6. 7.자 10진정0034000결정

[교도소의 부당한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420

조사징벌자도 일반수용자와 같이 목욕시설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조사징벌실의 식기를 양질의 식기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의료

1

2009. 6. 8.자 08진인2928결정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429

응급환자에 대한 보호조치 소홀로 장애에 이르게 한 데 대해 직무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 등의 조치와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09. 9. 14.자 09진인2045결정

[의료와 관련한 인권침해] 438

전염병 환자를 격리조치 하지 않은 데 대하여 규정에 따른 철저한 전염병 환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에게 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2011. 1. 14.자 10진정0388000결정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444

수용자의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과 정신과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것을 인권침해로 보아 당장의 치료조치 및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사례

4

2011. 3. 14.자 09진차4707결정

[의료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450

외부 진료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의료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점을 인권침해로 보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5. 기타

1

2009. 3. 9.자 08진인3784결정

[수용자의 얼굴노출 등에 의한 인권침해] 461

수용자를 외부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얼굴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된 데 대해 향후 모자와 마스크 등 보호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수갑과 포승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 호송업무를 개선하며, 호송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09. 11. 9.자 09진인1749결정

[직무유기로 인한 인권침해] 470

수용자 신분인 사동 봉사원이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도록 관행을 개선할 것과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2011. 4. 25.자 10진정0349700결정	
	[가족 사망사실 미통보로 인한 인권 침해]	475
	가족의 사망 소식을 수용자에게 임의로 전달하지 않은 것을 인권 침해로 보아 재발방지를 권고한 사례	

제[3]장

군 관련

1	2009. 8. 24.자 08진인3904결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485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보안업무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10. 7. 23.자 10진정49700결정	
	[군대 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 등]	490
	국방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하여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2010. 7. 23.자 10진정419300결정

[군대 내 성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497

국방부장관에게 본 진정사례를 전파교육하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해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하고, 해병대사령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직조정 등 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례

4

2011. 3. 23.자 10진정0796600·11직권0000100(병합) 결정

[해병대 상습폭행 및 은폐사건 직권조사] 518

【1】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할 것,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직무감찰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 및 병영 내 관행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2】 해병대 사령관에게 가해자들에 대하여 재조사와 책임에 상응하는 사법처리를 할 것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3】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한 사례

5

2011. 10. 12.자

[2011년 군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542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 영창 시설 및 환경, 수용자의 처우 등에 대한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1. 8.

23.부터 2011. 8. 26.까지 육군○○사령부와 해병대 제0사단 영창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권고한 사례

6

2011. 11. 2.자 11직권0001900, 11진정0588600(병합) 결정

[육군 ○○사단 이병 폭행·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 548

국방부장관에게 사망사고 예방 및 장병 인권보장과 병영문화 개선 등을 위한 조치들을 권고하고, 해당 사단장에게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제[4]장

외국인 관련

1

2009. 10. 12.자 09진인2516결정

[외국인 과잉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587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의 행위로 인해 부상을 입은 데 대해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과잉진압, 주거무단진입,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업무 투입 등의 부적절한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09. 12. 28.자 09진인2790결정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601

외국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미등록 체류상태에서 단속 된 경우, 아동 구금은 최후의 조치로써 필요 최소기간에 국한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고, 보호의 대안적 절차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2009년 미등록이주자 단속관련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 613

2009년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단속 및 보호 관련 제도가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한 사례

4

2010. 3. 8.자 09진인1886결정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635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자에 대한 직무교육과 진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 사례

5

2010. 11. 29.자 10진정450400결정

[인종차별적 광고 현수막 방치로 인한 인권침해] 647

특정 국가의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광고물이 게시되도록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관련 규정의 마련과 인권교육 등을 권고한

사례

6

2011. 2. 17.자 10진정0099400결정

[불법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654

법무부장관에게, 단속된 외국인을 보호장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단속차량에 인치하는 행위 및 차량정원을 초과하여 이송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한 사례

7

2011. 3. 14.자 10진정0559200·10진정0581300(병합)결정

[체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663

단속과정에서 단속된 외국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8

2011. 5. 23.자 10진정0323200 결정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기간 중 취업활동 불허로 인한 생존권 침해] 669

난민인정불허 처분취소 소송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에는 신청인과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을 허가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 사례

제[5]장

정신보건시설 관련

1

2011. 2. 24.자 10진정557700 결정

[부당한 체포행위 등] 677

피진정인들이 시설생활 장애인인 피해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괴롭힘, 형법상 폭행으로 판단하여 고발조치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노동을 시켜온 것에 대해 부당노동 강요, 금전적 착취행위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장애인 학대로, 불투명한 회계 관리 행위에 대해 금전적 착취행위,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 및 ○○구청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11. 3. 22.자 10진정0597900 결정

[보호자 아닌 자에 의한 입원 등] 690

정신의료기관이 동일한 환자를 수년간 여러 차례 보호자동의에 따른 입원을 시키면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보호자인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입원조치를 반복해왔고, 더욱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속되어온 것과 일부 입원환자들에 대해 치료 목적을 벗어난 노동이나 작업을 부담시켜온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과 함께 개선조치를 권고한 사례

3

2011. 11. 28.자 11진정0337800 결정

[입원환자들에 대한 청소, 배식 등 강요] 700

병실의 개인생활 공간을 제외한 화장실, 세면장, 복도, 거실, 안정실 등의 공동시설물의 청소는 피진정인이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청소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환자들이 순번을 정하여 청소를 하거나 일부환자들이 청소를 전담하게 되는 것은 피진정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환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며, 환자들이 의료 또는 재활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당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2011. 11. 28.자 11진정05217700 결정

[병동 내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707

CCTV 설치로 인한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최소화되어야 하는바, 병동 내 화장실 및 샤워실에 필요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설치된 CCTV의 촬영범위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5

2009. 7. 3.자 09진인1653 결정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712

진정인을 피진정기관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이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며,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고,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 및 재발방지 계획 수립을 권고

한 사례

6

2010. 2. 5.자 09진인3882·4151·5019 병합 결정

[입원통지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 716

피진정기관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입원통지서 교부의무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제[6]장

기타기관

1. 인격권 침해 및 가혹행위

1

2010. 10. 5.자 10진정0041000결정

[인격권 침해] 723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공무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10. 10. 5.자 10진정0048400결정

[인격권 침해] 728

임금채불 피해자에 대한 진술 조서 작성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데 대하여 당사자에 대한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2011. 7. 11.자 10진정0784500 결정 [당사자 동의 없는 신문광고로 인한 아동의 인권 침해] 732
	당사자 동의 없이 아동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신문광고를 게재한 행위는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발방지를 권고 한 사례

2. 정보인권

1	2009. 8. 24.자 08진인3904결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740
	사관후보생 응시자에게 요구하는 신원진술서에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한 것은 인권침해로 보아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도 록 권고한 사례

2	2009. 8. 24.자 08진인0545결정 [CCTV 설치 적법절차 미준수] 747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CCTV를 설치한데 대하여 관련자 에게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한 사례

3	2010. 5. 10.자 09진인2033, 09진인3082병합결정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754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주민의 개인정보를 타기관 등에 유출한 행 위에 대해 재발방지 대책 및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 사례

4

2010. 5. 10.자 09진인4270결정

[부당한 수배 및 개인정보 유출] 759

부당한 수배 정보를 피해자 주변인에게 알려지게 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된데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5

2010. 6. 30.자 10진인151결정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764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한 민원 제기자의 개인정보가 해당 공무원 가족에게 유출된 데 대하여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인권교육 등을 권고한 사례

6

2010. 7. 26.자 10진정0024200·10진정0040200·10진정0073800·10진정0199400 병합결정

[산불감시원 개인위치정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770

산불감시원의 개인위치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과,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에서 자신들의 개인위치정보가 어떻게 사용·관리되는 지, 자신들의 권리제한 및 보장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7

2010. 8. 23.자 10진정0078500결정

[부당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782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미흡하게 관리한 피진정인들을 경고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8	2010. 8. 23.자 10진정00225800결정 [민원제출자 신분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788
	민원제출 사실이 갈등 관계의 타인에게 유출된 데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유출 당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9	2011. 3. 14.자 10진정0346700결정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793
	기초생활수급자의 과거 수감사실이 타인에게 유출된데 대해 해당 공무원에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 사례

3. 학교에서의 체벌 및 두발단속

1	2009. 10. 12.자 09진인2034결정 [교사의 체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798
	학생에게 부당하게 각서를 요구하고 체벌한 데 대하여 이들 사례 외의 다양한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과 당사자에 대한 경고조치와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09. 12. 28.자 09진인4912·09진인4889·09진인4873·09진인4940·09진인4939·09진인4843·09진인4842·09진인4841(병합)결정 [학생 두발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803
	두발 단속 시 강제이발과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3

2011. 2. 17.자 10직권1000·10진정0674100(병합)결정

[고등학교의 학생 체벌] 807

교사들의 학생 체벌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체벌 가해 교사들에 대한 주의 조치, 그리고 해당 학교를 ‘체벌 없는 학교’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과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기타

1

2009. 9. 14.자 08진인2316결정

[소방서 구급대원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818

심장이 정지된 응급환자에 대한 소방서 구급대원의 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사건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관련 법규의 준수와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그리고 이들 권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마련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사례

2

2009. 10. 26.자 09진인1542·1543·1545·1546·1547·1548(병합)결정

[명찰 고정 부착 신상노출 등 인권침해] 828

교복에 탈부착이 자유롭지 않은 고정식 명찰을 부착하는 학교들에 대해 시정권고 한 사례

3

2009. 10. 26.자 08진인590결정

[의무사관 후보생 모집 신체검사시 병력공개] 833

병무청장에게 징병 신체검사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을 통한 검사가 진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사례

4

2009. 11. 23.자 09진인1874결정

[판사의 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837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원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수차례 한 판사에 대해 주의 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사례

5

2009. 12. 28.자 09진인3871결정

[보호관찰학생 이종처벌에 의한 인권침해] 841

학생에 대한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사례

6

2010. 1. 25.자 09진인1801 결정

[공무원의 통화내용 무단 녹음] 851

민원인의 항의 전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데 대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7

2010. 1. 25.자 09진인4026 결정

[공무원의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856

민원인에게 욕설을 한 공무원에게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한 사례

8

2010. 3. 22.자 09진인5202, 09진인5203, 10진인384, 10진인385, 10진인391(병합)결정

[군의문사진상유가족에 대한 국회출입금지] 863

국회 청사 출입통제와 관련된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9

2010. 4. 12.자 09진인752결정

[공직기강교육 장소에서 경위서 및 사유서 낭독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868

공직기강교육 장소에서 경위서와 사유서 낭독 등을 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로 보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한 사례

10

2010. 4. 26.자 09진인1359결정

[욕설 및 위협에 의한 인권침해] 874

민원인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위를 한 직원들에게 친절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11

2010. 4. 26.자 09진인3039결정

[징병검사기준으로 인한 장애인 인권침해] 877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근거리 이동조차도 수월하지 않은 중증의 시각장애인이 일반 징병검사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개인별 심리검사부터 신장·체중 측정과 시력 측정 등의 기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보아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개정 전이라도 중증 시각장애인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징병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한 사례

12

2010. 5. 10.자 08진인4868결정

[일제고사 반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884

항의 피켓을 동의 없이 철거해 간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

한 것으로 보아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사례

13

2010. 6. 7.자 09진인4442결정

[과태료 부과처분안내문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894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문이 타인에게 공개된 데 대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한 사례

14

2010. 6. 30.자 10진인371결정

[부당 해고로 인한 인권침해] 898

단순 심부름이 모욕적이고 괴롭다는 호소를 한 일용근로자를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데 대하여 당사자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한 사례

15

2010. 7. 26.자 10진정0263600결정

[공무원의 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904

민원인에게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한 공무원에 대해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 사례

16

2010. 7. 26.자 10진정0351600결정

[퇴학 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908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퇴학 처분한 데 대해 재발방지를 권고한 사례

17

**2010. 9. 15.자 10진정0314700·10진정0283300·10진정
0548300(병합)결정**

[부당한 학교기숙사 생활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913

방과 후 자율학습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의 기숙사 입실을 자정
까지 불허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
을 권고한 사례

18

2010. 10. 29.자 10진정0298600결정

[휴대폰 사용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918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사례

19

2010. 11. 29.자 10진정0313700결정

[교사의 체벌 등에 의한 인권침해] 923

체벌 교사에 대해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한 사례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제[1] 장 검찰, 경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 제4집 2009~2011



1. 수사과정에서의 폭행·가혹행위 등

1

2009. 2. 25.자 09진인10결정 [경찰의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얼굴에 비닐봉지 씌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선 지구대 근무자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주취자의 자해예방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조 및 ○○지구대장에 대한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 경찰관이 피의자 얼굴에 27분간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는 폭행의 일종이며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헌법」 제12조에서 인정하는 신체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임
- 【2】 경찰청 차원에서 주취자의 자해 예방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진 정 인】 백○○

【피진정인】 1. 권○○

2. 최○○

-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유사행위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일선 지구대 근무자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주취자의 자해 예방에 대한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을 징계조치하고 당시 ○○○지구대장을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3.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8. 10. 2. 02:00시경 ○○시 ○○동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 중 택시비 6,600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택시기사와 함께 02:30분경 ○○○지구대로 갔고 ○○○지구대 및 ○○○○경찰서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이 본인의 지갑에 신분증 및 돈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여 거부 하였더니 수갑을 채워 의자에 앉아 놓았고, 이에 억울하여 바닥에 침을 뱉었더니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워놓아 숨도 못 쉬고 죽고 싶을 정도로 모욕감을 느꼈다.

나. ○○○○경찰서로 이송되어 대기하면서 피진정인 2.가 부당하게 머리에 헬멧을 씌워놓았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권○○ (○○○○경찰서 ○○○지구대사무소장, 경위)

근무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근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체포를 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사용한 것이다.

이후 진정인이 바닥에 침을 뱉어 그러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하여 침을 뱉어 다르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비닐봉지를 씌운 것이다.

2) 최○○ (○○○○경찰서 ○○지구대, 경사, 당시 형사과)

진정인을 피의자 대기실에 대기시켰는데 온갖 욕설을 하면서 대기실 기둥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난동을 부려 피의자 보호차원에서 헬멧을 씌운 것이다.

다. 관계인의 주장

1) 김○○ (○○○○경찰서 ○○지구대, 경사, 당시 ○○○지구대)

진정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응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에게 욕설을 하고 목덜미를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더 이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갑을 사용하였다. 진정인이 계속하여 침을 뱉어 근무자중에서 비닐봉지를 씌웠는데 중간에 비닐봉지를 눌러 씌운 것은 오래된 일이라서 누가 그랬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2) 신○○ (○○○○경찰서 경비계장, 경감, 당시 ○○○지구대장)

당시 피진정인 1.의 직속상관으로 ○○○지구대장으로 재직했으며 지구대에서 진정인에게 비닐봉지를 씌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3) ○○지검 담당수사관 및 검사

당시 진정인의 주장에 의해 CCTV를 확보하고 경찰을 불러 확인해 보았다. 진정인과 경찰간에 트러블이 있었고 진정인이 침을 뱉어 경찰관이 부득이 그러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진정인이 경찰을 고소하겠다는 의사표현은 없었다.

4)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헬멧은 경찰장구가 아니어서 사용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은 없으며 일선경찰서에서 주취자 자해예방 등을 위해 부득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피진정인 및 관계인 등을 조사한 결과 및 제출된 자료(CCTV 동영상)를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8. 10. 2. 02:00시경 ○○시 ○○동에서 진정 외 김○○과 술을 마시고 헤어지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택시비 6,600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택시기사(이○○)의 요구에 의해 02:30경 ○○○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나. 지구대에서 택시기사는 위 사실을 근무자인 김○○ 경사 등에게 진술하였고 김○○ 경사는 진정인의 신원 및 현금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갑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이런 경우 즉결심판을 내릴 수 있으니 지갑을 보여달라.”는 말을 하면서 지갑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여 진정인을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현행범 체포한 후 수갑을 채워 의자에 고정시켜 놓았다.

다. 진정인은 등뒤로 수갑이 채워진 채 지구대 의자에 끈으로 묶여 앉아있게 되자 바닥 등에 침을 뱉었고 이때 구○○ 순경의 옷에 침이 묻자 사무소장인 피진정인 1.은 지구대내 종이류 쓰레기 배출용 반투명비닐봉지(80Cm×60Cm)를 2008. 10. 2. 03:36부터 04:03까지 진정인의 얼굴에 씌워놓았으며 이 과정에서 진정인이 뒤척여 비닐봉지가 벗겨지려 하자 성명불상 지구대원이 재차 이를 눌러 씌운 사실이 있다.

라. 진정인은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경찰관과 비닐봉지를 씌운 경찰관이 동일인이라고 생각하고 진정을 하였으나, 조사결과 진정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경찰관은 관계인 1. 이고, 비닐봉지를 씌운 경찰관은 피진정인 1. 이다.

마. 피진정인 2.는 ○○○○경찰서로 이송되어온 진정인을 조사대기 시켜 놓았으나 진정인이 욕설을 하고 머리를 대기실 기둥에 부딪혀 자해를 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진정인에게 헬멧을 씌워놓은 사실이 있으나, 경찰청 차원에서 주취자의 자해 시도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헬멧착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바. 진정인은 2008. 10. 7.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혐의로 ○○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지방검찰청 조사 중 피진정 경찰공무원이 조사중 비닐봉지 씌운 사실을 수사관에게 말하여 수사관이 이를 확인하고 검사에게 보고는 하였으나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수사한 사항은 없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행위는 그 시점이 진정인을 현행범 체포한 이후인바 당시 진정인의 신체를 보호할 의무는 국가에 있다고 할 것이고 진정인이 비록 공무가 집행되는 경찰관서안에 침을 뱉고 근무자에게 까지 침을 뱉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수갑이 채워져 소파에 묶인 상태로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진정인에게 경찰공무원인 피진정인 1.이 27분간 비닐봉지를 얼굴에 씌운 행위는 명백한 폭행의 일종이며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헌법」 제12조에서 인정하는 신체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 2.의 행위는 주취자의 자해 방지 등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조사대상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나 경찰청 차원에서 주취자의 자해 예방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제1항 제2호, 제44조제1항 제2호 및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2. 2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윤기원 위원 정재근

2

2009. 5. 14.자 09직인1결정[○○경찰서 ○○지구대
피의자 뇌사(사망) 사건]

【1】 검찰총장에게

○○경찰서 ○○지구대 경위 김○○와 경사 최○○을 「형법」 제268조에
규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한다.

【2】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상 필요한 주취자 보호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주취자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조치에 적합
한 장구를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지방경찰청장에게

가해자들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주의 조치를, ○○지구대
직원을 총괄·감독하는 생활안전과장 및 해당 지구대장에게는 각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1】 주취자 대응은 천편일률적으로 그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도 어렵고, 설
령 그 대응 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시행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 금번의 경우도 경찰청의 “보호조치대상자 처리 매뉴
얼”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서 관련 경찰관의
대응 방법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경찰관의 행위가 고의성을 인정
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
건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주취자인 피해
자의 신병을 관리 보호함에 있어 위급하고 급박한 자해 등의 상황에 이
르지 아니하도록 주취자의 심리상태 및 생리현상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이 설령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생명유지에 필수불가결
한 호흡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주의의무가 더욱 요구

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태만히 하여 「형법」 제268조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생명권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책임을 물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인 경위 김○○와 경사 최○○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하기로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상 필요한 주취자 보호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주취자 등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조치에 적합한 장구를 마련하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며, ○○지방경찰청장에게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평소 직원들에 대한 주취자 처리 및 보호 방안에 대한 교육이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경찰서장에게 주의 조치를, ○○지구대 직원을 총괄·감독하는 동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및 동 지구대장에게 경고조치를 할 것을 권고함

- 【2】 피해자에게 전자총격기로 피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종결하기로 함

【참조조문】

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제12조(신체의 자유)

나.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다.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제4조 (보호조치등)

마.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1조(현행범인의 체포)

바. 「주취자안전실운영규칙」 제12조(수갑 등의 사용)

【피 해 자】 김○○

【피조사자】 김○○

최○○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발생한 피의자 김 ○○(남, 43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 뇌사(사망) 사건의 직권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이 고발 조치 및 권고한다.

1. 검찰총장에게
○○경찰서 ○○지구대 경위 김○○와 경사 최○○을 「형법」 제268조에 규정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발한다.
2.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관 직무 집행상 필요한 주취자 보호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주취자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조치에 적합한 장구를 마련할 것과, 직원들에게 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지방경찰청장에게
가해자들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주의 조치를, ○○지구대 직원을 총괄감독하는 생활안전과장 및 해당 지구대 장에게는 각 경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직권조사 개요

1. 직권조사의 배경과 목적

2009. 4. 21. 01:40 전후 ○○경찰서 ○○지구대에서 피해자가 동 지구대에 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 의해 재갈이 물려 뇌사에 빠진 후 같은 해 5. 2.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동 사건은 경찰력에 의해 피해자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뇌 기능이 상실되고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이며, 또한 지역 언론을 포함하여 다수 언론이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에 의문을 제기한 사건으로서 중요사건으로 판단하여 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피해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연행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는 없었는지, 그러한 행위가 불가피한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였는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일선 경찰서에서는 주취자 문제로 업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가를 밝혀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조사에 이르게 되었다.

2. 직권조사 결정과 조사방법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 4. 23. 직권조사 결정을 하고, 같은 달 23.부터 24.까지 2일간 ○○경찰서 사건현장에 4명의 조사관을 파견하여 피해자 가족, 목격자 등 참고인, 관련 경찰관 및 감독 경찰관 등 21명을 조사하였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사용한 수건 2장에 대한 사진, 사건 당일 ○○지구대의 CCTV 기록 일체 등을 확보하였다. 또한 응급실 도착 당시 진료한 의사와의 전화 조사 및 사건 당시 ○○지구대에서 40여 분간 머물면서 동 사건을 목격한 서○에 대한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그동안의 경과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업무상과실에 관한 법리 및 관련규정을 조사하였다.

또한 2009. 4. 23.~24. 이틀간 현지 실지조사 시 ‘피해자에 대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가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해자 가족의 조사 요청이 있어 이를 직권조사 사항에 포함하여 조사하게 되었다.

II. 인권침해성에 관한 판단

1. 판단근거

- 가. 「헌법」 제10조, 제12조
- 나.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
- 다.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 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제4조(보호조치등)

마.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31조(현행범인의 체포)

바. 「주취자안정실운영규칙」 제12조(수갑 등의 사용)

세부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해자에 대한 경찰력 행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가. 피조사자의 주장

1) ○○경찰서 ○○지구대 순찰3팀장 경위 김○○

피해자는 2009. 4. 21. 01:05경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수갑이 몸 뒤로 채워진 채 ○○지구대로 연행되어왔고, 만취 상태에 있어 동 지구대에 긴 의자에 앉혀 놓았는데 “이 씨발 새끼들아 수갑 안풀어, 너 이 새끼들 죽어버린다. 수갑 안풀어 주면 혀 깨물고 죽어버린다.”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계속 일어나려고 하여 직원들이 그를 앉히려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렇게 몸부림과 폭언을 한 후 약 10분간 잠을 자고 01:30경 깨어난 후 피해자는 또다시 “씨발 새끼들아 수갑 안풀어, 혀 깨물고 죽어버린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혀를 내미는 동작을 하였으며, 이 때 그의 입가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실제 자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직원들로 하여금 천 같은 것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최○○ 경사가 1층 세면장 수건걸이에서 흰색 수건을 가져와 피해자가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입을 벌리면서 눌렀고, 이 때도 피해자의 혀가 입 밖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자해 의사가 분명하다고 판단되었으며, 나중에 흰 수건 위에 파란 수건으로 덧대어 두른 이유는 흰 수건이 재갈을 물리기에는 너무 짧아, 다른 수건을 가져와 다시 시도하면 재갈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파란 수건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주취자가 난동을 부리고 자해를 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경찰관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므로 당시 상황도 피해자가 자해 의사가 있다고 보아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현장 조치는

최선의 방법이었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유감이다.

2) ○○경찰서 ○○지구대 순찰3팀 경사 최○○

2009. 4. 21. 00:48경 ○○시 ○○동 소재 ○○호프집에 출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 같은 날 01:05경 ○○지구대로 연행하여 동 지구대 긴 의자에 앉혀 놓았는데 계속 일어나려고 해서 지구대 직원이 그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는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다.”며 거칠게 욕을 하기도 하고 수갑도 한 차례 풀어달라고 하였다. 이에 김○○ 경위가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준 적이 있고, 그 후 피해자는 같은 날 01:30경에 잠에서 깨자마자 계속해서 “씨발 놈들이”라고 욕을 하였고, “혀 깨물고 죽어버린다.”라고 되풀이하였다.

당시 본인은 피해자가 실제로 혀를 깨물었다고 생각하였고 김○○ 경위가 피해자가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 양 볼을 손으로 누르면서 천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여 본인과 서○○ 경장이 다급하게 재갈을 물릴 수 있는 도구를 찾았으며, 지구대 1층 화장실 수건걸이에 걸려있던 흰 수건이 생각나서 급히 가지고 나왔더니 피해자가 혀를 입 밖으로 내밀어 깨무는 시늉을 하고 있어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입을 벌려 수건을 이 사이로 넣으려고 하였다. 재갈을 물릴 때 수건을 가로로 해서 물리려고 했는데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해서 순간적으로 수건이 얇아 잘못하면 손가락을 물릴 위험이 있었다고 생각하였고, 수건이 얇아서 재갈의 효과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좀 더 큰 수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동 지구대를 둘러보던 중 마침 김○○ 경위가 가져다 놓은 파란 수건을 책상 위에서 발견하였고 이를 가져와 가로로 길게 하여 재갈을 시도한 것이다.

이때 김○○ 경위는 흰 수건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은 파란 수건을 가로로 하여 그 위에 누르면서 재갈을 물리려고 했는데 재갈이 잘 물리지 않아 수건을 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같은 날 01:42경) 서○○ 경사가 피해자의 신병을 ○○경찰서로 빨리 인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송 과정에서 난동을 부리고 혀를 깨물 수도 있다고 보고 다시 파란 수건으로 재갈을 물리게 된 것이다.

두 장의 수건을 사용하여 재갈을 물린 이유는 수건 한 장이 얇은 것이어서 혹여 혀를 깨물 수도 있다고 보았으며, 코를 막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당시에는 뇌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하였다.

혀를 깨무는 경우 자해 방지만 생각했지 재갈을 물릴 경우의 위협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으며, 재갈에 관한 별다른 근무수칙이 있는지도 알고 있지 않으며, 다만 당시 상황이 수건을 이용해 재갈을 물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조치에 의해 엄청난 결과가 초래되어 그때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은 본인의 행위를 후회한다.

나. 참고인 진술

1) 서○○(○○시 ○○동 소재 ○○호프집 주인)

2009. 4. 20. 24:00경 본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피해자가 들어왔으며, 다짜고짜 “야 씨발년아 너 나 알아!”라며 욕설하고, 본인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폭행하면서 “야 이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고 하였다.

이후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를 체포·연행하여 갔으며 지구대로 잡혀온 후에도 “씨발놈, 개새끼, 다 때려죽여 불러네.”라며 계속하여 욕을 하였다. 피해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욕을 계속한 것으로 기억한다.

2) 임○○(○○ 텔레캅 ○○본부 ○○지사 직원)

2009. 4. 21. 00:42경 ○○ 텔레캅 관제센터에서 ○○시 ○○동 소재 ○○호프집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보니 피해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고, 이에 본인과 ○○ 텔레캅 직원 이○○와 같이 피해자를 바닥으로 제압하였으며, 경찰관이 도착하자 경찰관에게 인계하였고 피해자는 경찰관에게도 “이거 놔라, 안봐 씨발!”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동 지구대 내 관리반에 가서 피해자 조사를 받은 후 동 지구대 밖으로 나오는 순간 피해자를 경찰차에 태우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수갑이 몸 뒤로

채워진 상태였으며, 입이 약간 벌어져 있었고, 입 주변이 파란 수건으로 둘러져 있었으며, 수건은 입 쪽에 있는 것 같았으나 피해자의 코를 덮지는 않았다.

3) 서○(목격자, 음주 교통사고 피조사자)

본인은 2009. 4. 21. 01:20부터 02:00까지 약 40분간 ○○지구대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지구대에서 발생한 사건을 목격하였다.

같은 날 01:20경(CCTV 확인 결과 1:30경임) 본인이 ○○지구대에 들어갈 때 한 켠 긴 의자에 피해자가 누워있었는데 잠에서 깬 그는 술주정을 계속하며, "야 씨발놈들아 수갑 빨리 풀어!"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경찰에게 요구하였고, 그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경찰관들은 그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를 잡았다.

어느 순간인가 경찰관이 "자해하지 말라."고 말하며 파란 수건을 종으로 길게 말아서 피해자의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에 넣으려고 하는 모습은 보았으나 피해자가 혀를 내민 모습이나 "혀 깨물겠다.", "소변을 봐야 겠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듣지 못했으며,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어느 정도의 반항과 몸부림은 있었다.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교통사고에 의해 정신이 바짝 들어 있었고, 지구대에 처음 가봤기 때문에 다소 긴장한 상태였으며, 교통사고 조서를 쓰는 중에 피해자가 계속 난동을 부려 경찰관이 "자해하지 말라."고 해서 그 말에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눈길을 주게 되었는데 그 때 경찰관이 그 피해자의 입 주변을 수건으로 감싸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4) 박○○(○○○○병원, 사고 당일 응급실 근무 의사)

병원 도착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얼굴이 사색이었고, 의학적으로 사망 판단기준인 동공반사가 없었으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된 상태였다. 호흡을 되돌리기 위해 피해자의 입을 벌리고 기도 삽관을 하면서 피해자의 구강을 보았을 때

혀가 말린 상태였으며, 다급한 상황이라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혀를 깨문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고 구강 내에서도 다른 상처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의 귓볼에 약간의 혈흔은 있었지만 귀 안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며, 응급실에 실려와서 심폐소생술 30분 후에 심장 박동이 시작되고, 그 뒤 1시간 정도 제세동기에 의해 치료받은 후 호흡이 돌아온 상태였으나, 피해자를 검진한 결과 그 외 특별한 이상 소견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김○○ 문답조서(2009. 4. 23.), 최○○ 문답조서(2009. 4. 23.), 서○○ 문답조서(2009. 4. 24.) 등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문답조서 및 진술서, 피해자의 동생 김○○의 진술서(2009. 4. 24.), 참고인 서○○의 문답조서(2009. 4. 24.), 임○○의 문답조서(2009. 4. 24.), 진○○의 문답조서(2009. 4. 24.), 서○의 전화보고서(2009. 4. 30.), ○○○○병원 응급실 담당의사 박○○의 전화보고서(2009. 4. 30.) 및 ○○지구대에 설치된 CCTV 녹화 기록(2009. 4. 21.)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9. 4. 21. 00:42경 ○○ 텔레캅 직원 임○○과 이○○는 ○○시 ○○동 소재 ○○호프집에서 행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0:45경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가 위 호프집 사장 서○○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압해 붙들고는, 같은 날 00:51경 112범죄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제13호 순찰차 경사 최○○과 경장 정○○, 제12호 순찰차의 경사 서○○와 경장 강○○에게 피해자의 신병을 인계하였다.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경사 서○○, 경장 강○○, 그리고 경장 정○○은 피해자의 몸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제1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01:05경 ○○지구대에 도착하였으며, 뒤이어 최○○ 경사는 01:06경 ○○호프집 주인 서○○, 그녀의 오빠 서○○을 태우고, 바로 이어 ○○ 텔레캅 직원 임○○도 동

지구대에 도착하였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지구대에 연행된 뒤 별다른 조치 없이 소파에 앉혀 있다가 01:10경 경사 최○○이 자해를 방지한다며 세 차례에 걸쳐 A4 복사용지 3장을 구겨말아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시도하려다 여의치 않자 포기한 사실이 있고, 경장 정○○과 경장 박○○는 계속해서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나려하고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지하면서 01:14경 피해자에게 냉수를 컵으로 먹여주고, 소파에 누워 쉬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척이며 안정을 취하지 못하다가 01:19경 김○○ 경위가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자 01:23경부터 소파에 누워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01:23경 동 지구대 내 상황실 책상 앞 소파에 드러누워 잠을 자기 전까지 약 18분 동안 대기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근무 경찰관들에게 여러 차례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게 해 달라거나 손목이 조여 아프다는 이유로 뒤로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 줄 것을 폭언을 섞어 거칠게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01:31경 진정의 당일 교통사고 관련자 서○ 등이 지구대에 출입하는 소음에 잠에서 깨어나 수갑을 풀어 줄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나려하고 소란을 피웠으며 이때 지구대 근무 경찰관은 아무런 요구도 들어주지 아니한 채, 경사 서○○가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거나 엉덩이로 깔고 앉아 누르고, 김○○ 경위가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잡아 꼼짝 못하도록 하자 더욱 심하게 발버둥을 쳤다.

이에 대하여, 김○○ 경위는 피해자가 혀를 깨무는 등 자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에게 천 같은 것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어 1:40 04초경 최○○ 경사는 1층 화장실에서 가져온 흰색 수건으로 피해자에게 재갈을 물렸으며, 01:40 40초경부터는 최○○ 경사를 대신해 김○○ 경위가 흰색 수건을 피해자의 머리 뒤로 돌려 잡고 최○○ 경사는 위에서 눌러 피해자에게 재갈이 물리도록 하였으며, 01:41 07초경에 잠시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중단했던 최○○ 경사는 김○○ 경위가 지구대 책상위에 두었던 파란 수건을 발견하고는 이를 01:41 22초경부터 50초경까지 흰 수건 위에 덧대며 2차 재갈을 시도하였다.

2차 재갈을 성공시키지 못한 최○○ 경사는 잠시 중단하였다가 01:42 3초경 피해자를 ○○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해 위 파란 수건으로 재갈을 다시 물리며 잡아 끌고 일어섰으며, 이때 김○○ 경위는 흰 수건을 잡고, 서○○ 경사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셋이서 합심하여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들었으며, 약 1분 38초 뒤인 01:43 41초경에는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웠다.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운 후 최○○ 경사는 피해자로부터 배뇨 냄새가 나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이를 김○○ 경위에게 보고하였고, 01:46 15초경 김○○ 경위가 직접 119에 구호요청을 하였으나 별다른 응급조치 없이 119 구급차를 기다리다 구급차의 도착이 늦어지자 동일 01:51 13초경에 순찰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시켰다.

후송 당시(2009. 4. 21. 02:00경) 피해자의 얼굴 상태는 사색이었고, 심장이 멈추었으며, 호흡이 정지된 상태였고, 의학적으로 사망 판단기준인 동공반사가 없어 사망에 이른 상태였으며 외형적으로는 혀를 깨문 흔적이나 구강 내의 특별한 상처가 없었고, 엑스레이(X-ray) 및 두부(뇌) 컴퓨터단층촬영(CT), 혈액 검사 등을 통해 검사해 본 결과 특별한 이상 소견도 없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피해자는 담당의사의 30분간의 심폐소생술 후에 심장 박동이 돌아왔고, 그 뒤 약 1시간 정도 제세동기에 의해 치료받은 후 호흡이 돌아왔다. 그러나 결국 2009. 5. 2. 새벽에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진료 의사의 소견, 당시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재갈에 의한 것일 개연성이 높지만 정확한 사망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으로 본다.

2) 판단

가) 재갈을 사용할 정도로 위급성이 있었는지 여부

‘재갈’이란 통상적으로 나귀나 소, 말 등 동물에게 물려 통제를 유력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사람에게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간질발작 등과 같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혀 등 신체의 일부를 손상할 우려가 농후하거나 생명신체상

매우 위급하면서도 자율적인 방어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혀를 깨무는 행위를 할 경우란 명백히 자살의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서 외부적 강압에 못 이겨 꼼짝 달싹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었을 때 취하는 극단적인 행동의 양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하려고 하였다면 그 전후에 그럴 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피조사자들은 당시 재갈을 물린 행위는 한결같이 피해자가 혀를 깨물겠다고 하여 위험행위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급박성은 물론, 위급피난행위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당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당시 피해자가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부터 소변이 마렵거나 손목이 아프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며 자리에 일어나려하자 이와 같은 요구가 번번이 묵살 당하였고, 곧이어 경장 정○○ 등이 물을 주고, 김○○ 경위가 수갑을 느슨하게 해 주자 진정되어 잠을 청하였던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난폭한 행위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수단이었지 설령 피해자가 자해 의사를 먼저 피력했다 할지라도 자해를 위한 본질적인 목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보인다.

둘째, 피조사자들은 피해자가 소변이 마려워 수갑을 풀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여러 차례 들었던 관계로, 그 진정성을 주의 깊게 살펴 생리적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노력이나 시도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해자가 수갑을 풀 목적으로 이를 요구한 것이라고 관행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특별한 관심과 주의 조치를 기울이지 않았다.

셋째, 더욱이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후, 재갈이 채워져 순찰차로 이동하기까지 피해자가 자해 의사를 밝히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는 참고인 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혀나 구강에 전혀 상처가 없었다는 최초로 피해자를 진찰했던 참고인 박○○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가 먼저 자해 의사를 피력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으며, 설사 자해 의사나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재갈을 물릴 정도로 위급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해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주거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도록 화장실을 사용하게 하는 등의 완화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곧바로 잇몸을 일으켜 앉지도 못하도록 다리를 눌러 꼼짝 달짝 못하도록 강제력에 행사하다가 급기야 피해자가 혀를 깨무는 자해의 모습을 보이자 그 사정을 살펴보지도 않고 재갈을 물린 행위는 그 위급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재갈 사용시 적정성 여부

설령 당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혀를 깨무는 자해의 위험이 인지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2개의 일반용 수건을 겹쳐 재갈을 시행한 방법에 대해서는 그 적정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첫째, 피조사자들은 피해자가 자해할 것이라는 상황의 급박성을 들어 2개의 수건으로 재갈을 물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재갈이 물린 시간이 무려 3분 37초 동안 지속되고, 그 기간 중에 피해자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기본적 보호조치인 기도유지도 행하지 않았다.

둘째, 최○○ 경사는 두 번째 수건으로 재갈을 물린 이유는 첫 번째 수건이 작아 재갈이 제대로 물리지 않아 좀 더 큰 수건으로 물리려고 한 것이며, 피해자가 뇌사에 빠질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나 사용된 수건의 크기는 각 가로 75cm x

세로 30cm, 가로 80cm x 세로 40cm로서 2개의 수건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입과 코의 산소유입을 막아 질식사킬 우려가 크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는 상황에서 고정되지 아니한 수건이 아래 위로 밀려 코와 입을 동시에 막을 개연성도 높은 점에서 그 업무상 상당한 주의력이 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있다.

셋째, 건장한 일반인의 경우도 임상적으로 볼 때 숨을 1~2분만 멈추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인데, 호흡과 맥박이 가쁜 상태인 주취자에게 약 3분 이상 지속적으로 재갈을 물린 행위는 숨을 막을 수도 있는 과도한 행위로 볼 수 있으며,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정상적인 신체상태가 아니라 알콜 과다섭취의 만취상태였고, 또한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로서 이러한 주취자의 호흡 및 건강상태는 경찰 업무수행자들이 충분히 예견하고 주의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

넷째, 수건으로 재갈을 물리는 방식은 경찰 내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방식도 아니고, 당시 관련 경찰관들이 이 방법을 충분히 숙지하지도 않은 채 상황의 급박성만을 들어 경솔하게 대응하였으며,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2개의 수건을 동시에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뇌사(사망)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이상의 정황이나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갈을 물리는 과정에서의 행위는,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므로 그러한 행위에 있어 적정성 및 상당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소결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경사 최○○과 경위 김○○는 주취상태의 피해자를 체포해 신병을 관리함에 있어 피해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핌으로써 적절히

필요불가결한 요구를 들어주어 자해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재갈 사용에 따른 제반조치 및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268조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고, 나아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가. 피조사자의 주장

1) ○○경찰서 ○○지구대 순찰3팀장 경위 김○○

피해자를 지구대에서 데리고 나올 때는 발버둥쳤으나 순찰차에 태우려고 할 때 갑자기 저항이 없어 지쳐서 쉬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그때 잡고 있던 수건을 놓아 주었다.

피해자를 순찰차에 옮겨 태운 후 본인이 동 지구대로 다시 들어와 순찰차 키를 찾던 중 피해자와 순찰차에 같이 있던 최○○ 경사가 “팀장님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살펴보니 소변을 보았고, 얼굴도 어두워 불길한 느낌이 들어 빨리 구급차를 부르라고 지시하였고, 급한 마음에 본인이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요청하였으나 구급차가 오지 않아 순찰차로 피해자를 ○○ ○○병원으로 후송시켰다.

2) ○○경찰서 ○○지구대 순찰3팀 경사 최○○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우고 나서 조용해져 물렸던 재갈을 즉시 풀어 주었으며, 피해자가 진정이 되어 조용한가 보더라고 생각했는데 인분 냄새도 나고, 소변도 본 것 같아 설마 설마하며 피해자의 가슴과 목을 만져 보았으나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확신은 들지 않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다. 그래서 바로 이 상황을 김○○ 경위에게 보고하였으나 피해자의 숨이 멈추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김○○ 문답조서(2009. 4. 23.), 최○○ 문답조서(2009. 4. 23.), 서○○ 문답조서(2009. 4. 24.) 등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문답조서,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이○○ 경정의 진술서(2009. 4. 24.), ○○경찰서장 한○○의 문답서(실지조사보고서), 피해자의 동생 김○○의 진술서(2009. 4. 24.), ○○지구대에 설치된 CCTV 녹화 기록(2009. 4. 21.)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9. 4. 21. 01:42 3초경 김○○ 경위, 최○○ 경사 및 서○○ 경사는 지구대 안에서 피해자를 들어 순찰차로 옮겨 실으려고 하다 순찰차 앞에서 피해자를 놓친 적이 있는데 이때 김○○ 경위는 피해자가 저항이 없어진 것을 알았으며, 피해자가 지쳐서 쉬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아무 의심없이 피해자의 재갈을 풀어주었다.

01:43 41초경 피해자를 순찰차에 실은 후, 최○○ 경사가 피해자와 같이 순찰차 안에 있을 때 인분 냄새도 나고, 소변의 흔적도 있어 최○○ 경사는 피해자에게 큰 일이 생긴 줄 알게 되었고, 즉시 김○○ 경위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김○○ 경위는 순찰차 조수석 뒷편 좌석 위에 물 같은 것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것이 피해자의 소변임을 알았으며, 피해자의 안색도 어둡고 움직임이 없어 동 지구대 직원들로 하여금 구급차를 부르라고 지시했으나 상황이 다급하여 01:46 15초경 본인이 직접 119에 구조 요청을 하였다.

119에 신고한 후 약 5분이 경과되어도 119 구급차가 오지 않자 피해자를 순찰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시켰으나 119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에

인공호흡 등 별도의 조치는 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의 인정사실을 종합해보면, 김○○ 경위는 2009. 4. 21. 01:46경 최○○ 경사로부터 피해자에게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그때서야 피해자에게 이상 징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 경위의 진술에 따르면 01:43경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우기 직전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자 재갈을 풀어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우기 직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이상 징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CCTV 녹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운 이후 김○○ 경위가 한 두 차례 순찰차 앞에서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는 등 그 이상 징후에 대하여 약간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현재와 같은 사고는 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당시 상황이 피해자를 순찰차에 싣기 직전에 그의 상태를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서 별도의 응급조치 등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최○○ 경사가 피해자의 이상 징후를 발견한 것은 01:45경이며, 이 보고를 받은 김○○ 경위는 순찰차 안에서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소변을 발견하였고, 피해자가 안색도 좋지 않아 불길한 생각이 들었다고 했으며, 즉시 119에 구조 요청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김○○ 경위를 비롯하여 동 지구대원들은 최소한 01:46 15초경 김○○ 경위가 119에 구조 요청했을 때에는 피해자의 생명이 위급하고, 그 상황이 심각했음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황이 이와 같이 급박했음에도 관련 경찰관들은 119에 구호 요청을 한 후 약 5분간 피해자를 방치하였으며, 피해자가 재갈로 인해 생명이 일각을 다투는 상황임에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태연하게 업무 처리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경찰관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 및 응급 조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형법」 제268조의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며, 나아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4. 피해자에 대한 전자충격기 사용 여부에 대하여

가. ○○경찰서 ○○지구대 순찰3팀 경장 정○○의 진술

본인이 피해자를 ○○지구대로 연행한 후 피해자가 ○○지구대 내 쇼파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 출동 당시 최○○ 경사가 가지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본인에게 주며, 사진을 빨리 출력하라고 하여 카메라를 받고 한 손에 들고 있었고 그 카메라를 한 손에 든 채 피해자를 제지하기가 어려워 누군가(CCTV 확인결과 김○○ 경위임)에게 카메라를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피해자의 가족은 이 카메라를 전자충격기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나.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정○○의 문답조서(2009. 4. 24.), 피해자의 동생 김○○의 진술서(2009. 4. 24.), ○○지구대에 설치된 CCTV 녹화 기록(2009. 4. 21.), ○○경찰서 수사보고서(2009. 4. 23. 경찰서장), 인권위 조사관이 채증한 전자충격기와 디지털 카메라의 실물 사진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009. 4. 21. 01:06 40초경 경장 정○○은 동 지구대 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왼손으로 잡고 그의 오른손으로 경사 최○○으로부터 무언가를 전달받았고, 01:06 50초경 경장 정○○은 그의 오른손에 잡고 있던 그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살짝 스치듯하며 본인의 왼손 쪽으로 옮겼으며, 바로 직후 피해자의 다리가 떨리는 모습이 CCTV에서 확인되었다.(피해자 가족은 이 모습

을 보고 전자충격기에 의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01:06 52초경 경장 정○○은 왼손에 있던 물건을 김○○ 경위에게 건네 주고, 01:06 57초경 김○○ 경위는 그 물건을 동 지구대 내 데스크 근무자 책상 위에 올려놓았으며, 이 올려놓는 모습에서 그 물건에 줄이 있음이 포착되었고, 또한 01:06 59초경에는 데스크 근무자 서○○ 경장이 그 물건을 집어 드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조사관이 채증한 사진자료에 의하면, 전자충격기와 디지털 카메라는 실제 크기와 모양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며, CCTV 녹화 기록물을 분석해 보더라도 그 물건이 크거나 형태로 보아 전자충격기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2) 판단

이상에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를 사용했다는 피해자 가족의 주장에 대하여는 조사관이 채증한 전자충격기와 순찰시 휴대하는 카메라의 사진자료, 당일 CCTV에 찍힌 기록물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CCTV에 찍힌 물건은 그 크기가 작고 끈도 있으며 전자충격기의 실물 모양과 다르고, 또한 사건 당일 ○○ 지구대 전자충격기 입출대장에도 입출 내역이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이를 전자충격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Ⅲ. 결론

주취자 대응은 천편일률적으로 그 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도 어렵고, 설령 그 대응 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현장 상황을 무시하고 시행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 금번의 경우도 경찰청의 “보호조치대상자 처리 매뉴얼”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례적인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서 관련 경찰관의 대응 방법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점, 경찰관의 행위가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인정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주취자인 피해자의 신병을 관리 보호함에 있어 위급하고 급박한 자해 등의 상황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주취자의 심리상태 및 생리현상 등을 적절히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상황이 설령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생명유지에 필수불가결한 호흡 등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주의의무가 더욱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 이를 태만히 하여 「형법」 제268조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연유하는 생명권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그 책임을 물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해자인 경위 김○○와 경사 최○○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기로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경찰청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의 직무 집행상 필요한 주취자 보호 조치 관련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주취자 등에게 응급상황 발생시 안전조치에 적합한 장구를 마련하며,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며, ○○지방경찰청장에게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평소 직원들에 대한 주취자 처리 및 보호 방안에 대한 교육이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경찰서장에게 주의 조치를, ○○지구대 직원을 총괄·감독하는 동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및 동 지구대장에게 경고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고,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로 위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종결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3

2009. 6. 23.자 08진인2602결정 [밤샘조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1】 경찰청장에게, 감찰조사 시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심야 감찰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 00지방경찰청장에게, 감찰조사 시 진정 관련 사례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경찰청장에게, 감찰조사 시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심야 감찰조사에 의한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을 방지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

【2】 00지방경찰청장에게, 감찰조사 시 진정 관련 사례와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진00, 허00, 박00에 대하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진○○

허○○

박○○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감찰조사 시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심야 감찰조사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00지방경찰청장에게, 감찰조사 시 진정 관련 사례와 같은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여고생 성폭행 사건 수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감찰조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이 2008. 4. 15. 18:00경부터 4. 17. 06:00경까지 약 40시간 동안 조사함으로써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가. 진정인은 휴가 중인 2008. 4. 15. 18:00경 성명미상의 ○○지방경찰청(이하 “○○경찰청”이라 한다.) 감찰계 직원으로부터 ○○○○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고, 아이들(진정인의 만 1, 3세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올 때까지 1시간만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감찰계 직원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19:00경 ○○경찰서에 도착한 후 서장을 면담하고 피진정인들로부터 20:00경부터 익일 06:00까지 조사 받았다.(시간대별 조사내역은, 20:00~02:00까지 진술서 작성, 이어 피진정인들이 진정 외 백○○ 경사가 도착할 때까지 대기하라고 지시하여 03:00경까지 조사실 및 형사과 등에 대기, 03:00~04:00경까지 피진정인 2가 진정인과 진정 외 박○○ 팀장을 진술녹화실에서 조사, 이어 06:00경 진정 외 팀장의 지시로 집에 갔다가 07:00경 출근)

나. 근무 중인 4. 16. 23:00경 피진정인 1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청에서 23:5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조사 받았다. 이때, 진정인은 “이틀 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고 밥커녕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했고 생리중인데도 화장실에도 제대로 못가고 아들도 이틀 동안 보지 못해 정신적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 잠이라도 자고 멀쩡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진정인 1은 “며칠 전 대통령의 ○○서 방문(엘리베이터 초등생 사건 관련) 때문에 청장의 지시

가 있어서 빨리 조사하여야 한다.”고 하고, “감찰조사는 피의자 신문과 다르다. 조직 내부절차이니 조직원으로서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해라. 동의 없이 야간조사 해도 아무 문제없다.”고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2008. 4. 16. 심야조사와 관련해, 피진정인 1은 조서에 진정인이 “심야 진술에 동의한다.”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조서를 열람한 후 수정해 달라고 계속 항의한 결과, “어쩔 수 없다면 진술하겠지만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진정인의 답변 내용을 수정하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08. 4. 15. OO경찰서에는 OO경찰청 감찰계 소속인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조사하기 위해 나갔으나 진정인에게 OO경찰서로 나오라는 전화를 직접 하지는 않았으며, 진정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2) 피진정인들은 4. 15. 20:00경 OO경찰서에 도착하여 2~3시간 조사를 마치고 익일 03:00~04:00경 OO경찰청 감찰계로 철수하였다.

3) 진정인에 대한 감찰사항은, 여고생이 성폭행 피해로 자살미수까지 간 사건을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와 관련해 언론보도가 안 좋게 쓰여 있어 즉시 사실을 확인해야 할 상황이었다. 기사가 잘못됐다면 기사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했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OO경찰서 A경찰관)

피진정인들은 2008. 4. 15. 저녁 ○○경찰서에 와서 다음날 새벽 03:00 ~ 03:30경 철수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날, 피진정인들이 ○○경찰서에 온 시간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나 진정인은 21:00경 조사를 받기 시작해 자정을 넘어 조사가 끝난 것 같고, 이어서 백○○ 경사가 1시간 정도 조사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2) 참고인 2(○○경찰서 B경찰관)

참고인 2는 피진정인 2로부터 4. 16. 02:00~03:00경 진정인과 함께 조사를 받았으며, 조사방법은 관련사건 상황에 대해 묻고 답하는 방식이었다. 진정인과 참고인 2, 피진정인들은 4. 16. 아침까지 꼬박 날을 샌 것으로 기억된다.

3) 참고인 3(○○경찰서 C경찰관)

2008. 4. 15. 19:30경 D경사가 차안에서 진정인의 두 아이를 약 20분간 돌보고 있다가 참고인에게 아이들을 돌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아이들은 엄마를 찾으며 울어 과자를 사주며 달래 약 40분간 아이들을 돌봤다. 이후 아빠라는 사람이 아이들을 찾아갔다. 진정인이 조직 내 동료이기 전에, 아이의 엄마로서 어린 아이들을 차안에 둔 상태에서 감찰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이들은 엄마와 떨어져 있는 동안의 공포와 불안이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이 될 수 있다.

3. 인정사실

진정서 및 진정인의 진술조서,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제출자료, 진정인의 소청심사 자료 및 소청심사 결정문, 참고인들에 대한 문답서, 관련 보도기사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일보 등 다수의 언론매체는 2008. 4. 15.경 “○○○○경찰서 담당형사가 성폭력 신고사건을 관할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는 취지의 기사(이하 “이 사건 관련 기사”라 한다.)를 보도하였고, 당시 진정인은 동 기사

상 담당형사로 OO경찰서 수사과 성폭력 담당 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이 사건 관련 기사와 관련해, 진정인 및 진정인의 상급자들을 감찰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진정인은 휴가 중인 2008. 4. 15. 18:00경 감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의 근무지인 OO경찰서에 19:00경 도착, 당일 20:00경부터 익일 01~02시경까지 피진정인들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성폭행 사건의 처리 경위 등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피진정인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어 진정인은 약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한 후, 피진정인 2로부터 참고인 2와 함께 다시 약 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피진정인들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찰서에 있다가 06:00경 귀가하였다.

2) 진정인은 2008. 4. 16. 아침 출근해 근무하던 중, 23:00경 피진정인 1의 요구로 OO경찰청에 출석하여, 같은 날 23:50부터 익일 03:05분까지 문답형식의 조사를 받고, 이어 05:10까지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고 수정하였다.

3) 위 2)와 같이 조사 시 작성된 조서에 의하면, 야간 진술에 대해 피진정인 1은 묻고 진정인은 답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 진술에 앞서 지금 시간이 23:50경에 진술을 하고 있는데 야간 진술에 대해 진술을 하고 싶지 않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제가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진술을 해야 할 것이라면 지금 진술을 하겠습니다만 어제도 피로를 풀지 못해서 피곤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사 후 조서 열람 시 추가 요구하여 작성하다) 어제부터 계속 기자와 청문 등의 조사에 몸 상태가 최악의 상태입니다. 휴식의 시간 없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조직 내의 문제이니 해야 된다고 하니 지금 조사를 받지만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 OO지방경찰청장은 위 나.항과 같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진정인에게

2008. 4. 25. 전보 처분, 4. 28. 정직 3월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였다. 진정인은 동 OO지방경찰청장의 각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하였고, 이에 대해 소청 심사위원회는 2008. 7. 30. 전보 처분을 취소하고, 징계에 대해서는 정직 3월을 감봉 1개월로 변경한다고 결정하였다.

라. 진정인은 이 사건 관련 기사를 보도한 여러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언론조정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진정인과 일부 언론사는 2008. 7.경 합의하였다. 동 합의의 내용은 진정인이 관련 성폭행 사건을 접수처리 하지 않은 사유가 “관할권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신속한 검거 필요성 및 피해 사정 등을 고려해 이미 다른 건으로 수사 중이던 해당 경찰서와 공조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동의 하에 사건을 인계한 것이다.”라고 밝힌 것을 해당 언론사가 반론보도문으로 보도하는 것이다.

마. 경찰청 훈령 제366호 「경찰감찰규칙」은 감찰조사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감찰조사”라 함은 감찰대상자의 비위 등과 관련되거나 감찰업무 수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여 조치를 건의하는 조사를 말한다.(제3조 제3호)

2) 감찰관이 출석요구, 질문에 답변 요구 등을 하는 경우 경찰공무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제11조 제2항)

3) 감찰관은 감찰 조사 시 각종 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2조 제2항)

4. 판단

가. 심야조사 관련 부분

1) 수면권과 휴식권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감찰기관이 피감찰자를 조사함에 있어 밤을 지새워 하는 밤샘조사는 낮과 밤을 구분하여 생활하는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밤샘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밤샘조사를 하여야 할 명백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하고, 또한 밤샘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피감찰자의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생활관계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밤샘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피의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밤샘조사를 하는 것은 인권침해행위임을 여러 번 결정한 바 있고(2005. 11. 28. 04진인3412외 다수), 경찰청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서도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밤샘조사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보장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감찰조사의 결과는 피감찰자에 대한 징계, 고발 등 신분상 불이익과 연관되는 것이므로, 방어권 차원에서도 밤샘조사는 금지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들은 2008. 4. 15. 20:00경부터 익일 01:00 ~ 02:00경까지 진정인에게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 질문하는 방법 등으로 조사하였는데 주로 피진정인 1에 의해 진행되었고, 피진정인 2는 같은 날 02:00~03:00경부터 1시간 동안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2008. 4. 16. 진정인을 OO경찰청으로 출석하게 하여 23:50경부터 익일 05:10까지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1은 이 사건 관련 기사 내용이 워낙 좋지 않은 것이어서, 진정인 조사를 통해 조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언론에 대응할 필요가 있었고, 상부에 익일까지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므로 심야조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감찰조사 시에는 진정인이 관련 성폭행 사건을 이송하게 된 경위(성폭행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쉽터로 가도록 한 것,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준 것, 관련 성폭행 사건 용의자를 사건을 이송 받을 경찰서가 수배 중이었던 것, 사건을 이송 받을 경찰서에 수차례 통화하여 성폭행 사건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한 것 등)에 대한 설명을 믿지 아니하고 진정인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가 집중되었다. 또한 이 사건 관련 기사로 인해 경찰 전체가 부당한 평가를 받은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차원에서 정정보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반면, 진정인에 대한 감찰조사와 신분상 조치는 신속히 취해졌다.(검찰조사는 2008. 4. 15.~18.까지 연속되었고, 4. 21. 감찰 결과 인사부서 통보, 같은 달 22. 징계위원회 출석요구, 같은 달 24. 징계위원회 개최 및 징계의결). 이런 사실과 정황을 볼 때, 진정인에 대한 감찰조사는 이 사건 관련 기사에 대한 대외적 대응 보다는 진정인의 비위에 대한 조사와 처분 등 내부적 조치에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심야조사의 긴박한 필요성은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진정인에 대한 징계조치 등을 위해 이를 동안 연속해 밤을 새워 감찰조사를 해야만 할 긴급성이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한편, 피진정인 1은 2차 조사 시(2008. 4. 16. ~ 17.)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심야조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시간이 23:00경이고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간이 23:40경이어서 피진정인 1은 이미 심야조사를 계획하고 있었던 점, 진정인은 피감찰자로서 피진정인 1의 조사 요구에 쉽게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 진정인이 심야조사에 대해 이익을 제기한 점 등으로 볼 때, 진정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이상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2회에 걸쳐 밤샘조사를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서,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이러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피진정인들의 이와 같은 감찰조사 활동이 이들의 개인적인 결정이거나 업무행태이기 보다는 그들이 소속한 기관의 방침이거나 관리자의 지휘에 따른 관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향후 밤을 새워 감찰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어린 자녀를 동행하여 감찰조사에 임하도록 한 부분

1)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친권자가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그 자녀를 보호하는 활동은 인간으로서 안전과 도리를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2) 이 진정사건에서 진정인은 휴가를 얻어 어린 두 자녀(만 1, 3세)를 돌보고 있던 중, 감찰조사와 관련해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자녀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만한 시간을 부여받지 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서부경찰서로 출석하였다.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출석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한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으나 진정인의 주장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어린 두 자녀를 데리고 ○○경찰서로 출석하였고 동 자녀들은 차량 안 등에서 진정인의 동료 경찰관들에 의해 약 1시간 동안 보호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가.항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진정인에 대한 감찰조사가 어린 자녀를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약 1시간 정도의 여유를 주지 못할 정도로 긴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어린 자녀를 보호하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채 감찰조사에 응하도록 한 것은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취할 구제조치에 관하여 보건대, 향후 감찰 조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에 대한 교육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2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4

2010. 1. 11.자 09진인215결정 [용산 철거민 사망관련
과잉진압 및 부당수사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정○○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관련 소속 검사들에 대하여 심야조사 등 피의자 소환조사 시 준수하여야 할 헌법상의 원칙과 현행 준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2009. 1. 20. 수사개시 시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같은 해 3. 11. 구속 기소하기까지 서울구치소에 유치되어 있던 이들을 출석시켜 놓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심야조사를 하고, 총 25회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시간 구치감에 대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 피해자들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 그리고 이에 따라 변호인 및 가족 등 외부와 접견 및 교통이 상당한 정도로 제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검찰인권보호수사준칙」 제39조 및 제40조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수면권 및 휴식권)을 각 침해하였다고 판단

【2】 피진정인 수사 검사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였으며, 피의자신문조서 종료 후 이를 확인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진정인들의 주장 외에 그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진정부분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37조 제2항

【진 정 인】 안○○

【피 해 자】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진정인】 1. 김○○
2. 김○○
3. 신○○
4. 백○○
5. 박○○
6. 김○○
7. 이○○
8. 경찰특공대 제1, 2, 3, 5 제대장 등 현장투입 진압경찰관들 다수
9. 정○○
10. 조○○ 등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참여 검사들 다수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정○○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관련 소속 검사들에 대하여 심야조사 등 피의자 소환조사 시 준수 하여야 할 헌법상의 원칙과 현행 준칙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3)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9. 1. 20. 발생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동 사건 사망자 및 체포·연행되어 구속 및 불구속된 철거민 피해자들이 당시 강제진압에 투입된 피진정인 경찰지휘관과 경찰특공대원들, 그리고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특별수사본부의 피진정인 검사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권리구제 및 재발방지를 원한다.

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하여

1) 피진정인 김○○, 김○○, 신○○, 백○○, 경찰특공대장 등 진압지휘경찰관들은 2009. 1. 19. 농성 초기부터 철거민 등 피해자들과 이해당사자인 용산구청 및 조합 측과의 대화를 주선하는 등의 평화적인 조치를 적극 취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농성철수만을 종용하다가, 농성장에 접근하려는 경찰력에 대해 간간히 돌과 극소량의 화염병만을 던졌을 뿐 일반시민 및 상가에 위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커다란 사회혼란을 일으킨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 과장하여 법률적 근거도 없이 테러진압부대인 경찰특공대를 전격 투입하였다.

2) 경찰특공대가 1. 20. 새벽 남일당 건물에 진입하기 직전까지 철거용역들이 물대포를 쏘고 방화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는 데도 이를 방치하였으며, 진압시에는 적어도 피해자들에게 퇴로를 보장하거나 피해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세낙스(시너) 등 위험물질을 충분히 소진하게 한 후 안전하게 진압을 시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진압을 시도하였다.

3) 경찰특공대는 체포 연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천○○을 남일당 건물 4층 옥상 및 2층 호프집에서 구타하고, 피해자 김○○과 김○○을 같은 건물 4층 옥상에서 구타하였으며, 피해자 박○○을 망루 2층에서 구타하는 등 피해자들이 체포에 순응하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이미 체포되어 대기 중임에도 경찰봉 및 구둣발로 폭행하고 폭언을 하여 치료일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

4) 피진정인 김○○, 김○○, 신○○, 백○○, 박○○ 등 진압지휘경찰관들은 2009. 1. 20. 새벽 전격적으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진압을 시도하면서 철거민들이 시너(세낙스) 등 유류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방당국 및 진압경찰관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물 대포와 개인 분말 소화기 외에는 유류화재에 대한 실질적인 화재예방 소화대책을 세우지 아니하였고,

5) 같은 날 07:00경 1차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특공대가 가카스로 개인소화기를 이용 불을 진화하였고, 시너 등 다량의 유류물질이 망루현장에 있어 다시금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의 위해가 충분히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 없

이 곧바로 진압을 지시하여 2차 화재가 발생했으나 속수무책으로 물만 뿌려 망루 안에 있던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6) 당시 컨테이너와 계단을 이용해 위아래 퇴로 없이 양면작전을 개시하였던 관계로, 투신 등 위급행위가 예상되므로 남일당 건물 주변 및 동 건물 옥상 망루 주변에 투신방지 매트리스 및 그물망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진압작전을 강행하였고,

7) 철거민들이 화재발생으로 망루 4층에서 뛰어내리거나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매달려 있다가 다시 남일당 건물 아래로 떨어지는 등 다수의 부상자가 속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땅바닥에 장시간 방치하고 병원후송을 지연시켰다.

나. 검찰의 편파수사 및 부당수사에 대하여

1) 피진정인 정○○의 지휘를 받은 피진정인 조○○ 검사 등 수사담당검사들은 피해자들을 소환조사함에 있어 22:00경에서 24:00경을 넘어 여러 차례 야간 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강제로 심야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2) 특히 구속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통상 09:00경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소환하여 별 다른 조사 없이 22:00경에서 24:00경까지 검찰구치감에 장기간 조사대기 (일명 ‘불러뺨’)를 시켜 변호인 및 가족의 면회를 방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였으며,

3) 피진정인 정○○는 용산화재 철거민들의 피의사건을 조사하면서 피의자신문조사 시 피해자들이 경찰의 과잉진압부분에 대해 진술하거나 용역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하는 등으로 편파적으로 수사를 지휘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9(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제1차장검사 정○○)

2009. 1. 20. 용산 철거민 화재사건이 발생한 직후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를 지휘하면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수사를 하였고,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철저한 중립적 입장 견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실확정 및 법리판단”이라는 원칙 하에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피의자 조사 시 변호인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영상녹화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던 관계로 진정내용과 같이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이나 용역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진술을 의도적으로 조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축소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2) 피진정인 10(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소속 검사 조○○)

용산 철거민 화재사건 수사에 참여하였는데, 조사대상자가 100여명에 이르고 조사내용도 방대하여 일부 심야시간까지 조사가 진행된 경우도 있으나 당사자의 동의나 양해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심야조사를 강제한 사실은 없다. 구속된 피의자들을 구속기간 중 화재원인 등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피의자들에 대한 집중조사가 필요하였고, 수사 도중 피의자 상호간 진술의 모순 또는 참고인 진술과의 불일치 사례 등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피의자들을 수회 소환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진 경우는 있으나 제한된 구속기간 내에 수사를 마치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변호인 등의 면담요청이 있을 경우 전부 허용하였으며 변호인과 가족의 면회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다. 피해자들의 주장요지

1) 피해자 김○○

통상 낮에는 계속 대기하다 야간시간 때 조사를 많이 받았고, 아침에 조사를 받으러 나와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고 온 종일 구치감에서 기다리다가 심야시간대에 구치소로 그냥 돌아오곤 하였는데, 검사가 일부러 ‘불러뺨’을 하는 것 같았다.

2) 피해자 김○○

아침 09:30경 검찰에 가서 밤 22:00경이 지나 구치소로 돌아 온 적이 많았는데, 구치감에서의 대기시간이 12시간이라면 조사를 받은 시간은 많게는 1시간 적게는 30분 이내였다. 구치감에 있으면서 굉장히 초조하고 지루하였다.

3) 피해자 김○○은

처음 며칠은 조사를 받았으나 나머지 시간은 거의 대기수준으로 구치감 독방에 혼자 있었는데, 아무 것도 하는 일 없이 바보같이 혼자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몸무게가 약 5kg 정도나 빠졌고, 조사 당시 검사로부터 사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야간조사를 한다는 설명이나 안내를 받은 적이 없이 검사가 시키는 대로 조사를 받았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들에 대한 문답서, 진술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진정인 측 변호인이 제출한 공판기록, 피진정인 정○○, 조○○의 진술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제출한 공소장 및 수사기록, 서울구치소 및 서초경찰서의 출정기록 및 유치장수용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 사건의 배경 및 기초사실

1) 2009. 1. 19. 05:30경 용산 4구역 철거민 등 피해자들이 남일당 건물 옥상에 진입하여 망루를 짓고 농성을 시작하자, 이를 경찰이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

서 같은 달 20. 07:20경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철거민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당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9. 1. 20. 피진정인 정○○를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검사 17명, 수사관 24명)를 설치하고 철거민 농성자들에 대한 불법행위 및 경찰진압 과정상의 과실여부에 대하여 수사한바, 경찰의 과잉진압 등 위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하고, 입건된 피해자 등 철거민 27명 중 24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2009. 2. 8.부터 같은 해 3. 11.까지 각 기소(2009형제9439호 등 병합)하였고, 현재 위 기소된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되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2) 피진정인 정○○의 수사지휘를 받은 피진정인 조○○ 등 수사검사들은 2009. 1. 20. 17:00경부터 당시 남일당 현장에서 경찰특공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대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피의자조사를 개시하였고, 사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되지 아니한 피해자 이충연 등에 대하여는 2009. 1. 28. 체포하여 피의자조사를 개시하였다.

나. 검찰의 심야조사 및 장시간 조사대기에 대하여

1) 심야조사 관련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제출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의사건 수사기록 및 진정인 측 변호인이 제출한 공판기록에 의하면, 구속 기소된 철거민 피해자 중, 조○○, 김○○, 김○○, 김○○, 김○○은 2009. 1. 20. 07:30경 남일당 농성현장에서 체포되어 용산 및 동작경찰서 등에서 기초조사를 받다가 곧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같은 날 17:00경 신병이 인계되었다. 피진정인 검사 정○○은 피해자 김○○을 같은 날 17:14경부터 그 다음 날 00:15경까지, 피진정인 검사 이○○은 피해자 김○○를 같은 날 20:05경부터 그 다음날 02:30경까지, 피진정인 검사 박○○은 피해자 김○○을 같은 날 17:10경부터 그 다음날 01:10경까지 각 심야시간대에 이르기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으나, 위 피진정

인 이○○이 피해자 김○○에 대해서만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피진정인들은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이후 위 피해자들은 같은 달 21. 새벽부터는 최초 체포되어 유치되었던 서울시내 일원 각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었다가 재차 소환되어 같은 날 09:10경부터 순차적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았으며, 같은 날 16:55경 서울서초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같은 달 22. 20:35경 출감되어 같은 날 21:20경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는 2009. 1. 20. 사건현장에서 체포되어 불구속 기소된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체포당일 자정 무렵인 늦은 시간까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들 중, 피해자 이○○의 경우에는 피진정인 검사 변○○이 같은 날 19:46경부터 다음 날 00:35경까지 조사하면서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았고, 피해자 배○○의 경우에도 피진정인 검사 김○○이 같은 날 17:57경부터 다음 날 00:53경까지 조사하면서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이후 새벽시간에 위 피해자들은 최초 체포되어 유치되었던 각 경찰서로 유치되었다가 재차 검찰청에 소환되어 2009. 1. 21. 15:00경까지 조사를 받다가 서울서초경찰서에 유치되었고, 같은 달 22. 오전에 관련 혐의가 경미하므로 불구속 지휘를 받아 순차적으로 석방되었다.

다) 이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피진정인 검사들은 구속된 피해자 김○○와 김○○에 대하여 2009. 2. 8. 기소하기까지 소환 당일 야간시간대인 22:00경부터 자정 무렵까지 3차례에 걸쳐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특히 피진정인 검사 김○○은 피해자 김○○에 대해 2009. 1. 23. 22:05경부터 그 다음 날 00:15경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며, 한편 피진정인 검사 강○○은 피해자 이○○에 대해 2009. 1. 28. 21:20경부터 00:35경까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바, 관련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장시간 조사대기(일명 ‘불러뺑’)에 대하여

가) 서울구치소는 통상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 구치소를 출발

(오전출발 09:00 도착 09:40, 오후출발 13:00 도착 13:40)하여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도착해 구치감 거실에 피의자를 대기시키고, 검사의 조사소환 연락이 오면 해당 검사실로 호송하여 입회하고 있으며, 조사종료 후에는 구치감 거실로 환소하여 대기하다가 소환검사실로부터 조사종료 통보를 받고 피의자들을 구치소로 귀소하고 있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제출한 구속 기소된 피해자 조○○, 김○○, 김○○, 김○○, 김○○에 대한 각 수사기록, 서울서초경찰서의 유치장 입출감기록, 서울구치소가 제출한 동인들에 대한 출정기록 등에 의하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2009. 1. 21. 발부된 이후, 피진정인 검사 강○○와 같은 김○○이 피해자 김○○을 같은 날 23. 09:00경 소환하여 같은 날 19:00경 조사할 때까지 서울구치소로의 이동시간을 제외한 약 9시간 동안 구치감에서 대기시킨 사실, 피진정인 검사 김○○이 피해자 조○○을 같은 날 13:00경 소환하여 같은 날 19:40경 조사할 때까지 서울구치소로의 이동시간을 제외한 약 7시간 40분 동안 구치감에서 대기시킨 사실, 그리고 피진정인 검사 조○○이 피해자 김○○을 같은 날 09:00경 소환하였으나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그 다음 날인 26. 00:05경까지 서울구치소로의 이동시간을 제외한 약 14시간 동안 구치감에서 대기시키다가 구치소로 돌려보낸 사실, 피해자 김○○의 경우에도 같은 날 13:00경 소환하였으나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같은 날 17:30경까지 서울구치소로의 이동시간을 제외한 약 5시간 동안 구치감에서 대기시키다가 구치소로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

다) 피진정인 검사 조○○은 2009. 1. 24. 09:00경 피해자 조○○, 김○○을 소환하고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피진정인 검사 김○○이 함께 소환된 피해자 김○○에 대해 같은 날 23:10경까지 조사를 마칠 때까지 구치감에 대기시키다가 그 다음 날인 25. 00:30경 함께 구치소로 돌려보낸 사실이 있고, 또한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 25. 09:00경 피해자 김○○, 김○○, 김○○, 김○○을 소환하고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구치감에 마냥 대기시키고, 피진정인 검사 김○○은 같은 시간에 소환된 피해자 조○○에 대해 같은 날 16:30경 조사를 개시하여 같은 날 18:15경 조사를 마치고도 구치감에 장시간 대기시키다

가 위 피해자들과 함께 그 다음 날인 26. 00:05경 구치소에 돌아가도록 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09. 2. 3.부터 2. 8일까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반복하여 피해자들을 모두 소환하여 놓고도 일부 피해자만 조사하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대기시키다 그냥 구치소로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구체적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라) 2009. 1. 28. 체포된 피해자 이○○의 경우에도 피진정인 조○○은 2009. 2. 4. 09:00경 소환하여 같은 날 17:40경 조사할 때까지 서울구치소로의 이동시간을 제외한 약 9시간 40분 동안 구치감에서 대기시킨 사실, 또한 같은 달 5.과 6. 연속하여 09:00경 소환하여 놓고도 아무런 피의자조사를 하지 않고 구치감에 마냥 대기시키다가 저녁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구치소로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

3) 진술왜곡 등 편파수사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제출한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진정인들은 철거민 피해자들을 조사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피의자의 권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행사여부를 물어 확인한 사실, 또한 조서말미에 피해자들의 추가진술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여 수정 변경하도록 한 사실, 그리고 조사시작 및 조사종료 시각, 조서열람 및 종료시각,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 및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수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기록에 피해자들이 별다른 이의를 기재하거나 제기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

나) 피해자들의 검찰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차○○, 장○○, 강○○, 김○○ 변호사 등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입회하였고, 입회한 변호인들이 피진정인들에 대한 신문 및 조서 작성 시 이의를 제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면, 이를 관련 피진정인 검사들이 허용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경찰지휘부 및 경찰특공대 관계자들, 그리고 철거용역직원들에 대하여도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다.

다. 경찰의 과잉진압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철거민 사망자들의 배우자 5명)들이 2009. 2.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 등 경찰지휘부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고소(2009형제15056)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 사건 진정요지 중, 경찰의 안전보호조치 의무위반 등을 포함하는 과잉진압 부분의 경우, 위 피해자들의 고소사건 요지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수사가 개시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 12. 9.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하였다.

5. 판단

가. 심야조사에 대하여

1) 우리 「헌법」 제10조는 자연환경에 순응하면서 밤과 낮을 구분하여 생활하는 인간에게 있어 필수불가결한 수면권과 휴식권을 소위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수면 및 휴식시간이 보장되지 않는 심야조사는 그 자체가 인간의 기본적 생활 및 생존방식을 거스르는 것으로써 사실상 하나의 가혹행위가 될 수 있고 밤을 새워 조사를 하는 동안 조사자는 물론 피조사자의 심신에 고통과 피로감을 줄 가능성이 높아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거나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고는 금지하는 것이 기본권 보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차원에서 마련된 법무부의 「검찰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심야조사 금지)에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하고,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 자정 이후에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의자

에 대한 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금지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나. 1)항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장 검사 정○○와 그 지휘를 받은 소속 피진정인 수사검사들 중, 검사 정○○, 박○○, 변○○, 김○○, 김○○은 2009. 1. 20.부터 같은 달 21. 자정 넘어 각 피해자 김○○, 김○○, 이○○, 배○○에 대하여 심야조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은 조사행위는 당시 위 관련 피해자들의 체포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의 필요성 등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지만, 「검찰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당사자의 동의 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야조사를 실행하였다고 판단되고, 또한 피진정인 검사 김○○은 2009. 1. 23. 피해자 김○○에 대해 오전 시간대에 소환하여 장시간 조사대기를 시키다가 야간 시간대인 22:05경부터 조사를 개시하여 그 다음날 00:15경까지 심야조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위 피진정인의 행위는 이미 해당 피해자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있었고, 조사개시 시점으로 볼 때 당시 심야조사를 했어야 할 만큼 조사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의적인 심야조사를 금지한 위 준칙 제40조의 동의 및 허가절차를 거쳤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위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검찰인권보호수사준칙」 제40조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수면권 및 휴식권)을 각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장시간 조사대기에 대하여

1) 수사기관이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어 동인을 「형사소송법」 제75조 및 제201조에 따른 구속영장에 정하여진 구금장소로부터 인치하여 임시장소(검찰청의 교도관실 또는 구치감)에서 구치하여 놓는 조치는 구속영장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구속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명시된

구금장소가 아닌 검찰청 내의 구치감에 인치하여 장기간 대기시켜 놓는 행위는 수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구속영장제도의 본질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속된 피의자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구치감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경우 미결구금자로서 변호인 및 가족 등 외부와의 접견 및 교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도 없으며 경험치상 장시간의 조사대기 중에 심신이 불안정하고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을 때에는 다른 정신상의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많다.

2) 수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한 구속 피의자라고 하여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병을 절대적으로 지배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피의자를 소환 및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의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소환 및 조사행위는 수사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헌법」 제12조 제1항(적법절차) 및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의 정신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06진인297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참조).

3) 이러한 차원에서 마련된 법무부의 「검찰인권보호수사준칙」 제39조(출석요구)에 의하면, 검사는 구속된 피의자 등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건관계인(이하 “구속피의자 등”이라 한다)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구속피의자 등을 불필요하게 소환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구속피의자 등과 대질조사를 하여야 할 사람이 있거나 자료를 보면서 조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사받을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나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속피의자 등을 소환하도록 하고, 소환한 구속 피의자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시간 구치감에 대기시키거나 조사를 하지 않고 구금시설로 되돌려 보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인정사실 나. 2)항의 의하면, 피진정인 검사 조○○ 등 다수의 수사참여 검사들은 피해자 조○○, 김○○, 김○○, 김○○, 김○○, 이○○을 2009. 1. 20. 수사개시 시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같은 해 3. 11. 구속 기소하기까지 서울구치소에 유치되어 있던 이들을 출석시켜 놓고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려

총 25회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장시간 구치감에 대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동 피해자들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거나 이해를 구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 그리고 이에 따라 변호인 및 가족 등 외부와 접견 및 교통이 상당한 정도로 제약된 사실이 인정된다.

5) 그러므로, 위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검찰인권보호수사준칙」 제39조와 과잉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수면권 및 휴식권)을 각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진술왜곡 등 편파수사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은 당시 수사 검사들이 경찰의 과잉진압 및 용역들의 폭력행위에 대하여 진술하면 이를 조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진술을 왜곡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피진정인 수사 검사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였으며, 피의자 신문조사 종료 후 이를 확인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진정인들의 주장 외에 그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위 진정부분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의 구제조치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소속 피진정인들이 담당한 피의사건은 당시 관련 조사대상자들이 100여명에 이르는 등 수사범위가 넓고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이 있었고, 오랜 수사관행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개별 피진정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위 검찰청의 차장검사로서 「검찰 인권보호수사준칙」 상의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행할 위치에 있으며 이 사건을 총괄 지휘한 피진정인 정○○에게 지휘책임을 물어 소속 기관장인 검찰총장에게 위 피진정인을 주의조치 하도록 하고, 이하 관련 피진정인 수사참여 검사들에 대하여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심야조사 등 피의자 소환조사 시 준수하여야 할 헌법상의 원칙과 현행 준칙 등의 관련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이미 관련 수사기관에 이송하였으므로, 별도의 결정을 하지 않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중 심야조사 및 장기간 조사대기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정○○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소속 검사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중 진술왜곡 등 편파수사 부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1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별지 1】 피해자

1. 사망자(5명)

이○○, 이○○, 양○○, 윤○○, 한○○, 김○○

2. 구속자(6명)

조○○, 김○○, 김○○, 김○○, 김○○, 이○○

3. 연행자(21명)

이○○, 김○○, 정○○, 박○○, 김○○, 장○○, 김○○, 이○○, 이○○, 김○○, 손○○, 박○○, 이○○, 지○○, 정○○, 천○○, 유○○, 김○○, 강○○, 배○○, 박○○

【별지 2】 검찰의 철거민 구속피해자 소환조사 현황(1. 20.~2. 13.)

대상자	조사내용	출소 시간	조사 개시	조사 종료	귀소시간	조사검사(변)	소환 검사실
1. 20 체포 1. 22. 구속 2. 8. 기소	피신1회	1. 20.	17:35	21:40		김○○(516) 차○○(변)	
	피신2회	1. 21.	11:10	16:15		김○○(516)	
	피신3회	1. 23. 13:00	19:40	20:15	23:35	김○○(516)	424
		1. 24. 09:00			1. 25. 00:30		424 조사대기
	피신4회	1. 25. 09:00	16:30	18:15	1. 26. 00:05	김○○(516)	432
		1. 30. 10:30			23:37	적부심	501 법원
		2. 3. 09:00			23:40		424 조사대기
	피신5회	2. 4. 09:00	11:00	11:32	21:55	김○○(516)	424
		2. 5. 09:00			19:45		424 조사대기
		2. 6. 09:00			22:45		424 조사대기
김 ○ ○	피신1회	1. 20.	17:14	18:50		정○○(704)	
	피신2회	1. 20.	20:23	21:15		정○○(704)	

대상자	조사내용	출소 시간	조사 개시	조사 종료	귀소시간	조사검사(변)	소환 검사실
상동	피신3회	1. 20.	23:25	00:15	.	정○○(704)	심야 미동의
	피신4회	1. 21.	13:20	14:25		정○○(704) 장○○(변)	
		1. 24. 09:00			1. 25. 00:30		424 조사대기
		1. 25. 09:00			1. 26. 00:05		432 조사대기
		1. 30. 10:30			23:37	적부심	501
		2. 3. 09:00			23:40		424 조사대기
	피신5회	2. 4. 09:00	15:20	16:12	21:55	김○○(516)	424
		2. 5. 09:00			19:45		424 조사대기
		2. 6. 09:00			22:45		424 조사대기
김 ○ ○ 상동	피신1회	1. 20.	17:10	21:00		김○○ (405호)	
	피신2회	1. 20.	23:00	23:55		상동	
	피신3회	1. 21.	09:45	11:30		상동	
	피신4회	1. 21.	20:23	21:20		조○○(424) 강○○ 변호인	
		1. 23. 09:00			23:35		424 조사대기
	피신5회	1. 24. 09:00	10:50	16:23	1. 25. 00:30	조○○(424) 장○○(변) 중식	
		1. 25. 09:00			1. 26. 00:05		432 조사대기
	피신6회	1. 27. 13:45	20:23	21:20	22:20	김○○(516) 강○○(변) 중식	432
		1. 30. 10:30			23:37	적부심	501
	피신6회	2. 3. 09:00	17:10	20:00	23:40	이○○(524)	424
	피신7회	2. 4. 09:00	14:30	15:09	21:55	김○○(516)	424
		2. 5.			19:45		424

대상자	조사내용	출소 시간	조사 개시	조사 종료	귀소시간	조사검사(변)	소환 검사실
		09:00					조사대기
	피신7회	2. 6. 09:00	16:00	17:35	22:45	조○○(424 진술녹화, 장○○	424
김 ○ ○ 상동	피신1회	1. 20.	20:05	02:30	1. 21.	이○○(533) 차○○(변)	심야동의
	피신2회	1. 21.	11:10	18:40		이○○(524) 차○○, 중식	
	피신3회	1. 21.	20:00	23:05		조○○(424)	
		1. 23. 13:00			17:30		424 조사대기
	피신3회	1. 24. 09:00	14:40	15:58		김○○(504) 차○○	424
	피신4회	1. 24. 09:00	16:59	22:40	1. 25. 00:30	조○○(424) 차○○	심야 미동의
		1. 25. 09:00			1. 26. 00:05		432 조사대기
	피신5회	1. 27. 16:11	16:45	19:30	20:05	조○○(424) 차○○	432
		1. 30. 10:30			23:37	적부심 후 조사	407
	피신6회	2. 3. 09:00	16:40	20:27	23:40	김○○(516) 장○○, 석식	424
		2. 4. 09:00			21:55		424 조사대기
		2. 5. 09:00			19:45		424 조사대기
		2. 6. 09:00			22:45		424 조사대기
김 ○ ○ 상동	피신1회	1. 20.	17:10	22:02		박○○(843)	
	피신2회	1. 20.	14:30	01:10	1. 21.	박○○(843)	심야 미동의
	피신2회	1. 21.	13:00	15:15		조○○(424)	
	피신3회	1. 23. 09:00	22:05	00:15	1. 24. 01:00	김○○(504)	심야 미동의
	피신4회	1. 23.	19:00	22:07		강○○○(426)	424
	피신5회	1. 24. 09:00	13:45	14:21		김○○(504)	424
	피신6회	1. 24.	20:30	23:10	1. 25. 00:30	김○○(504)	

대상자	조사내용	출소 시간	조사 개시	조사 종료	귀소시간	조사검사(변)	소환 검사실
		1. 25. 09:00			1. 26. 00:05		432 조사대기
		1. 30. 10:30			23:37	적부심	501
	피신7회	2. 3. 09:00	14:20	16:45	23:40	조○○(424)	424
	피신8회	2. 4. 09:00	16:30	17:31	21:55	김○○(516)	424
		2. 5. 09:00			19:45		424 조사대기
		2. 6. 09:00			22:45		424 조사대기
		2. 13. 09:00			19:55		430 조사대기
이 ○ ○ 1. 28. 체포 1. 30. 구속 2. 16. 기소	피신1회	1. 28.	13:30	19:50		조○○(424) 김○○(변)	
	피신2회	1. 28.	21:20	00:35		강○○○(426) 김○○(변)	심야동의
	피신3회	1. 29.	10:48	11:44		강○○○(426) 김○○(변)	
	피신4회	1. 29.	13:21	16:25		강○○○(426) 김○○(변)	
	피신5회	1. 29.	17:42	19:07		김○○(424)	
	피신6회	1. 29.	21:00	21:32		조○○(424) 김○○(변)	
	피신7회	1. 30.	10:20	14:25		김○○(504)	
	피신8회	1. 31.	14:40	15:50		김○○(504)	
	피신9회	2. 3. 09:00	10:30	11:05	23:40	조○○(424)	424
	피신10회	2. 4. 09:00	17:40	18:30	21:55	김○○(516)	424
		2. 5. 09:00			19:45		424 조사대기
		2. 6. 09:00			22:45		424 조사대기
	피신11회	2. 11. 13:00	14:00	19:50	22:50	구○○(406)	406

5

2010. 6. 15.자 10직인1·10진정2420·10진인2543(병합)결정 [경찰의 고문관련 직권조사]

1. 검찰총장에게, 경찰관 연번 1, 2, 3, 4, 5(별지 1)에 대하여 피해자 연번(별지 2) 1, 2, 3, 4, 5, 6, 7, 8에 대한 고문 및 폭행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피해자 연번(별지 2) 9 ~ 피해자 연번 22에 대한 고문 혐의로 수사 의뢰
2. 경찰청장에게, 피해자 연번(별지 2) 1 ~ 피해자 연번 22에 대한 고문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그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조사과정에서 고문행위가 있었다는 다수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도관련 혐의로 체포된 이모씨 등 22명에게 여죄 및 공범관계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입에 두루마리 휴지 또는 수건 등 재갈을 물린 상태에서(일부는 스카치테이프를 얼굴에 감고) 피해자들을 엮어뜨려 등을 밟고 머리를 방석에 눌러가며 날개꺠기를 하는 등 고문행위가 행해졌다고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경찰관 연번 1, 2, 3, 4, 5(별지 1)에 대하여 피해자 연번(별지 2) 1, 2, 3, 4, 5, 6, 7, 8에 대한 고문 및 폭행의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피해자 연번(별지 2) 9 ~ 피해자 연번 22에 대한 고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다.

2. 경찰청장에게

피해자 연번(별지 2) 1 ~ 피해자 연번 22에 대한 고문 및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그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직권조사 배경

1. 최근 ○○경찰서 형사와 강력○팀 경찰 조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라며 입에 재갈(수건 또는 휴지)을 물리고 투명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후 폭행 및 고문을 당하였다는 다수의 진정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접수되었다. 이에 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정인들이 고문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찰서 형사와 강력○팀 사무실 벽면 옆 1미터 부분이 CC-TV 사각지대이며, 각각 다른 진정사건에 대하여 진정인들이 당한 고문장소, 가해자, 양태가 유사하고, 고문을 당할 때 바닥에 깔려 있었다는 의사 방식의 색깔과 개수, 모양 등에 대한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치하여, ○○경찰서 형사와 강력○팀 소속의 경찰관들(이하 “가해자”라고 한다)이 여죄추궁 관련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을 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2. 그러나 가해자들이 고문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서는 강력○팀 사무실 CC-TV에 대하여 2010. 3. 9. 경부터 녹화되지 않았다고 답변하고 있고, 고문피해 사실을 인지한 ○○○○지방검찰청이 해당 서버를 압수한 상황으로, 고문여부를 확인할 직접적인 증거의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초래되었다.

3. 이에 따라, 관련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진정사건 외에 가해자들이 그동안 체포 또는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다른 피의자들(피해자 명단 : 별지 2)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2010. 5. 20.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직권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II. 당사자의 주장요지

1. 피해자들의 주장요지(별지 3)

2. 가해자들의 주장요지(○○경찰서 형사와 강력0팀)

2009. 3. 28. ○○ ○○구 ○○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임○, 장○○, 원○○을 체포할 때, 동인들이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엎드려 있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경찰봉으로 피해자 장○○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 임○의 허벅지를 발로 1~2회 걷어 찬 사실은 있으나 이외 조사 중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2009. 3. 9. 피해자 이○○, 김○○, 양○○를 체포하여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어 거짓 진술을 할 수 없도록 분리 신문을 하였으며, 사무실에서 피의자 김○○을 데리고 들어가 사무실 원탁책상 안쪽에 앉도록 한 후에 범행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1회 소리치며 회유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 중 일체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다. 2009. 4월경부터 강력0팀장 등 현 팀원들이 구성된 후, 현재까지 다수의 ○○혐의 형사피의자들을 구속 송치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거나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Ⅲ. 인정사실 및 판단

1. 피해자 1, 2, 3, 4, 5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가해자들은 2010. 3. 17. 14:30 ○○ ○○구 ○○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5(진○○) 등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하던 중, 2010. 03. 26. 05:00 ○○ ○○구 ○○동 소재 피해자 5(진○○)의 집 앞에서 동인을 특수 ○○혐의로 체포하였고, 2010. 3. 28. 15:00 ○○ ○○구 ○○동 소재 ‘○○ ○○. 2’ 모텔에서 피해자 1(임○), 피해자 2(장○○), 참고인 원○○을 각 ○○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였다. 또한 2010. 3. 30. 15:00 피해자 1을 면회하려고 ○○경찰서 강력0팀을 방문하였던 피해자 3(전○○)을 동 사무실에서 ○○혐의로 체포하였으며, 이후 가해자 4, 5는 2010. 3. 31.경 ○○ ○○○구 ○○동 소재 피해자 4(정○○)의 자택에서 동인을 ○○혐의로 체포하였고, 이들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 등 보안조사를 하던 중, ○○○○지방검찰청의 긴급 수사지휘를 받아 2010. 4. 3. 09:30 모두 ○○○○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2) 위 피해자 중 피해자 1, 2, 3은 2010. 3. 31. 위원회에 수사담당 형사들에게 고문피해를 당하였다며 진정을 각 제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1이 변호인 김○○에게 접견 중 고문피해 사실을 밝히자, 동 변호인 김○○이 ○○○○지방검찰청 권○○ 검사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이에 동 검찰청 장○○ 검사는 2010. 4. 2. ○○경찰서 유치장 점검을 나와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였다. ○○○○지방검찰청 검사 권○○은 ○○경찰서에 신속히 동 피해자들을 2010. 4. 3. 검찰로 송치할 것을 지휘하였고, 가해자들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하여 내사를 실시하면서 같은 달 4. 7. ○○경찰서 CC-TV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가해자들을 소환하고, 주변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있다.

3) 가해자들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체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가 저항하였던 관계로, 경찰봉 등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조사 중 일체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위의 피해 진술과 같이 체포현장에서의 구타 등 가혹행위를 물론, 강력○팀 사무실에서 본죄의 자백, 공범관계 및 여죄를 추궁하면서 가해자 1의 주도하에 이하 가해자로부터 뒤로 채운 수갑을 재껴 올리는 일명 ‘날개꺾기’를 당하고, 이 과정에서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관련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구치소에서 작성한 2010. 4. 3.일자 피해자들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피해자 2(장○○)와 관련하여 “2010. 3. 28. ○○동 모텔 검거 당시 긴 물체로 엉덩이 부분을 맞고, 손발로(경찰관) 온 몸을 구타당함. 뒤로 수갑을 찬 채로 매트리스 위로 눌렀다(양 어깨 통증).”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1(임○)과 관련하여 “2010. 3. 29. ○○경찰서 강력○팀 조사실에서 좌 대퇴부,

우 눈, 허리를 손발로 수회에 걸쳐 맞았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비롯하여 온 몸이 아프고 통증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3(전OO)과 관련하여 “2010. 3. 30. OO경찰서 강력O팀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주먹으로 목 5회 등과 옆구리 10회 구타. 뒤 수갑 찬 채 팔 뒤로 꺾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특히 피해자 5(진OO)의 경우, OOO구치소 수용 중 팔꿈치 골절 등의 증상으로 수개월 동안 통증을 앓다가 2010. 5. 6. OOOO병원에서 X-ray 등 진료를 받고, 진통제 등을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

둘째, 당시 함께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참고인 원OO에 대한 위원회 조사관의 문답서에 의하면, “2010. 3. 29. 17:00 강력O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1(임O)을 보았는데, 동인이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후 같은 날 21:00 피해자 1이 유치장에 입감되었을 때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형사들에게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으며, 유치장 거실에 들어간 직후 울면서 옷을 벗어 멍 자국을 보여주며 고문을 받았다고 도움을 호소하였다. 유치인보호관들이 나에게 피해자 1의 거실에 들어가 파스(이는 붙이는 ‘OO파스’로 피해자 1의 친구 구OO이 구입하여 유치장에 넣어 준 것임)를 붙여주도록 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 1의 등, 허벅지, 팔 등에 출혈 및 멍 자국을 다수 보았으며, 이러한 고문 피해에 대하여 유치인보호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010. 4. 2. 여자검사가 유치장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 1 등이 고문피해 사실을 동 여자검사에게 호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셋째, 당시 유치장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참고인 김OO(OO지방경찰청 O기동단 소속 의경대원)이 위원회 조사관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 1(임O), 2(장OO), 3(전OO) 등으로부터 담당형사들이 수갑을 채우고, 입에 테이프를 감은 채 CC-TV가 촬영되지 않은 곳에서 팔을 꺾고, 폭행하는 등의 고문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1의 경우에는 2010. 3. 29. 조사 출감되었다가 입감될 때에는 스스로 걷지 못해 형사들에게 부축을 받고 울면서 유치장에 들어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2의 눈의 실핏줄이 터진 충혈상태, 피해자 3의 팔에 난 피 멍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이와 같은 고문피해에 대해

여 유치인보호관들에게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가해자들인 담당형사에게 말하라고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넷째, 당시 유치장에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참고인 임OO(남, 40세), 고OO(남, 42세), 박OO(남, 40세) 등에 대한 위원회 조사관의 전화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동인들은 모두 당시 유치장에 입감되었던 피해자들이 “경찰에게 맞아서 아프다. 파스를 달라.”라고 유치장 근무경찰관들에게 호소하며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위 참고인 임OO은 “당시 피해자 1(임O)이 아프다고 하니까(유치장 근무)경찰관이 거실 문을 열어 원OO에게 파스를 주고 피해자 1(임O)의 거실로 들어가 파스를 붙여주도록 하였으며, 특이하게도 피해자 1(임O) 등 공범자들이 유치장에 있을 때 유치장 근무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고 서로 떠들고 소란을 피우다가도 조사출감을 위해 조사경찰관(담당형사)이 유치장에 들어오면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는 등 주눅이 들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다섯째, 변호사인 참고인 유OO은 2010. 3. 29. 18:00 강력O팀을 방문하여 피해자 1(임O)을 접견하였을 때, 피해자 1(임O)이 “형사들에게 맞아서 아프다.”라는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변호사인 참고인 김OO은 2010. 3. 31. OO경찰서 유치장에서 피해자 1(임O)을 접견하였을 때, 피해자 1(임O)로부터 가해자들로부터 고문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1(임O)의 발목 윗부분 등에 피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OOOO지방검찰청 615호 권OO 검사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여섯째, OO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에 의하면, 2010. 3. 31. 17:25 피해자 3(전OO)이 담당형사에게 부당한 행위(구타 등)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18:45경 피해자 2(장OO)가, 19:50에는 피해자 1(임O)이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일곱째, 위원회 조사관의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 및 상황실(CC-TV관련) 실지조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고문에 사용되었다는 원탁 책상 및 갈색계통의 소파 방식 4개 등이 있고, 고문을 당하였다는 벽 면

쪽 장소는 CC-TV 카메라가 원인불상의 이유로 상향 조정되어 있어 촬영되지 않은 사각지대이고, 이 또한 제대로 녹화되지 않는 등 관리가 부실하였다.

〈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 촬영 사진 〉



※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 탁자
사진(촬영일 : 2010. 05. 11.
촬영 : 위원회 서OO 조사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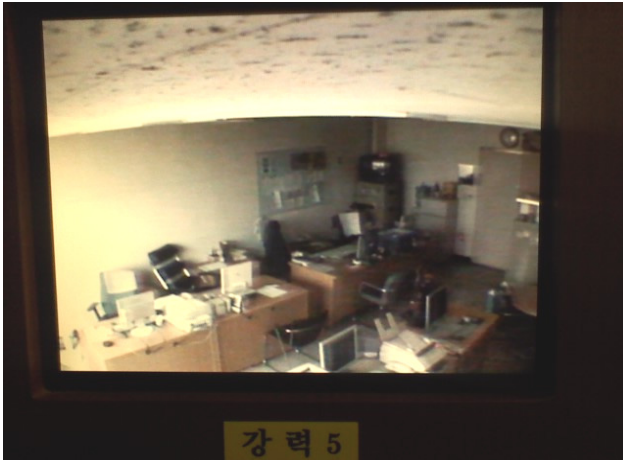
※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한
장소라고 주장하는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 내의
매트리스가 깔려 있던 자리
사진(촬영일 : 2010. 05. 11.
촬영 : 위원회 서OO조사관)



※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할 때 매트리스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에 있는 3인용 소파와 의자 방석 사진(촬영일 : 2010. 05. 27. 촬영 : 위원회 서OO 조사관)



※ OO경찰서 상황실에서 촬영한 OO경찰서 강력O팀 모니터 화면 사진
(촬영일 : 2010. 05. 11. 촬영 : 위원회 서OO 조사관)



↳옆(벽면)

습O팀장 자리 위 천정 CCTV 습고문장소라는 주장되는 곳

⇒ 화면의 1/3을 천정이 차지하고 있으며 카메라 각도가 상향으로 조정되어 있음.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임

여덟째, 유치인보호관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관련 규정에 의거, 피의자의 입·출감 및 유치 시 피의자의 신체상태, 유치인의 민원제기 등 유치상황에 대하여 체포구속인명부,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수진부 및 의약품 수불대장 등에 이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하나, 당시 작성된 관련 문서에 의하면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상에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 외에 피해자들의 신체상태, 고문피해에 대한 민원제기 상황, 파스 등 의약품 사용내역 등 관련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2)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통상 수사과정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및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경찰청장이 정한 CC-TV의 설치목적 및 운영방침(〇〇지방경찰청의 경우, 2005. 5. 수립한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3개월 보존 방침)에 비추어 고문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다(위원회의 제출요구에 〇〇경찰서는 녹화된 CC-TV 파일이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고, 검찰에서 압수한 CC-TV 서버에도 상당일자 분량이 녹화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검찰 측 및 OO경찰서 CC-TV 유지보수업체 관계자의 진술). 또한 유치인보호 관근무일지 등의 자료에 신체상의 피해 등에 대하여 적시된 자료가 없어 이를 명확히 확인할 직접적인 자료를 발견 할 수 없으나, 이는 OO경찰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비하여 관련 피해자들의 고문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고문 피해 직후 전경대원을 비롯한 유치장 동료 수용자들의 피해 정황에 대한 목격 진술, 피해자 1(임O)의 변호인들이 접견 시 확인한 피해상황, 이후 검찰 송치 시 OOO구치소의 신체 상태에 대한 확인서의 기재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같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여좌 및 공범관계에 대한 자백을 받아 낼 목적으로 수갑을 뒤로 채우고, 강력O팀 사무실 또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옥탑방 등에서 포승으로 의자 묶거나 입에 수건 또는 휴지 등을 말아 넣고, 소파의 매트리스를 벽 면 쪽에 깔아 그 위에 엎어뜨린 다음 머리와 다리를 무릎 등으로 조여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위로 수갑 찬 양팔을 치켜 올려 고통을 가하고, 소리를 지르면 허벅지, 등, 허리 부위를 마구 주먹과 발로 밟고 구타하는 등의 고문을 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은 가해자들의 관련 피해자들의 대한 고문행위는 「형법」 제125조에 서 정한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의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에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 6, 7, 8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가해자들은 관내 첩보활동 중 제보자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 6(이OO) 등의

범행사실을 인지하여 내사를 하던 중, 2009. 4. 10. 22:30 OO OOO구 OO동 일원에서 발생한 OO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6(이OO) 등을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2010. 03. 09. 16:00 피해자 6(이OO)의 공범 인 피해자 8(양OO)을 체포하고, OO OOO구 OO동 소재 피해자 6(이OO)의 집 앞에서 공범 피해자 7(김OO)을 특수OO혐의로 체포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2010. 03. 12.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여죄 등을 수사하여, 2010. 03. 18. OOOO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2) 피해자 6(이OO)은 2010. 05. 7., 피해자 7(김OO)은 2010. 05. 13.에 가해자들로부터 고문피해를 당하였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들의 국선변호인 이OO에게 확인한 결과, 동인은 2010. 04. 01. OOO구치소에서 피해자 6(이OO)을 최초로 접견할 당시 고문피해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3) 가해자들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도주를 차단하기 위하여 체포 당시부터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로 경찰서로 출발하였고, 경찰서에 도착하여 피해자들이 서로 말을 맞추어 거짓 진술을 할 수 없도록 분리 신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가해자들은 OO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피해자 7(김OO)을 데리고 들어가 사무실 원탁책상 안쪽에 앉도록 한 후에 범행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회유한 사실은 있으나 조사 중 일체의 폭행 등 가혹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 8(양OO)은 연행과정에서 가해자들로부터 차량 안에서 폭행을 당하였고, 피해자 7(김OO)과 피해자 6(이OO)은 강력O팀 사무실에서 본죄의 자백 및 여죄를 추궁당하면서 가해자 1의 주도하에 이하 가해자들로부터 뒤로 채운 수갑을 재껴 올리는 일명 ‘날개꺾기’를 당하고, 이 과정에서 폭언,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관련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뒷받침하는 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OO경찰서 유치장 의약품 수불대장에 의하면, 2010. 03. 13. 07:40

피해자 6(이OO), 7(김OO), 8(양OO)이 어깨 손목 등에 통증이 있어 에어파스 1통 지급한 사실, 2010. 03. 13. 18:05 피해자 6(이OO)이 손목 등에 통증이 있어 에어파스 1통 지급한 사실, 피해자 7(김OO)의 경우에는 2010. 03. 09. 23:00부터 2010. 03. 12. 24:10까지 치통으로 6회에 걸쳐 두통약 7정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둘째, OO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에 의하면, “2010. 3. 11. 12:10 유치인 양OO(OO) 무릎 통증으로 인한 모포요청으로 모포 1개 제공함”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현인서’에 의하면, 피해자 6(이OO)의 경우에는 “2010. 03. 18. 08:51 구치소 입감 시, 양쪽 팔 관절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7(김OO)의 경우에는 “2010. 3. 18. 08:51 구치소 입감 시 양쪽어깨 통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8(양OO)의 경우에는 최초 유치장 입감 시에는 “2010. 3. 10. 01:40 우측팔과 다리에 통증, 그 외 특이사항 없음.”으로 기록되어 있고, OOO구치소 입감 시에는 “2010. 03. 18. 08:51 오른쪽 팔, 다리 마비증세.”라고 기재된 사실이 있다.

셋째, 피해자 6(이OO)의 국선변호인 이OO에 의하면, 2010. 4. 1. 피해자를 처음 구치소에서 대면할 때 고문피해 진술을 청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넷째, 위원회 조사관의 2010. 6. 7. OOO구치소 실지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6(이OO)이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이후인 2010. 5. 20. 가해자 1이 면회를 와서는 “잘 해 주었는데 왜 그러느냐?”며 위원회 진정을 취하해 달라고 하였고(OOO구치소 접견현황부에 따르면, 접견인 가해자 1 (성OO)이 2010. 05. 20. 11:20-11:59 이OO을 접견한 기록이 있음), 2시간 후 가해자 1이 보낸 변호사 이OO이 찾아와 합의의사 여부를 묻기에, 취하해 주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묻자 변호사 말이 “취하해 주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겠다.”며 진정취하 등을 회유한 사실이 있다.(OOO구치소 변호인접견표에 따르면, 변호인 이OO이 2010. 05. 20. 16:34-16:50 피해자 6(이OO)을 접견한 기록이 있음)

2) 따라서 고문을 당했다는 장소를 촬영한 CC-TV 파일이 관리부실 등으로 녹화가 되지 않거나 검찰에서 관련 서버를 압수한 상태여서 위원회 조사관이 피해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직접적인 자료를 발견 할 수 없다. 그러나 관련 피해자들의 고문 피해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앞서 살펴본 피해자 1(임O) 등의 고문피해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여죄 등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호송중인 차량 안에서, 그리고 CC-TV가 녹화되지 않거나 사각 지대인 강력O팀 사무실 내에서 위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고문을 한 것이 사실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가해자들의 행위는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고, 경찰관의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에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 9 ~ 피해자 22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가.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위원회가 가해자들에 대하여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이미 위 피해자 1 ~ 피해자 8의 피해사실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가해자들이 관련 가해사실을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CC-TV 등 자료가 보존기관의 경과 또는 관리부실로 관련 녹화기록을 발견 할 수 없다 그러나 첫째,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현인서, 유치인 보호관근무일지, 의약품 수불대장에 의하면, 고문 피해로 인한 어깨, 허리 등의 통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물파스 등을 이용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 점, 둘째, 특히 피해자 9(김OO)의 경우에는 OOOO지방검찰청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들이 강력 O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입에 테이프를 감고 날개끼기 등 가혹행위를 한 CC-TV 녹화기록을 열람하고, 이를 확인하는 피해조사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셋째, 가해자들이 고문행위를 피해자들에게 가한 경위 및 유형 등 고문수법이 상당한 정도로 유사하고, 공범관계의 피해자들은 수감기관에서 분리수용하고 피해자 20(김OO) ~ 피해자 22(김OO)는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10. 4. 6. 또는 '10. 5. 7.)되기

이전에 다른 수감기관으로 이입된 자들로서 서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는 등 피해자들이 모의하거나 입을 맞추어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위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같이 가해자들이 동 피해자들을 체포하여 조사하면서 순순히 범죄사실을 시인하지 않거나 조사 받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호송중인 차량 안에서, 그리고 CC-TV가 녹화되지 않거나 사각지대인 강력O팀 사무실 내의 특정 위치에서 위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과 같은 방식으로 고문을 한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IV.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1. 검찰총장에게

가해자 1, 2, 3, 4, 5에 대하여, 피해자 1, 2, 3, 4, 5, 6, 7, 8에 대한 「형법」 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 혐의로 고발조치하고, 피해자 9 ~ 피해자 22에 대한 「형법」 125조에서 정한 폭행·가혹행위 혐의의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에 따라 가해자 1, 2, 3, 4, 5에 대하여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한다.

2. 경찰청장에게

가. OO경찰서장 등 고문행위 가해자의 지휘계통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해자들인 OO경찰서 강력O팀 경찰관들이 2009년 8월초부터 2010년 3월 말경까지 무려 22명의 피의자에 대하여 체포 장소 및 호송 차량 안에서, 심지어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헌법」 및 「형법」 등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고문행위가 공공연히 행해졌음에도 OO경찰서장을 비롯한 지휘감독권자들이 이를 적발 또는 예방하지 못하였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강력O팀 사무실에서 고문행위가 상당히 많이 그리고 가혹하게 행해져 인근 부서 및 지휘감독자, 유치인 보호부서, CC-TV 관리부서 등 OO경찰서에 근무하는 상당수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기관장인 서장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고문행위가 지속적으로 행하여진 것은 지휘감독권자가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한 것이다.

나. 유치인보호관 근무실태 등 유치장관리에 대하여

유치인 보호관은 통상 피의자들의 신체상태 및 유치장 근무현황 등을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피의자의 입·출감 및 유치 시 피의자의 신체상태, 유치인의 민원제기 등 유치상황에 대하여 체포구속인명부,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수진부 및 의약품 수불대장 등에 이를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작성된 관련 문서에 의하면 ‘유치인보호관근무일지’ 상에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는 것 외에 피해자들의 신체상태, 고문피해에 대한 민원제기 상황, 파스 등 의약품 사용내역 등 관련사실이 누락되거나 정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8월 초부터 2010년 3월 말경까지 무려 22명의 피의자가 OO경찰서 강력O팀 경찰관들로부터 체포 장소에서, 호송 차량 안에서, 심지어는 경찰서 사무실에서 고문을 당하였다는 정황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거나 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가해자들의 고문행위를 묵인 내지는 방치한 것이다.

다. CC-TV 관련 상황실 운영에 대하여

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 및 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경찰관서의 수사과 및 지구대 사무실 등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OO지방경찰청은 2005. 5. 「수사상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당시 당청 산하 경찰

관서 조사실 112개소에 설치(37. 7%)되어 있는 CC-TV를 297개 전 조사실에 2006. 12. 31.까지 100% 설치하여 녹화함으로써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침을 마련·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심야조사, 구속이 예상되는 사건, 살인·강도·강간 등 기타 인권침해 문제가 야기가 우려되는 사건에 대하여 녹화하여 3개월 동안 보존(디지털 CC-TV 저장범위 내)하고, 인권보호관이 이를 상시 열람·모니터링하고, 고장 등 문제 발생 시 즉시 수리하고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이에 따라 ○○경찰서장 및 관계자들은 이러한 방침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문을 당하였다는 강력○팀 벽 면 쪽 장소는 CC-TV 카메라가 원인불상의 이유로 상향 조정되어 있어 상황실 실시간 화면상에서도 사각지대로 관찰되지 않는 상태였다. 또한 상당기간 녹화되지 않았던 점에서 위원회 진정제기 시 까지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반복적인 고문행위를 묵인·내지 은폐한 의혹이 있다할 것이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CC-TV 녹화자료의 보관기간, 방법 등을 개선하여 녹화자료 등에 대하여 최소한 1년간 보관할 수 있는 방안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

라. 따라서 경찰청장에게 이번 고문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대한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실시하여 그 책임정도에 상응하는 인사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2010. 6. 1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최경숙(불참) 위원 유남영 위원 문경란

【별지 1】 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팀원 명단

【연번】

1. 성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팀장, 2009. 4월부터 강력O팀장 근무)
2. 박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경사, 2009. 4월부터 강력O팀원 근무)
3. 박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경장, 2009. 4월부터 강력O팀원 근무)
4. 이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경사, 2009. 10월부터 강력O팀원 근무)
5. 박OO(OO경찰서 형사과 강력O팀 경장, 2009. 5월부터 강력O팀 지원근무 후 동년 12월에 정식 발령됨.)

【별지 2】 피해자 명단

연번	피해일시	피해자 성명	범죄 관계	피해 장소/ 양태	비고 (괄호)는 000구치소에서 다른 수감기관으로 이입날짜
1	2010. 03. 29.	임 O (7?년생)	OO 공범	사무실/고문	000구치소
2	2010. 03. 28.	장OO (7?년생)		사무실/고문	000구치소
3	2010. 03. 30.	전OO (7?년생)		사무실/폭행	000구치소
4	2010. 03. 31.	정OO (7?년생)		자 택/고문, 사무실/폭행	000구치소
5	2010. 03. 26.	진OO (7?년생)		사무실/고문	000구치소
6	2010. 03. 09.	이OO (6?년생)	OO 공범	사무실/고문	000구치소
7	2010. 03. 09.	김OO (7?년생)		사무실/고문	000구치소
8	2010. 03. 09.	양OO (6?년생)		차 량/고문	000구치소

연번	피해일시	피해자 성명	범죄 관계	피해 장소/ 양태	비고 (괄호)는 000구치소에서 다른 수감기관으로 이입날짜
9	2010. 02. 26.	김OO (6 ?년생)	OO	사무실/고문	000구치소
10	2010. 01. 20.	장OO (8 ?년생)	OO	차 량/고문	000구치소
11	2010. 01. 18.	송OO (6 ?년생)	OO	사무실/고문, 차 량/고문	000구치소
12	2009. 12. 17.	진OO (8 ?년생)	OO 공범	사무실/고문	000구치소
13	2009. 12. 17.	이OO (7 ?년생)		사무실/고문	OO교도소 (‘10.5.14 이입)
14	2009. 11. 04.	양OO (7 ?년생)	OO 공범	차 량/고문	OO교도소 (“10.5.31 이입)
15	2009. 11. 10.	한OO (6 ?년생)		차 량/고문, 사무실/고문	000구치소
16	2009. 11. 10.	임OO (6 ?년생)		차 량/고문, 사무실/고문	000구치소
17	2009. 11. 10	김OO (5 ?년생)		차 량/고문, 사무실/고문	000구치소
18	2009. 09. 24.	염OO (7 ?년생)	OO	차 량/고문	000구치소
19	2009. 09. 01.	김OO (7 ?년생)	OO 공범	차 량/고문	000구치소
20	2009. 09. 01.	김OO (6 ?년생)		차 량/고문 자 택/고문	OO구치소 (5/14)재이입 (‘10.3.5 OO교도소이입)
21	2009. 09. 01.	강OO (6 ?년생)		차 량/고문	OO교도소 (‘10.3.12 이입)
22	2009. 08. 02.	김OO (5 ?년생)	OO	사무실/고문	OO교도소 (‘10.1.15 이입)

【별지 3】 피해자들의 주장요지

1. 피해자 1(임O)

2010. 03. 28. 14:50 OO구 OO동 소재 모텔에서 특수OO 혐의로 가해자들에게 체포되어 연행 될 당시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주먹과 몽둥이 등으로 구타당하였다. 2010. 3. 29. 11:30 유치장에서 출감하여 강력O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수갑을 뒤로 채운 후 “지금부터 자세히 얘기를 잘 들어라. 여기서 병신 되어 나간 놈들이 한 두 명이 아니다. 인정하면 살 것이고 부인하면 죽는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갑자기 가해자들이 매트리스를 깔고 그 위에 눕힌 뒤 수갑을 찬 팔을 위로 꺾어 폭행을 하여, 너무 아파 소리를 지르자 수건으로 입을 막고 투명테이프를 돌돌 말아 감고 구타를 하여 공포심이 이는 가운데 자백을 하려면 눈을 깜빡거리라고 하여 잠시라도 살기 위하여 눈을 깜빡거리자 수건을 입에서 떼어 주었고, 재차 부인하자 다시 재갈을 물리고 테이프를 붙인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문을 20~30분 동안 가하였다.

2. 피해자 2(장OO)

2010. 03. 28. 경 14:50 OO관련으로 체포되면서 OO경찰서 강력O팀 형사들에게 맞은 것은 피해자 2가 OO을 복용하여 겁을 주기 위한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함께 검거된 원OO, 임O 등은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 2만 강력O팀 사무실로 데려가 OO죄를 추궁하면서 가해자 1의 지시에 따라 가해자들이 매트리스를 깔고 뒤로 수갑을 채운 후 엎어뜨린 다음 양어깨에 한 명씩 붙어서 양 팔을 들어 올려 몸이 뜨게 되자 허리와 등을 누르고, 나머지 한 명은 숨을 못 쉬게 머리를 누르는 등 고문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고문을 받아 며칠 전 해 넣은 보철이 깨지고, 왼쪽 눈 실핏줄이 터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

3. 피해자 3(전OO)

피해자 3은 2010. 03. 30. 15:25 친구인 피해자 1을 면회하러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을 방문하였다가 현장에서 특수OO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가해자들이 처음에는 OO검사를 해보자고 하였고 이에 응하였으나 음성으로 결과가 나오자, OO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피해자 3이 관련 혐의를 부인하자 가해자 1이 “일로 와, 커튼 쳐! 이런 쓰레기 같은 OO, 너 같은 도둑놈은 죽어야 돼.”라고 하더니 가해자 중 1명이 커튼을 쳤고 이어 가해자 1이 서서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끼고 욕을 하면서 옆구리와 등을 10여회 폭행하였고, 피해자 3이 도중에 머리를 흔들며 목을 빼내자 왼손으로 머리를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5회 폭행하였다.

4. 피해자 4(정OO)

피해자 4는 2010. 03. 31. 11:50 OO OOO구 OO동 소재 피해자 4의 자택 앞에서 가해자 4, 5에게 특수OO 혐의로 긴급체포 되었다. 가해자들은 집을 수색하겠다고 피해자 4의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어 피해자 4를 데리고 신발을 신은 채 5층 옥탑 방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피해자 4를 방바닥에 엎어뜨리고 허리를 발로 밟은 상태에서 뒷 수갑을 머리 쪽으로 2회 꺾어 올리면서 범행여부를 자백하라고 고문하였다. 피해자가 고통에 못 이겨 잘못하였다면서 모두 자백하였더니 고문을 중지하였다. 피해자의 집 안에 있는 물건을 일부 압수하고 차량으로 경찰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4는 운전을 하였고, 가해자 5는 피해자와 뒷좌석에 함께 타고 이동을 하였는데, 이동 도중 가해자 5는 은색야구 방망이를 들고 “대가리를 쪼개버리겠다.”라며 위협하였다. OO경찰서 강력O팀 사무실에 도착하니 가해자 1이 욕설을 퍼부으며 소파에 앉으라고 하더니 하얀 면장갑을 끼고, 피해자 4의 머리카락을 잡아 고개를 오른쪽으로 젖힌 후 ‘벌레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4의 왼쪽 목을 2회 폭행하였고, 가해자 1의 가랑이 사이에 피해자 4의 목을 끼우고 등을 몇 차례 폭행하였고, 이와 같은 고문과 폭행 후유증으로 어깨와 목이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픈 상태이다.

5. 피해자 5(진OO)

피해자 5는 2010. 03. 26. 05:00 OO OO구 OO동 소재 피해자 집 앞에서 특수OO 혐의로 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체포되어 사무실에 도착하기까지 가해자들의 범죄여부 추궁에 대하여 피해자 5가 부인하였더니, OO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자 가해자 1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폭행하였다. 강력O팀 사무실에 도착하여 재차 범죄에 대하여 묻기에 부인하자, 창문 쪽에 있는 3칸짜리 소파의 방석을 떼어내어 카메라가 안 보이는 벽 쪽 사각지대에 짝 깔고 나서 운동화로 갈아 신고 장갑을 낀 후, 뒷수갑 상태인 피해자 5를 방석위에 쓰러뜨리고 가해자 1, 2, 3, 4가 달려들어 발로 밟고 차면서 폭행하였다(가해자 5는 당시 사무실에 없었음). 이후 일으켜 세우더니 가해자 1이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 피해자 5의 목을 끼우고는 수갑 찬 손을 위로 당기면서 꺾어 고문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5의 오른팔 관절이 부러지는 소리가 나서, 팔이 부러진 것 같다고 하자 잠시 멈추어 살펴보더니 부러지지 않았으면서 폭행을 계속하였다. 입에 물리려고 테이프에 무엇인가 붙여 만들어 놓은 재갈을 피해자 5의 입에 물리려 하여, 피해자 5가 혈압이 있다면서 죽는 시늉을 하자 입에 물리지는 않았는데 재차 고문을 당할 것이 두려워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였다. 고문이후 유치장에서 불러내어 조사를 할 때에 팔꿈치 고통을 호소하자 맨솔래담을 수차례 발라 준 것 외에 다른 치료조치는 없었고, 피해자 5가 구치소에 이송된 후 통증이 심하여 5월경 OOOO병원에서 X-ray 등 진료를 받았는데 팔꿈치 뼈가 약간 골절이 되었으나 한 달 이상 경과하여 별도 깁스를 할 상황은 아니라면서 진통제등 약만 처방 받았다.

6. 피해자 6(이OO)

피해자 6은 2010. 03. 09. 16:30 OO OO구 OO동 소재 자택에서 피해자 7과 함께 OO경찰서 강력O팀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형사과 사무실로 1명씩 따라 들어가 고문을 당하였다(OO서 강력O팀 5명중 주차장 봉고차에서 2인의 경찰은 감시업무를 담당하고 사무실서 3인이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음). 강력O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6에게 수갑을 뒤로 채우고 입에다 숨과 같은 것을 물리고 스카치테

이프로 얼굴을 감아 (팀장 앞자리 벽면 옆에 의자방석 3개를 깔고) 방석위에 엎어 뜨리고 허리를 발로 밟고 수갑 채운 손을 위로 꺾어 들어 올리며 얼굴을 방석에 눌러, 팔의 고통과 얼굴이 방석에 파묻혀 숨을 쉴 수 없어 죽을 것 같아 손으로 그만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러나 팀장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숨이 넘어가기 직전ैया 풀어 주고 자백을 하라고 하였다.

7. 피해자 7(김OO)

피해자 7은 2010. 03. 09. 16:30 피해자 6의 자택에서 피해자 6과 함께 OO경찰서 강력O팀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 6, 8은 차량에 대기토록하고 피해자 7만 강력O팀 사무실로 데리고 간 후 가해자 1, 2, 3은 피해자 7을 의자에 앉히더니 자백을 하라고 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그러자 가해자 1이 “그러면 OO 나한테 1시간만 버텨, 그러면 너 죄 없는 것으로 하고 풀어 줄게.”라고 하더니 입에 휴지를 물리고 뒷 수갑을 들어 올리는 고문을 하였다. 너무 고통스러워 주범인 피해자 6이 인정하는 것은 내가 다 인정하겠다고 하자 고문을 중지하고 피해자 7을 주차장으로 내려 보낸 후, 이어 피해자 6을 데리고 올라갔다. 당시 고문을 당할 때 이를 너무 꼭 깨물어 전일부터 부실하던 이빨이 흔들렸고, 며칠 후 유치장에서 출감하여 강력O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빨이 빠져 종이컵에 버렸다.

8. 피해자 8(양OO)

피해자 8은 2010. 03. 09. 16:00 OO OO구 OO동 피해자 집에서 긴급체포 당하여 경찰서로 이송 시, 차량 안에서 뒤로 수갑을 채운 채 날개꺾기 고문을 수차례 당하였고, 경찰봉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폭행당하였다. OO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하여 강력O팀 사무실에 올라가 보니 피해자 6이 매트리스 위에 얼굴이 빨갛게 되어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가해자 4가 피해자 6의 이름을 부르면서 “얘기할래? 아니면 꺾어 볼래?”라고 하여 차량 안에서 당한 것도 있고, 피해자 6이 심하게 당한 모습을 보니 겁이 나서 자백하였다. 유치장 입감 시, 통증이

심하여 신체검사를 하는 유치인보호관에게 말하였으나 인정해 주지 아니하였고, 이후 너무 아파 모포 1개를 지급받아 사용하였다.

9. 피해자 9(김OO)

피해자는 2010. 02. 26. 16:30 OO OOO 성인오락실 앞에서 OO관련 체포영장에 의하여 가해자들에게 체포되어 차량으로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강력O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의자에 앉히고 수갑 찬 손을 의자 등받이 너머로 보내더니 가해자 1이 무릎위에 올라 앉아 휴지를 입에 물리고 투명박스 테이프로 입과 목을 둘둘 말아 재갈을 물린 후, 날개꺾기 고문을 하면서 자백을 하려면 손을 까딱 까딱하라고 하여 도저히 죽겠기에 손으로 신호를 보내자 입에 휴지를 제거하고 다시 불라고 하는데, 도대체 한 것이 있어야 불 텐데 없어서 불지 못하고 있자 폭신폭신했던 의자방석을 3~4개를 바닥에 깔고 엎어뜨리려 하였으나 피해자 9가 다리와 어깨에 부상으로 핀을 박았다고 하니 엎어뜨리지는 않고 심하게 욕을 하면서 가해자 1이 피해자 9의 젖꼭지를 잡아당기고 옆머리를 잡아 올리고 귀를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뒤로 꺾어 고통에 못 이겨 “으아~”하고 소리를 질렀다. 몇 분 후 옆에 있던 사무실에서 왔는지 양복 입은 사람이 왔고, 가해자들이 모두 일어나 거수경례하는 것으로 보아 상관 인듯한데 무슨 일이나 하니 별일 아니라고 하자, 살살 하라고 하면서 돌아갔다.

10. 피해자 10(장OO)

피해자는 2010. 01. 20. 13:30 체포영장에 의하여 OO네거리에서 체포되어 차량으로 경찰서로 이동하였는데,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1의 범죄혐의 추궁에 다르게 말을 하자 “이 OO OO! 어린 OO가 나 데리고 장난을 치냐?”고 하여 피해자 10이 “네가 뭘데 나한테 욕을 하느냐? 욕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자 가해자 1은 바로 “차 세워! 수갑 뒤로 채워!”라고 한 후, 뒷 수갑을 채우고 수갑을 뒤로 채껴 올려 고문을 하였다(가해자 3, 5가 양 옆에서 잡아 주었음). 그래서 팔이 끊어질 것 같고 숨도 쉬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라 좀 더 버티다가 호흡이

가빠지면서 신음소리를 내니 조금 있다가 풀어 주고는 가해자 1이 “대답을 똑바로 하라.”고 하여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경찰서로 왔다. 고문 후유증으로 통증이 한 달 동안 계속되었는데 팔을 펴면 뼈가 으스러지는 느낌으로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 계속 되어 밥을 먹거나 양치할 때 등 모든 생활이 불편하였다.

11. 피해자 11(송OO)

피해자는 2010. 01. 18. 21:05 OO OO구 OO동 피해자 집에서 가해자들에게 긴급 체포되어 강력O팀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가해자 1은 “도둑놈은 말이 필요 없다. 이 OO는 달아야 말을 듣는다. 준비 해! 시작하자고, CCTV가 안 나오는 이쪽으로 하자!”라며 소파에 있던 갈색 방석을 3~4개를 벽 쪽으로 붙여 깔더니 뒤로 수갑을 채우고는 이빨이 나가니까 끼우라면서 휴지를 말아 입에 넣고 매트리스 위에 엎어뜨려 날개찍기 고문을 하면서 “한 번 버텨봐라.”라며 10초에서 20초 정도 고문을 하였다. 고문당할 때 방석에 코피를 너무 쏟아 옷옷이 피 범벅이 되었고, 범행 자백이후 현장검증을 나갔는데 하지도 않은 것을 자백한 탓에 범행 장소를 적시하지 못하고 차량을 타고 빙빙 돌자, 가해자 1이 “이 OO 봐라.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라면서 피해자를 차량 바닥에 앉히고 가해자 1이 구부리고 서서 자신의 가랑이 사이에 피해자 11의 머리를 끼운 다음 다시 날개찍기 고문을 가하여 차량 안에서도 코피를 많이 쏟았다. 정신적 후유증이 심하여 그 때 생각만 하면 식은땀이 나고 잠도 잘 오지 않으며 왼팔 팔꿈치 인대가 늘어나 아직도 잘 못쓰며 아픈 상태이다. 2010. 02. 21. 가해자 3이 수사접견을 와서는 고문사실을 진정하면 추가 건을 띄우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 11의 진술이 가해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12. 피해자 12(진OO)

피해자 12는 2009. 12. 17. 20:30 OO미수 등으로 OO동 인근 피시방에서 긴급 체포되어 강력O팀 사무실로 연행되었다. 강력O팀 사무실에서 가해자 1은 “OOO야!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오늘 니 정신 차리게 만들어 줄게.”라며

소파에 있던 방석을 4장을 벽 쪽에 깔도록 지시한 다음, 뒷 수갑을 채워 강제로 엎어뜨리고 양쪽에서 2명이 피해자 12의 팔을 잡고 2명은 발을 못 움직이게 한 후 팔을 재껴 올려 너무 아파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질렀다. 가해자 1은 “이 OO 소리 질러봐. OOO야! 너 질러 봐.”라고 하였고 “아아악~ 사람 살려~.”라고 하자 두루마리 휴지를 말아 턱을 조여 입을 강제로 벌린 후 입에 넣고, 피해자가 뱉어 내자 다리 말아서 넣은 후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 젖히며 약 20 여 분 동안 고문을 계속하여, 결국 울면서 공범 이OO과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하였다. 이후 일으켜 세워 무릎을 꿇린 후 가해자 1이 의자에 앉아 구두발로 허벅지를 짓밟고 뺨을 3회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차에서 피해자 12가 대들어 화가 나서 그런다고 하였다. 고문 후유증으로 손목과 손가락이 통통 부어올랐고, 왼쪽 어깨가 저리고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으며, 정신적 충격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어깨가 결릴 때면 지금도 그 때 생각이 나서 화도 나고 심장도 떨리고 억울한 생각이 난다.

13. 피해자 13(이OO)

피해자는 2009. 12. 17. 16:25 OO OO구 OO동 소재 빌라 앞에서 OO 및 OO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차량 안에서 경찰들이 욕을 하기에 “욕을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이 OO 안 되겠구만, 사무실에 가서 욕수를 빼야 되겠다.”고 하였다. 같은 날 17:00 OOs서 강력O팀 사무실에 도착하자 가해자 1의 지시로 가해자 3, 5가 소파에 있는 방석을 바닥에 깔고 엎어뜨린 후 입에 두루마리 화장지를 물리고 두 명의 형사가 발과 무릎으로 누른 후 뒤로 채워져 있는 수갑을 들어 올려 고문을 10회 정도 하면서 허벅지를 발로 폭행하여, 피해자 13이 “제발 살려 달라.”고 하자 일으켜 세워 의자에 앉히고 “OO야 이야기 할 때 듣지 꼭 욕수를 빼야지 말을 들어?”라고 가해자 1이 말하였다. 그래서 공범인 진OO에게 전화를 하자 진OO이 OOO구 OO동 PC방에 있다고 하여, 함께 공범을 잡으러 차량을 타고 가서 공범이 검거 되었는데 가해자 1이 “니가 저지른 것 얘기해봐.”라고 하자 진OO이 “왜 그러십니까?”라고 하였고, 가해자 1은 “놔 뒤 가서 욕수를

빼면 다 나오게 돼 있어.”라고 하자 다른 형사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사무실에 도착하였다. 사무실에서 “진OO 저 OO 육수를 뺄 테니 이OO이 옆방에 가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라고 하며 가해자 5에게 옆방(강력 4팀) 사무실에 피해자 13을 데리고 가 있도록 하였고 이어 진OO의 비명소리(아~ ?! 살려주세요.)가 10회 정도 들렸다. 그리고 나서 강력O팀에 들어가 보니 진OO의 귀 뒤에 상처가 있고 팔목에 피멍이 들어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고, 이후 유치장에서 입감되었을 때 치료를 요구하면 또 데리고 가서 고문을 할 까봐 두려워 아무런 말도 못하였다.

14. 피해자 14(양OO)

피해자는 2009. 11. 04. 20:00 체포영장에 의하여 OO고속도로 OO휴게소에서 가해자들에게 체포되어 차량으로 OO로 이동하면서 고문을 당하였다. 가해자 2, 5는 피해자 차량을 타고 OO로 이동하고, 가해자 3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가해자 1과 가해자 4가 뒷좌석에 피해자 14와 함께 타서 이동하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고 본인이 맞느냐고 묻기에 흐릿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자 날개찍기 고문을 가하였고, 공범이 몇이나 몇 건 했냐며 OO로 올라오는 1시간 동안 계속 고문을 하여 나중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해자 1의 허벅지를 물었는데 더 심하게 날개찍기를 하여 무는 것을 포기하였고 고문당하는 내내 두 번 정도 혼절을 하였다. 공범 김OO도 고문을 당했는지 다리를 절며 다니는 것을 목격하였고, 유치장에서 에어파스(뿌리는 파스)를 요청하여 공범 4명에서 2통이나 사용하였고, 고문으로 인하여 팔꿈치하고 손목이 너무 아파 그로부터 2달 정도 통증으로 고생하였다.

15. 피해자 15(한OO)

피해자 15는 2009. 11. 10. 03:00 OO OO구 OO동 소재 PC방에서 OO형의로 긴급체포 되었으며 승용차를 타고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OO서 주차장에 도착하여 스타렉스 차량으로 갈아 태운 뒤 사각지대로 조금 이동하여 차량 안에서

뒷 수갑을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고문과 등과 정강이를 폭행당하고 뺨을 맞았다(가해자 2, 3 외 불상 1인). 이후 사무실에 올라가니 공범들 사진을 보여주며 어느나고 문기에 일부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니, 가해자 1이 “니가 언제까지 모르 겠다고 하는지 보자. 저 OO는 내가 단다. 십 OO야! 매트리스 깔어!”라고 하더니 엎드리게 한 후 머리를 짓누르고 뒷 수갑을 젖혀 올려 고문을 가하였고, 고통이 너무 심하여 자백을 하였다(입에 무언가 물린 것 같으나 팔 쪽 고통이 너무 심하여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음). 재판에서 총 3건에 대하여 1년 6월형을 선고받았는데 솔직히 2건은 피해자 15가 한 것이 맞으나 1건은 전혀 피해자 15의 범행이 아닌데 죄 값을 치루고 있다.

16. 피해자 16(임OO)

피해자 16은 2009. 11. 10. 13:35 OO OO역 인근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체포되어 차량으로 경찰서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였다(가해자 5가 운전을 하고, 가해자 1은 조수석에 있었으며, 나머지 가해자 2, 3, 4가 뒷좌석에 함께 타고 오면서 고문을 하였음). 차량 안에서 수갑을 뒤로 채우고 가해자 2, 3이 양 옆에서 잡고 머리를 숙이게 한 후 가해자 3이 다리 사이에 피해자 16의 목을 끼우고 뒷 수갑을 들어 올리는 고문을 10회 정도 하였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0여대 폭행하였다. 사무실에 도착하여서는 가해자 1이 자신은 혼자서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16을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 16의 목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등 뒤의 수갑을 꺾어 올리는 고문을 하였다.

17. 피해자 17(김OO)

피해자 17은 2009. 11. 10. 00:20 OO OO동 소재 자택에서 OO관련 OO 범위반으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가해자들에게 체포되어 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해자 1이 “이 OO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 이제 시작해 볼까.”라고 하자, 가해자 3이 피해자에게 수갑을 뒤로 채운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게 하고 자신이 피해자의 목 위에 올라타 수갑을 위로 잡아 당겨 고문을 하였다. OO경찰서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고문을 하여 너무 고통스러워 앞으로 고꾸라지자 올라타던 가해자 3이 함께 바닥에 떨어졌고, 이에 피해자 17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후 다시 올라타고 잡아당기기를 반복하였다. 강력O팀 사무실에 도착하여 원탁책상에 있는 의자에 앉힌 후 공범을 불라고 하면서 가해자 1이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과 구둣발로 허벅지를 폭행하였고, 가해자 3, 5가 피해자 고개를 숙이게 하고 누군가 다리 사이에 머리를 끼고 올라탄 상태에서 뒤로 찬 수갑을 위로 잡아당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여 ‘으윽’하고 소리를 내자 시끄럽다면서 이빨이 나간다고 수건을 입에 물리고는 계속 팔을 잡아당겨 꺾어 고문을 가하여 결국 공범 한OO과 임OO을 볼게 되었다. 공범을 피해자 17의 핸드폰으로 연락하여 체포하게 되니 더 이상 고문하지 않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고문 후유증으로 양 쪽 허벅지에 꺼먼 멍이 한 달 이상 지속되었고, 지금도 손목 말초신경이 마비되어 손 가죽에 감각이 거의 없으며 어깨에 인대가 늘어난 것인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다.

18. 피해자 18(염OO)

2009. 9. 24. 12:00 OO경찰서 앞 노상에서 OO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가해자 2, 3에게 체포되어 은색 스타렉스 차량 뒤에 승차하였는데, 체포 장소로부터 약 5분간 떨어진 공터로 이동하여 갑자기 경찰들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뒤로 채운 수갑을 젖혀 올려 소리를 지르자 소리 지르지 말라며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면서 “야 개OO야! 다른 것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까 빨리 붙어.”라며 약 40 여 분간 수갑을 위로 올려 뼈가 부러질 것 같은 심한 고문을 가하며 자백을 강요하였다. 고문 후유증으로 두 달 동안 팔 관절과 어깨가 움직이기 힘들고 팔을 들어 올리면 쑤시고 아파서 두 달 내내 파스를 붙이고 살았고, 당시 사선변호사 윤OO 및 재판부와 검찰에 다 이야기를 하였으며, 검찰에서 상처부위 사진촬영을 요청하였으나 찍어주지 않았다. 검찰에 11건으로 송치되었다가 검찰조사과정에서 5건으로 축소되었으며, 나머지 6건은 허위자백에 의해 송치된 것이다.

19. 피해자 19(김OO)

피해자는 2009. 09. 01. 01:50 특수OO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OO OO 시 OO동 소재 피해자 자택 주차장에서 체포되었다. 이후 스탠덱스 차량에 태워졌는데 가해자 1이 수갑 찬 손을 위로 치켜 올려 머리가 바닥에 박히도록 하고 주먹과 발로 목, 옆구리, 허벅지 등을 마구 구타한 후 일으켜 세우더니 공범이 누구냐고 물어보아 없다고 하자 다시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수갑을 치켜 올리며 고문을 가하였고 가해자 2, 3이 거들어 주었다. OO경찰서로 가는 동안 약 100대 정도는 맞아 경찰서에 도착하여 계단을 못 올라가서 경찰들이 양 옆에서 부축하여 올라갔고 사무실에서 고문은 없었다. 고문과 폭행으로 왼쪽 가슴과 목, 허벅지에 피멍이 들었고, 얼굴도 맞아 부어오르고 입술이 터졌으며, 수갑을 짝 조인 상태에서 위로 치켜 올려 손목에 피가 통하지 않아 마비증세가 왔었고 한 달 동안 온몸이 아파 힘들었으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아직도 어깨가 결린다. 유치장에서 약을 달라고 하니 물파스를 하나 주어 바랐으며, 당시 유치장 경찰에게 말을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20. 피해자 20(김OO)

피해자는 2009. 09. 01. 12:30 특수OO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OO O구 OO동 피해자 집 앞에서 체포되었으며, 스탠덱스 차량 안에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누군가 목을 아래로 누르고 다른 한 명은 수갑을 채운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고문을 약 30~40분 정도 하면서 공범을 불라고 하였다. 이후 집안을 수색하다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수갑 사이에 포승을 엮어 들어 올리거나 잡아당기거나 하였고, 거실 소파 쪽으로 민 후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리고 수갑을 조여 고통을 주면서 약 20~30분 정도 구타를 하였다(1명은 직접 때리고, 2명은 말로 엄포를 하고 2명은 수색을 하였음). 차량으로 경찰서로 이동하면서도 계속 자백을 강요하며 폭행하였으며, 사무실에 도착한 후 약 30~40분 후에 공범들이 들어오는데 찢뜩거리며 들어오는 것을 보아 모두 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였다. 공범 3명을 앉혀 놓고 가해자 1이 “현재 추려 놓은 것만 한 200건 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여,

공범 김OO이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고 항의 하여 나중에는 추려서 65건을 가지고 가게 된 것이다.

21. 피해자 21(강OO)

피해자는 2009. 09. 01. 12:45 OO구 OO동 소재 자택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차량 안에서 고문을 당하였다. 차량에서 경찰 1인이 자신의 허벅지 사이에 피해자 21의 머리를 끼우고 뒤로 수갑 찬 손을 잡아당겨 고문을 하다가 피해자 21이 힘들어하면 목을 빼주는 방식으로 4~5회 정도 되풀이 하였는데, 피해자 21이 힘들어하여 목을 빼주어 피해자가 몸을 뒤로 하여 처져 있는 동안에도 팀장을 비롯하여 다른 여러 경찰들이 가슴과 배, 허벅지, 옆구리를 때렸다. 고문을 할 때 입을 벌리라고 하더니 차량 뒷좌석에 있는 수건을 입에 넣고 “뱉으면 죽는다.”고 협박하였고, 가해자 1인 “여기서 OO서까지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천천히 뽕뽕 돌리면서 너 뒤지든지 말든지 천천히 들어간다. 한 번 버틸 수 있으면 버티 보라.”고 하면서 고문을 계속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범행의심이 가는 건수가 150건 정도 되는데 여기서 80건을 가져가라고 하여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하니 “그럼 이것 어떻게 하나?”며 짜증을 부려 어차피 나쁜 짓 한 거고 특가범이니 몇 건 더 가져간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어. 팀장에게 “최대한 줄여주면 다 인정하고 갈 테니 최대한 줄여 달라.”고 하자 65건만 가져가기로 하였다. 고문당시 혈압이 올라 왼쪽 눈 망막이 훼손되어 1.2시력이 0.5로 저하되었고, 왼쪽 어깨를 다쳐 뼈가 튀어 나와 있다.

22. 피해자 22(김OO)

피해자는 2009. 08. 02. 15:40 OO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강령 OT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가해자 1은 피해자 22를 뒷 수갑 상태로 의자에 앉힌 후, 입에다 흰색 수건을 물리고(테이프는 붙이지 아니함) 가랑이 사이에 피해자 22의 목을 끼운 후 날개찍기 고문을 하면서 OO 추가 건을 불라고 하였다(가해자 3, 5는 거들기만 하였으며 사무실 커튼을 치고 고문을 하였음).

고문에 못 이겨 하지도 않은 건을 자백하면서 미제사건 있는 거 다 달라 하니 더 이상 고문은 하지 않았고, 송치 사건 중 검찰조사과정에서 증빙이 안 되어 빠졌는데 고문 후유증으로 손목에 혈액순환이 안 되어 2~3개월 고생을 하였다.

6

2011. 1. 31.자 10진정777300결정 [경찰의 과잉단속 등에 의한 인권침해]

○ ○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

【결정요지】

- 【1】 피진정인들은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들로서, 당시 단속 장소가 급히 변경되었고, 야간시간대였으며, 관련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리 도주로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탓할 여지가 있으나, 단속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도주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안전사고로 사망에 이른 데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
- 【2】 피진정인들이 사복을 입은 채 베트남어 통역 없는 고지행위와 함께 50여명의 베트남인들이 밀집한 비좁은 숙소 안으로 갑작스럽게 진입, 가스총과 삼단봉 등으로 제압하는 과정에서 저항 또는 도주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장구사용에 있어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
- 【3】 호송 중인 버스 안에서의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들이 부인하고 다른 베트남인들의 목격진술이 있을 뿐이어서 구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나, 피해자들을 인치한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들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때린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금지) 및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에서 정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정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 【4】 사무실이 비좁고, 주말이어서 급식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도주 방지 등 계호상 이유가 있었더라도, 피해자들을 케이블타이에 장시간 묶어 두어

손목에 상처를 입혔고, 거울에 보온 조치 없이 바닥에 꾸그러 앉았으며, 2~4명씩 묶은 채 화장실에 보내 서로 바지 지퍼를 내리도록 하여 인격적 모멸감을 준 점, 새벽부터 22:00까지 17시간 동안 컵라면 1개만 제공한 점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연유하는 인격권, 건강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형법」 제125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제8조·제54조, 「도박사범 수사매뉴얼」(경찰청 제77호) 제10조·제12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등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1. 표○○
2. 오○○
3. 윤○○
4. 박○○
5. 박○○
6. 김○○

【주 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10. 12. 19. 03:30경 ○○ ○○시 소재 외국인노동자 숙소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약 50여 명이 베트남 전통도박(일명 ‘속리아’)을 하였는데, 피진정인들이 이를 단속하고 수사하면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하였는바, 진상규명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이 당시 현장 주변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무리하게 과잉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피해 도주하던 피해자 2명이 주변 하천에 빠져 사망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은 숙소 진입과정에서 가스총과 전기충격기를 쏘고, 3단봉을 마구 휘둘러 다수의 피해자들이 머리, 등, 손 등에 상해를 입었다.

다.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을 호송하는 버스 안 및 사무실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피진정인들은 피해자들을 수갑과 플라스틱 끈(케이블 타이)으로 2~4명씩 손목을 묶어 장시간 경찰서 사무실 바닥에 인치하였고,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였으며, 저녁 늦은 시간에 석방할 때까지 적절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OYMCA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사무총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들의 주장요지

1) 미 검거 피해자

가) 웬○○

당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베트남 말로 ‘포이라 쏭안’(경찰이다)

이라고 하며 총을 쏘고 전기충격기와 경찰봉으로 막 때리면서 거실로 들어왔다. 이에 피진정인들로부터 맞으면서 창문과 방충망을 열고 창문을 뛰어넘어 펜스 앞에 내렸다가 다시 펜스를 넘어 축대 밑의 하천 물속으로 뛰어내렸다. 본인이 제일 먼저 방충망을 열고 도주하였고, 이어 팜홍장, 풍딘꾸이, 그영이 뒤따라 물에 뛰어 들어 도주하였으며, 나머지 이름을 모르는 5~6명이 창문을 넘어 펜스 옆으로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

나) 하○○

당시 경찰이 갑자기 가스총을 쏘았고 경찰관 1명은 들어오자마자 3단봉으로 머리를 때렸고, 이후 어깨 쪽을 잡은 후 다시 머리를 때려 머리에 흠이 났다. 이를 피해 창문 밖으로 도주하려고 할 때 먼저 나간 사람들이 물에 뛰어드는 소리를 들었고, 본인은 물에 뛰어들지 않고 펜스 옆으로 도망갔다. 같이 도주한 ○○, ○○과 비닐하우스에서 난로를 켜 몸을 녹였다.

다) 풍○○

당시 웬○○이 먼저 나갔고, 이어 ○○○○, 그리고 본인이 나갔는데, 이 때 경찰이 3단봉으로 왼쪽 팔을 때렸다. 웬○○과 장이 물에 뛰어들었고, 본인도 따라 뛰어들었으며, 뒤이어 사람들이 계속 뛰어들었다. 당시 물이 약간 얼어 있어 다시 난간 쪽으로 나가 옆 회사 쪽으로 도주하였는데, 아마도 사망자는 뒤이어 물에 뛰어든 사람으로 보인다.

2) 검거된 불구속 피해자들

가) 황○○외 다수

당시 방안에 50여 명의 베트남인들이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갑자기 총을 쏘며 진입하였다. 이후 경찰은 “머리 숙여!”라고 하면서 경찰봉으로 피해자들을 때렸으며, 창문을 넘어 가는 사람을 마구 때렸으나 나가는 사람이 많아 막지 못했다. 당시 머리를 숙이라고 하고 머리를 숙이지 않으면 봉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 과정에서 황○○, 라이테○○, 웬버○○, 웬○○, 웨니아○○ 등은 경찰봉으로 머리와 몸을 맞았으며, 황○○ 등은 플라스틱 끈에 묶여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

호송 중인 버스 안에서 경찰이 머리를 숙이라고 하면서 때리고 뒤 쪽으로 와서 폭행을 하였고, 조사 중에도 호주머니 검사를 하여 돈이 나오자 얼굴을 주먹으로 마구 때렸으며, 석방할 때까지 컵라면 하나 밖에 주지 않았다.

나) 레이엇○○

경찰이 방안에 들어오자마자 총을 쏘았고, 약 2분 후 불이 꺼졌다가 1분 후에 불이 다시 켜졌다. 이 때 경찰에 의한 피해자들 폭행이 더욱 심했고, 건물 외벽을 계속 두드리며 겁을 주었다. 당시 경찰이 방 안에 들어와서 무조건 전기봉으로 때리고 충격을 가하였다. 두 번째 총소리가 날 때 오른손에 뜨겁고 아픈 느낌이 들었고, 계속 상처부위에서 피가 났다. 아프다고 말해도 경찰이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전선 비슷한 것으로 묶어 손목에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호송 중인 버스 안에서도 베트남인을 때렸고, 경찰서에서는 주머니를 뒤져 돈이 나오자 때렸다. 당시 손가락이 파열되어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받았고, 컵라면 하나 밖에 먹지 못했다.

다) 레티홍○○

당시 경찰은 수갑이 없어 많은 사람을 플라스틱 흰색 줄로 묶었다. 버스 안에서 경찰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경찰서에서도 웬○○외 1명을 세워놓고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지 않았다며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경찰관은 “너희들도 돈이 나 지갑이 나오면 이 사람들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하겠다.”라고 하였다. 화장실을 2명씩 묶은 상태에서 보냈고, 묶은 것을 풀어주지 않아 서로 바지를 내려주고 용변을 보았다. 본인도 경찰봉으로 머리를 맞았다.

3) 검거된 구속 피해자들

가) 부늬○○

경찰관들이 경찰봉을 휘두르며 방 안으로 들어와 갑자기 머리를 때려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 심한 부상을 입어 경찰서로 호송된 뒤 병원에 가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나) 응엔○○

당시 창문으로 일부가 도망가고 일부는 출입문으로 도망가려고 하였는데 경찰관이 출입문으로 나가는 여자의 뒷덜미와 머리를 잡아당겼고, 옆에 있던 부○○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

다.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본인들은 ○○지방경찰청 외사과 국제범죄수사대 수사 2팀 소속 경찰관들이다. 애초 예상되었던 도박장소와 달리, 사건 당일 현장에서 도박장소가 갑자기 우성금속 기숙사로 변경됨에 따라 주변상황을 여러 차례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접근로가 없고 야간시간대이어서 불가피하게 기숙사의 창문 및 주변 하천의 존재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한 채 진입을 시도하였다. 진압과정에서 베트남인들의 저항이 심하여 가스총 및 공포탄 총 5발을 쏘아 진압하여 총 34명을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거실 진입 시 도주한 베트남인은 없었다.

2) 2010. 12. 19.(일) 14:50경 ○○○○서 강력팀에서 도박현장 하천에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다고 통보를 해 주어 사망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2. 20. 15:00경 두 번째 변사체가 발견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검거 당시 어두운 심야시간대로 불법체류 베트남 노동자들이 창문을 넘어 하천을 건너려다 수영을 하지 못해 익사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에는 도주자들이 물에 빠지는 소리, 또는 살려달라는 소리 등을 전혀 듣지 못했고, 설사 도망을 가는 도박자가 있더라도 추적하여 검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3) 단속 시 가스경봉 및 삼단봉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베트남인들의 머리와 등을 때리는 등 과잉진압을 한 사실이 없으며, 호송 중인 버스 및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던 중 피해자들을 구타한 사실이 없다. 당시 수갑이 모자라 케이블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2인 1조로 팔을 묶어 사무실로 연행 및 인치하였고, 식사 제공이 곤란하여 구속자를 제외한 불구속 석방자들에 대해서는 컵라면을 1인당 1개씩 제공하였다.

라.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1) 조○○(○○○○경찰서 ○○파출소), 이○○(같은 서 ○○파출소)

2010. 12. 18. 야간근무 중, ○○금속 도박단속에 지원근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입구에서 도주로를 차단하기 위해 서 있었는데, 국제범죄수사대 직원 6명이 10m정도 떨어진 기숙사 출입구 쪽으로 진입한 직후 공포탄 소리가 2~3발 들려, 곧바로 출입구 쪽으로 가보니 수사대 직원 2명이 베트남인 1명을 붙잡고 있어 이들을 인계받았다. 이후 진압되어 호송되는 피해자들을 지켜보았으며, 이 과정에서 기숙사 안이나 버스 안에 있지 않아 국제범죄수사대 직원들이 베트남인들을 구타하는 것은 보지 못했고, 하천 쪽으로 베트남인들이 도망가는 것도 보지 못했다.

2) 최○○(○○○○병원 원장)

피해자 레비엣○○의 상처는 새끼손가락 손톱 1/2 정도가 절단되어 없고, 새끼 손가락 상처 부위와 나란히 넷째 손가락의 피부가 끝으로 밀려들려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통상 총상에 의한 상처라면 열상이 있어야 하는데, 위 피해자의 경우에는 화상이 없어 총상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문틈에 손가락이 끼였다면 넷째 손가락 상처가 더 컸을 것이고 손등에도 상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상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문틈에 끼여 발생한 상해로 보기도 어렵다.

3) 웅오티○○외 1명(베트남어 경찰통역인)

2010. 12. 19. 당시 ○○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베트남어 통역인으로 베트남인 도박사건 피의자 34명에 대한 신문조사에 참여하였다. 당시 통역인들은 경찰관들이 김밥을 주어서 김밥을 먹었으나 베트남인들은 컵라면을 먹었다. 당시 도박사건 피의자들은 2~4명이 짝을 지어 케이블타이에 묶여 있었고, 화장실에 갈 때 수갑을 풀어주었으나 일부는 손목을 묶인 채로 화장실에 보냈으며, 베트남인들이 시끄럽게 굴면 경찰들이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며 욕을 하였다.

3. 관련규정

- 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 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 다. 「형법」 제125조
- 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8조, 제54조
- 마. 「도박사범 수사매뉴얼」(경찰청 제77호)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문답서 및 전화조사보고서, 피해자들의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및 피해사진,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1, 2회), 참고인 조○○ 등의 문답서 및 대면조사보고서, ○○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베트남 집단도박사건 수사과정 및 결과보고서, 현행범인체포서, 장구사용보고서, 「도박사범 수사 매뉴얼」,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 CC-TV 녹화기록, 사망 피해자 2명의 변사사건발생보고서, 사체검안서 및 부검요약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실지조사보고서 및 실황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위원회의 실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금속(○○시 ○○면 ○○리 ○○-○ ○번지 소재)은 금속가공기업으로, 회사는 별도의 출입구 없이 24시간 개방되어 마당에 트럭 등이 주차되어 있고, 출입구 좌측 편에 주공장이 하천변까지 이어져 있으며, 우측에는 창고가 있고, 하천변을 따라 사무실, 기숙사, 화장실, 식당, 탈의실 용도의 조립식건물이 설치되어 있다. 주공장과 사무실 사이의 간격은 1.8m이고, 그 사이로 들어가면 사무실 뒤편 하천변 쪽으로 도박장소인 외국인 노동자 숙소가 위치해 있다. 단속 중 익사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외국인노동자 숙소에 접해 있는 무명하천으로, 하천수심은 가장자리는 120cm, 중심부는 180cm~200cm로 측정되고, 하천표면으로부터 콘크리트 제방 위까지의 높이는 3m50cm, 그 뚝 위로 1.2m~1.5m의 철재안전지지대(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폭은 약

25m 가량으로 숙소 앞면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으나 양쪽 하천 쪽에는 갈대 등이 많이 우거져 있으며, 하천물은 폐수에 의해 탁해 바닥이 잘 보이지 않고, 흐름이 거의 없이 고여 있는 상태이다. 숙소는 가로 3m, 세로 3m, 높이 2.3m의 3~4평 내외의 작은 크기의 방이며, 당시에 숙소 내에는 옷걸이 외에는 다른 집기가 없었고 도박 중이던 베트남인 50여 명이 꼭 들어차 있는 상태였다. 하천방향으로 있는 가로 190cm, 세로 92cm 크기의 알루미늄 소재 창문에는 신문지와 골판지를 발라 두었고, 문을 열 경우 가로 95cm, 세로 92cm 크기의 정사각형 구조의 모양을 이루고 있고 숙소의 창문과 하천까지의 거리는 56cm로 거의 맞닿아 있다.

나. 피진정인들은 2010. 12. 8. ○○ ○○면 ○리 ○○마을에 소재한 ○○ 회사 기숙사에서 베트남인 20여 명이 베트남 도박인 일명 ‘속리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0. 12. 18. 21:00경 국죄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테이저건 2정, 가스분사검용 경봉 1개, 방검복 6벌, 일반 삼단봉 2개, 수갑 10개, 가스총 등을 준비하고, 당일 21:30경 승합차 2대에 나누어 타고 ○○ 회사 기숙사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도박 징후를 발견할 수 없어, 주변 잠복 및 유동 순찰 중, 도박개장자 부○○의 레간자 승용차를 발견한 후 미행한 결과, 익일 02:00경 우성금속 숙소 앞에 신발이 10~15켤레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다수의 베트남인들이 출입하는 등의 도박징후를 포착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은 당시 ○○금속 기숙사의 주변지형 및 건물구조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관련 도박 피의자가 15명 정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2010. 12. 19. 03:00경 ○○파출소 직원 경사 조부현 등 2명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출입구 방향에 대한 도주차단, 현장검거 및 체증 등 역할분담을 간략히 한 후, 03:20경 약 10여 미터의 마당을 가로질러 도박장으로 접근하는 중, 문을 열고 나오던 도박자 1명과 만났다. 이 때 도박자가 고함을 치며 도주를 하려고 하고, 거실 안에 있던 베트남인들이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가스총 5발과 테이저건 2발을 발사하고, 전자충격기, 가스경봉 및 삼단봉을 사용하여 자리에 앉도록 제압하여 총

34명을 검거하였다.

라. 위와 같은 진압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자리에 앉거나 머리를 숙이라며 휘두른 삼단봉 및 전기충격기 등으로 다수 피해자들의 머리, 팔, 등 부위를 가격하여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특히 피해자 부늉○○는 머리가 찢어지고, 레이엣○○은 손가락에 파열상을 입었다. 또한 진압에 놀란 10여 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이 급박하게 검거 및 구타를 피해 거실 창문을 넘어 하천에 뛰어들거나 기숙사 측면 벽면을 이용해 도주하였으며, 이들 중 피해자 2명이 수심 180cm~200cm 깊이의 하천에 빠져 익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마. 피진정인들은 검거 개시 30분 후 랜턴을 비쳐 판돈 등 은닉물건, 하천 및 주변을 수색하고, 검거된 피해자들을 버스와 승합차량에 나누어 태우고 2010. 12. 19. 05:00경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로 호송하였다. 이후 곧바로 신원확인 및 조사를 개시하여 도박개장자 주변 2명은 구속하고, 불법체류자 10명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였고 같은 날 22:00경 나머지 22명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석방하였다.

바. 피진정인들은 2010. 12. 19. 07:00경 상해를 입은 피해자 부늉○○와 레이엣○○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후송하여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며, 2010. 12. 19.(일) 14:50경 ○○○○서 강력팀은 ○○금속 사장의 신고로 도박현장 하천에서 변사체(웬○○)를 발견하였고, 익일 15:00경 두 번째 변사체(왓반○○)를 발견하고 이를 각 피진정인들에게 통보해 주었다.

사. 국제범죄수사대 사무실 CC-TV 기록에 의하면, 2010. 12. 19. 05:00경 피진정인들이 현장에서 검거한 피해자 34명을 수감 및 케이블타이로 2~4명씩 손목을 묶은 채 사무실 바닥에 인치해 놓고, 피진정인 1이 같은 날 05:34경 불상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구타하고, 곧이어 같은 날

05:36경 피진정인 2가 불상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6:52경 피진정인 3이 불상피해자의 머리를 1회 구타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6은 같은 날 06:25경부터 08:27경까지 불상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머리를 수회 구타하고, 피해자 ○○○○ 외 ○○ 1명의 경우에는 신원확인 및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다 숨겨둔 돈을 발견하자 이들의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발로 찼으며, 베트남인 2~4명이 수갑 또는 케이블타이에 묶인 채 화장실에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속자를 제외한 32명의 베트남인들에게 2010. 12. 19. 05:00경 체포하여 같은 날 22:00경 석방할 때까지 당일 11:00경 컵라면 1개씩을 중식으로 제공하였다.

아. ○○지방경찰청장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자체감찰조사를 실시하여, 불충분한 현장판단과 경력대비 및 관련 업무매뉴얼 미준수, 조사과정에서의 베트남 피의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0. 12. 30. 국제범죄수사대장 경감 강○○를 직위해제하고, 피진정인들을 모두 대기발령하였으며, 의무위반정도가 중한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 피진정인 6에 대하여 직무고발 조치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들의 단속 중 안전조치의 적절성 여부

경찰청훈령인 「도박사범 수사매뉴얼」(경찰청 제77호)에 의하면, 도박사범 단속시 안전한 검거와 진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주변지형 및 건물구조, 도박자의 인원수, 도주로 및 퇴로차단 등의 조치와 이에 따른 업무분담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단속현장 야간 실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사건 당시는 보름에 가까운 날이어서 달빛이 있었고, 기숙사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통해 창문의 존부가 식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우성금속 기숙사 건너편 ○○(주)의 무인경비시스템 관리회사에 협력을 얻어 하천 등 주변 지형을 파악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진정인들이 당시 단속상의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나 보다 신중

하게 접근하였다면 주변지형과 건물구조 등을 인지하고 수사매뉴얼에 따라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사법경찰관들로서, 당시 단속 장소가 급히 변경되었던 점, 야간시간대이었던 점, 불법체류이주노동자의 도주행태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주변지형, 건물구조, 단속대상자들의 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도주로 차단 등의 조치를 미리 취하지 못한 점을 탓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단속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베트남 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 2명이 급히 도주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에까지 이른 것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들의 과도한 장구사용 등 과잉진압 여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수색이 이루어진 당시 피진정인들의 수에 비해 베트남인들의 수가 월등히 많았고, 일부 베트남인들이 창문 또는 출입구로 도주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들이 도주 및 저항의 의사를 표출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가스충 등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제압하고, 삼단봉 등을 이용해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이 사복을 입은 채 베트남어 통역 없는 고지행위와 함께 50여 명의 베트남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3~4평 내외의 비좁은 숙소 안으로 갑작스럽게 진입하면서 가스충을 쏘고, 삼단봉 등을 휘둘러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저항 또는 도주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도 물리력을 행사하였고,

머리를 들거나 일어서려고 하던 피해자들의 머리, 팔, 등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장구사용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경찰장구 및 분사기 등의 필요한 최소한의 사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써,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피진정인들의 호송 및 조사 중 폭행행위 여부

호송 중인 버스 안에서의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거로는 버스 안에 있었던 베트남인들의 목격진술이 있을 뿐이나 이것만으로는 구타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을 인치한 국제 범죄수사대 사무실 내에서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2, 피진정인 3, 피진정인 6 등이 피해자들을 발로 차고, 손바닥으로 머리와 뺨을 구타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금지) 및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에서 정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정한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피해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대하여

당시 피진정인들이 수사사무실이 비좁고, 주말인 관계로 급식을 제공할 여건이 되지 않았으며, 다중의 피해자들의 도주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계호 상의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시로 사용하였어야 할 케이블타이로 장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함께 묶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손목 피부에 상처를 입었고, 당시 겨울날씨를 고려하지 않고 차가운 콘크리트바닥에 남녀를 불문하고 아무런 보온 조치 없이 그냥 쭈그러 앉히고, 심지어는 2~4명씩 묶은 채로 화장실로 보내 피해자들이 서로 바지 지퍼와 속옷을 내리거나 올리도록 하여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것과 새벽시간에 체포된 피해자들을 당일 저녁 22:00경에 석방하면서 약 17시간 동안 컵라면 1개만 제공한 것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인권보호 원칙의 준수의무

및 인종, 국적, 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연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격권, 건강권,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 사건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

1)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피진정인들의 단속행위를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그 책임을 물어 피진정인들의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징계조치할 것과, 이와 같은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 및 수사 시 준수해야할 주의의무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 등이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민형사상의 권리구제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3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7

2011. 9. 8.자 10진정0419800 결정 [경찰의 고문에 의한 신체의 자유 침해]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

【결정요지】

【1】 진정인의 고문 피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참고인 및 유사 피해자들의 진술과에 부합되는 반면 피진정인들의 체포 당일 행적이 불투명한 점 등을 비추어,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2】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 「헌법」 및 「고문방지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문행위, 「형법」 제125조에 정한 범죄행위를 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검찰총장에게 이에 대하여 수사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하도록 수사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조 제1항, 「형법」 제125조

【진 정 인】 임○○

【피진정인】 1. 정○○ 2. 정○○ 3. 양○○ 4. 조○○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형사와 강력○팀 소속이며, 진정인은 2010. 1. 27. 피진정인들로부터 체포되면서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으므로 이들에 대한 처벌 및 진정인의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10. 1. 27. 11:20경 ○○ ○○구 ○○동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상호명 ‘○○ PC방’에서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현장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경찰서에 도착하여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은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았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자백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이라는 의미에서 조서에 서명한 것이다.

나. 피진정인들은 체포 후 진정인을 승합형 경찰차량 뒷자리에 태우고 차량통행이 드문 골목길로 이동하여 차를 세운 뒤, 진정인에게 “왜 체포되었는지 아느냐?”고 물어 “모른다.”고 답하자, 피진정인 성명불상 형사 2명이 진정인의 상의(자켓)를 손목까지 잡아당겨 내린 뒤 양손을 등 뒤로 하여 상처가 나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자켓 위의 손목에 수갑을 채워 수갑 사이의 쇠줄을 위로 들어 올려 통증을 가하였다. 이 때문에 진정인의 머리와 몸통이 앞으로 쏠리자 피진정인들은 수갑이 채워진 손을 위로 잡아당기고 엉덩이는 아래로 밟는 고문(일명 ‘날개꺾기’)을 가하며 자백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1) 피진정인 정○○

가) 피진정인 특정부분

본직이 2010. 1. 27. ‘○○PC방’에 진정인을 체포하러 출동한 것은 확실하므로 피진정인이다.

나) 미란다원칙 고지 부분

진정인은 미란다원칙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관들은 미란다원칙 고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교양을 받고 실천하고 있어 절대 누락할 수 없는 사항이며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에 진정인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 사건기록에 첨부하였으므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다) 날개찍기 고문 부분

진정인은 날개찍기 고문을 통해 절도 및 강도 건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진정인의 통화내역 분석 및 타 지역 강절도 사건의 분석 그리고 자료 확보를 통해 진정인에게 증거자료가 있음을 확인시켜주자 진정인이 자백을 한 것이다.

2) 피진정인 정○○

가) 미란다원칙 고지 부분

당시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 ○○구 ○○동 소재 ‘○○PC방’에 들어가 게임에 빠져있는 진정인에게 본직이 신분증 및 체포영장 사본을 보여주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하였다.

나) 날개찍기 고문 부분

이미 진정인의 수법 및 통화내역 등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다른 더 큰 범죄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 이미 분석한 ○○○경찰서 관내 DVD방 강도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진정인이 처음에는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하였으나 통화내역을 토대로 당일 행적 등에 대해 물으면서 CCTV자료 등 증거가 있다는 말을 하자 머뭇거리다가, 진정인에게 뒤로 채워진 수갑을 풀어 앞으로 채우고 담배를 물려주며 생각할 시간을 주자 진정인은 몇 분 정도 생각하다가 자백을 시작하였다. 진정인은 날개찍기 고문을 통해 4회에 걸쳐 절도 및 강도 건에 대해 자백하였다고 진정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며 우리가 그의 통화내역 및 타 관내 강도사건 등을 분석하여 그 자료

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를 제시하자 스스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강도강간, 절도 등 모두 8회에 걸쳐 범행을 했다고 자백을 한 것이다.

3) 피진정인 양○○

진정인의 고문당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는 이미 진정인의 통화내역을 모두 분석해 놓은 상태였고 타 지역의 강절도 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있음을 확인시키면서 자백을 받은 것이다. 나이가 어렸던 진정인은 마음의 동요가 커 쉽게 시인을 하였다.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최근 ○○○○경찰서 강력○팀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이슈가 된 후에야 진정을 한 것은 그 주장에 신빙성 및 진정성이 없다.

4) 피진정인 조○○

정○○ 경장, 정○○ 경장과 양○○ 경사가 진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을 때, 본직은 다른 성폭범 위반사건 피의자인 한○○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서류를 준비하고 있었다. 본 진정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

1) 임○○(진정인의 누나)

2010년 3월이나 4월경 진정인을 ○○○구치소에서 면회할 때 진정인은 경찰관들한테 고문을 당했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교도관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적고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사실확인으 하기 어려웠다.

2) 남○○(변호사, 진정인 변호인)

진정인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변론을 맡았는데 2010년 8월경 항소심 변론종결 후에 진정인이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일명 ‘날개꺾기’라는 고문을 당했다고 하였다. 피해 주장도 구체적이고 당시 진정인이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다

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고문피해 주장을 한 것을 보면 주장의 신빙성이 있어 보였으며, 진정인이 고문피해 주장을 일찍 하지 않고 항소심 단계에서 한 까닭은 체포 직후 범행에 대해 전부 자백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제기할 생각 자체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윤○○(피진정인들이 소속한 강력○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1)

경찰관들은 2010. 4. 7. 10:30경 ○○시 ○○동 소재 본인의 자택 부근에 도로 위에서 체포하여 승합차에 태우고 ○○ ○○구 ○동 소재 ○○○○○○고등학교 부근 공터로 차를 이동하여 세운 뒤 차안에서 범행사실을 자백하라고 추궁 하였으나 자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활정보지를 감아 양 손목을 등 뒤로 하여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수갑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약 30여분 동안 일명 ‘날개꺾기’라고 불리는 고문을 하였다.

4) 이○○(피진정인들이 소속한 강력○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2)

2009. 5. 29. 체포 당시 살던 집이 ○○시 ○○구 ○○동 소재 오피스텔 9층이었는데, 1층 로비에서 형사 3명에 의해 체포되었고 형사들이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해 ‘무쏘’차량 안에서 고문을 당하였다. 형사들이 나를 체포하면서 수갑을 뒤로 채웠는데 자신들이 “왜 체포하러 왔는지 아느냐?”고 물어 처음에는 부인하였다. 내가 그 상태로 차에 타면서 뒷 수갑이 쪼여서 아파 좀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형사 중 1명이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하면서 뒷 수갑 팔을 꺾어 올렸다. 형사들은 내가 예전에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지능범죄팀 수사사건 전과사실을 들먹이면서 “우리가 지능범죄 수사팀하고 같은 줄 아느냐?”며 2회에 걸쳐서(1회 당 3~4분 정도 소요) 총 10분 정도 고통을 주었다.

5) 강○○(피진정인들이 소속한 강력○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3)

2009. 9. 19.(토) 15:20경 ○○ ○○구 ○동 인근 PC방에서 형사3명에 의해 체포되었다. 형사들이 나를 차에 태워 경찰서로 가는 도중에 고참으로 보이

는 사람이 운전하는 형사에게 “조용한데로 차를 대라.”고 지시하여 학교 정문 앞 빈 공간에 차를 대고는 “네가 다 털고 가야 좋다.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네가 버틸 수 있으면 버텨라.”고 말하면서 승합차 뒷 좌석에서 머리를 짓눌러 목에 고통을 가하고, 누군가 신문지를 가져오더니 내 손목 부위를 감싼 뒤 그 위에 수갑을 짝 채우고 손목을 꺾어 올리는 가혹행위를 약 40분가량 하였다. 당시 너무 고통스러워 범행 사실을 시인하였다.

6) 염○○(피진정인들이 소속한 강력○팀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4)

2009. 9. 24. 12:00경 ○○경찰서 앞 노상에서 ○○경찰서 강력○팀 경찰관들에 의해 강도상해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은색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경찰관들은 체포장소로부터 약 5분간 떨어진 공터로 이동한 후 갑자기 뒤로 채운 수갑을 짓혀 올려 소리를 지르자 소리 지르지 말라며 허벅지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면서 “야 개새끼야! 다른 것 있는 것 알고 있으니깐 빨리 불어”라며 약 40여분간 수갑을 위로 올려 뼈가 부러질 것 같은 심한 고문을 가하여 자백을 강요하였다. 고문 후유증으로 두달 동안 팔 관절과 어깨가 움직이기 힘들었고 팔을 들어 올리면 쭈시고 아파서 두 달 내내 파스를 붙이고 살았다.

3. 관련규정

가. 「헌법」 제12조

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1조 제1항

다. 「형법」 제125조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진술서(2010. 9. 3.) 및 문답서, 참고인 임○○, 남○○, 윤○○, 이○○, 강○○, 염○○의 각 진술서 및 문답서, 피진정인들이 작성한

각 서면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진정인에 대한 체포영장,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보고서(2010. 1. 27. 작성), 종합수사결과보고서, 구속영장, 의견서,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현인서, 유치인 보호관 근무일지, ○○경찰서 유치장 의약품 수불대장, ○○○○지방법원 1심 판결문(2010고합00),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문(2010노0000),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인에 대한 제1회 참고인 문답서 및 제2회 참고인 문답서, 당사자 대질문답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인정사실

1)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정○○ 경장, 조○○ 경장 또는 정○○ 경장, 양○○ 경사는 2010. 1. 27. 11:20경 ○○ ○○구 ○○동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PC방’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를 받고 있는 진정인을 체포 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후 같은 날 13:10경 ○○○○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 인치시킨 후 21:50가 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하였다.

2) 진정인은 2010. 1. 27.과 2. 2.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피진정인 정○○에 의해 제1회 및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강도, 강간 및 절도 등 총 8건의 피의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을 하였다.

3) ○○○○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10. 4. 16. 진정인의 피고사건(2010고합00)에 대하여 진정인을 징역 12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법원 제○형사부는 2010. 10. 1. 진정인의 항소심 사건(2010노0000)에 대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은 2010. 12. 23. 진정인 상고사건(2010도00000)의 상고를 기각하여 진정인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다.

4) 진정인이 피진정인들로부터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및 고문을 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1) 피진정인 특징에 대하여

진정인은 자신을 체포하러 ‘○○PC방’으로 들어온 경찰관이 정○○은 명확하고, 조○○로 추정된다고 주장하지만 피진정인들은 조○○이 아니고 정○○라고 하고 있다.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포관련 수사보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측이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 특징과 관련하여 다른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피진정인 조○○과 정○○ 중 1인이 체포현장에 출동한 사실은 명백하고 진정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진술한 내용(사무실 출입문에 들어가서 오른쪽 측면 첫 번째 자리(피진정인 조○○ 자리)에 앉는 형사였다, 다른 형사들과의 대화 말투를 보면 강력○팀 내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형사(정○○는 00년생이고 조○○은 00년생임)인 것 같았다, 키가 진정인 키보다 작았다(피진정인 조○○의 키는 약173cm, 피진정인 정○○의 키는 약180cm, 진정인 키는 약178cm 등))이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위 정○○와 조○○을 함께 피진정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미란다원칙 고지 여부에 대하여

진정인은 체포당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들이 명백히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에 진정인이 직접 서명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진정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피진정인들의 고문 여부에 대하여

가) 진정인의 고문피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

먼저 진정인이 피진정인들로부터 고문을 당하였다는 진정요지를 뒷받침하는 중

거가 있는지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고문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고 할 것이나 개념적으로 증거를 분류하면 ① 진정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② 고문으로 인해 신체에 남는 흔적(진단서, 현인서, 의료기록부 등의 기재내용), ③ 목격자의 진술, ④ 고문 직후에 고문피해자가 주변 사람 등에게 말한 고문관련 진술, ⑤ 기타 정황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②, ③에 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①, ④, ⑤에 관한 증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한다.

나) 진정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1) 진정인은 2010. 6. 29. ○○○구치소 접견실에서 윤○○이 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사건(10진정3424) 참고인으로, “체포 당시 총 3명의 형사가 출동하였는데 1명은 밖에서 대기하고 2명에게 체포되어 ○○동 버스가 안다니는 길, 사람이 드물고 차들도 별로 안다니는 그 쪽으로 데리고 가서 차를 세운 후 형사가 밖으로 나가 전화통화를 하고 나머지 두 분은 ”네가 무엇 때문에 체포되었는지 아느냐“라고 해서 처음에는 부인하였는데 그러자 체포 당시 뒷 수갑을 꽉 쏘여 아프게 하더니 젊은 형사 한분이 ”그럼 자백할 때 까지 여기 있다.“며 뒷 수갑을 들어올렸다. 제 얼굴이 차량 방석에 처박히며 엉덩이가 뜨자 누군가 등을 발로 눌러가며 약 4회 걸쳐 30여분 정도 고문을 하였다. 너무 아파 몸부림을 쳤더니 계속하여 ”네가 뒷 때문에 체포된 지 아느냐“고 물었고 ”모릅니다.“라고 하였더니 계속 가혹행위를 하여 ”한건 하였다.“고 하자 재차 가혹행위를 하면서 ”정말 한 건 밖에 없느냐“라고 하여 ”그렇다“라고 하였습니다, “조사받은 자리는 경장 정○○ 자리인데 그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형사인 듯 하였다. 체포자는 조○○, 정○○, 양○○입니다.”, “당시 벨벳 긴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가혹행위를 할 때에 수갑사이에 옷소매를 끼워 넣고는 꽉 조인 후 날개찍기를 하였다.”라고 진술 하였다.

(2) 진정인은 2010. 7. 5. ○○○구치소 접견실에서 ○○욱이 제기한 진정사

건(10진정3424)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조사관이 진정인을 체포하고 고문했다는 경찰관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좌석배치도상 출입구에 들어가서 왼쪽에서 첫 번째 자리(정○○)하고 두 번째 자리(양○○), 오른쪽 첫 번째 자리(조○○) 형사가 체포한 것이 맞다.”, “(조사관이 고문장소를 설명해달라고 하자) PC방 앞 네거리에서 서부간선도로 방향으로 가다가 막히는 도로가 나오는데 그곳에서 우회전 한 다음 조금 가다가 바로 섰다. 주변에 차들이 많이 다녔고 도로상에 세웠는데 사람들은 잘 안다니는 곳이었다. … 그곳에서 제 기억으로는 30분에서 40분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후 ○○병원 쪽으로 이동하여 경찰서쪽으로 이동하였다.”, “(수갑을 들어올린 형사를 묻자) 왼쪽 첫 번째 좌석 형사(정○○)와 오른쪽 첫 번째 좌석 형사(조○○)가 가혹행위를 하였고 왼쪽 좌석 두 번째 형사(양○○)는 운전을 하였다.”, “(진정인이 고문을 당했다는 증거라는 취지로) 체포장소에서 ○○서까지는 채 10분도 안 되는 거리인데 제가 가혹행위를 당한 것이 있으므로 이동시간이 최소한 40분은 넘게 소요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진정인은 2011. 6. 27. ○○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이 제기한 진정사건(10진정4198) 진정인으로, “(조사관이 몇 번 정도 고문 등 가혹행위를 했는지 묻자) 정확히 몇 번 정도 당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3번 정도 당 하고 자백을 하기 시작했다.”, “(조사관이 무슨 내용의 자백을 했는지 묻자) 처음에는 절도건만 자백했는데 ”또 없냐?“고 해서 ”없다“고 하니까 다시 가혹행위를 해서 다음에 ○○○ DVD방 강도건을 자백했는데 ”우리가 그 건 때문에 왔다“고 하고 ”또 없냐“고 물어 ”없다“고 대답했는데 또 계속하여 고문을 해서 결국 모두 자백하게 되었다.”, “(진정인이 모두 자백한 뒤에 경찰관들의 태도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조사관이 묻자) ”더 없냐“고 물어 내가 ”죽어도 없다“고 하자 다시 한번 ”또 없냐“고 물어 ”죽어도 없다“고 답변하자 그때서야 고문을 멈추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진정인은 2011. 7. 22. ○○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이 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사건(10진정4198) 진정인으로, “(조사관이 진정인에게 차량 안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내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체포된 후 스타렉스 차 뒷좌석에 앉은 뒤 형사1명이 ”너가 왜 체포되었는지 아느냐“고 물어 ”모른다“고 하니 ”잘 생각해 봐라“고 하면서 담배 한 대를 주었다. 그 때 형사 한분은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제가 담배를 다 피우자 꾀초를 버리라고 종이컵을 주었다. 그런 뒤에 저를 담당한 형사가 와서 ”잘 생각해봤냐“고 해서 ”잘 모르겠다“고 하자 수갑을 뒤로 채우더니 ‘날개꺾기’를 시작했다. 제가 아파서 소리쳤고 ”절도만 했다“고 했더니 ”또 없냐“고 물어 ”없다“고 하니까 다시 ‘날개꺾기’를 시작했다. 고통을 못 견디어 ”○○○ 강도 1건 했다“고 자백했는데 ”또 없냐“고 물어 ”하나 더 있습니다.“고 했더니 ”어떤 거냐?“고 물어 ”DVD방에서 한 거다“고 자백했다. 이렇게 자백하고 나니 ‘날개꺾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5) 소결

이상과 같이 위원회는 진정인을 총 4회에 걸쳐 조사를 하였는데, (2번은 참고인으로 다른 2번은 진정인으로 조사를 하였음) 진정인이 가혹행위를 당한 상황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면 “뒷 수갑을 채운 뒤 경찰관 1명이 수갑을 들어올리면서 다른 1명이 진정인의 몸을 발로 누르는 방식의 ‘날개꺾기’라는 고문을 당했다”, “고문을 당한 시간은 약30여분 정도 된다.”, “고문을 당하여 자백을 하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 절도범행을 자백하고 다음에는 ○○○ DVD방 강도 등을 자백했다”는 등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진술한 것을 볼 때 대체로 진정인의 진술은 그 구체성과 일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고문 직후 피해 진술 및 유사피해자들의 고문관련 진술

(1) 진정인의 누나인 임○○은 2010. 3.~4. 경 진정인을 만나러 ○○○구치소에 면회를 갔는데, 그 때 진정인으로부터 경찰관들에 의해 고문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진정인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2010. 1. 말경을 전후하여, 당시 강력○팀 경찰관들에 의해 ‘날개찍기’ 방식의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들이 모두 4명(윤○○, 이○○, 강○○, 염○○)이 있으며, 이 피의자들이 서로 모르는 사이라는 점, 이 피의자들이 당했다고 하는 고문의 방식이 비슷한 점(손목에 상처가 나지 않게 신문지나 옷 등으로 손목을 둘러싸고 뒷수갑을 채운 뒤 수갑을 들어 올리는 방식)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황은 진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3) 소결

이상과 같이 참고인 임○○이 진정인으로부터 고문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 피진정인들이 소속된 강력○팀에 의해 고문피해를 입었다는 유사 피해자들의 진술이 진정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라) 피진정인들의 알리바이에 대하여

(1) 확인이 필요한 사항

피진정인들의 진술과 관련 증거(체포영장, 진정인에 대한 1회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과정확인서)를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이 2010. 1. 27. 11:20경 ○○○○○구 ○○○동 소재 건물 2층 ‘○○PC방’에서 진정인을 체포하고 같은 날 13:10경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사무실에 진정인을 인치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체포지점부터 ○○○경찰서까지 거리는 약 2.06km이고 차량으로 이동시 소요시간이 약 8분(‘네이버’ 길찾기에 의함)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한 후 ○○○서에 인치시킬 때까지의 시간 약 100여분동안 피진정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피진정인 정○○은 12:50에 ○○○서로 돌아왔다고 진술하므로 이 진술에 의하면 비는 시간은 약 90여분이라고 할 수 있다.)

(2) 피진정인들의 주장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이 시간동안 진정인의 길안내를 받아 범행 현장 중 하나인 ○○시 ○○구 ○○동 소재 ‘○○ DVD’방에 현장 확인을 갔다 왔다고 주장한다.(위원회 조사 시 처음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진정인 양○○은 ‘○○ ○’DVD방 뿐 만 아니라 돈을 인출했다는 인근 은행도 방문했다고 진술하고, 피진정인 정○○은 ‘○○○’DVD방 뿐 만 아니라 ○○시 ○○구 ○○동 소재 ‘○○ DVD방’도 들렀다고 진술하여 피진정인들 상호간의 진술도 일치하지 아니 하는 가운데, 2011. 8. 19. 위원회에 출석하여서는 위 ‘○○○’DVD방이 아니고, ○○ DVD’방과 인근 은행, ‘○○수퍼’를 들렀다고 진술내용을 반복하였음). 피진정인들은 체포 당일 약 12:00경 ‘○○ DVD’방에 현장 방문을 하였으나 아직 문을 열기 전이어서 같은 건물 1층 식당 종업원에게 경찰관이 왔음을 알리게 하고 특히 피진정인 1은 위 DVD방 주인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아내 주인과 통화했던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총 소요 시간 등

(가) 위원회의 현장조사결과에 의하면, ‘○○PC방’에서 ‘○○슈퍼’까지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다. 피진정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진정인을 체포한 후 차량 안에서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한 후 진정인이 자백하자 ‘○○슈퍼’에 들러 종업원에게 진정인이 접착용 테이프를 구입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고 한다. 진정인에 대한 조사시간을 제외한 이동시간만 계산하면 ‘○○PC방’에서 ‘○○슈퍼’까지 이동한 후 위 종업원에게 진정인이 테이프를 구입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어 위 슈퍼 뒤편 주택가에 위치한 진정인이 범행도구인 과도와 박스 테이프를 버린 ○○시 ○○구 ○○동 소재 ○○빌라 출입문 좌측 쓰레기더미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전체시간은 최소 15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나) ‘○○슈퍼’에서 ○○구 ○○동 소재 ‘○○ DVD’방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피진정인들이 진술한 바와 같이, ○○시 ○○구 ○○동 소재 주변은 상업시설 밀집지역으로 주차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건물 3층에 위치한 ‘○○ DVD방’에 올라가

영업개시 이전임을 확인하고, 다시 내려와 건물 1층에 위치한 ‘○○○’식당에서 경찰의 방문을 알리고 약 150m 정도 떨어져 있는 신한은행에 들렀다면 이에 걸리는 시간이 있을 것인바, 최소 15분 정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이어, 피진정인들이 ‘○○○’식당에서 ○○경찰서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상과 같이 피진정인들의 주장에 의한 체포 당일 행적 상 총 소요 시간은 90여분으로, 이 시간 동안 위 모든 행위를 하였을 뿐 만 아니라 체포 직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던 진정인을 설득하여 진정인으로부터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자백을 받아내어서 범행현장으로 가는 길안내까지 받았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라) 한편, ‘○○○’식당의 사장(여)은 “식당 운영을 약 30년간 같은 장소에서 하였고, 평소 12:00경에는 식당에 나와 있는데, 작년 1월경에 경찰관들이 식당을 방문한 적이 없고, 같은 건물 3층 ‘○○ DVD방’ 전화번호나 사장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지 않다”고 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이 약도로 그려준 고문장소를 확인하였는바 체포 장소에서 약 5분 정도 이동하면 인적이 드물고 차량만 다니는 장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소결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한 후 ○○경찰서로 돌아온 때까지의 시간 약 90분 동안 피진정인들이 주장하는 동선의 움직임이 가능한지 의심스럽고, 특히 피진정인들의 진술이 일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번복되고 있는 점, 진정인의 고문장소의 위치적 상황을 묘사한 진술이 실제 현장 모습과 일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의 알리바이 주장은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최종 판단 및 조치의견

이상의 판단내용을 종합해 보면, 진정인의 고문 피해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러한 진정인의 주장이 참고인 임○○의 고문 피해 정취 진술 및 강력○팀에 의한 유사 고문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되는 점, 이에 반하여 피진정

인들의 체포 당일 행적이 불투명한 점 등을 비추어,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문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는 바, 이는 「고문방지협약」 제1조(고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고, 궁극적으로 진정인의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에 대한 수사를 함에 있어 「헌법」 및 「고문방지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고문행위, 「형법」 제125조에 정한 범죄행위를 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검찰총장에게 이에 대하여 수사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하도록 수사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수사의뢰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2. 적법절차 위반

1

2009. 12. 7.자 08진인3598결정 [구속사실 미통지에 따른 인권침해]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구속영장이 집행된 경우 구속영장 집행자의 구속사실 통지의무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령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구속사실이 미 통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이 사건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교도소에서 구속영장집행 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통지해주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5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법무부에서도 구속사실 통지의무를 법원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고, 구속사실 통지의무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일선 교도관의 직무사항이라고 명시된 근거 법령이 없어서 「형사소송법」 제87조에 의한 구속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사안의 경우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와 같은 법적 미비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법령개정 전이라도 구속사실 미 통지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81조, 「형사소송법」 제87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6조(체포의 통지),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영장의 집행)

【진 정 인】 ○ ○ ○

【피 해 자】 ○ ○ ○

【피진정인】 1. ○ ○ ○

2. ○ ○ ○

3. ○ ○ ○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형사소송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구속영장이 집행된 경우 구속영장 집행자의 구속사실 통지의무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령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구속사실이 미 통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모인 피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2007고단○○○사건과 2008고단○○○사건에 대한 선고결과에 불복하여 각각 항소하였고 전자는 ○○○지방법원 항소1부에서 항소심(2007노○○)사건을 담당하고, 후자는 같은 법원 항소2부에서 항소심(2008노○○)사건을 담당하여 사건을 진행하던 중 위 항소1부가 피해자에게 법정구속을 명하여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항소1부 재판부에 대해 재판기피신청을 제출하여 항소2부에서 진행하던 사건에 비해 공판절차 진행이 지연되었다.

가. 1심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았음에도 항소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위의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항소1부 공판 중 법정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 중 항소 ○○○판사는 2008. 7. 9. 항소2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같은 달 25. ○○○교도소 사법경찰관리 ○○○교사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구속영장을 집행하고도 구속사실을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아 인권침해를 받았다.

다. 항소2부 사건과 관련 대법원 확정판결에 “구금일수 30일을 산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항소2부 판사가 발부한 영장집행일인 2008. 7. 25.부터 확정판결일인 2008. 9. 11.까지는 판결문에 명시된 30일에서 19일이나 초과 구속한 것으로 부당한 처우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

가) 피해자의 1심판결과 관련하여,

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는 ○○○지방법원 1심판결에서, 2007고단 ○○○사건에 대해 징역6월을, 2008고단 ○○○사건에 대해 징역4월을 선고 받았다.

나) 항소심 판결 및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1) 위 피해자는 두 판결 모두에 대해 항소를 한 결과 ○○○지방법원 항소1부는 전자의 사건의 항소심을, ○○○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항소2부는 후자의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되었다.

(2) 그런데 2007노○○○○사건 재판부인 항소1부는 공판절차 진행 중 위 피해자가 법정에서 구속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동 재판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는 바람에 공판절차의 진행이 늦어지게 되었고 그 결과, 나중에 항소된 2008노 ○○○ 사건이 먼저 진행되어 항소2부는 2008. 6. 19. 위 피해자의 항소를 기각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항소2부는 2008. 6. 19. 위 항소기각 판결 선고 당시 위 피해자의 항소1부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상태였으므로 굳이 구속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같은 해 7. 9. 위 피해자에 대한 2007노○○○○ 사건의 미결구금일수가 동 사건의 1심 선고형량 6월에 가까워진다는 점을 알게 되어 위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었다.

다) 구속영장의 집행 및 구속통지와 관련하여

(1)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다른 범죄로 선고를 받은 형의 집행 중에 있거나 별개의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그 선고받은 형의 만기가 다가오거나 별개 범죄의 구속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경우 피해자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 다른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해자를 구속하며, 피해자와 같이 별개의 범죄 집행 또는 별건 구속으로 이미 교도소에 수용된 상태의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교도소의 교도관이 집행을 하게 되었다.

(2) 「형사소송법」 제87조 제2항은 피해자를 구속한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 변호인 등에게 구속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통지의 주체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이른바, 법정구속의 경우 법원이 통지를 하고 있으나 동 사건과 같이 교도관이 집행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집행을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구속통지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2) ○○○

위의 건은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이 그 집행을 지휘한 건이나 검찰에 의한 영장청구 사항이 아니라 법정구속 사항으로 법원에 문의하여야 할 것이다.

3) ○○○

교도소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할 시 피해자의 가족에게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자료,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 등을 살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지방법원 1심판결에서 2007고단 ○○○사건에 대해 2007. 10. 11. 징역6월을, 2008고단○○○사건에 대해 2008. 4. 8. 징역4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는 두 판결 모두에 대해 항소를 한 결과 ○○○○지방법원 항소1부는 전자 사건의 항소심을, 항소2부는 후자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다. 항소1부는 2008. 1. 25. 2007고0000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 피해자를 법정에서 구속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사유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하여 같은 해 2. 20.부터 3. 20.까지 구속기간이 정지된 사실이 있다.

라. 항소1부는 2008. 7. 18. 2007고2633 사건에 대해, 항소2부는 같은 해 6. 19. 2008노915사건에 대해 각각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

마. 2008. 7. 9. 항소2부 재판장 0000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교도소 교도관 ○○○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같은 달 25. ○○○교도소에서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있다.

바. 피해자는 위 두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대법원은 2009. 5. 28. 전자의 사건에 대해, 2008. 9. 11. 후자의 사건에 대해 각각 상고를 기각하

는 판결을 한 사실이 있다.

사. 피해자는 전자의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어 2008. 7. 24.이 형기만료일이었으나 같은 달 9. 발부된 후자의 사건 구속영장이 같은 달 25.에 집행된 사실이 있다.

아. 후자의 사건에 대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이후 법원, 검찰청, 교도소에서 피해자의 구속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자. 법무부는 교도소일 경우 가족 등에게 구속사실 통지의무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의견조회에 대해 “집행기관은 가족에게 통지의무가 없으며 통지의 주체는 법원”이라고 회신을 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이 2008. 11. 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3조에 의거 각각 대법원 및 검찰청에 사건 이송을 위하여 같은 날 이송 종결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의 집행 및 통지의무와 관련하여 「형사소송규칙」 제52조에서는 법원과 법관을,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3조의2(체포·구속의 통지 등)는 사법경찰관을 통지의 의무자로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검사의 지휘를 받아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한 경우에는 ‘교도관은 ○○○에게 구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규정이 없어 마치 「형사소송규칙」 제52조에 의거 법원에게 고지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해석되어질 수 있으나 「형사소송규칙」 제52조에 명시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72조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과 범죄사실 등의 고지를 할 때라 함은 피해자를 구속함에 있어 법원에 의한 사전후 청문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모 134결정) 법원 또는 법관이 고지의 주체가 되는 것은 재판장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87조에 명시된 구속의 통지는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구속영장 집행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바, 구속영장의 집행기관이 영장집행 후 하여야 하는 절차상 의무로서 이 사건 의 경우 집행기관인 ○○○교도소가 피해자의 구속사실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이 사건의 구속영장을 집행한 ○○○이 구속영장집행 후 피해자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주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2조 제5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법무부에서도 구속사실 통지의무를 법원의 의무로 인식하고 있고, 구속사실 통지의무가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일선 교도관의 직무사항이라고 명시된 근거 법령이 없어서 「형사소송법」 제87조에 의한 구속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사안의 경우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와 같은 법적 미비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법령 개정 전이라도 구속사실 미 통지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2

2010. 1. 25.자 09진인4260결정 [부당증거 수집 등에 의한 인권침해]

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의 주거지 및 진정인의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캠코더 촬영을 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진 정 인】 ○ ○ ○

【피진정인】 1. ○ ○ ○
2. ○ ○ ○
3. ○ ○ ○

【주 문】 1.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과 다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은 2009. 10. 1. 000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였고 다음 날 11:00경 피진정인 1(000경찰서 정보과 000)과 피진정인 2(000경찰서 정보과 000)가

진정인에게 집회금지통보서를 전달하기 위해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진정인이 피진정인 1로부터 집회금지통보서를 수령하고자 문을 여니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집 계단 아래에서 캠코더로 진정인의 집을 향해 촬영을 하고 있었다. 당시 잠옷차림이었던 진정인은 위 모습에 놀랐고 수치심을 느꼈다.

나. 진정인은 진정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캠코더를 본 순간 피진정인 2를 향해 슬리퍼 한 짝을 던졌고, 이에 피진정인 2가 캠코더를 들고 도주하였다. 진정인이 현관문 밖에 서 있던 피진정인 1을 잡아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의 신분을 밝히도록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1은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진정인의 손목을 비틀고 도주하였다.

다. 위 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인 000경찰서에 민원을 접수하고 당사자들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가해 당사자들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무시를 당하였다. 동 민원을 접수받아 상담을 해준 피진정인 3은 특별히 통화를 해야 할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자정이 넘은 시간에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 1)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000경찰서 정보과 소속 000, 000)

2009. 10. 1. 18:00 이후 진정인이 000경찰서 정보과에 접수한 집회신고 건에 대한 통보서를 전달하기 위해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같은 달 2. 11:00

경 진정인의 거주지로 방문하였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집에 도착하여 집회금지통고서를 직접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이 집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계속하여 수령을 거부하여, 집회금지통고서를 직접 송달하지 못하고 차후 금지통고서 전달사실을 입증하고자 우편함에 집회금지통고서를 넣는 장면 등을 촬영한 것으로 진정인을 촬영한 것은 아니다. 또한, 진정인의 거주지 우편함에 집회금지통고서를 넣고 동 사항을 진정인에게 고지하고자 다시 방문하여 진정인의 집 문 밖에서 금지통고서를 우편함에 넣었음을 고지하고, 고지사실에 대해 증거자료를 남기고자 촬영하던 중 진정인이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슬리퍼 한쪽을 던지고 욕설을 하며 따라와 진정인과의 물리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 이동한 것이며, 진정인의 손목을 비틀거나 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3의 주장요지(000경찰서(000경찰서가 맞는 것인지 1쪽 상단 피진정인 3의 소속이 안산경찰서로 되어 있음) 정보과 000)

피진정인 3이 당직을 서던 2009. 10. 2. 오후에 진정인이 진정내용을 사유로 112에 신고를 하고 000경찰서에 찾아와 진정인의 집을 찾아온 직원들 이름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여 당시 현장에 찾아간 직원들의 직급과 성명을 적고 서명 날인하여 진정인에게 전달하였다. 피진정인 3은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정보관으로서,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직급, 성명을 밝힌 후 촬영하게 되는데 경찰관들이 진정인의 진술과 같이 했을 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집회금지통고서 수령 후 이의신청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 약 5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귀가토록 안내한 사실이 있다.

이후,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진정인이 오후 3시경 전화를 하여 다짜고짜 “왜 사과하러 보내지 않아요?”라고 소리를 질러서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저는 000 정보관입니다. 누구를 사과하러 보냅니까?”라고 하니 진정인이 “내일 서장실로 쫓아 갈 거야.”라고 한 후 전화를 끊었다. 같은 날 집에 도착하여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니 21:00경 진정인이 발신한 부재중 전화기록이 있었다. 낮에 진정인과의 통화내용도 있고, 서장실로 찾아온다는 진정인의 말도 걱정이 되어 24:00가 늦은 시간이라서 망설이다가 그간 진정인과 상담하였던 일도 있고 하여 진정인의 민원내용을 듣고자하는 마음에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시간이 너무 늦어 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나, 21:00경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를 하셨는지요?”라고 하니, 진정인이 갑자기 밤 12시경에 전화하였다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후, 진정인과 통화를 할 기회가 있어서 피진정인 3이 “내가 밤 12시에 전화한 것이 그렇게 결례이고 싫었나요? 아주머니가 저녁 9시에 저에게 전화하신 것은 결례가 아닌가요?”라고 하니 진정인이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부재중 전화에 대한 답으로 전화를 하여 사유를 물어본 것인데 인권위에 성희롱을 하였다며 진정을 하였다니 당황스럽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0. 1. 18:00경 000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접수하였고 다음 날 11:00경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하였다.

나. 2009. 10. 2.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주거지인 000동 000번지에 도착한 시점부터 집회금지통고서를 진정인의 우편함에 넣는 장면 및 진정인이 자택 현관문을 열기까지의 과정을 캠코더로 촬영하였고, 위 촬영내용에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방문사유와 관등성명을 밝힌 부분이 촬영되어 있다.

다. 진정인은 같은 날 11:30경 캠코더 촬영중인 피진정인 2에게 슬리퍼 한 짝을 던졌고 이에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도주를 하였다.

라. 2009. 10. 2. 진정인이 위 사실과 관련하여 112에 신고하고 000경찰서를 방문하여 피진정인 3과 상담을 하였다.

마. 2009. 10. 5. 19:00~21:00경 진정인이 피진정인 3에게 전화를 하였고, 부재중 전화를 확인한 피진정인 3은 다음 날 00:04경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바. 2009. 10. 7. 진정인이 진정요지 가항을 사유로 피진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였고, 2009. 10. 14.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에게 ‘적법한 공무수행이었다’라고 통지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집회금지통고서를 전달하는 과정을 촬영한 것이 사실로 인정된다.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을 방문할 당시 진정인이 집안에 있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등 계속하여 집회금지통고서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이를 직접 송달하지 못하는 사유 및 추후 금지통고서 전달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캠코더로 통고서 전달과정을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캠코더 영상 확인결과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주소지에 도착한 시점부터 촬영을 시작하였다는 점, 진정인과의 문답내용이 녹음되어 있는 점, 진정인이 분홍색 상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점, 피진정인 2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점, 캠코더 촬영을 하는 피진정인들을 향해 진정인이

항의하며 슬리퍼를 집어던졌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1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인의 주거지 및 진정인의 모습을 캠코더로 촬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상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또한 본인의 동의 없이 캠코더 촬영을 함으로써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는 「헌법」 제 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2의 감독자인 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및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이 관등성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진정인의 팔의 비틀고 도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이 현장에서 촬영한 캠코더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자택을 방문하여 방문사유와 관등성명을 밝힌 사실이 있음이 입증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손목을 비틀고 도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주장내용이 다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 3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정이 넘은 늦은 시간에 민원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행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당시 정황 상 2009. 10. 5. 낮 근무 중 진정인이 관련자들의

사과요구 등을 요구하며 서장실로 찾아가겠다고 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피진정인 3에게 전달한 점, 같은 날 19:00에서 21:00 사이에 진정인이 피진정인 3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진정인 3이 전화를 받지 못하고 부재중 전화번호만 남은 사실, 진정인에게 전화를 받지 못한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전화한 사유에 대해 묻고자 전화하였다는 피진정인 3의 진술내용, 전화를 하여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뭘 도와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진정인이 “늦은 시간에 전화하면 어떻게 하나?”라며 진정전화를 끊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3이 늦은 시간에 전화를 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할 만한 언행을 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3

2010. 11. 26.자 10진정124000결정 [부당한 임의동행 및 권리 미고지에 따른 인권침해]

피진정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주의’조치 권고

【결정요지】

경찰관이 수사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사건관계인을 수사관서로 동행할 경우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아직 체포·구속 이전의 상태이므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음. 따라서 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을 수사관서로 동행하기에 앞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과 동행과정에서 자유로이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음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하며 사건관계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의 자발성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임의동행 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6.선고 2005도6810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제1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제51조

【진 정 인】 신○○

【피진정인】 1. 김○○

2. 이○○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에게 ‘주의’조치할 것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10. 3. 24. 20:00경 ○○시장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경찰 2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절도사건과 관련 조사할 것이 있다며 진정인의 양쪽 팔을 낀 상태로 팔을 꺾어 강제로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동행하였다.

나. ○○경찰서 형사계로 데려온 진정인을 두 시간이 넘도록 조사도 하지 않고 내보내달라고 해도 들어주지 않은 채 절도범이라고 지목한 사람이 경찰서로 오고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하였다.

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절도범으로 지목되었기 때문에 사진촬영을 해야 한다.’라고 하며 동의도 없이 사진촬영을 하였고 나이 어린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마구 반말을 하며 인권침해를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들은 2010. 2. 9.부터 2010. 4. 5. 까지 보근근무를 명받아 형사 외근활동을 하던 중 3. 15. 정보원으로부터 ○○시장에서 음식점 장사를 하는 피해자 권○○이 2010. 1. 29. ○○장날 저녁 자신의 승용차 안에 있던 현금 120만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놓고 가게 문을 닫는 사이 어떤 남자가 숨어 있다가 손가방을 가져갔다는 제보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 상황을 청취한 바,

2) 진정인의 모습이 당시 가방을 가져간 남자의 뒷모습과 비슷하고 ○○ 장날 만 되면 저녁 마감시간에 맞추어 주변 음식점을 들여다보고 도망가고, 자신이 무슨 조폭인 것 같이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늘 혼자 주변 음식점에 가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고 하며 관할 ○○○○경찰서가 아닌 인접 서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하여 용의자로 지목된 진정인이 소재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주장처럼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3. 19., 3. 20. 주변인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한 사실이 있다.

3) 진정사건 발생 당일인 3. 24. 2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앞 음식점에서 진정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피진정인들이 ○○시장에 가서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다며 경찰서에 같이 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4) 이에, 술에 취한 진정인은 피진정인 중 이○○의 신분증을 음식점안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피진정인들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다가 약 20여분간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같이 가겠다고 하여 동행한 사실이 있다.

5) 진정인은 경찰서에 도착한 후 자신의 잠바가 음식점 안에 있다고 하여 피진정인 2가 가서 가져와 진정인에게 전하였고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여 얼굴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하니 찍게 해달라고 했으나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내가 뭘데 찍으려고 하느냐.”며 촬영을 거부하여 촬영은 하지 못하였다.

6) 피진정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진정인의 잠바 주머니에서는 조그만 메모장이 수십장 발견되었고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들이 늘 자신을 감시한다. 자기를 정부기관에서 암살을 하려한다. 죽고 싶다. 등의 내용이 빼곡히 적혀있고 동 사항을 진정인이 보여주어 확인한 강력○팀장은 진정인이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니까 그냥 보내주라고 하였고 이 말을 들은 진정인은 ”정보원 뿌락지 새끼들 데려올 때는

언제고 나 안가 담배나 줘 바.”라고 하여 같은 팀 소속 김○○이 경찰서 흡연장소로 데려가 담배를 주며 달래 보낸 적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서, 전화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3. 24. 20:20경 ○○ ○○시장 내 음식점에서 피진정인들에 의해 ○○경찰서까지 동행되었다.

나. 사건 발생당일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얼굴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다.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임의동행 동의서를 징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없으며 변호사 선임 및 임의동행 거부권의 고지, 언제든지 동행장소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음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

라.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문에 ‘수사관은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할 경우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거부권을 고지하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의 경우 강제로 연행하고 감금하였다는 진정인의 주장의 경우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설득하여 동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도 피진정인과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어 피진정인이 강제로 연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찰관이 수사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사건관계인을 수사관서로 동행할 경우 상대방의 신체의 자유가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 상태에 놓이게 됨에도 아직 정식으로 구속 및 체포되기 이전의 상태이므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서 보장하는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의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관은 사건관계인을 수사관서로 동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에 대한 고지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 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음에 대한 고지를 하여야 하며 사건관계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명백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할 것인바 당사자의 자발성에 대한 입증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임의동행 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한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다.항의 경우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사진 촬영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술내용에서 팔로 얼굴을 가렸다고 진술하였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인에 대한 정확한 신원을 확인시키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이 얼굴을 가려 촬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진정인이 얼굴을 가리고 촬영을 거부한 상태에서 촬영을 한다하더라도 용의자가 누구인지 인식이 가능할 정도의 사진을 촬영할 수 없는 정황 등으로 보아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사진을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진정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인권침해를 했다는 주장의 경우 피진정인의 주장이 진정인의 주장과 상반되어 진정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어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황덕남 위원 장주영

4

2011. 6. 15.자 11진정0009600결정 [경찰의 체포사실 미통지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구속사실을 진정인의 가족 등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87조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00조, 제51조제2항

【진 정 인】 ○ ○ ○

【피진정인】 ○ ○ ○

【주 문】 ○ ○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 1319팀 소속 피진정인 ○ ○ ○ 경사는 2010. 1. 20. ○ ○ 경찰청에서 진정인 ○ ○ ○ 을 구속한 후 「헌법」 제12조제5항, 「형사소송법」 제209조, 제8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진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구속사실 등을 통지하여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6. 통지함으로써 그 통지를 지체하여 진정인 및 그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은 2010. 1. 20. 진정인에 대하여 구속을 집행하였으며, 같은 달 21.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넘어갔던 기록을 수령한 뒤 가족에게 전화로 구속사실 등을 통지하고 구속통지서를 작성하였다. 피진정인이 같은 달 22. 구속통지서를 경무계에 접수시켰으나, 경무계 직원이 같은 달 23.(토), 24.(일)이 주말이어서 같은 달 25.(월) 구속통지서를 우체국에 접수시킨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통지가 늦어진 것일 뿐 피진정인의 잘못으로 통지가 지체된 바는 없다. 또한 피진정인과 같은 팀 팀원인 안미영 경장이 진정인을 구속한 직후 진정인 가족에게 전화통지를 하였으며, 이는 같은 날 구속된 다른 피의자 김천규, 김노현의 가족들에게 전화통지한 사실을 보아도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의 딸)

2010. 1. 26. 경찰로부터 구속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기 전인 같은 해 1. 24. ○○교도소로 아버지를 면회하러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경찰한테서 전화 통지를 받아서가 아니고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이 “아버님이 ○○교도소에 잡혀있는 것 같다. 피해자 쪽 사람이 아버님을 상대로 고소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해줘서 교도소에 찾아가는 것이다.

2) ○○○(진정인의 배우자)

딸(○○○)과 함께 2010. 1. 24. ○○교도소로 남편인 진정인을 면회하러

간 사실이 있다. 남편이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은 내가 다니는 교회의 지인인 홍○
○이 말해주어서 알게 되었다.

3) ○○○(진정인의 지인)

2010. 1월에 ○○○ 씨가 갑자기 실종이 되어 가족들은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
가신 줄 알았다. 당시 119에도 신고하고 핸드폰 추적 신청도 했고 경찰서에 신고
도 했지만 “핸드폰 추적이 안 된다.”, “모르겠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그래서 목
사님이 예배 볼 때 ○○○ 씨를 하느님이 보살펴달라는 내용의 예배를 했는데
예배가 끝난 후 모임에서 서○○씨라는 분이 “왜 목사님이 저런 기도를 하느냐?
○○○ 씨는 ○○에 있는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 피해자 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데 ○○○ 씨에 대해 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여 ○○경찰서에 전화해서
조회요청을 했더니 경찰관이 “맞다. ○○○ 씨는 ○○교도소에 있다.”고 말해서
○○○ 씨에게 전화로 알려주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각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
한 ○○지방경찰청의 우편물 발송대장, 참고인 ○○○이 작성한 면회신청서의
각 기재내용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1. 20. 22:30경 ~ 24:00경 ○○지방법원에서 진정인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고, 진정인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여 진정인을 ○○교도소에 인치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0. 1. 22. 진정인에 대한 구속통지서를 작성하여 ○○지방
경찰청 내 우편물 발송부서에 접수시켰으며, 발송부서 담당직원은 같은 해 1. 25.
우체국 ○○보성 취급국에 위 통지서를 접수시켰고, 진정인 가족들은 같은 해
1. 26. 위 통지서를 받았다.

다. 참고인 ○○○, ○○○은 함께 2010. 1. 24. 18:25경과 1. 25. 18:25경 ○○교도소에서 각 진정인을 면회하였다.

4. 판단

피의자 체포·구속 통지 관련 규정, 「헌법」 제12조제5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제87조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00조, 제51조제2항을 종합하면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후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구속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가족이나 변호인 등이 피의자의 체포·구속의 이유, 시기와 장소 등에 관한 체포통지를 받지 못한다면 피의자의 변론·방어를 도울 수 없을 뿐 아니라,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 또한 적지 않을 것이기에 「헌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의미에서 체포사실 등의 통지제도를 중요한 적법절차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피진정인이 진정인 가족들에게 구속사실 등의 통지를 적법하게 하였는지를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구속한 2010. 1. 20.로부터 24시간을 훨씬 초과한 같은 달 26.에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헌법」 등의 구속 통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2010. 1. 21. 진정인의 가족들에게 구속사실 등을 전화상으로 통지하여 주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족들이 이를 부인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구속사실을 진정인의 가족 등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1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3. 시설 및 처우

1

2010. 12. 27.자 10방문400결정 [2010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경찰청장에게, 경찰서 유치장의 여성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변호인 접견실을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가. 방문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실의 별도 설치·운영, 여성에 대해 속옷 탈의 후 대체의류 지급 등 2009년 위원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사항들이 전국 경찰서에서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유치인 면담제도 강화, CCTV 관리 철저 등 인권침해의 근절을 위해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노력하는 모범 사례도 확인되는 한편, 현장에서 시설 및 처우관련 120여건을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음.

나. 2007년 이후 신축된 유치장은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에 따라 화장실 차폐막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으나, 2006년 이전 준공된 유치장은 미흡하였고 특히 여성 유치실 화장실과 장애인 유치실의 편의시설, 변호인 접견실의 출입문에 대한 개선은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함.

【참조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별지 1, 경찰청예규 349호, 2006. 3. 22.),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경찰청훈령 563호, 2008. 8. 25.),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주 문】 경찰청장에게, 경찰서 유치장의 여성 및 장애인 관련 시설과 변호인 접견실을 「유치장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방문조사의 배경 및 조사대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의 처우 등에 대한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0. 10. 6.부터 2010. 10. 27.까지 서울·부산 등 7개 광역시 및 경상북도, 강원도 소재 18개 경찰서 유치장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조사내용은 시설현황과 유치실 및 화장실의 규모,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시설 등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조사와 신체검사, 변호인 접견, 권리구제 절차, 의료조치, 식사, 종교행사 등의 처우(특히 여성, 장애인 관련)에 대한 조사로 구성되었다.

2. 조사·판단의 근거 및 기준

-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 나.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 (경찰청예규 349호, 2006. 3. 22.)
- 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훈령 563호, 2008. 8. 25.)
- 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3. 조사결과 및 판단

가. 모범사례

변호인 접견실이 별도로 설치·운영되고, 여성에 대하여 속옷 탈의 후 대체의류가 지급되는 등 2009년 위원회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사항들이 전국 경찰서에서 전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유치인에 대한 면담제도 강화, CCTV 관리 철저 등 인권침해의 근절을 위해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 외에, 예산과 인력의 부족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피구금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유치장 운영의 모범사례도 확인되었다.

나. 현장 개선사례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시설 및 처우관련 120여건을 개선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다. 개선권고 사항

2007년 이후 신축된 유치장은 「유치장 설계 표준규칙」(이하 ‘설계표준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화장실 차폐막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나, 2006년 이전 준공된 유치장은 미흡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경찰서 외에 전국 경찰서 유치장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 경찰청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위 설계표준규칙에 부합하도록 여성 유치실 화장실과 장애인 유치실의 편의시설, 변호인 접견실의 출입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1) 여성 유치실 화장실 관련

설계표준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유치실 내 화장실의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1미터 이상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밀폐형으로 설치하여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문조사 대상인 18개 경찰서 여성 유치실 화장실의 경우, 개방형으로 된 곳이 여러 곳 있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유치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여성 유치실 화장실의 차폐막을 밀폐형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설계표준규칙 제5조 제6항에 따르면, 1개 이상의 유치실은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편의시설

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별도의 장애인 유치실을 설치한 곳이 적고 노후시설의 경우 대부분 안전바, 경사로 등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우선적으로 설계표준규칙에 따라 장애인 유치실에 안전바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변호인 접견실 관련

설계표준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변호인 접견실은 접견실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문조사 결과, 조사대상 18개 경찰서 중 변호인 접견실 출입문에 투명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 변호인 접견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위와 같은 시설의 전반적 개선을 위해서는 경찰청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으나 여성 유치실, 장애인 유치실, 변호인 접견실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2. 2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황덕남 위원 장주영

2

2011. 9. 28.자 10진정0721900 결정 [유치장 수용환경
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 [1] 경찰청장에게, 혹한기 등에 ‘유치장 난방 및 온수공급에 대한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2] ○○○○경찰서장에게, 혹한기 등에 유치장내 적정온도 유지와 온수를 원활하게 제공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우나 시설 내 공동생활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경우 외에는 일반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 유치장 내 난방은 실외온도, 유치인의 연령, 성별 등 전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가동해야 하며, 혹한기뿐 아니라 비혹한기에도 적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난방을 가동하여야 하고 취침 시 등에 난방을 소홀히 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도 없어야 함.
- [2]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파악한 겨울철 실내적정 온도인 18℃~20℃는 일반적인 생활인을 대상으로 한 기준인바, 피의자 신분으로 심리적·신체적 상태가 위축되어 있고 수용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유치인에게서는 적어도 18℃~20℃에는 근접하게 실내온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임.
- [3] 진정인의 수용기간 동안 최저기온이 0.5℃까지 내려간 날이 있고 평균 최저기온이 3.2℃인 점, 유치장내에 1일 3회 총 3시간만 바닥난방을 시행한 점, 참고인인 유치인보호관도 온풍기 가동 등을 건의하였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정인 외 유치인들이 추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됨.
- [4] 온수제공에 관하여는 11월에 거실에 온수가 제공되지 않아 진정인 외 유치인들이 정상적인 세안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판단됨.

【5】 경찰청 등 경찰서의 난방 및 온수공급 현황에 대해 조회한 결과 각 경찰서는 2010년 동절기 난방공급을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각 경찰서마다 상이한 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난방시기도 서로 달랐고 적정온도, 온수공급 기준 등 관련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관련 규정에서 유치장의 환경을 인권 친화적으로 조성할 것과 유치실 바닥에는 바닥 난방시설을 갖출 것과 세면대에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샤워장에 냉온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함. 이처럼 유치인의 처우와 적정한 환경을 유지하여 인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피진정인이 예산상 이유로 적절한 난방과 온수공급 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유치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건강권을 침해한 것임.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2조·제3조·제38조·제39조, 「유치장설계 표준규칙」 제5조·제7조·제9조·제10조

【진 정 인】 ○ ○ ○

【피진정인】 ○ ○ ○ ○ 경찰서장

-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흑한기 등에 ‘유치장 난방 및 온수공급에 대한 적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 ○ ○ ○ 경찰서장에게 흑한기 등에 유치장내 적정온도 유지와 온수를 원활하게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11. 10. 오후부터 같은 달 17. 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 ○ ○ ○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었는데, 피진정인은 아침 평균기온이 0℃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실내난방을 하지 않고 온수를 공급하지 않았다. 유치장의 체감온도는 훨씬 더 추웠으며 거실내 수도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서 세수도 못할 지경이

므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 등을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경찰서는 국무총리지시 제2005-5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라 동절기 난방가동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2) 비혹한기인 11월의 경우, 일일 4회에 걸쳐 총 5시간 30분씩 난방을 한바 있고 특히 유치장의 바닥은 별도 난방을 하며 진정인 소요기간 중 일일 3회 (01~02, 05~06, 21~22), 총 3시간씩 바닥난방을 실시하였다. 온수공급은 1일 2시간씩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제공은 하지 않았다.

3) 난방 가동시기는 외부온도 0℃ 이하 또는 실내온도 10℃ 이하 일 때로 하고 있으며 실내온도는 2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기준이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경찰서 유치인보호관, 경사)

가) 진정인이 수용되었던 기간에 날씨가 추워 유치인들도 불편하고 유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추위로 불편함을 느껴 담당부서인 경리계에 난방(히터)을 가동하게 해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경리계에서는 예산문제 등의 이유로 즉시 반영되지 않고 있다.

나) ○○○○경찰서 1989년에 건립되어 시설이 낙후된 관계로 유치장 거실에 바닥 난방이 잘 되지 않는 형편이다.

2) ○○○(○○○○경찰서 보일러 기사)

11월은 날씨가 추우면 난방을 하며 2010년의 경우 11.4. 부터 하루 3회, 각 1시간씩 난방보일러를 가동하였다. 온수는 11. 26. 시운전을 하였으나 그 이외에는 11월에 온수보일러를 가동한 바 없다

3) 에너지 관리공단

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조사한 전문가들의 겨울철 적정실내온도는 18℃ ~20℃이며 이들 전문가들의 난방 가동에 대한 생각은 아래와 같다.

(1) 김선미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실외와 실내의 온도차가 너무 큰 경우 자율신경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갑자기 너무 따뜻한 데서 밖에 있는 찬 공기로 나갈 때 혈관 수축으로 고혈압환자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겨울철 가장 적당한 실내온도는 20℃로 맞춰주는 것이 좋고, 습도는 40~6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2) 이홍수 소장(이대목동병원 건강증진센터)

겨울철 실내온도가 올라가면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나 아토피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다. 18~20도가 적정온도로 맑은 정신유지에 도움이 된다.

(3) 김양경 전문의(서울여성병원 소아과)

옷을 조금 느슨하게 입고 방 안의 온도를 줄이면서 조금 시원하게 하는 것이 좋다. 지나친 난방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한다.

(4) 정도연 교수(서울대병원 정신과)

잠자기에 적당한 실온도는 섭씨 18~20℃로, 이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체내의 중추신경계가 흥분하고 잠들기 힘들어진다.

3. 경찰서 및 구치소 난방 및 온수 제공 사실조회 결과

가. 경찰청

‘유치장 설계 표준 규칙’에 따라 유치실은 바닥난방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유치실

세면대는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며, 샤워장은 냉온수 공급이 가능토록하여 유치장 내의 냉난방 설비는 유치장의 규모에 따라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난방계획은 각 경찰서 마다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나. 각 경찰관서 현황

관서 명	난 방	온 수
○○○○ 경찰서	기준 : 실외온도 3도 이하 실내 18도~20도 유지 시설 : 전기바닥 난방, 온풍기	기준 : 하루 2회, 연중 시설 : 별도 샤워실, 온수보일러
△△△△ 경찰서	기준 : 11. 15. ~ 2. 28. 온풍기는 필요시 가동 시설 : 바닥난방, 온풍기, 심야전력난방기	기준 : 연중 상시 시설 : 별도 샤워실, 전기순간온수기
□□ 경찰서	기준 : 21도 ~ 22도 유지 시설 : 전기바닥난방, 온풍기, 라지에터	기준 : 24시간 거실제공, 샤워는 수시 제공 시설 : 별도 샤워실, 전기순간 온수기
◇◇◇◇ 경찰서	기준 : 11월~2월말(중앙난방) 바닥과 온풍기는 수시 시설 : 전기바닥난방, 온풍기, 라지에터	기준 : 수시 제공 시설 : 별도 샤워실, 전기순간 온수기

다. 관련기관인 구치소의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남부지역과 중북부 지역의 난방공급 기간이 상이하나 각 기관별로 수용거실내 온도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교도관들이 체크하여 관리하고 있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5.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보일러 근무일지,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참고인 유○○ 등의 진술서, 경찰청 및 각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진정인은 2010. 11. 10. 21:50경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어 같은 달 17.까지 수감되었다.

2) 진정인은 같은 달 17. 유치장 내에 온수가 지급되지 않아 마음대로 씻을 수가 없고 유치실 바닥에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매우 춥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인권위에 제출하였다.

3) ○○○○경찰서는 2010. 11. 4. ~ 11. 30.까지 유치장에서 하루 3회, 총 3시간 바닥 난방을 실시하였고 온수보일러는 11. 15. 가동 점검하고 11. 26. 시운전하여 11월중 유치실에 온수를 제공하지 않았다.

4) 기상청에 파악된 진정인의 수감기간(11.10.~11.17) 동안의 ○○기상청이 관측한 최저기온은 0.5℃, 평균최저기온 3.2℃, 최고기온 14.3℃ 이다

나. 판 단

1)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는 미결수용자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방지’라는 미결구금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나 안전하고 원활한 시설내의 공동생활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2) 먼저 유치장내 적정온도 유지에 대해 살펴보면 유치장 내 난방은 실외온도, 유치인의 연령, 성별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가동해야 할 것이며, 혹한기뿐만 아니라 비혹한기에도 적절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난방을 가동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취침 시나 새벽에 난방을 소홀히 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3)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파악한 겨울철 실내적정 온도인 18°C ~ 20°C는 일반적인 생활인을 대상으로 한 기준인바, 피의자 신분으로 심리적·신체적 상태가 위축되어 있고 수용환경이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는 유치인에게는 적어도 18°C ~ 20°C에는 근접하게 실내온도가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진정인의 수용기간 동안 최저기온이 0.5°C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였다. 위 기간 동안 유치장 실내온도가 측정되지 않아 유치장실내 온도를 파악할 수 없으나 진정인 유치기간 동안의 실외 최저기온이 0.5°C로 내려간 날이 있고 평균 최저기온이 3.2°C인 점, 유치장내에 1일 3회 총 3시간만 바닥 난방을 시행한 점, 참고인인 유치인보호관도 추위 추가난방(온풍기 가동 등)을 건의하였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진정인 외 유치인들이 추위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5) 온수제공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한기인 11월에는 거실에 온수가 제공되지 않아 진정인과 유치인들이 정상적인 세안을 하기가 어려웠다고 판단된다.

6) 경찰청 등 경찰서의 난방 및 온수공급 현황에 대해 조회한 결과 각 경찰서는 2010년 동절기 난방공급을 수립하여 시행하는데 각 경찰서 마다 상이한 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난방시기도 서로 달랐고 적정온도, 온수공급 기준 등 관련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한편,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38조는 유치장의 환경을 인권 친화적으로 조성할 것과 「유치장설계표준규칙」은 유치실 바닥에는 바닥 난방시설을 갖출 것과 세면대에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샤워장에 냉온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치인의 처우와 적절한 환경을 유지하여 인권의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은 예산상의 이유로 적절한 난방과 온수공급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유치인에게 보장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서 유래하는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의 구제조치로는 경찰청장에게 유치장내 난방 및 온수 공급에 대한 기준과 관련 대책의 마련을 권고하고, ○○○경찰서장에게 혹한기 및 비혹한기에 유치장내 적정온도 유지와 온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동절기시 유치장 수용자의 처우개선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4. 피해자 등 보호조치 소홀

1

2009. 9. 14.자 08진인2316결정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 【1】** ○○○○소방서장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2】** 피진정인 1의 감독기관인 ○○○○도지사에게 주문 1항의 권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 【3】** 소방방재청장에게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구급차 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2가 다른 응급구조사의 탑승 없이 홀로 긴급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2조 제1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소방기본법」 제35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일부개정) 제9조, 「소방공무원법」 제1조 및 제27조

【진 정 인】 남○○

【피 해 자】 안○○

【피진정인】 1. ○○○○소방서장
2. 이○○

【주 문】 1. ○○○○소방서장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의 감독기관인 ○○○○도지사에게 주문 1항의 권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3. 소방방재청장에게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119 구급대원인 피진정인 2는 응급구조사 없이 혼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의 처남인 피해자가 2008. 4. 25. 01:30경 심장병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처인 최○○이 119에 신고를 하여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응급치료사도 없이 운전 소방관 1인만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산소호흡기 등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10여 분 동안 심장이 멈춰 뇌손상을 입었고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소방서장)

피해자를 이송한 피진정인 2(지방소방장 이○○)는 ○○119지역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119지역대는 ○○○○소방서 문의119안전센터 소속의 119지역대로 ○○군 ○○면 및 인근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 ○○119지역대는 소방펌프차량과 구급차를 1인이 운영하며, 화재 및 구급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으로 최소한의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현재 119지역대는 응급처치보다는 신속한 이송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방관 1인이 출동해야 하는 지역 구급대의 한계로 응급처치와 운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하며 사실상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불가능하다. 사건현장과 가장 가까운 소방서로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수 있는 구급대는 사건현장에서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문의 119안전센터였으며, 사건 당일 시간이 야간인 점을 고려하면 현장도착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해 ○○119지역대는 현장에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송시간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구급대가 출동한 것이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소방서 지방소방장 이○○)

피해자를 이송한 피진정인 2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며 화재시 소방차 출동과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 출동을 겸직해야 되는 ‘나홀로 소방관’이다. 사건 발생 당시는 심야 시간대로 취침 중에 상황실 지령을 받고 출동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하니 피해자가 의식이 명확치 않고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였으며 호흡맥박이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자택과 병원간 거리가 25km나 되어 시간을 지체할 경우 심장정지가 예상되는 긴급환자로 판단하였고 혼자서 운전과 응급처치를 병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가능한 최고 속도로 성모병원에 도착하였다. 병원 도착시 피해

자는 심정지 상태였다가 성모병원 의료진의 전문응급 처치술로 심장이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귀소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출동·이송기록, ○○○ 소방서가 제출한 전국 및 도내 119지역대 인원 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8. 4. 25. 01:54 ○○소방본부는 피해자의 처 최○○의 구급출동 신고를 접수한 후 같은 날 01:55 ○○119지역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나. ○○소방본부로부터 출동지령을 받은 피진정인 2는 2008. 4. 25. 01:56에 출동하여 같은 날 02:05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같은 날 02:08 현장을 출발하여 02:30에 ○○○ 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 측에 인계하였다.

다. 사건 당시 피진정인 2는 1인 근무자로 혼자 출동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관계로 이송 도중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했으며, 병원 도착시 피해자는 호흡, 맥박, 혈압 모두 측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병원 의료진의 전문 응급 처치술로 심장이 다시 살아났으나 뇌기능 손상으로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라. 2008년도 1월 현재 전국 도단위 119지역대 개수는 총 678개이며, 이중 1명이 격일로 근무하는 지역대는 108개소이고, 1일 1명이 근무(2교대)하는 곳은 416개소로 ○○119지역대는 1일 1명이 근무하는 지역대에 해당된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다른 응급구조사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출동함으로써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소방기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소방대는 화재의 예방·진압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구급차 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다른 응급구조사의 탑승 없이 홀로 긴급 출동한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2조 제1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급의료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이나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 등에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9. 3. 31.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119지역대 현황을 살펴보면 623개소 중 구급대원 2인 이하가 근무하는 380개소는 격일로 1명이 근무하거나 1일 1인이 교대로 근무하여 구급차 출동 시 불가피하게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119지역대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 제34조 제6항 및 제36조 제3항에서 기인하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당시 119지역대 현실이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진정인 2가 출동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는 점, 또한 참고인 ○○○○병원 의사가 구급차에서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공간과 상황에서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예측할 수 없고 피해자의 호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어 응급조치 여부와 피해자의 뇌기능 손상과의 객관적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2 개인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는 당시 구급대 편성 및 운영 등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피진정인 1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충청북도지사는 피진정인 1에 대한 권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전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3. 「소방기본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5. "소방대"라 함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의무소방원)

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

다. 제35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방기본법 시행령」

가. 제12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역의 인구·소방대상물·재난 발생빈도 및 지역특성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가.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 의무) 구급차 등의 운송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일부개정)

가. 제9조(119지역대) ①소방서장은 해당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제5조·제8조 및 제9조 관련)

4. 119지역대의 설치기준

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 이상이거나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농공단지·주택단지·문화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으로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8. 소방공무원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7조(소방방재청장의 지휘감독)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휘 감독한다.

2

2009. 10. 26.자 09진인2888 등 20건 병합결정 [유치장
임산부 및 산모 보호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경)]

- 【1】 임산부 등에 대하여 심야조사 및 유치장 구금을 한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
- 【2】 유치장 피구금자들에게 CCTV 설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
- 【3】 심야조사를 실시하면서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이 인권침해인지 여부

【결정요지】

- 【1】 ○○○○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유치장 구금 및 심야조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
- 【2】 ○○○○경찰서장에게, 유치장 피구금자들이 유치장 내 CCTV설치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안내 및 고지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
- 【3】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수사책임자인 피진정인 박○○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참조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 등, 「국가인권위원회법시행령」 제9조, 「형사소송법」 제69조 등,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8조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각 제4조의2,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24조 등, 「범죄수사규칙」 제3조 등,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제2조 등,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제2조 등, 「유치장설계표준규칙」 제3조 등

【진 정 인】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 해 자】진정인들 20명 외 김○○ 등 17명

【피진정인】 별지 2 기재와 같다.

-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 부분을 각하한다.
2. 진정요지 다.항에 관하여, ○○○○경찰서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유치장 구금 및 심야조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마.항에 관하여, ○○○○경찰서장에게, 유치장 피구금자들이 유치장 내 CCTV설치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안내 및 고지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사.항에 관하여, ○○○○경찰서장에게, 이 사건 수사 책임자인 피진정인 박○○을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5. 진정요지 가.항, 라.항, 바.항 및 아.항 부분을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들 및 피해자들은 ○○○ ○○ ○○○ 임시강사 등인바, 2009. 8. 3. ○○○ 교육감과의 면담요청을 위해 ○○○○○○, ○○○○○○○○, ○○○○○○○와 함께 ○○○ 교육청을 방문하였는데, 교육감의 일방적인 면담 파기로 인하여 장학관과의 대화 후 부교육감을 기다리던 중 같은 날 21:00경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다.

가. 진정인 및 피해자들은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구호나 노래도 하지 않고 로비에 앉아 교육감을 기다리기만 하였는데 현행범이라는 이유로 체포를 당하였고, 더욱이 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 고지는 전혀 없었다.

나. 진정인들이 여성들이라서 여성경찰관을 요구하였으나 무시당하였고, 남자

경찰관들이 강제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의 상의가 들춰지고, 바지가 찢어져 상체와 허벅지가 노출되는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남성들 앞에서 인격적 수모와 치욕을 느꼈다.

다. 연행된 사람들 중에는 임신 7, 8개월의 만삭 임신부도 있었고, 모유수유 중인 부녀자도 있었는데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전혀 없이 열악한 상태의 유치장에 감금하여 밤샘조사를 진행하였다. 즉,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배의 통증을 느껴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5시간 동안 의자에 앉아 조사를 받게 하고, 조사가 끝난 새벽 2시경에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유치장에 감금하였다. 조사 후 혼방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우○○은 “현행범이라 안 된다.”며, “아프면 병원을 다녀와라, 병원 갔다가 다시 유치장으로 와라, 구속영장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으박지르듯이 하였고, 피진정인 박○○도 “임산부랑 무슨상관이야, 빨리 구속시켜!”라고 하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한, 모유수유중인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다음날 아침이 되어 서야 아기를 유치장에 데려와 모유수유를 하게 하여 엄마와 아기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주는 등 젖먹이 유아와 태아 및 모성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받았다.

라. 유치장은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쳐 가는 곳인데, 유치장 시설이 매우 열악하였다. 화장실과 샤워실이 매우 불청결하여 도저히 사용할 수 없었고, 변기에 앉아 얼굴을 들면 유치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정도였다. 이불 등 침구의 냄새가 심하고 그 청결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이용하기 곤란하였다. 일부 부상자들이 (응급)약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서에 약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며 지급받지 못하였고, 병원진료를 거부당하였으며, 유치장에서 제공해 주는 음식은 먹기 곤란할 정도였다.

마. 일부 진정인들은 유치장 내부를 감시하는 CCTV 화면을 남자경찰관이 보

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유치장에 입감할 당시 유치장 안에 CCTV가 있다거나 이것을 남자경찰관이 볼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아 유치장 안에서 속옷을 갈아입은 여자 진정인들도 있었다.

바. 인권위에 진정하기 위해 전화사용을 원했으나, 외부와 통화할 수 없다며 거절당하였고, 피진정인 우○○은 “인권위에 진정하면 집과 직장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니 오히려 경찰서 청문감사팀과 상담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하는 등 인권위 진정에 대하여 협조를 받지 못하였다.

사.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은 시각은 밤 10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였는데, ‘심야조사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아. 피진정인 박○○은 체포연행과정부터 시작하여 조사를 받는 내내, 부상당한 사람에게 “경찰차로 태워 구속해! 구속 현행범이 병원에 있는 것이라 무슨 상관이야!”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일부 진정인을 가리켜 “얘는 지능과로 보내야 해!”, “애, 재!”하며 반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로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진정인 및 피해자들에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1) 진정요지와 같다.

2) 진정인 오○○

진정인은 2009. 8. 3. 사건당시 임신 8개월이었으며, 같은 날 21:40경 경찰서에 도착한 후, 조사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2:00경부터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고,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던 중에 여경과 동행하여 화장실로 가면서

자신이 임신부인 사실을 말하였다. 임신부인 사실을 말한 후에도 다음 날 02:00시 경 다른 사람들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였다. 유치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경이 어딘가에 전화를 해서 “임산부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것을 들었고, 곧이어 여경이 “똑같이 해요?”라고 되묻는 것을 직접 들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가 당기는 등 몸이 너무 힘들어서 조사 후 귀가를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고, 다음 날 저녁 늦게 진정인을 유치장에서 나오라고 하여 석방시켜 주는 줄 알았지만, 새벽에 행해진 조사가 불충분하였다는 재조사를 하였다(21:00경). 재조사를 한 이유는 1차 조사 담당형사가 몸이 아파서 제대로 조사를 못한 것이 그 이유였다고 생각한다. 병원에 가겠느냐는 경찰관들의 질문에 “괜찮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그렇게 말한 것은 몸 상태가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피진정인 우○○이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갈 수는 있지만, 갔다가 다시 유치장으로 와야 한다.”고 말하였고, 그렇다면 병원으로 당장 가야 할 정도로 몸이 아픈 상태는 아니었으며, 더욱이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하니 그렇다면 괜찮다고 대답한 것이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조사 후 불필요하게 유치장에 구금하고 임신부임을 말하였음에도 재조사를 한 형사조차 진정인이 임신부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등 전혀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3) 진정인 백○○, 김○, 최○○

진정인들은 2009. 8. 3. 저녁 ○○○○경찰서로 연행된 후 다른 사람들이 조사받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자정을 넘어서야 조사를 받았다. 진정인 김○은, 담당형사가 “조사를 받겠느냐?”고 물었을 때 조사를 빨리 끝내자는 취지로 물은 것이어서 그렇다면 빨리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심야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일 뿐, 유치장에 구금될 것임을 예상하여 심야조사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4) 진정인 배○○, 최○○, 조○○, 백○○

진정인들은, 2009. 8. 3. 23:00경부터 같은 달 4. 01:58경 사이에 지능범죄 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진정인 박○○이 반말 및 폭언을 한다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화장실 갈 때 한 사람씩 가라,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위압적으로 느껴지기는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김○○(○○○○경찰서장)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사건 당시 ○○○○경찰서는 경찰서 유치장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2000헌마546)와 인권위의 결정(04진인2801결정)에 따라 2009. 7. 17. 유치장 환경의 대폭 개선 및 장마 대비 방수공사를 한 상태였고, 방수공사를 하기 전 누수흔적은 조금 남아 있으나 매우 열악한 환경은 아니었다. 유치인 정서함양 및 환경미화 일환으로 각 유치실에 벽화 등의 그림을 그려 놓았고, 특히 여성 유치인 화장실은 사방이 밀폐되어 있고 에티켓 벨도 설치되어 있다.

2) 피진정인 윤○○(○○○○경찰서 경비계장)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2009. 8. 3. 15:20경 ○○○ ○○○ 임시강사 등 60여명이 ○○○ 교육청내 현관안에서 점거시위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30경 형사기동대 등 70여명과 현장에 출동하였다. 같은 날 18:00경 시위대는 건물 중앙으로 진입하여 연좌농성에 들어간 상태였으므로 ○○○○경찰서장의 명을 받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의 위법행위로 간주, 19:30경 제1차 해산명령, 19:50경 제2차 해산명령, 20:15경 제3차 해산명령을 하고, 마지막으로 20:29경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그래도 자진해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20:30경 미란다원칙을 2회 고지한 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하였다.

3) 피진정인 박○○(○○○○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

가) 진정요지 다.항 및 아.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사건당시 경기도 교육청 연행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당시 현행범체포된 피의자들의 조사에 관한 책임이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조사과정은 모두 본인의 판단 및 책임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결코 여성들인 피의자들에게 “애, 재!”라고 반말이나 폭언, 욕설을 한 적이 없으며, 당시 경황이 없어 큰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소리를 지르거나 조사받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함을 지른 적은 없다. 조사시작 후에 인적사항 파악시 임신부와 모유수유부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특별히 따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해당 사항이 없어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임신부를 재조사 한 이유는 임신부가 1차 조사때 묵비하거나 거짓진술을 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 드러나서 재조사를 한 것이다. 재조사 후 임신부가 힘들었다고 하길래, “죄송하다, 빨리 해 드릴려고 했는데 조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사과를 하였다. 1차 조사후 임신부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었으나, 석방여부는 재조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피의자신문조서 검토 후에나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고, 경찰관의 전권이 아니라 검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재조사를 한 이유도, 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진술할 권리를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임신부와 모유수유부 모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였고, 특별히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한 것도 아닌데 다른 공범들과 달리 먼저 석방하거나 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사건에서 수많은 공범이 있어 함께 연행되었을 경우에는 일부만 먼저 석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연행자 중 장애인들은 상부지시에 따라 경찰서로 연행하지 않고 귀가조치 시켰으며, 연행과정 중에 부상당한 사람(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먼저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게 하였고, 조사가 가능한지 검토하였으나 당장 조사하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되어 일단 석방하고 다음날 경찰서로 출석하도록 하여 조사를 하였다.

나) 진정요지 사.항과 관련하여, 심야조사를 할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에서는 책임자인 본인이 조사를 하는 담당 형사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 심야조사 및 동의서를 받지

않은 것은 최대한 순서대로 빨리 조사를 마치기 위해서였다. 조사를 신속히 마치기 위해 심야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라라도, 반드시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관련 규정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

4) 피진정인 우○○(○○○○경찰서 수사지원팀장)

가)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2009. 8. 4.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진정인들을 유치실에 순차적으로 입감하였으며, 임신부가 있는 사실은 알았지만,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입감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입감시켰다. 나중에 모유수유부가 있는 것을 알았고, 임신부와 모유수유부에 대해서는 자주 건강이상 유무를 확인하였지만, 본인들이 “괜찮다.”고 하여 특별히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임신부에게는 “병원에 가겠느냐?”고 물었지만 임신부가 괜찮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며, 결코 억박지르듯이 이야기 하지 않았다. 모유수유부가 아기에게 젖을 먹여야 한다고 하여 유아대동신청서를 작성하게 해주고 다음날 오전에 아기 아빠가 데려온 아기를 유치실로 옮겨 주는 과정에서 유치인들이 항의하여 철창 안이 아닌 신체수색실(탈의실)에서 수유하게 하였다.

나)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2009. 7. 17.경 유치장을 대폭 개선하여 진정인들이 주장하는 정도로 열악한 상황은 아니다. 현재 ○○경찰청 통합유치장 운영 방침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만을 상시 운영하고 ○○경찰서 유치장은 자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언제라도 유치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진정인들이 입감되기 며칠 전에는 쌍용자동차 농성과 관련하여 연행된 사람들이 구금된 사실이 있다. 비상약도 항시 준비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에는 계보린 등의 상비약을 진정인들에게 지급하였다. 다만 진정인 중 일부가 파스를 요구하였으나 준비된 것이 없어 안티프라민으로 대체하였고, 눈이 충혈된 사람에게는 인근 약국에서 안약을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다.

다) 진정요지 마.항과 관련하여, 유치장에 유치인들을 입감할 때, 유치장 내

CCTV가 촬영 중인 사실을 따로 구두로 고지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유치장 출입문 위에 ‘CCTV 설치구역’이라고 기재된 표시가 붙어 있으며, 이것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8센티미터 크기로서 눈에 잘 띄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당시 유치장 근무자는 남경 2명, 여경 2명이었으며, 유치실 안에서 여성들이 속옷을 갈아입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유치장 밖에서 CCTV 모니터를 감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근무 중인 남자 경찰관이 감시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라) 진정요지 바.항과 관련하여, 사건 당일 유치장에 구금된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외부에 전화를 하겠다고 요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전화는 안된다고 답변을 하였다. 우선 청문감사실로 연락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며, 청문감사실에서 진정인들의 민원사항을 파악해 갔고, 진정인들에게 종이와 펜을 지급하여 인권위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즉시 인권위로 송부하였다.

5) 피진정인 김○○, 김○○, 김○○(○○○○경찰서 소속 경찰관)

가)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 김○○는 2009. 8. 4. 20:50경부터 21:25경까지 임신부인 오○○에 대한 재조사를 담당하였으며, 조사시작 전 조사대상자가 임신부인 사실은 듣지 못하였고, 조사 중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조사가 끝난 후 나중에야 피진정인 박○○과 위 재조사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에 조사대상자가 임신부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진정요지 사.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은 2009. 8. 4. 새벽 각 진정인 김○, 백○○ 및 최○○을 조사하였으며, 모두 같은 달 3. 24:00경 이후 조사를 시작하여 새벽에 마쳤으나, 심야조사동의서를 따로 받지 않았다. 심야조사동의 여부에 관해 (사건당시 조사 주무과장인) 피진정인 박○○의 지시는 따로 없었다. 당시 조사대상자가 너무 많았고 빨리 조사를 마쳐야 하였기에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으며, 경황없는 상황에서 순서대로 조사를 하였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및 관련 규정은 알고 있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1) 피해자 김○○(모유수유부)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2009. 8. 사건당시 피해자의 아기는 10개월 되었으며, 유치장 구금 후 젖이 붙어 힘들었고, 집에 있던 아기는 엄마 젖을 물지 못해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였다. 젖을 짜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경찰서에는 유축기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고, 조사 후에 훈방을 요구하였으나, 경찰들이 관련 규정에 의하면 “출산한지 6개월까지만 된다”고 하여 “6개월 이후에는 젖을 안먹이나요?”라고 되물었으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았다. 흘러나오는 젖으로 인하여 옷이 다 젖었으나, 갈아입을 옷도 마땅치 않아 휴지로 대강 닦을 수밖에 없었다. 직접 외부에 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 경찰관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다음 날인 8. 4. 오전에 남편이 아기를 데려와 수유를 하였고, 그 날 저녁 수유를 한번 더 하고 조금 있다가 석방이 되었다. 피진정인 우○○이 아기를 철창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려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여 경찰관들이 수유장소를 논의하였고, 결국 탈의실 같은 밀폐된 장소에서 수유를 하였다.

2) 참고인 조○○(변호사)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참고인은 2009. 8. 4. 새벽과 오전에 진정인 오○○, 김○○ 등이 조사를 마친 후에 변호인 접견을 하였으며, 임산부인 오○○의 경우에는 일견 보아도 명백히 임산부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배가 불러 있었다. 본인이 진정인들을 접견한 후 경찰관들에게 훈방을 따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임산부와 모유수유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매우 힘들어하였다. 엄격히 보아 현행 법인 것은 맞지만 당시에도 밤샘조사나 유치장에 구금할 정도의 중범죄임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3) 참고인 권○○(○○○○경찰서 소속 경찰관)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참고인은 2009. 8. 3. 밤 임신부인 오○○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전이나 조사 중에 조사대상자가 임신부인 사실은 몰랐다. 조사를 마친 후에 임신부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조사당시 참고인이 몸이 안 좋았던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해 임신부가 재조사를 받은 것은 아니고, 1차 조사시 미진한 사항을 보강하기 위해 재조사를 한 것이다.

3. 관계법령

별지 3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피진정인들·참고인들의 각 진술, 진정인측(○○○○○○연석회의, ○○인권센터)이 제출한 동영상 파일 및 보도자료,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진술사·답변서 및 관련 자료(인터넷 다음넷 게시물,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교육청 청사방호 요청공문 사본, ○○○교육청 집회관련 동원자 명단, 집회시위관련 동영상 파일 2개 및 동영상파일 분석보고서, 사건당시의 장면을 찍은 사진, 변호사접견원 사본, 진정인들 20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현행범인체포서·수사과정확인서 사본, 피의자 압출감지휘서 사본, 체포구속인 수진부 사본, 유아대동신청서 사본,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사본, 유치장 내부 및 전경 사진,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게시물 및 인권위 진정 안내서, 유치장 수리요청서 사본, 유치장내 상비약품 사진, 체포연행자 및 유치장 구금자 명단, 집회상황 총 정리서, 관련 판례 및 법령 등), ○○○○경찰서(유치장)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등에 의하면,

가.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하 “진정인들”이라 함)은 ○○○ ○○ ○○○ 임시강사 등인바, 인터넷 다음 카페 게시판에 ‘2009. 8. 3. 14:00경 개최예정인 장관 면담을 위한 집회’를 공지한 후, 2009. 7. 28. ○○○○경찰서에 ‘옥외집회신

고서(집회개최목적 : ○○○○○ 비정규직 임시강사 차별철폐 등, 집회개최일시 : 2009. 8. 3.~8. 27., 개최장소 : ○○○교육청 정문 옆 인도, 주최자 : ○○○ ○○○○○ 배○○, 참가예정단체 : ○○○ ○○○○○임시강사모임 등)’를 제출한 사실,

나. 위 집회신고서에 따라 진정인들은 2009. 8. 3. 14:00경 ○○○ 교육감과의 면담요청을 위해 ‘○○○○○ ○○○○○○○ ○○ 학부모 모임’, ‘○○○○○ 협의체’, ‘○○○○○ 실현을 위한 ○○○○ 학부모회’ 등의 회원들과 함께 총 50~60여명이 ○○○ 교육청을 방문하였고, 당시 집회장소로 신고한 곳은 ‘○○○ 교육청 정문 옆 인도’인 반면에, 진정인들은 교육청 건물 안 로비에 모여 장학관 등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으며, 교육감과의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를 요구하며 로비에서 대기한 사실,

다. ○○○교육청은 2009. 8. 3. 16:00경 이후 ○○○○경찰서장 경비교통과장에게 ○○○ 임시강사들의 미신고 집회로 인한 ‘○○○교육청 청사방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시설보호요청을 하였고, 요청을 받은 ○○○○경찰서는 경찰서장, 정보보안과장, 경비계장 등을 포함하여 약 72명의 경찰을 출동시켜 진정인들에게 사법처리 경고 및 자진해산할 것을 설득한 사실,

라. 진정인들이 자진 해산하지 않자, ○○○○경찰서 경비계장인 피진정인 윤○○가 2009. 8. 3. 19:30경 확성기를 통하여 진정인들에게 자진해산 요구 및 해산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될 수 있음을 고지(1차 해산명령)하였고, 19:50경 2차 해산명령, 20:16경 3차 해산명령, 20:29경 4차 해산명령 후, 20:30경 진정인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한 후, 20:50경까지 진정인들 총 38명(여 33명, 남 5명)을 현행범체포하여, ○○○○경찰서로 순차 연행한 사실,

마. 위 연행과정에는 여경 14명, 남경 58명이 동원되었으며, 진정인들 중 여성에 대하여는 여경 4, 5명이 팀을 이루거나, 일부 남경 2명이 다리를 잡고 여경 3, 4명이 상체를 잡는 등으로 연행하였고, 연행과정 중 강하게 저항을 한 일부 진정인들의 경우에는 그 옷이 들춰진 경우도 있으며, 위 연행된 진정인들 중에는 5세의 자녀가 있는 임신 8개월의 진정인 오○○와 5세 및 모유수유중인 10개월의 두 자녀가 있는 피해자 김○○이 포함된 사실,

바. 교육청 로비에 함께 있던 장애인들은 현행법 체포당시 분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지 않고 귀가조치 되었으며, 연행자 중 부상자인 진정의 민○○은 병원으로 호송되어 진료를 받고 그 다음날인 2009. 8. 4. 02:15경 경찰서로 연행되었으나 당시 조사가 곤란한 상태로 판단되어 석방되었고, 위 부상자는 석방 후 같은 날 19:30경 이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사. 진정인들은 2009. 8. 3.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경찰서에 도착하는 대로 지능범죄수사팀, 지역형사1·2·3·4팀, 사이버수사팀, 경제·3·4팀 등 각 사무실에 분산, 인치되어 22:30경부터 순차적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중 임신부인 진정인 오○○는 같은 날 21:40경 경찰서에 도착한 후 조사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22:40경부터 23:20경까지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서 참고인 권○○ 경위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모유수유부인 피해자 김○○은 같은 날 23:50경부터 다음 날 01:06경까지 지역형사3팀 사무실에서 진정의 심○○ 순경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며, 위 오○○는 다음 날인 8. 4. 20:50경부터 21:25경까지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피진정인 김○○ 경사로부터 재조사를 받은 사실,

아. 진정인 백○○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김○○ 경사가 2009. 8. 4. 01:00경부터 01:58경까지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진정인 김○○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김○○ 경위가 같은 날 00:10경부터 02:10경까지 지역형사4팀 사무실에서,

진정인 최○○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김○○ 경사가 같은 날 00:30경부터 02:10경까지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진정인 조○○에 대하여는 진정의 최○ 경장이 같은 날 01:00경부터 01:35경까지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하였고, 위 진정인들을 포함하여 당시 조사대상자들 모두 심야조사동의서를 작성한 바가 없으며, 피진정인 박○○은 각 조사담당 경찰관들에게 심야조사동의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별도로 하지 않은 사실,

자. 조사를 마친 진정인들 총 37명(여 32명, 남 5명, 총 38명의 연행자 중 민○○은 병원으로 호송)은, 2009. 8. 4. 01:00경부터 03:20경까지 순차적으로 유치장에 구금(1, 2, 3, 5, 6, 7호실에 분산)되었고, 모유수유부인 피해자 김○○은 01:55경, 임산부인 진정인 오○○는 02:16경 각 5호 및 7호실에 구금되었으며, 당시 남경 2명, 여경 2명이 유치인보호관으로 근무한 사실,

차. ○○○○경찰청은 2008. 6.경부터 ○○지역 5개 시 10개 경찰서 유치장을 5개로 통합운영하는 ‘광역유치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찰서 유치장을 광역유치장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찰서가 구금할 유치인을 ○○경찰서에 함께 구금하고 있는바, ○○○○경찰서의 유치장은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의 유치장 현황에 따라 비상시에만 운영되고 있는 사실,

카. ○○○○경찰서는 2009. 7. 17.경 장마 대비 유치장 방수공사를 실시하였고, 유치장 내 각 유치실 벽면에는 꽃, 나비 등의 한국화 등이 그려져 있으며, 유치실 중 7호실은 여성유치실로 운영하고 있고, 유치장 벽면에는 ‘인권위원회 진정서 안내’ 및 ‘유치인에 대한 인권보장’ 사향이 게시되어 있는 사실,

타. 유치장 내 각 유치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진정인 우○○을 포함한 당시 유치장 근무자들은 이 사건 유치장 구금당시 진정인들에게 유치장

내부에 CCTV가 있음을 따로 고지하지 않았고, 유치장 출입문 위에 ‘CCTV 설치 구역’이라는 표식(세로 8센티미터, 가로 20센티미터)이 부착되어 있으며 유치장 밖에서 CCTV 촬영 모니터를 감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당일 근무자들도 위 모니터 및 유치장 안 감시대에서 진정인들을 감시하였으며, 진정인들은 대부분 유치장 구금 경험이 없는 자들로서, 그 중 일부는 각 유치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불로 가리고 속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에서 속옷을 갈아 입은 사실,

파. 여성유치실인 7호실의 화장실은 바닥부터 천정까지 유리창문의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는 등 사방 밀폐된 구조이고, 그 외 유치실 화장실은 문을 닫았을 경우에는 정면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각 화장실 변기는 수세식 좌변기로 되어 있고, 세면대가 함께 설치되어 있으며, 화장실 문(차폐막)의 높이는, 변기에 똑바로 앉아 얼굴을 들면 화장실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정도(신장 165cm 기준)이나, 머리를 숙이면 신체 전부가 가려질 수 있는 상태이고, 이 사건 유치인보호관들은 7호실이 아닌 다른 유치실에 구금된 진정인들이 7호실 화장실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7호실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실,

하. 2009. 8. 4. 02:00경 참고인 조○○ 변호사가 진정인 오○○, 피해자 김○○ 등 4인, 같은 날 11:20경 진정인 허○○ 등 3인을 각 접견하였고, 09:00경부터 각 진정인들은 가족 및 동료교사들을 면회하였으며, 같은 날 오전 진정인들이 인권위에 직접 전화하기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허가하지 않고, 같은 날 11:00경 및 14:00경 등 두 차례에 걸쳐 유치장 근무자 중 한 명이 직접 인권위에 전화하였으나 인권위 담당자가 현장에 바로 나갈 수는 없다고 답변을 하므로, 같은 날 13:05경 진정인 허○○으로 하여금 인권위 진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14:55경 청문감사실 소속인 진정외 김○○ 경사가 진정인들을 직접 면담하였으며, 진정인 오○○ 등 19명에게 인권위 진정서 작성을 위한 종지와 펜을 지급하여

같은 날 15:00경 이후 위 진정서(20개)를 제출받아 즉시 인권위로 송부한 사실,

거. 이 사건 당일 유치장 근무자들은 진정인들을 유치장에 구금하기 전 비품준비 및 유치실 환경을 정리하고 진정인들에게 이불 등 침구를 제공하였으며, 2009. 8. 4. 03:30경 및 15:55경 진정인 김○○, 이○○ 등에게 각 게보린 1정씩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03:52경 파스를 요구하는 진정의 김○○에게는 안티프라민을 대체 지급하였으며, 같은 날 17:45경 진정인 황○○이 요구하는 안약이 없어 인근 약국에서 점안액을 별도로 구입하여 지급하였고, 진정의 이○○ 및 김○○ 등이 부상 및 신체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 18:35경 병원진료를 위해 이들을 병원으로 호송하여 병원진료를 받게 한 후, 같은 날 19:25경 다시 유치장에 구금한 사실,

너. 유치장에 구금된 진정인들 37명은 모두, 조사를 마친 임산부와 모유수유부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진정인 허○○ 및 손○○는 그 항의의 방법으로 단식을 하였으며, 피해자 김○○은 모유수유를 위하여 2009. 8. 4. 오전 09:00경 ‘유아 대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날 10:45경에 피진정인 우○○ 수사지원팀장이 위 피해자의 10개월된 아들을 유치장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유치실 안에서 모유수유를 하게 하려 하였으나 진정인들의 항의로 위 피해자를 유치실에서 나오게 하여 유치장 내 신체수색실(탈의실)에서 수유하게 한 사실,

더. 임산부인 진정인 오○○는 2009. 8. 3. 21:40경 경찰서에 도착, 22:40경부터 23:20경까지 조사를 받은 후에도, 다른 사람들이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 02:16경 유치장에 함께 구금될 때까지 3시간여 동안 조사대기실 등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며, 대기 중에 여경과 동행하여 화장실로 가면서 자신이 임산부인 사실을 말하였고, 유치장 구금 후 피진정인 우○○의 “병원에 가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괜찮다.”고 답변하였으며, ○○○교육청을 방문하였던 시각부터 다음 날 08:00경 유치장 관식(조식)이 제공될 때까지 음식을 먹지 못하였고, 세 번의 유치

장 관식(밥, 콩나물국(또는 김치국), 김치, 단무지, 콩장)의 1/2정도의 양만을 섭취하였으며, 위 진정인은 2009. 8. 4. 20:50경 추가 재조사를 받은 후 조사실에서 나와 울고 있었는데 피진정인 박○○이 위 진정인에게 다가와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리. 1차 조사를 마친 진정인들 중 일부(진정인 허○○ 등 4명)에 대하여 2009. 8. 4. 19:30경 추가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전날 부상을 이유로 석방되었던 진정의 민○○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1차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날 23:00경 진정인들 전원이 석방된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2009. 8. 3. ○○○교육청에서 연행될 당시 집회를 개최한 사실 및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행법 체포되었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집회’라 함은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 가.항 내지 라.항에 의하면, 진정인들을 포함한 50~60여명은 비록 노래를 하거나 단체로 구호를 외치지는 않았지만, 2009. 7. 28. ○○○경찰서에 제출한 옥외집회신고서의 내용(‘집회장소 : ○○○교육청 정문 옆’)과는 달리 교육청내 현관 및 로비에서 교육감 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고, ○○○교육청의 시설보호요청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진해산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진정인들은 서로 팔짱을 끼고 연좌한 상태로 위 해산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법 체포한 행위는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며, 연행당시 위 경찰서 소속

경비계장인 피진정인 윤○○가 진정인들에게 범죄사실의 내용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도 명백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 제1항 제1호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나.항의 내용은, 진정인 원○○이 유일하게 진정한 사항으로서, 위 진정인은 2009. 9. 16. 위 진정을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진정의 각하 등) 제1항 제8호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박○○ 및 우○○은 진정인 오○○ 및 피해자 김○○이 본인들 스스로 임신부인 사실과 모유수유부인 사실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이며, 적극적으로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지 않아 특별히 다른 조치를 하여 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공범들이 있는 경우 다른 공범과 달리 조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 인정사실 나.항 및 더.항에 의하면 병원에 가겠느냐는 피진정인 우○○의 질문에 위 진정인이 “괜찮다.”고 답변하였고, 위 피해자가 10개월 된 아들에게 유치장 안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준 사실 등이 인정되나,

위 피진정인들의 주장과 달리 위 진정인 및 피해자는 모두 이 사건 당시 행해진 심야조사와 장시간 대기 및 유치장 구금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으며 애초에 임신부인 사실 등을 말하지 않은 것은 야간에 이루어진 조사를 마치고

나면 귀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진정인이 당시 피진정인들 및 담당 경찰관들의 질문에 “괜찮다.”고 한 것은, 당장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갈 정도로 몸이 아픈 상태는 아니었으며, 유치장에서 밤을 지새워도 몸 상태가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빨리 조사를 마치면 귀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 하에 신속히 조사를 받겠다는 의미에서 대답한 것이고, 병원에 갔다 온 후 다시 유치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피진정인 우○○의 말을 듣고 나서 어차피 귀가하지 못할 것이라면 병원 이동으로 괜히 몸만 더 힘들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회통념 상으로도 위 진정인과 같은 8개월의 임신부가 비록 구체적인 신체 이상 상태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야조사와 장시간 대기 및 유치장 구금은 태아와 임부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진정인들은 관련 규정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규칙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르면이라도 8개월의 임신부인 위 진정인에게는 그에 맞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급여하는 등의 적당한 급여 및 조치를 취하여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장에 임신부가 있음을 알게 된 후에도 유치장 관식 등에 다른 진정인들과는 구별되는 임신부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위 진정인이 경찰서 연행 후 석방되기까지의 24시간 동안 제대로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하였다는 점,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동법 제69조)으로서 유치장예의 구금도 당연히 이에 포함되고,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32조 및 「범죄수사규칙」 제83조는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지체없이 조사하고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7조는 위와 같은 불구속수사의 원칙 하에, 체포한 피의자라 하더라도 수사결과 명백히 불구속 사안에 해당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석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피진정인 박○○의 주장과 같이 구속여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사항이고 검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유치장 구금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 책임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찰에게 있고, 이 사건에서 체포·구금된 위 진정인 및 피해자는 모두 현행범 체포된 자들로서 당시 70여명이 넘는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연행된 것으로 당시 현장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도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어 그것을 인멸하는 것은 물리적, 사회적으로 불가능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이 분명하며, 위 진정인 및 피해자는 모두 유치원 교사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고 배우자 또는 보호자가 있으며 그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실이 1차 조사당시에도 이미 파악되었고, 특히 위 진정인은 8개월 만삭 임신부로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호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한 명 더 있고, 위 피해자는 모유수유 중인 10개월의 어린 자녀 외에 5살 된 자녀가 한 명 더 있어 위 진정인 및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구속의 사유가 없음을 명백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

피진정인 박○○은 ‘구속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재조사를 포함한 모든 조사가 끝나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전까지 이루어지는 신병확보를 위한 유치장 구금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공범간에 일부만 별도로 조치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현행범 체포당시 현장에 있었던 장애인들은 처음부터 진정인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고 건조물침입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황을 고려하여 해산 및 연행과정에서 애당초 분리되어 귀가조치되었고, 부상자인 진정의 민○○은 병원으로 호송 후 경찰서로 인치하였으나 조사가 곤란하다는 판단하에 일단 석방한 후 다음 날 별도로 소환출석하게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은 위 주장과 달리 위 진정인

및 피해자의 행위가 비록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없는 등 그 피의사실이 구속사유가 있을 만큼 중대하지는 아니하고 경우에 따라 공범 간 분리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으며, 위 진정인 및 피해자가 주거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는 임신부와 모유수유부임을 고려하면 심야에 진행된 1차 조사 후 굳이 새벽 시간 대의 유치장 구금조치를 할 필요 없이 그 다음 날 위 민○○과 함께 출석하게 하여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여도 무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피진정인 박○○은 위 진정인 및 피해자가 스스로 임신부인 사실 등을 밝히지 않은 것이어서 임신부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피진정인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1차 조사가 끝나고 유치장에 구금되기 전인 23:30경에는 이 사건 다른 피진정인들도 위 진정인과 피해자의 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도 계속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음 날 저녁 위 진정인을 재조사한 담당자인 피진정인 김○○ 역시 조사를 지시한 피진정인 박○○으로부터 재조사 대상자가 임신부라는 사실을 듣지 못하고 조사를 진행한 것 등에 비추어보면, 피진정인 박○○은 이 사건 수사의 주무과장으로서 조사대상자가 임신부인 경우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결국 위 진정인 및 피해자는 이 사건 피의사실 조사결과, 형사입건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절차에 회부되었는바, 비록 경미한 사건에 대한 조사라 하더라도 심야에 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1차 조사 후 추가적인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황들을 고려하면 불필요한 유치장 구금 대신 귀가조치 후 출석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 방법을 택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관련 규정들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참고인 조○○ 및 다른 진정인들 역시 위 진정인 및 피해자가 심야조사 및 유치장 구금 등으로 인해 유치장 안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2조 제3호는 ‘여성’을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고, 동 규칙 제10조 등에 따라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이 이 사건 임신부인 진정인과 모유수유부인 피해자를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피의자 조사를 한 후에 임신부라는 사실 등을 안 상태에서, 이들에게 구속사유가 없고 일단 석방 후 소환하여 재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유치장에 구금한 행위는, 위 언급한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위 진정인과 피해자의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및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1항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때에 해당된다. 다만, 인정사실 너.항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피해자 김○○의 모유수유를 위하여 유아대동신청을 즉시 허가하여 준 점, 비록 처음에는 피진정인 우○○이 아기를 유치실 철창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진정인들의 거센 항의로 피해자를 유치실에서 나오게 하여 신체수색실에서 수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준 점, 인정사실 더.항에 의하면 피진정인 박○○이 임신부인 진정인 오○○에게 죄송하다는 취지의 의사 표시를 한 점, ○○○경찰서 내부에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 및 유치장 구금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중범죄에 해당하거나 구속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등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임신부나 모유수유 중인 부녀자를 구속 수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진정에 대하여는 피진정인 박○○ 및 우○○ 등 개별 피진정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위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임신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불필요한 유치장 구금 및 심야조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소속 직원들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이 사건 일부 진정인들은 유치장의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인격적으로 모욕감이 들 정도였으며 유치장 내 화장실 및 세면대와 이불 등의 침구 상태가 매우 불청결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우○○은 비록 ○○○○경찰서 유치장이 위 통합유치장 운영방침에 따라 유치인들의 입감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치장 내 근무 및 관리는 상시 이루어지고 있고, 유치인들의 입감 전에는 항상 보호관들을 교양하고 유치장 내 환경정리 정돈 및 비품준비를 철저히 한 후 유치인들을 입감시키고 있으며 이 사건 진정인들을 입감시키기 전에도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환경을 정리하였다고 주장하고 그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진정인들 역시 당시 제공된 관식이 비위생적이었다고 하기 보다는 위 관식의 반찬 종류(김치국 또는 콩나물국, 김치, 단무지, 콩장)가 협소하고 음식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인정사실 거.항에 의하면, 진정인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유치장 내에 구급약이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진정인들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각종 약품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일부 진정인들의 경우 위 구급약 함에서 두통약(진통제) 등을 지급받아 복용하였으며, 진정인들이 특별히 요구하는 약품이 없는 경우 인근 약국에서 새로 구입하여 지급하기도 하였고, 부상 및 신체통증을 호소하는 일부 진정인들에 대하여는 병원진료를 받게 하였던 점,

인정사실 파.항에 의하면, 각 유치실 화장실의 문(차폐막)은 화장실 내에서의 유치인 자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고, 더욱이 여성유치실인 7호실의 화장실은 사방이 밀폐된 문으로 되어 있어 여성 유치인들을 특별히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는 점,

원칙적으로 유치장 피구금자들은 유치실 간 이동이 허용되지 않으나, 피진정인 우○○은, 여성이 대부분인 진정인들이 위 7호실 화장실의 사용을 요구하면 당시 유치실감시대 근무자의 감시에 따라 위 화장실 사용을 허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

이 사건 당시 유치장 화장실 등이 매우 불청결하였다는 일부 진정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이루어진 위원회의 실지조사에서, 위 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과 세면대 및 비품 등에 대한 관리·소독 및 청결상태 정비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유치장 구금 당시, 일부 진정인들이 유치장 내 화장실 및 세면대와 침구 상태가 매우 불청결하다고 생각하였더라도, 다른 일부 진정인들은 유치장 내에서 머리를 감고 세면을 하였으며 쾌적한 공간은 아니었지만 이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각 유치실에 설치된 CCTV는 화장실 내부를 촬영·녹화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 당시의 화장실 내부 청결상태를 사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다른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치장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일부 진정인들의 이 부분 진정은 위 진정인들의 주장 이외에 달리 그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 제1항 제1

호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우○○은 유치장 내 CCTV 설치는 당연한 것이고, 그 모니터를 남자 경찰관들이 감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타.항에 의하면, 대부분 유치장 경험이 없는 여성 진정인들은 유치장 내부 전면을 촬영하고 있는 CCTV가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임신부인 진정인 오○○를 포함한 일부 진정인들은 유치실 내에서 속옷을 갈아입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그러나, 위 진정인들이 만일 유치실 내부를 녹화하고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그 화면을 수사지원팀 사무실 등 유치장 외부에서 남자경찰관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다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서도 속옷을 갈아입을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CCTV 설치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속옷을 갈아입는 경우와 그 설치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속옷을 갈아입는 경우 그 행위자의 주의 정도는 크게 다를 것이 쉽게 인정되는 점,

비록 유치장은 장소적으로는 사적 공간은 아니나, 여성이 대부분인 진정인들이 그 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행위와 관련된 사실은 개인의 사적(내밀) 영역에 관한 문제라는 점,

현재 ○○○○경찰서에서는 유치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을 피구금

자들에게 따로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유치장 출입문 위에 높게 부착되어 있는 ‘CCTV 설치구역’이라는 표식(가로 20센티미터, 세로 8센티미터)은 유치장 출입자들이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정도의 표지로서 위 피진정인 스스로도 그 표시가 눈에 잘 띄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공공기관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그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는 점,

비록 유치장 내부를 촬영하는 CCTV가 유치인들의 자해와 소란방지 및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그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별 유치장의 상황에 따라 남성 유치인보호관이 그 촬영 화면을 감시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유치장에 따라서는 여성유치인들에 대한 감시를 실제로 여성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여성유치인들의 호송 및 신체수색은 여성경찰관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8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남성 경찰관들에 의한 감시가 언제나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 우○○ 및 이 사건 유치인보호관들이 진정인들에게 유치장 내부를 촬영·녹화하는 CCTV가 있고 이를 남성 경찰관들이 감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여성이 대부분인 진정인들의 「헌법」 제17조에 포함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1항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때에 해당된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치장 내 CCTV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촬영 화면을 남성 경찰관들이 감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경찰서 내부에 CCTV 설치안내 및 고지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 등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진정에 대하여는 개별 피진정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서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규정에 따라, 향후 유치장 입감자들이 유치장 내 CCTV 설치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CCTV 설치 안내 및 그 고지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바.항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피진정인 우○○ 팀장이 진정인들의 인권위 진정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하.항에 의하면, 비록 위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이 직접 인권위에 전화를 하겠다는 요구에 대하여는 이를 허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현행 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직접적인 외부 전화연락을 제한하고 있는 유치인 및 유치장 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

위 피진정인은 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요구가 있는 즉시 청문감사실에 진정인들의 인권위 진정요구가 있음을 전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인권위로 전화하여 인권위 담당자의 방문을 문의하여 그 진정 방법을 강구한 점,

비록 인권위에의 직접 전화는 허가하지 않았으나 인권위 진정서 작성을 위한

종이와 펜을 지급한 후 진정인들이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받아 즉시 인권위로 송부함으로써 이 사건 조사가 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진정인의 행위는 진정인들의 인권위 진정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 제1항 제1호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사. 진정요지 사.항에 대하여

피진정인 김○○, 김○○ 및 김○○는, 이 사건 당시 조사대상자가 너무 많아 상황이 어수선하여 순서대로 조사를 한 것일 뿐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이고 비록 ‘동의서’라는 서면을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진정인들의 경우에는 구두로 심야조사 동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수사주무과장인 피진정인 박○○ 역시 자정 이후에 조사를 할 경우에는 심야조사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진정인들을 위해서라도 조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 심야조사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아.항에 의하면, 진정인 백○○, 김○ 및 최○○은 자정을 넘은 시각에야 비로소 조사를 받으면서도 ‘심야조사동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예외적으로 심야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심야조사동의 및 허가서를 작성’할 것을 규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64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인 점,

이 사건 진정인들은 모두 21:00경부터 22:00경 야간에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비록 모든 조사대상자의 조사 시작 시각이 자정을 넘은 것은 아니나 피진정인들은 이미 그 시각이 자정에 가까운 시간임을 알고 있었으며, 37명의 연행자를 순차적

으로 조사하게 되면 자정을 넘어 심야까지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진정인들 역시 심야(자정 이후)에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진정인 김○ 등이 그 시각에 조사를 받겠다고 구두로 말한 것은, 담당 형사가 빨리 조사를 마치고 끝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되도록이면 빨리 조사를 받고 귀가하겠다는 생각에 조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지, 심야조사 후에도 귀가하지 못하고 유치장에 구금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진정인들이 적어도 자정을 넘어 조사를 시작한 진정인 백○○, 김○ 및 최○○에 대하여는 위 규칙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야조사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음으로써 위 진정인들의 「헌법」 제10조에 포함된 수면권 및 휴식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제1항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되는 때에 해당된다. 다만, 위 피진정인들이 일부 진정인들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시각은 자정을 넘었으나, 그 조사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길지 않아 이로 인한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진정인은 동의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그 동意的 의사를 표시한 점, 피진정인 박○○은 본인이 수사주무과장으로서 빨리 조사를 끝내기 위해 심야조사동의에 대한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며 조사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본인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부분 진정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심야조사를 담당한 개별 피진정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경찰서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2호(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수사주무과장으로서 위 심야조사에 대한 지휘 책임이 있는 피진정인 박○○에 대하여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 진정요지 아.항에 대하여

진정인 허○○은, 피진정인 박○○이 진정인을 위 임시강사 대표라고 특정하면서 “애는 지능과로 보내야 해!” 또는 “애, 재!”라고 반말을 하였으며, 시종일관 고압적 자세로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화장실도 보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진정인은 위 진정인을 포함한 모든 진정인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고압적으로 말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체포된 진정인들의 수가 많고 상황이 어수선하여 소속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진정인들에게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고, 화장실 사용은 당시 피체포자의 인원파악 및 신병확보를 위해 몇 분간 잠시 대기하게 하였을 뿐 사용 자체를 불허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위 진정인이 조사를 받은 장소인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함께 또는 순차적으로 조사를 받은 진정인 배○○, 최○○, 조○○ 및 백○○은 위 피진정인이 반말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거나, “화장실 갈 때 한 사람씩 가라.”라는 등의 큰 소리를 낸 경찰관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사람이 위 피진정인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른 진정인들 역시 이 사건 연행과정에서 위 피진정인이 소리 지른 것을 보지 못하였고 화장실 사용이 금지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진정인 허○○의 진술에 의하여도 위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직접 반말을 한 것은 아니고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며, 또한

진정인들에게 큰 소리 외에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진정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그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진정의 기각) 제1항 제1호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다.항 및 마.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진정요지 사.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권고하며, 진정요지 가.항, 라.항, 바.항 및 아.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3

2010. 11. 26.자 10진정109800결정 [청소년 피의사건 조사시 보호조치 미흡 등 인권침해]

피진정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들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물론, 경찰청 예규인 「소년경찰직무규칙」 제8조 제3항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할 것이며, 특히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동 규칙 제9조 제3항 면접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동 규칙 제31조 ‘소년의 보호자, 기타 소년에 대하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제2호)’는 규정과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6조 제3호 ‘진술인의 연령이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술하는 내용을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진술인이 연소자이거나 심신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이나 친족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한다’는 규정 등 위와 같이 피의자의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무시하고 미성년자를 수사할 때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31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6조 등

【진 정 인】 안○○

- 【피진정인】 1. 최○○
2. 여○○
3. 조○○

【주 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 2에 대한, ○○○○경찰서장에게는 피진정인 3에 대한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 2는 2010. 2. 24. 23:55경 진정인의 자 안○○(이하 ‘피해자’라고 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하였고 동행과정에서 미란다원칙 등으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조사과정에서 보호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나. 피진정인 3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면서 진정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조사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2

피진정인 1, 2는 2010. 2. 24. 23:55경 ○○시 ○○구 ○○동 소재 노상에 서 자신의 자전거를 훔친 사람과 같이 있다는 일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확인한바 신고자는 진정 외 피의자 박○○(16세, 남)외 1명을 지목하며 자신의 자전거를 훔쳐갔다고 하며 피의자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여 현장에 있던 자전거 두 대에 대해 추궁한바 위 박○○는 자신이 도서관 부근 앞 노상에서 훔친 것이라고 진술하고 함께 있던 이○○는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받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에 대한 연락처를 확인하여 연락하니 자신 역시 ○○구청 옆 노상에서 자전거를 훔친 것이라고 인정하여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니 순순히 응하여 동행하게 되었다.

○○지구대에 도착하여 기초서류를 작성하던 중 피해자에게 부모의 연락처를 물어본 후 휴대폰과 지구대 일반전화로 수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보호자에게 통지 및 연락을 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에게도 경찰 공용휴대전화로 진정인에게 연락할 기회를 주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동행할 것을 물어보았으나 아버지는 집에 없을 것이라고 하며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동행하지 않았다.

추후 위 박○○의 모와 연락이 닿아 지구대로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해 문의하자 피해자는 아들의 친구로 평소 잘 아는 사이라고 하며 진정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자의 신병인계 등 심야시간 대 장시간 조사의 어려움 등을 토로하자 자신의 아들과 함께 데려가겠다고 하여 함께 귀가조치 시켰으며 박○○에 대해서만 신원보증서를 받아 말미에 첨부하였다.

미란다원칙에 대해 피해자에게 절도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지 후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기초수사 후 바로 귀가조치 시킬 것임을 알려주었고 피해자가 자진하여 조사에 임한 사항으로 강제수사에 적용되는 미란다 고지 및 확인서는 불필요하여 작성하지 않았다.

2) 피진정인 3

2010. 2. 25. 00:05경 ○○경찰서 ○○지구대에서 자전거 잘도 혐의로 임의 동행 보고된 피의자 안○○에 대해 2010. 2. 26. 13:00경 ○○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 자진 출석하게 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고 동일 13:40경 종료 후 귀가 시킨 사안으로 2010. 2. 26. 09:00 ~11:00경 피해자를 출석시킬 당시 ○○지구대에서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주거지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자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다. 이에 부모님이 계시면 바뀔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진정인이 집에 없고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하여 부득이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출석시켜 조사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주거지 전화번호로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를 하지 못하였고 임의동행 보고 된 사안으로 서면통지 규정이 없어 통지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1) 진정요지 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에 의하면 2010. 2. 25. 00:05경 피해자는 피진정인 1, 2와 함께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자전거 절도사건 관련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진정인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 1, 2는 진정인의 자택으로는 전화를 하였다고 진술을 하고 있으나 진정인의 휴대전화로는 전화를 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집으로 동행하여 진정인의 부재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진정요지 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 피진정인 3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진정인 3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010. 2. 26. 13:00경 ○○경찰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 피진정인 3의 진술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자택으로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 피진정인 3, 진정인의 진술에 의하면 진정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해자에 대한 전화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작성 전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피진정인1), 2)와 함께 ○○지구대에 동행한 2010. 2. 25. 00:05경부터 다음 날인 26. 13:40경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시점까지 피해자의 피의사실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요지 1)항 및 2)항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족인 진정인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과 미란다원칙 미고지한 부분에 대해

1)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자택에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연락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임의 동행한 사안으로 서면통지의 의무가 없어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만16세의 미성년자로 성인에 비하여 자기방어능력이나 법률적 지식, 판단능력 등이 부족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의 관계인들에게 통지할 의무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해 고지할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바, 피해자가 임의동행이 무엇인지 의미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진정인들이 자전거 절도 사건과 관련 물어볼 사항이 있으니 잠시 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따라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관인 피진정인 1, 2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절도사건을 이야기하며 동행을 요구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피해자의 자택번호로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진정인1, 2, 3은 피해자에게 진정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물어본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자택과 ○○지구대의 거리가 불과 도보 8분 내외(‘다음’ 지도검색 283M)로 근접해 있어 충분히 방문하여 진정인의 부재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여성과 청소년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의 담당 경찰관인 피진정인 3은 임의동행 보고된 사안으로 서면통지 규정이 없어 통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청 예규인 소년경찰직무규칙 제8조(소환시의 유의사항) 제3항에는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할 것이며, 특히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호자의 동조를 의뢰하여야 한다 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3) 피진정인 1, 2는 피해자가 자진하여 조사에 임한 사안으로 임의수사과정에서 강제수사에 적용되는 미란다 고지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4)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물론, 경찰청 예규인 소년경찰직무규칙 제8조(소환시의 유의사항) 제3항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할 것이며, 특히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는 규정과 동 규칙 제9조(면접시의 유의사항) 제3항 면접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년의 보호자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동 규칙 제31조(청소년 조사 시 유의사항)는 ‘소년의 보호자, 기타 소년에 대하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자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제2호)’는 규정과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6조 제3호 ‘진술인의 연령이나 지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술하는 내용을 조리 있게 정리할 수 있도록

록 도와준다.’ ‘진술인이 연소자이거나 심신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이나 친족 등에게 보조인을 선정하도록 권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위와 같이 피의자의 권리구제절차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이를 무시하고 미성년자를 수사할 때 보호자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행위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김영혜 위원 황덕남 위원 장주영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소년업무처리규칙」

제7조(소년경찰의 기본정신) 소년경찰활동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1. 건전육성의 정신 : 소년경찰활동은 소년을 건전하게 지도·육성·보호함을 근본으로 한다.
2. 소년의 특성 이해 : 소년의 심리·생리, 기타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선도를 행한다.
6. 관계자의 존경과 신뢰의 획득 : 인격의 향상과 식견의 함양에 힘써 소년 및 관계자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얻는다.

제8조(소환시의 유의사항) 경찰관이 직무상 소년 또는 그 보호자를 소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소년 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때에는 경찰관서에 소환하지 않고 경찰관이 직접 가정, 학교 또는 직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2. 소년의 학교 또는 직장에서 공공연하게 소환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3. 소년 또는 보호자를 소환할 때에는 보호자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를 할 때에도 될 수 있는 한 사복을 착용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의2(진술거부권의 고지) ① 범죄혐의가 있는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의 고지는 조사가 상당기간 중단하였거나 다시 이를 개시할 경우 또는 담당경찰관이 교체된 경우에는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

5. 사생활 비밀 및 인격권 침해

1

2009. 5. 14자 09진인984결정[인격권 침해 등 인권 침해]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고 그 여죄를 추궁한다는 사유로 욕설까지 한 행위는 비록 진정인이 피의자의 신분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진정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

【진 정 인】 ○ ○ ○

【피진정인】 ○ ○ ○

【주 문】 피진정인 소속기관의 장인 0000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9. 3. 17.(화) 0000경찰서 000 순경으로부터 진정인을 피의자로 하는 사건의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000 순경이 진정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여 진정인의 인격을 모독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피의자로 되어있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진정인에게 나이차이가 많이 나서 말을 놓겠다고 사전에 고지한 후 말을 놓아 조사한 사실이 있으나, 당시 진정인이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2) 또한,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인 진정인이 공동정범 황정동과 함께 상당한 절도 범행을 하였음에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한명이라도 더 찾아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지 않겠느냐며 설득과 권고를 하고 그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 새끼야 바른 말 해라, 사실대로 말해라.”는 정도로 말을 하였을 뿐 인격을 모독할 만한 정도의 욕설이나 비인격적인 조사를 한 사실은 없다.

3. 관련규정

가.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호)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 ②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며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인권보호 원칙)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라. 「인권보호수사준칙」

제38조 (피의자의 조사)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하생략-

마.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조(예절) ①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등을 살펴보면,

가. 2009. 3. 17. 진정인은 피의 당사자로 0000경찰서에서 000 순경에게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했으며 “이 새끼야 바른 말 해라, 사실대로 말해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5. 판단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경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말을 사용하고 그 여죄를 추궁한다는 사유로 욕설까지 한 행위는 비록 진정인이 피의자의 신분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보호 받아야 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진정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2

2009. 8. 31.자 08진인215결정 [부당한 전과조치 및 개인정보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1】 국정원 김○○에 대해 징계조치 할 것을 권고

【2】 ○○○경찰서장에게 권○○에 대해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근거 없이 진정인의 전과를 조회하고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

【참조조문】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진 정 인】 강○○

【피진정인】 1. 권○○
2. 김○○
3. 김○○

【주 문】 1. 김○○에 대한 진정을 각하한다.
2. ○○○경찰서장에게 권○○을 경고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3. 국가정보원장에게 김○○을 징계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은 2003. 7.월경 우울증 환자인 자신의 처 조○○을 불법진료하고, 이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진정외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를 찾아가 퇴직을 요구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항의하였는데, 동 이○○가 아래와 같이 피진정 경찰관들과 공모하여 진정인의 범죄경력을 불법조회하고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같은 해 11월 경 ○○○○지방검찰청에 진정인을 상해,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1) 피진정인 권○○은 성명불상 소속 경찰서 상급자의 지시에 의거 진정인에게 어떠한 고소 및 고발, 검문검색 등의 전과조회를 할 수사상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3. 9. 16. 00:58경 및 같은 날 00:59경 2회에 걸쳐 불법적으로 전과조회를 하고 위 이○○에게 유출하였다.

2) 피진정인 김○○은 2003. 11. 28. 10:44경 진정인에 대하여 전과조회를 한 후, 위 이○○와 공모하여 전과조회 사실과 달리 100만원 재물손괴전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송치보고서에 기재하고, 이를 위장하고자 같이 편철해야 할 위 전과조회 기록을 임의파기 하고 위 진정인의 피의사건 담당 검사의 재수사 지휘를 받자 아무런 사건관련도 없는 진정인의 처 조○○에 대하여 2004. 2. 5. 11:37경 전과조회를 하였다.

나. 진정인은 2004년 공기정화기 제조업체 ○○○○○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진정의 김○○(○○○이사겸 ○○투자자문회사 대표)을 통하여 선물펀드에 일금 7천6백만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위 김○○이 위 펀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하였다는 내부제보를 받고 2004. 3. 19. 위 손해배상횡령금환소 소송(2004가단17997)을 제기하자 김○○ 이 같은해 4. 월경 진정인을 명예훼손, 공갈미수, 상해, 업무방해, 강요, 소송사기 등의 혐의로 ○○○○지검에 고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직원이 김○○의 사주를 받고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가 국제범죄조직원이라는 허위의 범죄정보를 내세워 진정인에 대한 전과조회 및 기 수사 중인 이○○ 고소사건을 조회, 이를 김○○에게 불법적으로 넘겨주어 자신의 고소사건에 이용하도록 하였다.

2. 조사대상 여부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이나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8. 2. 28.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피진정인 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였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권○○ (○○○경찰서)

2003. 2월경 서울○○○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에서 근무하였는데 강력3팀에 서는 주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방화사건 등 6대 범죄의 피의자를 검거하는 일을 하였고 같은해 9월경 진정인 강○○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의뢰하여 조회 한 사실은 있으나 오랜 기일이 지나 조회한 이유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타인의 부탁을 받고 조회한 사실은 없으며 진정내용에 기재된 진정인 및 이○○에 대해서 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범죄경력조회 의뢰서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진정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은 인정하나 조회한 범죄경력의 내용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업무 이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은 없다.

2) 김○○ (국정원)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국죄범죄 방지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내외 투자 유치를 가 장한 개인 및 조직의 경제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해외전문, 기업계, 과학계 전문인사 접촉활동 외부 협조자들과 접촉 하는 과정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2004. 2월경 미상 협조자로부터 진정인 강○○가 사기 전과자라는 첩보를 입수한 후, 산업정보 업무상 신뢰도

확보 및 첩보내용의 신빙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달 25. 사무실에 설치된 공안망 시스템을 통해 강○○ 및 그의 처에 대한 범죄조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별다른 전과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첩보내용과 상이하여 보고가치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강○○ 관련 추가 내사를 진행했거나 관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김○○에게 범죄경력을 유출하였다고 하나 김○○을 전혀 알지 못하고 외부에 강○○에 대한 신원사항을 유출한 사실도 없다.

4.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서, 피해자의 주장, 피진정인의 제출자료, 고소장, 참고인진술 등에 의하면, 다음 사항이 사실로 인정된다.

가. 권○에 대하여

1) 피진정인 권○은 2003. 9. 16. 00:58, 00:59 두 차례에 걸쳐 근거서류 없이 진정인 강○○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사실이 있다.

2) 2003년도 당시 범죄경력, 차적조회, 주민 조회, 공안사범 조회 등 각종 조회를 할 때는 조회를 하고자 하는 담당자가 구두로 수사목적이라고 하면 근거서류가 없어도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였다.

3) 진정요지 가. 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내사한 결과 위 피진정인이 사건 관계없이 진정인 전과조회 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시효(3년)가 완성되어 입건하기 어렵고 징계시효도 지나 청문감 사실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2007. 9. 17. 내사종결 하였다.

나. 김○○에 대하여

1) 2006. 4. 24. 위 권○○에 대한 진정사건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법찰청은 국정원에 강○○와 조○○에 대한 범죄경력조회(2004. 2. 25. 실시, 조회자:이○○) 근거와 사유 제시를 요구하였고 국정원은 국제범죄업무관련하여 범죄경력을 조회하였다는 회신을 하였다.

2) 범죄경력조회 확인명부에는 조회자가 ‘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공안망조회는 조회권한을 가진 국정원 직원들을 경찰청에 모두 등록하지 않고 ‘이○○’이라는 대표자만 등록하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 조회자는 ‘이○○’이 아니다.

3) 진정인이 국정원에 전과조회를 한 직원이 누구인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국정원이 비공개를 하여 진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국정원 김○○이 진정인과 만나 진정인과 관련하여 투자관련 사기의혹이 있으니 신뢰도 검증이 필요하다는 첩보를 받고 공안망 시스템을 통해 강○○와 처 조○○에 대해 범죄조회를 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4) 강○○와 진정의 김○○의 지인인 참고인 김○○에 의하면 2004. 3. 11. 강○○와 장안평에서 만나 점심을 먹던 중 김○○이 강○○에게 전화하여 ‘국정원에 조회를 다 해봤다 고소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수화기를 통해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5) 2004. 4. 23. 김○○이 진정인을 상대로 공갈미수, 명예훼손, 상해, 업무방해, 소송사기미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이○○가 강○○를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과 진정인의 처 조○○이 1996년 간통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

6. 판단

가. 피진정인 김○○에 대하여는 2008. 2. 28. 침해구제제1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권○○에 대하여

1) 피진정인에 대한 내사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소시효 3년이 완성되었다고 하였으나 범죄경력조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그 의미를 정하고 있고 수사자료표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 자료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한 행위는 2003. 9. 16.에 이루어 졌으므로 위법을 적용하면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진정인이 당시 강력3팀에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방화사건을 맡고 있었고, 진행 중인 사건에 진정인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에 대해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제3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범죄경력조회를 한 후 진정의 이○○에게 유출하였다는 부분은 진정인의 주장외 달리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볼 때 동대문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경고조치를 권고한다.

다. 피진정인 김○○에 대하여

진정인은 국제범죄에 대한 첩보를 근거로 진정인과 처 조○○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하였으나 첩보내용에 부합하지 않아 보고가치가 없어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고 진정의 김○○은 알지도 못하고 범죄경력을 유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04. 3. 11. 진정인과 김○○의 통화 할 때 김○○이 국정원에 조회해봤다라고 말하는 것을 수화기를 통해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김○○이 진정인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에 진정인에 대한 내용과 처 조○○에 대한 전과사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정황을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처 조○○의 범죄경력을 김○○에게 유출 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을 위반하고 「헌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생활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개인정보

가 유출된 것은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어 피진정인에 대해 징계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3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3

2009. 11. 23.자 09진인1874결정 [판사의 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1】 통상적으로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를 나무라며 사용하는 말이며, 비록 진정인이 법정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고, 피진정인(○○지방법원 판사)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40대인 피진정인이 69세인 진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없음

【2】 법정지휘권이라는 것도 공복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공무원이 이를 국민들에 대해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은 법정지휘권 행사범위를 벗어난 위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음

【참조조문】

【진 정 인】 ○ ○ ○

【피진정인】 ○ ○ ○

【주 문】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로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재판장이었는데 2009. 4. 23. 16:30경 재판이 진행되던 중, 진정인이 법정에서 허락받지 않고 발언하였다는 이유로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며 질책하였다. 40세가량으로 보이는 피진정인이 69세 노인인 진정인에게 ‘버릇없다’는 표현으로 질책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당시 진정인은 재판장 허락 없이 재판장과 피고대리인의 대화에 끼어들며 말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법정예절을 지키라고 주의를 준 사실이 있다. 진정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기에 법정예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에 엄히 주의를 주었다. 이는 재판장의 법정지휘권 행사이고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다만 진정인이 주장하는 그대로의 표현을 하였는지는 기억할 수 없고 법정예절을 지키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 참고인 ○○○ 변호사

참고인은 진정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당시 법정에 있었기에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 그대로이며 참고인도 당시 피진정인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매우 불쾌하였다. 피진정인은 40대였고 진정인과 참고인은 70대였는데, 손아래 사람에게나 사용되는 ‘버릇없이’라는 말을 들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충격과 당시 대응하지 못한 자책감 때문에 참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사임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호 법정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론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재판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이외에 원고 측 이종욱 변호사, 피고 측 이완근 변호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의 ○○○사무관이 참석하였고, 다른 방청객은 없었다.

나. 이튿날인 2009. 4. 24. 참고인 ○○○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을 사임하였다.

다. 피고 측 ○○○변호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무관은 당시 피진정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진정인은 ‘월간 ○○○○ 2009년 6월호’ 제256쪽에 ‘버릇없는 소송 당사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기고하였는데 수필은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중한 사법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4. 판단

진정요지와 같은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예절을 지키지 않은 진정인에게 엄히 주의를 준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발언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과 사건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버릇없다”는 발언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통상적으로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를

나무라며 사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비록 진정인이 법정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고, 피진정인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40대인 피진정인이 69세인 진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법정지휘권이라는 것도 공복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공무원이 이를 국민들에 대해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법정지휘권 행사범위를 벗어난 위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3.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최경숙 위원 유남영 위원 문경란
 위원 김태훈 위원 윤기원 위원 정재근 위원 황덕남<불참>
 위원 조 국<불참> 위원 최윤희<불참> 위원 김양원

4

2010. 4. 26.자 09진인4149결정 [욕설에 의한 인권 침해]

피진정인의 반말과 욕설에 대하여 OO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의 반말과 욕설은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동법 제6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제6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정○○

【주 문】 OO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0. 21.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아 피진정인에게 조회가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성의 없는 답변을 하여 결국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진정인은 "답답이 아니면 말은 왜 했냐?"고 하면서 화가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곧바로 발신번호를 확인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해서 "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없다면 없는 건데 말귀도 못 알아 듣냐? 너 몇 살이야? 나이도 어린 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생각이 빠들어 젖으니까 말이 빠딱하게 들리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00지방법원 00군법원 소속, 정00)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 파일은 사건 당시의 대화내용이 맞지만 진정인이 욕설했던 앞부분은 빠뜨린 채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녹음한 것이다. 진정인이 전화할 때 이미 기분이 나쁜 상태에서 전화했는데, 진정인이 채권이 있는데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전화한 것 같아 채권자가 대위해서 등기하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다. 그런데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먼저 전화한 것 자체가 기분 나빴는지 계속 말꼬리를 잡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등기 관련 문의에 군법원 소관업무가 아니지만 등기에 관해서도 알고 있기에 설명을 하려고 하고 답변을 한 것이며, 진정인이 불친절하게 느껴졌다면 이러한 일로 힘들게 한 부분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한다.

다. 참고인 진술요지(00지방법원 00군법원 소속, 이00)

피진정인이 등기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는 대로 설명을 하였으나 진정인이 막무가내로 질문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이에 피진정인은 다시 설명을 하겠다면서 발신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였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욕하지 마, 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 그 이후는 녹음 파일과 같고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욕한 것은 듣지 못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통화내역, OO군법원의 관할업무, OO지방법원이 진정인에게 보낸 회신문, OO지방법원 감사담당관실의 조사경위서, 2009. 11. 30. 피진정인이 OO지방법원 감사부서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진정인과의 통화내역, 전화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10. 21. OO군법원으로 전화를 하여 피진정인에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였으나 조회가 되지 않는 사유를 물었고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위와 관련된 질의내용은 OO군법원의 관할 업무가 아님을 알려주고 특정한 지번에 등기전산정보가 없을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진정인은 진정인의 답변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여 결국 피진정인과 말다툼을 한 후 전화를 끊었다.

나. 진정인과 위와 같은 말다툼이 있는 후,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자 진정인은 “어, 그런데, 어, 너 해 보자는 거지? 너 이름이 뭐라고? 너 나이가 몇이야? 너 이 씨발놈! 니 자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보자. 인터넷에 올려 줄게.”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은 “아니 당신은 나이가 몇 인데 반말로 욕하고 난리야?”라고 하자 진정인은 “어쭈, 야! 몰라서 물어보면 자세히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냐? 이씨발.”이라고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야! 이 새끼야!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야지? 인터넷에 올리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였다.

다. 진정인이 2009. 10. 21. OO지방법원 게시판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내용과 같은 글을 게시함에 따라 OO지방법원은 진정인에게 욕설을 한 피진정인에게 엄중히 훈계하였다는 회신문을 송부하였다.

5. 판단

「국가공무원법」 제59조에서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인 피진정인은 위 규정에 따라 국민인 진정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진정인이 반말과 욕설을 먼저 하였다는 사유로 진정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동법 제63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 진정인과 피진정인 상호간에 욕설이 오간 점, OO지방법원에서 이미 피진정인에게 엄중 훈계한 점을 감안하여 피진정인의 감독자인 OO지방법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5

2010. 4. 12.자 09진인752결정 [공직기강교육 장소에서
경위서 및 사유서 낭독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 및 피진정기관 소속 인사 담당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관이나 윤리적 판단도 포함됨. 양심의 자유에는 자신의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 즉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하고 침묵의 자유는 양심을 언어에 의해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함.

【2】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교육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경위 설명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다짐의 변’을 발표하도록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9조,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2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등

【진 정 인】 하○○

【피 해 자】구○○

【피진정인】 ○○○○○○○장

【주 문】 1. 피진정인 및 피진정기관 소속 인사 담당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2009. 1. 20.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파면하겠다고 하는 등 강제로 사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사표제출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의원면직 처리를 하였다.

나. 2009. 2. 초순경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진정인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잘못된 점과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진정인은 이로 인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건에 대해 직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교육장소에서 사유서를 낭독하도록 강요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청원경찰로 재직 중이었던 피해자는 2009. 1. 19. 심야 취약 근무시간에 동료와 시내 당구장에 가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복무 담당자에게 적발되었다. 피진정기관은 각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국가예산으로 청원경찰을 배치·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 피해자의 행위는 청원경찰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이나, 피해자는 징계위원회 회부 이전에 의원면직을 선택한 것으로 이는 엄연한 본인의 권리 행사이며 피진정인이 사표제출을 강요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온당치 않다.

2) 이렇듯 중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조치에 앞서 피해자의 가정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진정인과의 면담과정을 거치며 피해자의 인사에 관해 심사숙고한 것이다.

3) 기관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기에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고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복무기강확립교육(당사자의 경위 설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다짐의 변 포함)과 기관장 경고로 이 사건을 일단락 짓기로 결정하고 인사관리계통에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처음에는 수용하는 자세였으나 추후 어떤 사유에서인지 불응하여 교육은 취소되었고, 2009. 3. 5. 피해자에 대하여 의원면직 조치가 완료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근무시간인 2009. 1. 19. 24시경 ○○시 ○○동 소재 당구장에 출입하여 불시 당직 점검에 적발되었다.

나. 위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예규(행안부 206호, 2008.12.5.)」에 의거 국가공무원의 징계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피해자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직무태만’이나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인 ‘파면’에만 해당되고,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 2에 의거 ‘파면’은 ‘중징계’사안으로 동법 제2조 제5항 및 「국가공

무원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피진정인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있다.

다. 2009. 1. 29. 피해자는 사건 경위 및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해 2. 2. 피해자는 ‘본인은 2009. 2. 2.자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라. 2009. 2. 초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부인인 진정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내용은 주로 피해자의 잘못에 관한 것이었다.

마. 2009. 2월 경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기관장 경고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직기강교육 석상에서 ‘당사자의 경위 설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다짐의 번 등’의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인사담당 직원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바. 피해자는 위 제안을 거부하였고 2009. 3. 5. 피해자는 앞서 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사. 피해자는 2009. 3. 9. 사표는 강제에 의해 제출된 것이니 사표수리를 취소 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피진정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진정인의 사직서 제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던 점, 2009. 2. 2. 피해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이에 따라 피진정인이 2009. 3. 5. 피해자를 의원면직 처리한 점, 피해자가

2009. 3. 9.에 발송한 내용증명서는 이미 의원면직 처리된 이후에 발송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 3. 5.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의원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의원면직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강요 등이 있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인 진정인까지 불러 면담을 한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행위가 중징계 요구 사안이나 직원들의 탄원서 및 중징계 사안이 가족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피해자의 중징계 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인에게 면담을 요구한 점, 면담 내용은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진정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관이나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에는 자신의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 즉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하고 침묵의 자유는 양심을 언어에 의해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직기강교육 석상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위 설명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다짐의 변’ 등을 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바, ‘경위 설명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다짐의 변’은 피해자의 내심에 있어서 윤리적 판단 등 ‘양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공직기강교육 자리에서 표명하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의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 기관의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근무했던 많은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낱낱이 밝히고 반성하는 다짐까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심한 굴욕감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요구가 피해자에 대한 배려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중징계 결정에 의해 파면당할 수도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제안 또는 요구는 사실상 강요하는 효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교육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경위 설명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다짐의 변’을 발표하도록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장주영

6

2011. 7. 27.자 11진정0265200, 11진정0290200(병합) 결정 [경찰의 사생활 침해 등]

【결정사항】

피진정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피정인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수행 중 피의자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진정인이 “다른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는지”에 대한 사항은 진정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를 수사중인 담당자라 할지라도 그 발언에 신중을 기하였어야 하나, 피진정인이 이를 참고인에게 발언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을 노출한 사실이 인정된바 이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임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

【진 정 인】 1. 오○○ 2. 오○○

【피진정인】 1. 이○○ 2. 김○○ 3. 이○○ 4. 김○○ 5. 조○○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조치하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직무수행 중 피의자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들은 ○○○○경찰서 형사와 강력6팀 소속으로서 2011. 4. 20. 17:00경 ○○시 ○○구 ○○3동 우체국 옆에서 진정인을 체포하면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손을 꺾어 넘어뜨린 후 수갑을 채우고 경찰차량에 태우더니 시트 사이에 진정인의 몸을 밀어 끼운 후 무릎으로 진정인의 허리를 짚고, 발로 밟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위 조사과정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인 ○○○에게 “진정인이 술집에 가서 다른 아가씨와 같이 잤다.”는 등의 허위사실로 진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및 참고인 진술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인들에게 당한 것이 분하여 진정한 것이고, 아들이 억울하다고 하여 아버지가 동일내용을 진정하게 되었다. 세부내용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을 2011. 3. 24. 새벽 ○○시 ○○동 소재 ○○주점에서의 특수절도 피의자로 특정하고, 2011. 4. 4. ○○지방법원으로부터 진정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11. 4. 20. 17:15경 ○○시 ○○구 ○○3동 우체국 앞에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진정인을 발견한 후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적법하게 검거하였다.

2) 진정인을 검거할 당시 진정인은 125cc 오토바이에 탄 채 “체포영장 가져와 봐, 씨발 쪽팔리게”라고 고함을 지르자 주위 사람들과 진정인의 애인 ○○○ 등이 이를 지켜보았다. 피진정인 3이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진정인은 주먹을 휘두르는 등 완강히 거부하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졌고, 다시 일어난 후에도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계속 저항하였다.

3) 진정인을 유치장에 입감한 이후 2011. 4. 21. 진정인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와 ○○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는 ‘골절 의심 및 타박상 소견’을 받았지만, 진정인의 진료에 대한 ‘감정촉탁 진단결과’는 갈비뼈 골절의 소견은 없으며 가슴 부분 타박상으로만 감정 되었다.

이는 당시 진정인이 검거에 강력히 저항하며 진정인이 오토바이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진정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4) 2011. 4. 20. 경찰 차량으로 진정인의 애인 ○○○과 그의 친구와 함께 ○○○의 집으로 가던 중 조수석에 앉은 피진정인 1이 피진정인 3에게 적은 소리로 “(진정인의) 2차 관계는 입증이 되더냐?” 라고 물었더니 뒤에서 이 말을 들은 ○○○이 “뭘, (진정인이) 2차를 갔습니까?”하여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이 2차로 간 것이 아니고 현재 조사중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진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다.

다. 참고인 진술 요지

1) ○○○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진정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해 진정인에게 그다지 큰 충격은 없었을 것이다. 진정인이 경찰차 안으로 들어갔을 때 경찰이 진정인을 짓누르는 것을 보았으나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진정인 1이 나에게 "진정인이 아가씨하고 2차 간 것 알고 있냐?"고 물어본 사실이 있다.

2) ○○○(○○○의 친구)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체포할 당시, 진정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과 실랑이를 하다가 오토바이가 넘어졌다. 진정인이 체포되어 차안으로 들어

갔을때는 차문이 닫혀 있어서 경찰들이 구타 및 폭력을 행사 했는지는 알 수 없다. 피진정인 1이 ○○○에게 "진정인이 아가씨하고 2차를 갔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

3) ○○○(진정인 체포 당시 현장 목격자)

경찰들이 진정인에게 오토바이에서 내리라고 하였지만 진정인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들과 진정인이 서로 실랑이를 하였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순간은 자세히 보지 못하였으나 진정인이 체포되어 승합차 안에 들어갈 때까지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진정인이 승합차에 들어간 이후에는 폭행사실은 전혀 목격한 바 없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경찰서에서 제출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진정인 감정위촉 의뢰 및 결과서, ○○○병원 진료기록지(응급)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1. 4. 20. 17:20분경 피진정인들에게 체포되었으며, 체포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진정인이 피진정인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진 사실이 있다.

나. 진정인은 2011. 4. 21. ○○○병원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진찰한 결과는 골절 의심 및 타박상 소견을 받았다. 이후 ○○○경찰서에서 ○○○○병원에 의뢰한 진정인 진료에 대한 감정 촉탁 진단 결과는 갈비뼈 골절 소견은 없으며, 가슴 부분 타박상으로 감정 되었다.

다. 진정인은 위 타박상 소견 등이 나온 이유가 체포당시 피진정인들 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참고인 ○○○ 및 ○○○는 피진정인 1이 경찰차량 안에서 “진정인이 아가씨와 2차를 갔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진정인 1도 위 대화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피진정인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2011. 4. 20. 진정인을 체포하려고 할 당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진정인이 완강히 저항하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서 진정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들도 일관되게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사실을 목격한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다른 여성과 잠자리를 가졌는지에 대한 사항은 진정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며 피진정인 1은 이를 수사중인 담당자라 할지라도 그 발언에 신중을 기하였어야 하나 위 인정사실 다항과 같이 참고인 1), 2)에게 발언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을 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198조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소속기관장인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과, 유사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에게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2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7

2011. 9. 28.자 11진정0307000, 11진정0107100(병합)

결정 [현장검증 시 피의자 얼굴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결정사항】

- 【1】 경찰청장에게, 현장검증 시 피의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2】 ○○○○경찰서장과 △△△경찰서장에게, 현장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모습이 일반 시민에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진정인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제27조,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5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 「범죄수사규칙」 제3조(인권보호) 제2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현장검증 시 피의자의 얼굴이 노출되어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서장과 △△△경찰서장에게, 현장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사건 개요

가. 진정사건 1 : 11진정0107100

- 1) 진 정 인 : 김○○
- 2) 피진정인 : 유○○
- 3) 진정요지

○○○○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2010. 6. 4. 오전 절도행위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면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운 채 얼굴을 가리는 등의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진정인의 거주지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사진 촬영을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진정사건 2 : 11진정0307000

- 1) 진 정 인 : 김○○
- 2) 피진정인 : 조○○
- 3) 진정요지

△△△경찰서 경찰관인 피진정인이 2011. 3. 3. 현장검증과정에서 진정인의 얼굴 등 수갑 찬 모습을 일반인에게 노출시켜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들의 주장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1) 진정사건 1

가) 2010. 6. 3. 진정인의 동종 전력으로 보아 하니 취급 사건 외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상 확인할 필요가 있어, 진정인의 동의를 얻어 진정인이 거주하고 있던 고시원에, 직원 2명과 함께 진정인의 주거지를 확인하였는데, 사건 외에 다른 피해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시원에서 바로 퇴거하였고, 진정인이 사건 전일 저녁부터 사건 발생일시까지 여러 곳을 전전하며 술을 마셨다고 진술을 하여 진정인의 행적을 파악하고자 진정인이 지목하는 곳을 동행하였다.

나) 통상 긴급 체포된 피의자와 관서를 벗어나 동행을 할 때에는 포승과 수갑을 사용해야 하지만 당시 6월 초순으로 날씨가 더워 진정인에게 포승을 하면 그 포승을 가릴 것이 마땅치 않아 포승은 하지 않고 수갑만 채우고 수갑이 노출되지 않도록 수건으로 감싼 후 진정인과 동행하였다.

다) 진정인은 얼굴을 노출한 채 사진을 찍어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일부러 인적이 드문 시간(09:30경)을 택하여 진정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진정인이 지목한 두 곳의 공원과 사건 범행현장을 다녔고, 비록 진정인에게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지는 않았지만 진정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진정인이 지목하는 장소에 도착하면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신속히 촬영하는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2) 진정사건 2

가) 진정인은 2011. 3. 3. 오전에 현장검증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 3. 2. 13:57경 실시한 것으로 진정인이 시간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진정인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을 한 채로 스타렉스 공용차량으로 이동하여 진정인이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장소인 ○○시 ○○구 ○○동 000-00번지 노상에 도착하였다.

나) 진정인의 얼굴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모자를 씌우거나 수건 등으로 가려줘야 했으나, 당시 차량통행이 뜸하고 지나가는 행인이 하나도 없어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켜 최대한 진정인의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린 후 현장검증을 실시하였다.

3. 관련규정

불임자료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사건 1

피진정인은 2010. 6. 3. 09:30경 진정인에게 수갑 찬 손목을 가렸지만 인적이 드문 시간이라는 이유로 모자를 씌우는 등 얼굴을 가리지 않고 진정인의 거주지인 고시원에 방문하여 소지품 확인하고, 인근 모텔 주차장과 두 곳의 공원 등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였다.

2) 진정사건 2

가) 피진정인은 2011. 3. 2. 13:57경 피의자의 절도현장검증을 실시하면서 차량통행이 뜸하고 행인이 없다는 이유로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켜 진정인의 모습을 일정 정도 가려주었으나 모자를 씌워주거나 수건 등으로 가려주지 않았다.

나) △△△△경찰서장은 동 사건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여 피진정인이 수갑을 차고 포승을 한 진정인의 모습이 외부인(좌회전 신호대기중인 차량 탑승자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2011. 5. 피진정인에게 주의 조치하였다.

나. 판단

범죄사건 현장검증시 수갑을 차고 포승에 묶인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어

수치심을 느끼고 인격권에 침해를 당하였다는 진정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진정사건 1의 경우에는 피진정인은 수갑을 수건으로 감싸고 동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원과 주택가에서 실시한 현장검증에서 모자를 씌우거나 수건으로 가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일반인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진정사건 2의 경우에는 범죄 현장검증시 인근 아파트와 대기차량에서 수갑을 차고 포승을 한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노출되었다고 판단된다.

경찰, 검찰 및 교정 등 형사사법기관에서는 수갑이나 포승과 같은 장구를 활용하여 도주를 방지하거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폭력의 위협을 예방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범행재연과 같이 불가피하게 외부에 공개 노출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27조제4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원칙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 되고 불이익을 가하더라도 형사절차를 진행하는데 필수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에서 결의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45조에서는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모욕, 호기심 및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98조(준수사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특별히 호송 중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62조(호송 중 유의사항)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1조(유치인 호송할 때 유의사항)에는 호송 시에 호송하는 모습이 가급적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들의 죄명을 살펴보면 재물손괴와 절도죄 등으로 피의자 얼굴 공개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들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수갑과 포승을 착용한 모습이 일반시민에게 노출되게 함으로써, 진정인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조치의전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찰청장에게, 범죄현장 재연시 공개 노출로 인한 수치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이들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들이 공개노출의 범위가 현장검증 장소로 한정되어 거리가 다소 짧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선택하여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진술한 점, 진정사건 2의 피진정인에 대하여는 내부 절차를 통해 주의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진정인들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재발방지 및 주의 환기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6. 집회 및 시위 관련

1

2009. 8. 5자 09진인2841결정 [(주)○○자동차 농성자에 대한 강제진압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결정한다.

【결정요지】

피진정인에게, 2009. 8. 5. (주)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진행 중인 강제진압은 경찰의 진압업무 수행 및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농성노동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48조,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36조, 「경찰법」 제3조, 제4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8조, 제13조, 제21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4조, 제11조, 제54조,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진 정 인】 (주)○○자동차 가족대책위원회 대표

【피 해 자】 (주)○○자동차 평택공장 내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

【피진정인】 ○○○○경찰청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2009. 8. 5. (주)○○자동차 ○○공장에서 진행 중인 강제진압은 경찰의 진압업무 수행 및 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제반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농성노동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2009. 8. 4. 05:30경부터 (주)○○자동차 ○○공장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피해자들이 농성중인 도장공장 안으로의 강제진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장공장 안에는 인화, 휘발물질 및 유류가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어 화재로 인한 대형참사를 배제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고, 현재 단전으로 인해 화재발생시 대피조차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장공장 내 통로가 미로처럼 되어 있어 위급상황에서 출구를 찾는 것 또한 지극히 어렵다. 비상문도 폐쇄되어 있어 질식의 위험도 지극히 높다. 따라서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 중대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참사가 예고되는 공권력 강제진압을 즉각 중단시켜 주기 바란다.

2.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및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청, ‘(주)○○자동차 ○○공장 소방안전대책 등), 2009. 8. 4.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들의 현장조사활동 결과보고, 강제진압 현장을 목격한 참고인들의 진술, 2009. 8. 4.부터 8. 5.까지 보도된 언론기사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8. 4. 05:00경부터 경찰 헬기가 (주)○○자동차 ○○공장 옥상 등 상황파악을 시작하였고, 2009. 8. 4. 10:00경부터 경찰과 (주)○○자동차 사측 직원 및 용역직원의 강제진압이 개시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을 강제진압하기 위하여 헬기를 이용하여

다량의 최루액을 살포하였고 철제방호벽, 지게차, 고가사다리차, 살수차 등의 진입장비를 동원하여 차체공장 옥상에 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농성노조원 측 모두에게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는데 경찰과 사측직원 부상자는 병원으로 이송하였고,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중에서도 부상자 및 응급환자가 발생하여 당일 18:00경 의료진이 농성중인 공장에 진입하여 치료를 하고 있다.

다. 한편, 2009. 7. 24. 오전 11:00경 ○○시 종합운동장에서 경찰이 헬기를 이용하여 살포하고 있는 최루액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실험 도중 최루액에 젖은 스티로폼이 녹아내리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은 “원액에 들어있는 디클로로메탄이라는 석유계 화학성분이 스티로폼에 반응한 것이며,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인권단체 및 노조원들은 “쌍용차 공장에서 수거한 최루액을 분석한 결과 최루성분 분말이 용해제인 메틸렌 크롤라이드가 그 원액인바 이 용해제는 전 세계적으로 발암물질로 추정되어 외국에서 사용치를 규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경찰은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경찰이 뿌린 최루액에 맞은 노조원 10여명이 피부에 수포가 생기는 등 피부병이 온몸으로 번지고 있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경찰의 해명과는 상반된 주장을 하여 현재 최루액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다.

라. 8. 5. 08:00경부터 강제진압이 다시 개시되어 농성노조원 500여명이 밀집해 있는 도장2공장 바로 옆 건물인 조립공장에 경찰이 진입하였고, 경찰 특공대의 진입장비인 컨테이너를 피하려다가 노조원들 3명이 옥상에서 추락하였다. 공장내부는 단전상태이며, 도장공장의 특성상 그 내부에는 신나, 휘발유 등 가연성 물질이 다량 저장되어 있고, 소화전은 차단된 상태이다.

4.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에게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2009. 8. 4. 진행된 경찰의 강제진압으로 인하여 실제 수 십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경찰 진압작전의 일시 중단 후에도 경찰과 노조측의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8. 5. 오전 현재 경찰 및 사측의 강제진압 방침에 변화가 없어 추가적인 공권력 투입이 계속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바, 인권침해가 계속 중에 있다는 개연성이 매우 상당함이 인정된다.

현재 경찰이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강제진압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장비(살수차, 헬기를 이용한 최루액의 공중살포, 지게차, 컨테이너, 전기충 및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등) 및 노조측이 강제진압에 저항하며 사용하고 있는 농성장비(화염병, 새총, 사제대포(볼트) 등)는, 그 사용으로 인한 인체 사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장비들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강제진압의 최후거점이라고 판단되고 있는 도장2공장 내에는 500여명 이상의 노조원들이 강제진압에 맞서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으며, 다량의 인화물질(신나 및 휘발유)이 산재되어 있고, 전기 및 소화전의 차단으로 인하여 신속한 화재 진압이 곤란한 상황이다. 따라서, 폭발 등의 사고 및 화재발생시 수십명의 사상자 발생이 예견되는 등 다수인의 생명 및 신체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특히 70여 일간 고립된 공간에서 농성중인 조합원들의 심신상태를 고려할 때 공장 옥상 등에서의 고공농성을 강제로 진압하는 경우 추락 및 자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용산화재 사건과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고, 이로 인한 다수인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가 예상된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증립을 지켜야 한다(「경찰법」 제3조 및 제4조). 또한 경찰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11조).

비록 농성노조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하고 있어 시설물의 보호, 농성의 해산 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강제진압 행위는 경찰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인권보호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행하여져야 한다. 즉, 경찰이 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공권력 발동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조원들을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권의 발동 내지 그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 등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력행사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현재 (주)OO자동차 OO공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진압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2009. 8. 4.오전부터 개시된 강제진압은 위에서 언급한 원칙 및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1항은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사용하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경찰헬기를 이용하여 OO공장 내부에 다량 투하되고 있는 최루액은 그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실제로 그로 인한 피부병(수포발생) 등의 신체 이상 증상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경찰장비관리규칙」 제78조 제4호의 최루장비(최루탄, 최루액 등 포함)는 동 규칙 제82조 제5항

에 의하여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 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피해야 하는바, 현재 강제진압이 진행되고 있는 평택공장, 특히 농성노조원들이 농성거점으로 확보하고 있는 도장2공장은 페인트, 신나, 휘발유 등 다량의 인화물질 및 가연성물질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어서 최루장비 사용 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곳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한편, 경찰은 이번 강제진압에서 ‘대테러 장비’로 분류되고 있는 ‘전자충격기(일명 ‘테이저건’)’를 사용하고 있는바, 「경찰장비관리규칙」 제7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충격기는 인체에 수만 볼트 이상의 고압전류가 흐르게 함으로써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무기이므로, 그 사용 자체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고, 실제로 이번 강제진압에서 전자충격기에서 발사된 침을 얼굴에 맞아 부상을 입은 사례도 발생하였다.

특히 다수의 농성노조원들이 공장의 옥상 및 망루에 올라가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음을 감안할 때, 경찰의 강제진압에 저항하는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노조원들의 추락 및 자해의 위험이 명백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 및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헬기를 통한 최루액 살포, 살수차, 지게차, 사다리차,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강제진압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공장 내부는 전기 및 수도의 공급이 끊기고 소화전까지 차단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화물질이 다량 포함된 도장2공장 진입을 목표로 강제진압을 진행함에 있어서 농성노조원들의 저항 수단 중의 하나가 화염병 투척임을 파악하고 있는 경찰로서는 폭발사고 및 대화재의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는 전무한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청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너 및 페인트 등의 위험물로 인하여 폭발 및 급속연소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가스차단 및 단수조치로 소방시설이 초기 작

동이 되지 않을 우려가 있고, 농성건물의 진입로 폐쇄로 인하여 소방장비 진입에 장애가 있으며, 출입구 6개소 중 5개소가 폐쇄되어 노조원들의 대피 및 구조대의 진입이 매우 곤란한 상태임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 없이 강제진압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은 이러한 강제진압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바, 이는 농성중인 노조원들뿐만 아니라 진압 업무 중인 다수 경찰관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도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며,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의 긴급구제조치 요건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에게 2009. 8. 5. 현재 (주)OO자동차 OO공장에서 진행 중인 강제진압은 농성노조원들 및 진압경찰 등 다수인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5.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최경숙 위원 유남영<불참> 위원 문경란

【별지】 관련 규정

가. 「헌 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헌법」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제48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대상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중에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2. 장소, 시설, 자료 등에 대한 실지조사 및 감정 또는 다른 기관이 하는

-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시설 수용자의 구금 또는 수용장소의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 제36조(긴급구제조치) ① 진정에 대하여 법 제48조에 의한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 제60조에 정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인권위원 등은 즉시 그 사유 및 필요한 긴급구제조치 또는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한 안전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의하여 안전이 상정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또는 필요한 조치를 심의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라. 「경찰법」

- 제3조(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충격기 등의 사용제한) ②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가스차, 살수차, 특수진압차, 물포의 사용기준) ①경찰관은 불법집회, 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신체의 위해와 재산, 공공시설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 (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특히 도주하는 상대방의 등 뒤에서는 가급적 위해를 가하는 무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 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아.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특별관리) ① 집회시위관리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 최루탄 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집회시위관리용 물포(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각급 경찰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가.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전자방패

가. 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우천 등으로 피복이

젖은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나 임산부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진압봉

가.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진압봉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삽입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4. 근접분사기

가. 근접분사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에 관하여 미리 경고한 후 분사하여야 한다. 다만, 범인의 체포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불법행위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 근접분사기의 사용 등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분사기 운용지침」에 의한다.

5. 최루탄(발사기)

가. 현장 지휘관의 지휘에 의하여 발사하여야 한다.

나.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라.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미만 각도에서 방아쇠가 격발되지 않도록 한다.

마. 최루탄은 물 또는 습기에 젖어 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사용한다.

바. 장전탄통 고정 조임나사를 완전히 조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가스차

가. 최루탄 발사대의 발사각도가 15도 이상에서 발사되는지 확인 후

사용한다.

- 나. 다연발탄 발사시는 시위대 상공으로 발사하여야 한다.
- 다. 가스액류는 인화성 물질이므로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 라. 최루액과 연막액은 3:1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가스차는 항상 진압부대의 보호 속에서 운용되어야 하며 후진시에
는 유도요원의 유도에 따라 운용한다.

7. 집회시위관리용 물포(살수차)

- 가. 집회시위관리용 물포(이하 ‘물포’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경고방송과 경고살수를 통하여 자진해산을 유도하여야 한다.
- 나. 물포 사용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집회시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 다. 물포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포 운용지침」에 의한다.

2

**2009. 8. 31.자 08진인2825/08진차877/08진차874
(병합)결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 2, 3, 4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중증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진압 업무 시 휠체어와 분리하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관련 방침을 수립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휠체어 사용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강제로 분리한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에게,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42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 2, 3, 4에게 주의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 진압 업무 시 중증휠체어장애인들과 휠체어를 분리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관련 방침을 수립할 것을 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진 정 인】** 1. 박○○
2. 문○○
3. 박○○

【피 해 자】 별지내용 1과 같다.

【피진정인】 별지내용 2와 같다.

- 【주 문】** 1. 진정요지 마.에 대하여는 각하한다.
2. 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1, 2, 3, 4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중증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진압 업무 시 휠체어와 분리하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관련 방침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 및 라.항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 1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인데, 2008. 7. 16. 14:00 장애인단체가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정문 앞에서 개최하는 장애인복지예산확충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려고 지름길인 후문을 경유하려하였으나, 피진정인 1, 3의 지휘를 받은 피진정인 8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들여보내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위 후문을 닫아걸고 못 들어가게 하였다.

나. 진정인 2와 송○○ 등 피해자들은 모두 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 들인데, 2008. 7. 23.과 같은 달 24. 15:00경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인복지 및 예산확충을 위한 촛불집회를 하던 중, 피진정인 1, 2, 3, 4, 5의 지휘를 받은 피진정인 7, 8이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휠체어를 갑자기 뒤에서 잡아당기거나 앞뒤로 흔들어 분리시켜 끌어내었고, 이 과정에서 장애인 10여명의 휠체어가 부서지고 몸이 땅바닥에 떨어져 나뒹구는 등 물질적·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

다. 진정인 2를 비롯한 여성장애인들은 위 진압과정에서 여성경찰관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 1 등이 이를 무시하고 남성경찰관 및 전경대원들이 끌어내도록 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라. 진정인 3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1급 지체장애인인데, 2008. 7. 29. 14:00경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후문으로 들어가려하자 피진정인 1, 2의 지휘를 받은 피진정인 8이 활동보조인과 강제로 분리시키고 전동휠체어의 전원을 꺼버리고는 앞뒤로 마구 흔들어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마. 진정인 3은 2008. 7. 29. 14:00경 땅에 떨어져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위 피진정인 8은 “병신 육갑한다. 치료해서 뭐하냐. 미쳐서 다쳤는데.”라며 비하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한 및 피해자

위 진정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2008. 7. 16. 14:00경 및 같은 달 29. 14:00경 장애인단체가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청계광장에서 미국소고기 수입반대 집회 등을 지휘하고 있었던 관계로 당시 상황을 잘 알지 못한다.

나) 장애인단체가 2008. 7. 23.과 같은 달 24. 15:00경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집회할 당시에는 어떤 장소에서 현장지휘를 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각 집회 장소에 교통근무자, 순찰차를 배치하여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시하였으며, 사후에 장애인집회에 대한 언론보도를 보고 휠체어가 넘어진 것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다) 당시 관내에서는 미국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는 물론, 기타 집회가 하루 평균 10여회 정도가 있었고, 전 집회를 서장이 관할하기 때문에 모든 장소에 다 임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위 집회에도 여성경찰관을 불러 달라고 보고 받은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

2008. 7. 23. 12:00경부터 18:48경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장애인 복지 및 예산확충을 위한 집회를 맞아 상황대비를 하였는데, 당시 장애인 등 약 200여명 정도가 집회를 하였으나 부대원들에게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교양을 실시하는 등 안전진압에 유의하였으며, 당시 부대원들이 휠체어를 잡아당기거나 빼앗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3) 피진정인 3

가) 2008. 7. 16. 보건복지가족부 정문 앞에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복지예산 확충 관련 기자회견을 하던 중, 일부 장애인들이 장관면담을 요구하며 현대사옥 9층 장관실로 올라가려고 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사전 면담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시설물 점거로 인한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이 우려됨에 따라 건물 내 진입을 부득이 막았다.

나) 2008. 7. 23. 17:15경부터 22:00경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앞 인도와 차도 상에서 장애인단체 150여명이 촛불집회를 하던 중, 모든 차로를 점거하는 등 불법 집회를 하여 교통소통을 위하여 해산방송을 하였으나 불응함에 따라 교통소통과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로 올리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를 하였다.

다) 2009. 7. 24. 06:45경부터 08:50경 안국동 전철역에서 노숙한 장애인들이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으로 이동하던 중, 재동로터리를 점거하며 불법시위를 하여 경찰경력을 이용 고착시킨 후, 교통을 소통시키며 장애인들을 휠체어와 함께 안전하게 이동 조치하였다.

라) 통상 여성시위대가 있을 경우 여경중대 및 여경을 배치하여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고 있으나, 2009. 7. 24.과 같은 달 29.은 기습시위로 인해 여성경력 자체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근거리에 있던 전경중대가 긴급히 대처하도록 하였다.

마) 2009. 7. 29. 13:00경 휠체어를 탄 장애인 10여명과 활동보조인 10명이 계동 현대사옥 후문을 통해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안으로 진입하려는 것을 경력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비원들과 함께 저지하였는데, 당시 강제로 활동보조인을 분리시키거나 휠체어에서 장애인을 떨어뜨리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

4) 피진정인 4

2008. 7. 23. 16:00경 보건복지가족부 청사에서 격대장 근무를 하였는데, 위 청사 정문 앞에서 장애인 약 150여명이 도로를 점거하면서 불법집회를 하여 인도로 올라가도록 유도한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있으나 휠체어에서 강제로 끌어

내린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1) 김○○(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처장)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009. 7. 16. 14:00경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 노상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은 청사 후문을 통해 참석하였으나 휠체어를 탄 진정한 1은 경찰관들이 청사 후문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봉쇄하여 참석하지 못하였다.

2) 박○○, 김○○, 노○○, 이○○(각 밀양, 창원, 성북, 원주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원)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009. 7. 23. 및 같은 달 24. 15:00경 활동보조인 예산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전경대원들이 길을 막아서자 피해자 송○○이 빠져나가기 위해 휠체어를 움직였는데, 갑자기 전경대원이 둘러싸더니 휠체어를 빼버렸고, 이에 피해자 김○○이 항의하자 또 다른 전경대원 한 명이 뒤쪽에서 달려들어 휠체어를 순식간에 빼버려 길바닥에 떨어졌으며, 옆에 있던 진정한 2의 경우에는 전경대원들이 휠체어를 마구 흔들며 끌어내리려고 하여 여성경찰관을 불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땅바닥에 끌어내렸고, 이어서 주위에 있던 휠체어 장애인들 10명 정도가 전경대원들에게 휠체어를 빼앗겨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3) 김○○(인천장애인민들레야학 회원)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2009. 7. 29. 14:00경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의 면담을 위해 청사 후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전경대원들이 진정한 3의 휠체어를 빼내어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다.

4) 이○○(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무국장)

당시 지휘부로부터 해산 명령이 떨어지면 경찰 지휘관들이 “활동보조인부터 연행해라.” “장애인을 휠체어에서 분리해라.” “전동휠체어 전원을 꺼라.”와 같은 지시를 차례로 내렸다.

4. 관련규정

별지 내용 3과 같다.

5.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피해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통화조사보고서, 참고인 김○○ 진술서, 피진정인 1), 2), 3), 4)의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장애인 단체 집회 대비 경력배치계획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장애인 집회관련 민원 처리 결과자료, 사건관련 한겨레신문 등 언론기사 및 동영상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주변지도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진정인 등 피해자들을 포함한 전국의 장애인단체 관계자 150여명은 2008. 7. 16.부터 같은 해 8월 중순경까지 약 한 달 동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장애인가족 지원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장관면담요구, 그리고 집회시위를 종로구 계동 소재 위 기관 청사 인근에서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나. 이에 관할지역 경찰서장인 피진정인 1은 ‘장애인 단체 집회 대비 경력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의 총괄지휘 하에 2008. 7. 16. 13:00경부터 14:00경까지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개최된 ‘장애인가족 지원예산확대 투쟁선포 기자회견’에 대비하여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인 피진정인 3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현장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같은 달 23. 14:00경부터 17:00경까지는 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한국 장애인개발원 낙하산 인사 저지 집회’에 대비하여 서울지방경찰

청 제○기동단장인 피진정인 2와 ○○경찰서 형사과장인 피진정인 4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현장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또한 같은 날 17:30경부터 다음 날 14:00경까지, 그리고 같은 달 29. 14:00경부터 18:00경까지는 피진정인 3으로 하여금 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된 ‘장애인 가족지원 예산확대 촉구집회’등에 대하여 경비업무를 현장 지휘감독하도록 하였다.

다. 피진정인 3은 2008. 7. 16. 14:00경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출입제한 조치와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하던 중, 일부 장애인들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 면담약속이 안된 채 청사에 들어가 시설물을 점거하려하여 건물 내 진입을 막았고, 여성경력배치와 관련하여서는 2009. 7. 24.과 같은 달 29.은 장애인단체 관련자들의 기습시위로 인해 현장에 여성경력 자체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여서 근거리에서 있던 전경중대를 긴급히 배치하였다.

라. 참고인 김○○은 위 기자회견 당시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은 청사 후문을 통해 정문 앞 인도 상의 기자회견 장소에 갔으나 휠체어를 탄 진정인 1과 일부 비장애인들에 대하여 경찰경력들이 청사 후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및 주변 약도에 의하면, 청사 후문과 정문 사이의 거리는 약 30미터에 이르고, 후문에서 주변으로 돌아 정문 쪽으로 가는 거리는 약 100미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진정인 2와 피해자 송○○, 김○○, 서○○, 박○○, 변○○, 이○○은 2008. 7. 23. 및 그 다음날인 24. 15:00경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집회시위 중, 피진정인 7, 8에게 휠체어를 빼앗겨 분리되면서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참고인 박○○, 김○○, 노○○, 이○○은 위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피해 장면을 목격하였고, 참고인 김○○은 진정인 3이 같은 달 29. 14:00경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후문에서 피진정인 8에게 휠체어를 빼앗겨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바. 인터넷 한겨레신문의 기사 및 동영상 자료에 의하면, 2008. 7. 23. 15:00 경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 차도를 점거하고 있던 장애인을 인도로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진정인 7이 피해자 김○○이 탄 휠체어를 뒤에서 빼내어 바닥에 굴러 떨어뜨린 사실, 그리고 피해자 송○○ 등 장애인들이 휠체어에 분리되어 땅바닥에 떨어져 주저앉아 있는 사실이 각 확인된다.

사. 서울지방경찰청의 위 집회시위관련 민원처리 결과자료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기동단장은 소속 부대원들이 2008. 7. 23. 인도 상으로 장애인들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휠체어를 넘어뜨려 안전진압수칙을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소속 ○○중대 중대장인 피진정인 5와 소대장인 피진정인 6에 대하여 지휘책임을 물어 특별교양조치하고, 가해 전경대원인 피진정인 7에 대하여는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아. 진정인 3은 2009. 4. 17. 진정요지 마.항과 관련하여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정을 취하하였다.

6.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 휠체어장애인 이동권 제한에 대하여

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항에 의하면, 경찰관은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국가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시설보호요청에 따라, 피진정인들이 그 직무를 수행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방호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등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라고 판단된다.

2) 위와 같은 업무수행 중, 사전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과의 면담약속이 없이 진정인 등 기자회견 참가자들 중 일부가 청사에 진입하여 시설물의 점거 및 업무방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비추어보면, 당시 외형만으로 단순한 기자회견

참가자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부 비장애인들은 출입시키고, 시설물 겹거 등이 의심되는 전동휠체어를 탄 진정한 1과 일부 비장애인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약 100미터 거리의 건물주변을 돌아 기자회견에 참여하도록 한 행위는 진정한 1 및 해당 당사자들에게 다소 불편함을 끼쳤더라도 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필요한의 조치로써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 : 휠체어장애인의 휠체어 분리 행위에 대하여

1)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는 이러한 차별사유 중, 특별히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그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2007. 4. 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에 의하면,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 이를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보조기구 중 휠체어는 중증장애인의 신체활동을 보조하고 이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한 기구로써 신체의 일부로 까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에게 있어 휠체어는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는 보조기구로써,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와 분리되는 경우에는 심리적, 정서적 불안감 및 모멸감을 넘어서서 신체활동의 급격한 제약을 초래함으로, 인격권을 비롯하여, 신체의 안전을 보장 받을 권리, 그리고 주거이전의 자유로부터 유래하

는 이동권 등 중대하고 포괄적인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3) 이에 우리 위원회는 2006. 8. 30. 정부종합청사 앞 장애인 집회 시 경찰이 중증장애인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를 장애인과 분리하고 늦게 돌려 준 사건과 관련하여, “전동휠체어나 타의의 도움이 없이는 신체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전동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점, 전동휠체어가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신체활동 불가로 인해 전동휠체어와 분리되는 경우 초래되는 심리적, 정신적 불안감, 그리고 전동휠체어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증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예기치 않게 생명이 위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전동휠체어와의 분리는 가능한 피해야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분리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하며 그 분리시간은 최단시간이어야 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06진인1851 등 병합사건, 2006. 12. 6. 침해구제 제1위원회 결정)

4) 이 사건의 경우, 피진정인 1, 2, 3, 4는 경비경력에게 집회시위 중인 장애인으로부터 휠체어를 빼앗으라고 지시한 바 없고, 현장에서 이를 인지하지도 못하였으며, 다만 피진정인 1, 3은 사후에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집회 현장에서 경찰지휘관들이 전동휠체어로부터의 분리를 지시하였다는 참고인의 증언이 있는 점에서 그 지휘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위 피진정인들이 현장 지휘 하에 경비진 압업무를 수행하였던 피진정인 5, 6, 7, 8등이 진정인 2, 3과 피해자 송정문 등 다수 중증장애인의 휠체어를 강제로 분리시킨 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더 나아가 당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 2, 3과 피해자들로부터 휠체어 사용을 방해하거나 분리시키지 않으면 진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정도로 불가피한 경우였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통상 전동휠체어의 경우 종류에 따라 무게가 80kg내지 100kg정도 나가기 때문에 다소 무거울 수 있으나 수동전환 후, 여러 명의 전경대

원이 공동으로 분리시키지 않은 상태로 들어 충분히 옮길 수 있다는 점, 둘째, 당시 일부 피해자의 경우 이 보다 훨씬 가벼운 수동휠체어를 타고 있었던 점, 셋째, 당시 도로 상에서 인도 상으로 옮기는 이동거리가 비교적 가까웠던 점, 넷째, 장애인을 휠체어로부터 분리시킬 때 사전 예고 없이 뒤에서 갑자기 잡아 빼거나 좌우로 흔들어 쓰러뜨리는 등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다섯째, 당시 진정인 등이 전동휠체어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을 뿐, 타인에게 위해나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의 휠체어 분리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이 직무수행 시 가져야 할 차별금지 및 인권 존중,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4조에서 연유하는 위 진정인과 피해자들의 인격권, 신체의 자유 및 이동권을 각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7) 피진정인들에 대한 조치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미 서울지방경찰청 제○기동단장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받은 피진정인 5, 6, 7과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은 있으나 불 특정된 피진정인 8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위 피진정인 1, 2, 3, 4에 대하여 지휘 감독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할 것과, 진압 업무 수행 시 중증장애인들로부터 휠체어를 분리하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침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 남성경찰관에 의한 여성장애인 진압행위에 대하여

진정인 2는 당시 피진정인 8이 자신을 휠체어로부터 분리시킬 때 자신이 여성이므로, 남성경찰관이 아닌 여성경찰관이 대신 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였다는 주장이나, 피진정인 3은 2008. 7. 24. 예상치 못한 기습시위 당시에는

현장에 여성경찰관이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를 점거해 있던 휠체어 장애인들의 위협방지 및 예방을 위한 급박하게 인도 상으로 올려 보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남성 전경대원들을 투입하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있고, 또한 전경대원들이 진정인 2를 휠체어로부터 분리시키면서 신체의 은밀한 부분 또는 고의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통상의 진압방법에 따라 팔과 다리 등을 잡았다면, 이를 성적 굴욕감 및 수치심을 주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 건 진정내용은 인권침해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마.항 : 장애인 비하발언 및 폭언에 대하여

본 건 진정내용은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이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인의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에게,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1, 2, 3, 4에게 주의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경찰 진압 업무 시 중증휠체어장애인들과 휠체어를 분리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관련 방침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하며,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3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별지 1】 피진정인

1. 우○○(총경, ○○경찰서장, 현 ○○○○경찰서장)
2. 강○○(총경, 서울지방경찰청 제○기동단장, 현 ○○경찰서장)
3. 임○○(경정, ○○경찰서 경비과장, 현 ○○지방경찰청 경무과)
4. 김○○(경정, ○○경찰서 형사과장, 현 ○○경찰서 형사과장)
5. 이○○(경감, ○○지방경찰청 제○기동대 ○○중대장)
6. 박○○(경위, 위 같은 소속 소대장)
7. 하○○(수경, 위 같은 소속 소대원, 현 2008. 9. 7. 전역)
8. 위 피진정인 1, 2, 3, 4의 지휘를 받은 전경대원 다수

【별지 2】 피해자 명단

박○○, 문○○, 박○○, 송○○, 김○○, 서○○, 박○○, 변○○, 이○○
(이상 9명 모두 휠체어 이용 1급 지체장애인)

【별지 3】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제10호 1987. 10. 29.)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9705호 개정 2009. 05. 22.)

제4조 (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3.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2005. 10. 4 경찰청훈령 제461호)

제4조 【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3

2009. 8. 31.자 08진인3072결정 [장애인 집회관련 폭
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

【결정요지】

- 【1】 사북경찰관의 불법채증에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 【2】 장애인 집회시위 중 방패로 얼굴을 찍어 폭행한 행위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에게 대하여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범죄혐의를 수사할 것을 의뢰하기로 결정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진 정 인】 박○○

【피 해 자】최○○

- 【피진정인】 1. 김○○
2. 조○○
3. 이○○
4. 이○○
5. 김○○
6. ○○지방경찰청 제○기동단 ○○중대 소속 의경대원들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각하한다.
2.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의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2008. 8. 13. 18:00경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 도로상에서 장애인복지예산확대를 촉구하는 정리 집회를 하던 중, 피진정인 1의 지휘를 받은 피진정인 2~6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들은 방패로 휠체어를 막고 미는 과정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며 불법적인 사진채증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이 불법채증에 항의하는 장애인들을 밀고 폭언을 하고, 휠체어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수동휠체어를 탄 1급 중증장애인인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을 뿐인데도 피진정인 6 중 성명불상 의경대원이 방패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분을 찍어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혔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해자

2008. 8. 13. 18:00경 전국장애인 복지예산 확대촉구 집회시위 중,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 도로상에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끌려가는 것을 항의하자 성명불상 의경대원이 방패로 얼굴을 때려 왼쪽 광대뼈 부위가 함몰 되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는데, 일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술 받은 곳이 경련이 일어나고 얼굴형태가 변형되는 등 후유증이 있는바,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보상을 원한다.

다.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가) 2008. 8. 13. 장애인 집회 당시 관할지역 ○○○경찰서장으로, 현장 지휘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장애인들이 도로를 불법 점거하여 경찰경력이 인도 상으로 올라갈 것을 경고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일부 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들이 휠체어로 돌진하고 팔을 잡아 비트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에 위와 같은 불법 행위 장면을 카메라로 찍던 채증요원을 집단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다.

나) 당시 경찰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법 채증을 한 사실이 없으며, 현장에 있던 정보 및 경비과장으로부터 원인은 불분명하지만 다쳤다고 하는 장애인이 있어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조치했다는 보고를 받았을 뿐, 경찰경력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 3, 4, 5

가) 2008. 8. 13. 18:00경 장애인 집회참가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차로를 검거한 채 마무리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일부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중앙선을 넘어가려 하여 중대원들로 하여금 방패로 막도록 하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경고하였으나 불응하고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므로, 중대 채증요원에게 디지털카메라를 이용 채증하도록 하였다.

나) 채증이 시작되자 집회참가자들이 “왜 우리들을 함부로 찍냐.”면서 거칠게 항의하였고, 그 중 심한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활동보조인 1명을 검거하려 하자 주위에 있던 수십 명의 활동보조인들이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며 검거를 제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채증요원을 억류하고 채증된 메모리 카드의 파기를 요구하므로, 불가피하게 이를 들어주자 채증요원을 풀어주고 집회를 종료하였다.

다) 당시 중대원들 중 방패조는 집회참여자들이 폭력을 행사할 때 몸을 보호하는 데만 사용하였을 뿐, 상대방을 향해 방패를 들어 찍거나 휘두르지 않았고, 오히려

려 중대원 10여명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평소 중대원들에게 수시로 방패를 방어용으로만 사용하고 시위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말 것을 교양하여왔다.

라. 참고인 박○○

진술인은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는 1급 지체장애인으로, 2009. 8. 13. 18:00경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집회시위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방패를 든 의경대원이 압박해 오면서 마찰이 발생하였고, 이를 뒤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이 사진을 찍어 집회참가자들이 항의를 하자 의경대원들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의경대원이 본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방패로 찍는 것을 보았다.

3. 관련규정

별지의 내용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진정서,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서울○○○경찰서가 제출한 집회 상황개요서, 집회상황 채증 동영상 및 사진자료, 피해자의 X-ray사진 및 진료기록, 인터넷 언론매체인 오마이뉴스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 진정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 250여명(이하 ‘진정인 등’이라 함)은 2008. 8. 13. 14:00경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앞에서 2009년 장애인복지예산확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광화문 일대를 행진한 다음 같은 날 18:00경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나. 본 집회와 관련하여 경비업무를 지휘 감독한 ○○○경찰서장인 피진정인 1과 동인의 지휘를 받아 집회시위 경비 및 진압업무를 수행한 ○○지방경찰청 예하 제○기동단 제○○중대 중대장인 피진정인 2, 소속 소대장들인 3, 4, 5 그리고 소대 의경대원들인 피진정인 6은 2008. 8. 13. 18:00경 진정인 등이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집결하면서 4차선을 점거하므로, 교통 소통을 위해 하위 2개 차선에서 정리 집회를 하도록 유도하였다.

다. 이 과정에서 진정인 등은 피진정인 6이 방패로 막아서자 대치하면서 이를 밀고 당기며 저항하였고, 피진정인 5의 지시를 받은 피진정인 6 중 사복을 입고 있던 의경대원이 방패 뒤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어 채증하였다. 이에 진정인 등은 불법채증이라고 주장하며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여 밀치며 항의하였고, 이때 피진정인 6이 집회참가자 중 한 명을 연행하려하자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다가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었다.

라. 피해자는 2008. 8. 13. 18:30경 위 현장에서 곧 바로 치료를 위해 119구급차에 실려 서울백병원으로 호송되어 응급진료를 받았고, 이후 서울보라매병원에서 광대뼈 골절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안면경련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마. 피해자의 X-ray사진 및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좌측 광대뼈가 움푹 주저앉은 것이 평평한 바닥이나 물건 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방패 모서리 등 비교적 얇고 각이 진 물건에 의해 충격을 받아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달리 다른 장소 및 방법에 의해 이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5. 판단

가. 사복경찰관의 집회채증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가) 경찰은 관행적으로 오래 전부터 치안 질서 확립을 위협하는 사태 발생 또는

위험성이 있는 집회 시위 현장 등에서 사복경찰관으로 하여금 정확한 현장상황 파악과 더불어 불법 행위자의 사법처리를 위한 사진 촬영 녹음, 비디오 등 채증 활동을 하여 왔다. 이러한 채증 활동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학계에서는 사복경찰관이 집회 시위 현장에 출입하여 채증 활동을 하는 것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방해하고, 집회 참여자들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물론 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 등이 사복경찰의 채증 활동에 대하여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는 바, 피진정인들이 집회 자유의 기본권 침해 및 초상권 침해라는 논란 없이 경찰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근거하여 집회참가자들에 대하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국회의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경찰권 발동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나. 진압 중 피해자 폭행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들은 진압 당시 방패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1의 지휘·감독 하에 피진정인 2, 3, 4, 5의 지시를 받아 피진정인 6이 휠체어 장애인들의 차도점거를 방패로 막아섰고, 채증 활동에 반발하는 진정인 등 집회참가자들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나 피진정인 6 중 1인이 소지한 방패에 의하여 피해자가 광대뼈가 함몰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우리 「헌법」 제12조 1문에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경찰봉·방패 등 경찰장구 사용의 원칙을 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의 제1항에 의하면, 경찰은 현행범의 체포 또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601호)」 제3조에서도 경찰봉, 방패 등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경찰장비의 사용방법을 구체화 한 「경찰장비 관리규칙(경찰청 훈령 제377호)」 제91조 제5항에는 경찰봉의 경우 시위대의 머라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할 것과 방패를 사용할 때에는 방패모서리로 상대의 머리 등 주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위와 같은 경찰 장구사용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집회 시위 진압 중 방패로 피해자의 안면을 폭행한 행위는 「형법」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가혹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 및 관련자들이 모두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피진정인 6중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의경 대원을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거의 인멸 및 도주 행위를 방지하는 등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수사기관에 수사의 개시를 의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고, 진정인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에게 대하여 「형법」 제125조에서 정한 범죄혐의를 수사할 것을 의뢰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3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4

2009. 10. 5.자 09진인2363 외 54건(병합) [(주)○○
자동차 농성 및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

【1】 농성장내에 ① 식수, 가스,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소화전을 차단하였고, ② 식량, 식수, 생필품(담배, 침구, 피복 등) 반입을 금지하였으며, ③ 의약품 반입 및 의료진 출입을 차단한 것이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

【2】 용역경비원과 임직원의 폭행에 대한 피진정인의 수수방관 여부

【3】 경찰장비(최루액,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등)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여부

【4】 진압시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여부

【결정요지】

【1】 피진정인 ○○○○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최소한의 식수와 소화전 등의 차단 및 집단적 폭행의 방관 등으로 인해 농성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2】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즉시 사실 확인을 하고,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련 장비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함

【3】 검찰총장에게 해당 진압 경찰관들의 「형법」 제125조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 의뢰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2조 제4항, 제44조 제1항 ; 「형법」 제125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 「경찰법」 제3조, 제4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제5조 및 제6조, 제10조 제1항, 제10조의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76조 제4항, 제82조 제5항 ; 「경찰항공운영규칙」 제18조 ;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4조 제1항, 제11조, 제54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

【진 정 인】 별지 1. 기재와 같다.

【피 해 자】 한○○ 외 노동조합원 및 그 가족

【피진정인】 1. ○○○○경찰청장
2. ○○자동차 ○○공장 진압 경찰관들 다수

【감독기관】 경찰청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의 1)항에 관하여, 피진정인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최소한의 식수식량의약품 반입 금지, 소화전 차단 행위, 집단적 폭행의 방관 등으로 인해 농성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관하여,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인체유해성 논란이 있는 경찰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즉시 사실 확인을 하고,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련 장비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다.항에 관하여, 검찰총장에게 해당 진압 경찰관들의 「형법」 제125조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다.
4. 진정요지 가.의 2), 3), 4)항 부분은 각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600여명의 (주)○○자동차 노동조합원(이하 ‘노동조합원’이라 한다.)들은 회사

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반대하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기 위하여 ○○공장을 점거하고 2009. 8. 6. 노사가 전격 합의하기까지 77일간의 농성과정에서 회사의 용역경비원과 임직원, 그리고 대규모 경찰병력이 농성장을 봉쇄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관련자를 처벌해 주기를 원한다.

가. 농성장 봉쇄를 통한 식수, 식량 및 의약품 반입 차단

1) 피진정인들이 농성장을 봉쇄하고 농성자들에게 식수, 식량 및 의약품의 반입을 차단하였으며, 소화전을 차단하고,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농성 노동조합원들의 생명권, 건강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가) 2009. 7. 22. 농성장인 (주)○○자동차 ○○공장 안에서 경찰이 발사한 전자충격기의 전극침이 왼쪽 뺨에 박힌 중환자에게 응급진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농성장이 봉쇄되어 진료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나) 2009. 6. 27. (주)○○자동차가 고용한 용역경비원과 임직원이 쇠파이프와 소화기, 사제방패 등으로 무장하고 공장에 진입하여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을 폭행하였고, 다수의 노동조합원 부상자가 속출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하였다. 또한, 용역경비원이 집어던진 소화기에 맞아 치아 13개가 부러진 노동조합원의 경우 노동조합측이 119 응급차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용역경비원들과 직원들이 응급차 운전자와 간병인을 강제로 끌어내려 집단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데도, 경찰은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간병인을 인계받아 연행하는 업무에만 집중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여 부상당한 노동조합원의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다.

2) 또한 농성장소인 공장 내의 전기 및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생필품(담배, 침구, 피복 등) 반입을 금지하였으며, 진정인들이 가족 면회 및 식수 반입 요청시 차량, 손가방, 음식보자기, 속옷가방, 반찬그릇 등을 과도하게 검문 검색하였다.

3) 2009. 7. 29. 회사측 선무방송(특히 심야방송) 소음에 대해 농성중인 노동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항의하였으나 경찰은 참아달라고만 하였다.

4) 2009. 7. 29. 경찰헬기의 저공비행으로 인한 흙먼지바람 때문에 노동조합원 및 그 가족(아동 포함)들이 공포감을 느꼈고, 호흡곤란 및 안과치료를 받아야 했다.

나. 경찰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1) 경찰은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에게 인체에 유해하고 검증되지 아니한 최루액을 섞은 물대포를 쏘고, 경찰헬기로 공중투하 하는 등 과도한 진압작전을 전개하여 노동조합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2009. 7. 22. 18:20경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40여 명이 정문 쪽으로 뛰어 가던 중 도장공장 앞 50m떨어진 곳에서 가림막 뒤로 대기하고 있던 경찰 2명이 전자충격기를 조합원에게 발사하여 각각 왼쪽 뺨과 왼쪽 허벅지에 상해를 입혔다.

3) 2009. 8. 5. 오전에 4팀 도장공장 옥상쪽에 있는 농성자들이 퇴각할 때 정경 10여명이 경찰봉, 전기충격기로 위협을 했고, 다목적발사기에 맞은 농성자들이 정신을 잃고 있는데도 계속하여 폭행을 하였다.

다. 진압시 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들은 2009. 8. 5. (주)○○자동차 공장 옥상 점거시 경찰에게 제압당하여 항거가 불능한 노동조합원을 삼단봉과 곤봉으로 집단구타하고 방패로 목과 머리 등을 폭행하는 등 과잉진압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OO차 협상 타결 및 불법 농성 해소 관련

경찰은 불법 점거농성 해소를 위한 진압작전을 펼치면서도 무엇보다 노동조합원과 경찰 등 소중한 인명에 대한 희생이 없도록 인권·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변수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농성장은 위험물질이 산재하여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농성노조원들은 화염병·볼트발사기·화염방사기·쇠뇌박격포·자동차타이어 휠·공격용 쇠파이프 등 유혈 폭력시위용품을 무차별 사용하고, 일부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노동조합원의 돌출행동이 우려되는 등의 상황에서 선불리 경찰력을 투입시키는 것은 변수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공장 내·외부 위험시설, 경찰력 투입시 저항정도 등을 면밀히 파악, 방패막·그물망 등 적정 대응장비를 제작하여 경찰력을 단계별로 운용한 결과, 특별한 변수없이 OO차 사태를 마무리하였다.

2) 경찰작전 관련

경찰은 OO차 사태와 관련하여 총 1,708개중대, 경찰특공대 등 연인원 13만명을 동원하여 OO차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데는 오랜 인내와 희생을 감수하며 법과 원칙을 지켜온 경찰의 노력이 기여한 바 크며, 대규모 노사분규를 원만히 해소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문화를 화합과 상생의 길로 발전시키는데 일조하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적절한 대응장비(방패막·그물망 등)를 제작·사용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경찰의 집회시위 대처능력도 한 단계 향상되었다고 평가한다.

3) 테이저건 사용 관련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방패와 경찰봉만을 사용하여 진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동차 사태와 같이 온갖 살상무기를 동원한 유혈 폭력시위에는 경찰의 희생을 줄이고 불법행위자를 안전하게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 등 적절한 장비 사용이 불가피하였다. 테이저건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경찰 등의 생명·신체 안전이 위협받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 필요 최소한의 경찰 장비 사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당하게 법집행을 하면서도 경찰장비 사용에 대한 비난을 우려하여 그 사용을 극히 자제하는 등 위축된 바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차 사태에서는 테이저건 등 경찰장비를 적절하고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어느 정도 이끌어냈다고 본다. 단순한 불법행위와 살상무기를 동원한 의도적인 과격 폭력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처방식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4) 단전·단수 조치 관련

단수·단전 조치 등은 공장의 합법적 관리주체인 사측이 판단하여 취한 조치이며, 이 같은 조치가 비인도적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경찰은 실제 농성 노동조합원들의 식수·식량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단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비상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밥솥, 에어컨, 냉장고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농성장 내부를 수색한 결과 경찰이 파악한 대로 6,700여ℓ의 생수와 쌀 790여kg, 라면 9,000여개, 즉석비빔밥 300여개, 건빵 800여 봉지 및 김·고추장 등 약 10여일 분의 식량을 비축 중이었다.

5) 음식물 반입 차단 등

경찰은 공장내로의 의료진 진입, 의약품 전달, 음식료품 반입 등을 차단한 사실이 없고, 불법점거중인 파업근로자와 그 가족의 만남(장소·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측이 결정한 문제이며, 이와 관련하여 경찰이 그 만남을 차단하거나 제한한 사실이 없다. 경찰에서는 헬기를 통해 평화로운 사태 해결을 설득하는 선 무방송을 수차례 실시했으며, 이 외에도 지형정찰 및 방어막 형태 파악, 농성자들의 살상무기 사용에 대한 경력안전 확보차원의 최루액 살포 등에 헬기를 활용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2.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식수 등의 공급중단 및 반입 차단 등에 대하여(진정요지 가.항)

1) 인정사실

진정인들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의견서, (주)OO자동차 OO공장 내 농성현황, 경력운용(2009. 6. 25./6. 26./6. 27./7. 16./7. 20./7. 22./7. 27./8. 4./8. 5.)), OO도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OO차 단수조치에 따른 소방법령 위반사항 검토결과 보고서’·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자인(확인서)·소방시설 정상작동유지 협조 요청서·OO자동차 OO공장 소방용수 폐쇄에 따른 위법성 검토 및 조치·OO자동차 OO공장 소방용수 폐쇄에 따른 위법성 검토 및 조치지시·시정보완명령서 발부·수사지휘건의서, 위원회의 OO차 사태 관련 동향 보고, 실지조사 및 전화조사 등에 의하면,

가) (주)OO자동차 OO공장에서 600여명의 OOOO노동조합 OO자동차 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반대하고 정부의 대책마련 수립을 요구하면서 2009. 8. 6. 노사가 전격 합의하기까지 77일간 점거농성을 벌였고, 이에 회사측의 용역경비원과 직원, 그리고 경찰 총 1,708개 중대, 경찰특공대 등 연인원 13만명은 공장을 에워싸서 그 출입문을 막고 검문·검색 등으로

외부인 출입을 차단 및 통제하는 등으로 농성장을 봉쇄한 사실,

나) (주)○○자동차 사측은 2009. 5. 31. 공장을 폐쇄한 이후, 금속노조간부 24명, 외부노동단체 38명에 대하여 건조물 침입 및 퇴거, 업무방해로 고소 및 고발을 하고, 관할 법원에 노조원들의 점거농성 중지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관할 법원은 같은 해 6. 26. 가처분결정을 하고, 같은 해 7. 3. 1차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노조 방해로 무산된 사실,

다) (주)○○자동차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원들은 화염병, 볼트발사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공장 내부에는 신나 등의 유류물질과, 휘발유 등의 가연성 물질이 다량 저장되어 있던 사실,

라) 2009. 6. 27.경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원과 직원 100여명이 쇠파이프와 소화기, 사제방패 등으로 무장하고 공장에 진입하여 농성중인 노동조합원과 몸싸움을 하였고, 노동조합원 중 한명은 용역경비원이 던진 소화기에 맞아 얼굴을 다쳤으며, 같은 날 용역경비원이 던진 소화기에 맞아 치아 10여개가 부러진 노동조합원을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구급차에 태우고 정문으로 나가려고 하던 중 용역경비원과 회사측 관리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등 다수의 노동조합원이 부상당하였는데, 경찰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마) (주)○○자동차는 2009. 7. 17.이후 식수 및 가스 공급을 중단하고 소화전을 차단하였고, 이에 농성장 내부의 노동조합원 600여명은 식수가 거의 소진되고 소화전이 차단됨으로 인한 신체의 안전 및 화재 위험에 대하여 불안을 호소한 사실,

바) (주)○○자동차는 2009. 7. 20.이후 생필품 및 의약품 반입을 금지하고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하였고, 같은 해 8. 2.이후에는 단전조치를 취하였으며, 노

동조합원의 가족이 농성장에 의약품 반입 등을 위해 공장에 진입하려는 경우 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원과 회사의 임직원이 이를 차단하고 의약품 반입 및 의료진 출입을 차단하거나 방해한 사실,

사) 위 바)항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경찰은 이를 보고만 있거나 최소한 묵인하였고, 회사측과 공동으로 차단행위를 함으로써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중 당뇨병, 고혈압 등 지병을 앓고 있는 50여명이 충분한 약을 복용하지 못한 사실,

아) ○○도 소방재난관리본부는 2009. 7. 20. (주)○○자동차의 소화전 차단 조치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48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방시설 폐쇄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지청에 수사지휘를 건의한 사실,

자) 2009. 7. 22. 저녁 농성장 내에 있던 노동조합원 중 한명은 경찰이 발사한 전자충격기의 전기침에 맞아 왼쪽 얼굴 광대뼈에 상처를 입었고, 농성장 안으로 들어간 ○○○○○○○○협의회 소속 의사(○○○)가 수술을 진행한 사실,

차) 2009. 7. 28. ○○○○당 소속 ○○○ 의원실에서 공개한 ‘경찰 임무카드’에는, 당시 진압경찰의 임무로 물과 식량을 차단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진 정인들이 제출한 ‘경력운용서’에는, ‘경찰의 임무는 외부인 진입차단 검거 및 이탈 농성자 검거’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카) (주)○○자동차 회사측은 농성기간 중 ○○공장 정문에서 인권단체 및 정당 관계자가 방문할 경우 방송을 통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거나, 심야에 음약 등의 방송을 하여 농성중인 노동조합원과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

타) 2009. 7. 29. 경찰헬기는 가족대책위원회가 설치한 천막 위를 저공으로 비행하여 먼지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천막 안에 있던 가족대책위원회 회원과 그 가족들이 공포감을 호소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진정요지 가.의 1)항에 대하여

「경찰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면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임무로 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11조에 따르면 경찰은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직권을 행사하고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비록 농성노조원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하고 있어 시설물의 보호, 농성의 해산 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원들은 해산, 진압하기 위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행위는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권의 발동 내지 그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력행사이어야 한다.

한편, 「헌법」 제10조 후문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실현하는 주체인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영역에서도 당연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

인들은 점거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식수, 식량 및 의약품의 반입과 소화전을 회사측과 공동으로 차단 또는 회사측이 차단하는 것을 묵인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의 생명권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식수와 음식물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본 조건으로서 최소한의 음식물과 식수를 공급받을 권리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인바, 이는 법률에 의하여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비록 불법행위를 행한 자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음식물과 식수를 공급받는 것을 차단할 수 없고, 이를 차단하는 것은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본질적 내용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원들이 비록 불법 점거 농성중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공장 내에 식수와 식량이 충분하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식수와 식량의 반입을 차단한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피진정인들이 직무수행을 하면서 지켜야 할 인권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여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의 생명권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의 방해를 금지하고 있는바,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해가 현실화된 자에 대하여 의약품 반입 차단 및 의료진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의 생명권 및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들은 노동조합원들이 점거중인 공장의 관리자인 (주)OO자동차가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게 되면 유류물질이 다량 산적해 있는 공장에서 대형화재와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의 소화전 차단행위에 대하여 묵인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회사측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묵인으로서, 국가의 기본권보호 의무에 반하여 노동조합원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공장내부에서의 소화전 차단 상태는,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진압 업무 중인 다수의 경찰관들과 공장주변에 있는 회사측 직원들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도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바, 피진정인들의 소화전 차단에 대한 묵인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및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등의 규정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한편,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원과 직원들이 집단으로 노동조합원을 폭행하고, 공장내의 환자를 후송하기 위한 차량의 운전자와 간병인을 집단으로 폭행한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위반되는 행위인바, 이러한 용역경비원 등의 행위에 대하여 수수방관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및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규정에 반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피진정인들의 이 사건 농성장 봉쇄행위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원조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농성 당시 회사측과 노동조합측의 부상자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은 불법 점거농성이 노사간 합의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70여일 동안 강제진압을 미뤘은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 사건 피진정인들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가.의 2), 3), 4)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농성중인 공장의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고 검문을 강화하여 가족들의 면회를 허용하지 않았고, 식수 반입 요청시 가방 등의 검색을 강화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식수, 식량, 의약품을 제외한 노동조합원들의 불법점거 농성을 장기화할 수 있는 물품의 무분별한 반입을 금지하고, 경찰의 물리력 행사없이 노동조합원들의 점거농성 해제를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또한, 공장 내의 전기 및 가스 등의 공급 중단은, 공장의 관리 권한자인 (주)OO자동차 사측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달리 피진정인들이 전기 및 가스 등의 공급을 중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한편, 진정인들은 피진정인들이 (주)OO자동차 회사측의 선무방송을 방관함으로써 그 소음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회사측의 선무방송 자체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점거농성 및 노사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의 가족들 외에 다른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된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바,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회사측의 선무방송으로 인하여 다소 불편함을 겪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서 더 나아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들은 경찰항공기의 저공비행으로 인하여 천막이 넘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항공운영규칙」 제18조 단서는 “경찰기본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300미터 이하의 고도로 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험물질이 산재한 공장 내의 점거농성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장에서 상세한 상황 파악 및 적절한 대책 강구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저공비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바, 피진정인들이 경찰헬기를 저공비행한 사실 및 이로 인해 진정인 및 피해자들이 공포감 등을 느낀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이 사건 경찰항공기의 저공비행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불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졌거나 진정인 및 피해자들의 관련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

나. 경찰장비 사용에 대하여(진정요지 나.항)

1) 인정사실

진정인들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의견서, 전자충격기 사용의 법적 근거, 보유 및 사용현황, 최루액의 유해여부, 경력윤용(2009. 6. 25/ 6. 26/ 6. 27/ 7. 16/ 7. 20/ 7. 22/ 7. 27/ 8. 4/ 8. 5)), ○○병원 ○○○○건강연구소의 ‘(주)○○자동차 농성장에서 사용된 최루액 성분분석 결과’, 위원회의 ○○차 사태 관련 동향 보고, 실지조사 및 전화조사 등에 의하면,

가) 경찰은 농성기간 중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에게 살수차와 헬기를 동원하여 다량의 최루액을 지속적으로 살포하였고, 경찰이 살포한 최루액에 맞아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10여명의 피부에 수포가 발생하고 피부가 벗겨지는 등 급성피부염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2009. 7. 22. 헬기와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포된 최루액은 그 농도가 다른 때와 달리 매우 높아 최루액을 맞은 노동조합원들이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은 상처를 입은 사실,

나) 2009. 7. 24. 11:00경 ○○시 종합운동장에서 이루어진 경찰이 헬기를 이용하여 살포하고 있는 최루액의 안전성을 시험하는 실험 결과, 최루액에 젖은 스티로폼이 녹아내리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

다) 위 실험결과에 대하여 ○○○○경찰청장은 “최루액 주성분은 산업현장에서 도 노출기준에 따라 사용되는 물질로 발암물질인지 확실치 않고, 끓는점이 섭씨 39.75도로 상온에서 쉽게 날아가 옥상 등 개방된 공간에서는 유해성이 미미하고, 또한 최루액의 희석농도도 제조사 사용기준의 5분의 1 수준으로 약하게 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성실히 지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권단체 및 노조원들은 “○○자동차 공장에서 사용된 최루액에서 검출된 주요성분인 디클로로메탄은 산업체에서도 발암성으로 인하여 사용이 자제되는 물질로서, 최루액에서 검출된 디클로로메탄이 0.1% 이상 함유되어 있으므로 최루액 자체를 발암물질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최루액을 사람에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결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등 그 안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정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라) 2009. 7. 22. 18:20경 농성중인 노동조합원 40여명이 도장공장에서 정문 쪽으로 뛰어 나갈 때, 도장 공장 앞 50m떨어진 곳에서 가림막 뒤로 대기하고 있던 경찰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전자충격기를 발사하여 노동조합원 중 2명이 각각 왼쪽 뺨과 왼쪽 허벅지를 맞았고, 같은 해 8. 5. 및 8. 6. 오전 강제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도주 중인 노동조합원들의 가슴과 몸에 다목적발사기를 발사하여 목과 가슴에 총탄을 맞은 다수의 노동조합원들이 정신을 잃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판단

농성노동자들이 비록 불법적인 방법으로 노동쟁의를 하고 있어 시설물의 보호, 농성의 해산 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강제진압 행위는 인권보장을 위한 적법절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즉,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제1항,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및 제2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경찰봉, 최루액, 전자충격기, 다목적발사기 등의 경찰장비를 사용할 경우, 생명·신체 등의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같은 규정 제21조 및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찰관이 직무수행 중 사용하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제5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최루탄 및 최루액을 포함하는 최루장비는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 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8조 제2항, 같은 규칙 제76조 제4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경찰장비 중 ‘전자충격기’는 얼굴을 향

해 발사해서는 아니 되고, 같은 규정 제1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다목적발사기’는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협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 및 법령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피진정인들이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봉지형태의 최루액을 살수차와 헬기를 동원하여 특히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농성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다량 살포하여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로 하여금 피부병 등의 신체이상 증상을 유발케 하고,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에서도 그 안전성에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전자충격기를 노동조합원들의 안면에 발사하여 상해를 입힌 행위 및 이미 체포되어 저항 불능 상태에 있거나 도주 중인 노동조합원의 목과 가슴에 다목적발사기를 발사하여 의식을 잃게 한 행위는 위에서 언급한 관련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을 규정한 각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최루액은 유류물질이 다량 저장되어 있어 그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공장에 다량 살포되었고, 다목적발사기는 인질범 체포 등의 작전수행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직무수행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범위 내의 공권력행사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노동조합원들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만, 경찰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고 그 사용의 원칙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이 사건 피진정인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경찰장비의 사용이 가능한 모든 경찰에게 적용되는 것인바, 피진정인들을 포함한 각급 경찰기관의 지휘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경찰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즉시 확인을 하고,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관련 장비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압시 폭행에 대하여(진정요지 다.항)

1) 인정사실

진정인들 및 피해자들의 각 진술, 피진정인 제출한 경력운용(2009. 6. 25., 6. 26., 6. 27., 7. 16., 7. 20., 7. 22., 7. 27., 8. 4., 8. 5.), OO차 진압과정 동영상(HANI TV), 의사 OOO과 의사 OOO의 소견서, 위원회의 실지조사 및 전화조사 등에 의하면,

가) 피진정인들은 2009. 8. 5. 오전 농성중인 노동조합원을 해산하기 위하여 컨테이너 3동을 이용, 기습적으로 (주)OO자동차 공장 옥상에 올라가 진압을 시작하였고, 옥상에 있던 노동조합원들은 진압경찰들을 피해 도망가거나 후퇴한 사실,

나) 위 진압 과정에서 일부 진압경찰들은 이미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일부 노동조합원들의 온 몸을 방패로 찌고 경찰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다시 다른 2명의 진압경찰이 지나가다가 이미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저항능력을 상실한 노동조합원을 위와 같이 반복해서 폭행하였고, 진압경찰들의 폭행을 피하다가 노동조합원 2명이 공장옥상에서 떨어진 사실,

다) 위 진압과정에서의 피해자 OOO은 이미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에게 개인소화기로 온몸을 수회에 걸쳐서 맞아 머리가 찢어지고, 피해자 OOO은 경찰에게 방패로 가슴을 맞고 넘어진 후 다시 방패로 팔과 허리를 맞아 팔이 부러지고 척추에 금이 가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정신을 잃었으며, 피해자 최성국은 경찰에게 다목적발사기로 맞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짓밟히고 경찰서 연행 중 재차 방패로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

라)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은 뇌진탕증, 두피열상, 흉부심부좌상, 요추염좌, 두피열상 등으로 1차 봉합 수술을 받았고, 피해자 ○○○은 저완부적 골간부골절, 제3요추 횡돌기골절, 경추염좌, 다변성좌상 등으로 수술받았으며, 피해자 ○○○은 과호흡, 공황장애,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판단

일반적으로 경찰이 행사한 공권력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 및 적정범위를 벗어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헌법상 원칙인 ‘과잉금지 원칙’ 및 이로부터 파생된 ‘경찰비례의 원칙’이다. ‘과잉금지 원칙’ 및 ‘경찰비례의 원칙’은, 범죄 및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것을 포함한 모든 공권력행사는 법률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경찰작용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당해 경찰관의 발동 내지 그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함을 내용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진압경찰이 정당방위적 상황 등이 아님에도 농성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러한 행위는 위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원칙은 현행법령에도 반영되어 있는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르면 경찰은 경찰장비를 사용할 경우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11조, 제54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특히 도주하는 상대방의 등 뒤에서는 가급적 위해를 가하는 무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하며, 자발적인 자진해산을 유도하고, 강제 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원칙에 비추어 검토하건대,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2009. 8. 5. 오전 (주)OO자동차 조립 3·4공장 옥상 진압과정에서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의 퇴로를 확보하지 않고 추적하였고, 일부 진압경찰들은 이미 체포되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노동조합원들을 발로 밟고 방패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으며, 도주 중인 노동조합원들의 등 뒤에서 집단적으로 방패와 경찰봉으로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가함으로써 일부 노동조합원들의 머리가 찢어지고 팔이 부러지고 척추에 금이 가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일부 진압경찰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부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진압 및 체포 행위가 종료된 후에 항거불능 상태인 노동조합원들에게 가해진 폭행행위인바, 특별히 정당방위 상황이나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정당화할만한 사유를 발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위 일부 진압경찰들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11조 및 제54조 제1항에 반해 노동조합원들을 진압 및 체포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서고, 방패 및 경찰봉등의 사용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이며, 나아가 이는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상의 폭행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원들의 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로서는 피진정인을 특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진정인들의 농성장 봉쇄행위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과 원조요청에 따른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였다는 사실, 강제진압을 할 경우

대형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70여일동안 강제진압을 자제한 사실, 총 1,708개중대, 경찰특공대 등 연인원 13만명의 경찰, 회사측 용역경비원 및 임직원과 600여명의 농성조합원과 그 가족들이 충돌하여 농성조합원은 물론이고 다수의 경찰들도 부상을 입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진정요지 가.의 1)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장비사용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장비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진정요지 다.항 부분은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해당 진압 경찰관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하고, 진정요지 가.의 2), 3), 4)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별지 1】 진정인(사건번호)

허○○(09-진인-0002363), 유○○(09-진인-0002366), 이○○(09-진인-0002367), 김○○(09-진인-0002368), 서○○(09-진인-0002369), 박○○(09-진인-0002371), 유○○(09-진인-0002372), 부○○(09-진인-0002373), 신○○(09-진인-0002375), 정○○(09-진인-0002376), 김○○(09-진인-0002380), 박○○(09-진인-0002391), 강○○(09-진인-0002392), 안○○(09-진인-0002396), 부○○(09-진인-0002399), 최

OO(09-진인-0002401), 이OO(09-진인-0002402), 김OO(09-진인-0002403), 조OO(09-진인-0002410), 엄OO(09-진인-0002411), 최OO(09-진인-0002412), 정OO(09-진인-0002415), 김OO(09-진인-0002418), 김OO(09-진인-0002436), 김OO(09-진인-0002437), 문OO(09-진인-0002439), 박OO(09-진인-0002464), 황OO(09-진인-0002468), 안OO(09-진인-0002492), 이OO(09-진인-0002493), 한OO(09-진인-0002494), 김OO(09-진인-0002504), 오OO(09-진인-0002505), 하OO(09-진인-0002515), 김OO(09-진인-0002624), 신OO(09-진인-0002625), 박OO(09-진인-0002655), 김OO(09-진인-0002679), 권OO(09-진인-0002700), 윤OO(09-진인-0002705), 방OO(09-진인-0002707), 김OO(09-진인-0002708), 인OO(09-진인-0002723), 인OO(09-진인-0002724), 심OO(09-진인-0002727), 김OO(09-진인-0002729), 한OO, 임OO, 정OO(09-진인-0002731), 황OO(09-진인-0002737), 김OO(09-진인-0002738), 윤OO(09-진인-0002739), 황OO(09-진인-0002740), 서OO(09-진인-0002747), 조OO(09-진인-0002752), 신OO(09-진인-0002780), 오OO(09-진인-0002965)

【별지 2】 관련규정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

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의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제39조 (진정의 기각)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2조 (조정) ④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조사대상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그 밖의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 또는 유사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제42조제4항 각호에 정한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 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기타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자

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 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 <2006.3.24>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6.3.24>

1. 제2조제1항제1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제2조제1항제2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제2조제1항제3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④ 이 법 위반(「형법」 각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도 제3항과 같다.
〈신설 1980.12.18, 1990.12.31, 2006.3.24〉

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
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
한 때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
함에 있어서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
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하여 폐쇄·차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 「경찰법」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

제4조 (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발생의 방지) 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 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피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 신체에 피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등)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경찰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3(분사기등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 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 · 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 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 · 도검 · 화약류등 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자. 「경찰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경찰장비의 일반적 사용기준) 경찰장비는 통상의 용법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불법집회등에서의 경찰봉 · 호신용경봉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불법 집회 · 시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 · 신체 의 위해와 재산 · 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또는 호신용경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전자충격기 등의 사용제한) ② 경찰관은 전극침 발사장치가 있는 전자충격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얼굴을 향하여 전극침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다목적발사기의 사용기준) 경찰관은 인질범의 체포 또는 대간첩 · 대테러작전등 국가안전에 관련되는 작전을 수행하거나 공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다목적발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부상자에 대한 긴급조치)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사용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호 기타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차. 「경찰장비관리규칙」 (2008. 12. 9. 훈령 제532호)

제76조(특별관리) ④ 전자충격기, 석궁, 다목적 발사기, 특수진압차, 물포총, X-RAY 촬영기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전자충격기

가. 누전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한다. 특히, 우천강설시 사용을 자제하여

야 한다.

나. 사용 전 배터리 충전여부를 확인한다.

다. 전극침이 발사되는 전자충격기의 경우 안면을 향해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3. 다목적 발사기

가. 휴대시 안전자물쇠 안전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안전위치에서 격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안전자물쇠가 안전위치임을 확인한 뒤에 실탄을 장전한다.

제82조(특별관리)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최루탄(발사기)

가. 현장 지휘관의 지휘에 의하여 발사하여야 한다.

나. 인화성 물질에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한다.

라. 최루탄 발사기는 30도 미만 각도에서 방아쇠가 격발되지 않도록 한다.

마. 최루탄은 물 또는 습기에 젖어 있는지 확인 후 이상이 없을 때에만 사용한다.

바. 장전탄통 고정 조임나사를 완전히 조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직무규칙」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54조(무기 등 사용의 한계)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무기, 경찰장구 및 물리력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특히 도주하는 상대방의 등 뒤에서는 가급적 위해를 가하는 무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한다.

② 경찰관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수갑 등 경찰장구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현실적인 도주 가능성, 본인 또는 제3자에 대한 위해의 우려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87조(불법집회 해산할 때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불법집회의 경우 지속적인 경고로 불법성을 지적하여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고, 강제 해산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장애인, 노약자, 아동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타. 「경찰항공운영규칙」

제18조(안전고도) 중요시설, 민가 밀집지역,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 등을 비행할 때는 항공기를 중심으로 반경 600m 범위 내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 상단으로부터 300m 이상의 고도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경찰기본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와 지상의 사람이나 물건을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그 이하의 고도로도 비행할 수 있다.

5

2009. 12. 28.자 08진인3187결정 [색소물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청장에게 색소물포 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 까지 색소물포 사용을 자제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색소물포 사용은 노상에서 파란색 색소가 섞인 물을 몸에 맞고 타인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노출해야만 하는 과정에서 인격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포함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해야 함. 그런데 피진정인이 색소물포 사용의 법적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가스차’ 또는 ‘살수차’사용에 대한 규정으로, ‘색소물포’의 경우 수치심, 모멸감 등 피해의 정도 및 경찰의 사용목적, 효과 등에서 일산 물포와 현저히 달라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보여지므로 색소물포 사용절차, 기준 등을 엄격하게 규정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가 마련될 때 까지 색소물포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헌법」 제37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3조 「경찰장비규칙」 제78조, 제82조, 『물포운용지침』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김○○(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주 문】 경찰청장에게 색소물포 사용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과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 까지 색소물포 사용을 자제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은 2008. 8. 1.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회견담회에서 “8. 2. 부터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색소분사기를 사용해 과격폭력 행위자, 장시간 도로 점거자 등은 인도 등으로 도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같은 달 15. 21:00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 2가와 3가 사이에 위치한 횡단보도에 있는 진정인을 향해 현장의 경찰들로 하여금 파란색 색소를 탄 물포를 쏘게 하여 진정인의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색소물포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 「경찰장비관리규칙」, 「물포운용 지침」이 있다.

2)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미신고불법집회 시위를 개최한 후 서울의 중심도로인 종로, 세종로, 남대문로 등의 주요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전개하여 일반교통을 방해함으로써 많은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경찰의 거듭된 해산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앞, 명동, 을지로, 종로, 등의 도로를 옮겨 다니며 불법시위를 전개하였다.

3) 특히 종로 2가와 3가 사이는 2008. 8. 15. 20:40경부터 한국은행 로터리에서 이동한 시위대 2,500여명이 도로를 점거한 채 불법시위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물포를 사용하기 전 “노약자, 집회와 관련이 없는 선량한 시민, 기자 등은 물포를 사용할 예정이므로 안전한 곳으로 피할”것을 수차례 경고방송 하고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100여명을 향해 색소 물포를 살수한 바 있다.

4) 경찰에서는 수개월간 심야에 시위대가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 장비를 무차별 손괴하는 불법폭력시위를 더 이상 용인 할 수 없으며 당일 경찰이 색소 물포를 살수한 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법질서 확립을 위한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이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2008. 8. 15. 정보상황보고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색소검사 시험 성적서, 서울청장 기자간담회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8. 8. 15. 미국쇠고기 반대 촛불시위에 참석하여 종로2-3가에서 파란색 색소물포를 맞고 사복경찰에 의해 검거되어 노원경찰서로 연행되었다.

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08. 8. 1. 기자간담회에서 불법시위자에 대해 검거위주로 진압하겠으며 과격 폭력행위자 및 장기간 도로 점거자에 대해 색소 분사기를 사용해 인도 등으로 은신하더라도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 밝혔다.

다. 서울경찰청 기동본부 장비과 경장 황○○은 2008. 8. 15. 종로2가에서 「8. 15. 100차 집중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상황과 관련하여 물포1호 조작요원으로서 근무명을 받고 3회에 걸쳐 위 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방송을 하고 최종적으로 주위에 있는 취재기자, 노약자, 여성, 어린이, 구경나온 시민들에게 안전을 위하여 대피할 것과 파란색 색소를 사용한 물포를 이용하여 차후에 검거조치 하겠다는 방송을 하고, 같은날 21:35경 도로상에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시위

대를 향해 파란색 색소를 탄 물포를 살수한 사실이 있다.

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물포에 사용된 색소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색소는 술폰화 색소,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아황산나트륨, 아황산나트륨, 순수색소, 휘발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음식 조리시 사용하는 식용색소로 인체에 위해성이 없다고 밝혔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모든 기본권의 종국적 목적이자 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인간의 본질적이고도 고유한 가치로서 모든 경우에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헌재 2001. 7. 19. 2000헌마546) 그런데 색소물포 사용은 노상에서 파란색 색소가 섞인 물을 몸에 맞고 타인에게 그 모습을 그대로 노출해야만 하는 과정에서 인격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조에 포함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다는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 법률로써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법률보다 하위 규범인 명령도 법률의 명확한 위임이 있는 경우이면 명령에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색소물포 사용의 법적근거로 제시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경찰장비의 사용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 제4호

및 제13조 제1항 등은 ‘가스차’ 또는 ‘살수차’사용에 대한 규정으로 ‘색소물포’의 경우 수치심, 모멸감 등 피해의 정도 및 경찰의 사용목적, 효과 등에서 일산 물포와 현저히 달라 별도의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고 보여지므로 색소물포 사용절차, 기준 등을 엄격하게 규정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거가 마련될 때 까지 색소물포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주문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나 색소물포를 사용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제도적 개선사항으로 보아 소속기관의 장인 경찰청장에게 색소물포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 및 절차와 기준을 마련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별지】 관련 규정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 ①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명 또는 신체의 위해를 가할수 있는 장비에 대하여는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 “경찰장비”라 함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 및 그 발사장치, 감식기구, 해안감시기구, 통신기구,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 ③ 경찰장비를 이의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 ④ 제1항의 단서의 경찰장비의 종류 및 그 사용기준, 안전교육·안전검사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경찰장비의 종류) 인명 도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수 있는 경찰장비(이하“경찰장비”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찰장구: 수갑·포승·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2. 무기: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신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3. 분사기·최루탄 등: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검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타장비: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제13조(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의 사용기준) ①경찰관은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가스차 또는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다.

다. 「경찰장비규칙」

제4절 집회시위관리장비

제78조(구분) 집회시위관리장비는 집회 및 시위관리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하는 장비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개인장비 : 방석모, 방염간이진압복, 방패, 진압봉, 개인소화기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비
2. 차량장비 : 지휘차(지프), 버스, 구급차, 식당차, 위생차, 화물차, 현장 지휘차 등 차량장비
3. 특수장비 : 가스차, 살수차, 조명차, 방송차, 페이로다 등 시위관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특수차량장비

제82조(특별관리) ① 집회시위관리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 최루탄 분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집회시위관리용 물포(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각급 경찰기관의 장의 책임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7. 집회시위관리용 물포(살수차)

- 가. 집회시위관리용 물포(이하 ‘물포’라 한다)를 사용하기 전에 경고방송과 경고살수를 통하여 자진해산을 유도하여야 한다.
- 나. 물포 사용시 시위대의 거리와 수압 등은 제반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집회시위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여야 한다.
- 다. 물포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물포 운용지침」에 의한다.

라. 「물포운용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른 집회시위관리용 물포의 사용요건과 절차, 살수방법 및 관리교육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물포의 일반적 사용요건

가. 물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한다.

- 1)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불법집회·시위 또는 소요사태로 인하여 타인의 재산·공공시설 등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화재 진압 또는 분신의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집회·시위현장 물포 운용방법

5) 염료 혼합살수

가) 살수요령 : 물포의 물탱크에 염료액을 혼합하여 살수하며, 주변의 제3자에게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사용요건 : 폭사 또는 직사 살수로도 해산치 않거나 현장체포가 곤란하여 사후 체포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7. 기타

1

2010. 3. 8.자 09진인3563결정 [상사의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해양경찰서장에게, 소속 기관 경찰관들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조속히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관리시스템을 점검·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들이 전경대원들의 사적제제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경대원 상호 간의 구타 폭행 등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경찰공무원의 입회 없이 전경간의 부대지휘 및 훈련, 교양, 감독행위 금지하며, 경찰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 및 방조 금지와 지휘감독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77조(구타 및 가혹행위근절), 「전경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 제3조(정의) 및 제5조(임무),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등 각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휴식권 및 신체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

【2】 피진정인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 구타 등 가혹행위 및 부적절한 대우 등을 받아왔으나 결국 함정 등 부대생활상의 관행적인 폐쇄성으로 인해 자신의 스트레스나 고충을 표출하거나 해소하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극도의 정신적 압박감에 기인하여 실족함으로써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을 입었고, 또한 정신적 우울증을 앓고 있고,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는 비록 피해자가 휴가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 기인된 것이 아니라 상당부분 ○○해양경찰서 복무 중 업무수행을 하면서 받은 구타, 폭행, 가혹행위 및 부당한 처우,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곤란한 부당한 부대 운영에 따른 심신상의 압박감과 스트레스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하

여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137조의 규정에 의거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1. 전○○
2. 김○○
3. 한 ○
4. 오○○
5. 윤○○ 등 103정 근무 직원 다수
6. 김○○
7. 조○○
8. 이○○ 등 1007합 근무 선임전경대원 다수
9. 최○○
10. 장○○

【주 문】 1. ○○해양경찰서장에게,
가. 피진정인 3, 4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 5(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조속히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부상에 대한 재심의를 할 것과,
다.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관리시스템을 점검·개선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해양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피진정인 6에 대한 진정부분은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해양경찰서 전경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진정인들로부터 아래와 같이 구타, 가혹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는바, 재발방지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해자가 1007함 취사원으로 근무할 당시(2007. 10. 19. ~ 2008. 4. 5.)

1) 피진정인 7 등 내무반장들은 매주 2회에 걸쳐 일석점호가 끝난 22:00 ~ 23:00경 위 함정 내 내무반에 피해자 등을 집합시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며 선임대원 순으로 엎드려뺨쳐, 머리박기 등의 기합을 주었고, 피진정인 8(이○○)은 함정 후미 흡연 장소로 피해자를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구타하였다.

2) 피진정인 1 등 1007함 직원들은 피해자가 2008년 1월 훈련기간 중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부모님을 통해 직접 건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일명 ‘개념 없는 놈’으로 낙인찍었고, 함정 내 동료 전경대원들도 이를 알고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3) 피진정인 3은 2008년 2월경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상급기관에 부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왜 자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냐며 관련자를 색출하려고 피해자를 비롯한 전 대원의 개인수첩을 수거해 필적을 대조하고 일대일 면담을 실시하며 공포감을 조성하여 군 복무 중 애로사항이 있어도 밖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4) 피진정인 7과 피진정인 8(이○○)은 2008년 2월경 함정 내 식당에서 위생 및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에게 물컵을 집어 던지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구타를 하였다.

5) 피진정인 4는 위 근무기간 중 함정 내 식당에서 술을 먹고 피해자의 가족관

계를 들먹이며 “너의 어머니는 니가 똑똑한 줄 알지? 이 멍청한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였다.

나. 피해자가 ○○도출장소에 근무할 당시(2008. 4. 6. ~ 2008. 12. 21.)

1) 피진정인 4는 근무기간 중 선착장 등에서 수시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이 멍청한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고, 2008. 9. 19. 군산시 옥도면 ○○도에서 낚시를 하다 고립된 민간인을 S-31정(2톤급)을 운항해 구조하면서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구타하였다.

2) 피진정인 9는 위 근무기간 중, 일자불상경 ○○도 선착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수차례 구타하고, 수시로 “미친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며 폭언을 하였다.

다. 피해자가 103정에 근무할 당시(2008. 12. 22. ~ 2009. 3. 12.)

1) 피진정인 5(경위 윤○○ 등 직원 5~6명)는 3박 4일 출항을 할 때면 거의 이틀 동안 01:00경 ~ 02:00경 위 함정 식당에서 군용모포를 깔아 놓고 술을 먹으며 포커(홀라), 고스톱 등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라면 등 야식을 준비하도록 시켜 숙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진정인 5(경위 윤○○ 등 직원들)는 피해자에게 기관정비보조 업무 외에 월보작성, 입출항 등 공문서 작성 등 행정사무업무, 후임대원 관리 및 취사업무 지원, 내항 및 외항 당직근무 및 정박작업을 비롯해 사적심부름 등을 과중하게 시켜 휴식 및 수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늘 두통에 시달려 진통제를 다량 복용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당하도록 하였다.

3) 피진정인 10 등 고참 전경대원들은 위 근무기간 중 피해자가 외항당직 근무를 서거나 소형부두에 대기할 때에는 수시로 찾아와 이유 없이 “개념 없는 놈,

죽여 버리겠다. 몸조심하라!”라며 폭언을 하고 위협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위와 같이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직원 및 선임대원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또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으나 함정근무 시 애로사항을 직원들에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힘들기만 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빠져 함장 등 직원들에게 상담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자신과 비슷한 연배로 친하게 지내왔던 103정 경리사인 피진정인 6에게 2009. 3. 10. 휴가를 나가면서 휴가기간 중 말씀드릴 것이 있으니 연락해도 되겠느냐고 사전에 알리고, 같은 달 12. 저녁 무렵 전화하여 피진정인 6을 만나 술을 먹으며 부대생활의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상담하던 중, 피진정인 6으로부터 뜻하지 않는 폭행을 당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피진정인 6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실망감과 향후 부대생활 및 해양경찰관 입사 등에 대한 좌절감 등 정신적 압박으로 인하여 4층 자택에서 실족하여 척추가 손상되어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에 있다.

3.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 1) 피진정인 1(경정 전○○, 사건 당시 ○○해양경찰서 1007함 함장, 현재 ○○해양경찰서 근무)

2007. 2. 1.부터 2008. 3. 14.까지 ○○해양경찰서 1007함 함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임전경 보호관리를 위하여 단계별 적응교육과 정신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당시 1차 관리자인 전경지도관 순경 한○, 2차 관리자인 부함장 경감 김○○에게 함정 생활 적응 시까지 특별 보호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수시로 함정 내

순찰 및 복무관리감독을 실시하였으나 당시 전경들이 집합을 하거나 기합, 구타, 가혹행위 사실을 발견한 사실은 없다.

2008년 1월경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정보처리기사 자격시험을 보게 해달라는 건의를 부함장인 경감 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나 당시 피해자가 휴가, 외출, 외박 예고제의 순번이 아니었고 만약 피해자가 휴가를 실시한다면 타 전경이 휴가를 가지 못하게 되므로 타 전경들의 피해의식과 사기진작을 고려하여 부함장으로 하여금 부모님께 휴가시행에 대한 정황설명을 하고 차기 시험에 응시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2008년 2월경 전경지도관인 순경 한○○으로부터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부식관련 불만 전경에 대한 색출이나 필적대조, 공포감 조성 등에 대한 사실은 함장으로서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피진정인 2(경감 김○○, 사건당시 ○○해양경찰서 1007함 부함장)

1007함 부장으로 근무하던 기간 중, 전경대원들에 대하여 개인면담 및 관찰, 정신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전경대원들의 집합 및 구타 가혹행위를 발견한 바 없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면담 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고, 성격이 온순하여 함정 취사원으로 음식솥씨를 뿜내는 등 함정생활에 잘 적응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3) 피진정인 3(순경 한○, 사건당시 ○○해양경찰서 1007함 전경지도관)

2007. 7. 2.부터 2008. 2. 27.까지 1007함 전경대원의 사기진작, 각종 안전 사고 예방교육, 전경 행정 및 사무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해자가 전입해 취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정보처리

자격증시험을 보게 해 달라는 민원전화를 받았으나 당시 1007합 경비업무 출항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내 주지 못했던 것이고, 비록 함선 내 전화통화시 다른 전경대원들이 이를 들어 알 수는 있었겠으나 개념 없는 놈으로 낙인찍어 괴롭힘을 당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당시 전경관리자로서 대원 간 집합행위 등 부조리를 예방하고자 조기출근, 취약지역 순찰, 전경교육 및 면담을 실시하였는데, 선임대원들의 상습적인 집합행위 및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알지 못하였다. 각종 교육 및 전달사항 시 전경 개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시간에 관계없이 면담 및 문의하도록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2008년 2월경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부식관련 불만내용을 기재한 전경대원의 고통을 해결하고자 일대일로 설문작성여부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파악할 수가 없어 최종적으로 필체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경수첩을 수거하여 필체를 확인하였지만 결국 누구인지 찾지 못하였으며, 당시 이와 관련하여 목소리 톤이 컸을지는 모르겠지만 강압적이거나 욕설 등은 하지 않았다.

4) 피진정인 4(경사 오○○, 사건당시 ○○해양경찰서 1007합 및 ○○도출장소에 근무)

2007년 1007합 근무 시에는 검색반장, ○○도출장소 근무 시에는 S-31(순찰정) 정장 업무를 하였고, 평소 거주지 인근에 있던 이용원을 이용하다가 이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를 통해 피해자의 대학진학 및 해양경찰 전경복무관계로 상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007합 출동 중 우연히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상담 중 “니가 엄마 성격 잘 알지? 열심히 해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 멍청한 새끼야!” 등과 같은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 ○○도출장소 S-31 순찰정은 2인 1조(경찰관 1명, 전경 1명)로 승선 해상에서 추락, 실족 및 갯바위 고립자들에 대한 구조, 그리고 침몰, 침수선박 인명구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임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2008. 9. 19. ○○도 갯바위에서 낚시하던 2명이 고립되어 구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업무에 소홀하여 “야 임마! 낚시대 놔두고 두 손으로 사람을 구조해야지. 새끼야! 낚시대가 뭐 중요해. 사람이 우선이지!”

라고 말한 적은 있어도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5) 피진정인 5(○○해양경찰서 103정 정장 윤○○ 및 103정 근무 직원들)

103정 출항 근무 중, 야간시간에 포커게임, 고스톱 등 사행성 오락게임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전경대원들에게 야식준비를 시키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24시간 동안 근무해야 하는 함정의 특수성 때문에 새벽에 라면을 야식으로 먹을 때가 가끔 있었으나 이 또한 각자 직접 준비해 먹고 있다. 당시 103정의 경우, 당직근무, 취사업무지원 등은 모든 전경들이 순번에 의하여 돌아가며 근무를 하였고, 기관장비작업은 피해자의 보직 상 기관원으로서 응당 해야 할 업무였으며, 사무보조는 간단한 문서작업 등 보조업무만을 시켰다. 또한 업무 외에 사적심부름을 시킨 적이 없고, 외항 당직 근무를 서거나 소형부두에 대기할 때 상급 전경대원들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

6) 피진정인 6(순경 김○○, ○○해양경찰서 103정 근무)

103정 근무당시 피해자와는 친한 형, 동생처럼 가깝게 지냈으며, 2009. 3. 12. 저녁 피해자로부터 술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만나 같이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이야기 도중 나이 어린 고참들에게 지적을 받는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의 친구 중에 건달인 친구가 있는데 한 번 불러 보겠다며 여기 저기 전화하는 시늉을 하여 그만하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행동을 보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구타하였다. 이 사건으로 해양경찰서장으로 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피해자의 모친이 폭행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군산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7) 피진정인 7(수경 조○○, ○○해양경찰서 1007함 내무반장 근무)

○○해양경찰서 1007함 근무 시 2008년 2월경부터 내무반장을 하였는데, 당시 직원에 의한 일식점호가 끝난 후 일상적으로 후임대원들의 근무태도에 대해

고참 순으로 지적하곤 하였으나 엎드려뺨쳐 및 머리박기를 시킨 바는 없고, 바로 밑 기수인 상경 급에서 기합을 몇 차례 준적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가 취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식당 내 청소상태가 좋지 않아 구두 상으로 지적하고 가볍게 가슴 등을 밀친 적은 있으나 물 컵을 내던지고 정강이를 구두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8) 피진정인 8(이○○ 등 1007함 근무 선임대원 다수), 피진정인 9(최○○), 피진정인 10(장○○),

○○해양경찰서 근무 시 피해자를 알고 지낸 적은 있으나 1007함 식당이나 내무반, ○○○도 출장소, 그리고 외항당직 근무 시 구타 등 폭언을 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사건당시 ○○해양경찰서 1007함에 근무한 전경대원 백○○)

본인은 피해자와 군 입대 동기생으로 2007. 10. 19부터 2008년 3월 중순경까지 1007함에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였는데 피해자는 취사원으로, 본인은 사관 당번으로 보직을 받았다. 근무 당시 내무반장이던 수경 조○○은 2008년 1월 말경부터 22:00~23:00경 직원들의 감시가 없는 함정 맨 밑쪽에 위치한 내무반에 피해자 등을 집합을 시켜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며 선임 순으로 지적하며 연달아 엎드려뺨쳐, 머리박기 등 기합을 주었다. 2008년 2월 초경에는 상경 이○○이 피해자와 본인을 함선 후미 흡연 장소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머리와 가슴을 수회 구타하였다. 상경 이○○은 사관실에 수시로 와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가슴과 몸통을 구타하고 폭언을 하였다.

피해자가 2008. 1. 부모님에게 부탁하여 훈련기간 중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시험을 보게 해 달라고 부함장을 통해 함장에게 직접 건의하였다는 이유로 전○○ 함장은 무척 화를 냈고, 이에 전 직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는 일명

“개념 없는 놈”으로 낙인찍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08년 2월경 순경 한○이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부식관계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이를 왜 자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면서 관련자를 색출하려고 전 대원의 개인수첩을 수거해 필적을 대조하고 개인면담을 실시하는 등 공포감을 조성하여, 함정 내 생활 중 애로사항이 있어도 밖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주눅이 들게 하였고, 이에 본인도 함정 생활 중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꼭 참고 버티려고 하였다.

1007함 근무 중,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수경 조○○과 상경 이○○이 위생 및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면서 물컵을 집어 던지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구타를 당하였다고 들은 바 있고, 경사 오○○은 출항 시 저녁시간 때 함정 식당 내에서 술을 먹고, 식당 취사병인 피해자에게 가족 이야기를 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어, 서로 만나 “힘들다. 죽고 싶다. 바다에 뛰어 내리고 싶다.”라는 말을 주고받고 눈물을 흘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본인은 1007함 근무 중, 기관장에게 상경 이○○ 등 고참대원이 너무 괴롭혀 배를 못 타겠다고 상담을 하여, 결국 ○○피출소 소령출장소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위 기수인 상경 최○○이 문서 수발이 늦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개새끼, 죽여 버리겠다.”고 수시로 폭언을 하였다. 또한 상경 최○○이 ○○○도 선착장 컨테이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미친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폭언을 했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다.

본인은 2009년 10월경 271함에 승선근무 중 고참대원의 반복적인 구타 등 가혹행위로 대인공포증, 우울증 등 이상증세가 발병되어 30일간 단국대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 치료를 받고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2009. 10. 1. 만기제대를 하였다.

2) 참고인 2(○○도 거주 주민 신○○)

본인은 ○○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피해자가 ○○도 선착장 인검 및 S-31정 승선보조 업무를 하면서 위 S-31정을 운행하던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 이것도 못해.”라며 심하게 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이외 초소 근무 시 피해자가 경찰직원들과 선임전경들로부터 인격적 모독 및 갖은 욕설을 당하는 것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해자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피진정인들의 각 진술서, 참고인 1(백○○) 등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및 전화통화조사보고서, 진정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해양경찰서가 제출한 전투경찰순경 공사상심사위원회 자료, 비위경찰관 조사결과보고, 2008년~2009년 전투경찰순경 관리 종합대책, 피해자의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신상면담카드, 내무생활관찰기록부, 전경신상관리부, 휴가증, 해양사건 사건전파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 보고서, 전의경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설문결과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7. 9. 3. 입대하여 같은 해 9. 28. 전투경찰순경으로 임명되었고, 2007. 10. 19. ○○해양경찰서 1007함에 전속되어 근무하다 2008. 4. 6. ○○파출소 ○○도출장소로 전출되어 근무하였다. 이후 2008. 12. 22. 103정에 전출되어 기관원으로 근무하다 2009. 3. 12. 20:00경 휴가 중 피진정인 6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같은 달 13. 00:30경 전북 군산시 ○○동 소재 자택에 귀가하여 피해자의 거실 내 개방된 창틀에 앉아 있다 중심을 잃고 떨어져 척추 8~9번 탈골 및 중추신병 이탈 등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을 입고 현재까지 군산의료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 중에 있다.

나. 피해자가 2007. 10. 19.부터 2008. 4. 6.까지 ○○해양경찰서 1007함

(1,000톤급)에서 취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선임전경대원인 피진정인 7, 피진정인 8(이○○)은 2008. 1월 말경부터 1007함이 내항에 입항하였을 때, 수차례에 걸쳐 함 내 전경 내부반에서 일석점호가 끝난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피해자 등 후임 전경대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선임고참 순으로 엎드려뻗쳐, 머리박기 등의 기합을 주었다. 2008. 2월 초경, 피진정인 8(이○○)은 1007함 후미 흡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와 참고인 1(백○○)의 머리와 가슴을 수회 폭행하고, 피진정인 7과 피진정인 8(이○○)은 피해자에게 함 내 취사장에서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며 물컵을 집어던지고 구둣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가 1007함 취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1007함 함장인 피진정인 1과 동 함선의 부함장인 피진정인 2, 동 함정의 전경관리관인 피진정인 3은 전경대원들의 구타 가혹행위 예방 및 복무를 관리하여야 할 1, 2, 3차에 걸친 지휘책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선임대원들의 후임대원들에 대한 함선 내 상습반복적인 집합 및 기합행위, 그리고 피해자 및 참고인 1(백○○)에 대한 피진정인 7 및 피진정인 8(이○○)의 구타 등 가혹행위를 발견하거나 인지하지 못하였다.

라. 피진정인 3은 2008. 1. 전경대원들이 애로사항을 적어 건의하는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부식과 관련하여 개선을 원하는 의견이 상급부서로 곧바로 제기되자 이를 자신에게 먼저 보고하지 않고 건의하였다는 이유로 전경대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불만을 토로하며 건의자에게 자진하여 성명을 밝힐 것을 강요하고, 일대일 면담 및 전경수첩을 수거하여 필적을 대조하는 등 해당 전경대원을 색출하려 하였다.

마. 피진정인 4는 ○○해양경찰서 1007함 근무당시 동 함정 식당에서 술을 먹고 피해자에게 가족관계를 거론하며 “너의 어머니는 니가 똑똑한 줄 알지? 이 멍청한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고, 피해자가 ○○도출장소에서 근무할 때에는 선

착장 등에서 수시로 피해자의 근무태도에 불만을 품고 “이 새끼야, 이 멍청한 새끼야!”라고 폭언을 하였다. 또한 2008. 9. 19. 17:00경에는 군산시 옥도면 ○○도에서 낚시를 하다 고립된 민간인을 S-31정(2톤급)을 운항해 구조하면서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구타하였다.

바. 피진정인 9는 피해자가 2008. 4. 6.부터 2008. 12. 21.까지 ○○도출장소에서 근무할 때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도 선착장에서 그리고 경비 전화통화 시 수시로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며 폭언을 하고 위협하였다.

사. 피해자가 2008. 12. 22.부터 2009. 3. 12. 사고 당일까지 103정(100톤급)에서 근무할 당시 피진정인 5(윤○○ 등 근무 직원들)는 출항을 할 때 수시로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식당에서 술을 먹고 고스톱 등 오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라면 등 야식을 준비하도록 하고, 또한 평상 시 기관정비 보조업무, 함정 입항 시 내항 및 외항 당직근무, 정박작업 이외에 월보작성, 입출항 등 공문서 작성 등 행정서무보조, 취사업무 지원을 비롯해 직원들의 사적 심부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아. 피진정인 6(김○○)은 ○○해양경찰서 103정 근무 시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휴가기간 중 만나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3. 12. 20:00경 군산대학교 인근 ‘○빠’등 업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늦은 군 입대 등 근무 시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향후 해양경찰직원 입사를 희망하는 등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계속되는 피해자의 애로사항 토로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4~5회 폭행하였다. 이에 상심한 피해자가 익일 00:30경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귀가하였으며, 피해자가 폭행당하였다는 사실을 안 진정인은 ○○해양경찰서 상황실에 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후 경찰관이 폭행사실에 대한 사실조사를 위해 피해자의 자택을 방문하자 4층 자택의 개방된 창틀에 기대어 앉아 있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외부로 발설하였다는 압박감과 이로 인하여 향후 군 복무의 애로 및 피해자가 원하는 해양경찰관 입사가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등으로 인한 과중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여 중심을 잃고 4층 자택에서 추락하여 척추가 손상되는 상처를 입었다.

자. 진정인은 2009. 4. 22. 피진정인 6을 폭행상해혐의로 고소하였고, 이를 접수받은 전주지방검찰청 ○○지청은 피진정인 6에 대하여 2009. 7. 7. 불기소 처분(2009형제○○○○)하였고, ○○해양경찰서는 피진정인 6에 대하여 2009. 4. 22.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차. 2009. 4. 17. 개최된 전투경찰순경 전·공사상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자가 함정근무라는 특수한 환경에 의한 스트레스 및 향후 자신의 군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하여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고, 이는 군복무에 기인한 발병 사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공상’으로 의결하여 해양경찰청에 상신하였다. 그러나 해양경찰청은 피해자의 최초 부상 시기가 휴가기간 중(’09. 3. 9. ~ 3. 13.)인 2009. 3. 12. 20:00경으로 공무와 관계없이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며 재심의할 것을 하달함에 따라 2009. 5. 4. 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 결국 ‘사상’으로 결정되었다.

카.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7조에 의하면, “잔·의경에 대한 일과시간 후 감독책임 중 당직계통에서의 책임은 당직근무시간에 한하며, 기타 시간은 소속 계장과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수립한 ‘2008년~2009년 잔·의경 관리개선 종합대책’에 의하면, 함정의 경우, 전경대원 관리 1차 감독자는 함정 내 전경관리관이, 2차 감독자는 부함장이, 3차 감독자는 함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타 가혹

행위 가해자는 사안의 경중을 막론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하고, 전경 상호간 비공식적인 위계질서를 불허하며, 구타 피해자의 경우에는 특별보호 대상자로 선정 관리하도록 배려하고, 자체사고 ZERO화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고, 그 결과 지난 3년간 구타사고가 미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 5. 27. ○○해양경찰서 전경대원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기명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근무시간의 휴식시간을 자유롭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경대원 6명(9.8%)이 답하였으며, 상급대원 및 직원으로부터 빨래, 청소, 커피타기, 구두닦기 등 개인적인 일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10명(16.3%)이 답하였다. 또한 폭언 등 인격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9명(14.7%)이 답하였으며, 특히 4명(6.5%)은 기합 및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77조(구타 및 가혹행위근절), 「전경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 제3조(정의) 및 제5조(임무),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등의 규정은 전경대원들의 사적제제에 의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경대원 상호 간의 구타, 폭행 등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경찰공무원의 입회 없이 전경간의 부대지휘 및 훈련, 교양, 감독행위를 금지하며, 경찰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 및 방조 금지와 지휘감독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진정인 7, 8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고, 피진정인 4는 폭언 및 구타, 피진정인 9는 폭언을 하였다. 피진정인 4, 7, 8, 9는 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함정 내 생활이라는 해양경찰서 근무 전경대원들의 특수한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 피해자 및 참고인 1, 2의 진술 내용, 피진정인 7의 가혹행위에 대한 일부 인정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기명 설문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 4, 7, 8, 9의 욕설, 구타,

가혹행위는 사실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77조, 「전경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규칙」 제3조 및 제5조,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휴식권 및 신체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7, 8, 9는 이미 전역하여 행정상의 책임을 묻기가 곤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다만, 현직에 복무하고 있는 피진정인 4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인권침해의 재발방지 및 주의환기를 위하여 경고 조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6에 대하여는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전경대원 복무관리 감독 책임 등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한 16개월 동안 피진정인들에 의한 내무반 집합행위 및 기합행위, 선임대원들의 폭언 및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은밀하게 관행적으로 지속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참고인 1(백○○)이 복무 및 내무생활 부적응의 상당한 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07합의 함장이하 1, 2차 감독자들은 이를 방치하거나 인지하지 못하였다. 또한 103정의 경우에도 피진정인 5(윤○○ 등 근무 직원들)는 피해자에게 기관원업무 등 정당한 업무이외의 과중한 업무부담 및 사적심부름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관행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들의 가혹행위 등이 각급 지휘책임자들에

의하여 소원수리 및 신상면담 등을 통해 발견되거나 해소되지 아니하고 반복 지속된 이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가 초임대원으로 근무할 때인 1007함 근무 당시 1차 감독자인 피진정인 3이 피해자 등 전경대원들이 자신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 외부에 소원수리를 적어 내었다는 이유로 이를 적발하고자 일대일 면담, 필적대조라는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애로사항을 표출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조성한 점, 둘째, 함정 내 전경생활 관리를 함에 있어 전경내무반 및 식당이 함정 하단에 위치에 있고, 격방분리 및 방음장치가 되어 있는 점에서 특히 일석점호가 끝난 야간시간대의 경우에는 전경관리관 및 상황근무자의 밀착관리가 필요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점, 셋째, 103정(100톤 급)과 같은 소형 함정 근무의 경우, 소수의 인원이 밀착하여 장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특수한 근무 여건상 각 개인의 사생활의 보장 및 휴식 및 숙면시간의 보장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바, 함정 내 전체의 근무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한 피해자로서는 애로사항을 지휘계통인 피진정인 5(윤○○) 등 직원들에게 말하거나 의사를 표출할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하였던 점, 넷째, ○○해양경찰서의 ‘2008년~2009년 잔·의경 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의하면, 관할 경찰서 내에서 전경대원 구타 가혹행위 사건이 단 한 건도 발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본 피해자의 사건 외에도 참고인 1(백○○)의 경우 구타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면담 및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무기명 설문조사 당시 공개되고 비좁은 1007함 식당 내에서 설문조사가 실시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해양경찰서 소속 상당한 수의 전경대원들이 복무 중 선임대원 및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처우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휘 및 보고계통을 통해 ○○해양경찰서장 및 상부기관에 보고되어 처리되지 않고, 함정 및 근무지 내에서 축소 처리하거나 은밀히 자체 해결하려 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해양경찰서 함정 근무당시 잔·의경 복무관리 및 구타·가혹행위 등 부당행위의 예방 주무담당자인 피진정인 1, 3, 5는 당시 잔·의경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등 소관업무 엄정히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및 부당한 처우 등 애로사항을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1, 3 5의 행위는 전·의경의 구타·가혹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명령인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77조(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전·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전·의경 설문 및 면담시행 시 보다 내밀하게 자신의 애로사항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시 피해자·목격자·감독자들의 신고를 의무화하여 사건 축소·은폐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시스템을 개선·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지휘 감독책임자인 1007함 함장인 피진정인 1 및 103정 정장인 피진정인 5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1007함 전경관리관 피진정인 3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피진정인들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언, 구타 등 가혹행위 및 부적절한 대우 등을 받아왔으나 함정 등 부대생활상의 관행적인 폐쇄성으로 인해 자신의 스트레스나 고충을 표출하거나 해소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처함으로써 극도의 정신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한 상태에서 피해자는 실족으로 인해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을 입고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정신적 우울증도 앓고 있는 상태이다. 비록 피해자가 휴가 중에 증상을 입은 것이나 이는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 기인된 것이라기보다는 상당부분 ○○해양경찰서 복무 중 업무수행을 하면서 받은 구타, 폭행, 가혹행위 및 부당한 처우,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곤란한 부당한 부대 운영에 따른 심신상의 압박감과 스트레스의 연속선상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137조의 규정에 의거 조속히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 재심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건 진정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해양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5(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피진정인 3, 4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할 것,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조속히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의 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전경 대원들에 대한 설문 및 면담시행 시 보다 내밀하게 자신의 애로사항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하고, 구타·가혹행위 발생 시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는 등 전경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개선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며, 피진정인 6에 대한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2

2010. 4. 12.자 10진인152결정 [전경 폭행 및 은폐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6, 9, 12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 4, 5, 7, 8, 10, 11에 대해 주의조치하며, 소속 전·의경대원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전·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시스템을 점점·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경찰서장은 전·의경 복무관리 및 구타·가혹행위 등 부당행위의 예방 등 전·의경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등 소관업무를 엄정히 수행해야 할 소정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고,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77조(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77조

【진 정 인】 이○○

【피 해 자】 김○○

- 【피진정인】**
1. 전○○
 2. 김○○
 3. 김 ○
 4. 정○○
 5. 장○○
 6. 손○○
 7. 장○○
 8. 전○○
 9. 박○○

10. 김○○

11. 반○○

12. 천○○

- 【주 문】 1.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6, 9, 12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 4, 5, 7, 8, 10, 11에 대해 주의조치하며, 소속 잔의경대원들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잔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시스템을 점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중 폭행 등 가혹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3. 진정요지 중 사건 은폐축소 행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2010. 1. 4. ○○경찰서 전입 직후부터 선임 전경대원인 피진정인 1, 2, 3에게 폭행, 성희롱, 가혹행위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다가, 같은 달 7. 피진정인 3에게 깍지 끼고 엎드려뺨쳐 상태에서 폭행을 당해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동 경찰서 전경관리담당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폭행·가혹행위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가족에게 늦게 알리는 등 은폐하려고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신속한 진상조사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폭행, 성희롱 등 가혹행위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1은 선임전경대원으로, 피해자에게 2009. 12. 10. ○○경찰서

전입 당시부터 평소 손가락 깍지를 끼고 생활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같은 달 3. 내무반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서 직원들의 차량번호를 6일 동안 70%를 외우고 13일까지는 100% 외우라고 강요하였고 같은 달 15. 02:00 ~ 04:00 야간 입초 근무 때 차량번호를 다 외웠는지를 검사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다 외우지 못하자 민원실로 데리고 가서 왼쪽 뺨을 5대 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과 복부를 15 ~ 20대 정도 때리고 발로 다리를 2 ~ 3회 걷어찼다. 12월 중순경에는 타격대 임무와 장비, 타격대장들 핸드폰 번호를 외우게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다 외우지 못하자 내무반에서 피해자의 뺨을 2 ~ 3회 때리고 엎드려뺨치게 한 뒤 복부를 발로 5~8회, 왼쪽 허벅지를 3회 구타하였다.

나) 2009. 12. 중순경 내무반에서 일석점호가 끝난 22:05 ~ 22:10경 피해자의 잠자리 옆으로 와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20분가량 성희롱을 하였고, 소리를 내려고 하면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계속 협박을 하였다. 같은 시기 피해자가 식사시간 때 자신을 깨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6 ~ 8회 구타하였고, 특히 2010. 1. 5. 07:40경에는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지 않아 타격대장 박○○에게 혼이 났다며 피해자의 뺨과 허벅지를 때렸다.

다) 2009. 12. 13. 피해자의 화장품과 샴푸, 폼 클린징을 임의로 가져가서 쓰고, 같은 달 15.에는 피해자의 돈 8만원을 빼앗아 갔으며, 같은 시기 피해자에게 온 편지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져가서 읽고, 불로 태워 훼손하였다. 같은 달 20.경에는 피해자에게 사이월드 홈페이지를 로그인 시키게 한 후 피해자의 홈페이지에 있는 비밀 글이나 방명록 등을 보았다.

라) 2009. 12. 중순경 일을 잘 못한다며 피해자에게 “나는 쓰레기입니다.”라고 말하도록 강요하고, 같은 달 20일에는 내무반에서 피해자에게 “저희 아버지는 개새끼(또는 ‘씨발놈’)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씨발년입니다.”라고 말하도록 3~5회 시켰다.

마) 2010. 1. 4. 경찰서 구내 제설작업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눈을 치우는 속도가 느리다며 눈삽으로 1 ~ 2회씩 5회 정도 때리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피우도록 강요하였다. 같은 달 5. 02:00경 내무반에서 피해자가 깍지를 끼지 않고 잠을 잔다는 이유로 양반자세로 15 ~ 20분 앉게 하고, 피해자가 앉아 있다가 졸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경찰서 내 어린이놀이터에 데리고 가서는 위에 5 ~ 10분 정도 누워있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눈을 올려놓았다. 같은 날 03:00경 피진정인 2와 경찰서 초병근무 중인 입초실에 찾아와 종이컵을 주며 경찰서 밖 ○○리에 있는 약수 물을 떠 올 것을 강요하였고, 같은 날 03:50경 입초실 앞 화단 및 어린이놀이터에서 방한복 상의를 벗도록 한 후, 20여 분 간 눈 위를 앞뒤로 뒹굴게 하였다. 같은 날 04:15경 피해자를 경찰서 민원실로 끌고 가서 다리를 책상 위에 올리도록 한 상태에서 엎드려뺨쳐를 시키고,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며 키워서 갈이를 재어보자고 하는 등 10 ~ 15분간 성희롱을 하였다.

바) 이외에도 2009. 12. 초순부터 2010. 1월 초순경까지 평소 피해자가 목소리가 작고 고참이 부르면 관동성명을 말하지 않고, 근무복세탁 등 사적심부름을 잘하지 않으며, 식사시간에 밥을 남기고 늦게 먹거나, 근무 중 동작이 느리고 일하는 속도가 늦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내무반, 식당 위 복지관, 쓰레기 분리장 쪽의 외진 곳, 테니스장 옆 담배피우는 곳 등에서 엎드려뺨쳐를 시키고,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피진정인 2의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2는 선임 전경대원으로, 2009. 12. 5. 06:30경 피해자가 입초대 청소를 느리게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분리장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찼다. 같은 달 중순경에는 일하는 속도가 느리고, 시킨 일을 잘 하지 못하고, 대답을 잘 하지 않으며, 폭행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입초대, 내무반, 복지관 등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복부를 주먹으로 때렸다.

나) 2009. 12. 중순경 내무반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23:00쯤 깨워 자신의 옆에 눕게 하고 허리를 약간 세운 자세로 머리를 들게 한 후 버티게 하며 잠을 자지 못하도록 기합을 5회 정도 주었고, 2009. 12. 20. 경찰서 내 약간 얼어 있는 연못에 들어가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자 분리장 외진 곳으로 데리고 가 발로 복부를 2 ~ 3회 때렸다. 같은 날 기동화 신발장 앞에서 담배연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내뿜고 담배냄새를 맡아보라고 하며 자신이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의 코에 가져다 대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다) 2009. 12. 중순경 02:00 ~ 04:00 입초대 야간근무 시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밖에 나가서 근무를 서도록 하고, 10분 뒤 날씨가 추워 얼어있는 대리석에 피해자의 양손을 대도록 강요한 후, 발로 밟고 곧이어 민원실로 데리고 가서 엎드려뺨치게 한 후 발로 복부를 3 ~ 5회 걷어찼다.

3) 피진정인 3의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하여

가) 피진정인 3은 선임 전경대원으로, 2009. 12. 말경 03:00~05:00경 야간 입초근무 시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입초실에서 뺨을 때리고, 2010. 1. 초경에는 피해자에게 “동물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라고 비하하였다. 2010. 1. 1.에는 피해자가 시키는 일을 다 하지 않고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무반에서 뺨을 1 ~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3 ~ 4회 구타를 하였다.

나) 2010. 1. 7. 17:00~18:00 근무 시 피해자가 초코파이를 먹고, 근무가 끝난 뒤 직원 앞으로 온 소포를 민원실에 맡겼다는 이유로, 같은 날 19:00경 내무반에서 깍지를 끼고 엎드려뺨치게 한 후 복부를 발로 4 ~ 5회 걷어차고, 넘어지면 주먹으로 등을 7 ~ 10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3 ~ 5회 구타하여 갈비뼈 2개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어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하는 상해를 입었다.

다) 2010. 1. 7. 폭행을 당한 후, 아팠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같은 날 23:00 ~ 24:00경 입초 근무를 나갔는데, 23:20경 순찰 중이던 상황실장이 입초대에 기대어 아파하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타격대장을 불러와 내무반에 가서 몸 상태를 확인한 뒤 병원에 후송하였다. 당시 고참들의 보복이 두려워 전경관리관 등 직원들에게는 눈길에 미끄러져 다쳤다고 말하였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

가) 2009. 11. 말경부터 2009. 12. 26.까지 ○○경찰서 지령실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전입 시부터 근무시간에 줄고, 정문 근무 중에 과자를 먹고, 군기가 빠져 있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같은 해 12월 중순경 내무반에서 “너 이 새끼야! 군대 잘 다녀오겠다고 한 놈이 부모님께 부끄럽지 않느냐?”등의 욕을 많이 한 사실은 있으나 구타, 가혹행위, 성희롱 등을 한 사실은 없다

나) 2009. 1. 5. 새벽 정문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장난삼아 ○○계곡 물이 시원하고 맛이 있으니 물을 떠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이를 곧이듣고 피해자가 계곡물을 뜨러 밖으로 나간 것을 알고 쫓아가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물 떠오라고 했는데 왜 거기까지 갔냐? 정신 나갔냐?”라고 하고 데리고 온 적이 있다. 다른 선임대원들이 내무반 등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것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은 없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

2009. 12. 14.부터 같은 달 22. 사이 피해자가 경찰서 담장을 넘어 먹을 것을 먹고 들어오다가 직원에게 발각된 사건이 있는 직후, 복지관 2층에서 피해

자에게 물어 보았더니 이를 부인하여, 이진 아니다 싶어 혼계차원에서 깍지를 끼고 엎드려뺨쳐를 5분간 하도록 한 사실이 있으나 이외에 피해자에 대해 기합을 주거나 구타 가혹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3) 피진정인 3의 주장요지

가) 2009. 12. 2. 전입해 온 피해자는 입초근무를 하었는데, 후임대원임에도 평소 근무시간 중 서서 기대어 졸고, 근무 중에 민원인이나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간식을 주면 받아먹고, 생활관 근처 담을 넘어 무단으로 간식을 사러가며, 대답소리가 작은 등 근무태도가 좋지 않아 말로 혼계하고 타일렀으나 별다른 태도 변화가 없었다.

나) 2010. 1. 5.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입초근무를 할 때, 피진정인 1과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04:20경 피해자가 근무 중에 조니가 피진정인 1이 서면 쪽 ‘○○이’의 깨끗한 물이 먹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를 피해자가 잘못 알아듣고 물을 뜨러 서면 쪽으로 걸어 나갔고, 5분 후 피진정인 1이 걱정된다고 뒤 따라 나갔다가 같은 날 04:55경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 온 적이 있다.

다) 2010. 1. 6. 오후 내무반에서 피해자에게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뺨을 건들며 혼계한 적이 있고, 같은 달 1. 7. 피해자가 정문 근무 시 직원이 건네 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하여 이를 물어볼 참에, 같은 날 18:00경 내무반에서 내무반장인 박○○ 상경이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엎드려뺨쳐를 하라고 하는데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옆에 있다가 “쳐 박어.”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깍지를 끼고 엎드려뺨쳐를 하였다. 피해자가 곧이어 깍지를 낀 채 무릎을 꿇고 요령을 피워 “꼭 바로 해.”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요령을 피워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복무를 발로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등을 5~6회 때린 사실이 있으나, 이외에 피해자에게 구타를 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다른 선임대원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을 본 적은 없다.

4) 피진정인 4의 주장요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정○○)

○○경찰서 전의경 복무관리에 대한 제3차 지휘 책임자로서, 112타격대장 이하 전의경 복무관리를 통해 자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무생활을 가족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등 나름의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이 번과 같이 선임대원들이 피해자에 대해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112타격대장은 근무 시 동행동숙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각종 점호 시 신체검사 실시로 대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당직근무자 또한 순찰 근무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교육하겠다. 또한 대원들이 출입이 잦고 구타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정문 및 주차장 등에 CCTV를 설치·보완하는 등 전경대원관리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

5) 피진정인 5의 주장요지(○○경찰서 정보보안과 경비작전계장 장○○)

○○경찰서 전의경의 복무관리에 대한 2차 책임자로서 신입대원 전입 시 신병 인수, 보직배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대원들을 면담하여 애로사항 등 고충을 청취하는 등의 업무를 추진해 왔으나 세심하게 관찰하지 못한데 대하여 아쉬움이 많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

6) 피진정인 6의 주장요지(○○경찰서 정보보안과 전경관리담당]○○)

평소 전경대원이 전입하는 경우, 밀착하여 2주간 전경담당관이 면담하고, 구타 등 가혹행위 여부 등 건의사항을 파악하며, 매월 1회 주간은 정보보안과장이 전체 집체정훈교육을 통해 구타 가혹행위 예방교육을 하고, 교육 시간에 소원수리를 받고 있다. 또한 매일 112타격대장이 동행동숙하며 점호 시 교육을 실시하고, 내무반에 구타 가혹행위 피해신고 통로표를 부착해 놓고, 전입 시 본인의 비밀명함을 제작하여 주었다. 점호 시 경직성을 풀기 위해 TV시청 점호, 칭찬하기 점호 등 테마점호를 실시하고, 인터넷카페 및 울진청소년상담소에 의뢰하여 신입대원 심리검사를 의뢰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피해자가 체력이 약하고 성격이 내성적이며, 동작이 완만해 보이는 등 부대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 보여

대원들에게 친동생처럼 잘 해 줄 것을 교육하고 신경을 써 왔으나 피해자에 대한 선임대원들이 기합을 주고,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사전에 발견하거나 알지 못하였다. 2010. 1. 7. 상황실장 및 타격대장을 통해 피해자가 입초 근무 스스로 미끄러져 다쳤다고 하고 피해자도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가 미끄러져 다친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병원에서 폭행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말하였고, 가족들도 이에 대해 말을 하지 않다가 같은 달 1. 12. 09:00경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신문고에 글을 올려서 뒤늦게 폭행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7) 피진정인 7, 8, 9의 주장요지(2010. 1. 4. 각 상황실장 장○○, 상황부실장 전○○, 112타격대장 박○○)

2010. 1. 4. 18: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상황근무를 하였는데, 상황근무 중, 순찰 1호함이 정문에, 3호함이 내무반에 있었으나 당시 순찰 시 피진정인 1, 3이 야간시간대에 피해자에게 근무지를 이탈하여 물을 떠 오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당시 순찰근무 중, 정문 근무자가 누구인지, 근무일지 상에 해당자에 맞게 근무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였고, 입초대에 순찰함이 있어 입초사무실까지 살펴보기 못하였으며, 내무반의 경우에는 순찰함이 내무반 밖에 있어 내무반 안에 불침번을 제대로 서는지, 인원이 다 있는지 점검하지 못하였다. 또한 타격대장이 내무반에서 동행동숙을 할 때에도 24:00경 이후에는 취침을 하여 심야 시간대에 사건관련 전경대원들의 불필요하게 내무반을 이탈하여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거나 제지하지 못하였다. 향후에는 순찰 및 타격대장 업무 시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다.

8) 피진정인 10, 11, 12의 주장요지(2010. 1. 7. 각 상황실장 김○○, 상황부실장 반○○, 112타격대장 천○○)

2010. 1. 7. 야간근무 시 잔의경 구타 사고예방을 위한 각 1, 2, 3차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당일 23:35경 정문 순찰 근무 중 입초실에 입초근무자인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위를 확인해 본 바,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하여 ○○의료원으로 긴급 후송 조치한 사실이 있는데, 위 병원에서 갈비뼈가 골절되어 장기에 출혈이 있다고 하여 전경담당관인 피진정인 6에게 인계하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2010. 1. 7. 19:00경 당시 내무반에서 구타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황근무 중 19:40경 뒤늦게 내무반에 내려갔고, 일석점호를 21:30경하였으나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가 내무반에 있을 때도 아픈 기색을 보이지 않아 이를 사전에 인지 또는 예방하지 못하였고, 울진의료원 응급실에서 피해자에게 맞은 것이 아니냐고 물어 보았으나 피해자가 고참대원들의 보복을 우려해 계속 입초실에서 나오다가 발이 꼬여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말을 믿고 있다가 같은 달 12. 피해자의 가족이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에서야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 이를 고의로 은폐하려한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일경 이○○, 일경 조○○(피해자의 동료 전경대원)

피진정인 1은 2009. 12월 중순부터 ○○파출소로 전출을 가기 전까지 거의 매일 아침시간 전경 내무반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근무시간 중에 조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손을 깁지 끼고 엎드리게 하거나 양손을 벌리고 서 있게 하였다.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요령을 피우면 손바닥으로 머리를 구타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툭툭’밀면서 일어나라고 하였다. 피진정인 2는 2009. 12. 20. 14:00경 전경 복지관 2층에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양손을 깁지 끼고 엎드려뺨쳐를 시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폭행하였다. 피진정인 3은 주로 점심시간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기합을 수시로 주었으며, 2010. 1. 7. 19:00경에는 전경 내무반에서 피해자가 정문 근무시간 중 과자를 먹고 배달되어 온 소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엎드리게 한 다음 발로 6 ~ 8회 구타하였다.

2) 일경 김○○ 등 다수(피해자의 동료 전경대원)

2010. 1. 7. 19:00경 피해자가 정문 근무 중 직원이 건네 준 초코파이를 먹다가 상경 이종훈이 외박 복귀 중 이를 목격하고, 근무를 마치고 들어온 피해자에게 문제제기를 하였다. 곧이어 피진정인 3이 피해자에게 왜 초코파이를 근무 중에 먹었는지를 따져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그냥 먹고 싶어 먹었습니다.”라고 대답하니 피해자에게 주먹을 쥐고 엎드려뺨쳐를 시켰다. 이후 피진정인 3이 “개새끼 씨발놈아, 대답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5 ~ 6회 차고, 팔꿈치로 진정인의 등을 수회 찍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의 자필진술서, 피진정인들에 대한 문답서 및 진술서, 참고인들에 대한 문답서 및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피진정인 1, 2, 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인지보고 등 수사자료 및 감찰조사자료, 치안상황보고, 치안상황일지, 순찰표, 점검기록부, 잔의경 내무반 불 침범 근무일지, 정문근무일지, 2009년 잔의경 관리개선 종합대책 하달공문, 전투경찰순경인사기록표, 피해자의 대원신상관리부, 신입대원 일일평가면담서 등의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9. 10. 12. 입대하여 같은 해 11. 20. 전투경찰순경으로 임명되고, 같은 해 12. 2. ○○경찰서에 전속되어 112타격대원으로 근무하다 선임대원인 피진정인 1, 2, 3으로부터 근무 및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전경 내무반, 복기관 등에서 수시로 엎드려뺨쳐 등 기합과 폭행·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또한 2010. 1. 7. 19:00경에는 전경 내무반에서 피진정인 3으로부터 정문근무 시 과자를 먹고 소포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합과 폭행을 당하였다. 같은 날 23:25경 정문 입초근무 중 피진정인 10이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의료원 및 ○○○○병원에 후송 조치하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같은 달 1. 11. ○○기독병원으로 후송되었고 현재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

는 복강내출혈, 갈비뼈골절, 비장파열 등의 상해에 대한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근무 중에 있다.

나. ○○경찰서는 2010. 1. 7. 발생한 피해자 폭행사고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건발생 당시 위 가해 선임대원들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발이 꼬여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진술함에 따라 피해자를 병원에 긴급 후송하는 등 단순 사고사건으로 처리하였고, 2010. 1. 11. 피해자의 가족들이 ○○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등 언론에 구타 폭행사실을 공개하자, 곧바로 감찰조사를 통해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폭행, 강제추행, 공갈 등의 혐의를 인지하고 직무 고발조치하였고 같은 달 1. 14. 형사입건하였다.

다. 진정인은 2010. 1. 12. 국가인권위원회와 ○○지방검찰청에 동시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동 진정사건을 이첩 받은 ○○지방검찰청 ○○지청은 같은 달 18. 피진정인 1, 2, 3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 동일인들이 경찰수사 시 폭행사실을 시인하였던 것과 달리 관련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경찰서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한편, 거짓말탐지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

라. ○○경찰서는 전의경들의 복지, 구타 사고예방, 교육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감독업무와 관련된 1차 책임자로 피진정인 6을 전경관리관으로, 2차 책임자로 피진정인 5를 경비작전계장으로, 3차 책임자로 피진정인 4를 정보보안과장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야간에는 112타격대장을 1차 전의경 관리책임자로 두고 전경내무반에서 동행 동숙을 하도록 하고, 상황부실장과 상황실장을 2차 및 3차 전의경 관리책임자로 두고 순찰근무 등을 통해 구타 사고예방을 등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2009. 12. 2. 전입하여 피진정인 3에 의해 2010. 1. 7. 폭행을 당해 병원에 후송되기까지 상습 반복적으로 전경내무반 등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관리책임자들은 이를 사전에 알거나 예방하지 못하였다.

마. 피진정인 7, 8, 9는 2010. 1. 4. 18: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각 상황실장, 상황부실장, 112타격대장으로 전·의경 구타 사고예방을 위한 각 1, 2, 3차 지휘감독책임자로 임명되었다. 피진정인 9는 전경내무반에서 동행 동숙하며 전경대원들의 야간시간대에 불필요한 출입 시, 불침번 등 근무상황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5. 03:00경부터 06:00경까지 피진정인 1, 3 등의 야간출입 및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지 못하였다. 피진정인 7, 8은 상황근무 중 1호함이 정문에, 3호함이 내무반에 있는 관계로 당시 순찰 시 정문근무 및 내무반 근무 상황을 명확히 점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 3이 야간 시간대에 피해자에게 근무지를 이탈하여 물을 떠 오도록 강요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거나 예방하지 못하였다.

바. 피진정인 10, 11, 12는 2010. 1. 7. 18:00경부터 익일 09:00경까지 각 상황실장, 상황부실장, 112타격대장으로 전·의경 구타 사고예방을 위한 각 1, 2, 3차 지휘감독책임자로 임명되었다. 피진정인 12는 같은 날 18:00경까지 전경내무반에 입실하여 동행동숙을 하며 전경대원들의 복무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 40분이 경과한 19:40경 전경내무반에 입실하여 피진정인 3의 폭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다. 피진정인 10은 같은 날 23:35경 정문 순찰 근무 중 입초실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조치 외에 피해자의 폭행피해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진료를 받았던 울진의료원의 담당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판단

가. 폭행·가혹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1, 2, 3은 피해자의 피해사실 중 일부사실만을 인정하고 있지만, 참고

인들의 진술 및 ○○경찰서의 감찰기록 및 수사기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인정사실과 같이 신입적응기간을 마치고 전경내무생활 및 근무생활이 본격 개시되는 12월 중순 경부터 피해자의 근무 및 생활태도에 불만을 품고, 전경내무반, 복지관 등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깍지를 끼고 엎드려뺨쳐를 시키고, 피해자의 머리, 복부, 가슴, 허벅지 등을 손과 발로 차거나 치는 등으로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현재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진정 원인 사실과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건 은폐축소행위에 대하여

전의경 지휘감독 업무관련 피진정인들이 피해자가 선임전경대원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당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진정 부분에 대하여 적극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폭행을 당한 후 최초로 진료를 받았던 울진의료원의 담당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 6, 10, 11, 12가 고의로 사건을 은폐축소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진정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전경대원 복무 관리·감독 책임 등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2009. 12. 2. 전입 후 2010. 1. 7.까지 약 한 달간 지속적인 구타 폭행 등 가혹행위를 반복적으로 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대원 복무 관리·감독 책임자들은 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야간시간대 1차 책임자인 기동타격대장들이 전경내무반의 동행동숙 등 근무시간 및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은 점, 둘째, 일석 점호 시 구타 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전경대원 교육 및 신체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 셋째, 불침번 또는 근무교대 시 근무상황 및 인원점점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 넷째, 정문 입초대 및 전경내무반 밖에 순찰함이 밖에 위치해 있었던 관계로 내부까지 들어가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인 순찰행위에 그친 점, 다섯째, 전경근무가 집중되는 정문 입초대 및 전경 생활관 입구(주차장) 등에 전경대원들의 사적행동 및 부당한 행위를 예방하는 CCTV 등의 시스템 구축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경찰서 근무당시 전의경 복무관리 및 구타가혹행위 등 부당행위의 예방 1, 2, 3차 지휘감독책임자인 피진정인 4, 5, 6과 2010. 1. 5. 및 같은 달 1. 7. 야간시간대에 구타 등 가혹행위 예방 1, 2, 3차 지휘감독책임자인 피진정인 7, 8, 9, 10, 11, 12는 각 전의경 운용에 대한 관리감독 등 소관업무를 엄정히 수행해야 할 소정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및 부당한 처우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77조(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6, 9, 12에게는 경고 조치를, 피진정인 4, 5, 7, 8, 10, 11에게는 주의조치를, 소속 전의경대원들에게는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전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시스템을 점검·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피진정인 1, 2, 3의 구타 등 가혹행위 진정부분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각하하며, 피진정인들의 사건 은폐·축소행위에 대한

진정부분은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3

**2011. 9. 19.자 11직권300, 11직권500, 11직권600, 11
진정800(병합) 결정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및 사망사
건 직권조사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

【1】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및 관련 제도·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및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고 현행 전·의경 제도는 폐지할 것을 권고

【2】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현행 전·의경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경찰청의 경력(警力)운용 계획, 직업경찰관 인력증원, 예산반영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해자 등 후임대원들이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하였고, 이러한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였음에도 중대장 및 지휘요원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방조·축소 처리하였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관행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2】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당국, 지휘관, 전·의경 관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 정책집행이 되어야 하며, 조직문화를 바꾸고, 인권교육 정례화, 신고자 비밀보장, 피해자에 대한 이중피해 예방을 위한 분리조치, 보직변경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

【3】 전·의경제도 폐지 시 경찰력 축소로 치안에 불안요인이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필요최소한의 경찰력 증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전·의경 제도는 관련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찰청과 국방부도 전·의경제도 폐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여 책임적인 법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전·의경 당사자 및 국민의 기본권

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 【주 문】 1.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및 관련 제도·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정비하고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
 - 나. 전·의경 대원을 포함하여 지휘요원에 대한 정례적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특히 전·의경의 인권보호 및 합리적 부대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를 정비할 것
 - 다. 전·의경 대원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 등 신상관리를 강화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고자 및 피해자가 보복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직변경, 분리조치 등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을 마련할 것
 - 라. 전·의경 복무 중 사망사고 발생 시 객관적인 조사 및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점 해소를 위하여 유가족대표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운영할 것
 - 마. 전·의경 대원들의 복무부적응부적합 등 구타 및 가혹행위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소원수리, 설문, 과학적 심리인성 검사 등 다양한 접근방안을 활성화하고, 부대원들이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심리전문가를 채용·배치할 것
 - 바. 전·의경 직권면직제도와 관련하여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30조제2항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위 규칙인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23조제1항의 규정을 일관성 있게 개선할 것

- 사. 전·의경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관행 개선을 위하여,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대정밀진단을 실시할 것
- 아. 궁극적으로,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및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고 현행 전의경 제도는 폐지할 것
2. 국방부장관에게, 현행 전·의경 제도를 폐지함에 있어, 경찰청의 경력(警力)운용 계획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것을 권고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의경 제도 폐지추진에 따른 치안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경찰관 인력증원을 적극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의경제도 폐지에 따라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 및 국민에게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반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5.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의 구타가혹행위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I. 직권조사와 제도개선 권고 배경

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는 2007년 실태조사, 2008년 직권조사를 통해 전의경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하여 정책 권고를 하였고, 이후 경찰청에서 자체적으로 인권친화적 근무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의경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이러한 악습적 행위가 조직의 안정과 군기유지라는 이유로, 지휘책임자

들에 의해 묵인·방조 또는 은폐·축소 의혹이 있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나. 최근 전·의경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의 정도가 크고, 그 범위가 넓으며, 전·의경 인권침해의 예방적 가치 및 사회적 관심이 높다고 보임에 따라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전·의경 관련 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11. 1. 10.과 같은 달 27.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조사결과, 2007년 및 2008년 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개선 권고’를 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전·의경 관리 개선책 및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이 철저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전·의경 관리와 관련된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구타·가혹행위와 관련된 전·의경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식 전환을 위한 인권교육,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예방대책 시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피해자 보호 및 신입대원 등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전문상담 강화 등을 비롯한 현행 전·의경 관리와 관련된 관행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권고 외에도 전·의경의 인권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II.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별 조사결과 및 판단

1. ○○지방경찰청 의경 백혈병 사망사건(11직권300, 11진정 800 병합)

가. 사건개요

- 1) 관련부대 : ○○지방경찰청 교통경비과 기동0중대
- 2) 진 정 인 : 박○○
- 3) 피 해 자 : 故박○○
- 4) 피진정인

가) ○○지방경찰청 교통경비과 기동0중대 중대장 김○○, 같은 전임중대장 전○○, 이하 같은 중대 0소대장 윤○○, 같은 전임소대장 이○○, 0소대 부관 이○○, 같은 전임부관 백○○(이상 지휘책임자 6명)

나) 같은 중대 의경 김○○, 김○○, 윤○○, 이○○, 이○○, 이○○, 정○○, 조○○, 최○○, 최○○, 홍○○(이상 가해자 11명)

5) 진정 및 사건요지

가) ○○지방경찰청 교통경비과 기동0중대 소속 故박○○ 의경(이하 ‘피해자’라 함)은 2009. 4. 2. 육군훈련소에 입대한 후, 같은 해 5. 7. ○○○○기동대 0중대에 배치되었는데, 선임병들은 배치된 첫날 피해자가 경례법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2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구타하고, 경찰버스로 데려가 발로 짓밟고, 피해자를 보일러실에 하루 종일 가둬두거나, 물을 못 마시게 했고, 방패로 이마를 내려치고 밥을 늦게 먹으면 구타하였다.

나) 위와 같은 가혹행위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2009. 12. 21. ○○대병원에서 백혈병(혈액암) 진단을 받고, ○○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 2010. 6. 30. 사망하였고, 이에 대하여 ○○성모병원 담당의사 이○○ “갑자기 생긴 스트레스가 이 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가해자 및 지휘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및 재발방지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되고,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위원회는 동 진정사건의 사실관계를 비롯하여 원인 및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 진정사건 조사외에 직권조사도 함께 실시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가해 선임병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혹행위를 하였다.

연번	일 시	장 소	가해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1	‘09.5.21 20:40경	기동0중대 2소대	이○○	고 박○○, 이○○	기동0중대가 안면도 꽃 박람회에서 귀소 한 첫

연번	일 시	장 소	가해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내무반 안			날 일석점호를 준비하며 피해자들이 번호를 늦게 한다고 가해자는 2층 침상을 잡고, 한쪽발로 고 박○○의 가슴을 7-8회, 이○○의 가슴을 5회 정도 밀어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음.
2	'09.5.21 21:30-23:30	기동0중대 2소대 내무반안 커튼 뒤 공간	최○○	고 박○○, 이○○	일석 점호에서 실수한 사실과 다음날 아침에 중대장 신고식과 관련하여 교육 겸 신고식 연습차 가해자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발로 정강이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이○○를 20-30회, 같은 고 박○○를 30-40회에 걸쳐 폭행하였음.
3	'09.5.하순 일자미상 20:00경	기동0중대 2소대 내무반 안	최○○	고 박○○, 이○○	피해자가 청소를 똑바로 하지 않고 시위현장에서 실수한 부분을 꼬투리 잡아 가해자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약 40대, 주먹으로 가슴을 약 10회 폭행하였음.
4	'09.6.초순 경 일자미상	시위진압 상황대기중 기동0중대 2소대버스 내	최○○	고 박○○, 이○○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손바닥으로 각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15회 정도 폭행하였음.
5	'09.6.초순 경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최○○	고 박○○, 이○○	시위출동장비(진압장구)를 준비하지 못했다

연번	일 시	장 소	가해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일자미상	내			는 이유로 가해자는 2소대 버스 뒷자리에서 손바닥으로 각 피해자들의 뺨을 1-2회씩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폭행하였음.
6	‘09.6.초 일자미상 20:00경	기동0중대 2소대 내무반	최○○	고 박○○, 이○○	내무반 청소를 독바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주먹으로 가슴을 2-3회 정도 폭행하였음.
7	‘09.6초순 일자미상 12:30경	상황 대기중 기동0중대2 소대 버스내	최○○	고 박○○, 이○○	상황대기중 점심식사를 빨리하라는 취지로 가해자가 손바닥으로 각각 피해자 등의 얼굴 1-2회 폭행하였음.
8	‘09.6.10 시간 미상	기동0중대 2소대 내무반	최○○	고 박○○, 이○○	공식적인 면회 외출을 나가는 피해자 고 박○○, 같은 이○○에게 “우리는 훈련을 하는데, 니들은 면회 나가냐”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3-4회 차례씩 폭행하였음.
9	‘09.6.중순 경 일자미상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시 소재 대산 화물연대 시위진압 당시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손바닥으로 얼굴을 5-6회, 발로 정강이를 5-6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였음.
10	‘09.6-7경 일자미상 15:00경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박○○, 조○○,	2소대 막내급 대원들을 집합시켜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한다는 이유로

연번	일 시	장 소	가해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이○○, 노○○	주먹으로 가슴을 3-4회 씩 각 폭행하였음.
11	‘09.7. 초순 일자미상 08:00경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이○○, 노○○, 이○○, 조○○, 이○○ 등	기동0중대가 시위진압 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원들이 동작이 느리다 는 이유로 나무로 만든 상황판(두께 약 1cm)으 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2-3회씩 폭행하였음.
12	‘09.7. 경 일자미상	시위상황 대기중 기동0중대 2소대 버스내	홍○○	고 박○○, 진○○, 최○○ 등 2소대 후임 다수	암기사항을 외우지 못 한다는 이유로 2소대 대원 고 박○○, 최○ ○, 진○○, 노○○ 등 후임자를 주먹과 손바 닥으로 얼굴을 3-4회 정도 폭행하였음.
13	‘09.7. 중순 일자미상 19:00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이○○ 등 막내급 2-3명	취사반에서 식판을 깨끗하게 세척하지 못한 다는 이유로 기동 버스 로 고 박○○와 이○○ 등 막내급 2-3명 정도 를 불러서 각각 가슴 4-5회, 손바닥으로 얼굴 과 머리를 5-6회 정도 폭행하였음.
14	‘09.7. 중순 일자미상 16:00경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부대생활을 잘하지 못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박○○를 2소대 기대마 (전경버스)로 불러 10 여분에 걸쳐 교양을 하 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정도 폭행하 였음.
15	‘09.7. 일자미상	기동0중대 2소대	홍○○	고 박○○	홍○○가 삼푸, 수건, 속옷 등 세면도구 금액

연번	일 시	장 소	가해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내무반			미상의 물품을 지위를 이용하여 갈취하였음.
16	‘09.8.초순 일자미상 14:00경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조○○ 김○○	고 박○○, 이○○, 이○○, 이○○	가해자 김○○, 조○○는 공동으로 수경 이○○의 빨래를 피해자들이 건조대에 건조시켜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버스 의자에 얹혀놓고 주먹으로 가슴을 4-5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5-6회씩 도합 30여분에 걸쳐 폭행하였음.
17	‘09.9. 초순경 일자미상	기동0중대 3소대 버스 내	이○○	고 박○○	기동0중대 막내급 후임병을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대건물 공터에 성명미상의 후임병들을 집합시키고, 가해자의 발로 피해자 박○○를 수회 폭행하였음.
18	‘09.9.30 16:00경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김○○	고 박○○, 윤○○	○○시 소재 ○○천 둔치에서 다중범죄진압훈련과정에서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각 2-3회씩 폭행하였음.
19	‘09.9.말 일자미상 19:00경	기동0중대 2소대 버스 내	김○○	고 박○○, 정○○	부대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고 박○○, 같은 정○○을 땡겨자세로 얹혀놓고 주먹으로 가슴, 복부, 허벅지, 옆구리 등 40-50여회 씩 폭

연번	일 시	장 소	가해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행하였음.
20	‘09.10. 초순경, 일자미상	기동1동대 2소대 버스 내	최○○	고 박○○	피해자 고 박○○의 후 임 정○○이 생활을 잘 못한다며 피해자를 2소 대 버스로 불러 부대 생 활에 대한 교양을 하던 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5-6회 정도 폭행하였음.
21	‘09.10. 중순 일자미상 12:00경	기동0중대 취사반	이○○	고 박○○, 윤○○, 진○○, 명○○	중대 소대 내부반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 유로 “왜 청소 지적이 나오게 했냐!, 죽을래” 라는 등 욕설을 하며 허 벅지 1회, 주먹으로 어 깨 부위 2회씩 폭행하 였음.
22	‘09.11. 하순 일자미상 22:00경	기동0중대 본부소대 내무반	이○○	고 박○○, 장○○	일석점호시 번호를 늦 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 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을 1-2회 폭행하였음.
23	‘09.12.초 순 일자미상 07:30경	기동0중대 보일러실문 앞	김○○	고 박○○, 명○○, 조○○, 이신	일조 점호시에 자세가 불량하였다는 가해자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 해자들의 뺨을 2-4회 정도씩 폭행하였음.
24	‘09.12. 7경 일자미상	기동0중대 본부소대	정○○	고 박○○	피해자 고 박○○가 건 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다녀와 죽을 먹어야 한 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 유로 “개새끼 니 짬밥에 죽을 먹냐 미친놈아”라 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양 주먹으

연번	일 시	장 소	가해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로 팔을 3-4회 가랑 폭행하였음.
25	'09.12. 7경	기동0중대 취사반	이○○	고 박○○	고 박○○가 병원에 다녀와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죽을 먹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후라이팬을 집어던지고, 아픈 사람이 너뿐이나, 주는 대로 아무거나 치먹어라 욕설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음.
26	'09.12. 9 09:00경	기동0중대 행정반 사무실	윤○○	고 박○○	기동0중대 하반기 사격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행정반장 백관기가 화를 내고 나가자, 선임이었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뺨을 2-3회 폭행하였음.

2) ○○지방경찰청 조치사항

○○지방경찰청은 기동0중대 소속 피해자 구타 및 가혹행위 등과 관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구타 및 가혹행위 등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이 사건의 폭행·가혹행위자 11명에 대해 상습폭행,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2011. 1. 27.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지휘감독자 6명에 대하여는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면 「전투경찰순경관리규칙」 및 「전경구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한 후 가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을 위한 직무고발 또는 징계조치하고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징계위원회 구성 및 진상조사를 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 하면서 폭행 등 사고 경위를 축소 처리하여 가해대원들을 가벼운 징계처분에 그치게 하는 등 구타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사유로, 위 같은 날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다. 판단 및 조치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했고,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였음에도 중대장 등 지휘요원들은 이러한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알고서 묵인·방조·축소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선임대원 및 지휘책임자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재 진정관련 가해자 및 지휘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종결 처분되었으므로, 본 사건의 진정요지 중 가해자 및 지휘요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자 등 후임대원들이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하였고, 이러한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였음에도 중대장 및 지휘요원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방조·축소 처리하였는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관행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지방경찰청 000전경대 구타 및 가혹행위 사건(11직권 500)

가. 사건개요

1) 관련부대 : ○○지방경찰청 000전경대

2) 피 해 자 : 홍○○, 정○○, 변○○, 안○○, 손○○, 이○○(이상 복무이탈자), 김○○, 강○○, 김○○, 강○○, 전○○,

김○○(이상 12명)

3) 가해자 : 김○○, 김○○, 이○○, 류○○, 장○○(이상 5명)

4) 사건요지

○○지방경찰청 000전경대 소속 이경 홍○○ 등 6명은 2011. 1. 23. 부대 내에서 구타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같은 날 04:45경 부대의 근무지(숙소)를 집단 이탈하여, ○○시의 한 PC게임방에서 이메일을 통해 자대배치를 받은 직후 선임들로부터 주먹 등으로 수차례 구타를 당하였고, 부대 내에서 암기 강요 등 각종 가혹행위 악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지방경찰청 112센터에 구타가혹행위 피해를 신고하여 이러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인정사실

1)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 등

가해선임병들은 피해자들에 다음과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하였다.

연번	일 시	장 소	가해 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1	‘10.12.2. 16:00경	본부생활실	류○○	안○○	발령 첫날 짐을 빨리 풀어 정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등 부위를 2회 폭행
2	‘10.12.2. 19:00경	○○아래정 원 흡연장소			흡연장소에서 담배를 피다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발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폭행
3	‘10.12.3. 오전경	샤워장			옷을 빨리 벗지 않는다고 주먹으로 우측 팔을 1회 폭행
4	‘10.12.26. 19:00경,	○○ ○○읍 소재	이○○		담배를 사야 한다면 체크카드를 강제로 빌

연번	일 시	장 소	가해 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10.12.27. 19:00경	‘○○식당’			려감
5	‘10.12.2. 19:30경	○○아래정 원 흡연장소	김○○		담배를 피우면서 발을 붙 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 로 왼쪽 발을 1회 폭행
6	‘10.12.13. 09:00경 20:00경	취사장	김○○	손○○ 등 동기 11명	먹다 남은 연두부를 강 제취식하도록 하여 구 토를 하도록 가혹행위 를 가함
7	‘11. 1. 2. 19:30경	○○ ○○군 소재 ○○장 여관 301호	장○○	손○○	늦게 자신의 거실에 왔 다는 이유로 맨발로 복 부를 2회, 주먹으로 가 슴과 팔을 3회 폭행
8	‘10.12.2. 19:30경	○○아래정 원 흡연장소	김○○	변○○ 등 동기 12명	담배를 강제로 피우게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각(정자세)을 제대로 잡 기 않는다며 주먹으로 복부와 가슴부위를 4회, 종아리 부위를 1회 걷 어차 폭행
9	‘10.12.2. 16:00경	본부생활실	류○○		첫 자대배치 직후 짐을 늦게 풀다며 주먹으로 오른쪽 팔 부위와 가슴 부위를 4회 폭행
10	‘10.12.3. 20:00경	본부생활실	류○○		침상에 앉아 군가를 외 우는데 각을 잡고 툭바 로 앉아 있지 않는다며 좌측 종아리 부위를 발 로 2회 걷어차 폭행
11	‘10.12.6. 20:00경	세면장	류○○		세면 시 한 번에 런닝과 티셔츠를 벗자 “니가 똬 데 옷을 한 번에 2개씩 벗냐.”면서 주먹으로 등

연번	일 시	장 소	가해 대원	피해대원	구타 및 가혹행위
					부위를 3회 폭행
12	‘10.12. 중순 시간미상경	○○지구대 사무실	김○○	강○○	쳐다보는 것이 마음에 안 든다며 뺨, 가슴을 3 회 폭행
13	‘11. 1. 2. 오후경	○○ ○○군 소재 ○○ 장모텔 302호	김○○		조용한 것도 아니고 활발한 것도 아니고 중간으로 어정 쩍하다는 이유로 턱을 때리 고 돈과 담배를 빼앗음
14	‘10.12.22. 19:30경 ‘11. 1. 4. 02:00경	○○ ○○군 소재 ○○장 모텔 303호	이○○	강○○	친구사진을 빼앗고, 하 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우기면서 가슴을 1회 폭행
15	‘10.12중순 13:00경	중대 식당	이○○	전○○	점식 식사 중 “잠깐 나 와, 안경을 벗어”라고 한 후 주먹으로 뺨과 목 을 1회 폭행하고 담뱃 불을 얼굴에 집어 던짐
16	‘11. 1. 4. 02:00경	○○ ○○군 소재 ○○장 모텔 303호	강○○	김○○	족구를 잘한다는 이유 로 주먹으로 명치부분 을 폭행
17	‘11. 1. 4. 02:00경	○○ ○○군 소재 ○○장 모텔 303호	이○○ 강○○	이○○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 로 뺨을 1회 턱을 3회 폭행

2) 000전경대 시설 및 인력관리 등

가) 000전경대는 단독청사로 1층은 식당, 행정실, 직원생활실(기울실 공용), 대장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2층은 전경 생활실 3개소(복층 철재침실구조로 약 40여 명씩 수용), 화장실, 샤워실, 세면실, 창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생활실이 전반적으로 정리정돈이 잘 안되어 있고, 샤워실, 세면실 등은 관찰창문이 없는 등 밀폐되어 있어, 음성적인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나) 000전경대는 이경 48명, 일경 37명, 상경/수경 5명 총 90명으로 신입대원이 편중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이경급 신입대원 간 군기잡기 등 내부부조리가 상존할 구조적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런 계급별 쏠림현상은 2010. 9월 경부터 시작되었고, 이즈음부터 직원이 8명(중대장 1, 소대장 2, 소대부관 2, 차량반장 1, 중대부관 1, 행정관 1)으로 축소되어 주간에는 중대장, 행정관, 일근 근무자가 행정관리를 하고, 3개 생활실 등 전경관리를 당직부관 1명이 09:00경부터 13:00경까지, 당직관 1명이 13:00경부터 18:00경까지 하고, 야간에는 18:00경부터 익일 01:00경까지 당직부관이, 01:00부터 09:00경까지는 당직관이 전경관리를 도맡아 오며 따라 실질적인 동행동숙의 전경관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특히, 2010. 12. 2. 3196기(무단이탈자 6명 기수) 이경 변○○을 비롯한 12명의 대원이 000전경대로 일시적으로 전입하여, 갑자기 많은 대원 관리에 업무 과중이 있었고, 000전경대로 전입 즉시 ○○지방경찰청에서 대원들을 방법활동에 투입하라는 지시에 따라 전입한 다음날인 12. 3.부터 이동방범근무에 투입되어 이들에 대하여 신입대원 전입교육인 부대적응 2주 과정 및 심리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휘요원은 각 대원들의 특성(가정환경, 성격, 소질,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이들을 관리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형식적인 부대관리 등

가) 000전경대는 중대장 등 지휘요원들이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인권교육, 소원수리, 개별면담 등 실시해 왔으나, 이 사건에서는 전경대원 간 구타 및 가혹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사항이 미미하고 형식적이며, 또한 구타 등 가혹행위가 발생하여도 가해대원에 대해 「전경구타및가혹행위근절규칙」 등에 따른 발생보고, 징계 등의 처리를 하지 않고, 내부 공적제재(교양조치)의 형식으로 소극적으로 축소처리하고, 단 한 건도 지휘자 등에 대하여는 지휘감독의 책임을 묻은 사례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또한 2010. 12월 부대 자체의 ‘생활문화 자가진단 결과’를 보면, 잔존하는 악습유형으로 신입대원 적응 기간 중 상급자의 허락 하에 화장실 이용 및 물먹기, 생활실 대기시 정자세로 앉아있기, 소대원간의 대화 금지하고, 점호 시에는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게 하는 행위(일명 ‘정면뚫기’), 관등성명 시 목소리를 크게(악을 써서)하는 행위가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구두주의 및 교양조치만 하였을 뿐 이에 대한 공적제재 및 시정조치를 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다) 특히, 000전경대 중대장, 소대장, 행정반장 등은 2011. 1. 23. 6명의 전경대원들이 ○○○○ 구제역 방역근무 시 지휘자 1명의 관리 하에 숙영지를 4인 1실의 사설 모텔로 정하여 대원들을 생활하게 하면서, 별도의 일석점호, 불침번, 명확한 근무계획의 수립 없이 경력을 운영하여, 위와 같은 숙영지에서 대원 간 금품갈취, 폭행, 집합 등 구타 및 가혹행위가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위와 같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던 이경 김○○이 자신의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 중대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중대장이 이를 2011. 1. 9. 확인하고, 같은 달 12. 추가피해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보고 및 징계 등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아 같은 달 23. 피해대원 6명이 제2차 피해를 우려해 집단이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4) 관계기관 조치사항

가) 경찰청

(1) 경찰청은 2011. 1. 28. ○○지방경찰청 000전경대 집단탈영 사건에 대해, 탈영한 대원 6명은 전입 이후 압기사황을 외우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선임인 가해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했으며, 2010. 12. 24.부터 ○○지역 구제역 이동통제소 지원 근무 도중,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신고하였음에도 지휘요원이 제대로 조치를 해 주지 않아 부대에 복귀할 경우 보복이 두려워 탈영한 것이라고 발표하고, 이에 따라 ○○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작전전경계장에 대해 징계,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000전경대 배속서)에 대해 경고하고,

000전경대를 해체하였다.

(2) 또한 경찰청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2011년 전·의경 생활문화 개선 대책으로 전·의경을 보호·관리하려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 지방청의 전·의경 부대를 관리 능력이 있는 지방청으로 이동 배치하기로 하여, ○○지방경찰청의 전·의경 중 1/3을 다른 지방청으로 이동 배치하고, 2011. 1. 26 ~ 27 경찰청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특별점검팀 편성, 전국 신입대원들을 상대로 소원수리 실시, 피해사례 심층조사, 경찰청 소속 특명점검단(감찰단)을 상시 운영하고, 피해신고를 112로 단일화, 2012년 이후 전·의경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나) ○○지방경찰청

(1) ○○지방경찰청은 2011. 3. 22. ○○지방경찰청 000전경대 중대장 경감 정○○에 대해, 중대내 발생한 구타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원인, 피해정도, 처벌의사 유무를 불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여야 하고, 부대 자체회의를 수차 개최하면서 지휘요원들로부터 상부에 보고할 것들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책 받을 것이 두려워 “요즘 시기가 좋지 않으니 나중에 보고하자. 72시간 이내에 자체적발을 해야 직원이 다치지 않는데 이미 72시간이 지났으니 자체적으로 해결하자.”라고 묵살하였고, 신입대원이 전입하여 부대 적응기간(2주) 중 지휘요원들은 대원과 함께 동행동숙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구타가혹행위를 미연에 예방치 못하는 등 직무유기를 하였다며 그 책임을 물어 해임(2011. 3. 15. ○○지방검찰청 ○○지청 형사입건(불구속))하였다.

(2) 또한, ○○지방경찰청은 같은 000전경대 1소대장 경위 정○○, 1소대부관 경장 김○○, 2소대부관 경장 최○○, 중대부관 경사 이○○, 행정관 경장 김○○에 대해서는 신입대원 부대조기적응 교육기간 및 ○○구제역 파견근무기간 중 7~42회 구타, 가혹행위 발생 및 보고 누락 등으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같은 000전경대 2소대장 경위 박○○에 대해서는 신입대원 부대조기적응 교육기간 및 ○○구제역 파견근무기간 중 총 12회 구타, 가혹행위 발생 및 보고 누락

등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같은 000전경대 차량반장 경사 허○○에 대해서는 신임대원 부대조기적응 교육기간 및 ○○ 구제역 파견근무기간 중 총 18회 구타, 가혹행위 및 무단이탈 발생에 따른 책임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3) 2011. 2. 피해대원 12명중 이경 김○○·강○○·김○○·김○○에 대해서는 ○○ ○○경찰서에, 이경 전○○·김○○·홍○○·안○○·이○○·변○○·정○○·손○○에 대해서는 교통보도대로 각 본인 희망에 따라 진출 조치하였다.

(4) 가해대원 14명에 대해서는 2011. 1. 28.자로 각 타부대로 진출 및 아래와 같이 형사고발, 영창, 근신 및 기율교육 등의 조치를 하였다.

연번	가수	계급	성명	입대	전입일	전출서	조치결과		비고
							처분일자	처분내용	
1	3195	이경	강○○	‘10.09.13	‘10.11.02	서울 ○○서	11. 1.29	구속 (검찰항소)	형사고발
2	"	"	이○○	"	"	서울 ○○서	11. 1.29	구속 (검찰항소)	형사고발
							11. 4. 7	영창 15일	
3	3186	상경	류○○	‘09.12.14	‘10.01.29	서울 ○○서	11. 4.22	영창 15일	형사고발 (고소취하)
4	3189	일경	김○○	‘10.03.22	‘10.05.12	서울 ○○서	11. 5. 6	영창 15일	형사고발 (벌금 100만원)
5	3190	"	이○○	‘10.04.19	‘10.06.09	서울 ○○서	11. 5. 6	영창 5일	형사고발 (기소유예)
6	"	"	권○○	"	"	서울 ○○서	11. 5. 6	영창 7일	형사고발 (기소유예)
7	"	"	홍○○	"	"	서울 ○○서	6월초	징계예정	
8	3194	"	박○○	‘10.08.09	‘10.09.30	서울 ○○서	11. 5. 4	영창 7일	
9	3194	"	김○○	"	"	서울 ○○서	11. 5. 6	영창 3일	

연 번	기수	계급	성 명	입대	전입일	전출서	조치결과		비고
							처분일자	처분내용	
10	3189	"	김○○	‘10.03.22	‘10.05.12	서울 ○○서	11. 5. 4	근신 3일	
11	3193	"	장○○	‘10.07.12	‘10.08.27	서울 ○○서	11. 4.26	기율교육	
12	3192	"	백○○	‘10.06.14	‘10.08.05	서울 ○○서	11. 4.28	불문조치	참고인으로 조사
13	3190	"	윤○○	‘10.04.19	‘10.06.09	서울 ○○서	11. 4.27	불문조치	피해대원 번복
14	3195	"	정○○	‘10.09.13	‘10.11.02	서울 ○○서	11. 5. 4	근신 5일	

다. 판단 및 조치

1) 위 인정사실과 같이, 다수의 후임대원들이 선임대원들로부터 수차례 구타를 당했고,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부대에 신고하였음에도 중대장 등 지휘요원들은 이러한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알고서 묵인·방조·축소 처리하였는바, 이러한 선임대원 및 지휘책임자들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현재 가해자 및 관련 지휘책임자들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징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또는 종결된 경우이므로, 이들의 책임을 묻는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하되, 중대장 등 지휘요원들의 형식적인 대원면담 및 관리, 동행동숙원칙 미 준수,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를 인지하고서도 문책 받을 것이 두려워 축소·은폐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 관행 및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경찰서 의경 사망사건(11직권600)

가. 사건개요

1) 관련부대 : ○○○○경찰서 119방범순찰대 0소대

2) 피 해 자 : 故 심○○

3) 사건요지

피해자는 2010. 2월 입대해 소속 ○○경찰서에 4월에 전입했으며, 복무적응 장애(우울증)로 같은 해 5월부터 2개월 동안 병가를 낸 이후 또다시 7월부터 최근 까지 휴직하고 이날 귀대를 앞둔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1. 1. 25. 09:00경 접근처인 웨딩홀 주차장 담장 옆 높이 3m 나무에 노끈으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차장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언론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유서가 없고, 사망의 원인에 대하여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위원회는 위 사건이 피해자의 소속부대인 119방범순찰대 내의 구타 및 가혹행위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인정사실

1) 피해자는 2010. 2. 25.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4. 1. ○○○○경찰서 119방범순찰대 0소대에 배속되었다. 피해자는 2010. 4. 9. 체육대회 중 축구하면서 다리 부상을 입었고 같은 해 5. 17.부터 같은 달 20.까지 다리 골절 수술을 위해 청원휴가를 받았으며 경찰병원 정신과 진료결과 부대생활의 적응장애가 있다는 소견이 있어 같은 달 27.부터 7. 24.까지 부대 부적응으로 청원휴가, 같은 해 7. 25.부터 2011. 1. 25. 적응장애 치료로 휴직한 뒤 집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2) 피해자는 2010. 5. 1. 08:00경 빨래에 사복을 감춘 뒤 ○○○○경찰서 1층 교통안전계 앞 화장실에서 김스를 풀고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경찰서를 빠져나가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나, 같은 달 2. 07:00경 ○○도 ○○시 소재 친구의 집 앞에서 0소대장 경위 서○○에게 검거되었고, 중대장 경감 한○○는 피해자의 상태로 미루어 강력한 영창 등 조치가 오히려 피해자의 특수한 심리상태

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약 15일간 매일 반성문을 작성케 하는 등 근신 2주, 외출외박 6개월간 정지 등 자체 공적제재조치를 취하였다.

3) 피해자는 2011. 1. 25. 부대복귀를 위해 이발을 한다고 집을 나선 뒤 같은 날 09:00경 집 근처인 웨딩홀 주차장 담장 옆 높이 3m 나무에 노끈으로 목을 매 사망하였고, 이를 위 주차장 관리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서는 사망원인을 수사한 후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사인이 의사(목매)로 확인되었고, 현장상황, 사체의 상황, 유족의 진술, 발견자 진술, 관련자(부대원)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변사자는 휴직을 마치고 부대복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적 압박감 등을 느끼고 목을 매어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피해자의 사망에서 타살이나 범죄와의 연관성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며 2011. 2. 27. ○○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하였다.

4) 위원회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동기 문○○ 등은 선임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보거나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서가 2011. 1. 26.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자체 실시한 6개월 미만 대원 31명에 대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 여부에 관한 소원 수리를 받았으나, 구타 및 가혹행위를 호소하는 대원이 발견되지 않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는 부대 부적응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던 중 부대복귀를 앞두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달리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Ⅲ. 전·의경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검토

1. 구타 및 가혹행위 문제

가. 전·의경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구타 및 가혹행위는 지휘요원이 전·의경 부대생활을 피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관계로, 후임대원이 주로 선임대원으로부

터 생활지도를 받는 과정에서 악습이 반복·잔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타·가혹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근절의지가 부족하고, 소원수리 등 전·의경 인권보호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시 결과책임에 대한 부담으로 축소·은폐 경향)이다. 이런 이유로 구타 및 가혹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되어, 국민의 경찰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자살, 탈영과 같은 제2의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표 1〉 연도별 전·의경 주요 사고발생 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년 평균
구타·가혹행위	228	115	93	61	69	113.20
복무이탈	158	86	68	33	23	73.60
대민사고	21	23	13	9	10	15.20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표 2〉 구타 및 가혹행위 등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비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5년 평균 처리비율
구타 및 가혹행위	형사 입건	구 속	0	4	1	1	0	1%
		불구속	8	64	40	14	64	34%
	징계	중징계	0	0	0	0	5	1%
		영 창	184	37	43	40	4	54%
		근 신	31	7	9	6	1	10%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형사입건 대상자는 전원 징계조치 병행되어 ‘징계’ 항목에서는 제외)

나.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의 적발건수를 보면, 2006년도 228건에서

2007년도 115건, 2008년 93건, 2009년 61건, 2010년 69건 등 전체 건수로 보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형사입건수는 2008년 41건, 2009년 15건, 2010년 64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11. 1. 경찰청이 전국의 전·의경부대 6개월 미만 복무 대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구타 및 가혹행위자 적발건수(직무고발 19명, 징계 90명, 공적제재 및 교육 164명, 총273명)를 보면, 전·의경부대에서의 구타 및 가혹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각 지방청별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관련 소원수리 처리현황

구분	소원수리 대상 인원	참여 인원	불참 인원	구타 및 가혹 행위 신고 인원	가해 대원 수	피해 대원 수
계	5,822	4,634	1,188	365	332	362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기간: 2011. 1.26 ~ 1.27)

〈표 4〉 전·의경 인권침해 소원수리 처리기준 결과

계	직무 고발	징계	공적제재 및 교육	불문조치(97명)			
				입증불가	피해경미	기처분	전역자
370	19	90	164	80	4	5	8

다. 2011. 1월 경찰청은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해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여러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구타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전·의경 폭행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구타 및 가혹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심리적으로 심각한 악영향을 주게 되며, 자살과 탈영 등 제2차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뿐 만 아니라 폭력의 대물림 내지 학습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라. 따라서 전·의경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당국, 지휘관, 전·의경 관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집행이 되어야 하며,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 및 인권교육을 정례화,

신고자 비밀보장, 피해자에 대한 이중피해 예방을 위해 분리조치, 보직변경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 한편, 위원회가 2007년, 2008년 직권조사를 통해 전·의경에 대한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하여 정책 권고를 하였고, 경찰청에서는 신상면담제도 개선, 지방청별 교육 실시, 감찰단 상시 운영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타사건 등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바 경찰당국, 지휘관 및 간부들은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복무 부적합자 및 부적응자 문제

가. 복무 부적합자 직권면직제도 및 부적응자 관리시스템 문제

1) 지원복무로 충원되는 의경의 경우, 신체검사 및 건강검진을 의사 등 전문가가 실시하지 아니하고 지원자 자신이 선택한 병원에서 발행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의존하게 되고, 인성검사의 경우도 비전문가에 의해 대부분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정신과 분야 등과 같이 외형상 증상이 쉽게 발견되지 않는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감별 능력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표 5〉 연도별 전·의경 정신과 치료현황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명	526	529	480	514	431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2) 위와 같이 입대가 제한되어야 할 복무 부적합자가 입대하여 결국 부대생활 중 급격한 환경변화로 질환이 재발되고, 이로 인한 당사자 인권문제는 물론 동료들의 인권문제(동료대원들의 불안 요인은 물론 경찰병원 의료인력 부족으로 1명의 전·의경이 정신과에 입원시 동료대원 1명도 정신병원 병동에 함께 입원하는 등)

및 지휘관들의 지휘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며, 위 1사건(11직권600)에서와 같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이슈화되어 많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3) 또한 과거 병력이 재발되거나, 복무중 신체작정신적 질환 등 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30조, 제36조 내지 제36조의3 및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23조에 따라 직권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3심제인 동 제도는 절차의 복잡성과 시일과다 소요로 제도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결국에는 직권면직 되더라도 시일이 과다하게 경과되어 부적응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등 새로운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4) 현재 육군은 전문진료과가 있는 국군병원 모든 과에서 신체검사의 등급결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 · 의경의 경우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국립병원장(경찰병원 포함) 또는 국군병원장이 판정한 진단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 규칙인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23조제1항에서는 경찰병원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령체계 및 관계자들의 업무수행의 일관성 등을 위하여 동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신임전입 대원 및 부적응자 상담관리 등 운영문제

1)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73조에 따라 관심요구 전 · 의경의 사전과약 및 특별관리 등 제반 사고요인 제거를 위하여 1·2차 감독자(부관, 소대장)는 각각 월 1회 이상(금년 3월부터 주 1회 이상으로 개선), 3차 감독자(중대장)는 월 1회 이상 ‘신상면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휘관에 의한 신상면담만을 의존하고 있는 현 제도는 전문상담능력에 대한 전문성의 한계, 대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른 실효성의 문제, 구타 및 가혹행위 발생 시 지휘책임이 병행되는 지휘관에게 솔직한 진술이 가능한지의 문제, 부적응자의 경우 자신상황에 대한 진술시 부적응자로 낙인, 일명 ‘왕따’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문제 등의 현실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2) 특히, 자대 배치 다음날부터 신임대원이 선임대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구타를 당하는 상황임에도 지휘관에게는 구타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형식적인 면담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실질적인 면담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3) 결국 전·의경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심리 및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가진 상담심리 전문가가 특정대원들에 대한 집중상담을 통하여 애로 및 문제점을 지휘관에게 건의, 복무 부적응자를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복무 중 사망자(자살자) 문제

1) 전·의경의 복무 중 사망(자살)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했다가 사망한 경우 그로 인하여 남겨진 가족에게는 큰 충격과 심각한 휴유증을 남기는 등 가족의 고통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표 6〉 연도별 전·의경 자살자 현황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0년 평균
자살	11	8	11	6	7	5	6	6	4	2	6.60

* 자료 : 경찰청 제출 현황

2) 그런데 앞서 살펴본 ○○지방경찰청 소속 박○○ 의경 사건(11직권300)의 경우와 같이 군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조사가 충실하지 못하여 단순 사망사고로 처리하였다가 부모의 이의제기 등으로 사망 전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복무 중 사망사고의 철저한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경찰과 유가족대표 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의경제도 폐지에 관하여

가. 전·의경제도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1) 국방부는 2007. 12. 18. 병역제도 개선에 따라 병 복무기간 단축(24개월→18개월)에 따른 현역자원의 확보를 위해 2008년부터 연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012년 폐지에정이었으나 2008. 9월 제5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08~2011년간 전·의경 18,191명을 감축하는 대신 경찰관 4,866명을 충원하기로 하고 2012년 이후의 전환인력 규모는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2) 그러나 국방부는 2011. 3. 21. 병 복무기간 조정(18개월→21개월)에 따라 일부 잉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치안력 확보를 위해 의경은 2015년까지 지원 예정(2015년 이후는 향후 안보환경 등을 고려하여 추후 재판단)이며, 전경은 지금까지 현역병입영자 중 강제로 차출하여 지원함으로써 병역의무자 및 부모들의 불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2012년부터 폐지하고 본인이 지원하는 의경으로 전환하여 배정할 계획이다.

3) 경찰청도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전·의경을 폐지하고 비교적 전문성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직업경찰관으로의 대체가 전제되지 않고 무작정 전·의경을 폐지하는 것은 엄연히 전·의경이 치안력의 상당부분을 감당해 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치안공백의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지게 할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입장이다.

나. 전·의경제도의 문제

1) 현행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규정에 의하면, 전투경찰은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경찰순경(전경)과 치안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전투경찰순경(의경)으로 구분되며, 전경의 주임무는 대간첩작전(대비정규전, 국가중요시설방호, 요인 및 신변보호, 작전상 취약요소제거 및 경비임무수행)이며, 의경의 주임무는 시위 진압, 범죄예방순찰, 교통, 유치장근무 등 치안보조업무수행이다.

2) 전경의 경우 현역군인이 되기 위해 육군에 입대 했는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육군훈련소에서 전경으로 강제 전환복무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의경은 본인의 의사에 따를 것이기는 하나 실제 교통단속 등 일선 경찰업무 보다는 시위진압부대 등에 배치되면서 부담의 가중으로 복무 부적응자 발생이유가 되기도 한다.

3)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면 전·의경의 주임무가 대간첩작전의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시위진압 등 경찰의 보조인력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는 점은 법의 합목적성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4) 실제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위해 차출된 전경의 교육훈련의 내용을 보면, 군훈련소 공동교육 5주, 중앙경찰학교 교육기간 1주(2011년 4월부터 지방청별 3주 교육)가 전부인데, 실제로 평상시 훈련이 군대와 같이 대간첩 작전을 위한 도심지 작전, 경계 대테러교육 등 군사훈련이 아닌 시위진압 훈련을 하는 것은 제도적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7〉 2010년 12월말 전·의경 인력현황

구 분	계	작 전 전 경			의 무 경 찰			
		인원 (명)	비율 (%)	전경대 (개)	인원 (명)	비율 (%)	기동대 (개)	방순대 (개)
계	22,292	5,434	24	32	16,858	76	70	81
경찰청	32	1	3		31	97		
경 대	163	36	22		127	78		
교육원	45	0	0		45	100		
중 양	31	4	13		27	87		
수연원	1	0	0		1	100		
병 원	4	0	0		4	100		
서 울	8,233	1,183	14	10	7,050	86	35	31
부 산	1,449	180	12		1,269	88	2	10
대 구	765	59	8		706	92	1	6
인 천	855	72	8		783	92	3	5

구 분	계	작 전 전 경			의 무 경 찰			
		인원 (명)	비율 (%)	전경대 (개)	인원 (명)	비율 (%)	기동대 (개)	방순대 (개)
광 주	543	35	6		508	94	1	4
대 전	479	33	7		446	93	1	3
울 산	357	28	8		329	92	3	
경 기	2,607	745	29	4	1,862	71	9	10
강 원	659	207	31	1	452	69	2	2
충 북	418	85	20		333	80	1	2
충 남	532	290	55	2	242	45	2	
전 북	687	199	29	1	488	71	2	2
전 남	933	609	65	4	324	35	1	1
경 북	922	363	39	2	559	61	2	3
경 남	1,006	343	34	2	663	66	5	1
제 주	974	810	83	6	164	17		1
중앙 교육생	10	10	100		0	0		
훈련소 교육생	482	142	29		340	71		
경찰대 졸업자	105	0	0		105	100		

* 자료: 경찰청 제출 현황

5) 한편, 그동안 직업경찰관들의 업무를 전·의경들이 특별한 노동력의 대가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이를 대행하게 함으로서,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직업경찰관의 근무환경 개선 및 늘어나는 치안수요에 순기능 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반면에 복무군인의 신분이라는 이유로 열악한 근무환경과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방적 수인을 강요하기에는 국가와 사회가 이미 성숙되어 있고, 정부가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할 시기가 도래 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한다.

6) 경찰청은 2011. 1. ○○지방경찰청 의경 사망사건과 ○○지방경찰청 000 전경대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집단이탈 사건 이후, “2012년 이후 전·의경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국방부도 전·의경제도의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7) 따라서 전·의경제도를 폐지할 경우 그동안 사회적 안정에 큰 역할을 한 경찰력의 축소로 치안에 불안요인이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찰력을 증원함으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고, 전의경 제도는 관련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는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경찰청과 국방부도 전·의경제도의 폐지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기하고 국민에게 보다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과 책임감이 높은 직업경찰관으로 대체하여 책임적인 법집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전의경 당사자 및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전의경 인권상황 및 관련 제도·관행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본 직권조사 사건과 병합된 구타가혹행위 진정부분은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9. 19.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장향숙〈불참〉 위원 김영혜

위원 홍진표 위원 김태훈 위원 최윤희〈불참〉

위원 김양원 위원 장주영 위원 한태식

위원 윤남금 위원 양현아

4

2009. 6. 5.자 09진인1177결정 [선임의경 구타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장○○외 1명 대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조속히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
- 【2】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김○○외 2명에게 각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전·의경대원들에 대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관련 전·의경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장○○과 안○○에 대하여 전·의경 선임 및 후임대원 상호간의 인권 친화적 관계형성을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히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
- 【2】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김○○, 박○○, 김○○에 대하여 전·의경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전·의경대원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복무관리 등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의경 설문 및 면담시행 시 보다 내밀하게 자신의 애로사항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할 것을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1. 장○○

2. 안○○
3. 김○○
4. 박○○
5. 김○○

- 【주 문】 1.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장○○과 안○○에 대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에 대하여는 조속히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김○○, 박○○, 김○○에게 각 경고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소속 전·의경대원들에 대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실
시할 것과 관련 전·의경 복무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
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조카, 피해자가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의경으로 근무하던 중 아래와 같이 피진정인들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여 그 후유증으로 서울경찰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바, 가해자들의 처벌 및 권리구제를 원한다.

가. 피진정인 장○○과 안○○은 피해자의 선임의경대원으로 2008. 12. 26. 피해자가 ○○○○경찰서에 전입하여 복무할 때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폭언, 기합 및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김○○, 박○○, 김○○은 전·의경 복무관리 및 감독책임자이면서도 피해자가 4개월 동안 폭력 등 가혹행위에 노출되었으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

지 않고 방치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한 및 피해자

1) 가해자인 장○○과 안○○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의 감찰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았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2) 전의경 복무관리를 담당하던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원하고,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받고 조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바라며, 이외 사항은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장○○

가) 2009. 1. 20. 23:30경 4층 의경내무반 내에서 피해자가 내무반 생활에 관한 수칙을 빠른 시일 내 숙지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차렷 자세로 5분간 서 있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린 사실, 같은 해 2. 19. 19:20경에는 4층 세면장 내에서 교통외근 근무 수칙을 빠른 시일 내에 숙지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사실, 같은 해 4. 7. 03:30경 울산 울주군 ○○면 ○리 소재 ○○교통초소 내에서 피해자가 악력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 악력기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 정강이를 차는 등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청문감사실 조사 과정에서 각 확인되어 징계 영창 7일과 규율교육대에서 5일간 훈련을 받았다.

나) 위 사실 외에도, 2009년 2월경 저녁시간에 식당 세척장에서 식판을 닦으면서 식판 닦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잘 닦지 못하자 “니 부모님은 개다.”라고 하고, 같은 해 3월 중순 저녁시간에는 위 같은 장소에서 식판세척을 잘하지 못한

다며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다) 2009년 3월 중순경 야간작업을 하고 02:00경 왔을 때, 피해자의 자리에서 신입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리검사지를 보았는데, 우울하다는 내용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고참들 다 옛 먹이냐.”면서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했다.

라) 2009. 3. 18. 20:00경 내무반에서 피해자의 관물대가 너무 지저분해 청소하려고 관물대의 물건을 꺼내 보았는데, 육군훈련수첩에서 찢어진 것으로 보이는 종이에 “J는 언제 욕설을 하고, A는 언제 때렸다.”라는 내용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이를 따져 묻은 적이 있다.

마) 2009년 3월 중순 12:50경 내무반에서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근무의욕이 없으며 거짓말을 자주하여 양팔을 벌려 서 있도록 기합을 준 적이 있고, 같은 달 말경 저녁 무렵에는 내무반에서 같은 이유로 관물대에 두 다리를 올리고 바닥에 손가락지를 낀 채 엎드려뻗쳐(일명, ‘천사의 기도’)를 1분간 시킨 적이 있다.

바) 2009년 4월초 20:00경 휴게실에서 목소리가 작으니 크게 하라며 슬리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시기 지하식당 옆 흡연실에서 상경 안○○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화를 내며 욕하는 것을 보고 “병신 같은 새끼,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사) 피해자가 평소 근무의욕이 없고 업무가 서투르며 내무반생활이 무질서해 잘 하도록 격려하였지만 잘 따라주지 않아 욕을 하거나 구타를 하게 된 것인데, 본의 아니게 피해자에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

2) 피진정인 안○○

가) 2009. 1. 20. 12:30경 피해자가 2층 소회의실에서 교통경찰특별교양시

간 동안 졸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4층 세면장으로 불러 손바닥으로 오른쪽 머리를 1회 때린 사실, 같은 해 3. 8. 03:50경 의경 내무반 내에서 03:30경 깨워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도 제 시간에 깨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카락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폭행한 사실, 같은 해 4. 8. 09:40경 의경 내무반 내에서 피해자가 내무반 정리를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구타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청문감사실 조사과정에서 각 확인되어 징계 영창 9박 10일과 기율교육대에서 5일간 훈련을 받았다.

나) 위 사실 외에도 피해자가 처음 전입 왔을 때부터 패기가 없고 업무의욕이 없어 보여 여러 차례 “미친놈, 병신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한 사실이 있고, 2009. 4월 초경 지하식당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불성실한 생활태도를 지적하며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자 옆에 있던 상경 장○○은 “병신 같은 새끼,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폭언을 했다.

다) 2009. 3월 중순 20:00경 내무반에서 상경 장○○이 피해자의 심리검사용지를 보여주었는데, “우울하다. 잠이 잘 안 온다.”라는 부분에 3~4회 체크되어 있어 황당하게 생각하고 다시 돌려주었더니 이를 찢어버리고 새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피해자에게 경비교통과장과 면담 시 고참병들에 대해 나쁜 이야기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를 하라고 말 한 적이 있다.

라) 근무 당시 상경 장○○이 피해자에게 ‘천사의 기도’라는 기합을 준 사실, 그리고 피해자의 관물대를 뒤져 피해자가 자신의 육군훈련수첩에 고참병들의 폭언 및 폭행행위를 기재한 내용을 보았다는 사실은 들어 알고 있다.

마) 근무 당시 피해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본의 아니게 고통을 준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피진정인 김○○, 박○○

가) 경정 김○○은 2009. 3. 25.부터, 경위 박○○은 같은 해 2. 16.부터 각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및 경비작전계장 근무를 명받아 현재 전·의경 복무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 및 중간 관리감독자로 신상면담, 구타 가혹행위 근절 집체교육, 복무관리 감독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나) 전·의경 복무관리와 관련, 현재 경찰서 단위 전·의경 복무관리는 ‘운영부서’와 ‘당직관리자’, 그리고 ‘주무부서’라는 3원화된 체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어 언제든지 동일 사례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강도 높은 관리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관리시스템으로 개선이 필요하고, 전·의경을 선발할 때 정신적 취약점, 단체생활 부적응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인성검사가 있었으면 한다.

4) 피진정인 김○○

가) 2008. 7. 1.부터 ○○○○경찰서 전·의경 담당 및 주간 112타격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의경 구타 등 자체사고 방지 및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상부의 지침을 하달하고, 전입 후 14일간 신입대원에 대한 일일면담, 매월 1회 신상면담 및 정훈교육, 그리고 일석점호 시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수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다.

나) 그런데도 피해자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여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향후 2009년 전·의경 관리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전·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해자에 대한 대면조사보고서, 피진정인들의 각 문답서 및 진술서, ○○○○경찰서가 제출한 전투경찰순경 징계의결서, 전투경찰순경 복무규율 위반자 진상조사보고서, 비위경찰관 조사결과보고서, 2009년 전·의경

관리개선 종합대책 등 관리지침, 피해자에 대한 신입대원 일일평가면담서 및 대원 신상관리부, 그리고 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각 진정요지별 인정사실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폭언 및 구타 등 가혹행위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진정인 장○○은 위 자신의 주장요지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2009년 2월경 저녁시간에 식당 세척장에서 식판을 잘 닦지 못한다는 이유로 “니 부모님은 개다.”라고 폭언을 한 사실, 같은 해 3월 중순 12:50경 내무반에서 피해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고 거짓말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양팔을 벌려 서 있도록 한 사실, 같은 달 중순 저녁시간에는 위 같은 장소에서 식판세척을 잘 못한다며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찬 사실, 같은 달 중순 02:00경 의경내무반에서 피해자가 신입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심리검사지에 우울하다는 내용을 기재했다는 이유로 “고참들 다 옛 먹이냐.”면서 수정하여 제출하도록 강요한 사실, 같은 달 18. 20:00경 의경내무반에서 피해자의 사물함을 임의로 뒤져 “J는 욕설을 하고, A는 때렸다.”라는 내용이 적힌 피해자의 육군 훈련수첩을 임의로 훼손한 사실, 같은 달 말 저녁 무렵 의경내무반에서는 같은 이유로 사물함에 두 다리를 올리고 바닥에 손깍지를 낀 채 엎드려뺨쳐를 1분간 하도록 한 사실, 같은 해 4월 초 20:00경 의경휴게실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목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피진정인 안○○은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위 자신의 주장요지 가).항과 같이 폭언 및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2009. 3월 중순 20:00경 내무반에서 피진정인 장○○이 피해자의 심리검사용지를 보여주자 이에 동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새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한 사실, 같은 해 4월 초경 지하식당 흡연실에서 피해자의 불성실한 생활태도를 지적하며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찬 사실, 또한 평소 경비교통과장이 개별면담을 통해 교양할 때 피해자에게

고참병들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강요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경찰서장은 피진정인 장○○과 안○○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중 일부의 구타 및 가혹행위 사실을 감찰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2009. 4. 14.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77조(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등을 적용, 각 영창 7일 및 10일의 징계처분을 하고, 이어 5일간 기율교육대 입교조치를 하였으며, ○○지방경찰청장은 같은 달 20. 위 피진정인들에 대한 전배상신을 받아들여 다른 관할의 근무지로 각 전보발령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09. 4. 9. 자신의 피해사실이 모친과 경찰관계자에게 알려진 직후부터 같은 달 10. 울산 소재 ○○의료재단 ○○병원 신경정신과 및 같은 달 13. 서울경찰병원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다가 자해를 시도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서울경찰병원에 입원하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

2) 판단

가) 피진정인 장○○과 안○○은 2008. 12. 26. 피해자가 ○○○○경찰서에 전입하여 2009. 4. 10. 우울증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때까지 피해자의 복무 및 생활태도에 불만을 품고 이를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위 인정사실 가), 나)와 같이 지속적으로 폭언, 구타, 기합 등 가혹행위를 하고, 이와 같은 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관물함을 임의로 뒤져 육군훈련수첩의 기재내용을 파기하는 한편, 피해자의 심리검사기재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게 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위 피진정인들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위원회는 진정조사를 통해 피진정

인들의 새로운 인권침해사실을 다수 확인하였으나 ○○○경찰서장이 이미 일부 확인된 구타 등 가혹행위를 이유로 피진정인들에게 징계처분을 하였고, 진정인과 피해자가 가해자인 동 피진정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 과중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동인들 또한 스스로의 위법·부당한 행위사실을 상당부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고발 등 형사조치를 하는 것 보다는 신임대원 및 복무부적응 후임대원들과의 인권 친화적 관계형성을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근무 중 입은 피해로 인하여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조속히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정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복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전의경 복무관리 감독 책임 등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전의경복무관리에 관하여 「전투경찰순경등관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보조요원에 대한 일과시간 후 감독책임 중 당직계통에서의 책임은 당직 근무시간에 한하며, 기타 시간은 소속 계장·과장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경찰청장이 2009. 2. 18. 각 관할 경찰서로 하달한 ‘행정보조 전의경에 대한 근무감독 및 신상면담기준’ 및 울산경찰서장이 수립한 ‘2009년 전의경 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의하면, 교통의경의 경우, 일과시간의 1차 감독자는 교통안전계 서무(외근)반장, 2차 감독자는 교통안전계장, 3차 감독자는 경비과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일과시간 후에는 1차 감독자는 당직 타격대장, 2차 감독자는 상황담당관, 3차 감독자는 상황관리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일과시간 및 일과시간 후 1, 2, 3차 복무관리 감독자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업무분장에 의하면, 전의경의 복무관리 업무는 경비교통과장인 피진정인 김○○이 총괄하고, 중간 관리감독자로 경비작전계장인 피진정인 박○○, 그리고 전의경 담당 및 주간 112타격대장으로 피진정인 김○○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바, 동인들은 실질적으로 해당경찰서의 전의경 구타사고예방 및 관리개선을 위한 업무를 기획·집행하고 있고, 위와 같은 3단계에 걸친 복무관리 감독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할 책임이 있다.

다) 위 피진정인 김○○ 등은 피해자가 2008. 12. 26. 울산울진경찰서 전입 직후인 2009년 1월부터 피진정인 장○○과 안○○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점심시간 또는 저녁시간에 의경내무반, 식당세척장 및 휴게실 등에서 폭언 및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으나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내성적인 성격 등으로 복무부적응으로 겪는 애로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아울러 신병관리를 위한 심리검사 및 경비교통과장의 정기면담에 대한 피진정인 장○○과 안○○의 부당한 사전개입을 예방하지 못하였다.

라) ○○○○경찰서장은 2009. 4. 14. 징계위원회를 열어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가 발생한 해당시간대의 1, 2차 근무감독자로서 복무규율위반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교통안전계장 경위 김○○을 비롯한 112타격대장 등 관련자 8명에 대하여 계고 및 특별교양 조치한 사실은 있으나 전의경 복무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관계자인 피진정인 김○○, 박○○, 김○○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2007년에 ‘전의경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종합 제도 개선 정책권고’를, 2008년에는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직권조사결과 및 제도개선 권고’를 통하여 전의경의 인권 및 근무여건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촉진하는 한

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전의경 구타가혹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 및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자의 대한 인권교육을 정례화 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경찰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나)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지속적인 폭언 및 구타 등의 가혹행위가 예방되지 못한 정황을 살펴보면, 첫째, 구타 등 가혹행위가 경찰관들의 관리가 소홀한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대의 내무반 및 식기세척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소관업무 근무지와는 별개로 밀착관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 둘째, 피해자가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가해자들이 경찰관리자들의 상담일정 및 계획을 미리 아는 경우 사전위협을 통해 의사표현을 억압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 셋째, 신임대원 100일 관리 계획에 따른 심리검사 및 설문조사를 별도의 시간 및 공간을 이용하여 평온한 상태에서 하지 아니하고 고참대원 등 다른 대원들이 함께 있는 내무반에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공개될 가능성이 많아 내밀한 고충을 토로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 넷째, 경찰서 단위 전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운용부서’와 ‘당직근무자’, 그리고 ‘주무부서’라는 3개의 단위로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어 내무반 생활 및 식사시간 등과 같은 업무전환 시기에는 관리감독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크고 또한 각 근무지 및 전의경관리 주무담당자간 업무지휘체계가 수립되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 다섯째, 일과시간 이후 당직근무를 서는 112타격대장 및 상황담당관 등을 위한 전의경 구타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점검방법 등 행동지침이 미비하고 관련 교육이 취약했던 점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전의경 복무관리 및 구타가혹행위 예방 주무담당자인 피진정인 김○○, 박○○, 김○○은 당시 관리시스템상의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의경 ‘운용부서’와 ‘당직근무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등 소관업무를 엄정히 수행해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및 복무부적응 등의 애로사항을 미연에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되는바, 이는 「헌법」 제10조의 국가의 보호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전·의경의 구타·가혹행위를 예방목적 행정명령인 「전투경찰순경등 관리규칙」 제77조(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전·의경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의경 설문 및 면담시행 시 보다 내밀하게 자신의 애로사항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장○○과 안○○에 대하여 전·의경 선임 및 후임대원 상호간의 인권 친화적 관계형성을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조속히 ‘전투경찰순경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고,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김○○, 박○○, 김○○에 대하여 전·의경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소속 전·의경대원들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복무관리에 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행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시스템을 개선하고, 전·의경 설문 및 면담시행 시 보다 내밀하게 자신의 애로사항을 표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마련할 것을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제 [2] 장 구금시설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 제4집 2009~2011



1. 생명권 침해

1

2009. 11. 9.자 08진인4669결정[사망과 관련한 인권 침해]

알코올중독에 따른 금단증상이 발생한 수용자에 대해 강박을 실시하고,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지 못하여 진료를 실시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피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피진정인 1의 소속기관의 장인 피진정인 2에게 경고조치를, 피진정인 2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유가족 및 진정인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요청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들 및 00교도소의 보안과장, 관구계장, 사동근무자들은 알코올 중독에 따른 진전, 섬망 등의 금단증상이 피해자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설사 그러하지 않더라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사유로 계구를 사용함으로써 정신병원에서 실시하는 강박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고,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지 못했고,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실시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2】 이에 법무부 장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코올중독 노역 수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과, 피진정인 2에 대해서 지휘·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신체보호조치를 게을리 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직무집행상 과실을 물어 징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권고함.

【3】 또한,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위해서는 진정인을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7. 1. 22. 06진인1140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5. 6. 21. 04진인4609 결정,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 제95조, 제97조

【진 정 인】 이○○

【피 해 자】 故 이○○

【피진정인】 1. 박○○

2. ○○교도소장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알콜중독 노역수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과, 피진정인 2에 대해서 지휘·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교도소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직무집행상 과실책임을 물어 징계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인 등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에 대하여 병원 입원치료를 선행하지 않아 2008. 7. 29.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교도소 보건의료과장 박○○)

1) 피해자 이00은 2008. 7. 25.(금) 22:35경 00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어 입소한 후, 같은 달 28.(월) 오전 보건의료과에서 신입자 건강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피해자의 신체상태는 대체로 양호했다. 이전의 병력과 치료여부를 묻는 문진에서 피해자가 간질, 간경화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이야기하며 입소 전에 복용하고 있던 약품을 계속 먹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언어구사 및 정신상태가 안정되어 있었다. 다만 건강진단 도중 손을 바르르 떠는 것이 관찰되어 알코올남용이 의심되기는 했으나 확진이 어려워 혈액검사 결과를 봐서 조치하기로 하고 혈액채취를 했다.

2) 2008. 7. 28. 19:30경 보건의료과에 동행되어 온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땀을 흘리는 증세를 보여 차입약을 복용했는지 묻자 아니라고 대답하여 즉시 차입약을 먹도록 했다. 혈압측정결과 수치가 160/100mgHg로 혈압이 높았고 “담배를 사야 한다. 나가게 해 달라.”고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누워서 안정을 취하게 한 후 경과를 관찰하였더니 안정을 찾았다. 그래서 거실에 돌아가서도 누워 안정을 취할 것을 당부하고 거실로 보냈다.

3) 2008. 7. 29. 사동근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고성을 지르며 거실문을 발로 찼고, 사동복도에 나와서는 벽에 머리를 받으려 하는 등 소란 및 자해행위를 하여 타 수용자의 평온을 현저히 방해하였고,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서 보호수용하였다.

4) 신입자에 대한 초기 의료처우는 신입자가 입소 전 건강상태 및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정확히 파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주로 신입자의 진술에 의존해 진료에 참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피해자는 입소한 후 2~3일 사이에 불안증상, 손떨림증상을 보였으며, 이외에 특별한 소견이 없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알코올중독임을 진단한다는 것은 현재 ○○교도소의 의료설비 사정으로 비추어보면 불가능에 가깝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2008. 7. 25. ○○교도소 야간근무자 고○○, 2008. 7. 28. 야간근무자 권○○, 허○○, 류○○, 박○○, 정○○, 이○○, 이○○, 같은 달 29. 근무자 박○○, 이○○, 이○○, 김○○, 정○○, 박○○, 최○○, 위○○, 나○○의 진술서 및 ○○교도소 근무보고서, 특이수용자 동정기록부, 계구사용심사부, 동태시찰상황, 피해자의 동료수용자들의 진술 등의 자료, 피해자의 부검을 담당했던 국립과학연구소 ○○분소 법의학 과장인 박○○의 의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8. 2. 1. 00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 300만원(환형유치 60일)을 선고받고 확정되어, 2008. 7. 25. 00교도소에 노역 유치되어 2008. 7. 25.(금) 22:35경 노역수용자 거실인 ○○교도소 기결8 하10실에 수용되었다.

나. 피해자는 ○○교도소 수용 중 거실 수용자들에게 본인은 술을 많이 먹어 간과 심장, 폐가 좋지 않고 고혈압이 있어 약을 끼고 산다고 말하였으며, 10종에 이르는 약(입소시 가지고 온 차입약)을 복용하고 손발을 떨면서 가끔씩 혼잣말로

“담배를 사러가야 하니 문을 열어 달라.”고 말하였다.

다. 2008. 7. 28.(월) 19:30경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함에 따라 보건의료과에서 피해자에 대한 진료가 실시되었으며, 당시 피해자의 혈압은 160/100mmHg였고, 피해자가 간장질환과 우측상복부 및 좌측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여 교도관의 지시에 따라 입소시 피해자가 가지고 온 차입약을 복용한 후 상태가 안정되어 20:30경 수용거실에 입실하였다.

라. 2008. 7. 28(월) 21:00경 피해자는 수용거실에서 서성이며 아무에게나 시비조로 말하며 “나를 왜 가둬 두느냐? 씹할 새끼야! 문 열어라. 담배 사러 가게. 택시를 불러라. 집에 가야하니 문 열어라. 씹할 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양팔로 거실문을 차고 거실문에 머리를 수회 들이받았으며, 거실 내 모기장을 찢었다. 같은 날 21:20경 담당근무자가 피해자를 진정 및 격리수용하기 위해 동행을 할 때 피해자가 또 다시 배가 아프다고 하여 보건과 진료실로 동행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상태가 안정됨에 따라 피해자는 조사수용되는 대신 빈 거실인 기결 7하6실로 전실 조치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지 않고 간간히 횡설수설했지만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수용생활을 방해할 정도는 아니었다.

마. 2008. 7. 29.(화) 01:40경, 피해자가 갑자기 거실문을 발로 차면서 “야 씹할 놈들아. 나 집에 가야 돼. 왜 나를 컨테이너에 가두냐? 니들 다 집어넣을 거야. 씹새끼들아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워 사동전체 수용자들이 잠에서 깨어 항의를 했고, 출동한 관구교감 등이 피해자를 출실시킨 후 양팔을 잡고 관구실로 동행하자 피해자가 동행근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팔을 뿌리치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나 집에 가야한다. 니그들 다 집어넣을 거야. 일대일로 붙어.”라고 소리를 치며 복도 벽에 머리를 받으려고 했다. 야간 당직 관구교감은 피해자에게 폭행 및 자해의 우려가 현저하여 계구(금속수갑)를 사용하여 보호하겠다고 고지한 후, 금속수갑 1개를 사용하여 같은 날 02:00경 보호사동인 10사1실

에 보호수용했다.

바. 피해자는 보호수용되어 있던 2008. 7. 29. 02:00경부터 13:50경까지 잠을 한숨도 자지 않은 채 계속해서 거실문을 차고 거실문에 머리를 들이받으며 큰소리로 “문 열어 씹힐 놈아. 뒤질래? 문 안 열어. 칼이라도 줘 바. 내가 열고 나갈라니까. 쌍놈의 새끼야 말 좀 들어.”라는 등의 소리를 지르며 수갑을 풀기 위해 수갑 찬 손목을 비틀었다. 또한 수갑을 찬 양손으로 거실문을 치는 행위를 수차례 하였고, 근무자가 아침과 점심식사를 권유하자, 식사를 거부하면서 근무자에게 “술과 담배가 있으면 주라. 없으면 내가 나가서 사 올게.”라고 하였다. 같은 날 10:30경 피진정인 2가 순시할 때 피해자가 거실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자 피진정인 2는 피해자에 대한 동정시찰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 2008. 7. 29. 피진정인 2는 동정시찰상황에 대해 판정하며, ‘동정시찰철저, 보호적 차원에서 계구사용(사유해제시 즉시 해갑), 의무관의 진료실시’라고 동정시찰상황표에 기록하였다. 피해자의 진료기록부에는 이와 관련하여 진료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 2008. 7. 29. 14:00경 피해자는 물을 두 모금 마시고 머리를 거실문 쪽으로 향하고 양손을 가슴에 얹은 상태로 눈을 감고 있었다. 같은 날 14:17경 관구교감 이00이 피해자의 보호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10사1실에 순시를 와서 피해자의 이름을 4차례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피해자가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다. 이에 즉각 보건의료과와 보안과에 통보하였고, 의무관은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하였으나 ○○병원에 도착한 같은 날 14:37 피해자는 사망(사망원인 미상)하였다.

자. 2008. 7. 3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소(○○ ○○○ 소재)에서 피해자 부검이 실시되었고, 2008. 8. 28.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인은

진전섬망이었다.

차. 장기적인 알코올중독자가 갑자기 음주를 중단하거나 또는 감량했을 때 섬망(의식의 혼탁), 진전(떨림), 자율신경기능 항진, 망상, 환각, 안절부절못하는 행동, 지남력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이 증상들은 음주를 중단한 후 1~3일째 시작하여 4~5일에 최고조에 달하고 다른 합병증이 없으면 5~7일에 해소되며,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5~15%의 사망률을 보이며 사망의 기전은 신경매개성 심정지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진전 및 섬망이 나타나고 있는 중독자에 대하여 강박조치를 취할 경우 중독자에게 저항 등으로 인한 급격한 체력소모와 탈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강박조치를 취할 때 아주 신중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카. 피해자가 사망한 이 사건에 대하여 2008. 9. 3. 00지방검찰청은 사인이 진전섬망으로 밝혀졌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했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교도소 직원 등에 대한 징계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5.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들 및 ○○교도소의 보안과장, 관구계장, 사동 근무자들은 알코올중독에 따른 진전, 섬망 등의 금단증상이 피해자에게 나타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설사 그러하지 않더라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사유로 계구를 사용함으로써 정신병원에서 실시하는 강박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피해자를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지 못했고,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 대한 진료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실시하지 않았다. 즉, 피진정인들은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5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에 따라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진정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10

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법무부 장관에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알코올중독 노역수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과, 피진정인 2에 대해서 지휘관리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보호조치를 게을리 한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직무집행상 과실을 물어 징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족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실질적인 구제조치를 위해서는 진정인을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점을 고려할 때, 진정인 개인으로서는 법적 구제조치를 수행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진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같은 법 제47조(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2. 서신 및 집필

1

2009. 5. 11.자 09진인862결정[미결수용자 전화사용 횟수 제한에 의한 인권침해]

- 【1】** ○○구치소장(피진정인 1)에게 수형자에 비해 미결수용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전화통화 제한 조치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 【2】** 법무부장관에게(피진정인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화통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 【1】** 미결수용자를 포함하여 교정시설에 구금 및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8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4조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국제적인 기준인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92조와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원칙 19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제25조에서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제90조에서 수형자에 대한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행규칙」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90조와 같은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한 권리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 비해 오히려 불합리하게 제한될 수 있다.
- 【2】** 진정인과 같은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및 「법률」 제7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러한 추정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고 수형자에 비하여 더욱 두텁게 제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결수용자에 대한 전화통화의 제한은 무죄 추정
의 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진정인
과 같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수형자에 비해 오히려 엄격하게 전화 통화
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 및 「법률」 제4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
정인의 전화통화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8조, 제27조, 제37조, 「형사소송법」 제70조, 「형의 집
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4조, 제79조, 「형의 집행 및 수용
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90조,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
칙」 제92조,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원칙 19

【진 정 인】 방○○

【피진정인】 1. ○○구치소장
2. 법무부장관 김○○

【주 문】 1. 00구치소장에게 수형자에 비해 미결수용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전화통화 제한 조치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000장관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9조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화통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진정을 제기할 당시 00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미결수였으며, 위 구
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기간 중 진정인의 모친이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치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의 모친 등과의 전화접견을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 1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월 1회로 제한하여
진정인의 외부교통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00구치소장)

1) 분류처우 업무지침상 1급 수형자는 월 5회 이내, 2급 수형자는 월 3회 이내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 2급 수형자가 급증하고 있고,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가 3대뿐이어서 미결수용자의 전화사용을 전화사용이 보장된 1, 2급 수형자만큼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결수용자의 경우 전화사용 이유가 부모의 병환 등 확인이 불가능한 이유 등으로 전화사용 불허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2) 미결수용자의 경우는 수형자와 달리 1일 1회 및 토요일(휴일) 접견이 보장되어 있고, 별도의 변호인 접견도 가능하며, 소송문제 등 특별한 사정인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통하여 전화 미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을 신속히 해결해 주고 있다.

3) 진정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기재한 보고문을 살펴보면, 통화사유에는 모친의 뇌출혈로 인한 안부이지만 그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개인적인 내용(영치금 등)으로 통화를 했음을 알 수 있다. 00구치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월 1회 전화사용을 허용하지만, 접견이 한 달 동안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부서장의 허가를 득하여 추가로 전화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 목록과 같음.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및 진정인이 제출한 2009. 2월중 전화 보고문(3매)과 피진정인의 답변서 및 전화사용 기록부, 전화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진정인은 2009. 1. 30. 00구치소에서 00구치소로 이입되어 2009. 2. 3. 진정인의 동생 000에게 전화하여 모친의 병환을 확인하고 이후 같은 달에 2회 더 전화통화 보고문을 제출했지만 전화통화가 불허되어 한달이 지난 2009. 3. 4.에서야 통화를 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전화사용 이유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진정인이 제출한 보고문 내용(어머니 병환)이 목적과 다르다는 이유(영치금 차입)로 진정인에게 전화사용을 월 1회만 허용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수형자의 경우엔 분류처우 급수에 따라 1급 수형자는 월 5회 이내, 2급 수형자는 월 3회 이내 전화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미결수용자는 전화사용 횟수를 원칙적으로 월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라. 미결수용자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수형자의 경우엔 「시행규칙」 제90조에 따라 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전화통화를 허용하고 있다.

5.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의 제한조치에 의하여 전화통화를 수형자보다도 불리하게 제한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미결수용자를 포함하여 교정시설에 구금 및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가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8조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4조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국제적인 기준인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제92조와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원칙 19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제25조에서 수용자가 교정 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제90조에서 수형자에 대한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행규칙」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제90조와 같은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한 권리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수형자에 비해 오히려 불합리하게 제한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1은 위 피진정인의 주장요지의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인과 같은 미결수용자는 「헌법」 제27조 및 「법률」 제7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러한 추정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아야 하고 수형자에 비하여 더욱 두텁게 제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결수용자에 대한 전화통화의 제한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미결수용자의 전화통화에 관한 권리를 제한함에 있어서 타당한 사유라고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진정인과 같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수형자에 비해 오히려 엄격하게 전화 통화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8조 및 「법률」 제44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전화통화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는 피진정인 1이 수형자에 비해 미결수용자에게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전화통화 제한 조치를 시정하고, 나아가 피진정인 1의 감독 기관인 피진정인 2가 「법률」 제79조 등의 관련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화통화와 관련된 「시행규칙」 등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5. 1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별지】 관련법령 목록

1. 「헌법」(전부개정 1987. 10. 29 헌법 제10호)

가. 제18조(통신의 자유)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나.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의 무죄추정, 진술권)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제한)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2.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

가.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 2007. 12. 21. 시행일 2008. 12. 22)

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자"란 징역형·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사형확정자"란 사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수용자"란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그 밖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나. 제44조(전화통화)

- ①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의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에는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하려면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⑤ 전화통화의 허가범위, 통화내용의 청취·녹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다. 제79조(미결수용자 처우의 원칙) 미결수용자는 무죄의 추정을 받으며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는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

655호)

가. 제25조(전화통화의 허가)

① 소장은 전화통화(발신하는 것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한 수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2.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
3. 「형사소송법」 제91조 및 같은 법 제209조에 따라 접견·서신수수 금지 결정을 하였을 때
4.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전화번호와 수신자(수용자와 통화할 상대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신자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제1항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③ 전화통화의 통화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분 이내로 한다.

나. 제90조(전화통화의 허용횟수)

① 수형자의 처우급별 전화통화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월 5회 이내
2. 2급: 월 3회 이내

② 소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급 2급 이상 수형자의 전화통화 허용횟수를 늘릴 수 있다.

5. 「피구금자처우최저기준규칙」

가. 제92조

미결구금자는 구금 사실을 즉시 가족에게 알리도록 허용되어야 하고, 가족 및 친구와 통신하고 이들의 방문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편의가 전부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제한과 감시는 오직 재판과 시설의 안전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6.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원칙 19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특히 가족의 방문을 받고 가족과 통신할 권리를 가지며, 외부사회와 교통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한다. 단,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정해진 합리적인 조건과 제한에 따른다.

2

2010. 9. 15.자 09진인4729·10진정0100700·10진정
0145000(병합)결정 [교정 시설의 부당한 서신 검열로
인한 인권침해]

법무부장관에게 ①수형자의 서신 검열 및 수·발신 불허 사유를 법령에 최
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②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및 수용자교육교화운
영지침 제29조를 수형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③이
와 같은 원칙이 현장 교도소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서신관련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교정시설에 보급하고 담당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
정인에게 진정한 또는 피해자의 서신을 즉시 발송할 것과, 향후 이와 같은 부
당한 처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직원 교육에 각별히 유의
하도록 권고

【결정요지】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교도소의 검열제도 자체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것
이 국내 및 국제기준임.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검열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며,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국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서신에 대해서만
검열을 허용해야 할 것이며, 검열한 서신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
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짐. 그러나 현행
법규와 지침의 서신검열 조건인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너무
나 넓은 범위의 서신들을 검열의 위험에 놓이도록 하기 때문에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검열사유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
고 판단

【참조조문】

【진 정 인】 박○○, 김○○

【피 해 자】 박○○, 김○○, 이○○

【피진정인】 ○○직업훈련교도소장, ○○교도소장, ○○교도소장

-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①수형자의 서신 검열 및 수·발신 불허 사유를 법령에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②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및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 제29조를 수형자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 ③이와 같은 원칙이 현장 교도소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서신관련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교정시설에 보급하고 담당자들을 교육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서신을 즉시 발송할 것과, 향후 이와 같은 부당한 처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담당직원 교육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09진인0004729 관련

진정인 박○○은 2009. 11. 12. 평화운동 시민단체인 ‘전쟁없는 세상’에 보낸 진정인의 서신을 ○○직업훈련교도소장이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10진정0100700 관련

진정인 김○○은 2010. 2. 24. ○○경찰서장에게 보낸 서신 및 같은 해 3. 10. ○○경찰서장 및 영화감독 정○○ 등에게 보낸 진정인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10진정0145000 관련

진정인 김○○은 피해자 이○○이 2010. 3. 12. 교도소의 부적절한 처우로

공황증이 악화되어 자신의 부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냈으나, ○○교도소장이 부당하게 검열하고 발송을 불허하여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및 참고인

1) 09진인0004729 관련

○○직업훈련교도소장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수신자가 특정단 체일 경우 서신을 검열하도록 하는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인의 서신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형사법령에 저촉 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열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한 결과, ‘진정인은 교도소내 구매물품의 공급과정에 대해 비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고, 교도소에서 뉴스를 생방송으로 볼 수 없어서 부당하며, 수형자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형자의 거실을 검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되므로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감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서신의 주장내용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로 추론한 것이거나 일부 허위사실도 포함되어 있어서 발송을 불허하였다’고 주장한다.

2) 10진정0100700 관련

○○교도소장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진정인이 2010. 2. 24.

○○경찰서로 발송한 서신은 사실은 진정인이 우체국의 등기 접수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음에도 마치 교도소측이 위법하게 지연 처리한 것처럼 주장하는 내용으로, 서신발송 불허 사유인 거짓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발송 불허사유를 진정인에게 설명하고 적법하게 영치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진정인이 2010. 3. 10. 영화감독 정○○ 등에게 보낸 서신은 봉투 없이 서신 자체를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서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을 설명하고 모든 밀봉을 제거한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발송을 불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10진정0145000 관련

○○교도소장은 '피해자 이○○이 2010. 3. 24. 부친에게 서신을 제출하였지만, 2009. 12. 26. 피해자가 동료수용자와 싸움을 하여 징벌 처분을 받은 이래 입실거부로 반복적 징벌처분을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서신에 「형집행법」 제43조 제4항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검열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의 서신을 검열한 결과, '자신의 정신적 불안 증세, 혼거생활 및 고시반 출역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의 내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내용과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내용 등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어 피해자와 상담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교도관의 지적을 수궁하여 제출한 서신을 돌려받았으므로 부당하게 서신 발송을 불허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09진인0004729 관련

진정인은 2009. 11. 12. ‘교도소 내 판매물품 공급과정의 비리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의 서신을 반전평화운동 단체인 ‘전쟁없는 세상’ 앞으로 보내고자 하였으나, ○○직업훈련교도소의 서신검열 후 발송 불허되었다.

진정인 서신에 대한 검열 및 발송 불허 사유에 대해, ○○직업훈련교도소 사회복귀과 서신담당 박○○는 ‘진정인의 서신에 대해 금지물품 동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신자가 ‘전쟁없는 세상’으로 되어 있어서 「형집행법」이 규정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보고 후 검열하였다’고 진술(2010. 8. 16.)하고 있다.

또한 같은 교도소의 ‘수용자 허위사실 기재 의심 서신 건 관련 조사결과 보고’(2009.11.19.)에는 ‘전쟁없는 세상’에 대한 동향보고 후 ‘진정인의 서신은 사회복귀과 서신담당 김○○이 보안검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신인이 위 단체 소속 김○○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검열을 실시한 결과 「형집행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다고 판단하여 정보사항처리부에 등재하고 조사지원팀에 통보하여 인지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진정인이 ‘교도소 내 판매물품의 독과점 공급’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전쟁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 보내는 서신에 대하여 피진정인이 ‘시설안전 및 질서유지’와 ‘수형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를 들어 발신을 불허한 것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의 맥락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 ‘교도소 내의 물품공급제도에 대한 비판이 외부로 알려져 교도소가 외부 사회의 비판에 처할 경우 교도소의 물품공급제도가 변화될 수 있고 수형자의 비판에 의해 그와 같은 변화가 실현된다면 다른 수형자들도 교도소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교정질서의 유지가 곤란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그러나 설령 교정기관을 비판하고 폄하하는 내용의 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발신을 금지한다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교도소에 대한 비판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이 때문에 다른 수형자들이 교도소에 대해 더욱 도전적인 태도를 가지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교도소의 책임일 뿐 비판을 제기한 사람의 책임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해 보면 이와 같은 우려는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진정인은 반전을 이유로 병역법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속해서 반전단체와 소통할 경우 진정인의 교화가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을 반대하는 것과 병역을 위계나 다른 탈법적인 방법으로써 피하는 것은 엄연히 별도의 사안이라는 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그 관련 단체와의 관계는 일반 범죄자와 범죄단체의 관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자체를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그 자체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상기해 보면 이 두 번째 우려 역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한 것은 관련법 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 10진정0100700 관련

진정인은 서신의 발송 지연과 관련하여 ○○교도소 서신담당 직원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내용의 서신을 2010. 2. 24. ○○경찰서장에게 보내고자 하였으나, ○○교도소의 서신 검열 후 발송 불허되었다. 또한 ○○교도소 내 비리를 고소하려고 하니 신변보호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의 서신을 같은 해 3. 10. ○○경찰서장 및 영화감독 정○○에게 보내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서신검열 후 발송 불허되었다.

진정인 서신에 대한 검열 및 발송 불허 사유에 대해, ○○교도소 서신담당 원○

○는 ‘통상 08:30경 우편물을 수거하여 수신자가 언론매체, 경찰서, 법원, 변호사 단체, 시민단체, 교정본부 등 일 경우에는 마약사범, 공안사범, 조직사범 및 관심 대상 수용자의 경우와 같이 검열하고 있으며, 고소, 고발, 진정, 헌법소원 등 송무 관련 서신은 고충처리반으로 인계하고 일반서신은 사회복지과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진정인이 2010. 2. 24. 보낸 서신과 관련하여, ○○교도소 서신표(2010. 2. 24.자)에는 ‘진정인의 서신은 교도소 서신탄당자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내용의 명백한 거짓사실이어서 「형집행법」 제43조 제5항 제4호(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및 제7호(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 의거하여 발신불허 처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진정인이 2010. 3. 10. 보낸 서신과 관련하여, ○○교도소 교도관 회의록(2010. 3. 15.자)에는 ‘진정인의 서신은 ○○경찰서장에게 ○○교도소 비리에 대한 고소를 하고자 하니 임의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인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외부기관에 유포하여 수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교화 또는 사회복지를 해칠 우려가 있어 발송 불허하기로 의결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형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하는 것은 「형집행법」에 각각 전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별도의 행정행위이지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하면서 작성한 문건들에는 이 두 가지의 구분이 모호하며, 이는 교정행정의 서신관련 업무처리 기준이 애매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서신이 명백한 허위사실이어서 발신 불허를 결정했다고 하지만, 서신발송 지연이 고의적인 직무유기라는 고발과 교도소 내 비리문제에

대한 고발은 교도관이 사전에 허위사실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만일 이런 행위가 허용된다면 이는 형 집행의 목적을 넘어서는 권한 남용일 뿐 아니라 수형자에게도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한 것은 관련법 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다. 10진정0145000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교도소 동태시찰 사항(2010. 4. 1.자)에는 ‘이○○은 교도소측이 서신검열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아버지에게 보낸 서신을 검열한 후 회수하도록 종용하였고, 문제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였음에도 또 다시 부당하게 검열하여 발송을 불허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서신담당 교도관 이○○를 ○○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교도소 동태시찰 사항(2010. 3. 12.자)에는 ‘서신담당 이○○가 피해자 이○○의 서신에 의무과 등 관련부서와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 있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피해자에게 부모님이 이 편지를 받으면 크게 걱정하지 않겠느냐며 서신 내용을 유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상담을 통해 직접 ‘교화’하여 서신 발송을 철회하도록 ‘설득’하였을 뿐 현행 법규에 정해진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피해자의 부모가 걱정할 것을 걱정하여 발신을 불허하고 설유했다’고 한 것은 교정현장에서 수형자의 서신수발 관련 업무가 얼마나 교도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서신을 검열하고 발신을 불허한 것은 관련법 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4. 수형자 서신검열 및 발송허가 제도에 대한 판단

수형자의 서신에 대한 교도소의 검열제도 자체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국내 및 국제기준이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검열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에서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국가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되는 서신에 대해서만 검열을 허용해야 할 것이며, 검열한 서신에 대해서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현행 법규와 지침의 서신검열 조건인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 또는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 등은 너무나 광범위하여 너무나 넓은 범위의 서신들을 검열의 위험에 놓이도록 하기 때문에 자의적 기준의 적용을 최소화하고 검열사유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형집행법」은 수형자 서신을 검열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모두 서신을 보기 전에 검열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가 ‘서신을 불합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법무부 예규 제944호) 제29조는 ‘소장은 법 제92조에 정한 금지물품 반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서신을 개봉하여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서 법조항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서신을 불합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되면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검열을 허용한 법 제43조를 실질적으로는 형해화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서신의 검열을 너무 쉽게 허용함은 물론 검열을 한 물리적 흔적이 남지 않기 때문에

법 제43조의 준수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 진정사건의 경우를 보면 서신검열이 교도소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외부자와의 범죄공모 가능성, 형사 피해자에 대한 협박 가능성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렇듯 수형자 인권이나 교도관 비리 등 교정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자칫 교도소 내부의 문제점을 은폐하는데 서신검열제도를 악용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조 국 위원 최윤희

3. 시설 및 처우

1

2010. 6. 7.자 10진정0034000결정 [교도소의 부당한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1.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장과 보안과장, 배방담당 교도관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 과밀수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 피진정인에게, 조사·징벌자도 일반수용자와 같이 목욕시설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조사·징벌실의 식기도 양질의 식기로 대체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교도소는 3.3㎡가 채 안되는 비좁은 징벌거실에 4개월간 모두 100회에 걸쳐 3명 이상을 수용하였음. 이는 교정시설 형편상 과밀수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인권침해임. 특히 빈 거실이 있었는데도 3명씩 수용한 사례가 있었던 점, 교정시설 정원기준 수용률을 단순 추계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에 몇 명이 몇 일간 수용되고 있는지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교정시설 운영상의 불가피한 필요성 이외에 교정 공무원들의 부족한 인권의식도 과밀수용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됨.
- 【2】** ○○교도소는 징벌실 수용자들을 징벌실내 화장실에서 온수통 2개로 목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이수용자 목욕 등을 감안하더라도슬기롭게 목욕 계획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30여명의 징벌사동 수용자들 중 희망자들도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징벌실 수용자에 대하여 주 1회에 한하여 물통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도록 조치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3】 조사·징벌실에 3명이상 과밀 수용될 경우, 한명은 종이식탁도 사용하지 못하고 방바닥에 식기를 놓은 채 몸을 구부려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은 수용자가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최근 환경호르몬 검출 등 논란이 있어서 1회용 식기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터에 매끼를 환경호르몬 검출 우려가 있는 1회용 식기로 식사하도록 한 것 또한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참조조문】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교도소장

-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장과 보안과장, 배방담당 교도관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 과밀수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에게, 조사·징벌자도 일반수용자와 같이 목욕시설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조사·징벌실의 식기도 양질의 식기로 대체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라항, 마항, 바항, 사항, 아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비좁은 징벌실에 평균 2~3명의 조사·징벌자를 수용하고 있는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인은 징벌실 수용자들에 대하여는 주1회 물통을 이용해서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다. 징벌실에 있는 종이식탁이 너무 작아서 세 사람 중 한명은 방바닥에 그릇을 놓고 먹어야 하는 형편이다. 또한 일반 수용자와 달리 1회용 용기를 식기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라. 교도소 규율 위반에 대한 조사는 징벌사동에서 진행되는데, 조사기간을 모두 징벌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마. 진정인은 2009. 12. 3. ○○교도소 입소 후 보고전을 내고 질병으로 인한 출역면제 심사를 요청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신입 상담 등 일체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작업 출역을 결정하였다. 이는 인권침해이다.

바. 진정인은 피복을 입소(2009. 12. 3.)시 1벌만 지급받아 지금까지 세탁을 한번도 하지 못하고 있고, 관용모포는 2010. 1. 23. 이후 일광소독도 못한 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인바 이는 인권침해이다.

사. 피진정인이 진정인과 같이 작업거부를 한 다른 수형자는 훈방하면서 진정인만 징벌 처분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아. 진정인은 ○○구치소에서 담요를 매입하여 사용해 왔는데 피진정인이 모포 수량제한을 이유로 영치를 불허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이미 교도소의 정원이 초과되어 과밀 수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다, 기결수와 미결수의 분리, 조사자와 징벌자의 분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대립관계 수용자간 분리 등을 해야 하는 사정이 있어 협소한 징벌 거실에 일시적으로 2~3명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징벌사동 수용자들에 대하여는 주1회 온수 2통을 공급하여 거실 내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징벌자들이 일반수용자들 보다 수용자간 적대감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함께 목욕할 경우 폭행사건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징벌사동에서는 수용자가 심리적 불안상태에서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일반사동과 달리 깨지지 않는 부드러운 식기와 종이 탁자를 사용하고 있다.

진정요지 라항과 관련하여,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에 따라 조사기간 동안 제한된 처우를 감안하여 조사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벌기간에 산입할 수 있으며, 진정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것이다.

진정요지 마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은 이입한 날인 2009. 12. 3.과 징벌중인 같은 달 17일, 18일, 23일, 29일, 31일 등 여러 차례 교도소 의무관 최○○의 진료를 받았다. 진정인은 허리위 목 디스크, 간질환 등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사진단 결과 수행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진정요지 바항과 관련하여, 출역 수용자는 동복 2벌, 비출역 수용자는 동복 1벌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구실에 여분의 의복이 15벌 이상 비치되어 있어서 세탁 시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진정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세탁을 하지 못한 것이며, 관용모포도 수용자 요청 시 수시로 교체가 가능하다.

진정요지 사항과 관련하여, 수용자 이○○는 출역거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훈계 처분하고 작업장에 출역을 하도록 하였으나, 진정인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몸이 불편하여 출역을 하지 못 하겠다’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사회에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수용자가 작업장에 있어서 출역을 하지 못 하겠다’고 하는 등 반성의 여지가 없이 출역을 면하려고만 하여 징계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진정요지 사항과 관련하여 ○○구치소에서 구입한 개인용 모포도 사용할 수 있으나, 영치금품 관리지침(법무부 예규 제908호)에 따라 모포 2장만 소지할 수 있다.

3.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

1) 진정요지 사항과 관련하여

가) ○○교도소 징벌사동은 12개의 조사·징벌실이 있고, 각 거실은 가로 230cm, 세로 143cm이고 거실 내 화장실은 가로 105cm, 세로 143cm로 별도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합한 면적은 거실 1개당 4.79㎡이다.

나)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924호) 제82조(수용 정원 산정기준) 제1항 제2호는 ‘교정시설 수용정원 산정기준은 독거실 1실 당 1명, 혼거실 2.58㎡당 1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2명이 사용하는 거실은 최소한 5.16㎡ 이상이어야 한다.

다) 피진정인이 제출한 징벌사동 거실별수용자 정보 현황(2009. 12. 7. ~ 2010. 3. 31.) 및 일일 야간 인원 점검표를 살펴보면, ○○교도소는 이 기간 동안 모두 100회에 걸쳐 4.79㎡(1.45평)의 거실에 3명을 수용하였다.

라) ○○교도소는 조사·징벌사동(6동)에 13호실을 두고 특이 수용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고, 징벌 거실에 3명을 수용한 100회 동안 1인만 수용된 거실이 항상 있었으며 특히 이중 6회는 비어있는 징벌거실이 있었는데도 과밀 수용을 한 경우였다.

마) 법무부가 운영중인 ‘보라미 시스템’의 ‘거실별 수용자정보 현황’은 과거 특정 일에 조사·징벌실에 수용되었던 재소자가 다른 교도소로 옮겨졌을 경우에는 자료에서 누락되는 등 시스템 설계상의 오류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 자료 외에는 거실별로 특정일에 수용되었던 재소자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는 없다.

바) 징벌거실에 3명 이상 과밀 수용하는 경우에 그 사유를 따로 명시하여 정리한 자료가 없으며, 대부분의 경우 동태시찰이나 거실지정 자료로 간접 확인 또는 추정 할 수밖에 없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가)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도소는 각 출역분야별로 1주일에 월, 화, 수, 목 4일 동안, 교도관 2명의 계호 하에, 1회 30명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1회당 20분 이내에 목욕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나) 다만, 수용자간 감정이 좋지 않은 경우나 중점 관리해야 할 수용자 등의 경우에는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따로 소수만 목욕을 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3)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가) ○○교도소는 나무책상이 흥기나 자해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어서 교정 본부의 지시에 따라 종이책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종이책상은 약60cm×40cm×30cm이다.

나) 징벌실에서 사용하는 식기는 사회에서 주로 야유회 또는 경조사 시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1회용 식기이다.

4) 진정요지 라항, 마항, 바항, 사항, 아항과 관련한 피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임을 확인하였다.

4. 판단

1)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조사자와 징벌자의 분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대립관계 수용자 간 분리 등의 필요성에 따라 일시적으로 3명씩 수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도소의 징벌거실에 3명 이상을 수용한 경우가 4개월간 모두 100회에 걸쳐 발생하였는데, 이를 일시적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빈 거실이 있었는데도 3명씩 수용한 사례가 있었던 점, 교정시설 정원기준 수용률을 단순 추계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면적에 몇 명이 몇 일간 수용되고 있는지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가 사실상 없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교정시설 운영상의 불가피한 필요성 이외에 교정 공무원들의 부족한 인권의식도 과밀수용의 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사회가 정한 법을 위반하여 그 죄 값을 치르고 있는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피구금자에 관한 인권기준의 기본 전제이며, 약 3.3㎡(1평)의 공간에 3명을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인 처우라고 할 것이며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는 1주일에 4일(월, 화, 수, 목) 동안, 교도관 2명의 계호 하에, 1회 30명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1회당 20분 이내에 목욕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목욕탕 정비 및 탈의시간을 감안하여 추산해 보면, 주4일 하루 6시간 1회당 30분의 목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650명 전원이 목욕하는 데에 1회당 13.5명이 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다면 일반수용자들은 20~25명씩 목욕을 하도록 하고 특이수용자들은 5~10명씩 목욕을 하도록 하는 등 ○○교도소장과 교도관들이 슬기롭게 계획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30여명의 징벌사동 수용자들도 일반 수용자들과 대면하지 않고도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징벌실 수용자에 대하여 주 1회에 한하여 물통을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도록 조치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3) 진정요지 다항과 관련하여

조사·징벌실에 3명이상 과밀 수용될 경우, 한명은 종이식탁도 사용하지 못하고 방바닥에 식기를 놓은 채 몸을 구부려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은 수용자가 굴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며, 최근 환경호르몬 검출 등 논란이 있어서 1회용 식기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터에 매끼를 환경호르몬 검출 우려가 있는 1회용 식기로 식사하도록 한 것 또한 「헌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4) 진정요지 라항, 마항, 바항, 사항, 아항은 조사결과, 피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이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조 국

4. 의료

1

2009. 6. 8.자 08진인2928결정 [구금시설내의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00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의료조치 미흡 및 직무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할 것과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직무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할 것, 그리고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보건의료과장인 피진정인 1은 2008. 6. 11. 16:00경 피해자가 보건의료과에 통증을 호소하며 동행되어 왔을 때 당일 오전에 피해자가 통증을 수차례 호소한 상태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산소만을 공급한 채 17:00경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17:15경 응급구조차량이 도착한 이후 이송도중에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진정인 1은 피해자와 같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흉통을 호소할 때에는 심장혈관이 좁아지고 심장근육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00구치소 내에서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인근병원(00구치소에서 차로 5분 내지 10분정도의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었다)으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이송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과 그러한 증상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의료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 1이 2008. 6. 11. 11: 15 이후 피해자가 수차례 같은 증세를 호소하였고 같은 날 오전과 오후 동일한 증세로 동행되어 왔다는 사유로 이와 같은 진료사항을 피해자의

건강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과 「수용자의료관리지침」 제17조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의사로서 만성질환자 및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관리함에 있어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진 정 인】 ○ ○ ○

【피 해 자】 ○ ○ ○

【피진정인】 1. ○ ○ ○

2. ○ ○ ○

3. ○ ○ ○

【주 문】 00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의료조치 미흡 및 직무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할 것과 피진정인 3에 대하여 직무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할 것, 그리고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 000(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2007. 7. 20. 00구치소에 입소하여 수용 생활을 하던 중 2008. 6. 11. 갑작스런 호흡곤란으로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았으나 결국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는 00구치소 측에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의료조치를 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000 :00구치소 보건의료과장)의 주장

피해자는 2007. 7. 20. 00구치소 입소 당시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투약중인 상태였고, 같은 해 8월에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할 계획이었다라고 진술하여 위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확인한 후 경과관찰을 위해 병사에 입병 조치되었다. 피해자가 수감되어 있던 기간 중 외부병원(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차입된 약물을 투여하며 경과를 관찰하고 정밀검사 및 약물투약을 위해 외부병원인 안양 샘병원으로 이송하여 아홉 차례의 진료를 시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혈액투석이 필요함을 고지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경과를 지켜보았다. 이후, 피해자의 상태악화가 우려되어 2008. 6. 10. 안양 샘병원 담당의사와 협의하여 2008. 6. 23. 혈액투석을 위한 혈관수술을 준비하고 있던 중 다음 날인 2008. 6. 11. 갑자기 피해자의 증상이 악화되어 피해자를 한림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피해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2008. 6. 11. 오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2에게 들어 알고 있었으며 16:00경에 피해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보건의료과로 동행되어 왔을 때 산소를 공급하여 경과를 관찰하던 중 증상에 호전이 없고 의식이 저하되어 외부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여 17:00경 119에 전화하여 이송조치 하였다.

2) 피진정인 3(000 :00구치소 보건의료과 교위)의 주장

2008. 6. 11. 06:00경 인슐린 처방 환자를 위해 11하(下)와 16하(下) 사동을 돌고 있는데 피해자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여 피해자와 보건의료과로 동행하여 안정을 취하게 한 후 입실조치 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얼굴색이 변하거나 호흡이 가쁜 증상이 없어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당직의무관에게 전화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같은 날 08:10경 출근한 피진정인 2에게 피해자의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야간에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정북교도관이 바이탈 체크만 하며 당직의사에게 전화보고는 하지 않는다. 이는 현재 교정시설내의 제도적인 문제로 의료 인력의 충원과 의료장비의 변화가 없이는 계속해서 동일한 진정이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정북교도관이 사실상 대처할 수 없는 부분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피해자가 00구치소에 수용되었을 당시의 건강기록부 및 동태시찰 사항,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의무기록 및 외부병원 근무일지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07. 7. 20. 00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당시 피해자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처방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병명: 당뇨병, 고혈압, 만성신부전)를 제출하여 2007. 7. 24.부터 병사에 입병조치 되었다.

나. 영동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뇨조절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철저한 혈당관리가 안될 시 합병증 가능성이 높으며, 신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2~3개월 이내에 투석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 1개월 간격으로 혈액검사 및 그 결과에 따른 약물투여가 필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 1은 피해자에게 외부 차입약 및 내부처방약 투약을 지속적으로 병행하였고, 경과관찰 및 정밀검사를 위해 피해자에 대해 2007. 12.부터 2008. 6.까지 아홉 차례의 외부병원 이송진료를 실시하였다.

라. 피해자는 2007. 12. 4. 안양 샘병원에서 신부전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신장기능이 저하되어 혈액투석을 고려할 것(2008. 4. 11.)과 폐부종이 생기면 혈액투석을 해야 한다는 것(2008. 5. 9.), 피해자의 신장내과 혈액검사 결과 빈혈 및 신장이 좋지 않아 혈액투석이 필요하며, 혈관확장을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2008. 6. 9)는 안양 샘병원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었다.

마. 2008. 6. 11. 06:20경 피해자가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하여 피진정인 3이 보건의료과로 동행하여 상태를 확인 하였고 이 사실을 피진정인 2에게 08:10~08:20경 보고하였다. 같은 날 11:15경 피해자가 “숨이 차다.”라고 하여 보건의료과로 다시 동행하여 피진정인 2가 산소를 투여한 후 거실로 입실조치 하였으나 2008. 6. 11. 16:00경 피해자가 재차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보건의료과로 동행하였다.

바. 피진정인 1은 보건의료과로 동행한 피해자가 오전에 두 차례나 통증을 호소하여 보건의료과로 동행한 상황에 대해 의무기록지 및 보고를 통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산소를 공급해도 피해자의 호흡곤란 증세가 호전이 없자 17:11경 의왕소방서 백운센터로 연락하였다.

사. 같은 날 17:15경 119 구급차량이 00구치소에 도착하니 이미 피해자의 생체징후가 없어 기도삽관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00구치소로부터 차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응급실로 이송조치(17:22경) 하였고, 17:23경 피해자가 의식은 없으나 심장기능이 회복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2008. 6. 12. 12:00경 담당의사는 피해자의 뇌손상이 진행되어 회복이 힘들 수도 있다는 소견을 보였다.

아. 2008. 6. 11. 20:00 ~20:25 사이 형집행정지와 관련하여 00중앙지방검찰청 000 검사가 임검을 실시하였고, 2008. 6. 12. 14:30 형집행정지 결정이

진정인에게 통지되었다.

자. 2008. 6. 11. 11:15 이후 피해자의 건강기록부에는 보건의료과의 진료기록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의 행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건의료과장인 피진정인 1은 2008. 6. 11. 16:00경 피해자가 보건의료과에 통증을 호소하며 동행되어 왔을 때 당일 오전에 피해자가 통증을 수차례 호소한 상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산소만을 공급한 채 17:00경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17:15경 응급구조차량이 도착한 이후 이송도중에 비로소 피해자에 대한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의사인 피진정인 1은 피해자와 같은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흉통을 호소할 때에는 심장혈관이 좁아지고 심장근육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 및 이러한 증상이 야기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00구치소 내에서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인근병원(00구치소에서 차로 5분 내지 10분정도의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종합병원이 있었다)으로 신속하게 피해자를 이송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는 환자가 보이는 증상과 그러한 증상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 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신속한 의료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피진정인 1이 2008. 6. 11. 11: 15 이후 피해자가 수차례 같은 증세를 호소하였고 같은 날 오전과 오후 동일한 증세로 동행되어 왔다는 사유로 이와 같은 진료사항을 피해자의 건강기록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과 「수용자의료관리지침」 제17조에 위

배되는 행위로서 의사로서 만성질환자 및 동일한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관리함에 있어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1의 소속기관의 장인 00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의료조치 미흡 및 직무소홀의 책임을 물어 징계할 것과 유사사례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2의 행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무사무관인 피진정인 2 역시 피진정인 1과 같이 의사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2가 이미 2008. 7. 14 퇴사하였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 피진정인 3의 행위에 대하여

보건의료과 교위인 피진정인 3은 2008. 6. 11. 06:00경 ‘가슴이 답답하다.’라고 호소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스스로 응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해자를 입실 조치하였다. 이는 보고체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지 못하도록 한 행위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3이 피해자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산소공급 등의 조치를 취한 점, 다음 날 08:10~08:20분경 담당 의무사무관이 출근하자 피해자의 상황에 대해 보고한 점 등을 감안하여 00구치소장에게 피진정인 3에 대하여 보고체계 무시 등 직무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할 것과 유사사례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제 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6. 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법률」

가.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나. 제40조(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의료조치) ① 소장은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거부하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관찰·조언 또는 설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용자가 진료 또는 음식물의 섭취를 계속 거부하여 그 생명에 위험을 가져올 급박한 우려가 있으면 의무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진료 또는 영양보급 등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가.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3.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법률 시행령」

가.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 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4.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법무부예규 제821호)

가. 제12조(환자진료) ①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이하 생략

나. 제13조(중환자 및 응급환자의 관리) 중환자 및 응급환자는 신속히 외부 의료시설에 이송진료하고, 수용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증환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형(구속)집행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제17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①수용자 진료에 관한 기록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라. 제20조(외부의료시설 진료기록) 외부의료시설 진료 후 진료일시, 의료 시설명, 진단내용, 자비치료 여부 등을 의무기록부에 기록하고 진단서 등 관계서류는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2009. 9. 14.자 09진인2045결정 [의료와 관련한 인권 침해]

○○구치소장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격리수용 등 전염병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에게 이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성병은 제3군전염병에 해당되며, 「전염병예방법」 제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및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의 경우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과 설비를 소독하여야 함

【2】 매독 감염자인 진정인을 일반수용자와 격리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전염병예방법」 제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위반되고, 비록 수용기간이 19일로 짧고 성병인 매독이 전염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전염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진정인에게 심리적·정신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진정인과 혼거수용된 다른 수용자의 신체의 안전이 위협에 노출되도록 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136호, 2008. 12. 11. 일부개정) 제35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356호, 2009. 3. 18. 타법개정) 제52조, 제53조, 「전염병예방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2조, 제33조

【진 정 인】 ○○○

【피진정인】 ○○구치소장

- 【주 문】** 1. ○○구치소장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격리수용 등 전염병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직원에게 이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중 의료조치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9. 4월경 ○○구치소에 벌금을 못내 수용되었으며 수용되기 전에 성병에 걸려있어 격리하여 치료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2달간 치료를 해주지 않아 출소한 현재 상태가 악화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진정인은 상해죄로 노역장유치집행지휘서에 의해 2009. 4. 11. ○○구치소에 입소하여 같은 해 4. 29. 노역장유치기간 종료로 출소하였으며 수용기간은 19일이었다.

2) 진정인은 2009. 4. 8. ○○구 보건소 진료 시 매독검사수치가 1:256으로 28일분의 약을 처방받았고, ○○구치소 입소 시 ○○구 보건소 발행 진료의뢰서와 처방약 22일분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구치소 수용기간 동안 보건소에서

처방받은 약을 계속 복용하였다.

3) 2009. 4. 13. ○○구치소 매독검사 결과 그 수치가 1:64로 현저히 낮아졌고, 통상 매독은 성관계 등을 통하여 전염되는 질환이므로 격리치료의 필요는 없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구치소의 답변서, 수용자 건강진단부, ○○구 보건소 진료의뢰서 및 ○○구치소 매독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4. 11. ○○구치소에 입소하여 같은 해 4. 29. 출소하였으며 입소 시 소지하고 있던 ○○구 보건소 진료의뢰서를 제출하고 소지하고 있던 보건소 처방약 20여일분 약을 출소할 때까지 지급받았다.

나. 진정인은 성병인 매독 감염자로서 2009. 4. 8. 진정인에 대한 ○○구 보건소의 진료의뢰서에 의하면 진정인의 매독검사수치는 1:256이고 2009. 4. 13. ○○구치소 매독검사 결과에 의하면 매독검사수치가 1:64로 나타나고 있다.

다.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성병은 제3군전염병에 해당하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면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의 경우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과 설비를 소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치소에서는 진정인을 전염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격리수용하지 않고 혼거수용하였다.

5. 판단

가. 의료조치가 미흡했다는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은 ○○구치소에서 2달간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은 ○○구치소에 19일간 수용된 점, 수용기간 동안 진정인이 입소 시 소지하고 있던 약의 투약이 허용된 점, 2009. 4. 13. 진정인에 대한 매독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매독검사수치가 낮아진 점에 비추어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격리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하여

1)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성병은 제3군전염병에 해당되며, 「전염병예방법」 제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및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에 걸린 수용자의 경우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과 설비를 소독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진정인은 매독 감염자인 진정인을 일반수용자와 격리 수용토록 하여야 함에도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을 일반수용자와 격리 수용하지 않은 것은 「전염병예방법」 제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위반되고, 비록 수용기간이 19일로 짧고 성병인 매독이 전염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전염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며 피진정인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진정인에게 심리적·정신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진정인과 혼거수용된 다른 수용자의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도록 하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를 보면, 이와 같은 침해행위는 구치소장이 전염병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직무교육을 함으로써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중 격리수용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권고하고, 진정요지 중 의료조치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136호, 2008. 12. 11. 일부개정)

제35조(전염성 질병에 관한 조치) 소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격리수용·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356호, 2009. 3. 18. 타법개정)

제52조(전염병의 정의) 법 제18조제1항, 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법 제128조제2항에서 "전염병"이란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을 말한다.
제53조(전염병에 관한 조치) ① 소장은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전염병이 유행하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

의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수용자가 전염병에 걸린 경우에는 즉시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가 사용한 물품과 설비를 철저히 소독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제3항의 사실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3. 「전염병예방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03.8.6, 2005.7.13, 2008.2.29〉

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라. 성병

② "전염병환자"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수감중인 환자의 격리) 수감자로서 전염병에 감염된 자는 격리수감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3

2011. 1. 14.자 10진정0388000결정 [의료조치 미흡에 의한 인권침해]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진정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구치소장에게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한 의료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신입검사 및 의무관 면담과정에서 진정인의 정신과적 증상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진정인이 정신과적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6.선고 2005도6810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 「UN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조○○(○○구치소 의료과장)

-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교도소장으로 하여금 진정인이 적절한 정신과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구치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을 포함하여 의료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지병인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증상에 대한 진단서와 처방전을 의료과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나. 또한 구속 전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진단서를 의료과에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0. 3. 입소 시 시행한 진료에서 고혈압과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고 고혈압과 요통 약 등을 복용중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진단서 제출 및 차입 가능한 약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진정인이 지참하고 있던 고혈압 및 요통 약 등을 처방대로 복용하게 하여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진정인이 지참하고 있던 약이 소진된 이후에는 고혈압 약을 정기적으로 처방하였고, 간헐적으로 진정인이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약을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2) 2010. 4. 12. 진정인이 ‘기운이 없고 밥맛도 없으며 가래가 있다’고 호소하여 진료한 결과 혈당수치가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경구용 혈당강하제를 정기적으로 처방하였으며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할 것을 설명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3) 2010. 6. 14. 진정인이 ‘2, 3일 전부터 가슴에 통증이 있으며, 사회에서도

그런 적이 있다'고 호소하여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특이소견을 보이지 않아 증상에 대한 약물을 처방하며 경과를 관찰하였다.

4) 2010. 6. 23. 외부에서 진단서와 처방전이 접수되어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진정인의 진단명은 '본태성 고혈압과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이었고 처방전에 기재된 약은 진정인에게 이미 처방중인 약이었다. 이에 진단서와 처방전을 참고로 처방중인 약물을 계속 투약하며 경과를 관찰하고 있다.

3. 관련 규정

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진료환경 등) ① 교정시설에는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UN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제1항 모든 구금시설에서는 정신치료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최소 한명 이상의 유자격 의료인의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의료서비스는 지역사회나 국가의 일반 보건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신이상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처치에 필요한 정신치료가 포함된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3. 5. ○○구치소에 피의입소하여 같은 해 7. 1. 국가인 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11. 1. 4.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용생활을 하고 있다.

나. 진정인의 수용자의무기록부(이하 ‘의무기록부’라 한다)에는 2010. 3. 5. 실시된 신입검사 시 “2003년 ○○의원에서 고혈압 진단 받음. 2008년 ○○도 ○○소재 ○○클리닉에서 우울증 진단받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해 3. 8. 의무관이 실시한 진료기록에도 고혈압과 우울증이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 차입 요”라고 추가로 기록된 사실이 있다.

다. 의무기록부에는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진단서(2009. 9. 9. 발행) 및 투약처방(2009. 9. 9. 발행), 그리고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2009. 9. 9. 발행) 및 투약처방(2010. 6. 21. 발행)이 포함되어 있다.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는 진정인이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를 병명으로 2009. 6. 4.~2009. 9. 9.간 우울증에 대한 진료 중”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의무기록부에는 고혈압, 허부허리통증, 고지혈증, 두통 등에 대한 진정인의 호소와 투약기록, 그리고 2010. 6. 14. 시행된 심전도 검사 등의 처치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2010. 11. 1. 현재까지 진정인이 정신과적 처치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없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과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UN 피구금자의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도 모든 구금시설은 정신질환 수형자에 대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신입검사 및 이후의 진료과정에서 외부진단서를 제출하면 참고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겠다고 하였고, 진정인의 고혈압, 허리통증,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해서는 의료적 처치 및 경과 관찰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신입검사 및 의무관 면담과정에서의 진정인의 우울증 관련 진술내용, 그리고 진정인이 제출한 우울증 진단서 등을 통해 진정인의 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진정인이 정신과적 진료 및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서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소속된 ○○구치소의 장에게, 진정인에게 정신과적 진료 및 치료를 제공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2011. 1. 4.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되었는바, 진정인에 대한 정신과적 처치 권고는 법무부장관을 통해 ○○교도소장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권고는 피진정인이 소속된 ○○구치소장에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정신과적 증상을 제외한 고혈압, 요통, 고지혈증, 당뇨 등에 대하여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최윤희 위원 김양원

4

2011. 3. 14.자 09진차4707 결정 [의료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업훈련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과 등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전문의의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기관은 비록 휴무일이 끼어 있었다고 해도 진정인이 좌측 눈의 이상 증상을 최초로 호소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서야 외부병원의 전문의 진료를 받게 하였고, 외부병원이 진정인의 안과적 질환을 중대한 상태로 판단하고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소견을 낸 날로부터 8일이 지나서야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음. 피진정기관의 이러한 조치는 전문적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수용자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헌법」 제10조 및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진정인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참조조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2조·제13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등

【진 정 인】 김○○

- 【피진정인】 1. ○○직업훈련교도소장
 2. 이○○(○○직업훈련교도소 의료과장)
 3. 민○○(○○직업훈련교도소 교위)
 4. 김○○(○○직업훈련교도소 교사)
 5. 황○○(당시 ○○직업훈련교도소 의과과 주임)

- 【주 문】** 1. ○○직업훈련교도소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과 등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전문의의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내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기관인 ○○직업훈련교도소측은 2009. 8.말경 진정인의 좌측 눈에 발병한 포도막염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지 않았다. 진정인은 2009. 8. 29.부터 좌측 눈의 이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그로부터 7일이 지난 2009. 9. 4.에야 외부진료(○○안과)가 허용되었고, 외부진료병원의 전원의뢰 소견이 있는 지 8일이 지난 2009. 9. 23.에야 3차 진료기관(○○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색안경은 처방 후 15일 후에야 지급받았다. 이러한 늦장진료로 인하여 진정인은 좌측 눈의 시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나. 2009. 8. 29. 진정인이 두통 및 좌측 눈의 충혈을 호소하자 피진정인 3은 진정인에게 안약과 내복약을 무면허 처방하였고, 피진정인 4도 같은 달 31. 진정인에게 식염수를 무면허 처방하였다.

다. 피진정인 2는 2009. 9. 2. “감사 왔으니 가라. 약 지어주마.”라고 하며 진정인을 의무실에서 아냈으며, 같은 달 24.에는 진정인에게 “가석방 해 줄 테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있어라.”라고 하였다.

라. 피진정인 5는 2009. 9. 23. 진정인의 허락 없이 진정인의 부친에게 연락하여 진료비 50만원을 요구하였고, 같은 해 10. 2. 의무실 앞에서 진정인에게 “야 이 씨발놈아 올라가”라고 2회 욕설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추석연휴 기간 중 의료과에서 진정인에게 “외부에 사실을 알리면 치료와 처우에 협조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마. 피진정인 5는 2009. 9.경 진정인에게 “자비부담으로 외부병원에 나갈 것

이고 차후에 눈 질병에 대해 악화되는 부분의 모든 책임은 김○○에게 있다.”라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였다.

바. 2009. 9. 28.부터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진정인을 정신이상자와 혼거시켰다.

사. 2009. 10. 16. 진정인은 부정연락 혐의로 금치 15일의 징벌을 받았으나 부정연락을 한 간병인은 조사도 받지 아니한 바, 이는 불공정한 처분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진정인에 대해 2009. 9. 4.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1차 진료기관 4회, 3차 진료기관 6회를 합쳐 총 10회 전문의의 진료 및 처방에 의거하여 처방한 사실이 있는 바, 의료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피진정인 2).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가) 평일 퇴근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는 의료과에 의무관 없이 정복 교도관이 혼자 당직근무를 한다. 환자발생 시 당직근무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의무관에게 유선으로 보고한 후 의무관의 지시에 의하여 외부병원 이송진료를 하게 하거나 투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상으로 처방을 받아 투약하고 있다. 진정인이 좌측 눈의 충혈 등 이상증상을 호소한 일자는 2009. 8. 29. 휴무일인 토요일 오전이었다. 이에 당직근무자였던 본인이 의무관에게 유선보고 한 후 의무관의 처방을 받아 투약하였으며, 주말 이후 8. 31. 월요일에 의무관의 진료를 받게 하였다(피

진정인 3).

나) 2009. 8. 31. 진정인은 의료과에서 의무관의 진료와 약 처방을 받았고, 본인은 식염수를 사용하여 눈 세척을 하면 상태가 호전될 것이라는 의무관의 소견에 따라 진정인에게 식염수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식염수는 수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의무관의 처방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자비부담 의약품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이다(피진정인 4).

3) 진정요지 다.항 관련

통상적으로 진료가 끝나면 직원이 수용자를 진료실 밖 대기실로 데리고 나간다. 의료과장이 진료환자를 진료실 밖으로 안내하는 경우는 없다. 또한 가석방은 의료과장의 권한 밖의 일로서 진정인에게 그러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다(피진정인 2).

4) 진정요지 라.항 관련

본인은 진정인의 부친에게 연락하여 진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접견을 통해 안과치료 사실을 알게 된 진정인의 부친이 수차례 전화를 해 왔으며, 그때마다 치료과정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 참고로 ○○대학교병원 진료비는 모두 관비처리 되었다. 2009. 10. 2. 진정인이 의료과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가며 고향을 지르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야 이제 그만하고 올라가.”라고 한 사실은 있어도 욕설은 한 사실은 없다. 또한 진정인에게 “외부에 사실을 알리면 치료와 처우에 협조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한 적도 없다(피진정인 5).

5) 진정요지 마.항 관련

가) ○○안과 진료 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의료과에서 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의료거실에 들어와 안정가료를 해야 한다고 수차례 얘기하였으나, 진정인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며 계속적으로 훈련동에서 생활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의사의 소견대로 이행하지 않아 병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악화될 경우 거부한 진정인의 책임이라며 각서를 쓰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의료비

의 자비부담과 관련하여 각서를 강요한 사실은 없다(피진정인 5).

나) 2009. 9. 4. ○○안과 진료 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안과전문의의 소견을 받아들여 진정인에게 당분간 직업훈련을 중단하고 의료거실에 입실하여 진정인의 상태가 좋아진 후에 직업훈련을 계속할 것을 설유하였으나, 진정인이 의료거실로의 입실을 거부하며 직업훈련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완강히 하여 의료거실로의 입실을 유보한 상태로 경과관찰 및 치료를 계속하였다. 이후 2009. 9. 23. ○○대학교병원 진료 후 현재 상태로는 정상적인 직업훈련이 어렵다는 안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진정인을 설득하여 의료거실에 수용하였다(피진정인 2).

6) 진정요지 바.항 관련

2009. 9. 28. 정신지체의증으로 신경정신과 진료가 필요한 이○○ 수용자를 약물치료 및 경과관찰을 목적으로 진정인과 같은 의료거실에 수용하였다. 같은 달 30. 자해 및 폭행 등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하여 이○○ 수용자를 전자영상 장비가 설치된 거실로 전실조치 하였다(피진정인 2).

7) 진정요지 사.항 관련

간병인 수용자는 진정인의 부정연락 건을 신고한 자료, 우리 소 조사지원팀에서 “신고내용의 허위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간병인이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았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피진정인 1).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수용자건강기록부, 동태시찰사항 등의 자

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2009. 8. 29. 좌측 눈에 충혈 증상이 나타나 진료를 요구하였으나 당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의무관의 유선 지시에 따라 약 처방을 받았고, 2009. 8. 31.과 같은 해 9. 2. 의무관의 진료를 받았다.

나) 진정인은 2009. 9. 4. 외부병원인 ○○안과에서 좌안부위 홍채섬모체염(포도막염) 등의 소견 하에 같은 달 7일, 11일, 15일 총 4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15. 3차 의료기관 전원 소견을 받았다.

다) 진정인은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소견에 따라 2009. 9. 23.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대학교병원에서 안과진료를 받았다.

라) 수용자건강기록부에는 진정인의 좌안 시력이 2009. 5. 26. 당시 1.0이었으나 2009. 10. 21. ○○대학교병원 진료 시에는 0.1로 기재되어 있어, 진정인의 좌안 시력이 저하된 사실은 인정된다.

마) ○○대학교 ○○병원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포도막염의 특성상 최선의 전문적 치료에 의해서도 시력저하를 남기는 확률이 높으며 진정인의 시력저하가 치료지연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며, 색안경은 포도막염의 치료경과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는 소견이 제출되었다.

2) 판단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의 안과적 질환에 대해 신속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좌측 눈의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피진정기관은 비록 휴무일이 끼어 있었다고는 해도 진정인이 좌측 눈의 이상증상을 최초로 호소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나서야 외부병원의 전문의 진료를 받게 하였고, 외부병원이 진정인의 안과적 질환을 중대한 상태로 판단하고 3차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소견을 낸 날로부터 8일이 지나서야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였다. 피진정기관의 이러한 조치는 전문적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가진 수용자에 대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조치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는 「헌법」 제10조 및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서 진정인의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진정인의 시력저하가 피진정기관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진정인의 안과질환인 포도막염은 그 특성상 최선의 전문적 치료에 의해서도 시력저하를 남기는 확률이 높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고, 그 외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진정인의 시력저하가 피진정기관의 신속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 결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3과 4의 무면허 처방에 의해 안과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 3과 4는 의무관의 유선 또는 직접지시에 따라 진정인에게 약물 및 식염수를 처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진술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피진정인 5가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진술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마. 진정요지 마항 관련

1)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수용자건강기록부, 직업훈련일지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의 직업훈련과정의 하나인 ‘네트워크 관리과정’을 수강하던 중 좌측 눈에 포도막염 증상이 나타나 2009. 9. 2. “눈질환 교육하는데 지장, 빠른 시일 내에 치료 요함”의 사유로 불참하였고, 같은 달 7일, 11일, 15일에는 외래진료를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은 2009. 9. 2. 안정이 필요하다는 ○○안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진정인에게 직업훈련 중단 및 의료거실 입실을 권하였으나, 진정인이 직업훈련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훈련 중단 및 의료거실 입실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피진정인 5는 2009. 9. 4. 진정인에게 “좌안포도막염으로 외부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나 훈련 중인 네트워크 과정을 수료하고자 의료사동에 수용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훈련동에서 교육을 받고자 합니다. 이후 교육을 통해 발생하는 동 병명이 악화되더라도 그 부분은 책임을 지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하였다.

라) 피진정기관은 2009. 9. 23. ○○대학교병원의 “좌안 포도막염 증상 중증인 상태로 일반적인 작업, 교육 등 힘들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진정인에 대하여 훈련 취소 및 병사입병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2) 판단

진정인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과 진정요지를 비교하여 볼 때, 피진정인 5가 진정인에게 자비부담으로 외부병원에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하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진정인 5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질병의 악화 책임이 진정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5가 진정인에게 그러한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요구한 원인은 진정인이 피진정기관의

직업훈련 중단 및 의료거실 입실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하여 훈련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질병악화의 책임소재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각서 작성을 요구한 피진정기관의 행위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바. 진정요지 바항 관련

피진정기관이 2009. 9. 28.부터 9. 30.까지 진정인이 수용된 의료거실에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한 수용자를 함께 수용시킨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의 이러한 조치는 의무관의 의료거실 입실 소견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 아니라,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수용자와 같은 거실에 수용됨으로 인해 침해받은 진정인의 인권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바, 피진정기관의 혼저 수용조치가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사. 진정요지 사항 관련

진정인은 동료 수용자와의 부정연락 등의 혐의로 2009. 10. 16. 징별위원회에서 금치 15일의 징별을 받았으나 부정연락을 한 다른 수용자는 조사도 받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은 다른 수용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고, 진정인의 진술 외에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할 경우에도, 징별위원회의 징별 결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5조의 징별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한 징별대상행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조사 당시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는바, 진정인에 대한 금치 15일의 징별 의결이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최윤희 위원 김양원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권리를 진다.

2.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외부의사의 치료)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외부 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이하 "외부의사"라 한다)에게 수용자를 치료하게 할 수 있다.

5. 수용자 의료관리지침(법무부예규 제821호)

제12조(환자진료) ① 환자가 발생한 때에는 의무관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필요한 의료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중환자 및 응급환자의 관리) 중환자 및 응급환자는 신속히 외부의료시설에 이송진료하고, 수용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증환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형(구속)집행정지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법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7.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22조 ② 전문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을 가진 피구금자는 전문시설 또는 일반병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병원설비가 시설 내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기구, 비품 및 의약품은 병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

5. 기타

1

2009. 3. 9.자 08진인3784결정[수용자의 얼굴노출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구치소장에게 수용자를 외부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얼굴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자와 마스크 등 보호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수갑과 포승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 호송업무를 개선하며, 호송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일반인들의 왕래가 많은 외부병원으로 진정인을 호송할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모자와 마스크 등 보호도구를 적절히 사용하고 수갑과 포승을 가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구 「행형법」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3, 제1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9136호, 2008. 12. 22. 시행) 제4조 등

【진 정 인】 ○○○

【피진정인】 ○○구치소장

【주 문】 1. ○○구치소장에게 수용자를 외부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얼굴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을 가릴 수 있는 모자와 마스크 등 보호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수갑과 포승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 호송업무를 개선

하며, 호송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2008. 9. 24.부터 만성신부전증으로 외부병원인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 신장내과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았다. 그런데 피진정인이 이 병원으로 진정인을 데리고 가는 동안 진정인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면서 수갑과 포승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또한 진정인의 얼굴을 가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부사람들에게 진정인의 얼굴이 노출되도록 하였다.

나. 혈액투석 환자들은 보통 4시간 정도 혈액투석을 받는데, 혈액투석을 받는 동안 노곤한 상태이고 거의 반수면 상태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수용자가 혹시 탈주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혈액투석을 받는 동안 수용자의 손목과 침대를 연결하여 수갑을 채우고 발목에는 사슬을 채우고 있다.

2. 당사자의 및 관계인의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수용자의 외부병원 진료 시에는 구 「계호근무준칙」(1990. 5. 1. 법무부훈령

제520호, 이 준칙은 2008. 12. 19. 「계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 제662호)으로 개정됨.) 제295조에 따라 수용자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있다. 수용자의 외부병원 출입 시에는 사전에 구매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용자에게 설명하고,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수용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보안관리과에 비치된 1회용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외부병원 진료 수용자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외부병원에서 수용자가 혈액투석과 같은 진료를 받을 때에는 구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제정 2004. 6. 29. 법무부령 제556호,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55호)이 2008. 12. 22. 시행되면서 폐지됨.) 제4조에 따라 계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5조에 따라 외부병원에 입원 중인 수용자는 도주방지를 위해서 짧은 사슬을 사용하고 있으며, 수갑 하나로 계구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복수의 수갑을 사용하여 침대에 연결시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외부병원 등에서 도주사고가 발생하여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현재까지는 짧은 사슬을 사용하고 있으나 2008. 12. 22. 시행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장비가 개정되어 외부병원 진료 때 변동이 있을 것이다.

다. 관계인의 주장요지

1) ○○○(○○구치소 수용자)

혈액투석을 받기 위해 진정인과 함께 외부병원인 ○○○ 신장내과병원에 다녔는데 피진정인은 수용자가 외부병원 진료를 위해 외출할 경우 현재는 마스크를 쓰도록 허락하고 있으나 예전에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또한 이 때 수용자에게 사용한 수갑과 포승을 노출시킨 상태에서 수용자를 호송한 사실이 있으며, 혈액투석을 받는 동안 수갑과 발목에 사슬을 채우고 이를 모포로 덮어 주고 있다.

2) ○○○(○○구치소 수용자)

피진정인은 수용자들이 외부병원 진료를 나갈 때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으나 모자는 씌워주지 않고 있으며, 수갑이나 포승을 가려주지 않고 있다. 혈액투석을 받을 때에는 수갑 및 시슬을 모포로 덮어 주고 있다.

3) ○○○(○○구치소 수용자)

1주일에 3회 외부병원인 ○○○ 신장내과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데, 피진정인은 동 병원에 가는 동안 모자와 마스크를 씌워주지 않고 포승과 수갑을 그대로 외부인에게 노출시키고 있다. 혈액투석을 받을 때에는 수갑 및 시슬을 모포로 덮어 주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의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내용, 피진정인의 답변서, 관계인 진술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피진정인은 외부병원으로 투석을 받으러 가는 수용자를 호송하면서 수용자들에게 수갑과 포승을 사용하고 수용자가 얼굴 및 수갑과 포승을 가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08. 10. 7. 진정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2008. 11월까지 수용자로 하여금 마스크를 사용하여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수용자의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조치나 수갑과 포승을 가려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2) 수용자들이 혈액투석을 받으러 가는 외부병원인 ○○○ 신장내과병원은 시내인 경기도 안양시 ○○동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인의 왕래가 많은 곳이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피진정인은 수용자들이 외부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는 동안 이들에게 수갑 2개를 연결하여 한쪽 손목과 침대에 채우고 짧은 사슬을 한쪽 발목과 침대에 연결하여 채운 후 모포를 덮어 수갑과 사슬을 가리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3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136호, 2008. 12. 22. 시행) 제4조는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인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제45조 제1항도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체호근무준칙」 제270조 제2항은 수용자의 구치감, 법정, 검사 조사실 등의 출정의 경우에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일반인들의 왕래가 많은 외부병원으로 진정인을 호송할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모자와 마스크 등 보호도구를 적절히 사용하고 수갑과 포승을 가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를 보면, 이와 같은 침해행위는 피진정인이 호송업무를 개선하고 그에 따른

직무교육을 함으로써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피진정인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구 「행형법」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및 제2항, 구 「계호근무준칙」 제295조 제1항 제3호, 구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및 제5항에 의하면, 외부병원 진료수용자에 대하여는 도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이 외부진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동안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갑과 짧은 사실을 사용하였고 다른 사람들이 이를 보지 못하도록 모포로 덮어 주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 기초한 행위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에게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 부분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김태훈 위원 김양원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구 행형법(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3(기본적 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수형자 또는 미결수용자의 기본적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국적·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수용자의 차별은 금지된다.

제14조(계구) ① 교도관은 수용자의 도주·폭행·소요 또는 자살의 방지 기타 교도소 등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계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포승
2. 수갑
3. 사슬
4. 안면 보호구

③ 생략

④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계구의 모양·규격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3. 구 행형법 시행령

제46조(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등) ①포승과 수갑은 소요·폭행·도주 또는

자살의 우려가 있는 자와 호송중의 수용자에게, 안전보호구는 제지에 붙여
하고 고성을 발하거나 자해의 우려가 있는 수용자에게 각각 사용한다.

② 사슬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승과 수갑으로 수용자를 제지할 수 없거
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법률 제9136호, 2008. 12. 22. 시행)

제4조(인권의 존중) 이 법을 집행하는 때에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5. 구 계호근무준칙[1990. 5. 1. 법무부훈령 제520호, 이 준칙은 2008. 12. 19. 「계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 제662호)으로 개정됨]

제295조(외부병원 근무시 유의사항) ①외부병원 진료수용자의 계호근무자
는 다음 각호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및 2. 생략

3. 외부병원 진료수용자에게는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환자로서 도주의 위험이 낮다고 판단되거나 진료 또는 치료 목적상
계구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계구사용을 일시중지하거
나 완화할 수 있다.

제270조(수용자의 복장 등) ①생략

② 출정수용자가 복장을 단정히 하도록 지도하고, 출정과정에서 수용자의
명예감정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구 계구의 규격과 사용방법 등에 관한 규칙[제정 2004. 6. 29. 법무 부령 제556호,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법무부령 제655호)이 시행되면서 폐지됨]

제4조(계구사용 명령) ①소장은 수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구의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송, 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외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제5조(계구의 사용방법) ①생략

- ② 수갑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속수갑은 수용자가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은 별표 5의 방법에 의할 것

- ③ 사슬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짧은 사슬은 외부병원에 입원중인 수용자의 도주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사용하고, 그 사용방법은 별표 8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당해 수용자의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④ 생략

- ⑤ 하나의 계구로 계구사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복수의 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포승과 사슬은 같이 사용할 수 없다.

7.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1955. 8. 30. 제1회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 처우 회의에서 채택, 1957. 7. 31.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663c(24)로 승인]

제45조 ①피구금자를 이송할 때에는 가급적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모욕, 호기심 및 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2009. 11. 9.자 09진인1749결정 [직무유기로 인한 인권 침해]

○○교도소장에게 사동 봉사원은 담당교도관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 【1】 영치금사용신청서 관리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의 담당근무자들이 수용자 간에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영치금 사용 내역이 기재된 영치금사용신청서를 소홀히 관리하여 다른 수용자 및 봉사원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정보를 누설한 것뿐만 아니라 영치금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판단
- 【2】 봉사원 업무의 적절성에 대하여, 사동 근무자가 봉사원에게 보조업무의 한계를 넘어서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영치금사용신청서를 배포·수집하게 함으로써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봉사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됨.
- 【3】 피진정기관 소속 담당근무자들이 고의나 부당한 지시를 통해 타 수용자에게 고지하거나 고의적으로 열람하게 하지 아니하였던 점, 2009. 5.부터 피진정기관이 영치금사용신청서를 각 거실별로 따로 작성하고 담당근무자가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교도소장에게 사동 봉사원은 담당교도관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참조결정】 국가인권위원회 2008. 9. 9. 07진인3493 결정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4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5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의2

【진 정 인】 꺾○○

【피진정인】 ○○교도소장

【주 문】 ○○교도소장에게 사동 봉사원은 담당교도관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것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8. 9. 3.부터 2009. 5. 25.까지 ○○교도소 의료사동에 수용되어 있었는데 담당근무자들이 ‘영치금사용신청 및 교부서’(이하 영치금사용신청서라 한다)를 관용작업취업자(이하 봉사원이라 한다)를 통해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영치금사용신청서를 거실별로 제출하도록 하지 않고 앞 거실 수용자들이 먼저 영치금사용신청서를 작성하고 난 뒤 다음 거실 수용자들이 앞 거실 수용자들이 작성한 영치금사용신청서를 이어서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타 거실 수용자들이 어떤 품목을 자비구매를 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은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수용자들이 자비물품 구매를 신청하면 사동근무자는 거실에 영치금사용신청서를 교부해 준다. 수용자 개개인의 일과시간(출정, 점견, 운동, 전화사용, 종교집회 등)이 달라 각자 같은 거실에서 의견을 모아 영치금사용신청서를 작성하기까지

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담당근무자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거실 앞에서 영치금 사용신청서를 다 작성하여 제출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각 거실에서 영치금사용신청서 작성이 완료되면 거실 앞 창틀에 올려놓게 하고 있다. 봉사원들이 일을 하다가 위 신청서를 발견하면 옆 거실로 건네주거나 혹은 앞 거실 수용자들이 이를 보고 봉사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봉사원은 담당근무자의 보조자로 단순히 거실에서 거실로 신청서를 전달해 주었다.

2) 사동담당 근무자는 수용자 개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이 영치금을 사용하거나 갈취당하는 일이 없는지 중점을 두고 관리한다. 각 거실에서 작성된 영치금 사용신청서를 봉사원이 옆 거실로 단순히 건네주는 것은 봉사원이 담당근무자의 보조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해 묵인해 왔던 것인데 이것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3) 영치금사용신청서에는 수용자의 수변, 성명, 구매신청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여러 수용자들이 한 장의 신청서에 신청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영치금사용신청서를 옆 거실로 돌리지 않고 거실별로 따로 작성하여 담당근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업무를 개선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의 진정서 및 피진정인의 진술서, 진정인과 함께 ○○교도소 의료사동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들의 진술 등의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보면,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영치금사용신청서 관리와 봉사원이 영치금사용신청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영치금사용신청서 관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따라서 진정한 작성한 영치금사용신청서 내역을 살펴보면 신청인의 번호, 성명, 신청무인, 영수무인, 신청품명, 거실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영치금사용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에 포함된다. 또한 「영치금품 관리규정」 제4조는 “영치금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와 같이 피진정기관의 담당근무자들이 수용자간에 아주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영치금 사용 내역이 기재된 영치금사용신청서를 소홀히 관리하여 다른 수용자 및 봉사원이 볼 수 있도록 한 것은 개인의 정보를 누설한 것뿐만 아니라 영치금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행위로 이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한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봉사원 업무의 적절성에 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령 제655호)」 제85조(봉사원 선정)는 “소장은 처우급 2급 이상의 수형자로서 교정성적, 나이, 인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수형자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봉사원으로 선정하여 담당교도관의 사무처리와 그 밖의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진정인은 위 규정에 따라 봉사원이 영치금사용신청서를 옆 거실로 건네준 것은 담당근무자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상적으로 영치금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업무는 영치금사용신청서의 배포·작성·수집의 과정과 물품구매(처리), 물품전달 등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가운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봉사원이 영치금사용신청서를 배포수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담당근무자의 업무에 대한 보조가 아니라 주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동 근무자가 봉사원에게 보조업무의 한계를 넘어서 개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영치금사용신청서를 배포수집하게 함으로써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봉사원에게 공개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 피진정기관 소속 담당근무자들이 고의나 부당한 지시를 통해 진정한 영치금 사용 내역(물품구매내역)을 타 수용자에게 고지하거나 고의적으로 열람하게 하지 아니하였던 점, 2009. 5.부터 피진정기관이 영치금사용신청서를 각 거실별로 따로 작성하고 담당근무자가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교도소장에게 사동 봉사원은 담당교도관의 보조업무만을 수행하도록 지시할 것과, 위 진정사례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직원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9. 11. 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3

2011. 4. 25.자 10진정0349700결정 [가족 사망사실 미통보로 인한 인권 침해]

○○교도소장에게,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자 가족의 사망 소식을 수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수용자의 교통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친밀한 관계이고, 자식이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고 명복을 비는 것은 당연한 도리임.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식의 도리를 행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인간에 대한 기본적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상대방에게 굴욕감을 주기에 충분함

【2】 피진정 기관은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정인의 귀휴를 불허하고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당시 모친의 사망 소식을 알릴 경우 진정인의 건강이나 수용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우려된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피진정 기관이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및 귀휴 불허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진정인의 교통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결정】 헌법재판소 1998. 10. 15.선고 98헌마168 결정, 헌법재판소 2003. 11. 27.선고 2002헌마193 결정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4조제2항

【진 정 인】 배○○

【피진정인】 1. ○○교도소장

2. 김○○(○○교도소 보안과 교감)

- 【주 문】** 1. ○○교도소장에게, 향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자 가족의 사망 소식을 수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함으로써 수용자의 교통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하고, 진정요지 다항은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이다. ○○교도소는 2010. 5.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및 귀휴불허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나. 2010. 5. 31. 진정인은 ○○교도소 보안과 교감인 피진정인 2와 면담하면서 진정인에게 부과된 벌금 건과 관련하여 전화사용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 2는 이를 불허하였다.

다. 2010. 5. 31. 피진정인 2는 면담 과정에서 “교도소에서 귀휴를 꼭 보내줘야 하는 조항은 없어.”, “고충처리반에 내가 전화사용에 대해 전화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어떻게 해 주래?”, “교도관이 당신들 감시만 하면 되지 당신들 애로사항을 들어주라는 의무는 없어.”라는 등 반말을 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10. 5. 18. 12:45 진정인의 형 배○○이 같은 날 12:06 진정인의 모친이 노환으로 사망하였으니 진정인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전

화를 하였다. 관계 규정에 따라 당일 17:00에 귀휴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정인의 특별귀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특별귀휴는 불허하고 불허된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도록 하되 진정인에게는 가족의 요청에 따라 모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의결하였다.

2) 피진정인 2

2010. 5. 31. 면담 과정에서 진정인이 벌금 납부를 위해 가족에게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2010. 4. 20. 고충처리반에서 진정인의 형에게 전화를 하여 진정인의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전달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5. 29. 진정인이 진정인의 형과 면회를 하면서 벌금 납부에 대하여 충분히 전달하였다. 이에 또 다시 같은 사유로 가족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것은 다른 수용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임을 설명한 사실이 있을 뿐 면담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반말을 하였던 사실은 없다.

다. 참고인 배○○(진정인의 형)

2010. 5. 18. 13:00경 ○○교도소 측에 전화를 하여 모친의 사망사실을 알린 후 진정인의 귀휴를 요청하였으나, 당일 16:00경 ○○교도소 측으로부터 진정인의 귀휴가 불허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본인에게 전화하였던 ○○교도소 소속 직원의 말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잔여형기가 얼마 남지 않으면 관례적으로 사망 사실이나 귀휴불허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다. 알려주면 스트레스를 받아 힘들어한다.”는 식의 말을 하였다. 이에 본인은 “본인이 힘들어한다면, 관례적으로 그렇다면 그렇게 해야지. 내 의견은 없다.”는 답변을 하였을 뿐,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및 귀휴불허 사실을 알려주지 말라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3. 관련 규정

가.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권리를 진다.

나.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4조 ② 피구금자는 근친의 사망이나 중병에 대해 즉시 통지받아야 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서, 피진정 기관의 답변서, 귀휴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5. 18. 진정인의 형 배○○은 피진정 기관에 전화하여 모친의 사망 사실을 통지하고 진정인의 귀휴를 신청하였다.

나) 같은 날 피진정 기관에서는 귀휴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진정인의 특별귀휴에 대해 심사하였고, 동 위원회는 진정인의 특별귀휴를 불허하고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기로 의결하였다.

다) 같은 날 피진정 기관은 진정인의 형에게 전화하여 진정인의 귀휴가 불허되었으며 모친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라) 같은 해 5. 29. 진정인은 진정인의 형을 면회하였고, 이 과정에서 모친의 사망 사실 및 귀휴 불허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

2) 판단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인간으로서 맺는 가장 기본적이고 친밀한 관계이고, 자식으로서 부모의 죽음을 슬퍼하고 돌아가신 부모의 명복을 비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도리이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식의 도리를 행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분명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상대방이 굴욕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는 아니하였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인정되며(헌재 1998. 10. 15. 98헌마168), 미결수용자의 외부와의 교통권은 이러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2003. 11. 27. 2002헌마193). 또한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44조 제2항에서는 “피구금자는 근친의 사망이나 중병에 대해 즉시 통지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징역 등 자유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라 할지라도 외부와 교통하는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형의 집행 및 행형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동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피진정 기관에서는 진정한 가족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애초에 참고인인 진정인의 형이 피진정 기관에 전화를 하여 모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고 진정인의 귀휴를 신청한 것은 진정인이 소식을 전달받고 모친의 장례식에 참석하기를 바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에 다름 아니고, 이후 참고인이 진정인과 면회하면서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사실을 직접 알린 점에 비추어 봐도 참고인이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사실 등을 알리지 말 것을 피진정 기관에 요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진정 기관은 귀휴심사위원회를 열어 진정인의 귀휴를 불허하고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나, 당시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소식을 알릴 경우 진정인의 건강 상태나 수용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사실을 통지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바, 피진정 기관이 진정인에게 모친의 사망 및 귀휴 불허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진정인의 교통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에서는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으며 전화 통화의 허가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서는 수형자의 처우급별 전화 통화 허용 횟수를 명시하여 처우급 2급인 수형자는 월 3회, 처우급 1급인 수형자는 월 5회 이내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0. 5. 31.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전화 사용 요청을 불허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진정인은 처우급 3급으로 규정상 전화 통화를 명백히 허용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진정인도 2010. 4. 20. 피진정 기관 고충처리반에서 진정인의 형에게 벌금 건으로 통화를 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으며 같은 해 5. 29. 접견 시에는 진정인의 형에게 벌금 건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기초할 때, 피진정인 2가 진정인의 전화 사용 요청을 일방적으로 묵과하여 진정인의 외부교통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2010. 5. 31. 피진정인 2가 면담 시 반말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주장을 부인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며, 설혹 진정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진정인이 언급한 피진정인 2의 반말 등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우리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4. 2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최윤희 위원 김양원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제 [3] 장 군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 제4집 2009~2011



1

2009. 8. 24자 08진인3904결정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의한 인권침해]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보안 업무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권고

【1】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그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 판단

【2】 또한, 신원조사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신원진술서에서 지원자 본인뿐만 가족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장교임용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31조, 제32조, 「국가정보원법」(2006. 10. 1.) 제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8.2.29) 제3조의2 제1항

【진 정 인】 ○ ○ ○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

하지 말고, 보안업무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육군 등은 학사장교후보생 선발시 최초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대학졸업에 맞춰 사관후보생 시험에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구비서류를 알아보았는데, 해군과 공군의 경우 신원진술서를 필수서류로 요구하고 있었다. 신원진술서 양식에는 신장, 체중, 본인 및 배우자와 부모의 재산, 사회단체 활동이력, 가족 및 친척의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직장명 및 직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정부 행정전산망 이용 대체 응시지원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자기소개서 추가), 신용정보 동의서(합격자에 한해서 제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채용서류 간소화 및 관련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국방부 모병지원센터 2009년 학사장교후보생 모집 내용 등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육군의 경우, 학사사관후보생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신원진술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도 학사사관후보생 획득을 위한 모집 공고에서는 접수시 지원서, 수험표,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해군의 경우, 학군사관후보생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신원진술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시 지원서, 서약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학성적표(2학년만 해당), 고교생활기록부(1학년만 해당), 수험표,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 공군의 경우, 공군 사관후보생 지원시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및 별도평가를 거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공군과 달리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32조, 제32조에 따라 국정원장 또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은 위임을 받아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제31조는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그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장교 선발을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향후 이들이 군대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를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응시 지원자가 모두 장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며,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을 하게 되므로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신원조사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신원진술서에서 지원자 본인뿐만 가족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장교임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교임용예정자가 아닌 학사장교후보생 지원자에 대하여 최초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신원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필요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보안업무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9. 8. 2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2

2010. 7. 23.자 10진정49700결정 [군대 내 종교행사 참석 강요 등]

국방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하여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히 종교의 자유에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뿐 만 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너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무교의 자유)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

【2】 다수의 소속 지휘관들이 1인 1종교 및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할 의무규정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장병들에게 전달한다거나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TV시청 등 개인여가시간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청소 등 작업을 시키는 불이익을 주고 있고, 진정인이 무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비타협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의 문제사병으로 부당하게 특별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진정기관인 제○군수지원사령부의 이와 같은 장병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부적절한 부대 운영 및 관리행위는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군인복무규율」 제30조(종교생활)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결정(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포함)】 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59

【참조조문】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호, 「군인복무규율」 제30조(종교생활)

【진 정 인】 조○○

【피 해 자】 진정인과 소속 부대원들 다수

【피진정인】 1. 백○○

2. 김○○

3. 문○○

4. 이○○

5. 박○○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하여 장병들이 무교를 포함하여 종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종교행사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등 군대 내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본 사례를 전파하고, 관련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8. 3. 3.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17. 제○군수지원사령부 제○○정비대대에 전속되어 근무하다 전역하였는데, 복무 당시 사령관인 준장 백○○과 소속 부대간부들은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중에서 무조건 택일하여 믿을 것을 강요하고, 특히 소속 대대장 및 중대장 등 지휘관들은 진정인의 무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본인이 전역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부당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이는 다른 종교 및 무교를 선택할 종교의 자유와 종교행사의 자율적인 참여라는 「헌법」 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정개선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기관(제○군수지원사령부)의 주장요지

전임 제○군수지원사령부 사령관인 준장 백○○은 2007년 11월경부터 장병들의 정서안정 및 인성함양을 위해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 바 있으나 현 사령관인 준장 김○○이 부임한 이후에는 일부 예하부대에서 인원 채우기식으로 종교행사에의 참석을 강요하고 있고, 개인별 종교와 무관하게 1인 1종교 참석을 강요한다는 민원이 있어 장병 종교 활동의 여건을 보장하고, 관련 기강을 확립할 것을 지시하여, 현재는 종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참석을 강요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 시 시행한 설문조사결과, 일부 상당수의 장병들이 아직도 종교행사 참여를 강요받고 있다고 하니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하고, 지휘관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신상명세서, 개인 신상 정밀진단결과 및 면담기록, 제○군수지원사령부가 제출한 장병종교 활동 여건보장 및 기강확립 강조 지시공문, 장병종교 활동 현황,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결과보고서 및 군 장병 종교의 자유 관련 인권상황 설문결과 등의 자료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아래와 같다.

가. 피진정인 1은 2007. 11. 6. 제○군수지원사령관으로 부임하여 장병들의 정서안정 및 인성함양을 위한다는 목적 하에 이등병들에 대하여는 3대 종교를 택일하여 민도록 하고, 1인 1종교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종교행사에 적극 참여

하도록 하다가 2010. 1. 31. 전역하였으나, 이후 신임사령관인 피진정인 2가 부임한 이후에는 일부 예하부대에서 종교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때, TV시청 및 사이버 지식정보망 이용을 금지하고 작업지시를 하는 등 인원채우기식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가 잔존하고, 개인별 종교와 무관하게 1인 1종교 참석을 강요하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입수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종교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휘관 또는 간부가 개인적으로 신봉하는 종교를 예하 장병들에게 강요행위를 금지하며, 종교 활동과 무관한 개별행동을 금지하는 ‘장병 종교 활동 여건보장 및 기강확립 강조 지시’를 하달한 바 있다.

나. 진정인은 2008. 3. 3. 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5. 17. 제○군수지원사령부 ○○정비대대 특수무기지원대에 전속되어 근무하다가 2010. 1. 23. 전역하였고, 위 복무기간 중 진정인의 소속부대 직할 지휘관인 피진정인 3, 4, 5는 진정인에 대한 신상을 관리함에 있어 진정인이 무교를 주장하고 종교행사에 불참하는 것과 관련하여 극단적인 무신론자로서 종교행사에 극심한 비타협적인 성향을 보이며 불참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을 보여 병영생활에 있어 주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집중 관리한 사실이 있다.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 4. 5. 실시한 제○군수지원사령부 직할부대 장병 650여명 중 무작위 선정한 98명(이병 27명, 일병 32명, 상병 25명, 병장 14명,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보유자가 44명, 무교가 45명 이었음)에 대한 ‘군 장병 종교의 자유 관련 인권상황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종교생활을 자유롭게 보장받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 장병 16명(16.3%)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이유로는 간부들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3대 종교 등 택일하여 믿도록 하고, 무교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상병계급 이하의 장병에 대해서는 종교행사에 강제로 참여시키고 있고, 간부들이 군에는 1인 1종교 의무규정이 있다거나 이등병의 경우에는 정서안정을 위해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 규정이 있다고 교육을 하였다고 밝혔다.

특정 종교를 믿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장병 17명(17%)이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고,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는 장병 39명(39.7%)이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고, 그 경위로는 이등병의 경우 전원 참석을 강요받았고, 특히 종교 행사 시 참석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참석을 더욱 강요받았다고 대답하였다.

본 건 진정과 같이 이등병의 경우 의무적으로 3대 종교 중 택일하여 믿도록 하고, 무조건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하여 과반이 넘는 장병 53명(54%)이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특히 화기중대 및 수송대대에서 이런 응답이 높게 나왔다.

또한 위원회에 대한 건의사항 및 자유의견 제시부분에 대해서는 당직사관, 소속 대대장 등이 종교 행사 불참 시 TV시청을 금지하고, 청소 및 작업을 시키고, 이등병의 경우에는 1인 1종교를 택할 것과 전원 참석을 강요하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하면 “빠졌다.”라고 질책을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4. 판단

가.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와 정교의 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종교의 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일반적으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및 종교적 집회 결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특히 종교의 자유에 기초가 되는 신앙의 자유는 국가가 국민이 종교를 가질 권리 뿐 만아니라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너 나아가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무교의 자유)까지도 넓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1. 9. 27. 2000헌마159)

나. 이 사건 피진정기관인 제○군수지원사령부는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 하도록 개선하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가 설문조사를 실시 한 2010. 4. 5. 당시까지에도 많은 장병들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하고 있고, 특히 이등병 등 하급 장병의 경우에는 특정종교를 믿을 것과 종교 행사에 참여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속 지휘관들이 1인 1종교 및 종교행사 참여를 강제할 의무규정이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장병들에게 전달한다거나 종교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TV시청 등 개인여가 시간을 제한하고, 심지어는 청소 등 작업을 시키는 불이익을 주고 있고, 진정인의 경우에도 군 복무 중 피진정인 3, 4, 5가 개인면담 등을 통한 복무관리를 함에 있어 진정인이 무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비타협적이고 반사회적인 성향의 문제사병으로 부당하게 특별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인 제○군수지원사령부의 이와 같은 장병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부적절한 부대 운영 및 관리행위는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군인복무규율」 제 30조(종교생활)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정인을 비롯한 소속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사건에 대한 조치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제○군수지원사령부의 지휘관들은 위원회의 실지조사에서, 자체적인 실태파악 및 개선조치를 의사를 피력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교의 자유의 보장내용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종교 활동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및 종교행사예의 불참석까지도 인정하는 신앙의 자유, 그리고 위력 있는 3대 종교 뿐 만 아니라 소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군 지휘관들의 인식개선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이와 같은 문제가 이 사건 피진정기관

을 포함하여 군 기관 전체에 관행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국방부장관에게 본 사례를 전파하고 실질적으로 장병들의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관행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황덕남 위원 한태식

3

2010. 7. 23.자 10진정419300결정 [군대 내 성폭행에 의한 인권침해]

국방부장관에게 본 진정사례를 전파·교육하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해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하고, 해병대사령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직조정 등 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

【1】 이 진정사건의 강제추행 행위는 동종의 남성이 자신의 신분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신체의 내밀한 부위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헛바닥을 이용하여 타액을 전가시켜 혼용하게 하고, 은밀한 부위를 노출시키고 만지고 잡아 쥐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선량한 성도덕의 혼란을 일으킴과 동시에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신체상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임.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상대방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함은 물론, 같은 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임

【2】 피진정인이 관사로 복귀하던 중 참모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명령과 위협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뽀뽀 해 달라. 안아 달라.”며 신체접촉을 요구하다 강제로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핥았으며, 입술을 깨물고 빠는 등 키스를 하였고, “목욕탕을 가자, 키스를 해 달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뒤 좌석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음경을 위아래로 흔들고 음낭을 조여 잡아 항거불능하게 한 상태에서 혁대를 풀어 옷을 벗기고 자신의 음경을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고 만지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30여분 간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2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 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안전을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결정(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포함)】 법재판소 1990. 9. 20. 선고 1989헌마82결정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2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 「군형법」 제92조2

【진 정 인】 황○○

【피 해 자】 이○○

【피진정인】 오○○

-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본 진정사례를 전파교육하고, 군대 내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해군참모총장에게 피진정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수사할 것을 의뢰한다.
 3. 해병대사령관에게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직조정 등 적절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4.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진정인의 아들로, 해병대제00사단 참모장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2010. 7. 9.(금) 23:55경 참모장인 피진정인이 ○○소제 군 휴양소인 ○○회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모는 관용승용차를 타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뽀뽀 해 달라. 안아 달라.”라며 신체접촉을 요구하였고, 강제로 피진정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핥고 입술을 깨물고 빠는 등 키스를 하였다. 이후 피해자의 만류로 간신히 위병소를 통과해 관사에 이르렀으나 피진정인이 또다시 피해자에게 “목욕탕에 가자. 키스를 해 달라.”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뒤 좌석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음경을 위아래로 흔들고 음낭을 조여 잡아 항거불능하게 한 상태에서 혁대를 풀어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음경을 비비고 만지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였다.

나. 이에 피해자는 피진정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는 등 매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바 위 진정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등의 권리구제를 해 주길 바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들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의 주장요지

1) 피해자는 2009. 12.부터 해병대제00사단 본부대대 운전병으로 근무하였으며, 2010. 7. 6.부터 피진정인인 참모장(5호차)의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보직명령을 받을 무렵 수송관 중위 정○○은 피해자에게 “참모장 조심해라. 참모장이 약간 이상한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너 병장 이○○를 아냐? 개 빨게 벗기고 안마시키고 주무른 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려고 장난하는 줄 알았다.

2) 피해자는 2010. 7. 9. 21:05경 관용승용차량에 양주 한 박스 싣고 가서 ○○회관에서 회식중인 피진정인에게 양주 3병을 전달하고 대기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0. 7. 10. 00:40경 피진정인을 태우고 위 회관을 출발하여 관사로 귀대하던 중, 피진정인이 해병대제00사단 제00대대 인근 내리막길 노상에서 차량

을 찾길 한 가운데 세우도록 지시하고 하차한 후 위 차량 뒤 도로바닥에 주저앉아 피해자를 옆에 앉히고 “우리 ○○이 여자처럼 이쁘게 생겼네. ○○아 나한테 뽀뽀 한번 해 줄래? 볼에다 말고 입에다 뽀뽀 해줘라.”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고를 걱정하고 차량에 승차할 것을 권유하며 머뭇거리자 피진정인이 자신의 입술에 뽀뽀하라고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그 위압에 눌려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하겠다면 가볍게 입술에 갖다대자 그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강압적으로 피진정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밀어 넣어 윗 이빨과 아랫 이빨을 훑고 빠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후 피진정인은 “○○아 너 입술 너무 달콤한데, 우리 ○○이 입술이 여자 입술처럼 얇아서 더 부드럽고 너 혀가 너무 맛있는 것 같다. 근데 우리 이러다가 게이나 호모되는 거 아닌가.”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당황해 하며 여기는 위험한 곳이니 차량에 탑승하여 속히 귀대할 것을 권유하자 “차에 탈 테니 한번만 더하자, 아까 느껴봤던 것을 다시 느껴보고 싶다.”라며 키스할 것을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뽀뽀만 할 것이냐고 하니까 그레 뽀뽀만 한다면 안심시킨 다음, 피해자가 뽀뽀를 하자 피진정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누르고, 왼손은 피해자의 뺨을 잡아 강하게 밀착시켜 혀를 밀어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입을 굳게 다물자 피진정인이 이빨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어 입을 강제로 벌리도록 하고, 이에 혀를 넣어 입안을 핥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번갈아 가며 핥고 빠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3) 이후 피해자가 피진정인을 간신히 밀쳐내고 부축하여 차량에 승차시킨 후 치밀어오는 모욕감과 수치심을 참고 운전을 하여 ○○ ○○사거리 부근에 도착하였다. 이 때, 피진정인이 “○○아 잠깐만 갓길에 차 좀 세워라. 이야기 좀 하자. 아까 우리 ○○이가 해줬던 키스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 그러니 차 좀 세워라. 어 근데 여기 근처에 모텔들 있는데 우리 근처에 가서 쉬다 갈래?”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참모장님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진정인이 차량을 ‘○○모텔’ 건너편 갓길에 세우고 뒷좌석으로 오라고 명령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뒷좌석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조수석

뒷좌석에 앉힌 다음 자신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어 피해자가 떨어뜨리려고 하자 힘을 주어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물고 있는 피해자의 입술을 혀로 핥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번갈아 가며 빨고, 이어 혀를 입에 밀어 넣고 피해자의 혀바닥을 잡아당기고 깨물고 빠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4) 이어 피진정인은 키스행위를 마치고 입맛을 다시더니 멍하니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금 사단본부 관사로 운행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운전석으로 돌아가 운행하여 해병대제00사단 입구 해병대 ‘○○교회’ 앞을 지날 때 “○○아 아까 내가 했던 행동이 미안해서 너랑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교회 쪽으로 차를 세워봐라. 얼른!”이라고 지시하며 ○○교회 공사장 안쪽으로 차를 세우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진정인은 “○○아 라이트 끄고, 시동 끄고 나서 내 옆으로 잠깐 와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뒷좌석에 걸터앉자 “너는 내가 왜 좋니?”라고 대답을 강요하여 피해자가 분노와 수치심을 억누르고 “참모장님이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사복을 입고 있을 때는 아버지 같고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져 좋다.”라고 대답하자 “아버지니까 고추도 만져 볼 수 있겠네?”라고 하더니 오른손을 피해자의 성기부분 위쪽에 얹어 놓고, 피해자가 엉덩이를 빼자 벨트를 잡아당겨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헤집고 팬티 속에 있는 음경을 짹 쥐고 위 아래로 세게 흔들며 발기시키려고 하여, 피해자가 뿌리치려고 하자 “가만히 안 있어! 해병이. 해병은 그러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어봐라.”라고 명령하고, “어 우리 ○○이 발기되었네. 그리고 물도 나온다. 네가 발기되니까 나도 발기되었다. 봐봐 하하하! 우리 ○○이도 내 꺼 한 번 만져볼래? 내 꺼도 물 나와서 팬티가 조금 적적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은 “괜찮아. 이왕 한 김에 키스까지 하자.”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경을 아플 정도로 짹 쥔 상태에서 왼손은 피해자의 벨트를 풀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뒷좌석에 가로 누우면서 음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그 통증에 따라 눕도록 하여, 피해자가 뒷 유리창과 운전석 머리베개를 잡고 버티자 오른손으로 고환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는 엉덩이와 항문을 문질러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에 눈물을 흘리며 피진정인의 손을

뿌리치려고 손을 잡자 더욱 피해자의 고통을 세계 잡아 눌러 꼼짝을 못하도록 하고, 이어 음경을 잡고 위아래로 계속 흔들고, 왼손가락으로 항문을 비벼대고, 피해자가 너무 아파 버티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피진정인의 몸 쪽으로 자꾸 밀착되자 입술을 빨고 피진정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성기와 피진정인의 성기를 맞닿게 하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 이어 피진정인이 “○○아 나 너무 흥분된다. 너는 어떡냐? 나랑 같이 한번 할까?”하여 피해자가 “참모장님 싫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행위는 아버지 차원을 넘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라고 하니까 피진정인이 음경을 잡고 있던 손을 풀고 일어나더니 “그렇게 이상하냐? 나는 네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들 같아서 그런 느낌으로 한 건데 네가 하기 싫다고 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 그냥 들어가자 미안하다.”라고 하고 옷매무새를 고쳐 입었다.

5) 2010. 7. 10. 02:35경 ○○교회를 빠져나와 위병소를 지나 공관 쪽으로 도착할 무렵 피진정인이 아내의 전화를 받았는데 하나도 술에 취하지 않은 듯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통화를 마쳤다. 이후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목을 주무르면서 “○○아, 얼른 목욕탕 쪽으로 후진해라. 이건 명령이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후진하여 독신자숙소(BOQ)건물 입구 초목 한가운데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가 목욕탕에 안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그럼 목욕탕에 안 가는 대신에 그냥 한번 가슴 따뜻하게 안아보자. 그리고 키스 한 번만 해보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다. 딱 한 번만 안아보자. 그러면 바로 집에 들어 갈 거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엉겨주춤 안는 포즈를 취하자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바지 뒤쪽 벨트를 잡아 껴안고, 다른 한손으로는 벨트 앞부분을 풀어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기고 피해자의 음경을 마구 흔들어 대고, 귓가에 입을 대고 “우와 우리 ○○이 또 발기 됐구나? 물도 나온다. 내가 너 고추에 키스해 줄까? 그리고 물 빼줄까? 그럼 우리 ○○이도 내 꺼 물 빼줄 수 있냐?”라며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와 같이 계속되는 피진정인의 강제추행에 더 이상 제지할 만한 힘조차 남아있지 않아 자포자기 상태에서 밀랍인형처럼 가만히 있었더니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팬티에 넣어 음경을 잡고 앞뒤로 왔다갔다하면서 발기를 하도록 하고, 피진정인의 고환을 주물럭거리게 하고,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음경을 부여잡는 등 강제추행을 하고, 속칭 계간에 이르는 상황의 직전까지 도달하였다. 이때 마침 차량 앞으로 SUV형 승용차가 지나가 독신자숙소 앞 주차장에 정차한 후, 동 차량 운전자가 차에 내려 SM5 차량 앞을 이상한 듯 주시하자 피진정인이 당황해 하며 행동을 멈춘 사이 옷매무새를整理的 고쳐 입고 재빨리 운전석 쪽으로 옮겨 타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진정인을 관사에 하차시켜 귀가시킨 후 수송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6) 피해자는 더 이상 살 이유와 가치가 없고 우여곡절로 전역하게 된다고 하어도 사회에 나가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적응할 자신이 없고, 나중에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과 정신적 수치심에 자살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수송반에 도착하여 노끈과 커터칼을 찾아 수송반 화장실에 들어가 목을 매어 자살할지 손목을 그어 자살할지 고민하였다. 그러다가 어머니와 가족들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며 한참 동안을 울다가 다시 부대 뒷산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 끈을 매달아 목을 매어 자살을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에게 인사 차 전화하고 산에 올라가 나뭇가지에 목을 매었는데, 순간 숨이 막혀오면서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지는 가운데 갑자기 나무가 부러져 흠바닥을 굴러 떨어져 망연자실 흠바닥에 누워 한참 동안 울었고, 홀로 계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자살하지 못하였다.

7) 피진정인은 2010. 7. 10.(토) 09:10경 및 7. 11.(일) 21:30경 두 차례나 특정한 행선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호출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시내 및 외곽 드라이브를 한다면 “○○아 어제 너랑 키스했던 것과 어제 너랑 했던 그것 오늘 생각해 보니 너무 좋았고 행복했던 것 같다. 우리 ○○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고, 어머니에게 관련 사실을 말했는지를 물어보고, 자살을 하려고 한 경위를 캐물으며, 군대 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너도 죽을래?”라고 위협하는 등

비밀유지를 강요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순간 위협을 느낀 나머지 어머니에게 비염 관계로 힘들다고 말한 것인데, 이를 어머니가 오해한 것 같으며 피진정인을 안심시키고, 가족과의 만남 등 외부연락을 위해 ○○통합병원 진료를 부탁하였다.

8) 2010. 7. 12. 07:25경 피진정인이 비서실을 통해 피해자의 비염수술을 위해 ○○통합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비염수술을 위한 ○○통합병원 진료 건과 관련하여 보고체계를 거치지 않았다고 질책하는 수송담당관 상사 나○○ 등 수송반 간부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 또한 같은 날 13:15경 본부대대장 소령 임○○에게 구두로 피해사실을 말하고, 소속 수송소대 간부들의 관찰 및 동행 속에서 내무생활을 하다가 2010. 7. 13. 09:55경 국군○○통합병원에 도착해 오전 진료를 받고, 곧이어 동 병원에 도착한 어머니와 가족들이 외부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겠다고 부대 측에 요구하여 4박 5일간의 청원휴가를 받고 같은 날 16:55경 가족과 함께 부대를 나오게 되었다.

9) 이 사건 직후 피진정인이 위협 및 비밀유지를 강요하는 등 제2차 피해가 우려되고, 피진정인의 행위에 대하여 도저히 용납이 안 되므로, 피진정인에 대해 형사처벌을 원하며, 본 사건을 기회로 군대 내 성폭행사건이 근절되기를 희망한다. 향후 피진정인을 상대로 민·형사 상 소송을 진행할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구조를 알선해줄 것을 희망한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2007. 12. 1. 대령으로 진급하여 2009. 12. 17.부터 해병대 제00사단 참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0. 4.~5. 경 정보참모 중령(진) 정○○과 회식을 할 때, 위의 정○○ 중령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가 밝은 표정으로 방향 전환을 말하고, 목소리가 맑아 호감을 갖게 되어, 2010. 7. 6. 운전병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2)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반에서 2병 정도 되는데, 2010. 7. 9. 21:30경 ○○ ○○식당에서 해병동기생 최○○과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셨다. 이후 고교동창생인 김○○(○○증권 근무)가 아는 지인들과 ○○회관에서 회식을 하고 있는데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택시를 타고 동 회관 숙소에 찾아가 위 김○○를 포함한 5~6명의 동행인들이 주는 맥주 2잔을 받아 마시고, 위 지인들과 양주 3병을 돌려가며 빠른 시간 내에 나누어 마신 관계로 많이 취한 상태였다.

3) 당시 위 김○○의 전화를 받았을 때, 비서실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관용승용차량을 이용하여 양주 한 박스를 가져오도록 하였던 관계로, ○○회관에서 회식을 마치고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관사로 귀가하였다. 귀가 당시 술이 많이 취한 상태여서 귀가 중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다가 입술이 닿은 것과 피해자의 고추를 만져보자고 하여 고추(음경)를 만진 기억은 어렴풋하게 나나 어디서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된 것인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4) 2010. 7. 10. 09:20경 일어나 어젯밤 일을 생각해보니 어렴풋이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기억이 있어 미안하다고 생각되어 특별한 행선지 없이 피해자를 만나 알아보려고 만났는데, 피해자의 표정이 밝았고, 어제 뽀뽀한 것이 어땠냐고 물으니깐 아버지처럼 느껴졌다고 대답하여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2010. 7. 11. 오후에는 ○○도에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 차량을 이용하였는데, 이 때에도 피해자의 표정이 밝아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같은 날 21:00경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의 유○○ 중령의 안내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하였는데,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비관자살을 시도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잠시 후 경위를 알아보려고 5호 차량을 불러 피해자를 만났다. 2010. 7. 11. 21:30경 피해자를 만나 혹시 뽀뽀한 것 때문에 자살을 하려한 것이냐고 하니깐 피해자가 지나간 일이라며 별것 아닌 듯 말하고, 자신이 어머니에게 힘들다고 한 것은 비염 때문이라며 비염수술을 받게 해 달라고 하여 병원치료를 약속하고 헤어졌다. 당시 피해자를 만난 것은 2010. 7. 9. 귀가 당시 뽀뽀를 한 것 같은데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고 무언가 피해자에게 술김에 상처를 준 것 같아 괜찮은지 물어 보려고 했던 것이다.

5) 본인은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피해자의 주장처럼 강제로 입술을 깨물고, 모텔에 쉬었다 가자거나 엉덩이와 항문을 문질렀다는 등의 진정내용은 본인의 인격 상 인정할 수 없고 뭔가 과장된 것 같다. 그러나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마당에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없다.

6) 2010. 7. 9. 새벽 귀가 후 아내에서 물어 보았더니 귀가 중 나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하여, 핸드폰에 찍힌 아내의 핸드폰 전화번호 통화시간을 확인해 보니 2010. 7. 10. 00:48분으로 14초간 통화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2010. 7. 10. 01:00경이 좀 못 되어 집에 도착하였다고 하는바, 피해자의 주장처럼 2010. 7. 10. 02:00경을 넘어 귀가한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니 무엇보다도 먼저 병원치료를 도왔으면 하고, 또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겠으며, 피해자 측과 조속히 합의를 하였으면 한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안○○(대령, 해병대제00사단 부사단장)

2010. 7. 12. 17:20경 본부대대장으로부터 최초 사건경위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실체를 확신할 수 없어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어머니와 통화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피해내용을 확인하였다. 피해자 어머니가 일단 피해자를 ○○병원에서 진료를 시켜달라고 하고, 피진정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원하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하여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청원휴가를 허락하였다. 2010. 7. 13. 20:00경 사단장이 외부일정을 마치고 복귀한 즉시 공관으로 올라가 보고하였고, 피진정인 본인에게는 2010. 7. 14. 06:50경 지금까지의 상황을 전달하고, 피진정인에게 일단 이○

○의 가족을 만나 볼 것을 권유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부대에서 은폐하려고 한 바는 없고, 단지 성추행 사안인 만큼 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리하려고 했고,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단장님께의 보고가 다소 지연된 것이다. 이 사건 인권위 조사통보 후, 곧바로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되었고, 해군참모총장은 2010. 7. 16.부로 참모장 보직해임과 동시에 인권위 조사가 끝난 후 군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2) 정○○(중령(진), 해병대제00사단 정보참모)

피해자는 정보참모실(2호 차량) 운전병으로 2009. 12. 중순부터 2010. 7. 초까지 근무하였다. 2010. 4.경 사단 ○○회관에서 참모장인 피진정인 주재의 정보참모실 격려 회식을 한 후 복귀하면서 2호 차량에 피진정인이 탑승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운전병이 운전을 잘 하니 자신의 5호 차량(참모장) 운전병으로 보직조정을 원하기에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반대를 하였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탑재 계통으로 참모장 운전병을 찾는데 ‘이○○’도 포함이 되었다기에 사단 지형을 잘 아는 피해자는 외부운행이 많은 합동신문조 운전병으로 임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 다면서 반대한 적이 있다. 그러나 2010. 7. 6. 정보참모실 행정관이 피진정인으로부터 피해자를 5호 차량 운전병으로 보낼 것을 지시받았다기에 상급자인 참모장의 지시를 거둬 거부하기가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보직변경 신고를 받고 5호 차량 운전병으로 보낸 사실이 있다.

3) 류○○(중령, 해병대제00사단 헌병대장)

2010. 7. 9. 23:40경 지인들과 ○○회관에서 회식을 하고 숙소 2층 계단을 내려오던 중, 술에 취해 계단을 내려가던 피진정인을 만나 인사를 하였는데, 피진정인도 나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였다. 당시 위 회관에 올 때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기에 집에 있던 아내에게 차량을 가지고 회관으로 오라고 하였는데, 2010. 7. 9. 23:32경 어디쯤 오느냐고 확인을 하니 갈산사거리 쪽에 오고 있다고 하여, 위 40분경 기다리려고 나가다가 피진정인을 숙소 2층 계단에서 만난 것이다. 당

시 피진정인은 술에 취했으나 계단을 혼자 내려가 현관에 대기시켜 놓은 차량을 곧바로 타지 않고 로비에 서서 친구 분과 10여 분 간 대화를 하다가 차량을 타고 출발하였고, 본인은 곧이어 이미 도착해 있던 아내의 차량을 이용해 집에 갔는데, 당시 출발시간은 23:50경에서 24:00경 사이로 자정이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 나○○(상사, 해병대제00사단 본부대대 수송소대 수송담당관)

2010. 7. 12. 07:10경 비서실 원사(진) 황○○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외진 계획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불러 그 경위를 묻자 피해자가 중요하게 할 이야기 있다고 하여 일단 일조점호 때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공구실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로부터 피해상황을 듣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휘계통인 수송행정관인 상사 강○○ 및 수송소대장 중위 정○○에게 보고하였다. 당시 최초 피해자에게 들은 내용은 2010. 7. 9. 새벽 귀가 중에 피진정인이 제00포대 인근, ○○사거리 인근, ○○교회 주변 및 BOQ 앞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뽀뽀를 한다면서 혀를 입에 넣어 남녀사이 같은 키스를 수차례하고, 차량 뒷좌석에서 바지에 손을 넣어 음경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음경도 만져보라고 하는 등 자위를 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산에 올라가 자살을 시도하려 하였으며, 이후 피진정인이 별다른 목적지 없이 같은 달 10. 및 11. 피해자를 불러내어 차량운행을 하였는데, 피진정인이 술에 취해 기억을 못할 줄 알았는데 어제 어땠냐고 물어보고, 뭘 고민하느냐고 하여 모욕감을 느껴 화제를 돌리고자 비염문제로 ○○통합병원에 외진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이었다.

5) 정○○(중위, 해병대제00사단 본부대대 수송소대장) 등 하사관 다수

피진정인의 전임 운전병이었던 병장 이○○로부터 근무 당시 피진정인이 공관에 불러서 갔더니 안마를 하라고 하고, 더우니깐 팬티만 입고하라고 하였고, 자신의 볼에다 뽀뽀를 하라고 시켰다는 말을 들은 바 있다. 피해자는 항상 밝고 명랑하

였고, 성실하게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하였던 운전병으로 병사들과도 잘 지냈는바, 고위 장교를 상대로 허위의 진정을 할 병사로 보이지 않는다.

6) 이○○(예비역 병장, 전임운전병)

본인은 해병대제00사단 참모장 운전병으로 1년 6개월간 근무를 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위 기간 중 모신 4명의 참모장 중 전역 무렵 6개월간 운전병으로 근무한 바 있다. 2009년 추석 때, 피진정인과 밖에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관사에 들어왔는데, 사모님도 출타 중이라 계시지 않아 TV도 보고 같이 술 한 잔 더 먹고 자고 가라고 하여 마음 편하게 누워 있다가 땀이 나서 팬티바람으로 함께 있었고, 피진정인이 피곤해 하는 것 같아 안마를 해 주자 곧 잠이 들어 내무반으로 온 사실이 있다. 또한 어느 때인가는 피진정인이 술에 취해 “○○야! 뽀뽀 한번하자.”라고 하여 한 번 볼에다 뽀뽀를 한 적이 있었으나, 이는 피진정인이 아버지 같이 인성이 후덕하여 그랬던 것으로 성적수치심이나 불쾌한 감정을 가진 바는 전혀 없다.

7) 이○○, 장○○(각 상병, 해병대제00사단 본부대대 전임운전병)

피해자 이전에 피진정인의 운전병으로 각 2010년 5월 및 같은 해 6월초부터 7월초까지 각 한 달 간 근무한 적이 있는데, 근무 중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고, 피진정인이 마음에 안 들어 바꾼 것으로 알고 있다. 근무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2호차(정보참모)를 운행할 때 피진정인이 자기를 마음에 들어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또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너와 끝까지 가고 싶다. 사랑한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도 피진정인을 아버지처럼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

3. 관련법령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의 사건경위서 및 진술서, 진정인이 제출한 소견서(○ ○대학교 의과대학 ○ ○ ○ ○ ○ 병원), 피진정인의 진술서 및 문답서, 해병대제00사단 관련 참고인들의 각 진술서, 문답서, 전화통화조사보고서, 해병대제00사단장이 제출한 당사자 인사기록카드 및 병적기록부, 전현직 운전병 개인신상기록부 및 면담기록부, 위병소 출입기록, 해군차량운행증, 피해자관련 면담 및 조치사항, 위병소 CC-TV녹화기록, 해병대사령관 인사명령서 제000호,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지조사보고서 및 피해자대면조사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1985. 3. 28. ○ ○사관학교 39기로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하여 해병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2007. 12. 1. 대령으로 진급하여 해병대제00사단 ○ ○연대 연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 12. 17.부터는 해병대제00사단본부 참모장실에 전입하여 참모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2010. 4. 경 ○ ○소재 ‘○ ○회관’에서 같은 사단 정보참모 중령(진) 정○ ○과 격려회식을 하고 동인의 2호 차량에 동승하여 사단 관사로 귀대하다가 동 차량의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인지하였다. 피진정인은 이 때 피해자의 밝은 성격과 목소리, 그리고 성실한 운전태도에 호감을 갖고 피해자를 자신의 5호 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도록 할 것을 결심하였다.

다. 피해자는 2009. 6. 8. 해병교육훈련단에 지원 입대하여 기본교육을 받고, 2009. 8. 21. 해병대제00사단 본부대대로 전속되어, 행정차량 운전병으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12. 18. 정보참모 2호차 운전병으로 보직을 받아 맡은 임무에 충실하여 모범해병 포상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던 중 2010. 7. 6. 피진정인의 지시에 따라 참모장실 5호 차량 운전병으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0. 7. 9. 20:30경 사복차림(빨강색 티셔츠와 검정색 바지 착용)으로 ○○ ○○식당에서 자신의 해병동기생 최○○과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시던 차에 고교동기생 김○○로부터 지인들과 회식을 하고 있으니 ‘○○회관’으로 인사차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21:09경 해병대제 00사단 비서실 행정관 상사 황○○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복차림으로 비서실에 소장하고 있던 양주 1박스를 받아 관용승용차량에 싣고 위 회관으로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1:20경 피진정인의 관용차량에 양주 1박스를 싣고 위 회관으로 출발하였다.

마.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회관’으로 출발한 시간에 택시를 타고 ‘○○회관’에 도착하여 동 회관 2층 숙소에 올라가 위 김○○ 등의 일행 5~6명과 소량의 맥주와 준비해 간 양주 3병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나누어 마셨다. 이후 2010. 7. 9. 23:40경 숙소를 나와 위 김○○와 함께 동 회관 로비에서 서서 10여 분 간 인사를 하다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SM5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 55경 해병 00사단 영내에 있는 관사로 출발하였다.

바. 이후, 피해자는 피진정인을 태운 동 차량을 운전하여 약 52분이 경과한 2010. 7. 10. 00:47경 해병대제00사단 위병소를 통과하였고, 같은 날 01:00경 영내 피진정인의 관사 앞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도록 하였다. 위 귀가 도중 피진정인은 위 피해자의 진술 2)~5)항까지의 내용과 같이 ○○회관을 나와 50여 미터가 이격된 해병대제00사단 제00대대 도로 상에서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강제로 키스를 하고, ○○ ○○인근 ‘○○모텔’ 건너편 갓길에 정차하게 한 후 SM5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고 해병대제00사단 앞 ‘○○교회’ 앞 공사장에 차를 세우게 한 후 위 차량 뒷좌석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음경을 만지고 팬티를 벗기고, 위병소를 통과하여 영내 독신자숙소 주차장 앞에 정차한 후 위 차량 뒷좌석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음경과 음낭을 앞뒤로 잡아 흔드는

등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고 피해자는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평소 주량이 소주 1병 반에서 2병인데 이날따라 평소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셔 많이 취했던 관계로 어렴풋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다 자신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고, 피해자에게 고추를 만져보자고 하고, 피해자의 음경을 만진 기억은 나나 어떤 경위로 어느 장소에서 그렇게 하였는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이 진정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병대제00사단장은 진정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피해자에 대한 병원치료를 위해 피해자를 국군○○통합병원으로 후송하고, 휴가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해병대 사령관의 보고를 받은 해군참모총장은 2010. 7. 16. 피진정인을 보직해임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후 군 검찰에서 조사를 착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5. 판단

가. 이 진정사건 관련 기본권 등에 대하여

이 진정사건의 강제추행 행위는 동종의 남성이 자신의 신분적 우월성을 이용하여 신체의 내밀한 부위를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헛바닥을 이용하여 타액을 전가시켜 혼용하게 하고, 은밀한 부위를 노출시키고 만지고 잡아 쥐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입장에서 받아들기 힘든 선량한 성도덕의 혼란을 일으킴과 동시에 인격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신체상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상대방의 신체의 안전을 침해함은 물론, 같은 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연유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9. 20. 선고 1989헌마82결정).

이와 같이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하나의 행위로부터 유발되는 관련 기본권의 침해에 따른 해악이 깊어 단순한 신체에 대한 물리적 폭행에 따른 피해행위에 비하여 쉽게 회복하기 힘든 인간의 정신적인 인격형성의 가치관을 뿌리 채 파괴하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방지 및 예방을 위해 입법적 대책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두어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고, 단체생활에서의 고도의 질서유지가 필요한 군인의 경우에는 「군형법」 제92조 내지 같은 법 제92조 8까지의 관련조항을 두어 엄히 그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진정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다 자신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았고, 피해자의 고추를 만져보자며 피해자의 음경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외 추행사실 및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주장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진정사건과 관련된 정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피진정인의 진술에 비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 상 실제로 겪어보지 않고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사실이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최초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상사 나○○ 등의 증언과 이후 피해자가 위원회에 제출한 사건경위서 및 위원회 조사관의 대면조사보고서 등에 나타나는 일관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부분 진실에 부합된다고 보인다.

둘째, 피진정인은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관’ 출발 당시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진정인이 다소 취한 듯이 보이기는 했으나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위 회관 2층 회전계단을 걸어내려 왔고, 이후에도 10여 분 간을 로비에 서서 고교동창생 김○○의

배웅을 받고 대화를 나누었으며, 이후 위병소 통과 시까지 무려 52분의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취중에 수면을 취하지 아니하고 2010. 7. 10. 00:48경 아내의 귀가를 확인하는 핸드폰을 받아 14초간 통화를 한 사실, 그리고 장소를 옮겨가며 총 4회에 걸쳐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피해정황에 비추어보면, 피진정인이 당시 의식을 잃고 기억을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피진정인의 귀가 행적 및 차량운행에 관한 현장 실지조사 및 위병소 CC-TV 화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당시 차량운행 시간이 심야시간대로 다른 차량의 운행이 현저히 드물고 도로 상황에 익숙한 피해자의 운전경험으로 보아 무정차시 30분 이내로 목적지인 관사에 도착하였을 것이나, ‘○○회관’에서 2010. 7. 9. 23:55경 출발하여 해병대제00사단 위병소에 2010. 7. 10. 00:47경 도착하여 약 52분이 소요되어 약 20여 분이 지체되었고, 위병소에서 관사까지는 1~2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00경 도착하여 약 10여 분간 지체된 정황으로 보아 피해자의 주장에 상당부분 부합한다.

넷째, 피진정인은 사건 다음 날 아침 단순히 뽀뽀를 하였던 어렴풋한 기억날 뿐인데도 특별한 행선지 없이 2010. 7. 10. 09:20경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의 반응을 살피는 등 과도하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2010. 7. 11. 21:30경에는 피해자의 부모와의 통화 시 스스로 책임을 느낀다고 하거나 병원치료를 적극 주선하는 등 과도하게 반응하는 점으로 보아 피진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인다.

다섯째, 피해자가 운전병으로 평소 매우 성실하게 근무해 왔고, 모범적인 병영 생활을 해 왔다는 참고인들의 증언 및 피진정인이 2010. 4. 경부터 피해자의 이러한 성실한 태도와 밝은 성향에 대해 특별한 호감을 느끼고 자신의 운전병으로

의 발탁을 모색하다가 같은 해 7. 6. 전격적으로 보직명령을 내린 사실, 피진정인이 술에 취한 경우 평소 자신과도 가벼운 신체접촉을 가졌다는 전임운전병인 이○○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일반인의 통념에 모범적인 병영생활을 해 왔던 피해자가 상관인 고위 장교를 대상으로 병사의 위치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든 반면 피진정인의 경우에는 동성간의 신체접촉을 유발할 만한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여섯째, 사건 이후 피해자가 그 수치심과 모멸감을 못 이겨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려 한 정황, 2010. 7. 14.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정신과 전문의 허○○이 피해자에 대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병적 장애’로 최소 수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임상적 소견을 한 사실로 보아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가 피진정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뽀뽀를 하고 음경을 만지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만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판단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주장요지 2)~5)항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진정인이 관사로 복귀하던 중 참모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명령과 위협으로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뽀뽀 해 달라. 안아 달라.”며 신체접촉을 요구하다 강제로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훔았으며, 입술을 깨물고 빠는 등 키스를 하였고, “목욕탕을 가자, 키스를 해 달라.”고 강요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뒤 좌석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음경을 위아래로 흔들고 음낭을 조여 잡아 항거불능하게 한 상태에서 혁대를 풀어 옷을 벗기고 자신의 음경을 피해자의 성기에 비비고 만지게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30여분 간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92조2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 자기 결정권 및 신체의 안전을 각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진정사건 조치의견에 대하여

1) 피진정인에 대한 조치

피진정인은 지난 25년간 국가를 위해 성실히 근무해 왔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의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명하고 전역지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보직 해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해병대의 고위급 장교로서 병사 및 하급 장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와 지위를 이용하여 병사인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안전이라는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책임이 중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며, 피해자 측 또한 가해자인 피진정인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고 친고죄인 점을 고려하여,

해군참모총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진정인의 「군형법」 제92조2의 규정에 정한 소정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에 대한 조치

이 사건 피해자는 인격적 정체성 및 성적자기결정의 존엄성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고, 이에 따라 현재 수 주간의 정신과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고 치료 중에 있으며, 군 당국에 의한 제2차 피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 및 피해 회복을 위하여

해병대사령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보직조정 등 신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권고하고,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의 민형사상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국방부에 대한 조치

이 사건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반병사에게 국가기관의 최고위급 지휘관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을 통하여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군복무 의무를 수행해야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심각한 염려와 불신을 발생하게 한 사건이므로,

국방부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소속 군 기관에 본 진정사례를 전파 및 교육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황덕남 위원 한태식

4

2011. 3. 23.자 10진정0796600·11직권0000100(병합) 결정 [해병대 상습폭행 및 은폐사건 직권조사]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부대 지휘관에게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경고 조치할 것,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직무감찰과 징계 등 조치할 것 및 병영 내 관행 개선을 통한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가해자들에 대하여 재조사와 책임에 상응하는 사법처리를 할 것 및 피해자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

【결정요지】

【1】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는, 사적 제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

【2】 해병대 내에서 극심한 구타·가혹행위가 사병간에 광범위하게 반복적·관행적으로 발생한 데에는,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관용적인 잘못된 병영 문화와 지휘·감독자들의 관리 부실에 상당한 원인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재발 방지와 관행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군인사법」 제47조의2(복무규율), 「군인복무규율」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군사고 예방 규정 제37조(구타 및 가혹행위 사고예방)

- 【주 문】 1. 해군참모총장에게,
가.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병○사단장과 ○연대장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이 사건 관련자 1~11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통하여 폭행사건을 축소·은폐·지연 처리한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각 권고한다.

나. 재발 방지를 위한 관행 개선을 위하여,
첫째, 해병대원과 지휘관 및 간부들에 대하여,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
둘째, 해병대원간 ‘기수열외’를 금지하고, 그 가해자 및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격히 처벌하는 관련지침을 마련할 것,
셋째, 구타·가혹행위 사건 발생 시, 이를 자체 식별 및 인지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해당 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면책하나, 이를 은닉하고 부당하게 처리한 지휘관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등의 현실적인 구타·가혹행위관련 지휘책임 원칙을 수립할 것,
넷째, 당직근무 시 사병들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관리방안을 마련할 것과 환자발생 시 발병 경위를 의무기록에 철저히 기재·관리하도록 할 것,
다섯째, 향후, 해병대 내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제도적 개선을 위해 해병부대에 대하여, 해군본부, 국가인권위원회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밀진단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해병대사령관에게,

가. 가해자 1~8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사법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해자 1~7에 대하여,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정조치 및 치료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3.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피해자 1, 5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1. 직권조사의 배경

가. 2010. 12. 31. ‘해병대에 입대한 신병이,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대간부들이 단순 구타사건으로 축소·은폐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되었다.

나. 이 사건 접수 직후, 진정인 대면조사 및 기초자료를 검토한 결과, ① 천안함 사건 이후,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순수한 피해자 및 다수의 국민의 뜻에 반하고, ② 일반부대와 달리 해병대에서는 아직도 공공연히 선임병들의 후임병에 대한 폭행 및 가혹행위가 상습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③ 이러한 범죄행위가 조직의 안정과 군기유지라는 이유로, 소속 간부들에 의하여 단순 사고 및 구타사건으로 은폐·축소되고 있고, ④ 본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의 폭행사건이 단순 사건으로 처리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을 고려할 때, 인권침해 정도가 크고 그 예방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에 의거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2. 가해자 등 관련자 현황

가. 가해자

- 1) 가해자 1 : 상병 △△1(○연대 ○○대대 ○중대)
- 2) 가해자 2 : 병장 △△2(위 같은 소속)
- 3) 가해자 3 : 상병 △△3(위 같은 소속)
- 4) 가해자 4 : 일병 △△4(○연대 ○○중대)
- 5) 가해자 5 : 상병 △△5(위 같은 소속)
- 6) 가해자 6 : 상병 △△6(위 같은 소속)

- 7) 가해자 7 : 병장 △△7(○연대 ○○대대 ○○중대)
- 8) 가해자 8 : 일병 △△8(위 같은 소속)

나. 피해자

- 1) 피해자 1 : 이병 □□1(○연대 ○○대대 ○중대)
- 2) 피해자 2 : 일병 □□2(위 같은 소속)
- 3) 피해자 3 : 일병 □□3(위 같은 소속)
- 4) 피해자 4 : 일병 □□4(위 같은 소속)
- 5) 피해자 5 : 이병 □□5(○연대 ○○중대)
- 6) 피해자 6 : 이병 □□6(위 같은 소속)
- 7) 피해자 7 : 이병 □□7(위 같은 소속)

다.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

- 1) 관련자 1 : 중령 ☆☆1(○연대 ○○대대 대대장)
- 2) 관련자 2 : 대위 ☆☆2(위 같은 대대 ○중대 중대장)
- 3) 관련자 3 : 상사 ☆☆3(위 같은 중대 행정관)
- 4) 관련자 4 : 중위 ☆☆4(위 같은 중대 ○소대 소대장)
- 5) 관련자 5 : 대위 ☆☆5(위 같은 대대 2010. 8. 14. 당직사령)
- 6) 관련자 6 : 대위 ☆☆6(위 같은 연대 ○○중대 중대장)
- 7) 관련자 7 : 상사 ☆☆7(위 같은 중대 행정관)
- 8) 관련자 8 : 원사 ☆☆8(위 같은 중대 행정관)
- 9) 관련자 9 : 하사 ☆☆9(위 같은 중대 분대장)
- 10) 관련자 10 : 대위 ☆☆10(위 같은 연대 ○○대대 ○○중대 중대장)
- 11) 관련자 11 : 상사 ☆☆11(위 같은 중대 행정관)

3. 당사자 및 관련자 등의 주장요지

가. 피해자들의 진술요지

1) 피해자 1(이병 □□1, ○연대 ○○대대 ○중대)

가) 가해자 1의 구타·가혹행위 관련

(1) 피해자는 소속부대 전입 후 선임병들에 의해 군기잡기 등의 이유로 상습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해왔다. 그러던 중 2010. 8. 14. 22:00경 내무반에서 소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해자 1이 군기를 잡는다면서 피해자를 이층 침상에 매달리도록 한 후, 피해자의 복부·기슴 등 온 몸을 주먹, 발, 무릎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다발성 늑골 및 흉골 골절,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중상을 입혔고, 다음 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자 병장 △△2 등 선임병들은 소대원들을 소집해 피해자가 축구하다 다친 것이라고 말을 맞추고, 소대원들에게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강요하였다.

(2) 사건 발생 후, 소속 부대 간부인 행정관 ☆☆3, 중대장 ☆☆2, 대대장 ☆☆1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도, 피해자에게 사건축소를 강요한 후 이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뒤늦게 알렸고, 또한 위 사실을 사단장과 헌병대에 알리지 않고 가해자 1에게 영창 10일의 행정처분만 하였다.

나) 가해자 2의 구타·가혹행위 관련

(1) 가해자 2는 2010. 7.~8. 초순 경 근무 중 내무반에서, 체스터(관물함)정리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내무반 구석까지 몰고 가면서 2~3회 구타하였으며, 청소 점검 시 청소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앉아 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폭언을 하며 자신의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10여회 구타하였다.

(2) 가해자 2는 위 같은 시기에, 피해자가 세면장과 화장실에서 청소할 때 “너 청소하는 것 제대로 배웠냐?”고 질책하면서 슬리퍼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화장실의 더러운 모래가 피해자의 입에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모멸감을 주고, 이어 내무반에서도 구타하였다.

(3) 가해자 2는 위 같은 시기에, 일명 ‘인계’(사제양말은 언제부터 신을 수 있고, 햄버거 먹을 때는 고기를 빼고, 국에 밥을 말아먹는 것은 언제부터 가능하다는

등의 기준)라고 하여, 자신은 밥을 낮게 쌓고,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사병들에 대해서는 밥을 높게 쌓아 짧은 시간 내에 다 먹도록 강요하였다.

(4) 가해자 2는 2010. 7. 중순~8. 초순 경, 당시 일병 □□2가 ○○대대 ○중대에서 불침번 상황근무를 하던 중, 당직 상황근무자만 깨우고 대대 입초근무자 등을 깨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면서 5~10분간 위 □□2의 뺨과 얼굴을 손바닥과 주먹으로 구타하였다.

(5) 가해자 2는 위 같은 시기에 세탁실에서, 주먹으로 일병 □□4의 뺨과 얼굴을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5~6회 구타하고, 위 □□4가 다른 곳을 보자 “판테 쳐다보게 돼있냐, 어디 쳐다보냐 미친놈아.”라면서 계속 구타하는 등 평상시 걸핏하면 손찌검을 하였다.

다) 가해자 3의 구타·가혹행위 관련

가해자 3은 피해자에게 “너 옛날에 왔으면 죽었다. 내 별명이 구타 저변들이다.”라고 협박을 하고, 종종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두 눈덩이를 콕콕 찌르거나 발로 가슴을 밀어 차곤 하였다.

2) 피해자 2(일병 □□2, 위 같은 중대)

가) 2010. 8. 14. 아침 식사 후에 ○○해수욕장에서 전투 수영을 하고, 같은 날 17:00경 귀대하여 저녁식사를 한 후 통제형 순검준비를 위해 청소하던 중, 가해자 1이 박스를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병 □□1과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화를 내면서 순검 이후 소등하고 보자고 하였다.

나) 소등 후, 가해자 1이 이병 □□1과 피해자를 철재침상에 매달리게 한 후 주먹으로 가슴을 수차례 구타하였고, 만두가 올 때까지 질책을 받다가 만두를 먹고 취침하였다. 이후 위 □□1이 가슴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병원에 호송되었고, 2010. 9. 초순 경 중대장이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피해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다) 2010. 7. 말 쯤 K2 소총을 생활관에 두고 3분대에 갔다가, 가해자 1에 의해 한 손으로 소총을 들고 엎드려뺨쳐 얼 차레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외

다른 선임병들에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은 없다.

3) 피해자 3(일병 □□3, 위 같은 중대)

가) 피해자는 처음에 ○○대대 ○중대 ○소대 ○분대에 배치되었다가 이병 □□4와 함께 ○분대로 조정되었는데, 2010. 7. 말경 통화교육이 끝나고 대답을 하던 중, 가해자 1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5~6회 때려 기절한 적이 있고, 이외에도 실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2회 때리곤 하였다.

나) 2010. 7.경 위 □□4가 가해자 1 앞에서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가해자 1에게 끌려가 오랜 시간 철봉에 매달려 있는 가혹행위를 당하고, 이로 인하여 위 □□4의 손에 수포가 생긴 것을 본 사실이 있으며, 자대 배치 직후 가해자 1이 위 □□4에게 충기명칭을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4에게 충기를 들고 ‘쪼그려앉아’를 시킨 것을 본 사실이 있다.

4) 피해자 4(일병 □□4, 위 같은 중대)

가) 2010. 7. 8. ○○대대 ○중대 ○소대 ○분대에 배치되었는데, 가해자 1의 지적사항이 많아 ○분대로 변경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이불을 잘 개지 못하거나 실수한 것이 발견될 경우, 가해자 1은 바로 충고를 하다가 감정이 북받치면 1~2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고, 한 번은 부소대장 000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에게 운동장 뛰어 돌기 3회, 팔굽혀펴기 50회, 철봉 매달리기 10분 등의 열 차례를 시킨 적이 있으며, 병기수입 시 이석하였다는 이유로 충구를 양손으로 머리 위에 든 상태에서 쪼그려 뛰기를 50회 정도 시킨 적도 있다.

나) 복무 중 가해자 1에게 암기사항을 숙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혼났는데, 가해자 1은 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찼고, 이외 선임병들의 구타 사실에 대해서는 대답하고 싶지 않다.

5) 피해자 5(이병 □□5, ○연대 ○○중대)

가) 가해자 4는 피해자가 자대배치를 받은 후 하루도 빠짐없이 갖가지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해왔는데, 평상시 청소 불량 등 사소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모나미볼펜, 수성펜, 보드머커펜, 가위(강도가 높은 순서)등을 끼고 꼭 잡은 후, 끼운 물건을 약하게 혹은 세게, 빠르게 돌려, 그 후유증으로 피해자의 양쪽 검지의 해당 부위 뼈가 돌출되었다. 가해자 4는 조별과업 후, 조식·중식·석식 후 수시로, 초소근무지나 ○연대 건물 복도 끝 전화박스, 쉼터, 생활실에서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복부를 때리고, 심지어는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때리기도 하였다.

나) 특히, 가해자 4는 2010. 12. 26. ○○중대 쉼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구타하였고, 피해자가 맞을 때 아파 상체를 숙이고 소리를 내면 더 많이 때렸다.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한 후 통증이 심해 숨쉬기도 불편하였으나, 3일간 참다가 과업을 나가 땀박질을 하던 중 힘이 들어 선임병 ○○○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자, 위 ○○○이 소대반장 하사 ☆☆☆에게 위 사실을 말하였고, 의무중대 입실 후 해군○○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결과, 늑골 골절(좌측 2번)로 6주 진단을 받고 입실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

다) 당시 소대반장인 하사 ☆☆☆가 행정관이나 의무중대장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여, 피해자는 겁을 먹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의무중대장이 계속 폭행사실을 캐물어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행정관 상사 ☆☆☆에게 알려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2010. 1. 10. ○연대 ○○중대장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느냐고 물었으나, 중대 복귀 후에 기수열외가 걱정되고, 지금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선임들로부터 싫은 소리를 듣고 있어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며, 가해자 4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6) 피해자 6(이병 □□6, ○연대 ○○중대)

가) 평상시 가해자 5, 6으로부터 음식물 강제취식 강요(일명 ‘악기바리’), 변기 걸레를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고, 2010. 7. 21. 경에는 위 가해

자들이 화장실 청소 불량, 탁구장 내 컴퓨터 위 먼지제거 불량을 이유로 피해자를 연대 보급창고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 가슴을 수차례 폭행하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때렸다. 피해자가 맞을 때, 통증으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얼굴을 돌리면 더 강하게 구타를 하여 부동자세로 관동성명을 대도록 하였고, 이 날 당한 폭행으로 피해자의 입안이 터져 피가 났으며, 이를 후부터 피해자는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의식소실(기절)이 발생하여 의무실에 입실하였다.

나) 피해자는 ○연대 ○○중대 행정관인 ☆☆☆(관련자 8, 현 연대 주임원사)에게 최초 폭행 피해 사실을 말했으나, 위 ☆☆☆이 원만한 처리를 약속하면서 위 가해자들에게 직접 구두로만 훈계를 하는 바람에 위 가해자들이 “너 찼냐?”라면서 더욱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의식소실로 입실하였을 때 의무중대장과의 진료 상담 중에 위와 같은 폭행 사실이 인지되어, 위 가해자들에게 대하여 사후에 징계영창 조치하고, 위 가해자들을 타 대대로 전출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가해자들에 대한 해병○사단 헌병대 조사 과정에서, 폭행사건에 대한 관련 기준에 따라 조치하지 않고 후임인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묻고 있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의 폭행 피해자는 낮은 계급의 사병들이어서 보복이 두렵고,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7) 피해자 7(이병 □□7, ○연대 ○○중대)

가) 가해자 7은 피해자가 조리실에 배치된 직후인 2010. 10. 19. 19:30경, 피해자가 선임기수를 못 외운다는 이유로 따귀를 셀 수 없이 때리고, 피해자가 조리식단 메뉴를 외우지 못한다고 정강이로 대퇴부를 5회 폭행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저는 것을 본 중대선임 병장 ○○○이 가해자 7에게 더 이상 때리지 말라고 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왕복달리기, 쪼그려 뛰기를 시키고 온 몸을 폭행하였다.

나) 가해자 7의 지시를 받은 가해자 8은, 2010. 10. 19. 피해자에게 소보로 빵 5개를 10분 안에 먹을 것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먹지 못하자 따귀를 20대

정도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가슴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린 다음 철모로 얼굴을 5~6회 구타하였으며, 계속해서 피해자를 일어나게 한 뒤에 대퇴부를 4회 폭행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절자 그 다친 곳을 재차 폭행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일병 ○○○에게 업혀 응급실에 입실한 후에 폭행경위를 의무관에게 말하였다.

다) ○○중대 행정관 ☆☆7 상사(관련자 7)와 ○○대대 ○○중대 행정관 ☆☆11 상사(관련자 11)가 의무실에 찾아와, 위 폭행 사건에 대하여 ‘고소까지는 하지 말고 영창 정도로 끝내면 어떻겠냐’고 설득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 그 결과 가해자 8은 휴가제한 5일, 가해자 7은 영창 15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 가해자들의 진술요지

1) 가해자 1(상병 △△1, ○○대대 ○중대)

가) 2010. 7~8월경 현 ○사단장이 새로 부임하고 새로운 훈련프로그램(컴벳 워리어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훈련이 강하게 실시되었는데, 후임병들이 잘 따라 오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은 차에, 청소상태도 엉망이어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 1, 2를 약 15회 정도 폭행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다음날 피해자 1이 아프다고 하여 사실대로 간부들에게 보고하러 하였으나, 중대원들이 일이 커진다고 하며 만류하고 두렵기도 하여, ‘피해자 1이 축구하다 다쳤다’고 허위 보고하였다.

나)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껏해야 머리박아 상태에서 군화발로 머리를 때리는 정도였고, 2010. 7~8월경 피해자 3이 말귀를 못 알아 들어 복부를 다섯 대 정도 때렸더니 피해자 3이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적이 있었다.

다) 자신도 후임병 때 많이 맞았고 그 때 코를 맞아 지금 좀 빼돌어져 있는데, 본인의 한 기수 후임병도 선임병에게 맞아서 늑골이 골절된 적이 있었으나 그냥 축구하다 다친 것이라고 말하고 참고 지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해병의 전통으로 알고 있다.

라) 통상 간부들도 위생점검을 하다가 다친 명 자국을 보면 구타 등으로 난상처임을 짐작하지만, 일이 복잡해지는 것이 귀찮아 운동하다 다친 것이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곤 하였다.

2) 가해자 2(병장 △△2, 위 같은 중대)

가) 자신도 후임병 때, 선임병들에게 머리를 쥐어 박히거나 뺨을 맞고 조인트를 끼이는 정도의 폭행을 당한 적은 있으나, 가해자 1처럼 후임병을 침상에 매달리게 한 후 폭행을 하거나, 그런 정도의 폭행을 당한 적은 없다.

나) 평소 후임병들이 실수를 하면, 후임병들을 불러 혼계하거나 타이르고 잘못된 점을 가르쳐 주나, 간혹 감정이 통제되지 않은 경우에 화가 나서 몇 차례 ‘툭툭’ 치거나 쥐어박는 정도로 때린 적이 있을 뿐이다.

3) 가해자 3(상병 △△3, 위 같은 중대)

자신은 후임병들의 군기를 잡는 위치에 있어 군기를 좀 잡는 편이지만, 무작정 때리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하는데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 간혹 주먹으로 몇 대 치는 정도이고,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을 정도로 과도하게 때린 적은 없었다.

다. 지휘감독 관련자들의 진술요지

1) 관련자 1(중령 ☆☆1, 해병 ○사단 ○연대 ○○대대 대대장)

가) 2010. 8. 15. 오후 당직사령 대위 ☆☆5으로부터, 피해자 1이 풋살(축구)의 일종)경기를 하다 상호 충격에 의해 부상을 입어, 위 피해자를 ○○병원에 호송하였다는 보고를 받았다. 당시 ○○병원 진료결과, 복부혈중으로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 소견을 받고 위 피해자를 입실조치하였다. 그런데 같은 달 17. 중대장이 대대장실에 찾아와, 위 피해자가 운동 중 다친 것이 아니라 같은 달 14. 22:00경 가해자 1에게 가슴부위를 6~7회 구타당한 것이라는 수정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고 중대장, 행정관 등에게 관련자들을 상세하게 조사할 것과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같은 달 17.~19. 관련자에 대한 면담 결과, 최초 인지한 구타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어 연대장에게 서면보고하고, 피해자 및 가해자 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였다. 같은 달 22. 위 피해자의 부친이 중대장에게 피해자가 계속해서 아프다고 하여, 구급차로 위 피해자를 서울삼성병원으로 호송하여 X-ray촬영을 한 결과, 피해자의 복부·흉부 등에 이상은 없고 안정을 취하여야 한다는 진료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피해자 부모가 다른 병원에서의 재진료를 강력히 원하여 ○○ 소재 해민병원으로 위 피해자를 다시 후송하여 MRI 촬영을 한 결과, 같은 해 9. 2. 다발성 늑골 골절, 중골 골절,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다) 이후 위 피해자를 ○연대 의무실에 입실시키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다가, 위 피해자 부모의 요구로 아산 소재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핵의학검사를 한 결과 해민병원과 동일한 결과가 나왔고, 같은 해 10. 11.~12. 15.간 8회에 걸쳐 위 피해자에게 병가조치를 해 주었다. 같은 해 9. 2.~9. 8. 위 피해자의 부친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타사실이 최초 인지한 것보다 심하다’는 말을 하였고, 같은 달 9. 위 피해자와 군의관을 대대장실로 불러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 하도록 하여, 이를 의무담당관 중사 ○○○가 정리하여 보고함으로써, 피해 사실이 최초 인지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 이에 최초 인지한 상태에서 처리한 가해자 1에 대한 영창 15일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어 위 가해자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피해자 부모와 통화한 결과 사건 확대를 원하지 않고 위 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타 부대 전출을 원하여, 이를 약속하고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 하에 위 피해자와 위 가해자의 부모 간에 원만한 합의가 될 것으로 보아 그렇게 한 것이며, 피해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2) 관련자 2(대위 ☆☆2, ○○대대 ○중대 중대장)

가) 2010. 8. 15. 19:15경 피해자 1이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후송 전 군의 관 진찰 시 축구하다가 다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같은 달 16. 위 피해자가 자신에게 비밀면담을 요청하여 면담한 결과, 가해자 1의 구타로 가슴에 타박을 입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간호장교가 환자의 절대안정이 필요하니 병동으로 신속히 복귀하라는 권유를 하여, 더 이상 자세한 피해사항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나) 같은 달 17. 대대장(관련자 1)에게 최초 보고 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 후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나, 같은 달 21. 위 가해자의 부모가 ‘진료비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위 피해자의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원만한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혀, 같은 달 23. 대대장의 지시에 의거 위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영창 15일의 징계 처리하였다. 그런데, 위 피해자의 부친이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하여 ○○삼성병원 및 혜민병원 등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위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음이 확인되고, 같은 해 9. 9. 의무담당관 ○○○ 중사가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를 보고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대대장에게 수시로 위 사건을 헌병대수사관에게 통보하여 법적 처리를 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대대장이 자신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여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다) 같은 해 8. 20. 위 피해자와 통화 중, “상병 △△1이 처음엔 축구했다가 다쳤다고 했다가 사실대로 다 말했다. 그런데 그대로 말하면 상병 △△1은 구속되고, 조금 진술을 바꾸면 영창행인데, 수근이 생각은 어떠니”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라) 당시 이외에 ○중대 내에서 사병들 간에 발생한 폭행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소대장이나 분대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가 없고, 다만 2010. 12.경 이병 ○○○이 폭행을 당해 가해자 3명을 영창 등 징계조치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관련자 3(상사 ☆☆3, ○○대대 ○중대 행정관)

가) 2010. 8. 15. 피해자 1이 응급실로 후송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이동하여 경과를 확인하였는데, 위 피해자의 복부에 혈전이 있으나 안정가료만

취하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군의관 소견을 들었다. 이후 위 피해자에게 사고 경위를 확인하자, ‘풋살 경기를 하다 가해자 1의 팔꿈치에 부딪쳐서 다쳤다’고 하여 부대에 복귀한 후 관련자들을 조사하였으나, 다 같이 ‘풋살 경기를 하다가 위 피해자가 다쳤다’고 진술하여 대대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나) 같은 달 17. 위 피해자가 중대장에게 전화로 면담을 요청하여 중대장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가해자 1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부대로 복귀하여 가해자 1을 조사한 결과, 위 가해자로부터 위 피해자의 가슴을 6~7회 폭행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다. 같은 달 21. 양측 부모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였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부모가 치료만 잘 해 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여, 같은 달 23. 위 가해자 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영창 15일의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런데, 같은 달 24. 위 피해자의 부친이 군병원의 치료가 소홀하다면서 민간병원 진료를 요구하여, 민간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 받게 한 결과, 처음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 소재 혜민병원 등에서 재진료를 받게 한 결과, 다발성 늑골골절이 의심된다는 진단이 나와 대대장에게 법적 처리를 요구하였다. 또한 피해자 측의 지나친 요구가 계속되자 대대장이 위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진술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여 확인해 보니, 기존에 인지한 피해 사실과 다르고 해당 사건이 축소되었음을 알게 되어 대대장에게 헌병대에 통보할 것을 재차 건의하였으나, 이후로는 대대장이 직접 관리한다고 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4) 관련자 4(중위 ☆☆4, ○○대대 ○중대 ○소대 소대장)

가) 2010. 8. 14. 발생한 피해자 1의 폭행 피해 사건에 대하여 같은 달 15. 중대장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통보받았고, 본인은 부대 과업수행 및 유격훈련 준비로 인해 사건에 관여하지 못했다. 당시 위 사건과 관련하여 중대장과 행정관이 소대원들을 조사하였으며, 같은 달 23. 가해자 1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어 영창 15일의 징계 처분을 결정하고 같은 달 26. 위 가해자를 입창 처리하였다.

나) 위 피해자의 폭행 피해 사건 이후, ○중대 ○소대에 구타 사건이 더 있었는데

지 소대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위 사건 외에도 경미한 구타 사건이 여러 건 더 있었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소대 일부 인원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파악하였다. 피해자 1에 대한 폭행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해자 1이 피해자 2를 함께 구타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가해자 1이 징계처분을 받아 입창되었기에 위 가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당시 구타사건의 중심에는 가해자 1, 2, 3이 있었고, 피해자 2, 3, 4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피해자 1의 추가 진술서를 통해 확인하였다. 당시 ○소대 ○분대장 하사 ○○○은, ‘과업시간에 행동이 느리고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가해자 1이 피해자 3과 피해자 4의 머리를 쥐어박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5) 관련자 5(대위 ☆☆5, ○○대대 2010. 8. 14. 당직사령)

가) 본인은 2010. 8. 14. 대대 당직사령으로, 중사 ○○○, 하사 ○○○, 하사 ○○○과 당직근무를 했다. 당시 오전과 오후에는 상황유지 및 206초소 근무교대로 대대 상황실에서 근무하였고, 상황에 따라 대대 순찰을 실시하였으며, 당일 22:00경 소등 이후에는 대대통합당직제도 시행에 따라 중사 ○○○, 하사 ○○○, 하사 ○○○은 철수하고, 당직사령 단독으로 익일 01:00경까지 근무했다. 소등 방송 이후에 대대 주둔지 외곽을 40분 동안 순찰하고 복귀하여 대대 상황병에게 특이사항을 확인하였으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다. 당시 23:10 경부터 23:29경까지 ○○중대, ○중대, ○○중대, ○○중대, ○○중대 순으로 내무실 등을 순찰하였으나, 구타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는바, 구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나) 당시 해병○사단은 2010. 8. 8.까지는 중대별 당직사관, 당직부관이 당직 근무를 하였으나, 같은 달 9.부터 사단장 지시에 의해 대대급 단위 통합당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2:00경 소등 이후부터 익일 01:00경까지 혼자서 당직근무를 섰던 것이다.

6) 관련자 6(대위 ☆☆6, ○연대 ○○중대 중대장)

가) 피해자 5가 2010. 12. 26. 연대 공사를 하던 중 철근작업을 하다 안전사고를 당하여 늑골골절상을 입었고, 평소 선임인 가해자 4로부터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다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여, 행정관 상사 ☆☆7 주관하에 위 가해자에 대한 자체군기교육(봉사활동 및 얼차려)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나) 본인은 2010. 11. 23.부터 같은 해 12. 28.까지 ○○훈련 증원작전에 참여하였다가 28일 복귀하였고, 당시 상사 ☆☆7로부터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실을 구두 및 관련 자료를 통해 보고받은 후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자체군기교육 조치를 지시하였다.

다) 이 사건은 욕설 등 단순한 괴롭힘인 줄 알았는데, 이는 당시 작성된 위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사항(2010. 12. 26. 12:40경 쉼터에서 위 가해자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6~7회 구타당하여 피해자가 늑골 골절을 입은 사실)을 자세히 보지 못하고 판단한 것으로 잘못처리 된 것 같다.

라.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중위, ○○대대 의무소대장 군의관)

2010. 8. 15. 19:20경 의무병으로부터 복부 진통 환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의무실에 도착하여 피해자 1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열이 38도이고 복부를 손으로 만졌을 때 상복부 반발 압통이 있어, ‘폭행을 당했냐’고 물어보았더니, 선임자 1인과 같이 와서 그랬는지 ‘축구하다 다쳤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통상 군의관들이 환자들과 얘기를 많이 하다보면 처음에는 축구하다 다친 것이라고 하면서 맞은 사실을 부인하나, 나중에 폭력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위 피해자의 경우도 그랬다.

2) ○○○(중위, ○연대 의무중대장 군의관)

2010년 4월말에 발령 받아 ○연대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현재까지 폭행과 관련된 상해 사건이 10여건 정도 발견되었다. 군의관은 환자의 치료가 주요임무이지만, 때에 따라서는 환자의 발병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것도 의무관의 임무이

다. 통상, 낮은 계급의 사병 환자들의 상해 중 고막 천공, 대퇴부 파열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은 구타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군병원 및 민간병원 진단서, 사건 진술서, 피해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가해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지휘감독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참고인 ○○○ 등에 대한 문답서, 직권사건에 대한 실지조사 보고서, ○사단장 간담회 보고서, 해병 ○사단이 제출한 □□1 구타 사건 조사자료, ○○대대 지휘보고서, 피해자 □□1에 대한 의무기록, ○○대대○○중대○○대대 구타사건 관련 징계기록과 징계처리표(2010년), ○연대 의무대 환자발생보고서와 의무기록리스트(2010년), 피해자 및 가해자들에 대한 면담관찰기록부와 개인신상기록부 및 관련규정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연대 ○○대대 피해자 1, 2, 3, 4에 대하여

1) 피해자 1은 2010. 5. 31.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은 후 같은 해 7. 16. 해병○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 전입하여 복무하던 중이었다. 분대 선임병 가해자 1은 같은 해 8. 14. 22:00경 소등 후 생활실에서, 일병 ○○에게 망을 보도록 한 후 분대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소 훈련태도 및 청소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1, 2를 이층 침상난간에 매달리게 한 뒤, 위 피해자들의 복부, 가슴 등 온 몸을 주먹, 발, 무릎으로 10회에 걸쳐 마구 폭행하고, 피해자 1이 호흡곤란과 고통으로 몸을 뒤틀자 맞을 때 움직였다는 이유로 계속 무릎과 발로 복부를 폭행하였으며, 이어 손바닥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허리 부위를 내리찍는 등 30여분에 걸쳐 폭행을 하였다.

2) 위와 같은 폭행의 결과로 피해자 1이 고통을 호소하자, 2010. 8. 15. 18:30경 가해자 1, 2, 3의 주도하에 위 피해자가 축구(풋살 게임)를 하다 다친 것으로 입을 맞추어 중대장 등 지휘관에게 허위 보고하고, 가해자 1이 피해자 1을 연대 의무실로 호송하였으며, 응급진료가 필요하다는 군의관의 진단에 따라

같은 날 19:40경 위 피해자를 해군○○병원 응급실로 호송하였다.

3) 2010. 8. 17. 피해자 1이 관련자 2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병원을 방문한 관련자 2, 3에게 가해자 1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관련자 2, 3이 가해자 1을 조사한 결과, 위 가해자로부터 ‘청소 불량을 이유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6~7회 구타하였다’는 진술을 들었으며, 관련자 2는 같은 달 20. 위 피해자와 ‘상병 △△1이 처음엔 축구하다 다쳤다고 했다가 사실대로 다 말했다. 그런데 그대로 말하면 △△1은 구속되고, 조금 진술을 바꾸면 영창행인데, ○○이 생각은 아떠니.’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고, 관련자 3은 피해 사실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대대장인 관련자 1에게 보고한 후, 관련자 2, 3은 같은 달 23. 가해자 1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4) 피해자 1의 부모는 군 병원의 치료가 소홀하다면서 민간병원에서의 진료를 요구하였고, 위 피해자가 같은 해 9. 1. ○○ 소재 해민병원 등에서 MRI 및 핵의학검사를 받은 결과, 다발성 늑골(좌측 2, 3, 6, 7, 8, 9, 우측 5, 6, 7) 및 종골 골절, 요추부 염좌 및 좌상 등으로 5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한다는 중상해 진단을 받았다.

5) 같은 해 9. 초경, 관련자 1은 피해자 1의 부모로부터 피해 사실이 축소되었다는 항의를 받은 후 같은 달 9. 대대 군의관 중사 ○○○을 통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1의 피해사실을 파악하였고, 사실관계를 알게 된 관련자 2, 3으로부터 헌병대 수사 등의 추가조치를 건의 받았으나, 이미 가해자 1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졌고, 당사자들의 부모가 원만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6) 같은 해 9. 초순 관련자 1, 2, 3, 4 등은 피해자 1의 구타사건을 자체 조사하면서, 피해자 1이 제출한 자필진술서 등을 통해, 같은 해 7.~8.경 가해자 1, 2, 3 등이 피해자 2, 3, 4에게 크고 작은 구타가혹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이러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 1의 부모가 같은 해 12. 3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나. ○연대 ○○중대 피해자 5, 6, 7에 대하여

1) 피해자 5 관련 사실

가) 2010. 5. 21. ○연대 ○○중대에 전입하여 복무하던 피해자 5는, 전입 초기부터 가해자 4로부터 다음과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 가해자 4는 청소 불량 등의 사소한 이유로 모나미볼펜, 가위 등을 위 피해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우고 이를 짝 잡은 후 돌리는 가혹행위를 하여, 그 후유증으로 위 피해자의 양쪽 검지부위 뼈가 돌출되는 상해를 입히고, 조별과업 후나 식사 후 등 수시로, 초소 근무지 · ○연대 건물 복도 끝 전화박스 · 쉼터 · 생활실 등에서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복부를 때리거나, 손가락으로 정수리를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나) 같은 해 12. 26. 14:40경 위 가해자는 ○○중대 쉼터에서, 위 피해자가 정리정돈 등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6~7회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좌측 2번)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위 피해자는 해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위 피해자는 당시 피해 사실을 선임병 ○○○을 통하여 소속 분대장인 관련자 9에게 알렸으나, 관련자 9로부터 구타 사실을 소속 중대장 등에게 말하지 말 것을 요구받고, 철근작업 중 다친 것이라고 피해 사실을 숨겼다가, 입원치료 중 위 피해자의 상해 상태를 이상히 여긴 의무중대장 중위 ○○○의 문진과정에서 구타당한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위 ○○○가 당시 ○○중대 행정관인 관련자 7에게 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통보하였다.

라) 관련자 7은 위 피해자와 위 가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구타 사실 일부를 확인하는 진술서를 받았으나, 위 피해자가 부대 작업 중 늑골 골절상을 입었고 위 가해자가 욕설을 한 정도의 경미한 사안으로 파악해 중대장인 관련자 6에게 구두 보고한 후 위 가해자에게 자체군기교육을 실시하였다. 관련자 6은 당시 작성된 위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사항(2010. 12. 26. 12:40경 쉼터에서 위 가해자로부터 가슴을 6~7회 주먹으로 구타당하여 피해자가 가슴뼈 골절을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2011. 1. 10.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개시

당일, 위 관련자 6은 위 피해자가 입원한 병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 가해자에 대한 다른 처벌을 원하는가를 물었고, 위 피해자는 기수열의 등을 우려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으나, 같은 달 12.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의 대면조사와 과정에서 그 의사를 바꾸어 위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희망하였다.

2) 피해자 6 관련 사실

가) 피해자 6은 ○연대 ○○중대 전입 직후부터, 가해자 5, 6으로부터 강제음식취식, 변기 청소 걸레를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2010. 7. 21. 연대 보급창고에서 위 가해자들로부터, 화장실 등의 청소 불량을 이유로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당하였다.

나) 위 피해자는 위 피해사실을 당시 ○○중대 행정관인 관련자 8에게 이야기했으나, 관련자 8이 가해자 5, 6에게 구두경고만 하여 위 가해자들에게 더욱 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스트레스로 의식소실이 되어 입실하였고, 의무중대장 ○○○와의 진료 상담 중에 피해사실을 말하여, 뒤늦게 위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영창 및 타 대대 전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또한 해병사단 헌병대 조사중, 처벌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기수열의 등의 피해를 당할까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3) 피해자 7 관련 사실

가) 피해자 7은 ○연대 ○○중대에 전입하여 조리실에 배치된 직후부터, 조리실 선임병인 가해자 7로부터, ‘선임기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뺨을 맞고, ‘조리식단표를 암기하지 못한다’고 발로 대퇴부를 5회 폭행당하였으며, 다른 선임병이 폭행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조리실에서 왕복달리기, 쪼그려뛰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나) 2010. 10. 19. 가해자 8은 피해자 7에게 소보로 빵 5개를 10분 안에 먹을 것을 강요하고, 위 피해자가 먹지 못하자 따귀를 20회 정도 때렸으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는 발로 가슴부위를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위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의 결과로 대대 의무실에 입실되어 폭행 경위를 의무관에게 말하였으나, 관련자 7, 11이 의무실에 찾아와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까지는 하지 말고 영창정도로 끝내면 어떻겠냐고 위 피해자를 설득하였고, 관련자 10은 중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자 8에게는 휴가제한 5일, 가해자 7에게는 영창 15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5. 판단

가. 군의 구타 및 가혹행위 금지 관련 규정

별지 참조

나. 해병 ○사단 ○연대의 구타가혹행위에 대하여

1) 위 인정사실과 같은 가해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는, 사적 제재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 제15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서 보장하고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이와 같이 선임병들의 후임병들에 대한 구타가혹행위가 소속 부대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해당 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축소된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가해자들 또한 후임병으로 복무하였을 때 선임병으로부터 같은 형태의 구타가혹행위를 받아 왔던 관계로, 폭언이나 폭행·기합 등의 가혹행위, 상해 정도가 경미한 폭행 행위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이를 참고 견디는 것이 ‘해병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관행적인 구타가혹행위를 피해자들이 지휘자 등 상급자에게 발설할 경우에는 피해자들에게 공공연히 기수열외(일명, ‘기수빼기’)를 하는 등 사병간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팽배한 점,

둘째, 사고 부대의 지휘감독자(관)들 또한, 부대의 명예훼손 및 불이익을 우려

해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아예 묵인하고, 구타·가혹행위의 정도가 중하거나 피해자 등의 신고로 가혹행위 등이 인지된 경우에도 상급 부대에 지휘보고를 누락하는 한편, 잔뜩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선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여부를 묻거나 피해자의 처벌 요청을 만류하여, 구타·가혹행위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자체적인 교육 및 징계처리를 통해 경미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한 점,

셋째, 현 해병○사단장이 2010. 6. 25. 부임하고, 같은 해 8. 9.부터 중대급 당직사관 및 부관으로 운영하던 상황근무제체를 대대급 단위의 통합 당직제도로 변경함에 따라, 22:00경 소등 이후부터 익일 01:00경까지는 대대통합 당직사관 1명이 당직 근무를 하여 구타 및 가혹행위가 발생하기 쉬운 일과 후 취약시간대에 대한 병력통제 및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대 내의 구타 등 군기 사고가 증가(2010년 기준, 부임 전 11건에서 부임 후 42건)하게 된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넷째, 해병○사단장 및 ○연대장은 구타·가혹행위가 발견되어 사건화 된 경우, 대체로 가해자인 사병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였지만, 지휘감독책임자인 간부들에 대해서는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 지침」에 의거하여 구타·가혹행위의 발생 및 인지경위, 대처상황 등을 고려한 지휘감독책임을 묻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연대 내에서 구타·가혹행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별다른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점,

다섯째, 해병○사단 ○연대 의무대 환자발생보고서 및 의무기록리스트(2010년)에 의하면, 고막천공 30여 건과 이외에 비골골절, 대퇴부 파열, 늑골 골절, 안면부 및 정강이 타박상 등이 250여 건에 이르고, 담당 군의관의 진료상담 경험 등을 근거해 볼 때 상당수 후임 피해 사병의 경우에는 구타·가혹행위를 당하였을 개연성이 농후함에도, 의무실의 ‘환자접수부, 진료부, 환자보고서’ 상에 상해 환자의 발병 경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 등 그 관리가 부실한 점 등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 소결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해병○사단 ○연대 내에서 극심한 구타·가혹행위가 사병간에 광범위하게 반복적·관행적으로 발생한 데에는,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관용적인 잘못된 병영 문화와 지휘감독자들의 관리 부실에 상당한 원인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및 관행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2조 제4항, 제45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가. 해군참모총장에게,

1) 구타·가혹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해병○사단장과 ○연대장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과, 이 사건 관련자 1~11에 대하여, 직무감찰을 통하여 폭행사건을 축소·은폐·지연 처리한 책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각 권고한다.

2) 위와 같은 구타·가혹행위 등의 재발 방지 및 잘못된 병영문화 등의 관행 개선을 위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나. 해병대사령관에게,

1) 가해자 1~8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사법처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해자 1~7에 대하여, 해당 부대 내에 존재하는 기수열외 등의 관행에 의해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보직 조정 및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다. 상해 정도가 중한 피해자 1과 피해자 5는 위 피해 사실을 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이사장에게 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2011. 3. 2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5

2011. 10. 12.자 결정 [2011년 군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1】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

- 가. 수용자 입창 시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
- 나.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 등의 참관 관행을 개선할 것
- 다. 징계수용자 수용 시 가족통지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할 것
- 라. 영창 CCTV 기록 관리를 명확히 할 것

【결정요지】

【1】 군 영창의 시설 및 수용자 처우에 있어, 수감보호대, 마스크를 마련하여 수용자 외부 이동시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 수용생활 안내 및 권리 고지, 수용자에 대한 경어 사용 등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수용자의 건강검진 등 의료체계 관리, 위원회 현장 시정권고에 대한 전향적 조치 등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당한 노력과 긍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점은 높게 평가

【2】 다만,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 징계수용자 면회 시 교도관(병) 참관, 징계수용자 가족통지 확인, 영창 CCTV 관리강화 등에 대해서는, 전 군의 영창운영 상의 관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써, 향후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그 개선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

【참조조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309호), 「헌병작전활동규정」(육군규정 140호), 「해군구치소 업무규정」(해군규정 1712호), 「헌병업무규정」(공군규정 14-1호), 국방부 영창시설 기준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군 영창 수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관련 제도

및 관행의 개선을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수용자 입창 시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것
2.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 등의 참관 관행을 개선할 것
3. 징계수용자 수용 시 가족통지여부에 관한 확인서를 받도록 할 것
4. 영창 CCTV 기록 관리를 명확히 할 것

【이 유】

1. 방문조사의 배경 및 조사대상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군 영창 시설 및 환경, 수용자의 처우 등에 대한 인권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개선책을 마련하여 피구금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2011. 8. 23.부터 2011. 8. 26.까지 육군○○사령부와 해병대 제○사단 영창에 대하여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시설현황, 유치실 및 화장실의 규모, 냉·난방, 채광, 조명, 환기시설 등 물리적 환경과 신체검사, 변호인 등 외부접견교통, 권리고지 및 구제절차, 의료 조치, 식사, 종교행사, CCTV 등의 처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판단의 근거 및 기준

-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
- 나.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다. 「징계입창자 영창집행 및 처우 기준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1309호)
- 라. 「헌병작전활동규정」(육군규정 140호)
- 마. 「해군구치소 업무규정」(해군규정 1712호)
- 바. 「헌병업무규정」(공군규정 14-1호)
- 마. 국방부 영창시설기준

3. 조사결과 및 판단

가. 총평 및 현장개선 사례

1) 시설·환경적 측면

국방부 영창시설기준에 의거, 거실평수, 거실 내 세면대 및 화장실, 냉·난방, 면회실, CCTV, 운동장 등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육군○○사령부는 별도의 신체검사시설이 없었던 점, 동 사령부와 해병○사단은 거실 내 조도가 낮았던 점, 근본적으로 시설의 노후 및 최초 설계 시 창문크기가 작아 채광 및 환기가 잘 안 되는 점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해당기관에서 현장시정 조치를 하고, 이외 구조적인 부분은 시설개보수 및 시설이전 등의 장기계획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밝혔다.

2) 생활·처우적 측면

각 군의 수용자처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 위생, 급식, 면회 및 접견, 운동, 독서, TV시청, 종교생활 등이 적절하게 보장되고 있고, 미결수용자와 징계수용자의 분리수용, 관찰창 및 CCTV, 호송 시 계호 등도 인권적 기준에 비추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육군○○사령부는 신체검사 기준, CCTV 관리대장 기록유지, 의약품 관리대장·수용자 진료대장 유지, 입창사실통보 근거유지(수용자 서명), 외부 화장실 관찰창 높이조정, 징계수용자 면회 시 입회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신체검사 방법 및 징계 입창자에 대한 면회입회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체시정을 하였고, 해병대 제○사단은 거실수용자 현황판 노출,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관리 등 문제점에 대해 자체시정을 하는 등 방문조사 대상기관들이 전향적인 현장 개선 조치를 취하였다.

3) 소결

이번 방문조사 결과, 군 영창의 시설 및 수용자 처우에 있어, 수감보호대, 마스크를 마련하여 수용자 외부 이동시 초상권 및 사생활 보호, 수용생활 안내 및 권리 고지, 수용자에 대한 경어 사용 등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 수용자의 건강검진

등 의료체계 관리, 위원회 현장 시정권고에 대한 전향적 조치 등 전반적으로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상당한 노력과 긍정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점은 높게 평가된다. 다만,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 징계수용자 면회 시 교도관(병) 참관, 징계수용자 가족통지 확인, 영창 CCTV 관리강화 등에 대해서는, 전 군의 영창운영 상의 관행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써, 향후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그 개선의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개선권고 사항

1) 수용자 입창 시 신체검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관련

현행 영창 신체검사관련 규정에 의하면, 입창 시 미결수용자는 정밀신체검사(속옷 탈의)를 하고, 징계수용자는 소란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외표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기준 및 검사방법에 대한 기준 등 관련 규정이 없다.

통상 미결수용자의 경우, 최초 입창 때는 물론 조사 및 면회 등을 다녀오는 경우에도 정밀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되고, 징계수용자의 경우, 통상 외표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나 형장기록부에 문신 등 신체특징을 기재하고 있어, 사실상의 간이(외표탈의)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에서, 그 기준과 방법이 자의적이어서 피수용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각 군 영창 입창 시 신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병) 참관 관련

현행 군 영창 면회 접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징계수용자의 가족 면회 및 접견 시에는 교도관(병)이 입회하거나 그 대화내용을 기록, 녹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관행적으로 교도병이 입회하여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징계수용자의 경우, 군 형법 상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증거인멸, 공모 등의 우려가 없어 교도관 등이 입회하여 관찰할 필요가 특별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용자의 외부 접견교통권을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관행을 시정하여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징계수용자 면회 접견 시 교도관 등의 참관 관행을 개선할 것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징계수용자 수용 시 가족통지에 관한 본인의사 확인 관련

징계수용자의 대부분은 가족면회가 없는 상황이지만 징계입창이라 하더라도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가 박탈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통지 제도는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영창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징계수용자 입창 시 가족통지는 본인의 의사를 물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징계수용자의 의사 확인을 구두로 하고 있어 명확하게 이를 확인할 만한 관련기록을 발견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징계수용자의 경우에는 입창 시 위원회 진정권 고지 확인서와 같이 본인의 의사를 서면으로 받아 이를 명확히 관리함으로써, 외부접견교통권이 자의적으로 침해되거나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영창 CCTV 관련 기록관리 관련

현행 군 영창의 CCTV 설치 운영 등의 규정에 의하면, CCTV의 설치목적, 위치, 각도 등에 대한 세부규정은 있으나, 생산된 저장 정보기록에 대한 열람, 공개 등 사후 관리시스템이 미흡하고, 현실에 있어서도 관련 관리대장이 없이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CCTV에 의해 녹화된 수용자의 초상 등 개인정보에 관한 관련기록이 임의로 유출되거나 유실되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시스템 정비와 관리대장을 유지하는 업무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군 영창 수용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군 영창 시설관리 및 수용자 처우와 관련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0.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6

2011. 11. 2.자 11직권0001900, 11진정0588600[병합]
결정 [육군 ○○사단 이병 폭행·가혹행위 및 사망사건
직권조사]

- 【1】** 방부장관에게, ○군 내 사망사고 예방 및 장병 인권보장과 병영문화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가. 소원수리, 병영관리시 제보자 비밀 보장 및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나. 병 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교육 강화, 병 분대장의 열차려 권한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 【2】** 육군 ○○사단장에게,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
가. 구타·가혹행위 관련 가해자와 지휘감독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행정상 조치
나. 병사 및 지휘관들의 인권인식 개선을 위하여, 병사 및 지휘관의 부대 배치 및 임명 등 병영생활의 각 단계별로 인권교육 정례화
- 【3】**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1의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

【결정요지】

- 【1】** 피해자 1의 주장 가운데, 폭언·부당한 열차려·가혹행위는 다수 목격자와 가해자 진술이 있어 사실로 인정되고 가해자 1, 2의 구타·가혹행위와 피해자 1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부인하기 어려움. 가해자들의 구타·가혹행위는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한 것임. 또한 해당 중대장과 대대장도 지휘관으로서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됨.
- 【2】** 사건의 발생원인과 관련, 분대장 교육 등 관리가 미흡하고 분대장의 열차려의 집행이 규정과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선임병은 후임병을 폭

종의 대상이자 지시대상으로 인식하는 관행이 온존함. 그럼에도 병영 내 악습을 간부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임하는 등 군 운영 전반이 법치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고,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병보호 등 권리구제 체계가 미흡하고 부실하게 운영되었으며,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식별 노력과 관리가 부실하였던 점 등이 주요원인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5조제1항·제2항, 「군사고 예방 규정」 제3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에 관한 규정」 제3조·제5조, 「구타·가혹행위자 및 관련자 처벌에 관한 사항」

【진 정 인】 ○○○

【피 해 자】 ○○○ 등 12명

【가 해 자】 ○○○ 등 8명 ※ 지휘·감독책임 관련자 ○○○ 등 6명

-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군내 사망사고 예방 및 장병 인권보장과 병영문화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 ‘병력 일일결산’ 등 병영관리시제보자의 비밀 보장 및 신상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
 - 나. 병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병분대장의 열차려 권한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육군 ○○사단장에게, 금번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가. 구타·가혹행위와 관련하여, 가해자 1 ~ 8과 지휘·감독책임자 1 ~ 6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사 및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것
 - 나. 병사 및 지휘관들의 인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병사 및 지휘관의 부대배치 및 임명 등 병영생활의 각 단계별로

인권교육을 정례화 할 것

3.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 1의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및 직권조사의 배경

‘피해자 1은 2011. 8. 26. 자대배치 받은 두 달 만에 사망하였는바, 선임병에 의한 구타 및 가혹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1과 유족이 사망 전 부대에 구타 및 가혹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부대에서는 경미한 구타사건으로 처리하고, 피해자 1을 다른 중대로 배치하였으나 재차 가혹행위를 당해왔다’는 진정이 제기되었고, 위원회의 기초조사 결과 추가적인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직권조사를 개시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등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 1) 피해자 1의 가족(부친 ○○○, 모친 ○○○, 외삼촌 ○○○)

가) 피해자 1이 2011. 9월경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에서 고참에게 맞는다
고 하소연하였다.

나) 피해자 1이 2011. 10. 1. 첫 외박을 나왔을 때 얼굴에 맞은 흔적은 확인하
지 못했으나, 다음 날 부대에 복귀하기 싫은 것이 역력했으며 양쪽 정강이에 작업
하다고 다쳤다는 상처가 남아있었다.

다) 피해자 1이 2011. 10. 4. 19:00경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와 모친이 “오늘
도 맞았니”라고 묻자 “응. 아직도 맞아”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 라) 관련자 2인 ○중대장이 2011. 10. 5. 1 피해자 1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이병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병장 2명이 피해자 1을 포함하여 이병들을 때렸는데 경미한 수준이라고 한 적이 있고, 피해자 1의 부친이 잘 처리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마) 관련자 2가 2011. 10. 6. 피해자 1의 부친에게 전화를 걸어 “이병들을 격주간 외박을 보내겠다”고 했으며, 이날 저녁 피해자 1이 자살하고 싶다고 피해자 1의 모친에게 전화로 말을 하였고, 같은 달 11. 피해자 1이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 본부중대로 발령 난다고 하니 동료병사들이 불쌍한 눈으로 쳐다봤다고 얘기하였다.

바) 피해자 1의 모친이 2011. 10. 16. 07:50경 경찰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가보니 피해자 1이 목을 매어 있었고, 양쪽 정강이에 찰과상과 아문 상처가 있었으며 오른쪽 가슴에 사각형 모양(주먹의 모양과 비슷함)의 멍자욱이 있었다.

사) 헌병대 수사관과 수사과장이 가해병사가 가혹행위 사실을 일부 시인했고 자료도 있어 구속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 피해자 1의 중고등학교 동창(○○○, ○○○)

가) 2011. 10. 1. 피해자 1이 외박을 나와 만났을 때, 피해자 1의 뺨이 빨갛게 부어 있어, 이유를 묻자, “외박을 나오기 전 뺨을 맞았다”라고 하였다. 가해자의 이름은 말하지 않았으나 “쳐다본다고 맞고, 안 쳐다본다고 맞고, 대답하였다고 맞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자주 맞았다”고 하였다.

나) 날짜 불상경 “피해자 1의 대학교 여자 선배가 면회를 왔는데, 고참이 ‘따먹고 싶다’라는 음담패설을 하면서,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이유 없이 때렸다”고 말하였고 또한, 술을 마시면서 “힘들어 죽겠다, 선임이 쓰레기다”라는 말은 하였으나 고참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다.

다) 피해자 1은 “십자인대파열로 의가사 제대를 하고 싶다”면서 “소주병으로 자해를 하였으나 무릎만 부었다”고 한 적이 있다.

라) 위 진술과 별개로 친구 8명이 익명으로 피해자의 사망 전 피해자 1에게 들은 내용을 피해자1의 부모에게 전달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힘들다, 맛을 것 같다”, “집에 가고 싶다, (부대)들어가기 싫다”라고 말하고, 맞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고, “한두 시간 폭행은 기본이다”라고 하였다.
- “안 맞는 날은 더 이상한 날이다, 타 부대 가고 싶다, 앞이 안 보인다, 생일날 명석말이 한 친구는 다리를 찢뜩거린다. 음대출신에게 음을 들려주고 못 맞추면 때리고, 철모에 술을 따라 원샷 시킨 후, 구타한다”라는 말을 하였다
- 선임들에 대한 불만이 많았으며, “하루도 안 맞는 날이 없다, 여자 친구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폭행하였다, 이유 없이 맞았다”라는 말을 하였다.
- 군 입대 후, 말이 없어지고, 선임 눈치를 보는 듯 한 행동을 하였다.
- 첫 외박 나와 “선임이 주먹으로 때렸다”고 하였고, 참고인이 면회를 가니, 선임 눈치를 많이 보는 태도를 보였고, “십자인대파열로 의가사 제대를 하고 싶다”면서 “자해를 하였으나 무릎만 부었다”고 하였다.
- 여자선배 면회시, 가지고 싶다고 모욕을 주고, 구타까지 당했다고 하였다.

3) 피해자 1의 대학교 동기(○○○, ○○○, ○○○, ○○○)

가) 피해자 1은 학교생활을 할 때, 친구들과 잘 어울렸고, 항상 쾌활하고 밝았으며, 친구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부담을 주지 않는 등 친구관계가 원만하고 좋았다.

나) 피해자 1이 2011. 10. 15. 외박을 나와 ○○시 ○○서림 앞에서 만나 당구, 호프, 노래방 등을 거쳐 헤어졌는데 학교생활 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어두웠고, 군 생활이 힘들다는 말을 토로하였고,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대대)가 악폐습이 가장 많이 남아 있다고 하였다. 외박 나오기 전에 목 부분을 맞았다고 하였고, “하루라도 안 맞으면 이상하다. 어떻게 하면 안 맞고 하루를 보내야 되는지 그 생각만 한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굶으면(소원수리) 안 되느냐고 하니까 소원수리를 하면 부대에서 다 알게 되고 왕따를 당해 더 힘들다고 하였다.

다) 피해자 1은 선임이 군에서 무엇을 하고 싶느냐고 해서 술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철모에 소주 3병 반을 부어 원샷으로 마시게 하고, 이어 한 번 마셨는데,

“더 못 먹겠다”고 하니까 맞았다고 하였다. 당시 전입 동기인 음대출신이 있었는데, 선임이 박자를 맞추라고 하였는데 못 맞추자 때렸다고 하고, ‘생일빵’, ‘전역빵’이라고 하여 모포를 말아 구타를 하고, 이로 인해 한 전역자는 다리를 절며 부대를 나간 적이 있다고 하였다.

라) 당시 피해자 1은 “부대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또 맞을 것 같아 싫다”는 말을 수차례 하였고, “타 부대로 전출가고 싶다”는 말도 하였다.

마) 피해자 1은 다른 친구들에게도 “선임들이 때리는 이유는 특별히 없고 눈을 마주쳐도 때리고, 눈을 안 마주친다고 때리고, 목소리가 크다고 때리고, 작다고 때리고, 하루도 안 맞는 날이 없다”고 하였으며 선임들이 CCTV가 없는 곳에서, 점호 시간 후 불을 끈 상태에서 때린다고 하였다.

바) 피해자 1의 평소 학교생활, 성격으로 보아 자살할 이유가 없고, 부대생활이 대단히 힘들었던 같았다.

4) 피해자 1의 대학교 여자선배 등(○○○, ○○○)

가) 2011. 9. 25. 자대 배치된 후 피해자 1을 면회 갔었다. 당시 치킨 2마리를 가지고 갔으나, 많이 먹지 못하고 반 이상이 남아 ○○○이 남은 치킨을 선임들한테 갖다 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1은 “그런 사람들 갖다 줄 필요 없다”며 휴지통에 버렸다.

나) 면회실 안에는 피해자 1의 선임으로 보이는 병사가 여자 친구와 만나고 있었고 대화 내용을 서로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이 피해자 1에게 선임들이 잘 해주냐고 묻자 피해자 1은 “선임들이 아주 잘 해준다”고 대답하였으나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피해자 1이 ○○○에게 전화하여 선임이 잘 해준다는 얘기는 모두 거짓이라고 말하였다.

다) 한참 후에 피해자 1이 ○○○에게 재차 전화하여 선임들이 옆에 있는데 ○○○을 소개시켜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통화를 한바 있다.

라) 피해자 1은 훈련소 시절에 ○○○에게 보낸 편지에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군생활이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으리라는 내용이 있어서 ○○○는 피해자 1이

군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다. 면회 당시 피해자 1의 표정이 어두웠으나 이병 때라 힘든 시기일 것이라고 추측했을 뿐 별다른 이상한 점은 느끼지 못했다.

마) 2011. 10. 1. 피해자 1이 외박 나와 ○○○를 카페에서 만나서 동료가 말을 알아듣지 못해 피해자 1도 선임에게 같이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

바) 피해자 1의 100일 휴가 때 대학 친구들과 바다에 가자는 등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고, 평소 친구들도 많았고 성격도 좋았는데 갑자기 자살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나. 가해자들의 진술요지

1) 가해자 1 : ○○○(병장, ○대대 ○중대 분대장)

가) 피해자 1은 처음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으나 많이 존다거나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1이 ‘해리성 기억상실증’을 앓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머리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작업이나 근무간 “항상 조심하라”고 하였다. 본인은 충성마트 통제를 한 적이 없는데 피해자 1이 충성마트를 못 가게 한다고 다른 중대원에게 얘기한 사실이 있다.

나) 피해자 1이 2011. 9월 하순경 충기시건을 잘못된 일이 있어 엎드려뺨쳐를 약 1~2분 정도 시킨 적이 있으나 악의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장난 식으로 한 것이다.

다) 피해자 4인 ○○○ 이병이 2011. 10 초순경 점호간 돌아 목덜미와 왼쪽 뺨을 4~5회 툭툭 치며 졸지 말라고 지적해준바 있다.

라) ‘마음의 편지’는 주 1회 정도 실시하며 조치는 잘되는 편이라고 생각되고, 간부 면담은 분대장이 보고한 인원을 중대장이 면담하거나 중대장이 직접 면담하기도 하였다.

마) 일일결산은 저녁 점호간 점호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생활관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이 식별되면 관찰일지에 기재하였다.

바) 부대 악습으로는 후임들에게 청소와 빨래를 도맡게 하며 임무분담제로 정·

부를 정하여 청소하게 되어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일빵’은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이거나 특별한 기억은 없다. ‘전역빵’은 2011. 8월경에 전역한 ○○○ 병장에게 모포를 맡아 중대원들이 구타한 적이 있다. 본인이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사) 가해자 2인 ○○○ 병장이 피해자 1이 불침번 근무시 졸은 사실이 있어 지적했다는 것을 그 날 아침 알았다.

아) 피해자 4. ○○○ 이병이 외박준비가 미흡하여 피해자 2. ○○○ 이병과 피해자 3. ○○○ 이병이 맞선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 머리박기를 시킨 적이 있지만 악의는 없었고 시간도 길어봤자 2~3분 내외였다.

자) 피해자 1이 무릎을 자해한 사실을 2011. 9월 하순이나 10월 초순경에 알고, 2~3일 후에 중대장에게 보고한 적이 있다. 피해자 1에게 물어봤을 때는 운동하다 다쳤다고 대답했다.

2) 가해자 2 : ○○○(병장, ○대대 ○중대)

가) 피해자 1에게 2011. 9. 28. 고폭탄 사격에 대해 가르쳤지만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다 외워라 그 거 하나 외우는 게 그렇게 힘드냐”라고 하였다.

나) 피해자 1이 2011. 10. 6. 불침번 근무시 졸다가 다음 근무자를 깨우지 않아 생활관에서 베개를 침상에 던지고 “이등병이 어떻게 몰래 잘 생각을 하나, 시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왜 잤냐”라고 5분정도 말하다가 “넌 그냥 자라”라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 1에게 악의적으로 손을 댄 적이 없다.

다) 가해자 1이 피해자 1과 피해자 4에게 엮으려뻔처를 시킨 것을 보았고 2011. 10. 16. 헌병대 조사시 피해자 1을 구타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관이 자백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

3) 가해자 3 : ○○○(병장, ○대대 본부○중대)

약 1년 전(2010.9~10월경) 일병으로 복무 시 당시 이병이었던 같은 중대 ○

○○의 가슴, 어깨를 주먹으로 2회 때린 사실이 있고, 후임들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때린 이유와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으나, 이 행위가 지휘관에게 적발되어 이에 대한 책임으로 정기휴가 5일을 감하는 징계를 받은바 있다.

4) 가해자 4 : 병장 ○○○(○대대 ○중대)

가) 2011. 10. 14. 오전 ○○○ 이병이 야간근무 투입 간 불침번이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투입 준비를 하지 않고 취침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같은 날 08:20경 위 ○○○에게 “너 꺼져! 그렇게 졸리면 생활관 가서 자.”라고 말을 했는데도 대답이 없어 뺨을 2회 구타한 사실이 있다. 평소 동기들이나 후임들에게 욕설을 장난 식으로 하곤 하였는데, 이 번 일을 계기로 욕을 하는 나쁜 버릇을 고치도록 하겠다.

5) 가해자 5. 상병 ○○○(○대대 본부중대)

가) 본인이 피해자 9. ○○○ 일병에게 업무시정 요구로 “이 새끼야”라고 4~5회 한바있고 같은 소속 가해자 3. ○○○ 병장은 분대장 자격으로 후임들에게 여러 시정사항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

나) 상향식 일일결산은 매일 21시경 시행하나 분대장과 분대원들이 편안히 담소 나누는 정도이며 결산시에 특이사항을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생일빵’은 본적도 한 적도 없다. ‘전역빵’은 8월경에 마지막으로 봤고 점호 이후에 불을 끄고 모포를 씌우고 한다. 단순한 양금풀기다.

다) 과거에는 후임병들은 냉동식품을 못 먹게 하거나 활동복 지퍼를 못 올리게 하는 악습이 있었지만 현재는 없어졌으며 근무 등의 이유로 결원이 발생 시 일병 등이 청소를 한다.

라) PC방 이용시 후임들이 눈치를 봤지만 지금은 없어졌고 마음의 편지는 주1회 실시하며 당직사령이 통제한다.

6) 가해자 6. 상병 ○○○(○대대 ○중대)

가) 2011. 10. 1. 아침식사 후, 생활관에서 피해자 7. ○○○ 이병에게 평상시 말끝을 흐리거나 목소리가 작은 것을 교육하였으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이 개새끼야. 이 시발놈아,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를 박으라고 하자 5초 가량 박다가 더 이상 하지 않아 위와 같은 욕을 하고 다시 박으라고 하였는데, 계속 안 박아 주먹으로 머리 옆 부분을 3회 구타하고, 다시 박으라고 하였음에도 박지 않아 “그냥 너 할 거 해라.”라고 보낸 사실이 있다.

나) 전역자, 생일자를 구타하는 악습은 ○중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7) 가해자 7. 일병 ○○○(○대대 본부중대)

가) 피해자 6. 이병 ○○○이 2011. 8월말에서 9월초 경 대대 행정반 등에서 선임을 보고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본인을 쳐다 볼 것을 강요한 사실이 있고, 9월 초경 3-4일 동안 위 ○○○의 이름을 3-4번씩 7-8회에 걸쳐 계속 부르면서 관등성명을 말하게 한 사실이 있다.

나) 본인은 2011. 10. 10. 00:00부터 익일 02:00경 사이 탄약고 근무를 하고, 피해자 1은 같은 시간 대대불침번 근무를 하였는데, 피해자 1이 후번 근무자를 깨우지 않고 취침을 하여 ○중대장이 이를 발견하여 깨워서 약 20분 늦게 근무 철수를 하였는데, 피해자 1이 사과도 하지 않아, 아침 07:00경 통합막사 앞에서 “너 때문에 근무를 20분 더 섰다, 뭐라고 하고 싶는데 너도 이미 혼났을 것 같아 참는다.”라고 혼을 낸 적이 있다.

다) 평소 중대장 등 간부들은 후임이 사소한 잘못을 하면, 후임병을 지적하지 않고, 분대장, 최고선임들을 불러 “후임병 관리 똑바로 하라.”라고 혼을 내는데, 그러면 분대장이나 최고 선임이 중간선임을 불러 질책을 하고, 중간선임이 후임을 불러 질책하는 ‘내리갈굼’의 원인이 되고 있다.

라) 본인은 2011. 4월부터 6월경 전역자에게 폭언을 듣고, 머리, 팔 등을 폭행 당한 적이 있고, 선임들이 사소한 잔심부름(PX 물건사오기, 물 떠오기 등)이 많았고, 과도하게 관물대 정리를 요구 당한 적이 있었는데, 현 대대장이 부임한 후로

많이 없어졌다.

마) 일명 ‘생일빵’은 없었고, ‘전역빵’의 경우, 2011. 8월경 점호 끝나고 전역자에게 모포를 덮어 1분에서 30초 동안 주먹과 발로 막 때리고, 이어 준비해 둔 과자 등 먹을 것을 먹고 파티를 한 것이고, 그리 괴롭히는 것은 아니었고, 다리를 절며 전역한 선임은 없었다.

바) 본인은 부대 전입 후 3번 술을 먹었는데, 한 번은 부대 회식 때 소주 한 잔씩 동료병사들과 먹었고, 8월 하계휴양 때 맥주 40캔을 전 병력이 나누어 먹었으며, 추석 때 차례지내고 매실주를 한 잔씩 마신 것 외에는 술을 먹은 적이 없다. 철모에 술을 부어 먹은 사실은 전혀 없다.

8) 가해자 8. 일병 ○○○(○대대 본부○중대)

가) 2011.9월경 손가락으로 후임병의 몸을 찌르면서 ‘관동성명 어디다가 팔 아먹었어?’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장난을 친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나) 과거에는 여러 병사의 세탁물을 한명의 병사가 모아 세탁하는 관행이 있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였으나, 얼마 전부터 개인피복은 자기가 직접 세탁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다. 지휘감독 책임 관련자들의 진술요지

1) ○○○(중령, ○대대 대대장)

가) 피해자 1에 대한 신병관리에 대하여, 여단 및 대대 주임원사의 피해자 1에 대한 신상면담자료에 의하면, 입대 전 피해자 1이 부모와 일부 불화가 있어 가출 1회, 해리성기억상실증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보호관심사병 'B'급으로 분류되어 보고되어, 2011. 9. 6.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피해자 1이 자신의 대학 전공을 살려 상담병으로 활동하기를 원하여, 차후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1의 전입 당시 신병훈련소에서 1차 신인성검사 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은 알지 못했고, 2011. 10. 12. 대대병력결산 시 ○중대장 대위 ○○○이 피해자 1이 선임병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고

하고, ○○과 2·4중 업무 공석예정임을 알고 보직변경을 원한다고 하여, 즉시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당일 오후 보직변경 인사명령을 내렸다.

피해자 1의 경우, 최초 보호관심사병 'B'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으나, 2주 후 병력결산 시 잘 적응하는 것 같아 2011. 9. 22. 'C'급으로 재조정하였고, 이 번 사망사건이 발생하기 까지 소속 ○중대장 등 간부들로부터 피해자 1에 대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자살발언, 자해 사실 등을 보고 받지 못해 알지 못하였다. 사고 발생 후, 구타 관련 사실은 ○중대장에게 알아보고, '○중대장 조치사항'을 작성하게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2011. 10. 3. ○중대장이 피해자 1의 부친의 부탁으로 군 전역장교 ○○○(대위 전역)을 통해 중대 내 구타 사실이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말을 듣고, ○중대장이 이병 5명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 1가 피해자 1의 부친이 비밀유지를 원하고, 동료 이병들이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면담과정에서 피해자 1에 대한 경미한 구타 사실만 발견되어, 최종적으로 사실 확인 후 대대장에게 보고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자 1의 보직변경은 구타·가혹행위 때문이 아니라, ○중대장이 2011. 10. 7. 피해자 1과 면담 과정에서 의사를 확인을 하고, 같은 날 대대병력결산 시 이를 보고받고 당일 면담하여 보직변경을 승인하였던 것이다.

나) 부대관리와 관련하여,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는 여단 주관 하에 주 1회 대대병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대자체에서도 한 달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2011. 6. 부임 후, 소원수리를 통하여, 장거리 휴가출발을 고려한 신고시간 조정, 충성마트 에어컨 설치, 체육기자재 구입, 후임병 위주로 일을 하여 임무분담제 실시, 욕설하지 않기 등을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였고,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폭언 및 구타 사건으로 징계조치를 30여건 하였고, 포상도 30여건 하였다.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폭언 등 욕설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4. ○○과장 대위 ○○○에게 2011. 7.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또한 전역한 전 동원과장 대위 ○○○, 예비군지휘관인 ○○○동대장인 5급 ○○○에게 같은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으며 병사들 간의 욕설, 머리박기 등 기합, 구타, 전역빵, 청소

및 빨래시키기 등 병영악습은 부임 이후 많이 줄어 든 것으로 알고 있다. 1회성 악습으로 ‘전역뺑’은 2011. 9. 28. 병장 황○○에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자 2.인 ○중대장이 피해자 1에 대한 구타사실을 신속히 보고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고, 중대장이 자체조사를 하면서 관련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문제점도 있어 보인다. 이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과도한 가혹행위가 부대 내에 있는 것은 아니다.

2) ○○○(대위, ○중대 중대장)

가) 피해자 1의 신병관리에 대하여, 피해자 1은 2011. 9. 7. 중대로 전입되어, 보호관심병사 등급 'B'급으로 분류되었으며, 신병관리기간 중, 3-4회 면담을 실시하였고, 면담결과 피해자가 행정병을 희망하고, 상담병을 해 보고 싶다고 하였고, 모친이 비밀유지를 당부하면서 해리성 기억 상실증 병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당시 피해자 1은 이병 때의 어리숙한 일반적인 모습이었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중대 60미리 부포수로 보직을 주었다.

2011. 10. 6. 야간 당직근무 중, 같은 달 7. 02:00경 피해자 1이 대대불침번 근무를 이탈하여 취침하는 것을 적발하고, 근무태만으로 진술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후 1~2시간 후, 피해자 1이 갑자기 중대장실을 찾아와 상담병 활동을 보고한다고 하면서, 본부 중대 ○○○(현역복무부적합 준비 중으로, 피해자 보다 선임임)을 면담내용을 보고하여 이등병의 위치에서 할 일은 아니나 사기진작을 위해 잘했다고 칭찬을 하자 피해자 1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과 계원자리로 보직변경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이에 2011. 10. 12. 대대병력결산 시, 대대장에게 피해자가 구타당항 사항을 보고하지 않고 보직 변경 건을 보고하여 ○○과장 면담, 대대장 면담을 시켜 당일 저녁 보직변경 승인을 해 주었고 중대 병력결산 시 분대장 등 소속 병사들로부터 피해자 1이 자신의 무릎을 자해하였다는 말을 보고받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 중대원들은 매일 21:00경 일석점호를 하고, 22:00경 취침을 하는데, 당직사령에 의해 통제되고, 나머지 간부들은 퇴근하며 소등 이후, 생활실에서 일명 ‘전역뺑’을 한다

거나 병간 회식을 하였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다.

나) 구타·가혹행위 인지 및 조치 경위에 대하여, 2011. 10. 3. 당직근무 중, 피해자 1의 부친의 지인(○○○, 예비역 대위출신)이 전화하여 “피해자 1이 매일 구타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중대 내에 가혹행위가 있다고 한다. 나도 중대장을 해 보아 아는데, 애들은 과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고 조치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여 알게 되었다. 이에 곧바로 중대 이등병 5명에 대해 3명, 2명씩 따로 불러 확인해 보았으나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당일 저녁 피해자 1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전해 듣고 사실확인을 위해 2011. 10. 3. 저녁 때 이병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는데, 피해자 1은 가해자 1. ○○○ 병장이 피해자 4. ○○○ 이병을 구타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고, 자신은 가해자 2. ○○○ 병장이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고 하면서 익명성을 보장해 달라고 하였다.

2011. 10. 4. 이등병 간담회를 한다고 하고, 개별면담을 하였는데, 이 때 ○○○는 가해자 1. ○○○ 병장이 폭언을 하였으나 맞지는 않았다고 하고, 나머지 3명은 구타·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하고, 피해자 1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가해자 2. ○○○ 병장이 가슴을 밀치듯이 때렸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1의 부친에게 전화하여, 경미한 구타사실이 있음을 알려주고 처벌하겠다고 하니까 피해자 1의 부친이 처벌은 원하지 않고 중대장이 교육을 잘 시켜달라고 하였으며, 같은 달 5. 저녁 이등병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피해자 1의 의사를 재차 확인하니 자신은 구타가 아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한바 있다. 당시 피해자 1과 부모의 비밀유지 부탁이 있었고,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조치 중이었고, 2차 외박(10. 15)을 갔다 와서 최종진술을 확인하고 대대장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외박중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당시 이와 관련한 민원처리는 구두로 하였고, 달리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 제출할 자료는 없다.

다) 중대 분대장이 후임병사들에 대해 폭언, 폭행, 과도한 기합, 보고누락 등의 행위에 대해 믿어지지 않으며, 이런 행위가 억압적으로 한 것인지 장난스럽게 한 것인지 확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잘못이 확인되면 관리소홀에 대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느낀다.

언론에 보도된 대로 부대에 매일 구타가 있고, 철모로 술을 먹이고, 여자친구를 따 먹겠다는 등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피해자 1이 결과적으로 가혹행위에 의해 사망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3) ○○○(중위, ○대대 본부중대장)

가) 피해자 1이 2011. 10. 12. 본부중대 24중 계원으로 보직 조정되어 대면하게 되었다. 피해자 1은 ○중대에서 얼굴이 어둡고 잘 적응을 하지 못해 ○중대장이 대대장에게 보직조정건의 하여 조치가 이루어졌다. ○○과 24중 계원인 ○○○ 병장이 인수인계 하였고 같은 날 점심시간에 본부중대 인원을 확인하러 참모부 막사에 들러 피해자 1을 격려하였으며 외박이 계획되어 있어 외박계획서를 확인하고 출타자 교육(과도한 음주 자제, 성매매 금지, 대인피해 금지 등)하였다. 병영생활간 분대장이 일일결산하여 특이사항과 환자파악을 하였다. 지금까지 일일결산 시 분대장에게 구타가혹행위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 임무분담제 분담표는 생활관에 게시되어 있고 매일 20:30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당직사령이 청소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나) ‘전역빵’이나 ‘생일빵’은 없다. ○○과장이 욕설로 인해 대대장에게 ‘경고’ 조치를 받았으며 현재 간부들은 폭언이나 욕설을 하지 않는다.

다) 1주일에 1회 ‘마음의 편지’를 작성케 하며 여단에서 통제하며, 본인이 2011. 10. 14. 휴가인 관계로 새로 전입 온 피해자 1의 대해 생활지도기록부를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하였고 신상면담을 실시하지 못했다.

4) ○○○(대위, ○대대 ○○과장)

가) 본인은 2011. 1. 12. 대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사들에게 욕설을 하여 대대장으로부터 경고장 및 교육을 받고 현재 과거에 잘못된 점들을 반성하고 있다. 병사가 잘못 했을 시, 선임병이나 분대장에게 교육시키라는 등 내리갈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나) 2011. 10. 12. 피해자가 ○○과로 보직 변경되어 같은 달 14.까지 근무

하였는데, ○○과 내에서 욕설 및 구타행위는 없었다.

5) 원사 ○○○(○대대 주임원사)

가) 피해자 1은 2011. 9. 4. ○대대로 전입하여, 본인이 같은 달 5. 개별면담을 하였는데, 여단 주임원사의 심층면담자료를 토대로 'B'급 관심보호대상 병사로 분류하여 대대장에게 보고하여 ○대대로 전속명령을 내렸고, 이후 ○중대로 배치된 이후에는 해당 중대에서 병력을 관리하였다. 전입 당시 면접과정에서 '해리성 기억 상실증' 병력 외에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나) 부대환경관리를 하다 보니 병사들이 작업지시를 많이 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 부대는 시설이 노후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시설개선을 위한 작업지시를 불가피하게 한 것이다.

다) 부대 내 CCTV는 무기 탄약고 등 취약지역, 위병소, 보일러실, 총기탄약 불출 안전검사대, 생활통합 막사 복도 등 8개 곳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대대 주임원사로서, 부대 내 가혹행위 등 병영악습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라. 동료병사 등 참고인들의 진술요지

1) ○○○(○사단 ○○대대 본부중대 상병)

가) 2011. 10. 1. 외박을 나가기 위해서 같은 날 08:30 경 지휘통제실에 대기 중 피해자 1을 만났다. 외박 교육 영상을 보면서 가볍게 대화하였다.

나) 피해자 1에게 특이한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얼굴에 맞는 흔적은 없었다. 피해자 1은 2011. 10. 1. 08:57경에 외박을 나갔고 본인은 09:02경에 나갔는데 부대 밖에서 피해자 1과 모친이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2) 이병 ○○○(○대대 ○○중대)

가) 피해자 1은 본부중대 ○중대 소속이었고 본인은 2011. 10. 11. ○○중대

에 배치 받아 생활관도 달라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말해본 적 없다.

나) 자대배치 받은 신병들은 2주간은 일명 ‘셴드’라고 하여 아무도 터치하지 않으며 선임에게 청소하고 일을 배우는 기간이라 본인은 구타 등은 당한 적이 없다. 다만, ○○○ 상병과 ○○○ 병장이 휴가 복귀 한 ○○○ 상병을 이유 없이 구타 및 욕설 등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 상병이 ○○○ 이병을 청소를 소홀히 하였다고 물건을 던지고 뺨을 때렸다고 들었다. 또한 ○중대장이 욕설과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목격하였고 ‘전역뺨’에 대해선 목격한 것은 없고 들은 사실은 있다.

다) 마음의 편지 등은 분대장이 중대장에게 보고하는 체제이고, 분대장은 병사로 가해자들인 선임들과 친해 묵인되거나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워 아무 소용이 없다.

라) 가해자 4. ○○○ 병장이 피해자 7. ○○○ 이병의 뺨을 때려 부대에서 조사했으나, 피해자인 ○○○ 이병만 전출되고 ○○○ 병장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은 구타행위를 부대 자체 내에서 축소하려는 한 예라고 생각한다.

3) 이병 ○○○(○대대 ○○중대)

가) 피해자 1이 2011. 9월 중순경 선임들의 빨래를 하는 것과 얼차려 받는 것이 힘들다고 하였다. 2011. 9월 하순경에는 가해자 1. ○○○ 병장과 가해자 2. ○○○ 병장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고, ○○○ 병장에게 턱 부위를 9대 맞았다고 말했다.

나) 피해자 1이 2011. 10월 초순경 자신의 십자인대를 파열하여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중대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하였고, 그 후 영내에서 2~3차례 자해를 시도했다고 말하였다.

다) 본인은 구타를 당한 적은 없고 선임들의 의한 욕설은 수인할 수 있을 정도였다. 기사에 난 것처럼 피해자 1이 매일 맞았다거나 철모에 술을 담아서 마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이병 ○○○(○대대 ○○중대)

가) 2011. 9월 중 20시경 생활관에서 가해자 1. 병장 ○○○이 근무시간을 착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1을 침상 위에서 엎드려뺨쳐를 약 30분간 시킨 것을 본 적이 있다.

나) 가해자 2. 병장 ○○○가 날짜 불상경 피해자 1에게 불침번 근무시간에 졸았다면서 욕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다) 가해자 1. 병장 ○○○이 2011. 9월 중순경 22:10경 소등한 시간에 조국 기도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손바닥으로 3회 가격하였고, 며칠 후 체력단련을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4. 이병 ○○○에게 팔굽혀펴기를 40회 시키고 약 5초간 머리박기를 시킨 바 있다.

마) 가해자 1. 병장 ○○○이 2011. 9월 하순경 후임의 외박준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본인과 피해자 3. 이병 ○○○을 생활관에서 약 30분간 머리박기를 시켰고 2011. 10월 초순경 09:00경 피해자 4. 이병 ○○○이 졸았다는 이유로 왼쪽 뺨을 몇 대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5) 이병 ○○○(○대대 ○○중대)

가) 본인이 2011. 9월 하순 20:00경 생활관에 들어갔더니 피해자 1이 엎드려뺨쳐를 하고 있었고, 물어보니 가해자 1. 병장 ○○○이 시켰다고 하였다. 가해자 1은 2011. 9월 중순경 근무투입이 늦었다는 이유로 본인에게 팔굽혀펴기를 시켰고, 일주일 정도 후에도 체력단련을 안 한다는 이유로 팔굽혀펴기를 20회씩 2회 시켰고, 약 5~10초간 머리박기를 시켰다.

나) 가해자 1. 병장 ○○○이 2011. 10. 3. 오전 점호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손바닥으로 5회 때렸다. 이후 왼쪽 귀에 이명 현상이 일어나 같은 달 7. 외부병원에 진료를 갔더니 의사가 고막이 터졌다고 하여 2주정도 치료받았다.

6) 이병 ○○○(○대대 ○○중대)

본인은 2011. 9월말~10월 초순경 가해자 1. 병장 ○○○이 피해자 1에게 침상위에서 엎드려뺨쳐를 시키고 있는 것을 본적이 있고 2011. 9월 중순 21:30 분경 후임병의 외박준비를 제대로 해주지 않았으며, 본인과 피해자 2. 이병 ○○○에게 머리박기를 지시하여 약 10초간 실시 후 일어나 앉아 약 10분간 ‘잘하라’라는 얘기를 들었다.

7) 이병 ○○○(○대대 ○○중대)

가) 본인은 2011. 9월말~10월 초순 20:50경에 생활관에 들어갔더니 피해자 1이 엎드려뺨쳐를 하고 있어 이유를 물으니, ○○○ 병장이 시켜서 약 1시간동안 엎드려있었다고 말했다.

나) 가해자 1. 병장 ○○○이 2011. 9월 하순 07:30경 아침점호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4. 이병 ○○○의 얼굴과 등, 몸을 주먹으로 7대 이상 때리고, 발로 다리를 3~4대 찼으며, 피해자 4가 괴로워했다. 이 때문에 고막이 손상되어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다) 가해자 1. 병장 ○○○이 2011. 10월경 22시경 조국기도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병 ○○○의 왼쪽 목과 뺨 부위를 5정도 때렸는데, 그 소리가 굉장히 커서 세계 맞은 것으로 기억한다. 또한 2011. 9월 하순경 점호 후 피해자 1을 포함한 ○중대 소속 이병 5명을 전원 침상에 머리박기를 약 5분 정도 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고, 2011. 9월 하순 일자불상경 피해자 4, 이병 ○○○에게 팔굽혀펴기를 수십 회 시키고, 일자불상 다른 날은 머리박기를 10분 정도 시켜 이병 ○○○이 무척 힘들어 하고 땀을 뻘뻘 흘렸다.

라) 부대 내에서는 피해자 1이 친구들에게 한 말처럼 매일 맞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선임들이 구타, 욕을 하거나 괴롭히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다.

8) 이병 ○○○(○대대 ○○중대)

가) 2011. 10월 초순경 피해자와 충성마트를 갔다 오고 분리수거장에서 대화를 하였는데 피해자 1이 반바지 활동복을 입고 있어 피해자 1의 우측 다리에 멍이

있는 것이 보여 그 사유를 물어보니, “흡연장에서 테이블 모퉁이에 무릎을 짚었으며,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의가사 전역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 이에 본인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피해자 1은 “계속 군대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으며 십자인대 파열을 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하였다. 다른 상황은 자세히 모른다.

9) 이병 ○○○(○대대 ○○중대)

가) 가해자 5. 김○○ 상병이 2011. 10월 초순경 청소가 잘 안됐다고 생활관 후임(박○○ 일병, 정○○ 이병, 김○○ 이병)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12. 임○○ 상병에게 욕설과 장난이 아닌 폭행(주먹으로 팔뚝 때리기)을 많이 하여 임○○ 상병이 많이 힘들어 하였다.

나) 가해자 5. 김○○ 상병이 피해자 9. 김○○ 일병에게 “일을 잘 못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욕설 및 질타를 자주 하였다.

10) 이병 ○○○(○대대 ○○중대)

본인이 2011. 10월 초순경 근무교대를 늦게 하였다는 이유로 가해자 4. ○○○ 병장이 본인의 뺨을 2대 때렸고 본인이 암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가해자 6. 이○○ 상병이 ‘머리박기’를 30분 정도 시켰다.

11) 이병 ○○○(○대대 ○○중대)

가) 피해자 1과는 부대 내에 있는 노래방에 같이 간 적이 없고, 피해자 1이 흥얼거리는 노래 소리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 ‘음대생이 음정·박자를 못 맞춰서 구타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본인과 무관하다.

나) 피해자 1과 중대가 다르고 피해자 1이 부대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피해자 1이 구타당하고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는 것은 피해자 1이 자살한 이후에 처음 들었다. 본인은 부대에 와서 선임들에게 구타를 당하거나 욕설을 당한 적이 없으며,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구타 등을 한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다.

12) 이병 ○○○(○대대 ○○중대)

가) 가해자 2. ○○○ 병장이 2011. 9월 초순경 피해자 1이 생활관 내의 빨래(선임자 것까지)와, 청소를 못했다는 이유로 욕설(새끼야 등)을 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을 목격하였다.

나) 피해자 1이 2011. 9월 하순경 체력단련 시간에 참고인에게 “생활관에 들어가기 싫다. 차라리 야근, 근무가 편하다”란 말을 직접 얘기한 적이 있고 피해자 1이 2011. 9월 하순경 “의무대 입실하는 자해행위 방법을 알고 있다. 한번 시도했는데 지금 무릎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여 본인이 “곧 생활관 내의 병장들이 전역을 하니 조금만 참아보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음. 또 피해자 1이 “자기가 자살하면 이 부대는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다.

다) 피해자 1은 하루 일과가 생활관 내의 선임들에게 핀잔으로 시작하여 핀잔으로 끝난다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고 가해자 8. ○○○ 일병이 2011. 9월경 여러 후임들을 손가락으로 몸을 찌르면서 “관등성명 안 대냐, 군기가 빠졌다”고 하여 스트레스를 준 행위를 목격한바 있다.

라) ‘전역빵’으로 2011. 7월 중순 경 전역하기 전날 밤 모포 뒤집어씌우고 소등하여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을 정한 다음 시작과 함께 20~30초간 무자비하게 발로 밟고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13) 이병 ○○○(○대대 ○○중대)

가) 여단장에게 보내는 ‘마음의 편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적이 있었다. 그때 본인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절대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마음의 편지’에 관련자 4. ○○○과장의 잘못을 적었는데, 8일 정도 지난 후 ○○○과장이 불러서 본인에게 “자기(○○과장)가 욕설, 얼차려, 인격모독 등을 언제 주었냐”고 따졌다. 본인은 익명성 보장을 믿고 썼는데 ○○○과장이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여 충격을 받았다.

나) ○○과장은 수시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본인이 취사병 동기와 똑같은 잘못을 하여도 ○○과장은 동기에게는 잘한다고 하고 본인에게는 “징계를 주겠다. 개념이 없다. 잘라 버리겠다” 등의 식으로 대하였다. ○○과장은 피해자 사망사건 이후로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본인과 그전에 좋지 않게 보던 병사들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언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전과 같이 대할까 두려웠다. ○○과장이 그 동안 본인에게 한 폭언 등의 내용은 “내 말이 ○같이 들리냐, ○새끼야, ×새끼야, 미쳤냐, 니가 그러고도 호텔조리학과에 다닐 능력이 되냐” 등의 욕설을 하고 후임들 앞에서 비교하며 모욕을 주고 소리를 지르고 얼차려를 하고 “징계를 주겠다. 대대장님에게 보고 드리겠다”는 말을 하여 본인은 감당이 안 된다.

다) 본인은 같은 2011. 10월 초순경 ○○과장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보니 갑자기 눈물이 나면서 ‘내가 못나서 욕을 먹는가 보구나, 나 같은 사람은 필요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본인 스스로 안정을 부르뜨려 팔목에 자해를 한 적이 있다. 이 일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으며, 보고도 한 적이 없다.

14) 대위 ○○○(○대대 ○○과장)

2011. 9. 9. 대대로 전입이후 첫 당직근무를 같은 달 30. 실시하였다. 아침 점호간 외박자는 같은 해 10. 1. 08:30 이전까지 지휘통제실에 올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 1과 ○○○ 상병을 대면하였다. “출타 장병 영상 프로그램”을 외박자 2명에게 관람케 한 후, 같은 날 후반 근무자인 3중대장에게 08:35경 인수인계를 실시하였다. 피해자 1에게 특이한 징후는 발견하지 못했으며 얼굴에 맞은 흔적은 없었다.

마. 병사들의 무기명 설문결과

1) 직권조사 과정에서 이병 대상 설문결과 가해자들의 머리박기, 목 부위 폭행, 엎드려뺨침, 폭언, 욕설, 따귀 등 의 피해사실이 확인되었고, 부대 악습(개선요구

사항)으로는 ‘전투화 슬리퍼 자기가 정리’, ‘공정한 청소구역 분배’, ‘간부 포함 폭언 금지’, ‘장난으로 툭툭 치는 행위’, ‘사적 심부름’, ‘선임 관물대 정리’ 등 요구사항이 있었다.

2) 일병 이상 대상 설문결과 피해자에 대하여 여자 선배 면회시 폭행한 사실이 없고, 술을 강제로 먹인 바도 없으며 피해자 측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였으며 간부들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3. 관련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1의 유족 및 동창 등 참고인들의 진술, 가해자들의 진술서 및 조사결과 보고서·문답서, 지휘감독 관련자들의 진술서 및 문답서, 참고인 이병 ○○○ 등 ○○사단 ○대대 병사들의 진술서 및 대면조사보고서·설문지, ○○사단 헌병대가 제출한 ○대대 병사들의 설문지, 진술서, ‘중요사건보고’, ○대대가 제출한 ‘○중대장 조치사항’, 피해자의 복무적합도 검사개인결과표(신병교육대), ○대대 병사 면담관찰기록부 및 개인신상기록부, ○대대 징계보고서, ○○○여단 정밀진단결과보고서, 인사분야 여단지침, 구타·가혹행위 금지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기초사실

1) 피해자 1은 2011. 7. 19. 입대하여 같은 해 9. 5. ○○사단 ○대대로 전입하고 같은 달 7. ○중대로 보직 받았다. 피해자 1은 같은 해 10. 1. 및 같은 달 15. 두차례 외박을 나와 선임들의 구타·가혹행위로 군생활이 하기 싫다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얘기하였고 부대 근무 중에는 자해를 시도하고 자살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동료병사들에게 하였다.

2) 피해자 1의 부친은 2011. 10. 3. ○중대장에게 지인을 통해 구타·가혹행위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으며, ○중대장은 조사결과 경미한 사건으로 확인하여 회신하고 부친의 피해자 1이 보직변경의 요구에 같은 달 12. 보직변경 하였다.

3) 피해자 1은 2011. 10. 15. 두 번째 외박을 나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날 20:00경 노끈을 찾다가 없어 군화 끈을 가지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 회식을 하다가 같은 달 16. 04:30 친구들과 헤어져 ○○동 소재 ○○중학교에 같은 날 05:00경 혼자 들어가 같은 날 07:50경 목을 매어 사망하였고 이를 학교 경비원이 발견함에 따라 군헌병대의 수사가 개시되었다.

나.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하여

1) 피해자 1 관련

피해자 1에 대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 증거
병장 ○○○	9월 중 20:00경 1생활관	근무시간을 착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1에게 침상위에서 엎드려뺨쳐를 약 30분~1시간 시킴. 피해자는 팔이 너무 아프고 힘들다. 병원에 입실하고 싶다고 했으며 자살징후가 보였음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9월 말경	피해자 1에게 충고시간을 잘못하였다고 엎드려뺨쳐를 1~2분 시킴	가해자 진술 참고인 목격진술
	9월 말경 1생활관	야간 점호 후 ○중대 소속 이병(○○○, ○○○, ○○○, ○○○, ○○○, ○○○) 5명을 침상에 머리 박기 시킴	참고인 목격진술
	9. 28.	피해자 1이 턱 부위를 9대 정도 가격 당했으며 ○○○ 병장에게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함.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함	참고인 전문진술
병장 ○○○	9월초	피해자 1이 생활관 내의 빨래(선임자 것까지)와 청소를 못했다는 이유로 ○○○ 병장이 욕설(새끼야 등)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함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 증거
	9. 28.	피해자 1이 암기사항을 못 외워 지적함	가해자 일부시인
	10. 6. 1생활관	피해자 1이 불침번 근무시 졸았다는 이유로 ‘×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베개를 던짐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진술
병장 ○○○ · ○○○	일자 불상	피해자 1의 자살한 실수로 인해서 자기의 맞선 임인 ○○○ 이병, ○○○ 이병이 ○○○ 및 ○○○ 병장에게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들에게 너무 미안하여 피해자가 차라리 이 부대를 나가고 싶다는 말을 여러차례 함	참고인 목격진술
일병 ○○○	10. 11. 07:00경 대대통합 막사 앞	피해자 1이 불침번 후번 근무자를 깨우지 않고 취침을 하여 익일 07:00경 통합막사 앞에서 “너 때문에 근무를 20분 더 썼다, 뭐라고 하고 싶은데 너도 이미 혼났을 것 같아 참는다.”라고 혼을 냄	가해자 진술
성명불 상 선임	9. 20.	피해자 1이 선임들의 빨래를 해주는 것과 얼차려 등이 힘들다고 함	참고인 전문진술
	9. 23.~ 9. 24. 흡연장소	피해자 1이 자살하고 싶고 병원입원을 희망한다고 말함	참고인 전문진술
	9월말경	피해자 1이 체력단련 시간에 참고인에게 “생활관에 들어가기 싫다. 차라리 야근, 근무가 편하다”란 말을 직접 얘기함 피해자 1이 9월말경 참고인에게 “의무대 입실하는 자해행위 방법을 알고 있다. 한번 시도했는데 지금 무릎이 많이 부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여 참고인이 “곧 생활관 내의 병장들이 전역을 하니 조금만 참아보라”고 조언을 한 적이 있음. 또 피해자 1이 “자기가 자살하면 이 부대는 어떻게 될까?”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함	참고인 진술
	일자 불상	피해자 1은 하루 일과가 생활관 내의 선임들에게 핀잔으로 시작하여 핀잔으로 끝난다면서 이	참고인 진술

가해자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 증거
		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함	
	10월 초 흡연장소	피해자 1이 무릎을 보여주며 3차례에 걸쳐 자해했다고 함. 1차는 외박 때 2~3차는 부대에서 했다고 함. ○○○병장이 피해자의 상태를 물어 무릎자해사실과 자살의도가 있다고 말함	참고인 진술
	10월 초경 분리수거 장	피해자 1이 반바지활동복을 입고 있어 우측 다리에 멍이 있는 것이 보여 그 사유를 물어보니, “흡연장에서 테이블 모퉁이에 무릎을 찍었으며, 무릎 십자인대가 파열되면 의가사 전역을 할 수 있다”고 말함. 참고인이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피해자는 “군대에서 근무하고 싶지 않으며 십자인대 파열을 하고 싶다”는 말을 계속 함	참고인 진술
	10. 10. 14시경 분리 수거장	피해자 1이 “십자인대를 끊어 달라, 아킬레스건을 끊어 달라, 방법을 가르쳐 달라. 의무대입실을 하고 싶다. 생활관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였으며 10. 11.~10.14어간 다리를 가리키며 제발 입실할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여 조금만 참자라고 함	참고인 진술

2) 다른 부대원 관련

○○사단 ○○○여단 ○대대 병사들에 대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관련 피해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해자	피해자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 증거
병장 ○○○	이병 ○○○	9월 중순 22:10경 1생활관	가해자는 피해자가 조국기도문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목덜미 부분을 손바닥으로 5회 가 격함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진술
	이병	9월 말경	가해자는 ○○○ 이병의 외박준비를	가해자

가해자	피해자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 증거
	○○○ 이병 ○○○	1생활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약 30분간 침상에서 머리박기를 시킴	일부시인
	이병 ○○○	10. 3. 오전 점호시간 1생활관	가해자는 피해자가 점호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등, 몸을 7대 이상 때리고, 발로 다리를 3~4대 가격함. 귀에 이명현상이 일어나 보고 후 2011.10.7. 외부병원에서 고막손상을 치료함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9월 중순 20:30경 1생활관	가해자는 피해자가 체력단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팔굽혀펴기를 20회씩 2회 시키고 약 10분간 머리박기를 시킴	참고인 목격진술
		9월 중순경 1생활관	가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투입이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팔굽혀 펴기를 20회 가량 시킴	참고인 목격진술
상병 ○○○	일병 ○○○	일자미상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일을 잘 못하고 융통성이 없다”고 욕설 및 질타를 자주 함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일부시인
	이병 ○○○	일자미상	가해자는 피해자가 청소를 소홀히 했다고 물건을 던져 맞추고 뺨을 때림	참고인 목격진술
	상병 ○○○	일자미상	가해자는 피해자가 욕설과 장난이 아닌 폭행(주먹으로 팔뚝 때리기)을 많이 하여 피해자가 많이 힘들어 함	참고인 목격진술
	일병 ○○○ 이병 ○○○ 이병 ○○○	10월초	가해자는 피해자들이 10월초 청소가 잘 안됐다고 생활관 후임에게 욕설을 함	가해자 일부시인
	상병 ○○○	일자미상 본부중대	피해자가 휴가복귀 후 주먹으로 가슴, 어깨 등을 침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피해자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 증거
병장 ○○○		2중대 생활관	하루 한번 이상 시발새끼, 미친년, 개 새끼 등의 욕설을 함	가해자 진술
병장 ○○○	이병 ○○○	10. 14. 8:20경 ○대대 교회 앞	이병 이재일이 불침번 근무 중 취침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 꺼져! 그렇게 졸리면 생활관 가서 자.”라고 말했는데도 대답이 없어 뺨을 2회 구타함	가해자 진술
상병 ○○○	이병 ○○○	10. 1. 오전 생활관	이병 ○○○에게 평상 시 말끝을 흐리거나 목소리가 작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야. 이 시발놈아, 시발새끼,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를 5초 동안 박으라고 강요했으나 이행하지 않아 다시 박으라고 하였는데, 계속 안 박아 주먹으로 머리 옆 부분을 3회 구타하고, 거둬 머리박기를 강요함	가해자 진술
		일자 미상	암기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박기를 30분 정도 시킴	참고인 진술
일병 ○○○	이병 ○○○	8월 말경 대대 행정반	이병 ○○○이 선임을 보고 말을 하지 못하는 등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 쳐다 볼 것을 강요하였고 9월 초 경 3-4일 동안 위 ○○○의 이름을 3-4번씩 7-8회에 걸쳐 계속 부르면서 관등성명을 말하도록 강요함	가해자 진술
병장 ○○○	일병 ○○○	8월 중순 본부 생활관	피해자가 혼자 밥을 먹고 씻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 2회를 때려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힘	참고인 목격진술
일병 ○○○	후임 병사들	9월경	여러 후임들에게 손가락으로 몸을 찌르면서 “관등성명 안대냐, 군기가 빠졌다”고 하여 스트레스를 줌	참고인 목격진술 가해자 진술
○○	취사	8월경	○○과장이 욕설을 하고 얼차려를 시	참고인

가해자	피해자	일시 및 장소	내 용	관련 증거
과장	병들		켜 마음의 편지에 이를 기재하였는데 ○○과장이 취사병들을 불러서 자기가 언제 그랬냐며 누가 썼는지 말하라고 추궁함 ○○과장은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에게 폭언을 하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함. “내말이 ×같이 들리냐, ×새끼야, ○새끼야, 미쳤냐”등의 욕설을 하고 엎드려뺨쳐를 1시간 시키고 징계를 주겠다고 협박함. 이러한 가혹행위에 자괴감이 생겨 안경을 부러뜨려 자해한 적이 있음	목격진술
0 중대장	피해자 미상	일자미상	욕설과 물건을 던지는 행위	참고인 목격진술
○중대 소속 대원들	전역자 ○○○	8월경	전역자인 백○○ 병장에게 모포를 씌우고 구타함	참고인 목격진술
본부 중대 소속 대원들	성명 불상 전역자	7월 중순경 본부중대 생활실	저녁 점호 후 전역자에게 모포를 뒤집어 씌우고 불을 끄고 20~30초간 무자비하게 발로 밟고 때렸음	참고인 목격진술
	성명 불상 전역자	8월경 소등 후, 본부 생활실	점호 끝나고, ‘전역빵’이라하여, 본부 중대 병사들이 전역자에게 모포를 덮어 씌우고 1분 ~ 30초 동안 주먹과 발로 구타함	참고인 목격진술
	병장 ○○○	9. 28. 본부중대 생활실	본부중대 병사들이 생활실에서 병장 ○○○에게 ‘전역빵’을 실시	대대장 진술
성명 불상 전역자	일병 ○○○	4월~6월경	폭언을 하고, 머리, 팔 등을 폭행함	참고인 목격진술

3) 대대장이 제출한 2011. 8. 25.자 ‘대대장 특별 정신교육’ 자료에 의하면, ○○사단 레이터 기지 선임병에 의한 폭행·가혹행위가 확인된 것만 75건이며, ○대대 구타사고 현황과 관련하여, 최초 우발적 구타로 인지되었으나 확인결과 상습적 폭행이었음이 확인된다.

다. 부대 관리 등 관련

1) 신병관리 관련

가) 피해자 1에 대한 신상면담자료에 의하면, 입대 전 피해자 1이 부모와의 불화, 가출사실, 해리성기억상실증 등의 문제가 발견되어, 대대장에게 보호관심사병 'B'급으로 보고되었고, 대대장이 2011. 9. 6.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피해자 1이 전공을 살려 상담병으로 활동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여건을 고려한 후 시행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나) 대대장 이하 간부들은 피해자 1이 신병훈련소에서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2011. 10. 12. 대대병력결산 시 ○중대장은 피해자 1에 대한 부모의 자살충동, 구타·가혹행위 관련 제보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 1이 선임병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 하고, ○○과 2·4중 업무로 보직변경을 원한다는 취지의 보고만을 하였고, 이에 대해 대대장이 개인면담을 실시하여 보직변경을 승인한 사실이 있다.

다) 대대장은 피해자 1을 보호관심사병 'B'급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였으나, 2주 후 잘 적응하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2011. 9. 22. 'C'급으로 하향조정하였고, 이번 사망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소속 ○중대장 등 간부, 분대장 등 병사들로부터 피해자 1에 대한 선임병들의 구타·가혹행위, 자해 및 자살 발언 등의 내용을 보고받지 못하였다.

라) 또한 피해자 1이 여러 차례 자해를 하고 이를 동료병사들에게 말하여 가해자 1도 이를 인지하여 2011. 10월 초순경 ○중대장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나 ○중대장은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마) ○중대장은 2011. 10. 3. 군 전역장교 조○○(대위 전역, 피해자 1의

부친의 부탁을 받고 전화)이 전화를 걸어와 “중대 내 구타사실이 있으니 조치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1과 ○중대 이병 4명에 대한 면담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 1과 부친이 비밀유지를 원하고, 동료 이병들이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대대장에게 보고 하지 않았으며 관련 민원사항과 처리내역 등을 별도의 관리하지 않았다.

바) 피해자 1이 2011. 10. 12. 본부중대로 편입되었으나 본부중대장은 피해자 1에 대한 신상면담을 시행하지 않았다.

사) 국방부는 2011. 7. 22. 지시 제11-4010호 ‘병영생활 행동강령’으로 병 상호간의 명령 및 사적지시 금지, 가혹행위 등을 금지한바 있다.

아) ○○사단의 보호관심병사 선정 및 관리(등급 분류 기준)이 다음과 같다.

구분	A급(특별관리대상)	B급(중점관리대상)	C급(기본 관리대상)
선정 기준	· 자살우려자 (자살시도 유경험자) · 진단도구 검사결과 · 특별관리 대상자 · 동성애자 · 사고유발 고위험자	· 결손가정, 신체결함, · 경제적 빈곤자 · 성군기 위반우려자 · 성격장애자 · 구타, 가혹행위 우려자 · 사고유발 위험자	· 입대 100일 미만자 · 허약체질자 · 보호가 필요한 병사 · 특별관심대상에서 등급조정자
면담 주기	주 1회 이상	월 2회 이상	월 1회 이상
관리 책임	소대장 ~ 대대장 부소대장 ~ 주임원사	중소대장 부소대장, 행정정보관	소대장, 부소대장

2)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 제도 관련

가) ○○○여단은 자체 지침으로 대대단위에서는 주간단위 병력결산을 시행할 것과 간부의 지휘 하에 병사들을 계급별로 분리하여 설문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하고 ‘안전활동 추진 평가회의’를 대대는 월 1회, 여단은 분기 1회 실시를 지침으로 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나) 위원회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결과, 상당수 병사들이 현행 마음의 편지 등 소원수리제도가 불만족스럽고, 익명성의 보장이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3) 병력결산, 분대장 제도 관련

가) ○중대장은 중대 병력결산 시 분대장에게 소속 병사의 피해사례를 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가해자 1은 ○중대장에게 피해자 1 등 후임 병사들에 대한 열차려시 사전에 승인 받거나 사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

나) 병분대장이 일일결산을 하여 병사들이 구타·가혹행위에 대해 보고하고 싶어도 선임병들이 주로 가해자이고 이들이 분대장과 동기관계이거나 친분이 있는 경우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 열차려는 「육군규정 120」에 의해 분대장급 이상이 승인권자의 감독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사고부대의 경우 병분대장이 승인권자의 감독없이 생활관등에서 임의로 폭행 및 폭언, 머리박기, 엎드려뺨쳐, 팔굽혀펴기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육규 120 제30조 열차려

3. 열차려 승인 및 집행

가. 열차려는 소대장급 이상 지휘자(관), 휴무일에는 당직사관이 승인 할 수 있다.

나. 열차려의 집행은 분대장급이상이 승인권자의 감독 하에 실시하며, 공개된 장소(연병장, 복도 등)에서 실시해야 한다.

4) 병영악습 관련

가) 대대장은 간부들이 병사들에게 폭언 등 욕설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과장 대위 ○○○에게 2011. 7월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또한 전역한 전 ○○과장 대위 ○○○, 예비군지휘관인 ○○○동대장 5급 ○○○에게 같은 이유로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나) ‘전역빵’이 2011. 7월, 8월, 9월에 있었다는 주장이 있으나 대대장은 전역빵이 같은 해 9. 28. 병장 ○○○에게 실시한 것만 인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부대는 야간에는 간부들이 모두 퇴근하고 당직사령 1명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관계로 중대원들이 21:00경 일석점호를 하고, 22:00경 소등하여 취침을 하여야 하나, 생활관에서 아무런 보고 및 승인없이 일명 ‘전역빵’을 하거나 병(兵) 간 회식을 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및 조치사항

가. 구타가혹행위 및 지휘, 관라감독 책임에 대하여

1) 구타가혹행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구타가혹행위 등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해자 1의 폭행피해와 철모에 소주를 담아 강제취식 하였다는 부분, 면회 온 여성들에게 성희롱적인 언행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병사의 피해자 1로부터 들었다는 전언진술 외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나 피해자 1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폭언, 부당한 얼차려,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다수의 목격자들과 가해자들의 진술이 있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가해자 1과 가해자 2는 피해자 1 및 다른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규정 외 얼차려, 폭행 및 폭언 등을 일삼았고, 특히 가해자 1은 부대원들의 고충과 특이사항들을 파악하고 후임병들의 부대적응을 위해 노력해야하는 분대장임에도 불구하고 부대 내 악습에 대해 개선하지 않고 규정 외 얼차려를 집행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고, 또한 피해자 1의 자해와 자살가능성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중대장에게 늦게 보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가해자 1, 2의 구타가혹행위가 피해자 1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타가혹행위를 한 행위는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 및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군인복무규율」(대통령령 제21750호) 제15조(사적 제재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지휘책임 관련자들의 이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그리고 부실한 신상관리 및 부대관리 행위는 위 같은 「군인복무규율」 제2항의 책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2) 지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하여

가) ○중대장은 피해자 1에 대한 구타·가혹행위, 자살충동에 대해 2011. 10. 3. 인지하고 면담 등을 실시하여 파악하였으나 피해자 1과 부친이 알리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이유로 별다른 조치 및 문서기재, 상부 보고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1의 자해 및 자살의지에 대해 가해자 1이 보고하였다고 진술함에도 전혀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중대의 선임병에 의한 구타·가혹행위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후임병들이 선임병의 청소와 빨래까지 도맡아 하는 등의 악습이 위원회의 조사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는 점,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분대장에 의해 조장되고 비호됨에도 식별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중대장으로서의 지휘·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대대장은 2011. 6. 3. 부임 후 시설개선, 임무분담제,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육설간부 경고조치, 징계조치 30여건, 포상 30여건을 실시하여 부대 내 악습폐지와 구타·가혹행위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나 여전히 병영생활기저에는 악습과 구타·가혹행위가 잔존했으며 특히 작성된 ‘마음의 편지’의 내용이 보고되지도 않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구타·가혹행위 발생 보고가 보고계통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등 간부관리와 병 관리의 부실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지휘관들의 행위는 「군인복무규율」 제2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휘관 및 상관의 지도·감독 및 부하의 고충 파악해결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는 바, ○○사단장에게 가해자 및 지휘·감독책임자, 추가 가해자에 대하여 수사결과에 따라 그 행위와 책임에 상응한 사법처리 및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사건 발생원인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관련

1) 사건 발생 원인 분석

첫째, 병영 환경과 문화적 측면의 요인으로, 후방부대인 사고부대의 경우 하사관 등의 초급간부가 적어 병분대장에 의한 병사관리가 중심적으로 이뤄지나 분대장에 대한 교육 등의 관리가 미흡하고 분대장의 일차려의 집행이 규정과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적 제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선임병은 후임병을 복종에 대상이자 지시대상으로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이 뿌리깊이 남아있다.

둘째, 선임병 및 간부가 병사들에게 일상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고, 선임병들이 청소와 빨래 등 사적인 심부름을 후임병들에게 강요하고, 일명 ‘전역뺑’, 암기강요, 사적 통제 등의 악습과 구타가혹행위가 만연함에도, 이를 간부들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임하는 등 서로 존중하고, 군 운영 전반이 법치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셋째, 피해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병보호 등 신뢰할 수 있는 설문, ‘마음의 편지’등의 권리구제 체계가 미흡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넷째, 이 사건 피해자 1은 신병교육대 1차 신인성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고 여단에서 B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사고부대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확한 진단없이 C급으로 상향조정하여 복무부적응자에 대한 식별 노력과 관리가 부실하였던 점 등이 이 사건 발생의 주요원인으로 판단된다.

2)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위 사건과 같이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광범위하고, 반복적이며, 관행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그간 부대 자체적인 병영생활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식별하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병의 인권보장 등 병영문화의 근본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하므로, 아래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장병상호간, 병상호간 그릇된 인식개선을 위해, 모든 장병은 국방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명예를 온전히 보장 받을 때라야 비로소 군 전력보존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할 것 이므로, 현재의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인권교육을 넘어서서, 자대배치 시, 또한 군 지휘관 임명 시 등 인권의식을 향상하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구타·가혹행위 및 사고예방을 위한 병력결산 및 소원수리제도와 관련하여, ○대대의 상급부대인 ○○○여단은 자체 지침으로 대대단위에서는 주간단위 병력결산을 시행할 것과 시행시 간부의 지휘 하에 병사들을 계급별로 분리하여 설문을 작성하고 이를 밀봉하여 제출받아 검토할 것을 지시하고 있으나 ○대대는 ‘주간결산’, 및 ‘일일결산’시 병분대장이 이를 관리하고 계급별로 분리하지 않아 병사들의 자유로운 제언을 위축시키고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사단 등 각 부대에서는 병영부조리 색출을 위해 마음의 편지, 상향식 일일결산, 심층면담, 설문작성 등의 방법을 실행하고 있으나 이의 집행시 병사들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자신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표현 할 수 없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바, 이는 일선 부대장의 재량사항으로 위임되어 있고 해당 지침이 명확하지 않는 등 관리의 부실이 있어 보이므로 세부사항을 명문화 하는 등의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병사들의 생활관 생활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병분대장은 「육군규정 120」 및 「병영생활 행동강령」(2011. 7. 22. 발령)에 의해 열차려의 집행 권한과 명령, 지시권을 부여받은 지휘자의 신분이나 사고부대에서는 병분대장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열차려를 집행하며 폭행하는 등 사적제제를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전의 유사한 총기사망사건의 경우에도 병분대장이 구타·가혹행위를 가한 점 등, 병분대장의 권한 남용 및 위법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병분대장의 선발 기준 및 교육을 강화하고 병분대장에게 부여된 열차려 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홍진표 위원 장주영 위원 윤남근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제 [4] 장 외국인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 제4집 2009~2011



1

2009. 10. 12.자 09진인2516결정 [외국인 과잉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 【1】**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과잉진압, 주거무단진입,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업무 투입 등의 부적절한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피진정인 3, 4, 5에 대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시 과잉진압, 주거 무단진입,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업무 투입, 신분증 미제시 등의 부적절한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단속 당시 단속책임자였던 피진정인 2에 대하여는 인권침해적인 단속의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할 것과, 피진정인 3, 4, 5에 대하여는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7조, 「세계인권선언」 제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2항,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1항, 제51조 제3항, 제81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진 정 인】 ○ ○ ○

- 【피 해 자】** 1. ○ ○ ○
2. ○ ○ ○ ○
3. ○ ○

- 【피진정인】** 1. 법무부장관
2. ○ ○ ○

- 3. ○ ○ ○
- 4. ○ ○ ○
- 5. ○ ○ ○

- 【주 문】 1. 법무부장관에게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시 과잉진압, 주거무단 진입,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업무 투입 등의 부적절한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피진정인 2에 대하여 주의조치하고, 피진정인 3, 4, 5에 대하여 유사한 인권침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4. 진정요지 바항에 대하여는 이를 조사 중지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2009. 7. 10. 10:30경 경기도 안산시 ○○동 인근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이하 ‘단속반원’이라 한다)들이 미등록이주노동자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고지절차 없이 주거시설에 진입하여 단속을 하였고, 단속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나. 단속반원이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해자 2(○○○○, 중국인)를 한 낮에 거리에 내 몰아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 3(○○, 중국인)은 단속과정에서 단속 반원으로부터 수갑으로 뒤통수를 가격당해 인근 병원에서 10바늘 가까이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라. 단속반원이 수갑을 찬 피해자 2를 뒤에서 당겨 고통을 주었다.

마. 피해자 1은 단속반원들에게 밀려 2층에서 떨어졌으며, 이로 인해 양쪽 다리 가 골절되어 한도병원(경기도 안산 소재)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바. 당일 이루어진 단속과정에서 단속반원들이 구둣발로 외국인들의 가슴 등을 가격하여, 응급실로 후송된 외국인들이 있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경기도 안산시 ○○동 지역은 ‘밤거리가 무섭다’는 제하의 신문기사가 많이 났던 곳으로 외국인 관련 범죄율이 높고, 범죄 신고와 불법체류자 단속 요청 제보가 항상 많은 곳으로 외국인밀집지역 단속계획의 일환으로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반원들은 상기 주소지 앞에서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던 중 중국인(한족)으로 보이는 자가 불심검문을 피하여 급히 문이 열린 집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신분확인을 위해 동 주소지로 갔다. 다가구주택이어서 집 소유주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1층 현관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동인이 갑자기 도주하려 하여 직원 1명이 동인을 적발하였다. 이어 다른 직원 1명도 옆방에서 중국인 1명을 데리고 왔으나 이들이 완강히 저항하여 통제가 되지 않았다. 이 때 다른 중국인 3명이 갑자기 방에서 뛰어나와 직원들을 밀치며 도망을 시도하였다. 당시 날씨가 더워 방문을 열어 둔 상태로 중국인들은 상의를 벗고 있었으며, 단속반원들을 발로 차면서 완강하게 도주를 시도하였다. 최초로 검거된 1명과 적발된 중국인 1명, 그리고 다른 방에서 뛰쳐나온 3명 등이 현장에 있던 우리 직원 4명의 가슴을 일시에 가격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차면서 밀치고 도주하였다. 중국인들은 단속에 대해 격렬히 저항하였고 현장에서 2명을 단속하고(1명은 도주), 나머지 3명은 방에서

나와 길거리 여기저기로 도주하였으며, 그 중 1명을 추격하여 추가로 단속하였다. 그 결과 5명 중 2명(중국인)을 검거하였고 3명은 도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국인 중 1명이 뒤쫓아 가던 우리 직원 1명을 돌로 가격하여 그것을 손바닥으로 막은 우리 직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진정인은 과잉단속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우리 단속반은 수적 열세인 상태였고 동인들이 직원들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대해 주먹을 휘두르고, 땅바닥의 돌을 주워 직원을 가격하는 등 단속에 극심하게 저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수갑 이외의 계구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단속시점이 주간이고 주위에 일반 시민들도 모두 주시하고 있어 과잉단속이 벌어질 상황이 아니었다. 당시 단속반원 각자가 도망가는 중국인들을 저지하기 위해 격한 몸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거나 창문을 넘어 난간으로 뛰어내린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단속반원이 옷을 입지 못하게 하고 신발을 신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단속된 중국인 1명을 단속반원이 옷과 신발 등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계호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인터넷 신문지면에 게재된 적이 있다. 호송과정에서 중국인은 수갑으로 인하여 손이 아프다고 말 한 사실이 없었다.

2) 적법절차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2009. 7. 10.에 단속한 주택은 다가구주택이었기 때문에 건물소유주 확인 및 동의를 구할 수 없었으며 1층 거주자인 외국인들의 동의를 받고 신원 확인을 하려던 중 폭력 및 도주가 발생하였다. 단속반원은 1층 현관 앞에서 1차로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방안에 있던 외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뛰쳐나와 저항하였기 때문에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었다. 또한 단속 중국인들을 차량에 탑승시킨 후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긴급보호서는 단속외국인을 단속 차량으로 이동보호함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다. 피해자의 주장요지

1) 피해자 1의 주장요지(○○○, 중국인)

2009. 7. 10. 11:00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옆집에서 싸움을 하는 소리

에 놀라 잠을 깨서 출입문 밖으로 뛰어 가보니, 출입국 단속반원들 4~5명이 중국인 한명을 붙잡고 그 사람의 배를 차면서 밟고 있었고, 또 한명의 중국인의 머리카락을 쥐고 머리를 벽에 박고 있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하고 돌아서려고 하던 중 현장에 있던 단속 반원 중 한 명이 본인을 발견하고 잡으려고 쫓아 와서 본인의 집 철재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 과정에서 쫓아오던 단속반원이 본인의 바지(또는 발목)를 잡아끌어서, 3m정도 되는 곳에서 떨어졌다. 이로 인하여 두 발꿈치 쪽에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2) 피해자 2의 주장요지(○○○○, 중국인)

2009. 7. 10. 단속당일 본인의 동생 및 조카와 함께 본인의 집에 있었다. 잠이 들려고 할 때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하여 반사적으로 도망가려고 일어났다. 그러나 방안에 들어온 사람은 본인을 쓰러뜨렸고, 바로 수갑을 채웠다. 이후 그 사람은 본인에게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고, 신분증이 없다고 하자 본인을 방밖으로 끌고 갔다. 거실에 나가니 동생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단속반원이 동생의 등을 발로 밟고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동생이 수갑을 차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자 단속반원이 동생을 발로 밟고 때리면서 폭행하였고, 동생이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단속반원들은 동생을 계속해서 때려서 동생 몸에서 피가 흘렀다. 그러다가 잠깐 잠잠해진 사이 동생이 단속반원들을 밀치고 밖으로 도망갔고, 도망갈 때 동생 몸에서 피가 많이 나자 단속반원들은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다. 단속을 당할 당시 날씨가 덥고, 잠을 잘 때라서 팬티만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입으려 했으나 단속반원이 입지 못하게 하였고, 신발도 신지 못하게 하고 무조건 끌고 나갔다. 수갑을 뒤로 채웠는데 수갑 찬 손을 단속반원이 뒤에서 꼭 당겨서 손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고, 피가 통하지 않아서 지금도 손에 감각이 없다.

라. 참고인의 주장요지

1) 참고인 1의 주장요지(○○○)

2009. 7. 10. 오전 10:30경 비명소리와 싸우는 소리가 나 3층에 위치한 안산 중국동포의 집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출입국 단속반원으로 보이는 3명이 안산 중국동포의 집 정면에 위치해 있는 외국인노동자들 기숙사(○○동 ○○○-○번지)를 덮쳐 외국인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수갑으로 외국인의 뒤통수를 때리고 고함을 치고 있었다. 이러한 소란이 한 동안 계속되었다. 본인이 밖으로 나가 단속반원들에게 “똑바로 하라.”, “영장을 제시해라.”라고 말하였고, 주민들도 20~30명 정도가 밖으로 나와서 단속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하였다. 단속반원은 본인이 항의하자 공무집행방해라고 말하였다. 단속봉고차 앞에서 단속반원 한 명이 중국인 한 명을 붙들고 있었고, 안경 쓰고 약간 체격이 있는 단속반원 한 명이 수갑 낄을 세워서 중국인의 머리를 4~5차례 때린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 중국인은 단속반원이 방심하는 틈을 타서 도망을 갔고 이후 ○○병원(경기도 안산 소재)에서 머리를 8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단속반원들 전원은 사복차림이었고 목걸이 신분증을 패용한 사람이 한 명 있었지만 신분증은 뒤집어져 있어 볼 수 없었다. 단속 중에 긴급보호서를 제시하거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하였다.

2) 참고인 2의 주장요지(○○○)

2009. 7. 10. 오전 10:30경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3층에서 밖을 내다보니 길바닥에 긴 반바지만을 입은 외국인이 드러누워 있었고 단속반원으로 보이는 한국인 두 사람이 외국인의 바지를 잡아서 질질 끌고 봉고차 쪽으로 가고 있었다. 단속반원이 끌고 갔기 때문에 외국인의 바지 속이 다 보일 정도였다. 당시 검정 옷을 입고 있었던 단속반원은 전화를 하면서 외국인을 끌고 큰 길까지 나갔으며 외국인이 아프다고 소리를 질렀으나 단속반원은 신경 쓰지 않았다. 이때 ○○○ 목사와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단속반원들에게 단속이 지나치다며 “신발을 신겨라.”, “옷을 입혀라.”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단속반원은 “알았다. 혼자서 못하니 차를 기다려야 한다.”고 답하였고, 이후 봉고차가 도착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해자 및 피진정인 진술서,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피해자 진단서, 참고인의 진술 및 참고인이 제출한 사진, 현장 조사결과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직원인 피진정인 2, 3, 4, 5는 미등록외국인 단속을 위해 피진정인 2를 단속 책임자로 한 단속반원을 구성하여 2009. 7. 10. 10:30~14:00경까지 경기도 안산시 ○○동 지역 내 주택가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였다.

나. 위 단속과정에서 단속 봉고차에 타고 있던 단속반원들은 길을 가던 중국인을 추격하던 중 중국인이 주택가로 들어가자, 봉고차를 주택가에 세운 후, 주거시설 진입에 대한 별다른 고지 절차 없이 주택가로 들어가 중국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그 중국인이 도주하려 하자 피진정인 3이 그 중국인을 붙잡고 손목에 수갑을 채워 봉고차에 태웠다.

다. 위 단속과정에서 다른 피진정인들은 옆방에 있던 중국인 1명을 추가로 단속하였고 그 집의 방안에 있던 옷옷을 벗은 중국인이 문밖으로 나와 단속반원을 보고 도주하려하자 피진정인 2가 그 중국인을 방으로 밀쳤다. 방안에서 2명의 중국인이 더 발견되었고 이후 중국인 3명은 문밖에 있던 단속반원들을 밀치고 도주하려는 과정에서 단속반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라. 위 단속과정에서 단속반원 중 피진정인 2만 신분증을 패용하고 있었으며, 피진정인들은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에 의한 긴급보호서를 단속시점에 발

부하지 않고 단속이 끝난 시점에 호송 차량 안에서 제시하였다.

마. 위 단속에 투입된 단속반원 중 피진정인 2, 3은 특별사법경찰관리였으며, 피진정인 4, 5는 운전원(일용직) 신분이었다.

바. 피해자 3은 위 단속과정에서 단속반원들로부터 수갑으로 3~4차례 머리를 맞아 머리를 8바늘 꿰매는 수술을 받았다.

사. 피해자 2는 위 단속과정에서 팬티만 입고 도주하다 피진정인 4에게 붙잡혀 윗옷을 입지 못한 채 단속차량이 있는 곳까지 호송되었으며, 피해자 2의 동생은 몸싸움 중에 도주하였고, 피해자 2의 조카는 붙잡혀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 봉고차 안으로 태워졌다.

아. 위 단속 당시 옆집 담 위에서 단속을 지켜보던 피해자 1은 3m 높이의 담에서 추락하여 양쪽 다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여 6주 진단을 받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다항에 대하여

1) 주거시설 무단진입 관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들은 단속을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시설에 무단 진입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은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시설에 무단 진입하여 외국인을 단속, 연행한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8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문조사 및 자료제출요구 등의 한계를 넘어서는 행위이다. 즉 직접적 강제력을 수반한 위법한 조사(무단진입, 수사 및 단속)를 수행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이며 또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2) 긴급보호서 제시 관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반원들은 긴급보호서를 호송차량 안에서 제시하였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서는 ‘단속 시 긴급보호 사유, 보호 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용의자에게 내 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보호제도는 단속을 당한 외국인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력 행사이므로 긴급보호 시기는 단속당시로 해야 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강제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긴급보호서를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행사한 이후에 호송차량에서 긴급보호서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인신을 구속한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와 직결될 수 있는 위법한 관행으로 「헌법」 제12조 제5항, 「세계인권선언」 제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2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3) 신분증 미패용 관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에 투입된 단속반원들은 피진정인 2 이외에는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았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도 내국인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여 검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과 목적을 밝힐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2003. 2. 10결정).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단속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단속을 한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4)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업무 관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단속업무에 투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업무권한이 없는 자가 위법하게 법집행을 함으로써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

5) 옷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호송한 부분 관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진정인 4는 반바지만 입고 옷옷이 벗겨진 상태인 피해자 2에게 옷옷을 입히지 않고 공공장소인 대로변에서 수갑을 채워 호송함으로써 피해자 2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 4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수갑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부분 관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단속반원 중 한 명이 피해자 3을 수갑으로 때려 심한 상처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법무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시 과잉진압, 주거 무단진입,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의 단속업무 투입, 신분증 미제시 등의 부적절한 단속 관행을 시정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단속 당시 단속책임자였던 피진정인 2에 대하여는 인권침해적인 단속의 책임을 물어 주의조치할 것과, 피진정인 3, 4, 5에 대하여는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해자 2가 수갑이 강하게 채워져 아프다고 소리쳤으나 피진정인 4가 이를 묵살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인 4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2의 주장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해자 1은 단속반원에게 밀려 2층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가 달리 없어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바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단속과정에서 단속반원으로부터 외국인들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2도 피해자 2의 조카 및 동생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단속 직후 피해자 2의 조카는 강제 출국되었고, 동생의 경우에는 주소지가 파악되지 않아 조사 진행이 어려우므로 진정요지 바항과 관련된 진정내용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사중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 나항, 다항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 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라항 및 마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며, 진정요지 바항에 대하여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사중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0.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별지 1】 관련규정

1. 헌법

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나.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세계인권선언

가.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 제9조 2항 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 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4. 출입국관리법

가. 제51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강제퇴거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 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나. 제51조 제3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

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제81조 제1항 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킨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가. 제64조 제3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의자를 긴급 보호하고자 하는 때에는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 장소 및 보호 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용의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가. 제3조(교도소장 등) ⑤ 출입국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은 그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형법」 제225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범죄
2.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권법」 위반범죄
3. 출입국관리에 관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밀항단속법」 위반범죄

2

2009. 12. 28.자 09진인2790결정 [외국인보호소 내 아동구금에 의한 인권침해]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미등록체류 상태에서 단속 된 경우, 아동 구금은 최후의 조치로써 필요 최소 기간에 국한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고, 보호의 대안적 절차로 출국 권고나 출국명령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외국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미등록체류로 단속이 된 경우, 이들을 구금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기간에 국한되는 최후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이들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였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정도가 가볍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 보호조치의 대안적 절차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적극 활용하여야 함. 그리고 최후의 조치로서 아동을 구금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출입국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참조조문】

1.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적용일 1991. 12. 20.)
2.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3. UN 청소년 사법 행정관련 최저기준규칙
4. UN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최저기준규칙
5.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제65조(보호의일시해제)
6.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580호, 2005. 9. 23.) 제4조
7.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법무부훈령 제541호, 2006.3.10.)

【진 정 인】 ○○○○○○○○

【피 해 자】 ○○○○○○○○

【피진정인】 1. 법무부장관
2.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주 문】 1.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미등록체류 상태에서 단속 된 경우, 아동 구금은 최후의 조치로써 필요 최소기간에 국한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고, 보호의 대안적 절차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의 구금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가. 2009. 6. 28. 몽골국적의 진정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단속을 당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조치 되었다. 가족 중에는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자녀가 있었지만, 피진정인 2는 위생시설이 불량하고 사람들이 많은 외국인보호소에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 및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를 함께 보호조치 시켰다.

나.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가 아파서 피진정인 2에게 의료제공과 영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2009. 6. 28. 23:30경 인천 연수구 노상에서 무면허 운전 중 경찰에 적발된 후 불법체류자인 것이 확인되어 같은 해 6. 29. 00:40경 진정인의 처와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와 함께 우리 소에 인계되었다. 피해자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를 일반보호실에 함께 별도 보호조치 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인 진정인도 취침시간 이외에는 같은 호실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하였다. 보호실은 2006. 12.에 신축된 관계로 청결한 상태였다. 아동의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예외적 조항이 명시적으로 없는바 피해자가 아동일지라도 성인 미등록외국인과 같이 보호할 수밖에 없다.

2) 진정인의 처가 입소 시 소지하고 있던 유모차를 포함, 분유, 젖병 등 수유기구, 기저귀, 담요 등 유아 관련 모든 물품의 반입을 허용하였으며, 위 물품들은 진정인의 처가 보호실에서 자녀인 피해자에게 실제 사용한 바 있었다. 진정인과 진정인의 처는 본인들이 반입한 물품 외에는 다른 물품을 우리 소에 요청한 적이 없고, 의료제공 요청도 한 바 없었다. 또한 자녀인 피해자가 아프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영사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우리 소는 보호실에 주한몽골대사관 등 주요 주한공관의 연락처를 게재하고 있고, 평상시 보호외국인들이 영사 면담 요청을 하지 않아도 직접 자국 영사와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2009. 6. 28. ~ 2009. 7. 3.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보호조치 되었으며, 진정인의 처와 자녀인 피해자는 2009. 6. 28. ~ 2009. 6. 30까지 보호실에 보호조치 되었다. 위 보호조치 기간 동안 진정인의 처와 피해

자는 일반보호실에 별도로 보호조치 되었고 진정인은 취침시간을 제외하고는 가족과 함께 일반보호실에 보호조치 되었다.

나. 피진정인 2는 진정인의 처가 가져온 유아 물품을 보호실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006. 12. 개소하였고, 가족 및 아동 보호시설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2009. 12.까지 만 18세 이하 아동을 18명 보호한 바 있다.

라. 전국 외국인보호소의 만 18세 이하 아동 보호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7년부터 2009. 12.까지 청주외국인보호소 및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는 총 48명의 아동을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도 아동을 위한 별도의 보호 거실이 없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생후 3개월 밖에 되지 않은 피해자를 진정인과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조치하였고, 아동보호를 위한 별도의 시설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 2는 「출입국관리법」에 보호와 관련하여 아동에 대하여 예외적 조치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서 아동도 성인 미등록외국인과 같이 보호조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및 제3조는 아동에 관한 모든 공공 또는 민간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원칙(이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동 협약의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익의 최우선 원칙에 따라 당사국은 아동에게 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보장하며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청소년 사법 행정관련 최저기준규칙」 및 유엔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최저기준규칙」은 구금환경이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발달과정상에 있는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아동의 자유 박탈 등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최단기간 동안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협약과 규칙에 비추어 보면, 피진정인 2의 위와 같은 조치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및 ‘필요 최소한의 구금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보호 조치된 아동에 관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될 소지가 많다.

한편 피진정인 2의 주장과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인보호소는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발달과정에 있는 유아 및 아동에 대하여 보호 외의 별도의 대안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아동에 대한 단속, 구금, 강제퇴거, 보호일시 해제 등의 일련의 과정과 계구사용을 포함한 보호기간 중 처우에 대하여서도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아동이나 아동의 부모가 미등록체류로 단속이 된 경우, 이들을 구금하는 것이 필요한 최소기간에 국한되는 최후의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이들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였거나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으나 그 위반정도가 가볍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 보호조치의 대안적 절차로 출국권고나 출국명령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후의 조치로서 아동을 구금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보호에 적합한 별도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출입국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UN 아동

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2에게 의료제공을 요청하였고, 영사와의 면담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진정인 2는 의료제공과 영사와의 면담 요청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진정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고,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별지】 관련규정

1.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대한민국 적용일 1991. 12. 20.)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3항, 대한민국 유보)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b)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c)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d)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제5조5 (1) 본 규칙은 비행 청소년 수용시설이나 교정학교(Borstal institutions or correctional schools) 등 소년들을 위한 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1부(통칙)는 이러한 시설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다.

(2) 소년 수용자의 범주에는 적어도 소년법원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소년에게 징역이 선고되어서는 아니한다.

제8조(피구금자의 분리) 수용자는 그 성별, 연령, 범죄경력, 법률적 구속 사유 및 조치 필요성을 고려하여 범주에 따라 분리된 시설 또는 시설내의 구역에 수용하여야 한다.

(d) 소년은 성인과 분리하여 구금하여야 한다.

3. UN 청소년 사법 행정관련 최저기준규칙

10. 최초 연락

2. 재판관 혹은 기타 권한 있는 공무원 혹은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청소년의 석방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3. 재판기간 중 구금

1. 재판 중 구금은 최후의 조치로써만 사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기간에 국한되어야 한다.
2. 가능하다면 항상 재판 중 구금은 대안적 방법으로 대체되어야 하며, 이러한 대안적 방법은 근접 감시, 집중 관리 혹은 타 가정, 교육적 시설 혹은 가족 내에 배치하는 방법 등이다.
3. 재판 중 구금 하의 청소년은 유엔에서 채택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 규칙에서 보장된 모든 권리의 대상이다.
4. 재판 중 구금하의 청소년은 성인과는 분리되어야 하며, 분리된 시설 혹은 성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분리된 부분에 구금되어야 한다.
5. 구금 중 청소년은 그들의 연령, 성별 그리고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모든 가능한 개별적 지원 즉 사회적, 교육적, 훈련적, 정신적, 의료적 및 심리적 지원을 제공받는다.

19. 시설수용에 대한 최소사용 원칙

1. 청소년에 대하여 시설 수용하도록 배치하는 것은 항상 최후의 조치로써만 결정되어야 하며, 필요한 최소기간에 국한되어야 한다.

주석(Commentary) : 진보적 범죄학에서는 시설수용에 비하여 비시설의 사용을 옹호하고 있다. 비시설 사용과 시설사용에 대한 성공사례를 비교하여 보면 거 결과는 차이가 거의 없다. 시설적 환경이 개인에게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명백하며, 이는 처우에 대하여 어떠한 별도의 노력을 하느냐의 여부보다 중요하다. 이는 특히 부정적 환경에 취약한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된다. 더구나 부정적 환경이란 자유의 박탈 뿐 아니라 일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의 분리를 또한 일컫는 것이며, 이는 청소년의 경우 발달 단계에 있어 초기에 있기 때문에 성인에 비하여 심각하다.

24. 필요한 지원의 제공

1. 모든 법적절차 단계에서 청소년에 대한 필요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재활 절차를 촉진하기 위한 숙박, 교육 혹은 훈련, 취업 혹은 기타 도움이 되는 실용적 지원 등을 포함한다.

4. UN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최저기준규칙

2. 자유를 박탈당한 청소년에 대하여는 UN 청소년 사법 행정관련 최저기준규칙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자유의 박탈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고 최소의 기간에만 예외적으로 시행되도록 제한되어야 한다.
11. 청소년은 18세 미만으로 규정한다. 자유를 박탈할 청소년의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5. 출입국관리법

제51조(보호)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제65조(보호의일시해제) ①보호명령서 또는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를 받고 보호되어 있는 자, 그의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피보호자의 정상, 해제요청사유, 자산 기타의 사항을 참작하여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여 보호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예치 및 반환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580호, 2005. 9. 23.)

제4조 (외국인의 보호 등) ① 소장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할 때에는 보호시설 안에 근무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명령서 발급 확인 등에 의하여 그 외국인의 보호가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다른 사무소 또는 출장소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호명령서 사본 및 보호의뢰서를 송부 받은 후 입소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때에 한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친부모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어린이에게는 이 규칙에서 정한 급여를 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동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정한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동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소장은 1월 이상 보호하는 14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하여 그 어린이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소장은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특별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전담공무원은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을 2주일에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하며, 면담결과 방 배정·교육·운동·급식 등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법무부훈령 제541호, 2006.3.10.)

제5조(14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조치) ① 보호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아닌 14세 미만의 외국인을 보호하여야 할 때에는 보호외국인으로부터 자필로 작성된 보호동의서를 제출받아 소장의 허가를 득한 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보호소내 생활기록 및 건강상태 등을 서식 제4호 제14세 미만자 보호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후 출입국정보시스템에 전산 입력하여야 하며, 14세 미만자 보호 생활기록부, 보호동의서 등 아동 관련 자료를 부양권이 있는 보호외국인의 자료에 합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출입국정보시스템상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14세 미만 외국인의 인적사항과 입소일 등을 부양권이 있는 보호외국인의 보호명령 입력 항목에 있는 비고란에 입력한다.

④ 소장은 제2항의 어린이에게 보육원, 유치원 등 시설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동 시설의 전문가 또는 자원봉사요원을 초청하여 보호시설내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17세 미만 보호외국인의 전담공무원 지명)소장은 보호규칙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지명하되, 가능한 외국인 보호경험이 있거나 심리학 상담 등을 전공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명하여야 한다.

3

2009년 미등록이주자 단속관련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기본권의 법률유보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출입국 단속의 요건 및 절차,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규정을 법률로 규정할 것
2.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하는 경우, 반드시 단속 대상 외국인에게 사전에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 과 성명을 밝히도록 할 것, 또한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 것, 긴급보호가 개시되기 전에 실시되는 외국인에 대한 질문 및 조사절차는 강제력을 수반할 수 없는 ‘임의조사’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단속과정에서 최소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불심검문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
3.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미등록이주자 단속 업무를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권자나 관리자에게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구하고,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4. 미등록이주자를 단속할 경우,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강제단속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을 제한할 것
5.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보호외국인의 도주 및 저항여부를 불문하고 긴급보호의 취지 및 미란다원칙의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행하지 않고 단속차량에 탑승한 후에 이행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6. 미등록이주자 단속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발생하는 과도한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7. 미등록이주자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이주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 등의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8. 미등록 이주자 단속과정에서 단속된 외국인에게 수갑을 장시간 채우고, 비좁은 단속차량에 장시간 인치한 채 다른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단속행위를 계속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9. 미등록이주자 단속 시 경찰장구 및 무기의 사용은 보충성과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 또는 거부함으로써 그 집행의 목적달성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거나, 공무원이나 단속대상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서 장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10. 호송과정에서 보호외국인들이 일반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노상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11. 보호외국인들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보호·단속·강제퇴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보호외국인이 권리구제 관련 자료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역직원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선 구제제도 후 통보 원칙’을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하여 미등록이주자의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해 구제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통보의무가 정지되거나 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등록이주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2009년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단속 및 보호 관련 제도가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제17조, 제37조,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reatment of Prisoners, 1957. 7. 31. UN 경제사회이사회 승인) 제6조, 제35조, 「UN 피구금자 보호의 원칙」, 제11원칙, 제12원칙, 제13원칙, 제14원칙,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2항

【주 문】 법무부장관에게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기본권의 법률유보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출입국 단속의 요건 및 절차,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규정을 법률로 규정할 것
2.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하는 경우, 반드시 단속 대상 외국인에게 사전에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할 것, 또한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도록 할 것, 긴급보호가 개시되기 전에 실시되는 외국인에 대한 질문 및 조사절차는 강제력을 수반할 수 없는 ‘임의조사’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단속과정에서 최소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불심검문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
3.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미등록이주자 단속 업무를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거권자나 관리자에게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구하고,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4. 미등록이주자를 단속할 경우,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강제단속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을 제한할 것
5.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보호 외국인의 도주 및 저항여부를 불문하고 긴급보호의 취지 및 미란다원칙의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행하지 않고 단속차량에 탑승한 후에 이행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6. 미등록이주자 단속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발생하는 과도한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7. 미등록이주자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이주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 즉시 응급조치 등의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

8. 미등록 이주자 단속과정에서 단속된 외국인에게 수갑을 장시간 채우고, 비좁은 단속차량에 장시간 인치한 채 다른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단속행위를 계속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9. 미등록이주자 단속 시 경찰장구 및 무기의 사용은 보충성과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 또는 거부함으로써 그 집행의 목적달성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거나, 공무원이나 단속대상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서 장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
10. 호송과정에서 보호외국인들이 일반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노상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수립하고 직원들에게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11. 보호외국인들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보호·단속강제되는 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과, 보호외국인이 권리구제 관련 자료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역지원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2. ‘선 구제제도 후 통보 원칙’을 「출입국관리법」에 명시하여 미등록이주자의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해 구제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통보의무가 정지되거나 면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등록이주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방문조사 실시 및 권고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07년 및 2008년 2회에 걸쳐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보호실 처우문제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단속 관련 문제에 대하여 관련 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 미등록이주자 단속과 관련된 진정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단속과정에서 부상, 강제연행 등 과잉단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2009. 4. 1.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개정안에 단속부분과 관련한 위원회의 권고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방문조사는 2009. 7. 14.부터 7. 23까지 2007년 위원회의 방문조사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보호시설 4곳(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특히 이번 방문조사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중심으로 조사하게 되었다. 위 방문조사과정에서 방문조사 보호시설 4곳에 수용되어 있는 외국인 43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이하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고, 동시에 보호외국인 30여명을 대상으로는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9. 8. 24.부터 2009. 9. 31.까지는 전국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또는 강제퇴거 담당 공무원들에 대하여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방문조사 결과 및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등을 기초로 보호환경 개선 및 보호외국인 처우 개선방안을 권고하게 되었다.

2.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단속의 권한 및 절차

우리 위원회는 2005. 5. 23.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보호'의 개념을 분명히 정의하고,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그 요건, 절차를 명확하고 엄격하게 규정하며, 단속과 연행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 특히 단속, 연행, 보호, 긴급보호 등 사실상 체포와 구금으로 작용해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수준의 실질적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2009. 6. 15. 제정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는 여전히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질문 등 권한규정만을 두고 있고, 대상 외국인의 권리보장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09. 4. 1. 입법예고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보호'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한 것 외에 미등록이주자 등에 대한 단속 및 연행 권한과 그 요건, 절차 그리고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법무부가 개정 법률안에 형식적으로 '보호'의 법률적 정의규정을 신설하는 것 외에는 여전히 단속 대상인 외국인에 대한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강제력을 수반하지 않는 임의수사인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불심검문 조항'과 비교해 보아도 적법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단속 대상 외국인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신원확인 의무만을 강요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즉,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미등록이주자 등 출입국관리사범에 대한 단속 행위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인신의 구속과 직결되는 특별한 행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뿐만 아니라 단속 대상인 외국인의 권리보호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음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권 침해적 단속은 단속과정의 실무 운영 과정에서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단속의 근거와 절차, 통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의 미비함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권의 법률유보 원칙 및 법치주의 관점에서 출입국 단속의 요건 및 절차, 대상 외국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규정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단속반원 복장 및 신분증 제시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4%가 사복차림의 단속 반원들에게 단속을 당하였으며, 단속반원들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6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도 단속 전과 단속과 동시에 제시한 경우가 각각 38.2%, 26.2%였고, 단속 후에 제시한 경우가 35.6%였다. 또한 단속 당시 단속반원들의 행동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 중 38.2%가 단속반원들이 보자마자 물리력으로 제압을 하면서 비자 제시를 요구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위원회의 2008년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 중 47.9%가 사복차림의 단속반원들에 의해 단속을 당하였고, 37.4%가 단속반원들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무작정 외국인을 끌고 갔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아, 단속반원의 복장 및 신분증 제시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적인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03. 2. 10. “미등록이주자노동자라 할지라도 단속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향후 단속과정에서 내국인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원칙을 준수하여 검문 시에는 반드시 신분과 목적을 밝히고, 다른 곳으로 연행할 때 연행지를 밝히고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알릴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는 등 최소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불심검문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9. 11. 19. 출입국관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면서 “미등록외국인에 대해 정지·질문 및 단속 과정에서 대상 외국인에게 최소한의 인권 및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

심검문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단속과정에서 단속반원이 외국인에게 질문하거나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과 같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반면, 「출입국관리법」 제27조 제2항에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98조 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취지의 외국인에 대한 의무 및 처벌 조항만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과 같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엄격하게 지켜야 할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출입국사범 단속을 위한 불심검문 시 원칙적으로 외관상 신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복을 착용하고, 불심검문의 대상 외국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신분과 소속, 성명 등을 고지하고, 불심검문의 목적을 설명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잘못된 단속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단속 대상 외국인에게 사전에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는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긴급보호가 개시되기 전의 외국인에 대한 질문 및 조사절차는 강제력을 수반할 수 없는 ‘임의조사’임을 명확히 인식하여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및 인권 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단속과정에서 최소한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불심검문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 단속 시 주가사업장 진입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등록이주자들의 32.8%가 근무지에서, 21.8%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연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입

국관리사무소, 고용지원센터, 경찰서 등과 같은 관공서를 찾았다가 단속된 경우는 남성은 5.1%, 여성은 3.4%나 되었다. 거주지에서 단속된 경우 34.0%가 단속반원들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문을 열어주니 갑자기 집안까지 진입하여 단속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근무지에서 단속된 경우 63.7%가 단속반원이 고용주(사장)의 동의 없이 사업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단속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식당, 상점 등에서 단속된 경우 주인이 단속반원의 출입을 허락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9.0%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위원회는 2005. 11. 21. “단속을 위해 주거, 사업장 등을 방문할 경우, 주거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진입할 수 있는 권한은 「출입국관리법」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주거, 사업장 출입 조사 등에 있어 영장주의 원칙 준수 등 형사사법절차에 준하는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2009. 10. 12.에는 “미등록이주자 단속 시 주거무단진입 등의 부적절한 단속관행을 시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최근 법원도 주거나 사업장에 들어가 조사할 경우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결(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156)을 한 바 있다.

법무부는 2009. 5. 23.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훈령으로 제정하면서 종래 있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지침」을 폐지하였는데, '단속지침' 상에 있던 '가택 및 영업소 단속 시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를 얻고 단속에 임하고, 만약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거부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에 임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반면, 새로 제정한 훈령 제10조에서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 등에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권한 규정만 두고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 동의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에 대한 것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종래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지침」보다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더 후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미등록이주자 단속 업무를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권자나 관리자에게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단속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야간단속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속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사이가 64.9%로 가장 많았고, 오후 6시에서 자정 사이에 단속된 경우는 24.5%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자정에서 오전 6시 사이에 단속된 경우도 5.6%였고, 새벽에 집에서 단속된 경우의 사례도 심층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형사소송법」 제125조 및 일본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제35조에서는 ‘타인의 주거 기타 건물 내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의 야간집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단속으로 인한 사망, 부상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고발생 위험성이 더 높은 일출 전, 일몰 후의 단속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미등록 이주자 단속할 경우, 일출 전, 일몰 후에는 강제단속을 할 수 없도록 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마. 긴급보호 개시 시점 및 긴급보호사유 설명여부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속할 당시 단속반원들이 긴급보호서 등 서류를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 77.5%가 보여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고, 단속반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76.5%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서류를 제시한 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혀 보여 주지 않은 경우가 52.6%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보여준 경우에는

단속을 당한 후 차량에서 보여준 경우가 16.7%, 단속과 동시에 보여준 경우가 12.4%, 보호소에서 보여준 경우가 9.6%, 단속 전에 보여준 경우는 8.6%였다.

법무부는 2009. 11. 11. 국회에 제출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51조 제3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긴급히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긴급보호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또한 긴급보호서 제시 시점과 관련하여서도 개정안 동조 제4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외국인을 긴급히 보호하면 즉시 긴급보호서를 작성하여 그 외국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긴급보호 후에 긴급보호서를 제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긴급보호제도’는 보호외국인의 신체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자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력 행사이므로 긴급보호의 시기는 단속차량 탑승 시가 아니라 외국인을 단속차량으로 연행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시점부터라고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보호외국인의 도주 및 저항여부를 불문하고 긴급보호의 취지 및 미란다원칙의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행하지 않고 단속차량에 탑승한 후에 하는 것은 사유를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이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5항, 「세계인권선언」 제9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9조 제2항, 「UN 피구금자 보호원칙」 10조 등에 위반하여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의 시비가 일어나기에 충분한 관행이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를 집행하면서 보호외국인의 도주 및 저항여부를 불문하고 긴급보호의 취지 및 미란다원칙의 고지를 강제력 행사가 개시되기 직전이나 직후에 이행하지 않고 단속차량에 탑승한 후에 이행하는 관행을 개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바. 폭행이나 폭언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속반원에게 붙잡혔을 때 구타를 당했느냐는 질문에 구타를 당하였다는 응답은 남자의 경우는 21.1%였으나 여자의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타를 어떤 방법으로 당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남자 응답자의 66.7%가 손과 발로 맞았다고 응답하였으며, 41.7%는 여러 명에 둘러 싸여 맞았다고 응답하였으며, 25.0%는 장비로 맞았다고 하였다. 한편 여자의 경우는 1명이 손과 발로 맞았다고 응답을 하였다. 또한 붙잡혔을 때 단속반원이 폭언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자는 43.8%, 여자는 32.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미 단속이 되어 미등록이주자의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단속반원의 구타 및 폭언은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 위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전히 단속반원에 의한 구타 및 폭언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자 단속과정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발생하는 과도한 폭력행위 및 인권침해를 근절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 단속과정에서의 부상 및 조치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응답자 중 22.2%가 부상을 입었다고 응답하였다. 부상 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자 응답자의 31.9%가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여자 응답자의 경우에는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사무소나 보호소에 와서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남자는 12명(응답자의 17.4%)이었고, 여자는 3명(응답자의 50.0%)이었다. 한

편 단속 당시 즉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응답한 사람은 16.7%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08. 12. 29. “경기도 마석가구단지에서 단속을 당한 외국인이 무릎과 인대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상이었고, 호송과정에서 단속반원들에게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이를 묵살하였던 점과, 단속반원들이 추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이에 대한 의료조치 등 별도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단속과정에서 미등록이주자가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의료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이며,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위반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의무조차 방기한 행위이므로 단속 과정에서 미등록이주자가 부상을 당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 등의 의료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 단속차량에서의 장시간 인치 및 수갑착용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무기 등’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와 분사기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장구’도 포함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2는 경찰장구의 사용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은 계구사용과 관련하여 ‘단속공무원들은 단속된 외국인인 원고가 이미 수갑에 채워져 단속차량에 태워진 이후 저항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갑을 벗겨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갑을 계속하여 뒤로 채운 상태로 원고를 서울에서 청주까지 호송하여 원고에게 손가락 감각이상 및 손목 찰과상 등의 증세가 남게 한 행위는 단속공무원들이 직무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을 적절히 해석·적용하지 못한 과실로 「출입

국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계구사용의 한계를 넘어 위법하게 원고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1.15. 선고 2006나 5238 판결)한 바 있다.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호외국인이 단속될 때 단속차량에 있었던 시간은 1시간 이내가 23.8%이었고, 5시간 이상도 10.5%로 나타났다. 단속차량에 갇혀 있으면서 힘들었던 점은 수갑을 차고 있어서 힘들었다는 응답이 7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휴대폰사용이 어려웠다가 49.2%로 나왔고, 특히 화장실에 가지 못해 힘들었다는 응답은 여자는 37.1%였으며 남자는 22.5%였다.

단속차량에 갇혔을 때 단속된 다른 외국인은 몇 명이 더 탑승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29.3%였으며 1명에서 5명 사이는 28.4%로 나왔고, 단속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서는 승합차, 버스에 사람들이 다 채워질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며 단속해서 계속 차안에 갇혀있었다는 응답이 59.2%로 제일 높게 나왔다. 그 다음은 단속된 후 바로 출입국관리소로 왔다는 응답으로 남자는 39.0%였다. 한편 다른 미등록 외국인이 있는 곳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아 다른 공장으로 함께 동행 했다는 응답은 남자는 8.9%, 여자는 1.9%로 남자에게 이러한 요구를 훨씬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차량 안에서의 수갑착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는 84.5%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착용하고 있었다고 응답하였고, 처음에는 착용을 하였다가 도중에 풀어주었다고 응답한 남자는 6.9%였다.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보호소로 이송하는 과정 중 수갑착용과 관련하여 해당 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해 달라는 질문에 손 양쪽으로 서로 다른 사람과 수갑을 함께 차고 늘어서서 이동했다는 응답이 남자는 53.7%였으며, 하나의 수갑으로 두 명이 착용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38.2%였다. 보호소, 병원, 법원 등 외부 장소

로 이송되는 동안 수갑을 착용한 모습이 여러 사람들 앞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의 57.3%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이중 남자는 56.8%, 여자는 59.5%가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위 설문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이 이미 단속된 외국인을 과도하게 장시간 비좁은 단속차량에 인치한 상태로 둔 채 또 다른 출입국관리사범에 대한 단속행위를 계속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단속차량에 장시간 인치하고 수갑을 장시간 채우는 행위는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최소 침해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이미 단속된 외국인을 과도하게 장시간 비좁은 단속차량에 인치한 상태로 둔 채 또 다른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단속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외국인의 보호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령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미등록이주자 단속과정에서 단속된 외국인에게 수갑을 장시간 채우고, 비좁은 단속차량에 장시간 인치한 채 다른 미등록이주자에 대한 단속행위를 계속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자. 장비사용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속반원이 단속할 때 사용했던 장비를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는 수갑이 89.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봉 사용이 9.3%였고, 전자충격기를 사용한 경우도 2.2%로 나타났는데, 전자충격기를 과도하게 사용한 사례도 심층조사에 있었다. 또한 단속반원이 사용한 계구, 수갑채용 등으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부상을 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자의 31.5%, 여자의 17.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77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무기 등의 휴대를 할 수 있고 「경찰직무집행법」 제10조 내지 제10조의4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갑 등 경찰장구 사용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는 보호나 강제퇴거 등과 같은 행정작용과는 무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 등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범죄자가 아닌 외국인들에 대한 물리력 사용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등록이주자 단속 시 경찰장구 및 무기의 사용은 보충성과 긴급성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공무집행을 적극적으로 방해 또는 거부함으로써 그 집행의 목적달성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만들거나, 공무원이나 단속대상자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상황에서 장구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차. 성적 수치심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속반원의 성별에서는 남자 응답자의 경우 남자단속반원이 단속한 경우는 76.4%, 남성단속반원과 여성단속반원이 같이 단속한 경우는 21.8%였다. 여자 응답자의 경우는 남성단속반원이 단속한 경우는 59.0%, 남성단속반원과 여성단속반원이 같이 단속한 경우는 34.4%, 여성 단속반원이 단속한 경우는 6.6%였다. 단속과정이나 단속 승합차 안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남자는 16.9%, 여자는 18.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낀 이유를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 대해 차에서 내린 후 남들이 보는 앞에서 묶여 끌려가서라는 응답이 제일

높게 나타났는데 남자는 54.7%, 여자는 50.0%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온 응답은 장시간 간혀서 화장실에 갈 수 없어서라는 응답으로 남자는 32.6%, 여자는 30.8%로 나왔다. 한편 성별로 차이가 나는 응답은 성이 다른 단속반원들에 의해 연행되었다는 응답이었는데 이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남자는 4.2%인 반면 여자는 26.9%였다. 단속 호송차량에 장시간 대기하던 여성보호외국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다가 화장실이 아닌 노상에서 용변을 보게 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5호에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구금자처우에관한최저기준규칙」 제45조는 피구금자인 수용자를 이동시키는 경우에 가능한 한 일반 공중의 면전에 수용자의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욕·호기심·공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송과정에서 보호외국인들이 일반 공중의 면전에 드러나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절한 방어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거나 화장실이 아닌 노상에서 용변을 보게 하는 행위는 여성보호외국인의 존엄성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직원들에 대한 사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카. 단속 후 권리고지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를 변호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느냐는 질문에 응

답자의 70.8%가 이러한 고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보호시설에 들어올 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이 있으면 모두 고르라는 질문에서 친지나 가족과 면회할 권리라고 응답한 사람은 56.5%였다. 한편 구금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람은 25.2%였다. 구금이나 강제퇴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74.8%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69.9%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고지를 받지 않고서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원칙은 「UN 피구금자 보호원칙」에도 규정되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비록 「출입국관리법」은 보호외국인의 권리고지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을 비롯한 다른 국가기관 등에 의하여도 직접 제한 될 수 있으므로, 「헌법」 제12조 소정의 ‘체포·구속’ 역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최소한 모든 형태의 공권력 행사기관이 ‘체포’ 또는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헌법 제12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04.3.25. 선고 2002헌바104 결정).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신구속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에 대한 (긴급)보호 집행 시에도 보호외국인에게 「헌법」 제12조 제5항 및 「형사소송법」의 조항을 준용하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타. 조사과정 통역지원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속 직후 보호실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은 얼마나 잘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말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응답이 47.6%로 제일 높게 나왔다. 한편 통역인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32.2%로 역시 높게 나왔다. 그리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전체 비율은 42.7%로 거의 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의사소통에서 문제를 느끼고 있었는데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43.9%, 여자의 경우 37.1%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사용한 언어는 한국어가 83.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반면, 출신국 언어로 조사를 받은 경우는 4.1%였다. 그런데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7.6%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상당수의 보호 외국인들이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충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만큼 되지 않음에도 한국어를 사용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의 통역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남자의 75.6%, 여자의 78.6%가 통역인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통역인의 신분은 보호소 내 외국인이 34.8%, 외부에서 온 통역인과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각각 32.6%였다.

위원회는 2002년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향상을 위한 정책권고’에서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출입국 관련서류의 번역본을 송출국별로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하여 비치하도록 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UN인종차별철폐협약」, 국내 사증의 설명, 국내 「근로기준법」 중 외국인노동자 관련 조항, 부당한 인권 침해나 노동행위 발생 시 구제방안,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사회보장, 수사과정시 인권보호방안 등의 내용이 포함된 책자(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지침)를 제작·배포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등록이주자들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 의해 일단 단속 및 보호되어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옮겨지게 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용의자’의 법 위반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혹은 출장소장은 그 여부를 심사하여 강제퇴거명령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국내 법

제에 익숙하지 않아 법률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언어 상의 의사소통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출입국관리법」 제48조 제6항에도 ‘국어에 통하지 못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즉, 보호외국인들은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게 될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는 보호뿐 아니라 단속과 보호절차, 강제퇴거절차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방문조사결과 외국인보호시설에서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호외국인이 권리구제 관련 자료 등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과, 외국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어 질 수 있도록 통역지원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파. 공무원의 통보의무

‘2009년 보호외국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공서에서 단속을 당한 경우에 누군가에게 신고 되어 연행된 경우가 36.3%로 제일 높게 나왔으며 그 다음이 경찰이나 관공서에 피해신고를 하러 갔다가 단속된 경우와 증언을 하거나 목격자로 진술하다가 미등록 사실이 밝혀져 단속된 경우가 각각 15.3%, 14.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위원회는 2003. 2. 10. 외국인노동자 권리구제 담당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완화하여 미등록이주자에게도 최소한의 권리구제 절차를 합법적으로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07. 12. 3.에는 미등록이주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른바 ‘선(先)구제제도 후(後)통보원칙’제도를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4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노동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일지라도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과 관련한 구제절차

가 완료된 뒤에야 ‘불법체류’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등 ‘선 구제제도 후 통보원칙’을 지침으로 시행하였으나, 최근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과 충돌된다는 이유로 ‘선 구제제도 후 통보원칙’을 폐지하였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4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자) 또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보의무 규정은 ‘인권보장’이라는 보편적인 법 원리보다는 ‘출입국관리’라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우선시하는 규정으로, 위와 같은 공무원의 통보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미등록이주자는 임금체불, 사기사건, 폭행사건 등과 관련하여 노동부나 경찰 공무원에게 구제신청 등을 하기 위해 강제출국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원회가 권고한 것과 같이 ‘선 구제제도 후 통보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여 미등록이주자의 피해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피해 구제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통보의무가 정지되거나 면제될 수 있도록 하여 미등록이주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위원회는 방문조사로 드러난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현행 단속 및 보호 관련 제도가 외국인의 기본적 인권 존중과 보호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9. 12.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4

2010. 3. 8.자 09진인1886결정 [부당한 단속에 의한 인권침해]

○○출입국관리소장에게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1, 2, 3에게 진정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진정인의 병원 진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단속자로서 지켜야 할 신분증 제시, 단속 사실 및 목적의 고지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고 다중이 있는 곳에서 강압적 단속을 지속한 것은 진정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및 제12조, 「출입국관리법」 제82조,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제3조

【진 정 인】 ○ ○ ○

【피진정인】 1. ○ ○ ○

2. ○ ○ ○

3. ○ ○ ○

【주 문】 1. ○○출입국관리소장에게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 2, 3에게 진정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진정인의 병원 진료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09. 5. 30. 17:30경 진정인이 ○○도 ○○시 ○○동 ○○○번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 외견상 진정인이 한국인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인 피진정인 1, 2, 3은 외국인을 단속한다는 명목 하에 반찬 가게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진정인을 위 피진정인 중 2명이 따라 붙어 치근덕거리고 한국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희롱하여 진정인은 그들이 납치범이라고 생각되어 그 곳을 재빨리 피하려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쫓아와서 진정인의 팔을 잡고 옷을 잡아 당겼으며, 피진정인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의 가슴과 배로 진정인의 가슴을 밀쳤다. 또한 피진정인들 중 한 사람은 진정인을 뒤에서 껴안고, 진정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도 했다. 이에 진정인이 당황하여 경찰을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이를 무시하였고, 무조건 차량 쪽으로 진정인을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신분증도 착용하지도 않은 채 단속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당황하는 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신분을 확인시켜 줄 여유도 주지 않은 채 잘못된 단속 행위를 강행하였다.

나. 위 단속 직후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도망쳤다. 피진정인들은 위 단속과정 중에 사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여성외국인만을 단속하였다. 또한 여성을 단속하려면 단속인 중 여성단속자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단속자 중 여성은 한 명도 없는 등 단속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2009. 5. 30. ○○출입국관리사무소 ○○○○반 팀장인 피진정인 1 등은 ○○○도 ○○시 ○○동 ○○시장에서 1시간 30분(16:20 ~17:50) 동안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단속을 하였다. 같은 날 17:30경 위 시장 내 한 가게 앞에서 외견상 외국인으로 보이는 진정인이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의 앞으로 다가가서 사법경찰관신분증을 보여주며 “익스큐즈미.”라고 말하자 진정인이 바로 달아났다. 이에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10m 정도 따라가다가 진정인을 가로막고 진정인이 잘 볼 수 있도록 피진정인 1의 사법경찰관신분증을 가슴 정도 높이로 들어 올려 “여기 사법경찰관 신분증을 잘 보세요.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나온 불법체류자 단속반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 주세요.”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한국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으로 판단하여 영어로 “아이디 카드, 플리즈(ID Card, Please).”라고 3~4회 되풀이하여 말하였으나 진정인은 사법경찰관신분증을 응시하다가 다시 도주를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팔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을 밀치거나 뒤에서 진정인을 껴안은 사실은 없다. 그 후 피진정인 1이 다시 사법경찰관신분증을 진정인에게 보여주며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진정인은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았으며, 계속 도주하려 하였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진정인이 불법체류외국인이라고 판단하였다.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단속 차량에 가서 신분을 확인 하시죠.”라고 하자 그때서야 진정인은 지갑을 꺼내 신분증을 찾는 척 하다가 신분증도 보여주지 않고 지갑을 다시 닫았다. 계속 단속 차량에 가서 신분을 확인해 보자고 하자 진정인이 단속 차량에 가지 않으려고 가까이 있던 파라솔을 붙잡았으며, 이 때 가게 주인이 “영업에 피해를 주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여 피진정인 1이 “이 분(진정인)이 이렇게 파라솔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옆으로 이동합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진정인은 단속을 지켜보던 행인(성명 미상)으로부터 핸드폰을 빌려 통화를 하였고

핸드폰을 빌려 준 사람이 진정인에게 “신분증 보여 주세요.”라고 하자 그때서야 진정인이 뒷주머니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후 진정인이 한국인임을 확인하였고 “외국인으로 잘못 알고 신분확인을 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였다. 진정인에게 핸드폰을 빌려준 사람이 “출입국에서 한국인을 왜 검문하느냐?”고 항의를 해서 피진정인 1이 사법경찰관신분증을 그 남자에게 보여 주었다. 단속반원 출입국관리주사 ○○○도 “한국인을 외국인으로 잘못 알고 신분증을 확인해서 미안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큰소리로 사과하였다. 이와 같이 피진정인들은 단속업무를 수행하면서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때 경어를 사용하였고, 진정인이 한국인으로 밝혀졌을 때 바로 사과하고 풀어주는 등 진정인에게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언행은 하지 않았다.

단속 현장에는 없었지만 단속 차량에는 여성공무원 8급 ○○○이 여성 불법체류자들을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여성 피단속인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다. 참고인의 주장요지(당시 사건현장에 있던 행인 ○○○)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단속하면서 “익스큐즈미,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며 진정인의 아이디(ID)를 보여줄 것을 요청하자 진정인은 당황하는 기색이었고, 위 단속 반원들은 진정인을 강제로 연행하려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팔과 옷자락을 잡아당겼고 진정인과 피진정인들 간에 몸싸움이 일어났다. 연행에 저항하는 진정인을 피진정인들 중 한 명이 양팔로 안고 압박하였으며, 진정인이 그의 힘을 이기지 못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고 참고인이 피진정인 1의 신분을 묻자 피진정인 1은 경찰이라며 매우 짧게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그의 신분은 확인하지 못하여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진정인 1은 1~2초간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나 신분증 지갑을 바로 닫아버려 신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인 1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한국인임을 확인시켜주었고, 참고인도 피진정인들에게 경솔한 업무 수행에 대하여 항

의하면서 정식으로 사과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진정인들은 적법하게 단속을 하였으므로 사과할 용의는 없다고 하였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조사대상 여부 검토

이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09. 8. 7.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을 상대로 ○○경찰서에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 및 제125조(폭행·가혹행위)를 사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2009. 9. 1. ○○경찰서는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내사종결하였다. ○○경찰서에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조사한 사항은 「형법」 제124조 및 제125조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경찰서에 제출한 진정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된 진정이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있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진정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5. 인정사실

진정인의 주장 및 피진정인들의 주장, 참고인의 진술, 피진정기관에서 제출한 사건 당일 ‘동향조사활동보고서’ 등의 자료, ○○시장 내 CCTV 영상기록(2009. 5. 30.), 현지 실지조사보고서(2009. 8. 25.), ○○경찰서 회신(2010. 2. 29.), 진정인에 대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들은 2009. 5. 30. 16:20부터 17:50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시 ○○시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단속 업무를 수행하였다. 당일 현장 단속업무는 2009. 2. 19.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불법체류외국

인 주말단속 계획’에 따라 간소복 차림으로 수행되었다.

나. 같은 날 17:30경 피진정인 1은 ○○시장 장소 미상 가게 앞에서 장을 보고 있던 진정인을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오인하여 가게에서 나오는 진정인에게 “익스큐즈미”라고 말하면서 피진정인 1이 신분증을 매우 재빨리 제시하였고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을 피해 시장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이에 피진정인들은 약 10미터 정도 진정인을 따라가 진정인을 가로 막고 에워싼 후 진정인을 제지하기 위해 진정인의 소매자락을 잡아당기고 진정인의 양팔을 안고 압박하였다.

다. 당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행인인 참고인 ○○○이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면 된다고 말하자 진정인은 피진정인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이 한국인임을 확인한 후 진정인을 놓아 주었다.

라. 참고인 ○○○이 피진정인들의 신분을 묻자 피진정인 1은 지갑을 열어 약 1초간 신분증을 보여주었으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기에 재차 피진정인 1에게 신분을 물었고 그 때서야 피진정인 1은 1~2초간 다시 신분증을 제시하고 지갑을 닫아버려 결국 참고인 ○○○은 이들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마. 위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해 진정인은 2009. 6. 3. ○○정형외과에서 다발성 타박상, 염좌 등의 사유로 2주간의 치료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6. ○○○○정신과의원에서 우울감, 불안감, 놀래는 증상 등으로 4주간의 가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바. 진정 사건 당일 피진정인 등이 단속한 외국인은 10명이며, 그 중 2명이 외국인 여성이었고, 당시 단속반원 중에 여성공무원 1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7.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2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함에 있어 증표의 휴대 및 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에서도 단속에 임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보호를 최우선하도록 규정하면서, 동 준칙 제3조에서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의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하고,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을 단속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위 규정에 따라 외국인 단속 시 피단속자가 단속자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신분증을 우선 제시하여야 하며, 단속 배경 등을 피단속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단속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피진정인들의 신분 및 단속 배경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피진정인 1은 신분증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자료를 확인해 보면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재빨리 신분증이 든 수첩을 닫아버림으로써 사실상 진정인이 피진정인 1의 신분을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이 외관상 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주관적 판단 하에 진정인에게 한국말 대신 영어를 사용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당혹감과 공포심을 갖게 하여 결국 진정인이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을 희롱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하여 도망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와 같이 진정인이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을 제지하기 위해 진정인의 옷자락을 심하게 잡아당기고 진정인을 양팔을 안고 압박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진정인이

2주간의 상해 진단과 4주간의 정신과 진단을 받도록 하였다. 즉 피진정인들은 외국인 단속과정에서 단속자로서 지켜야 할 신분증 제시, 단속 사실 및 목적의 고지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피단속자인 진정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단속 업무 수행하였으며, 다중이 있는 곳에서 진정인에 대하여 강압적 단속을 지속하여 진정인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82조 및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별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을 위반한 행위로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단속업무 수행과정에서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 2, 3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단속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1, 2, 3에게 피진정인들이 공무수행 결과로 피단속자인 진정인에게 심신에 피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대한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1) 단속시 피진정인들이 사복을 착용하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허가 하에 예외적으로 제복을 착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09년 불법체류외국인 주말단속계획’에 따라 동 단속이 실시되었고 이 계획에 따르면 단속 공무원은 간소복 차림으로 단속활동에 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이 당일 단속업무 수행에서 간소복을 입은 것은 위 계획에 따른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 단속시 여성 단속인이 포함되지 않았고, 여성만을 단속대상으로 하

였다는 진정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바항과 같이 단속 당일 단속업무에 여성공무원이 포함되었고, 단속 된 사람들 10명중 여성이 2명이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정은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단속 직후 피진정인들이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들의 주장 내용이 상이하고, 진정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 1호 및 제2호,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별지】 관련규정

1. 대한민국헌법(1987.10.29.)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출입국관리법(2008. 12. 19.)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11호(내용 생략)

제47조(조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이하 "용의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제51조 (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명령서의 발부를 신청할 때에는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외국인이 제4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의

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 취지를 알리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명의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02.12.5>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외국인을 보호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아 그 외국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하며, 이를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81조(출입국관리공무원등의 외국인동향조사)①출입국관리공무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소속공무원은 외국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외국인, 그 외국인을 고용한 자, 그 외국인의 소속단체 또는 그 외국인이 근무하는 업소의 대표자와 그 외국인을 숙박시킬 자를 방문하여 질문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을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2조(증표의 휴대 및 제시)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제80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질문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수행

3. 출입국관리법시행령(2009.12.31)

제92조(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제복 및 신분증)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는 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신분증을 지녀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4.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준칙(2009.8.2, 훈령)

제3조(직무수행의 기본원칙)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는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야 한다.

- 1. 외국인 등에 대하여 폭언이나 가혹행위 또는 차별적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직무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외국인 등의 사생활이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사법경찰관리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이하 "증표"라 한다)을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
- 5. 외국인 등이 언어소통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계구 및 보안장구의 사용 등 강제력의 행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7조(단속복장 및 증표) ① 단속반원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외국인 등이 출입국관리공무원임을 인식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증표를 휴대 및 제시하여야 한다.

5

2010. 11. 29.자 10진정0450400결정 [인종차별적 광고 현수막 방치로 인한 인권침해]

○○시장에게,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서 금지하는 인종차별적 내용이 포함된 옥외 광고물이 ○○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월드컵 16강 기념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행사”라는 현수막 게시는 매매혼적 표현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 출신 여성을 상품으로 이미지화함으로써 ○○○ 출신 여성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조장한다고 보이는바, 이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 민족적 근거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효과를 촉진하거나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에 반함.

○○도 ○○시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등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광고 현수막의 게시 신고를 수리하여 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6.선고 2005도6810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제4조,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진 정 인】 장○○ 외 50명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옥외 광고물이 ○○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과,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인종차별금지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월드컵 16강 기념 ○○인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행사”라는 ○○○ 출신의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었는바, 이는 ○○○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시정해 주기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시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신고대상 광고물 등) 그리고 「○○시 조례」 제15조(현수막 표시방법)에 의거하여 현수막 등을 포함한 옥외 광고물의 게시 신고를 수리 및 관리하고 있다.

2) 본 진정사건 관련 현수막은 결혼정보업체인 ‘○○○○’의 광고 현수막이다. 동 업체의 대표자가 2010. 7. 9.부터 같은 달 15.까지 ○○시 지정 게시대에 광고 현수막을 설치하겠다는 요지의 신고를 하였고, ○○시청 소속 담당직원이 해당 신고를 수리함에 따라 당해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었다. 그런데 현수막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현수막에 인종차별적 내용이 있어 인권침

해의 우려도 있었기에 ○○시는 같은 달 12. 당해 현수막을 조기 철거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그리고 진정사건 관련 광고 현수막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청 소속 옥외 광고물 게시 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2010. 7. 9. 진정 외 결혼정보회사인 ○○○○ 대표자로부터 광고 현수막 게시 신고를 접수 받아 수리함에 따라, 당해 광고 현수막이 ○○시 지정 게시판에 부착되었다.

나. 당해 광고 현수막에는 “월드컵 16강 기념 ○○인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행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다. 피진정인은 당해 광고 현수막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2010. 7. 23. 진정 외 ○○○○ 대표자가 ○○시 ○○면과 ○○면 지방도로변에 게시한 광고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라. 피진정인은 2010. 10. 6. 당해 광고 현수막의 내용에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종차별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요지의 공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5. 판단

2010년 현재 국제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는 134,841명

으로 이는 2009년도 기준 전체 혼인건수의 11%에 이르는 규모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과의 결혼은 증가 추세에 있고, 결혼이민자들이 인종적 편견과 선입견 없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2007. 5. 17.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및 2008. 3. 21.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의무를 법률로써 규정하였다. 또한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서는 광고에 의한 인종적 선입견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종차별적인 내용은 광고물에 표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상업적 목적과 연계된 국제결혼중개업이 성행하면서 본 진정사건에서 문제가 된 광고 현수막과 같은 특정 국가 출신 여성을 상품화하는 현수막이 다수 게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본 진정사건에서 문제가 된 광고 현수막은 “월드컵 16강 기념 ○○○인 ○○○ 결혼 980만원 파격할인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돈만 있으면 ○○○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는 매매혼적 표현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 출신 여성을 가격할인의 대상이 되는 상품으로서 이미지화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 출신 여성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퍼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인종차별적 표현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와 제4조가 민족적 근거에 의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효과를 촉진하거나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인 ○○도 ○○시가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 등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종차별적인 내용이 포함된 광고 현수막의 게시 신고를 수리하여 시가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에 부착되도록 한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2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최윤희 위원 김양원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 이 협약에서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제4조 체약국은 어떤 인종이나 특정 피부색 또는 특정 종족의 기원을 가진 인간의 집단이 우수하다는 관념이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선전과 모든 조직을 규탄하며 또한 체약국은 이 같은 차별을 위한 모든 고무 또는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를 지며 이 목적을 위하여 세계인권선언에 구현된 제 원칙 및 이 협약 제5조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제 권리와 관련하여 특히 체약국은,

(a)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하여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b)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의법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c)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3.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4.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0조(재한 외국인 등의 인권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 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6

2011. 2. 17.자 10진정0099400결정 [불법체포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법무부장관에게, 단속된 외국인을 보호장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단속차량에 인치하는 행위 및 차량정원을 초과하여 이송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된 외국인을 보호장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단속차량에 인치하는 행위, 차량정원을 초과하여 이송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외국인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기관 소속 단속팀 직원들은 진정인을 수갑을 채운 상태로 단속차량에 탑승시킨 후, 추가 단속을 위해 ○○시, ○○시, ○○시 등에 차례로 이동하였다가 9시간이 지나서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조치하였고, 단속을 마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동한 1시간 30분 동안은 15명 정원의 차량에 20명 이상의 사람을 탑승시켜 이동하였던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정도가 과도하여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진 정 인】 Z○○ T○○ S○○

【피 해 자】 Z○○ T○○ S○○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소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2. 진정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가. 법무부장관에게, 단속된 외국인을 보호장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단속차량에 인치하는 행위, 차량정원을 초과

하여 이송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나.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된 외국인을 보호장소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단속차량에 인치하는 행위, 차량 정원을 초과하여 이송하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외국인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파키스탄인으로 2010. 3. 6. 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해 3. 8. 파키스탄인 친구가 일하고 있는 ○○시 소재 (주)○○ 공장의 숙소에서 취침하게 되었고, 이튿날인 3. 9. 공장에서 친구의 일을 도와주다가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나온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직원들에 의해 불법취업자로 보호조치되었다. 정당한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진정인을 보호조치한 것은 인권침해이다.

나.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은 불법취업 외국인을 추가로 단속한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비롯한 외국인 14명 정도를 수갑을 채운 상태로 10시간 정도 9~12용 승합차에 인치하였다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하였다.

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한 후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은 진정인에게 강제로 서명, 사진 촬영, 지문날인 등을 하게 하고, 이를 거부하려고 하면 때리려 하는 등 위협하고 욕설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10. 3. 6. 관광목적으로 C-3 사증을 소지하고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한 자로, 같은 달 9. 10:40경 ○○시 소재 (주)○○ 상호의 고추가공공장에 대한 우리 소의 단속과정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고 동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다른 불법취업 외국인들과 함께 적발되었다.

진정인은 자신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관광비자를 소지하였고, 단지 친구의 공장을 방문하여 작업을 구경하던 중에 우리 소 직원들에 의해 단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소 직원들이 사업장에 들어갔을 당시 진정인은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용 점퍼 및 청바지, 붉은색으로 코팅된 작업용 면장갑을 착용하고 고추가공 작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공장책임자인 천○○로부터 2010. 3. 9.부터 진정인에게 일당 35,000원을 주기로 하고 작업을 시켰다는 내용의 근로계약 성립사실을 확인받았다.

2) 우리 소 단속팀 직원들은 2010. 3. 9. 오전 ○○시 ○○면에 소재한 ○○○○○과 (주)○○에 대한 단속과정에서 총 9명의 불법취업 외국인을 적발한 뒤, 이 중 5명의 불법취업자에 대해 같은 날 11:00경 48시간 기한의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단속차량인 15인승 승합차에 긴급보호조치하였다. 이후 단속팀은 ○○시로 이동하여 같은 날 16:00경 ○○산업 상호의 업체에서 불법취업 중이던 몽골인 2명을 적발하여 같은 차량에 탑승시켰으며, 이후 ○○군 소재 ○○산업이라는 업체에서 2명의 불법취업 태국인을 적발하여 같은 날 17:40분경 같은 차량에 긴급보호조치하였다. 이후 ○○군 소재 ○○초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9명을 적발하여 같은 날 18:30경 같은 차량에 긴급

보호한 뒤 같은 날 20:00경 ○○시 ○구 ○동에 소재한 우리 소 보호실에 보호조치하였다.

우리 소에서 운행하는 단속용 차량은 운전석 등 앞쪽에 3개 좌석, 뒤쪽에 12개의 좌석이 설치된 기아 프레지오 그랜드라는 15인승 코치 차량이고, 또한 같은 날 18:30경 이전에는 단속용 차량에 진정인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외국인이 탑승하고 있었으므로, 9인용 승합차에 14명이 10시간 동안 구금되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진정인이 차량이라는 좁은 공간에 약 9시간 동안 보호되었고, 또한 우리 소로 귀소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일시에 적발됨에 따라 18:30경 이후 약 1시간 30분가량 심리적, 육체적 불편함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는 단속계호 인원과 차량 등의 인프라 부족, 단속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3) 우리 소는 같은 날 20:00경 진정인을 우리 소 보호실로 이송하여 보호실 입소절차에 따라 지문날인 및 사진촬영을 하고자 하였으나, 진정인은 자신이 관광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친구의 작업과정을 구경만 하였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입소절차 진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에 우리 소 직원이 진정인에게 언성을 높여 보호실 입소와 관련된 필수절차 진행에 협조하도록 요구한 적은 있지만 진정인을 때리려고 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 진정인은 같은 해 3. 10.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위반을 사유로 강제퇴거 결정되었으며, 같은 날 12:00경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보호조치되었다.

다. 참고인

1) KOO AOO SOO((주)○○ 근무 외국인근로자)

본인은 2010. 3. 8. 저녁 식사 중 진정인의 친구인 S○○의 소개로 진정인을 처음 만났으며, 그 날 밤 진정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잠자기 전 진정인은 자신이 두바이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으며 1~2일 머문 후 인천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음 날인 2010. 3. 9. 09:00경 진정인은 작업화를 신고 공장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있었고, 잠시 후 혼자 일하고 있던 그의 친구 S○○이 도와달라고 하여 플라스틱 바구니를 운반해주었다. 그 후 모두 잠시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돌아와 일을 했으며, 진정인은 그의 친구 S○○ 근처에서 그가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그로부터 약 5분 후 출입국관리직원이 단속하러 들어왔다.

2) 천○○((주)○○ 공장책임자)

본인은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을 실제로 고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2010. 3. 8. 18:00경 진정인의 친구 S○○의 소개로 진정인을 처음 보았다. S○○은 진정인을 자신의 친구라고 소개하며 곧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때까지만 일당 35,000원을 받고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또한 S○○은 진정인이 3. 8.에도 실제로 일을 했으며 3. 9.부터 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 진정인이 일한 일당은 보호조치되지 않은 진정인의 동료의 대신 수령하였다.

3) 노동부 근로기준과

근로계약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가 개시되면 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두계약이나 관행관습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판2006.12.7, 2006도300 참조)

외국인이 단순히 친구의 업무를 도운 것에 불과하다면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이와 달리 근로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등 사용종속 관계 아래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3. 6. C-3 사증을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 C-3 사증은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여 발급되는 사증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는 사증이다.

나. 진정인은 같은 해 3. 8. 파키스탄인 M○○ W○○ S○○을 통해 ○○시 ○○면 소재 (주)○○ 공장책임자인 천○○에게 익일인 3. 9.부터 일당 35,○○원을 받고 같은 공장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상기 공장책임자는 이를 승락하였다.

다. 진정인은 같은 해 3. 9. 오전 작업복과 작업화를 신고 (주)○○ 사업장에서 고추가공작업을 하고 있던 중 불법취업 외국인 단속을 나온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들에 의해 적발되었고 단속된 다른 불법체류 외국인들과 함께 단속차량에 긴급보호조치되었다.

라. 피진정기관 소속 단속팀 직원들은 같은 날 11:00경 ○○시 소재 ○○○○ ○○과 (주)○○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통해 외국인 5명을 2인 1조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피진정기관 단속차량인 15인승 승합차에 탑승시켰다. 이후 단속팀 직원들은 ○○시로 이동하여 16:00경 ○○산업 상호의 사업장에 불법취업 중이던 몽골인 2명을 적발하여 같은 차량에 탑승시켰고, 17:40경에는 ○○군 소재 ○○산업 상호의 사업장에 불법취업 중이던 태국인 2명을 적발하여 같은 차량에

탐승시켰다. 18:30경에는 ○○군 소재 ○○초등학교 주변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불법체류자 9명을 적발하여 같은 차량에 탑승시켰다.

마. 진정인은 같은 날 20:00경 ○○시 ○구 ○동에 소재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도착하기까지 9시간여 동안 피진정기관 단속차량에 수감되어 채워진 상태로 인치되어 있었으며, 18:30경부터 20:00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진정인을 포함하여 총 18명의 외국인들이 15인승 승합차에 탑승한 상태로 피진정기관으로 이송되었다.

바. 피진정기관은 「출입국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진정인에 대해 지문날인, 사진촬영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이에 협조하지 않는 진정인과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 사이에 고성이 오고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고용의 제한)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라 함은 단기취업(C-4), 교수(E-1),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및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말한다.”고 하여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사증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C-3 사증을 가지고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 소재 (주)○○ 공장책임자와 일당 35,000원을 받기로 합의한 후 2010. 3. 9. 실질적으로 근로행위를 하였다. 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는 취업활동에 해당하며, 진정인은 같은 법 제46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보호조치한 것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유래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권력의 행사가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할 것과 수단의 적정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그리고 같은 법 제56조의4는 피보호자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보호규칙」 제43조 제3항은 계구를 채워둔 보호외국인에 대하여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움직임을 살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 소속 단속팀 직원들은 진정인을 수갑을 채운 상태로 단속차량에 탑승시킨 후, 추가 단속을 위해 약 9시간 동안 ○○시, ○○시, ○○시 등에 차례로 이동하였다가 20:00경이 되어서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호조치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단속과정의 불가피성, 단속 인력 및 차량 부족 등을 이유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단속대상이 되는 외국인들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실적 위주의 법집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단속팀이 단속을 마친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동한 1시간 30분 동안은 15명 정원의 차량에 20명 이상의 사람을 탑승시켜 이동하였던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정도가 과도하여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38조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는 사람은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에 대한 사진촬영 및 지문날인은 적법한 법집행으로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

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기관 소속 직원이 진정인을 때리려 하고 욕설하였다는 부분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최윤희 위원 김양원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7

2011. 3. 14.자 10진정0559200·10진정0581300(병합)결정 [체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향후 단속과정에서 단속된 외국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기관 소속 단속 공무원들은 단속 당시 상의를 입고 있지 않았던 진정인을 그대로 10~20분 정도 차량에 인치하였고, 다시 차량으로 20~2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피진정기관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입게 해 달라는 진정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탈의된 몸을 가릴 수 있는 어떤 상의도 제공하지 않았음.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수행상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고 수단도 적정하지 않아 「헌법」 제10조로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진 정 인】 J○○ N○○ O○○

【피 해 자】 J○○ N○○ O○○

【피진정인】 ○○출입국관리소장

- 【주 문】** 1.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향후 단속과정에서 단속된 외국인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들에게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및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케냐 국적의 외국인 남성으로, 2010. 8. 20. 06:00경 ○○도 ○○시 소재 공장에서 취직하던 중 11명의 동료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해 승합차에 인치되었다. 당시 진정인은 반나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진정기관 직원에게 셔츠를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묵살당하였고, 그 상태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되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벗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진정인의 나라의 전통에도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인격권 침해이다.

나. 같은 날 승합차에 함께 탔던 ○○출입국관리사무소 여성 직원은 진정인에게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불평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다. 진정인은 소지품 택배비로 10,000원을 지불하였는데 다른 동료들은 택배비로 5,000원을 지불한바, 이는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10. 8. 20. 06:25경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명의 단속공무원이 ○○도 ○○시 ○면에 소재한 ○○○○에 도착하여 신분증 제시와 함께 불법체류 외국인의 단속을 고지하고 진정인을 포함한 11명을 단속한 사실이 있다.

당시 진정인은 공장 오른쪽 컨테이너 숙소에 있었고, 단속공무원 한 명이 불법체류자인 우즈베키스탄인 한 명을 적발하여 긴급보호하던 상황에서 진정인이 숙소방문을 밀치고 도주를 기도하였으며, 단속공무원들이 5백여 미터를 뒤쫓아 진정인을 검거하였다. 보호 당시 진정인은 바지를 입고 있었고 상의는 탈의한 상태였다.

진정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 2~3명 및 단속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10~20분간 상의가 탈의된 채로 승합차에 인치되어 있었다. 당시 승합차에는 출입국관리공

무원인 여성 직원도 함께 승차하고 있었는데, 여성 직원은 승합차의 세 번째 줄, 진정인은 네 번째 줄에 앉아서 서로 마주보고 있지는 않았다.

우리 소는 통상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하는 경우, 단속된 외국인에게 여권과 귀증품을 가급적 챙겨오도록 하고 있고 진정인도 자신의 소지품을 챙겨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 진정사건 관련 단속시 ○○○○의 직원들이 단속 공무원들을 밀치며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공장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속공무원들은 신속히 사업장 밖으로 이동하여 복귀할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에서는 진정인을 상의가 탈의된 채로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진정인이 단속된 사업장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는 승합차로 약 20~25분 소요되었으며, 당시 차량에 있던 직원들은 경황이 없고 이동거리가 짧아 차량에 있는 의복류 등을 입힐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2) 단속공무원 가운데 누구도 진정인에게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3) 진정인이 지불한 비용은 진정인이 근무하던 사업장인 ○○○○에서 보내온 소지품의 택배비용이다. 경위를 파악해본 바, 택배비는 가방 한 개당 5천원이었고, 진정인의 경우는 가방이 한 개였던 다른 외국인과 달리 소지품 가방이 두 개였기 때문에 10,000원을 지불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참고인 : 채○○(○○○○ 대표)

단속 당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고 도망치지도 않는데 심하게 단속하였다며 공장 책임자가 항의했다는 이야기를 공장 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있다.

단속 다음날 진정인의 방에 있던 진정인의 소지품 모두를 가방에 챙겨 ○○외국인보호소로 보냈으며, 택배비는 가방 수에 따라 지불되었고 가방이 두 개인 경우는 택배수령인이 가방 두 개의 택배비를 지불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술,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8. 20. 06:25경 피진정기관 소속 7명의 단속공무원은 진정인이 일하던 사업장인 ○○○도 ○○시 ○면 소재 ○○○○에서 진정인을 포함한 11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였다.

나. 진정인은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피진정기관 단속공무원에 의해 단속되어 옷을 입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진정기관 단속공무원들은 단속현장 상황의 긴박성, 짧은 이동거리 등을 이유로 진정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탈의한 상체를 가릴 수 있는 어떤 상의도 제공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진정인은 상의가 탈의된 채로 단속된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승합차에 인치되었다가 피진정기관으로 이송되었다. 당시 진정인이 타게 된 승합차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인 여성 직원이 한 명 포함되어 있었고, 승합차에 인치되어 있던 시간은 10~20분 정도, 차로 이동한 시간은 20~25분 정도였다.

다. 진정인과 같은 승합차에 탔던 피진정기관 소속 여성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진정인에게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불평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한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라. 단속 다음 날인 같은 달 21. 진정인이 근무하던 ○○○○ 측은 진정인의 소지품을 정리하여 진정인 앞으로 보냈다. 택배비는 한 개당 5천원으로, 진정인이 택배비로 10,000원을 지불하게 된 것은 진정인의 소지품 가방이 두 개였기 때문

이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유래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원칙은 국가권력의 행사가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할 것과 수단의 적정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은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 소속 단속공무원들은 단속 당시 상의를 입고 있지 않았던 진정인을 그 상태로 10~20분 정도 차량에 인치하였고, 다시 차량으로 20~25분 정도 거리에 있는 피진정기관으로 이송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상의를 입게 해 달라는 진정인의 요구를 짧은 이동거리와 단속 현장 상황의 긴박성 등의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고 탈의된 상태를 가릴 수 있는 어떤 상의도 제공하지 않았다. 당시 진정인은 승합차 안에 있던 사람들 중 혼자만 상의를 입지 않고 있었고 진정인이 탄 승합차에는 피진정기관 소속 여성 공무원이 동승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진정인이 단속차량에 인치되거나 피진정기관으로 이송되는 동안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을 개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공무수행상 불가피성이 인정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수단의 면에서도 적정하지 않아 「헌법」 제10조로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로부터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에 대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인종차별적 발언은 진정인의 주장 외에 달리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다른 외국인에 비해 더 많은 택배비용을 지불한 것은 진정인의 소지품 가방 개수가 다른 이들에 비해 많았기 때문이고, 이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최윤희 위원 김양원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3 피보호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적,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피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8

2011. 5. 23.자 10진정0323200 결정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기간 중 취업활동 불허로 인한 생존권 침해]

【결정사항】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 진정인과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 활동을 허가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진정인에 대하여 지난 6년여의 기간 동안 아무런 고려 없이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진정인과 그 가족이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이 갖춰진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빈곤한 상태에 놓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진정인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침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헌법재판소 2001. 11. 29.선고 99헌마494 결정

【참조조문】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9

【진 정 인】 ○ ○ ○ ○ ○

【피진정인】 법무부장관

【주 문】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진정인과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을 허가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3년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불허되어 법원에 불허처분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진정인의 처와 두 명의 자녀도 난민인정 신청을 하여 법무부로부터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법무부가 진정인과 같이 난민인정 신청이 불허되어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해 취업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진정인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이의 시정을 원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9 제1항에서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라 법무부장관(2010. 11. 15. 이후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난민인정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원칙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자는 그 심사기간 중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난민인정 신청자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 제3항제2호(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 까지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3호(그 밖에 난민인정의 신청을 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활동이 가능하다.

3) 그러나 진정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난민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자로서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서 및 위원회 실지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인으로 1997. 9. 23.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2003. 11. 21. 종교적·정치적인 사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2006. 3. 8. 법무부로부터 난민인정 불허결정을 받고, 같은 해 9. 29.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진정인은 같은 해 10. 31. 법원에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진정인은 2006. 9. 29. 난민인정신청 불허에 따른 이의신청이 법무부로부터 기각된 이후 같은 해 10. 19. 출국명령을 받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인 관계로 출국이 유예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 진정인은 2007. 8. 18. ○○○○ 출신의 ○○ ○○○○와 혼인하여, 자녀로 ○○○ ○○○과 ○○○ ○○○을 두고 있다. 진정인의 처와 두 자녀도 2010. 2. 1. 종교적인 사유를 들어 법무부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라. 진정인은 2003. 11. 21. 난민인정 신청을 한 이후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없어 고정수입이 없는 상태이며, 가족의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일을 하다가 2010. 10. 11.경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단속되어 ○일 동안 보호되어 있다가 ○○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한 적이 있다.

마. 진정인의 처는 현재 난민인정 신청 중일 뿐 아니라 임신 중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어 진정인을 대신하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다. 진정인은 임신 중인 처와 자녀들이 충분한 영양이 갖춰진 식사를 제 때에 할 수 없는 등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어, 2010. 11. 26. 법무부장관에게 현재의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요청하였지만 허락되지 않았다.

5. 판단

가. 협약기구의 권고 및 외국의 사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07. 8. 17. 우리나라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에서 난민 신청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의 복잡성과 절차의 장기화로 인하여 제한된 수의 난민 신청자들만이 난민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였고, 난민과 난민신청자에 대한 국내법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기타 국제적으로 승인된 기준들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난민 신청자와 인도적 지위를 부여 받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지침에 의하면, ‘난민 신청자’란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그 신청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경우 난민인정 신청자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결정을 받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을 법적인 차원에서 보장받고 있다. 그리고 호주에서는 취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사법심사 중일 지라도 취업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뉴질랜드는 이민국의 결정부터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 생계를 스스로 유지할 수 없음을 제시하는 난민 신청자에 대해서는 특별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도 이민국의 결정 뿐 만 아니라 대법원의 최종결정이 나기 전까지 공공지원 없이는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듯 외국의 경우 난민지위가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부정되기 까지 소송절차를 포함한 전 단계에서 형태와 범위는 상이하지만 적어도 합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나. 판단

진정인은 2003년부터 본국의 박해와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우리나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난민인정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해 온 자로서, 2007. 8. 18. 결혼하여 현재 임신 중인 처와 어린 자녀 2명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진정인의 경우에는 2006. 9. 29. 난민인정신청 불허에 따른 이의신청이 법무부로부터 기각된 이후 같은 해 10. 19. 출국명령을 받아 체류자격이 없기 때문에,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8(난민등의 처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강제퇴거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99헌마494, 2001. 11. 29.)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이 무한정 인정될 수 없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 내에서 외국인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진정인이 요구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생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가 현행 법제 하에서 진정인과 그 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나 방안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난민인정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진정인에 대하여 지난 6년여의 기간 동안 아무런 고려 없이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진정인과 그 가족이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이 갖춰진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빈곤한 상태에 놓일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진정인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침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무부는 단순히 출입국 관리의 차원이 아닌 인권보호라는 관점에서, 진정인의 난민인정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진정인과 그 가족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을 허가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5. 2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최윤희 위원 김양원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제 [5] 장

정신 보건 시설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 제4집 2009~2011



1

2011. 2. 14.자 10진정557700 결정 [부당한 체포행위 등]

피진정인들이 시설생활 장애인인 피해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괴롭힘, 형법상 폭행으로 판단하여 고발조치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노동을 시켜온 것에 대해 부당노동 강요, 금전적 착취행위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을 제공한 것에 대해 장애인 학대로, 불투명한 회계 관리 행위에 대해 금전적 착취행위,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시장 및 ○○구청장에게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것, 재발방지를 위한 시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1】 시설생활 장애인들인 피해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상 장애인 괴롭힘, 「형법」 상 폭행에 해당하므로 피진정인들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의 생활인 폭행, 노동 강요, 유통기한 경과 음식물 제공, 불투명한 회계처리 행위를 한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행정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60조, 제356조, 「국민기초생활법」 제3조, 제4조, 「장애인복지법」 제62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 제30조, 제32조

【진 정 인】 변○○

- 【피진정인】 1. 장○○(○○○병원장)
2. 박○○(○○○병원 행정부장)
3. 조○○(○○○병원 행정계장)
4. 김○○(○○○병원 보호사)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2와 3을 진정인에 대한 체포 혐의로

고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 ○○군수에게, 피진정인 1이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에 대해 정신보건법 상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한다.
3. 피진정인 1에게, 향후 환자 이송시 수갑을 사용하는 행위, 정신보건법으로 정한 환자의 입원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진정요지 다항 내지 아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2010. 8. 9. 피진정인 2와 3은 진정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 진정인의 등 뒤로 수갑을 채운 후 강제로 하얀색 아반떼 차량에 태워 피진정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나. 같은 날 피진정병원에 도착한 후 진정인은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이혼한 전처의 동의에 의하여 부당하게 피진정병원에 입원되었다.

다. 피진정병원에는 운동시설과 여가시설이 하나도 없다.

라. 입원 후 1주일 동안 환자들의 전화사용을 제한하며 그 이후에는 1일 1회만 허용하고 있다.

마. 간식주문을 주 1회로 제한하고 있다.

바. 입원환자에게 새 모포가 아니라 다른 환자가 사용하던 모포를 준다.

사.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가 매우 열악하다.

아. 피진정인 4는 환자가 옷에 용변을 보면 박은재 환자를 비롯한 다른 환자들에게 치우게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2010. 8. 9. 진정인이 본원에 입원한 경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해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른다.

피진정인 2와 3에 의하면, 진정인 전처의 요청에 따라 진정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만취로 인해 협조가 되지 않아 수갑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본원은 45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이어서 환자들의 입·퇴원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담당주치의와 원무과에서 결정하고 있다.

본원은 환자들이 원할 경우 재활치료실의 자전거, 런닝머신, 운동복합기 등 운동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병동 내에서는 탁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본원에서는 정신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주 2회 정기적으로 산책프로그램을 실시하나 겨울철이 되면서 바깥 기온이 낮아 현재는 잠시 중단한 상태이다. 진정인은 입원 중이던 2010. 8. 11. 실시된 산책프로그램에 귀찮다고 불참한 기록이 있다.

본원의 모든 병동 내에는 카드식 공중전화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환자들이 이용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간식주문이 주 1회로 제한되어 환자들이 불편함이 있었지만, 2011. 1. 1. 병원 앞에 편의점이 생긴 후로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본원은 2009. 1. 1.자로 ○○사와 세탁물 용역계약을 하여 환자복 및 린넨물을 세탁하고 있으며, 현재 주 2회 환자복을 교환해주고 있다. 입원시 세탁된 모포

를 지급하고 있으며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새 모포로 교환해 주고 있다.

피진정인 4에 의하면, 환자의 용변처리를 환자들과 함께 한 경우는 있었으나 환자들에게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한다.

본 진정사건이 제기된 이후 정신병동 근무자들에게 2011년 실시되는 정신보건 시설 인권교육에 참석할 것을 공지하였다.

2) 피진정인 2

진정인 전처의 전화를 받고 피진정인 3 소유의 흰색 아반떼 차량을 타고 피진정인 3과 함께 2010. 8. 9. 19:30경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진정인의 전처는 집밖에서 진정인의 집을 알려 주었다. 진정인의 집에 들어가 보니 현관문이 잠긴 상태였고 창문이 열려 있어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갔다. 진정인은 방에서 누워 자고 있었으며, 진정인을 깨워 병원에서 왔다고 설명하니 진정인이 소주병을 들고 위협을 하였다. 이에 미리 준비해갔던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의 손을 등 뒤로 묶고 차량에 태워 병원까지 후송하였다. 수갑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이다.

○○○병원에는 같은 날 20:00경에 도착하였고 박○○ 야간 당직의가 진정인을 면담하고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당직의의 진단에 따라 진정인을 정신과인 3병동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입원 다음날 진정인이 부인과 이혼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법적인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진정인의 전처에게 알렸다. 진정인에게는 자의입원으로 처리할 테니 며칠 쉬었다 간다고 생각하라 이야기하니 진정인도 동의하였다. 그러나 자의 입원신청서를 제출받지는 않았다.

다. 참고인

1) 이○○ (○○○병원 현 원무과장)

피진정인 2와 3은 2010. 4. 8. 본원에 입사하여 기획홍보팀에서 행정부장과 행정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진정인 2와 3의 담당 업무는 환자 유치, 병원

홍보, 환자 이송 업무이며,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약간의 인센티브가 주어지기도 한다.

2) 신○○ (○○○병원 전 원무과장)

진정인은 2010. 8. 9. 입원할 당시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이 어려웠고,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진정인은 알코올 문제로 인한 내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과 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또한 진정인의 입원 시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나 자의입원신청서를 제출받기 어렵다는 경위에 대해 원장이나 담당주치의에게 보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않는다.

3) 박○○ (○○○병원 재활의학과전문의)

2010. 8. 9. 진정인이 입원할 당시 야간 당직의로서, 저녁 무렵 본원에 도착한 진정인을 면담하고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입원을 지시하였다. 내과병동은 위급한 환자 위주로 받고 있고 병실문제도 있어, 진정인은 정신과병동에 입원된 것으로 기억한다. 본인의 진료과목은 재활의학과전문의로 비록 정신과전문의는 아니지만 72시간의 응급입원 조치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다음날 정신과전문의가 출근하면 진정인의 상태를 보고 입원 또는 퇴원여부를 다시 판단할 것이라 생각했다. 정신과의 입원절차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

4) 김○○ (○○○병원 정신과전문의)

진정인이 입원한 다음날인 2010. 8. 10. 진정인을 면담한 후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면담결과는 ‘개인정신치료(지지요법)기록지’에 기록하였다. 본인은 정신과전문의로서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고 환자의 입원에 필요한 서류 구비 등 행정적인 부분은 원무과에서 처리한다. 본인은 진정인이 부인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진정인과 부인이 이혼한 사실, 진정인이 자의입원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보호의무자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실 등에 대해

서는 알지 못하였다.

5) 박○○ (입원 환자)

2010. 5.경 피진정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해 8.경 퇴원하였다가, 2010. 12.경 재입원하였다. 피진정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다른 환자의 대소변을 치운 사실은 없으며, 전화사용도 자유롭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진술, 피진정인 진술, 참고인 진술, 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병원에서 환자 유치, 병원 홍보, 환자 이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진정인 2와 3은 진정인의 배우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2010. 8. 9. 19:30 경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진정인 2와 3은 진정인의 집 현관문이 잠겨 있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갔고, 주취 상태로 잠자고 있던 진정인을 깨워 병원에서 왔다고 말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소주병을 들고 저항하자 피진정인 2와 3은 미리 준비해간 수갑으로 진정인의 양 팔을 등 뒤로 묶은 후 아반떼 차량에 태워 피진정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나. 2010. 8. 9. 20:00경 피진정병원에 도착한 진정인은 당시 당직의였던 재활의학과전문의 박○○과의 면담을 통해 알코올중독(alcoholics)으로 진단되었고, 동 박○○의 입원지시서에 의하여 정신과 병동에 입원되었다.

다음 날인 2010. 8. 10.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과전문의 김○○이 진정인을

면담하였다. 피진정인 2는 입원을 의뢰한 진정인의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입원동의서와 보호의무자 확인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진정인과 그 배우자가 이혼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진정인은 자의 입원신청서나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서도 없이 2010. 8. 9.부터 같은 해 8. 27. 까지 피진정병원에 입원 조치되었다.

다. 피진정병원은 재활치료실에 자전거, 런닝머신, 운동복합기 등 운동기구를 비치하여 환자가 원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오락요법의 일환으로 외부 산책프로그램을 주 2회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외부 기온이 낮아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라. 피진정병원의 전화사용 제한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기 접수된 진정사건(10진정216400)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정인이 입원한 기간 동안 피진정병원의 병동 내에는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었다. 또한 병동규칙에 따라 입원 후 첫 2주간은 전화사용이 금지되었고 그 이후에도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토요일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만 사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0. 12. 29. 피진정인 1이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전화사용을 제한하는 병동규칙을 폐지하고 카드식 공중전화를 설치한 이후에는 전화사용에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마. 피진정병원은 간식 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상점이 없다는 이유로 환자들의 간식주문을 주 1회로 제한해 왔지만, 2011. 1. 1. 병원 입구에 편의점이 생긴 이후에는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수시로 간식 주문을 받고 있다.

바. 피진정병원은 2009. 1. 1. 이후 ○○사와 세탁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환의, 시트, 이불 등을 2~3일 간격으로 세탁하고 있다.

사. 피진정병원의 주간 식단표에 의하면,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에게 1일 3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매식마다 밥, 국과 탕류 1종, 반찬 4종을 제공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피진정인 2와 3이 진정인을 수감으로 제압하면서까지 병원으로 강제 이송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피진정인들이 진정인의 집에 방문하였을 당시 진정인은 주취상태로 잠을 자던 중이어서 진정인에게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진정인이 소주병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것은 피진정인들이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와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기 때문이었던바 이를 이유로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을 강제로 병원으로 이송한 피진정인들의 행위에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2와 3이 2010. 8. 9.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수갑을 사용하여 진정인의 손을 등 뒤로 묶어 병원으로 강제 이송한 행위는 「형법」 제276조의 사람을 체포한 행위에 해당하고, 「헌법」 제12조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은 제2조(기본이념) 제5항을 통해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자발적 입원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 등의 동의에 의한 입원에 대해서는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자의 동의로 환자가 강제로 입원되는 일이 없도록, 같은 법 제21조

(보호의무자)에서 보호의무자의 자격에 대해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서는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0조(입원금지등) 제1항은 “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벌칙) 제5호에서는 “제4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0. 8. 9. 진정인이 피진정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진정인은 당시 경찰관과 동행하지 않았으므로 「정신보건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급입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인을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했지만, 진정인은 피진정병원 소속 재활의학 과전문의의 진단 및 지시에 의해 피진정병원에 입원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바, 이는 「정신보건법」 제40조를 위반함과 동시에 「헌법」 제12조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진정인을 입원시킨 다음 날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과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 등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피진정인들은 진정인의 입원을 의뢰한 배우자가 진정인과 이미 이혼하여 적법한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된 후에도 진정인에게 자의입원신청서를 받거나 또는 퇴원조치하지 않고 19일 동안 부당하게 입원시킨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 또한 「헌법」 제12조로 보장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재활치료실에 운동기구를 비치하여 환자가 원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산책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왔던 바, 운동 및 여가시설이 없다는 진정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입원해 있던 기간 동안 피진정병원이 병동규칙을 통해 입원환자들의 전화통화를 제한해 온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병동규칙을 폐지하고 병동 내에 카드식 공중전화기를 설치하여 전화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마.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진정인이 입원해 있던 기간 동안 환자들의 간식 주문이 주 1회로 제한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2011. 1. 1. 이후부터는 환자들이 필요한 물품을 수시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바. 진정요지 바항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이 외부업체와 세탁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2~3일 간격으로 환의, 시트, 이불 등을 세탁하고 있는 점에 근거할 때 피진정인 1이 환자들의 세탁물에 대한 최소한의 위생관리는 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사. 진정요지 사항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환자들에게 1일 3식과 매식 4찬을 제공하고 있어 환자들의 건강

이 우려될 정도의 열악한 식사환경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아. 진정요지 아항에 대하여

참고인 박○○의 진술에 의하면 병동 내에서 다른 환자의 대소변을 치우는 일이 없다고 하는바, 진정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각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김태훈 위원 한태식

【별지】 관련 법령

1.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신보건법

제12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등)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정신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개설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시킨 때

제12조의3(과징금처분)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3조(자의입원) ① 정신질환자는 입원 또는 입소신청서를 제출하고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자의로 입원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응급입원) ①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

③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제40조(입원금지등) ①누구든지 응급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과전문 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시킬 수 없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를 진단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키거나 입원등을 연장한 자

2

2011. 3. 22.자 10진정 0597900 결정 [보호자 아닌 자에 의한 입원 등]

정신의료기관이 동일한 환자를 수년간 여러 차례 보호자동의에 따른 입원을 시키면서 적법한 자격을 갖춘 보호자인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이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인 입원조치를 반복해왔고, 더욱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속되어온 것, 그리고 일부 입원환자들에 대해 치료 목적을 벗어난 노동이나 작업을 부담시켜온 것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과 함께 개선조치를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006년 이후 6차례 입원시키면서도 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형과 형수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적이 없었고 해당 보호자들은 관련 규정에 의거할 때 보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피진정인의 진정인에 대한 입원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지시나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피진정인이 수행하여야 할 청소와 배식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입원 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1조, 제24조, 제41조, 제46조의2,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3조의2

【진 정 인】 하○○

【피진정인】 ○○○정신병원장

- 【주 문】 1.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 및 의료법인 ○○재단 이사장을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
2. ○○○도지사에게, 피진정 병원에 대해 위탁병원 계약해지 등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권고한다.
3. ○○○도 ○○시장에게, 보호의무자 자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

지 아니한 자의 동의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행위,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에도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4. 피진정인에게,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할 것과,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 없이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5. 진정요지 다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진정인은 2010. 7. 21. 보호의무자 자격이 없는 형과 형수의 동의로 피진정 병원에 부당하게 입원되었다.

나. 피진정 병원에서는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환자들에게 시키고 있다. 병동 내 입원환자들은 병실별로 6개조로 나뉘어 5일씩 병동 내 화장실, 세면장, 복도를 청소한다. 배식은 환자 3명과 보호사 1명이 담당한다.

다. 피진정 병원에서는 입원환자들 가운데 실장 및 방장을 선정하여 아침, 저녁으로 매일 2회 인원점검을 위한 점호를 실시한다. 점호가 끝나면 자유시간이 주어지나 점호시간에 점호를 받지 아니하고 모포를 덮고 자려고 하면 힘센 동료환자들이 건방지다며 발로 걷어차기도 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06년부터 본원에 6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으며, 그때마다 형 하○○과 형수 김○○이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였다. 진정인의 형과 형수는 진정인이 입원해 있는 동안 간식비를 입금하였고 퇴원 시에는 진정인의 신병인수증을 작성하고 진정인을 데려가는 등 실질적으로 보호의무자 역할을 하였으므로, 본원에서는 진정인의 형 하○○과 형수 김○○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진정인의 최근 입원일은 2010. 7. 21.이었다. 당시 진정인의 형 하○○과 형수 김○○의 입원동의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보호의무자 동의여부를 확실하기 위해 같은 해 9. 1. 본원 직원이 진정인의 어머니와 형을 직접 찾아가 진정인의 모 이○○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진정인은 같은 해 9. 29. 퇴원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후, 병동 내 화장실 청소는 직원에게 하도록 조치하였고, 점호 시 인원보고는 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다. 참고인 (입원환자 우○○, 서○○, 남○○, 문○○, 김○○, 유○○)

피진정 병원에서는 모든 환자들이 매일 아침 자기 병실을 청소한다. 그리고 이 외에 6개조로 순번을 정하여 5일씩 온수통 청소, 세면장 청소(1일 2회), 활동실 및 복도 청소(1일 3회)를 한다. 청소를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지만 다른 환자들이 모두 참여하는데 혼자만 하기 싫다고 하기가 곤란하다.

배식은 남자병동과 여자병동 모두 각 환자 3명과 병원 직원 1명이 하고 있다. 배식을 하면 1주일에 일회용 커피를 날개로 2개 받는다.

점호는 매일 아침과 저녁, 매회 당 3~5분 정도로 실시한다. 과거에는 병실별로 지정된 방장이 인원을 보고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호사가 “점호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환자들은 편하게 앉아 있으면 된다. 그러나 점호시간에는 TV를 꺼야

하며 돌아다닐 수는 없고 모포를 깔고 누워있으면 안 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 참고인 진술과 진료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1) 진정인은 2006. 9. 1.부터 피진정 병원에 7차례 입원한 사실이 있으며, 이 사건 진정의 원인이 된 2010. 7. 21. 입원 시에는 진정인의 형 하○○과 형수 김○○의 입원동의, 정신과전문의 구○○ “지속적인 음주, 공격적 행동으로 입원치료 필요합니다.”라는 입원권고에 따라 입원되었다. 진정인은 2010. 9. 29. 피진정 병원을 퇴원하였다.

2) 진정인의 입원동의서에 기록된 진정인의 형과 형수의 주소지는 ○○ ○○시 ○○면 ○○리이고, 진정인의 주소지는 ○○ ○○시 ○○동이다. 피진정인은 입원 당시 제적등본을 제출 받아 진정인의 형과 형수가 진정인의 친족이라는 사실은 확인하였지만, 이들이 진정인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입원한 후인 2010. 9. 1. 진정인의 모 이○○을 직접 방문하여 입원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았다.

3) 진정인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고향에서 혼자 살았고, 2010. 7. 21. 입원 이후 진정인의 형이 간식비를 입금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진정인의 아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기초생활수급비 통장과 도장을 택배로 받았으며, 병동에서 간병 일을 하면서 간식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1) 진정인이 입원하였던 병동은 중앙에 간호사실이 있고 좌우에 각각 7개의 남녀 병실이 있다. 남자 병동은 입원환자들을 6개조로 나눈 후 각 5일씩 순번을 정하여, 세면장(매일 아침, 저녁), 활동실 및 복도(매일 아침, 점심, 저녁) 청소를 하고 있다. 여자 병동은 6개조로 나누어 매일 청소순번을 정하고 있는 것만 다르며, 순번이 되는 병실의 청소구역과 횟수는 남자병동과 같다. 배식은 남녀 병동 모두 각기 환자 3명과 보호사 1명이 담당하고 있다.

2) 병동 내 청소 및 배식과 관련된 정신과전문의의 작업지시서, 환자들의 재할 동의서, 작업평가서 등은 없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 병원에서는 매일 06:00경과 19:00경 매회 당 5분 내외에서 입원환자들의 인원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인원점검 시에는 환자들의 이동, 텔레비전 시청, 자율 활동 등이 제한된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 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에서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으로 제한되며, 직계혈족 및 배우자 외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인 경우에만 보호의무자로 인정되고,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또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란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로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도 보호의무자 여부가 확인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 등 그 밖의 친족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받아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약 입원에 동의한 친족과 환자의 주소지가 다르다면, 「2010년 정신보건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입원에 동의하려는 형제자매 등의 친족으로부터 환자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거나, 가계지원, 학비, 용돈 등 경제적 지원에 의하여 환자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동 사업안내에 의하면 본인 또는 외부인의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 내용은 입원 시에 이미 확인 가능하여야 하고, 입원 후에 생계지원을 약정하는 각서 등은 무효이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2006년 이후 6차례 피진정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진정인의 형과 형수가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 하○○이 과거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하거나 간식비를 입금시켰고 퇴원 시에도 진정인의 신병을 인수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진정인의 형 하○○과 형수 김○○이 진정인의 보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 의거할 때 간식비 입금이나 퇴원 시 신병 인수 등으로 진정인과 진정인의 형 및 형수가 생계를 같이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2010. 7. 21. 진정인이 입원한 이후 진정인의 형 하○○이 진정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진정인의 간식비 입금을 기피하였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진정인이 형과 형수로부터 안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진정인의 입원에 동의한 자가 보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피진정

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기입원의 구조적 원인과 지속요인”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임상 증상이 심해서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을 것이라는 기본상식에 기초한 예상과는 달리 보호자의무자가 배우자인 경우 입원기간(중앙값)이 88일이었고, 자녀인 경우는 104일, 부모 또는 조부모인 경우는 138.5일, 형제 또는 자매인 경우는 247.5일로, 보호자의무자가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인 경우에 비하여 형제, 자매인 경우가 퇴원에 매우 부정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보호자의무자가 환자의 퇴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입원기간(중앙값)이 92일이었으나,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경우에는 202일로 조사되는 등, 임상증상에 따른 의학적 요인 외에 보호자의무자가 누구인지, 보호자의무자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환자의 장기입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이 환자의 입원결정과 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보호자의무자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진정 병원과 같이 보호자의무자 해당 여부를 객관적 증빙 서류로 확인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은 행위라 할 것이다. 더구나 위원회는 그 동안 피진정인에게 환자 입원 시 보호자의무자 확인을 철저히 할 것 등 동일한 권고를 수차례 한 사실이 있음에도(〈별지 2〉 참조), 피진정 병원의 보호자의무자 확인 절차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를 피진정 병원의 단순한 업무미숙이나 행정서류의 미비로만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진정사건을 포함하여 〈별지 2〉에 기재된 정신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인 및 피진정 병원의 운영책임자인 의료법인 ○○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 병원은 ○○○도가 의료법인 ○○재단에게 운영을 위탁한 도립정신병원으로서, ○○○도는 피진정 병원이 운영에 있어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도지사는 지난 2009. 12. 18. 국가인권

위원회가 피진정 병원의 위탁병원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를 권고한 것(사건번호 09직인3 관련)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 지사에게 피진정병원에 대한 계약해지 등 행정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것을 재차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은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병동 내에서 입원환자들이 수행하는 다양한 신체적 활동 중에서 어떠한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이고 어떠한 것이 노동 또는 근로인지는 신체적 활동의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청소와 배식 등의 동일한 신체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그 신체적 활동에 치료·훈련·지도 등이 부가되어 일련의 치료계획과 프로그램하에 시행된다면 이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고 신체적 활동만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단순 노동이나 근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정사실에서 살펴보면, 피진정인은 병동 내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 것 외에 세면장, 복도, 활동실 등의 공동구역에 대한 청소를 수행하지 않고 있으며, 배식관리도 1명의 직원만이 참여하고 있고, 병동내의 청소 및 배식과 관련한 작업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하다.

병동 내 청소와 배식관리는 피진정인이 기본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기본 업무임에도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입원환자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병실마다 순번을 정하여 위생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있으며, 부족한 일손에 대처하기 위하여 배식담당을 환자들이 자원하여 식사배분을 해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정신과전문의의 지시,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아님에도 피진정인이 수행하여야 할 청소와 배식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비록 개별 환자에게 대한 피진정인의 명시적인 강요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인원점검 시간동안 환자들의 사생활에 제약이 발생하긴 하나 인원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5분 내외로 짧고, 인원점검의 방법이 과거 권위적인 보고의 방식에서 현재는 병원 직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개선되었으므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호, 제3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2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김태훈 위원 한태식

【별지 2】 피진정 병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현황
(보호의무자 확인 미비 관련)

진정인/ 사건번호	정신보건법 위반 내용	위원회 결정일자 및 내용
10진정 26000	2009. 10. 25. 최초 입원 시 부 정○○이 진정인의 직계가족에 해당되는지, 형 정은호가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다가 진정이 접수된 이후 2010. 3. 2.에야 제출받음.	2010. 4. 9. 확인서류를 만드시 받도록 시정 권고
10진정 324200	2009. 6. 15.과 2009. 12. 10.의 계속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오빠 박○○와 박○○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함.	2010. 8. 9. 진정인 퇴원권고
10진정 525800	2010. 3. 3.의 최초입원, 2010. 7. 14.의 계속입원에 동의한 진정인의 형 이○○과 동생 이○○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함.	2011. 2. 14. 확인서류를 만드시 받도록 시정 권고
10진정 597900	2010. 7. 21. 입원에 동의한 형 하○○과 형수 김○○이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보호의무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함.	2011. 3. 22. 권고

3

2011. 11. 28.자 11진정0337800 결정 [입원환자들에
대한 청소, 배식 등 강요]

병실의 개인생활 공간을 제외한 화장실, 세면장, 복도, 거실, 안정실 등의 공동시설물의 청소는 피진정인이 수행하여야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청소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환자들이 순번을 정하여 청소를 하거나 일부환자들이 청소를 전담하게 되는 것은 피진정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환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며, 환자들이 의료 또는 재활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당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위원회의 2008년 방문조사 결과와 2010년의 진정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환자들에 의한 청소와 배식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일부만 개선 됐을 뿐, 여전히 환자들에 의한 청소와 배식을 하는 관행이 존재하는바, 이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정신보건법」 제2조, 제41조, 제46조의2,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진 정 인】 강○○

【피 해 자】 김○○ 외 입원환자 다수

【피진정인】 ○○○○○병원장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와 작업치료 지침에 따른 치료계획 없이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시키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상남도 하동군수에게, 작업치료의 일환이 아님에도 입원환자

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을 부담시키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피진정인은 입원환자들에게 병동 내 청소와 배식, 세탁을 시키고 있다.
나. ○○○○○병원의 김 보호사는 김○○ 환자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 “개같은 년들”이라는 욕을 자주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직원들에게 병동 내 청소를 입원환자들에게 맡기지 말고 담당직원이 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여자병동이 2층에서 3층으로 이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시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환자들이 청소를 전담하지 않고 병원 직원들이 청소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배식은 직원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일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배식을 도와주고 있다.

환자복, 이불과 같은 병원 공용물품의 세탁은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해주고 있다.

다. 참고인

1) 김○○, 신○○, 최○○, 박○○, 이○○ 환자(3층 여자병동)

병동 청소는 병실별로 매일 순번을 정하여 차례가 오는 병실의 환자들이 한다. 간호사나 보호사들은 사무실만 청소하고 병동의 화장실, 목욕탕, 복도, 거실, 안정실의 청소는 하지 않는다. 직원들이 청소를 하라고 시키는 것은 아니나 순번이 되는 날 청소를 하지 않으면 환자들 사이에서 눈치가 보이고 병원에서 청소를 해주지 않으니 환자들이 청소를 해야 한다.

배식은 주로 류○○ 환자가 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바뀌는데 누가 시키는 것은 아니고 환자들이 알아서 자원해서 배식을 한다.

환자복이나 모포는 병원에서 세탁해 주고 있지만, 얇은 여름이불은 병원에서 세탁을 자주 해주지 않아 환자들이 세탁물을 모아 세탁기로 세탁을 한다.

병동에 근무하는 보호사가 환자들에게 욕을 하는 것은 들어보지 못하였다.

2) 정○○, 박○○ 환자(3층 남자병동), 양○○, 김○○, 김○○, 박○○, 정○○ 환자(4층 남자병동)

3층의 경우 화장실, 복도 거실, 목욕탕은 주로 보호사들이 청소하고, 환자들은 자기 병실만 청소한다. 병실별로 순번을 정해서 청소를 하는 것은 아니다. 4층은 아침 기상시의 화장실과 세면장은 김○○와 김○○ 환자가 청소하고 있고, 그 외 주간의 복도, 거실, 안정실 등은 보호사들이 청소하고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있다.

배식은 직원들이 주로 하고 환자들은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도와주고 있다.

환의복과 이불은 병원에서 세탁을 해주고 있으며, 환자들의 개인 옷만 세탁기로 세탁을 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참고인 진술 및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조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은 2008. 12. 2. 위원회의 방문조사 및 2010. 9. 10.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병동 내 청소와 배식관행의 개선을 권고 받은 바 있다.

나. 위원회의 개선권고 이후 피진정 병원에서는 환자들에 의한 청소관행이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각 병동마다 청소관행이 상이하다. 3층 남자병동은 보호사들이 화장실, 세면장, 복도, 거실, 안정실과 같은 공동시설물에 대하여 매일 최소한의 청소를 시행하고 있고 일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보호사들을 도와서 청소를 함께 하고 있으나 병실별로 정해진 청소순번이나 청소를 전담하는 환자는 없다. 4층 남자병동은 보호사들이 복도와 거실을 매일 청소를 하고 있으며 일부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청소를 돕고 있으나, 화장실과 세면장은 보호사들이 매일 청소를 하지 않고 3~4일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함에 따라 매일 오전 5시 45분경의 화장실과 세면장 청소를 입원환자 두 명이 전담하고 있다. 3층 여자병동의 경우 보호사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 중 화장실, 세면장, 복도, 거실, 안정실과 같은 공동시설물을 청소하는 직원이 없고 환자들이 병실별로 청소 순번을 정하여 청소를 전담하고 있다. 청소 순번은 1주 1회 정도이며 청소순번이 되는 날에는 해당 병실의 환자중 일부가 화장실, 세면장, 복도, 거실, 안정실을 청소를 하며 병원 직원은 청소 후 발생하는 쓰레기를 비워주는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 배식의 경우 3층과 4층 모두 간호사 또는 보호사가 배식을 주로 하되 일부 환자들이 자율적으로 배식에 참여하고 있다.

라. 세탁의 경우 환자복과 이불은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세탁을 해주고 있으나

3층 여자병동에서만 병동내의 세탁기로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얇은 이불을 자체적으로 세탁하고 있다.

마. 피해자 김○○은 2011. 6. 29. 피진정 병원을 퇴원하여 구체적인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확보가 어렵고, 피해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하였던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보호사들이 환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목격된 적은 없다.

5. 판단

가. 병동 내 환자들에 의한 청소, 배식, 세탁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 제3항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지시에 의한 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위원회의 2008년 방문조사 결과와 2010년의 진정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환자들에 의한 청소와 배식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이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3층의 여자병동에서는 순번제에 의한 환자들의 청소관행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4층 남자병동은 순번제에 의한 병동청소 관행이 일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매일 오전의 화장실과 세면장 청소를 환자들이 전담하고 있는 관행은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아니하다. 병실의 개인생활 공간을 제외한 화장실, 세면장, 복도, 거실, 안정실 등의 공동시설물의 청소는 피진정인이 수행하여야 기본적인 업무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청소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환자들이 순번을 정하여 청소를 하거나 일부환자들이 청소를 전담하게 되는 것은 피진정인의 부작위에 의하여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환자들의 권리가 침해된 것이며, 환자들이 의료 또는 재활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당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배식의 경우 피진정인이 취사장에서 환자별로 미리 준비된 개별식을 제공하거나 별도의 식당에서 자율배식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지금과 같이 병동 내에서 통합배식을 하더라도 최소한 배식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배식하는 직원은 위생복과 위생장갑의 착용 등의 위생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인정사실에서 보면 비록 배식을 환자들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와 보호사가 주로 하고 일부 부족한 인력은 환자들의 자발적 지원에 의하여 배식을 하고 있으나, 배식에 있어 피해자는 배식에 동원되는 소수의 환자뿐만 아니라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배식을 받는 다수의 환자들도 해당되므로 배식은 위생교육을 받은 전담 직원들에 의하여 실시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세탁의 경우 3층과 4층의 남자병동에서는 개인 의류를 제외한 병원에서 지급하는 환의복과 침구류는 피진정인이 세탁을 해주고 있으나 3층 여자병동에서만 병동 내 세탁기로 세탁이 가능한 여름용 얇은 이불을 환자들이 세탁하고 있다. 이는 피진정인이 3층의 여자병동만 침구류를 세탁해주지 아니한 부작위의 결과라기보다는 병동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청소와 세탁은 자신들이 해야 한다는 일부 환자들의 적극적 행동과 관행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41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나 재활목적이 아닌 사실상의 노동을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아니하며,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의 입원환자들의 최적의 치료와 보호를 받은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보호사의 욕설에 대하여

인정사실에 의하면 진정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김영혜 위원 한태식

4

2011. 11. 28.자 11진정0521700 결정 [병동 내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CCTV 설치로 인한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최소화되어야 하는바, 병동 내 화장실 및 샤워실에 필요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설치된 CCTV의 촬영범위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시설물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거나 근무인력이 충분치 못하여 불가피하게 CCTV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CCTV 설치로 인한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최소화되어야 하는바, 병동 내 화장실 및 샤워실에 필요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설치된 CCTV의 촬영범위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2011년 정신보건사업안내」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병원장

-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병동 내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 경상남도 창원시장에게, CCTV를 통해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내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병원은 병동 내 화장실과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하여 입원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본원 일부 병동의 화장실과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한 것은 입원환자들의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만약 그것이 환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시정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진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상남도 창원시에 소재한 ○○○○병원(이하 ‘피진정 병원’이라 한다)에는 1병동 1층과 2층, 2병동 3, 5, 6층에 남자병동이 있고, 2병동 2층, 본관 3, 5층에 여자병동이 있다.

나. 남자병동인 1병동 1층과 2층에는 층별로 화장실과 샤워실 각 2곳 및 보호

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화장실의 경우 천정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좌변기를 촬영하고 있어 간호사실의 CCTV 모니터 화면에 환자들이 용변 보는 장면이 노출되고 있다. 샤워실의 경우 안쪽에 간이 접이식 문이 설치되어 있어 환자들이 샤워 중 접이식 문을 닫으면 알몸이 노출되지는 않으나, 탈의하는 곳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간호사실의 CCTV 모니터에 샤워실을 드나드는 환자들의 알몸이 노출되고 있다. 보호실 내에는 침대 옆에 좌변기가 있고, 천정에 설치된 CCTV 카메라가 보호실의 침대와 좌변기를 함께 촬영하고 있어 간호사실의 CCTV 모니터에 좌변기에서 용변 보는 환자의 모습이 노출된다.

다. 남자병동과 여자병동이 함께 있는 2병동의 경우, 2, 3, 5, 6층이 모두 동일한 구조로서 중앙에 세면대가 있고 세면대를 중심으로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CCTV 카메라는 샤워시설 바로 위쪽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샤워 중 또는 후에 중앙의 세면대나 맞은편의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남성 및 여성 환자들의 상반신이 노출된다. 화장실의 경우는 화장실 문을 닫으면 안쪽에서 용변 보는 모습은 촬영되지 않는다.

라. 여자병동인 본관 3층과 5층은 세면장과 화장실의 바깥 복도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간호사실의 CCTV 모니터에는 세면장과 화장실 입구만 보이며, 샤워실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5. 판단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1년 정신보건사업안내」에서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 내 격리실, 중증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CCTV설치 사실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진정 병원을 비롯한 다수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자살사고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격리실과 중증환자 병실 외에 화장실과 샤워실 등에까지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만약 안전사고 예방이 CCTV 설치의 목적이라면, 화장실의 경우는 CCTV를 설치하는 대신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을 20cm 정도 높게 하거나 화장실 밖 또는 간호사실에 화장실이 ‘사용 중’이라는 표시등을 달도록 함으로써 병동의 치료진이 좀 더 주의 깊게 환자들을 관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있고, 샤워실의 경우는 자살을 위한 끈을 걸 수 없도록 벽면의 돌출부위를 없애고 천정에 샤워기를 설치하거나 샤워기 줄을 짧게 하여 최대한 낮추어 설치하는 방법 등 다양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CCTV의 설치만이 환자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진정인은 1병동 1층과 2층의 화장실 및 보호실의 좌변기를 사용하는 환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과, 1, 2병동 샤워실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전신 또는 상반신이 CCTV에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피진정 병원에 설치된 CCTV는 그 외형이 검정색의 반구형이어서 입원환자들이 CCTV의 촬영범위를 알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CCTV가 설치된 화장실과 샤워실에서 용무를 보는 환자들은 누군가 자신을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진정인은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곳에 그 촬영범위를 고지할 필요가 있다.

피진정인이 시설물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과다하거나 근무인력이 충분치 못하여 불가피하게 CCTV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감안하더라도 CCTV 설치로 인한 환자들의 사생활 침해의 범위는 최소화되어야 하는바, 병동 내 화장실 및 샤워실에 필요 이상의 CCTV를 설치하고 설치된 CCTV의 촬영범위를 환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아니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1. 28.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김영혜 위원 한태식

5

2009. 7. 3.자 09진인1653 결정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
권침해]

진정인을 피진정기관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이 적법한 보호의 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며,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고, 추후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진정인에게는 직계혈족인 처와 모가 있는 바, 진정인이 그의 처와 별거 중 이더라도 그 보호의무자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고, 모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입원 후 7일 이내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피진정인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진정인을 입원시킨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이며, 나아가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정신보건법」 제24조

【진 정 인】 신○○

【피진정인】 ○○○○○○병원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진정인의 입원과정에서 누락된 「정신보건법」 제 2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을 것과, 추후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평소 친구들과 도박을 하여 가족간의 불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정신병이 없는 데도 2009. 4. 7. ○○○○○○병원 (이하 ‘피진정기관’이라한다)에 강제입원 됐는바, 이는 부당하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인은 2009. 4. 8. 입원한 자로 상습적인 도박과 알콜 문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폭한 행동을 보이고 타 해의 위험이 있어서 ○○읍내지구대 경찰 입회하에 부친 신○○와 동생 신○○을 보호의무자로 되어 입원된 것이다.

2)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진정인 부친에 의하면 진정인은 부인과 별거중이고, 진정인의 모는 몸이 많이 아파 내원을 하지 못해 진정인의 동생이 대리했다. 보호의무자의 범위가 직계혈족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으로 동생도 주소 번지는 다르지만 환자와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거주하고 정황상 동생분이 어머니보다 치료 상담이나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은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피진정기관 제출 진정인 입원동의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2009. 4. 8. 피진정기관에 입원되었으며, 보호의무자는 진정인의 부 신○○와 동생 신○○로 되어있고, 입원동의서상 정신과 전문의 소견은 ‘도박충동조절 불능, 상습적인 도박, 빈번한 음주, 난폭한 행동, 불규칙한 생활, 현실 검증력 및 병식 결여’로 기재돼 있다

나. 2009. 6. 15. 담당조사관이 진정인의 처와 통화한 통화기록에 의하면 진정인의 처는 진정인이 입원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면회도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진정인의 입원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다. 한편, 피진정기관 제출 2009. 6. 12. 진정인에 대한 ○○군수의 퇴원심사 결과통보,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 통지서에 의하면 진정인은 “단기간 재입원이 반복되고 불안정한 상태로 사료되는바, 향후 경과를 관찰하고 이를 반영하여 재평가 할 필요가 사료되어 계속입원심사 필요” 라고 기재돼 있다.

5. 판단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직계혈족인 처와 모가 있음에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인 신○○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시킨 행위에 대해 ‘처와 별거 중’이라는 사유와 ‘모친의 노령으로 인한 질병’, 그리고 ‘동생이 주소는 다르지만 환자와 아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모친보다 치료 상담이나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보호의무자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진정인의 처의 보호의무자 자격이 별거중이라는 사유로 상실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진정인의 모가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노령으로 인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피진정기관은 진정인의 입원 후 7일 이내에 그 사유서를 받아 입원시켰어야 하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다.

또한, 진정인의 동생 신○○이 보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함에도 ‘근거리에 거주’하고 ‘진정인의 치료상담’ 등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보호의무자로 삼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민법 제974조의 친족 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진정인의 입원과정에서 피진정인이 적법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하며,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에게 진정인의 입원과정에서 발생한 권리침해를 시정하고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7. 3.

위원장 최경숙 위원 유남영 위원 황덕남

6

2010. 2. 5.자 09진인3882·4151·5019 병합 결정 [입원
통지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인권침해]

피진정기관에 입원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입원통지서 교부의무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사례

【결정요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그 사유와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 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동법 위반과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 「정신보건법」 제24조

【진 정 인】 ○ ○ ○

【피진정인】 ○ ○ ○ ○ 병원장

- 【주 문】 1. 진정요지 다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에 규정된 입원통지서 교부 의무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진정요지 나항 및 라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가. 진정인은 식이장애로 ○ ○ ○ ○ 병원 안정병동에서 3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사유와 퇴원심사청구 안내 등이 기재된 입원통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나. 진정인은 최근 2~3년간 죽과 우유, 두유 등으로만 식사를 해 와서 음식물을 씹기가 힘들어 죽을 요구하였는데, 병원 측은 살이 썩어야 한다면서 다른 환자들과 같은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다. 진정인은 치료방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식이장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이나 ○○○○병원 내 해당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진정인이 퇴원심사청구서를 교부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처럼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는 입원통지서를 환자 및 보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있다.

2)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몇 달 동안 영양섭취가 좋지 않았음을 고려하여 유동식인 죽부터 섭취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진정인이 퇴원을 빨리 할 목적으로 체중 증가에만 집착하여 밥을 달라고 요구하였기에 밥을 제공하였다.

3)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식이장애 전문 클리닉으로의 전원을 거부한 것은, 환자와의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체중이 조만간 증가할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식이장애는 신경증의 일종이기에 정신과의 진료 분야이기도 하다.

4)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 설명문에 위의 내용을 삽입하여 이를 고지하고 있다. 진정인이 퇴원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는 모르나, 퇴원심사청구서 교부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09. 3. 24. 부모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의 진단에 의해 피진정인의 병원 안정병동에 입원되었고, 진정인은 입원 당시 입원통지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나. 2009. 3. 24. 진정인은 저녁 식사로 미음을 먹은 사실이 있고, 퇴원을 위해서라면 밥을 먹어야 할 것 같으며 다음 날부터 식사를 밥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다. 2009. 3. 27. 진정인이 식사를 죽으로 바꿔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진정인 측은 중식으로 죽을 제공하였다. 진정인은 입원 기간 피진정인 측이 제공하는 식사에 자신이 준비한 음료 등을 섞어 스스로 섭취하였다.

다. 진정정인은 담당 전공의를 바꿔달라거나 다른 병원 또는 다른 진료과에서 치료받게 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진정인이 빨리 퇴원하고 싶다고 말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퇴원심사청구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제29조에 따른 퇴원심사 등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진정인이 입원한 2009. 3. 24. 당시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입원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같은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조 제2항과 「헌법」 제10조에 따라 진정인에게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선택권도 적절한 치료를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

그 제한의 수준은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질병 치료에 해를 끼치는 음식물 섭취를 금하고, 식사 시간과 방식을 일정하게 조정하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피진

정인이 제공한 식사가 위와 같은 제한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인이 목표 체중을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밥을 달라고 요청한 점도 인정되기에 진정인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환자의 치료와 관련하여 전원 및 전과를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담당전문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는바,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라. 진정요지 라항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5항 및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퇴원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퇴원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진정인은 몇 차례 입원의 부당함과 퇴원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퇴원심사청구서를 교부해 줄 것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에 진술이 상반되고 있고, 그 밖에 진정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다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가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며,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진정요지 라항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2010. 2. 5.

위원장 최경숙 위원 유남영 위원 황덕남



www.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제 [6] 장 기타기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 침해구제분야 | 제4집 2009~2011



1. 인격권 침해 및 가혹행위

1

2010. 10. 5.자 10진정0041000결정

[인격권 침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욕설을 한 피진정인 1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진정인과 피해자가 공무원인 피진정인에게 폭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인 피진정인은 이에 친절하게 응대해야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당 36세인 피진정인이 당 61세인 진정인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것으로 사회상규 상 용인되는 행위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진 정 인】 엄○○

【피 해 자】 1. 엄○○

2. 엄○○

【피진정인】 1. 박○○

2. 김○○

【주 문】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중 피진정인 2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는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들은 부자지간으로 2010. 2. 12. 13:40경부터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시청자권익증진과)의 센터장과 민원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들과 민원 상담을 하던 센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당시 C/S센터에 근무하고 있던 공무원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빨리 경비실에 연락해서 저 새끼들 끌어내라고 해.”, “국가공무원을 뭘로 아는 거야. 너 새끼야 한번 붙어 볼래.”라는 말을 하면서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사무실 바닥에 팽개쳤고, 사무실 책상 파티션을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쳐 파손시켰다. 이에 진정인이 “운동선수들 체육관도 아닌데 뭘 붙어 보자는 거냐”며 나무라자 피진정인 1은 피해자 2에게 얼굴을 들이대며 “쳐봐, 쳐봐. 씨파 경비원 불러. 이 새끼들 빨리 끌어내.”라고 수회 말하였다. 또한 피진정인 1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2의 가슴을 2~3회 밀쳤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려고 하며 약 20분 정도 샷대질과 욕설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자 피해자 2의 팔을 강하게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싸움을 말리는 정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신체를 구속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진정인 1

당시 진정인은 센터장이 잠시 자리를 비우자 C/S센터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이 새끼들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라며 책상에 있는 서류를 무단으로 보려 하였다. 이에 본인이 이를 만류하자 진정인이 “너는 뭐야? 너는 뭔데 새끼야 끼어들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새끼야.”라고 먼저 욕설을 하였다. 이에 본인도 진정인이 말한 표현을 반문하는 형식으로 “뭐 새끼야?”라는 표현을 방어적으로 사용하였지만 진정인의 주장처럼 진정인에게 고의로 욕설을 한 것은 아니다.

피해자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면서 밀고 당기기는 했지만 가슴을 밀치거나 손으로 눈을 찌르려고 한 적은 없다. 다만 말다툼을 하면서 샷대질은 하였다. 이는 피진정인 1보다 체격이 훨씬 큰 진정인과 피해자가 피진정인 1의 양 팔과 옷 및 어깨를 잡고 폭행수준으로 흔들어 방어적 차원에서 한 행동이다. 또한 파티션을 주먹으로 쳤다고 하는 것도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체격이 왜소한 피진정인 1이 뒤로 넘어지면서 파티션을 손으로 치게 된 것이며, 옷을 벗어 바닥에 팽개친 사실도 없다. 그러나 화가 나서 “국가공무원을 뭘로 아느냐”라고 반말을 한 사실은 있다.

2) 피진정인 2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며 몸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발생하여, 가운데서 양 당사자를 떨어뜨리기 위해 손을 잡고 제지하였다.

다. 참고인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 직원들)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은 약 10분 정도 서로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밀고 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피해자들에게 반말과 ‘새끼야’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라고 하면서 피진정인 1이 피해자 2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진정인 1을 때리려고 하니까 피진정인 1이 “쳐봐, 쳐봐”라고 하였으며 화가 난 피진정인 1이 파티션

을 주먹으로 치고 옷옷을 벗어 던지며 “국가공무원을 뭘로 보느냐 한 번 붙어 볼래”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진정인 1에게 “너 나한테 새끼라고 욕했냐”, “지금 파티션을 치지 않았냐”, “나를 밀쳤냐”, “공무원을 뭘로 아느냐라고 했냐”라고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났었다. 그리고 피진정인 2는 피해자들과 피진정인 1이 서로 몸싸움을 하려고 하여 중간에 서서 손을 사용하여 양 당사자의 손을 잡는 등 일반적인 수준에서 몸싸움을 말린 것이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양 당사자 진술,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진정인 1은 2010. 2. 12. 14:55경부터 약 10분 정도 피진정인 1과 피해자들이 서로 큰 소리로 폭언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은 반말과 ‘새끼야’ ‘쳐봐, 쳐봐’ 등의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들 앞에서 사무실 파티션을 주먹으로 치고 옷옷을 벗어 바닥에 던지며 “국가공무원을 뭘로 보느냐 한 번 붙어 볼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피해자 2의 가슴을 손으로 밀며 당기는 등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피진정인 2는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당기며 싸움을 말린 사실이 인정된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9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3조)고 하여 공무원의 친절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진정인과 피해자가 설사 공무원인 피진정인 1에게 폭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인 피진정인 1은 이에 친절하게 응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당 36세인 피진정인 1이 당 61세인 진정인과 그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위 인정사실에서 밝혀진 것과 같은 욕설을 한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것으로 사회상규 상 용인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진정인 1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2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들의 손을 잡거나 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당시 현장에서의 상황 및 일반적·보편적 기준에서 살펴볼 때 그 정도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어 이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조 국 위원 최윤희

2

2010. 10. 5.자 10진정0048400결정

[인격권 침해]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의 웃음과 반말 등은 일반 국민에게는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 정도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중국동포로서 차별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그 느낌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것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국동포라서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진 정 인】 이○○

【피 해 자】 1. 이○○

2. 최○○

【피진정인】 김○○(현 고용노동부 서울○○지청 근로감독관)

【주 문】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직무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 1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동포이고, 피해자 2는 진정인의 이모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중국동포이다. 피해자들은 2010. 2. 11. 15:00경

피해자 2의 체불 임금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지방노동청 ○○지청(2010. 7. 12. 고용노동부 서울○○지청으로 변경) 민○○ 근로감독관에게 출석하여 피해진술을 하게 되었다. 민○○ 근로감독관의 옆 자리에 앉아 있던 같은 지청 근로감독관인 피진정인은 담당 조사관도 아니면서 피해자들이 진술할 때 끼어들어 비웃는 등 무시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큰 소리로 “당장 나가”, “시끄러워 나가”, “이것들이” 등의 발언을 하면서 샅대질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0. 2. 11. 15:00경 피해자 1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데 그 말에 갑자기 웃음이 나와 혼자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담배를 피우기 위해 퇴실하였다. 잠시 후 자리에 돌아왔을 때 피해자 1이 “내 말이 우스운가요?”라며 계속 항의하였고 피진정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 나도 웃을 권리가 있다”, “퇴실하라”고 응대하는 등 서로 말다툼이 있었다. 피진정인이 웃은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었지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고의적 행동은 아니었다.

다. 참고인들(고용노동부 서울○○지청 근로감독관들)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반말과 큰소리로 “나가요 나가”라고 하며 불친절하게 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들이” 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목격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은 조사가 끝난 후 피진정인으로부터 인격모독을 당했다며 과장실로 찾아가 피진정인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3. 인정사실 및 판단

양 당사자의 진술, 참고인 진술 및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담당 근로감독관도 아니면서 임금체불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조사에 관여하여 웃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반말로 “시끄러워 나가”라고 하는 등 약 20분 정도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에게 “이것들이”라고 말했다는 부분은 피해자들의 주장 외 달리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제59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3조)고 하여 공무원의 친절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은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이라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신분을 가진 피진정인에게서는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살면서 특유의 연변지방 억양으로 인해 차별과 무시를 받아 온 피해자들과 같은 중국동포들을 대할 때 그 언어사용과 행동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피진정인의 웃음과 반말 등은 일반 국민에게는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 정도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중국동포로서 차별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그 느낌의 정도가 다르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중국동포로서 무시당한다고 느끼게 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조 국 위원 최윤희

3

2011. 7. 11.자 10진정0784500 결정 [당사자 동의 없는 신문광고로 인한 아동의 인권 침해]

【결정사항】

○○○○시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이 사건 광고 이미지는 사회통념상 ‘옷을 벗어서 부끄럽다’는 것을 상징하는 우스꽝스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점에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정책홍보의 내용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와 연관되므로 초등학교생인 피해 아동이 또래집단 내 선입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또한 열려 있는 점에서 아동의 인격형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는 이 사건 피진정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아동복지법」 제3조, 제4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6조

【진 정 인】 김○○

【피 해 자】 송○○, 송△△

【피진정인】 ○○○○시장

【주 문】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2010. 12. 21.부터 이틀간 피해아동

의 얼굴 사진을 만나체 신체 사진과 합성하여 만든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아동과 그 보호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초상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광고에 사용된 아동의 얼굴 사진은 ○○시와 계약한 광고제작사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제작사가 초상권 문제가 해결된 사진을 이미지 판매회사로부터 대여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전면 무상급식 시행의 직접적인 대상이 초등학교이며 무상급식 예산 편성의 결과로 다른 교육 사업이 축소폐지되는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게 된다는 기획내용을 광고제작사에 전달하였고, 광고제작사는 ‘불만스런 아이의 표정’ 이미지가 광고 목적에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사진을 판매회사로부터 대여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아동 얼굴 사진은 초상권과 관련하여 부모의 동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초상권 문제가 해결된 사진이라고 볼 수 있다.

2) 인격권 침해 여부에 대한 주장

nudt 광고기법을 사용한 것 자체가 위법사항은 아니다. 아동을 nudt화한 광고는 ‘광고의 3B’(Beauty, Baby, Beast) 요소 중 하나로 다양하게 쓰여 온 일반적인 광고기법이다. 해외의 경우 공익광고 및 정책광고에 아동 nudt 및 합성 등을 활용한 사례는 상당수 있으며 특히 해외 광고의 경우 통상적으로 광고 효과를 위해 아동의 현실을 매우 부정적이거나 직설적이며 잔인하고 혐오스럽기까지 하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시는 해외의 사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민

정서와 광고에 대한 수용 관점을 반영하여 찡그린 표정과 식판으로 가린 누드 정도의 수위로 최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낮춰 표현하였다. 결론적으로 식판으로 중요부위를 가린 누드 표현 자체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부적절하다.

3) 추가 의견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폐해와 심각성은 반드시 시민이 알아야 할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안이며, 아동 누드광고 또한 이러한 ○○시 정책과 입장을 전달하는 공익광고이자 정책광고의 일환이다. 결과적으로 광고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초상권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피진정인은 2010. 12. 22. 해당 광고를 즉시 중단했으며,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부정적인 기사 등으로 아동 이미지가 인터넷 게시공간에서 무단으로 게재되어 확산되고 희화하는 것에 대해 언론사에게 자제를 당부하였고, 5개 인터넷정보검색업체에 해당 이미지를 삭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는 등 피진정인은 아동 및 부모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후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피진정인은 아동인권 침해 등의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광고를 기획하거나 추진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광고기획 당시 인권침해 논란은 예상하지 못하였고, 모델사진의 합성여부도 광고 게재 후에 인지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광고는 피해 아동의 찡그린 얼굴과 옷을 모두 벗은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국부 주변을 식판으로 가린 신원불상의 신체를 합성한 사진 영역(이하 ‘이

사건 이미지'라 한다.)을 한쪽에 놓고 이와 병렬되게 비슷한 비율의 크기로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대제목 하에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폐지되거나 축소 되는 교육 사업들의 종류를 8개 예시하고 있는 문장 영역을 배치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 12. 21. 주요 종합일간지, 경제전문지 등 종이 신문 수 곳에 게재되었다.

나. 사진 촬영회사인 주식회사 ○○○○○○는 이 사건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피해자 송△△의 동의하에 피해 아동인 피해자 송○○의 얼굴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고, 광고제작자 주식회사 □□□□□는 이 얼굴 사진을 대여 받아 이 사건 이미지를 제작하였다.

다. 광고제작사 주식회사 □□□□□는 이 사건 광고를 포함한 복수의 시안을 피진정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진정인은 복수의 시안을 검토한 후 이 사건 광고를 선택하여 신문 게재를 결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협의를 진행한 사실은 없다.

라. 피진정인은 이 사건 광고가 신문에 게재된 이후 아동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자, 2011. 2. 22. ○○○ 등 5개 인터넷검색업체에 공문을 시행하여 이 사건 이미지가 남용되지 않도록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5.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 아동의 얼굴 사진을 특정한 방식으로 활용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므로 피진정인과 광고제작자 혹은 사진 촬영회사와의 관계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며, 관련 기본권으로 아동과 그 보호자인 피해자들의 초상권, 자기결정권 및 아동의 인격형성권을 검토하였다. 이들 기본권 중 초상권은 그 속성상 자기결정권을 내포하고 있다. 자유로운 사적 계약을 통해서 얼굴 사진의 임의적인 활용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넘어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까지 활용된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초상권을 별도로 다루지 않고 자기결정권 및 아동의 인격형성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만 검토하였다.

가.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이 사건에서 피해 아동의 보호자는 자신의 자녀 얼굴이 사진촬영되는 것을 허용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하였다. 보호자가 서명한 〈모델 콘텐츠 사용허가서〉는 “다른 이미지, 문자, 그래픽, 필름, 청각, 시청각 작품과 함께 사용될 수 있으며, 또한 자르기, 변경 또는 수정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외설적이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 즉, 명예는 기본권 보유 주체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형성되어야 하며,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만일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가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광고의 동기와 목적은 피진정인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일반 광고와 달리 정치적으로 쟁점화된 사안에 대하여 피진정인 정책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것이다. 누구임이 분명히 식별가능한 형태의 얼굴 사진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타인의 평가를 스스로 형성할 기회를 상실하였다.

결론적으로 피진정인의 광고 게재 행위로 인해 형성된 평판의 옳고 그름은 별론으로 하고, 이 평판이 형성되는 동안 피해자들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 게재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침해

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 아동의 인격형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피해자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인격형성권을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별지 1 기재 관련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동복지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 원칙’을 천명하면서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명예 등 인격권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관련 국내법 및 국제인권법을 고려할 때 아동의 인격형성에 관한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단순히 가해행위 뿐 만 아니라 인격형성에 방해가 될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하고, 나아가 그 인격형성권 보호를 선도적으로 주도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까지 부여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

아동심리학적으로 볼 때, 성인과 달리 인지 발달이 진행 중인 아동의 경우는 성장 과정에서 커다란 스트레스를 겪거나 생활의 큰 변화에 적응할 때 적응장애 혹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은 널리 인정된다.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 피해 아동 및 그 보호자는 이 사건 광고로 인해 이미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광고 게재 직후 이 사건 이미지를 우스개 삼아 패러디한 사진들이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유포되었다. 비록 수일 후 인터넷 사용자들 스스로 자정 의지를 독려하면서 유포 속도는 저하되었고 광고 게재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진정인이 관련 정보검색업체에 이미지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이미 유포된 이미지들을 모두 관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 아동은 향후에도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거나, 학교나 지역사회 등에서 또래, 선후배, 혹은 지인 등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피해 아동이 아무런 장애 없이 인격을 형성하는 성장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는 결과적 우연일 뿐, 위에 열거한 국내법 및 국제 인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으로부터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광고 이미지는 사회통념상 ‘옷을 벗어서 부끄럽다’는 것을 전형적으로 상징하는 우스꽝스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래 집단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정책홍보의 내용이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찬반 여부와 연관되므로 초등학교생인 피해 아동이 또래집단 내 선입관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 또한 열려 있다는 점에서 아동의 인격형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책임이 있는 이 사건 피진정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진정인은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면서 이 사건 이미지는 단순히 찡그린 표정이고 식판으로 국부를 가리고 있다는 점에서 나체의 수위나 잔인성, 혐오성 등 측면에서 매우 유희된 이미지이므로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피진정인이 아동의 인격형성권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반증일 뿐이다. 왜냐하면 아동의 인격권 혹은 인격형성권이란 사회적 맥락을 동시에 고려하여야지 이미지 자체의 수위만 놓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이미지가 광고 게재 직후부터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패러디되고 유포되었다는 점만 보더라도 또래 집단 혹은 일반 사회가 이 이미지를 바라보는 맥락은 피진정인이 예시한 외국 사례와 병렬적으로 비교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광고 게재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형성권을 침해한 인권침해 행위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7. 11.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최윤희 위원 김양원

2. 정보인권

1

2009. 8. 24.자 08진인3904결정 [과도한 개인정보 수 집에 의한 인권침해]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보안 업무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그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 판단

【2】 또한, 신원조사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신원진술서에서 지원자 본인뿐만 가족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장교임용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31조, 제32조, 「국가정보원법」(2006. 10. 1.) 제3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8.2.29) 제3조의2 제1항

【진 정 인】 ○ ○ ○

【피진정인】 국방부장관

【주 문】 국방부장관에게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 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보안업무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육군 등은 학사장교후보생 선발시 최초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고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대학졸업에 맞춰 사관후보생 시험에 지원하기 위해 관련 구비서류를 알아보았는데, 해군과 공군의 경우 신원진술서를 필수서류로 요구하고 있었다. 신원진술서 양식에는 신장, 체중, 본인 및 배우자와 부모의 재산, 사회단체 활동이력, 가족 및 친척의 주민등록번호, 최종학력, 직장명 및 직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항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국민 불편 해소 방안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정부 행정전산망 이용 대체 응시지원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자기소개서 추가), 신용정보 동의서(합격자에 한해서 제출)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채용서류 간소화 및 관

련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국방부 모병지원센터 2009년 학사장교후보생 모집 내용 등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육군의 경우, 학사사관후보생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신원진술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2009년도 학사사관후보생 획득을 위한 모집 공고에서는 접수시 지원서, 수험표, 자기소개서,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나. 해군의 경우, 학군사관후보생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 신원진술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시 지원서, 서약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학성적표(2학년만 해당), 고교생활기록부(1학년만 해당), 수험표,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다. 공군의 경우, 공군 사관후보생 지원시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 및 별도평가를 거친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공군과 달리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32조, 제32조에 따라 국정원장 또는 국방부장관, 경찰청장은 위임을 받아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보안업무규정」 제31조는 신원조사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그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예정자, 비밀취급인가예정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군 장교 선발을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향후 이들이 군대에서 담당하게 될 업무를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응시 지원자가 모두 장교로 선발되는 것이 아니며, 응시자를 대상으로 서면심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최종 선발을 하게 되므로 최초 지원단계에서부터 모든 응시자들에게 신원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또한, 신원조사의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신원진술서에서 지원자 본인뿐만 가족사항까지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장교임용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응시자들에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교임용예정자가 아닌 학사장교후보생 지원자에 대하여 최초 응시원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일률적으로 신원진술서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상 명확한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필요최소한의 한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로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육군 학사사관후보생 및 해군 학군사관후보생 모집시 최초 응시단계에서 모든 응시자에게 신원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하지 말고, 보안업무규정의 취지에 맞게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신원진술서

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9. 8. 2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가. 제31조(신원조사)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한다.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임용예정자
2.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4. 국가중요시설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나. 제32조(조사의 실시)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그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실시한다.〈개정 1981. 10. 7, 1999. 3. 31.〉

다. 제33조(권한의 위임) 국정원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임은 군인·군무원·「방위산업법」에 규정된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1. 10. 7, 1999. 3. 31, 2006. 2. 8〉

2. 「국가정보원법」(2006. 10. 1.)

가. 제3조(직무) ①국정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1996.12.31, 1999.1.21〉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5호에 정하는 기획·조정의 범위와 대상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5]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08.2.29)

가. 제3조의2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2

2009. 8. 24.자 08진인0545결정 [CCTV 설치 적법절차 미준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진정기관의 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CCTV 설치 과정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또한 「헌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제3항,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

【진 정 인】 신○○

【피진정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주 문】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진정기관의 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가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기관은 직원들로부터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무실 등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며, CCTV설치 이후에도 설치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아 진정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2007. 2. 8. ~ 2008. 12. 31. 피진정기관 소속 조사관으로 근무하였는데 근무 당시 피진정기관이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기관은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 예방 및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 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CCTV 설치 후 정보 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당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진정기관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 및 조사관 등은 위와 같은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으니, 피진정기관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내부관계자의 정보인권교육 실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피진정기관이 개청한 2006. 1. 1. 이후인 2006년 4월 사무실 보안을 위해 세콤(SECOM)을 설치하였으나 개인물품 도난사고, 진정인의 직원에 대한 위협

과 기물파손 등의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고, 진정사건 조사기록의 유출 및 도난방지 등을 위해 사무실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8. 4. 18. CCTV를 설치하였다. 2009. 2. 23.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CCTV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향후 CCTV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관리요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CCTV 설치 장소 사진 등의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진상조사 자료의 도난, 자료유출 등 보안 목적으로 2008. 4. 18. 피진정기관의 엘리베이터, 출입문 입구, 출입문 내부, 비상출입문 내부에 총 4대의 CCTV를 설치하면서 직원들로부터 사전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 하였다.

나. 피진정기관은 2008. 4. 18. CCTV를 설치한 후 CCTV가 설치되었다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CCTV 녹화자료는 일정기간(1개월) 경과 후 자동으로 삭제되고 최근자료가 저장되며, 사건사고 발생시에만 녹화 자료를 열람하는 바, 현재까지 녹화자료를 열람한 적이 없으며 백업파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 위 진정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09년 3월 초 피진정기관은 CCTV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2009. 7. 13. CCTV 작동을

중지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의 일환으로 피진정기관의 홈페이지에 CCTV 운영에 대하여 공지하였으며, CCTV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다.

5. 판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으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치 목적 및 장소 등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기관은 2008. 4. 18. CCTV를 설치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이며, 또한 「헌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위 진정이 접수된 이후 피진정기관이 이미 CCTV 설치 안내판을 설치한 점, 2009. 7. 13. CCTV 작동을 중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CCTV 설치 공지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한 점, CCTV 설치 관계자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CCTV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정보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8. 2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⑤ (생략) [본조신설 2007.5.17]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을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시설(군사기지 등)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 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 나. 그 밖에 해당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등의 실시

[전문개정 2007.11.13]

4. 「행정절차법」

제47조(준용)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제외한다), 제4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예고방법) 제1항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공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3

2010. 5. 10.자 09진인2033, 09진인3082병합결정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 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라는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KBS○○방송총국에 제공한 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참조조문】 「헌법」 제17조,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0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2조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시 ○동 주민센터 동장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 가. 피진정인은 진정인 자녀의 개인정보를 ○○YMCA에 유출하였다.
- 나. 피진정인은 KBS방송국에 진정인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008. 10. 29. ○○YMCA는 ‘2009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모집 협조권’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입학대상 즉, 초등학교 4, 5학년 중 기초수급자의 자녀, 저소득 및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명단을 요청하였다. 본 기관에서는 진정인의 자녀 이○○ 외 22명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명단을 2008. 10. 31. ○○ YMCA로 송부하였는데 이는 추천명단을 최대한 빨리 보내 주어 우리 동네 거주하는 아동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YMCA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의거 공공기관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없어 보였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에 의거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송부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공개대상 정보이다.

2) 2009. 1. 29. KBS ○○방송총국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청각장애우 TV수신료 면제 대상자 처리와 관련 명단 의뢰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하였고, 2009. 2. 9. 진정인 이○○ 외 289명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의 명단을 ○○방송총국으로 송부하였다. 이 또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경우에 해당되고, 290명에 대한 개별 동의 절차 후 명단을 송부할 경우 회신 기한 내 회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혜택에 대하여 거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기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명단을 송부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진정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급여를 받는 수급자이다.

나. 2008. 10. 29. ○○YMCA는 '2009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모집 협조건'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료(주소, 전화번호)를 요청하였고, 피진정인은 2008. 10. 31. 진정인 등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진정인의 자녀 이○○을 포함한 23명의 명단을 ○○YMCA에 전달하였다.

다. 진정인은 진정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지청에 피진정인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소하였고(사건번호 2009형제○○○), 수사 결과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 없음' 사유로 2009. 2. 27. 각하 종결되었다.

라.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방송수신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KBS○○방송총국은 2009. 1. 2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시청각장애우 명단 의뢰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피진정인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2009. 2. 9. 진정인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시청각장애우 290명의 명단을 KBS○○방송총국에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가항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는 진정이 제기될 당시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었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 제1호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 다목에 의거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진정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KBS ○○방송총국에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동법 제1조) 제정된 법률이기에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제공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이 진정사건과는 무관하며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진정인은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진정인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라는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KBS○
○방송총국에 제공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동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장주영

4

2010. 5. 10.자 09진인4270결정 [부당한 수배 및 개인정보 유출]

○○지방노동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사생활을 보호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수사를 직무로 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으로서 사건 관계인 및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법령상의 주의의무가 있음.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고용한 직원에게 진정인이 임금체불로 입건된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경영자인 진정인의 이미지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하였음.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제198, 제200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

【진 정 인】 권○○

【피진정인】 김○○

【주 문】 1. ○○지방노동청 ○○지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지방노동청 ○○지청 근로감독관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임금체불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는데 신고인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 이와 같은 잘못된 출석요구에 진정인이 응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기소중지처분을 하였고 지명수배를 의뢰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전화하여 직원들에게 ‘임금체불로 수배가 내려졌다. 신고가 여러 건이다. 연락안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등 공연히 피의사실을 유포하여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출석요구서에 오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진정인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1차 출석하였을 때 진정인에게 임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출석요구서가 발송되고 출석에 불응하면 지명수배 처리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다. 진정인은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출석요구에 불응하였고 소재 또한 불명하여 진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경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하였다.

2009. 10. 21. 출석에 불응하는 진정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진정인의 회사에 전화를 걸어 직원과 통화를 하게 되었다. 피진정인의 신분과 진정인의 소

재를 파악하는 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입건된 사실을 알려주었는데, 이는 수사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다. 관계인 오○○, 김○○(진정인이 고용한 직원들)

2009. 10. 21. 오전 피진정인이 전화로 진정인을 찾아 그 이유를 질문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해 ‘임금체불로 여러 건이 신고 되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아 지명수배중이다.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3. 인정사실

양당사자 및 관계인의 진술과 제출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7. 27. 네일리스트 안○○은 진정인이 임금을 체불하였다며 ○○지방노동청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진정인은 2009. 8. 4. 1차 출석하여 2009. 8. 14.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서를 수령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입건되고 출석에 불응하면 기소중지 된다는 사실을 피진정인으로부터 들었다.

나. 진정인은 2009. 8. 17.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입건되었으며 8. 26. 출석요구(1차) 및 9. 2. 출석요구(2차)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출석요구서에는 신고자 이름이 안○○이 아닌 한○○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었다.

다. 2009. 10. 16. 네일리스트 박○○ 외 2명이 추가로 진정인의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피진정인이 다시 진정인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고 진정인의 소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이 고용한 직원들에게 진정인의 피의사실과 진정인이 지명수배 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4.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는 검사 또는 수사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는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0조는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소중지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하는 처분으로, 근로감독관인 피진정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된 진정인이 출석하지 않고 소재도 파악되지 않자 진정인을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고 경찰서에 지명수배 의뢰한 조치는 정당하고, 진정인에게 발송한 출석요구서에 임금체불로 신고한 사람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수사의 개시 등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피진정인의 행위는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와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에게 피의자 또는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권보호수사준칙」 제6조는 사건 관계자의 명예·사생활을 보호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를 직무로 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관으로서 사건 관계인 및 피의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 이들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법령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고용한 직원에게 진정인이 임금체불로 입건된 사실을 알려줌으로써 직원들로 하여금 경영자인 진정인의 이미지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나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가항은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0.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최경숙 위원 유남영 위원 문경란

위원 김태훈 위원 황덕남 위원 조 국 위원 김양원

위원 최윤희 위원 장주영 위원 한태식

5

2010. 6. 30.자 10진인151결정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인권침해]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 4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서도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공무원인 피진정인 4는 공무상 취득한 진정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됨.

【참조조문】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유○○

2. 류○○

3. 김○○

4. 김○○

【주 문】 1.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 4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인

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 2, 3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광역시 ○구청 건설재난관리과 김○○의 불친절 및 접수 거부’에 대해 ○○광역시 ○구청 기획감사실에 조사를 요구하였는데 이후, 2009. 12. 23. 08:59에 김○○의 남편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진정인의 개인정보인 전화번호가 김○○의 남편에게 공개된 사유에 대한 조사를 바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 2, 3(○○광역시 ○구청 기획감사실 직원 유○○, 류○○, 김○○)

피진정인 1(유○○)은 업무담당자이며, 피진정인 2(류○○)와 피진정인 3(김○○)은 피진정인 1의 상급자이다. 진정인이 2009. 12. 4. 전화로 ○○광역시 ○구청 기획감사실에 ‘민원 친절의식 향상 및 담당직원 김○○의 사과’를 요구하는 진정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진정인 1이 위 민원을 접수하고 2009. 12. 7. 피진정인 4(김○○)의 근무부서인 건설재난과에 ‘구두(유선)민원 접수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다.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내용이 담당자의 사과를 요구했던 사항이었으므로, 연락처를 알려주는 차원에서 진정인의 이름과 전화를

번호를 공문에 기재하였으나, 공문을 비공개 문서로 작성하였고 개인정보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기재하였다.

2) 피진정인 4(○○광역시 ○구청 건설재난관리과 직원 김○○)

2009. 11. 30. 진정인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건설재난관리과에 전화를 하여 건설재난관리과 직원(김○○)에게 전화번호를 남겼고, 김○○으로부터 메모를 받은 본인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발송한 ‘구두(유선)민원 접수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요청’ 공문을 받기 이전에 진정인의 전화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2010. 12. 7. 기획감사실에서 발송한 공문을 받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되어 본인의 개인휴대폰에 진정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였다. 기획감사실에 공식적으로 서면답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팀 차원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과하라는 요구에 대해 여자로서 위협을 느껴 남편과 상의를 하였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이름은 이야기를 하였으나 전화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없다. 이후 일자불상에 남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남편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답변서, 피진정인 4의 남편의 진술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12. 4. 진정인은 ○○광역시 ○구청 기획감사실에 유선상으로 도로점용 업무관련 불친절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기획감사실은 2009. 12. 7. 관련 부서인 건설재난관리과에 “구두(유선)민원 접수에 따른 조치

결과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유선(방문)민원 접수처리부”를 첨부하였으며, 동 첨부물에 진정인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2009. 12. 10. 건설재난관리과에서는 기획감사실로 “구두(유선)민원 접수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 공문을 발송하였고, 2010. 1. 14. 기획감사실에서는 진정인에게 “구두(유선)민원제보에 따른 회신”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2009. 12. 23.경 피진정인 4의 남편은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여 진정인과 통화를 하였다.

5. 판단

가. 피진정인 1, 2, 3의 행위에 대하여

○○광역시 ○구청 기획감사팀에서 건설재난관리과로 보낸 공문의 붙임자료인 “유선민원 접수처리부”에 기재된 진정인의 민원내용과 전화번호는 진정인이 동 기관에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전달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된다고 보이며, 해당 공문으로 인하여 진정인의 전화번호가 외부인(피진정인 4의 남편)에게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1, 2, 3이 작성 또는 결재를 한 공문에 진정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행위는 담당 공무원에게 주어진 업무 범위 내에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진정인 4의 행위에 대하여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서는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에서도 개인정보취급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 4의 남편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이는 피진정인 4가 진정인의 전화번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 피진정인 4의 남편에게 진정인의 전화번호가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4는 진정인의 전화번호를 직접 유출하지는 않았고 진정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의성이 일체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제시한 규정에서와 같이 공무원인 피진정인 4는 공무상 취득한 진정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유출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진정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광역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 4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1, 2, 3의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피진정인 4의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3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조 국

6

2010. 7. 26.자 10진정0024200·10진정0040200·10진정0073800·10진정0199400 병합결정 [산불감시원 개인위치정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산림청장, 00시 00구청장, 00시 00구청장에게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부터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목적을 벗어나 산불감시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과,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서 산불감시원들의 개인위치정보가 어떻게 사용·관리되는지, 자신들의 권리제한 및 보장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피진정인 1, 3, 4는 산불감시원의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전제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산불감시원들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서는 수령하였으나 산불감시원들에게 산불감시원들의 개인위치정보가 누구에 의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되는지, 그리고 개인위치정보가 보호되는 방식, 산불감시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한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음. 또한 피진정인 1, 3, 4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부터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산불감시원의 개인위치정보의 부당한 수집 및 이용과 제공,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보안사안 등을 요구하여 산불감시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피진정인 1, 3, 4는 산불감시원으로부터 개인의 위치를 조회하여도 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동의서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동의’를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따라서 피진정인 1, 3, 4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기반을 둔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진 정 인】 1. 김○○

2. 이○○

3. 허○○

【피진정인】 1. 산림청장

2. ○○국유림관리소장

3. ○○시 ○○구청장

4. ○○시 ○○구청장

【주 문】 1. 산림청장, ○○시 ○○구청장, ○○시 ○○구청장에게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가.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목적을 벗어나
산불감시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사용·제공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과,

나.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서 산불감시원들의
개인위치정보가 어떻게 사용·관리되는지, 자신들의 권리제
한 및 보장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인 1의 진정내용(10진정0024200)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
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산불감시원에게 근무 시 위치추적기를 보급착용토록 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한 1, 2, 3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2, 3, 4의 주장 요지

피진정인 1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피진정인 2, 3, 4는 피진정인 1의 지시 및 지침 등을 받아 관할구역 내의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개인휴대전화 등 이동통신 발달로 산불발생 신고는 과거에 비해 빨리 신고되지만, 정확한 위치·주변여건 등은 산림공무원 또는 진화헬기가 도착된 이후에 파악되는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 참여자, 유급산불감시원 등의 산불감시원을 약 3만 명을 운용하고 있으나 농·산촌의 인구고령화 추세로 대부분 고령자가 선발·운용되고 있어 산불 발생지 주변 숲의 상태, 담수지 현황 등을 정확하게 산불상황실로 보고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제 이동하며 산불감시 및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치조회에 대한 동의를 수령한 후 단말기를 지급하여 운용하였다. 단말기는 24시간 계속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인 09:00 ~ 18:00 동안에만 작동하며, 단말기의 ON/OFF는 산불감시원이 직접 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다.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사(000 또는 00)는 산불감시원이 소지한 단말기의 위치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업자인 (주)0000 또는 (주)000텔레콤에 제공하며, 위치기반서비스업자는 제공받은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이용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산림청 및 각 시행기관(사군 및 산림청 소속 기관)에 제공한다. 각 시행기관(사군 및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는 상기 위치기반서비스업자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소속 산불감시원에게 지급하고, 해당 위치기반서비스업자가 운용하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접속하게 된다.

각 시행기관(시·군 및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는 단말기 사용에 따라 산불감시원의 출퇴근, 근무지 이탈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산불감시원의 이동사항 및 위치 등을 관리하여 담당구역 및 순찰경로 등을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실제 산불발생 시 산불감시원이 소지하고 있는 단말기의 응급버튼을 누르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경광등으로 표시되어 산불상황실에서는 정확한 산불발생 위치와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주변 숲의 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진화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으로 진화자원을 동원할 수 있게 된다.

00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0. 2. 2.과 같은 해 2. 19. 소속 산불감시원 30명에게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단말기 지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산불위치관리 시스템 위치정보활용 동의서’를 자율적으로 제출한 산불감시원 27명에게 2010. 4. 1. ~ 5. 31. 동안 15대의 단말기를 교대로 지참하도록 하였다.

00시 00구청은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접수 시 “감시원은 개인위치관리를 위한 단말기를 지급하며 개인위치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사전 고지하였고,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사전동의서를 받은 후 산불감시원 34명중 이동감시원 15명에게 단말기를 지급하여 2010. 2. 12. ~ 2010. 5. 15. 동안 운용하였다.

00시 00구청은 소속 산불감시원 25명의 동의서를 수령한 후 단말기를 지급하여 2010. 4. 16.~ 5. 15. 동안 운용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이 제출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 2, 3, 4는 2010년 봄철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산불감시원들에게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지급하여 근무시간 동안 착용하도록 하였다.

나. (주)0000 또는 (주)000텔레콤(이하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는 산불감시원에게 지급된 단말기의 위치를 이동통신사인 (주)000 또는 (주)00(이하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의 통신망을 통해 확인하여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운용한다. 피진정인 2, 3, 4는 단말기를 구입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부터 접속권한을 부여받아 해당 업체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피진정인 1도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부터 접속권한을 부여받아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 접속한다.

다. 피진정인 2는 소속 산불감시원 30명 중 위치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한 27명에게 2010. 4. 1.부터 2010. 5. 31.까지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단말기를 15일 주기로 교대로 지참하여 근무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3은 산불감시원 34명 중 이동감시원 15명에게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단말기를 지급하여 2010. 2. 12. ~ 2010. 5. 15. 동안 운용하였고, 피진정인 4는 산불감시원 25명에게 단말기를 지급하여 2010. 4. 16. ~ 5. 15. 동안 운용하였다.

라. 피진정인 2, 3, 4는 산불감시원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서를 수령하였으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의 운용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산불감시원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았다.

5. 판단

가. 10진정0024200 사건 관련

진정인 1은 ‘산불위치관리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을 거부함에 따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단말기를 지급받지 않은 채 산불감시원으로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피진정기관들이 진정인 1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였다는 실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정인 1의 진정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10진정0040200, 10진정0073800, 10진정0199400 사건 관련

피진정인 1, 3, 4는 산불감시원의 경우 업무공간이 한정된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넓은 범위의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산불감시원의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발생 시 정확한 위치와 주변 숲의 상태를 파악하여 신속한 진화계획을 수립하여 진화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불감시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산불감시원에게 근무시간 동안 단말기를 착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산불 예방 및 신속한 산불 진화라는 공익의 목적에서 고용관계에 있는 산불감시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에서는 그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산불감시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를 착용토록 한 행위 자체를 인권침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진정인 1, 3, 4는 산불감시원의 개인위치정보의 활용이 전제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산불감시원들로부터 개인위치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서는 수령하였으나 산불감시원들에게 산불감시원들의 개인위치정보가 누구에 의하여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 수집·이용·제공되는지, 그리고 개인위치

정보가 보호되는 방식, 산불감시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한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진정인 1, 3, 4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부터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제공받는 과정에서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산불감시원의 개인위치정보의 부당한 수집 및 이용과 제공,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보안사안 등을 요구하여 산불감시원의 개인위치정보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진정인 1, 3, 4는 산불감시원으로부터 개인의 위치를 조회하여도 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수령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동의서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제19조에서 규정하는 ‘동의’를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 1, 3, 4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취지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이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기반을 둔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1, 3, 4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부터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제공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산불감시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사용·제공·처리함으로써 산불감시원의 개인 위치정보가 과도하게 사용되거나 목적을 벗어나 사용·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소속 산불감시원들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서 본인들의 개인위치정보가 어떻게 사용·관리되는지,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 제한 및 보장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 제1호, 제42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조 국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37호, 2010. 3. 1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6. "위치정보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7.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라 함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이하 “위치기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정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서는 아니된다.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①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정보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수집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의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2.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3.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4.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5.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은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 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은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제20조(위치정보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 등) ①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용 또는 제공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개인위치정보 등의 이용·제공의 제한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에 의하여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24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7

2010. 8. 23.자 10진정0078500결정 [부당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광역시장에게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미흡하게 관리한 피진정인들에게 경고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시 관할 소방서 및 소방안전본부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지방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정해진 사항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그의 소관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공무원인 피진정인 1, 2는 위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 사실과 같이 진정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음. 비록 유출된 내용이 비밀로 분류된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문서에는 진정인 및 참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관련인의 내연관계와 유착 주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이었음. 따라서 관련 문서를 전달함에 있어 이를 철저히 봉인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복사하여 사용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1. 유○○

2. 김○○

【주 문】 ○○광역시장에게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미흡하게 관리한 피진정인들에게 경고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시 관할 소방서 및 소방안전본부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게 진정인이 진정한 내용에 대한 검찰결과서를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전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위의 자료를 임의로 복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사용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

본인은 진정인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자치부, 소방방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를 받았고, 진정인이 심지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답변서 제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청와대 민원과 관련하여 ○○경찰서로부터 방문요청이 있었고, 방문시 소방본부 감찰계에서 조사받은 자료를 가지고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감찰계에 연락하여 자료를 받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 내용 중 진정인이 무고를 하

여 조사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동 감찰자료를 복사하여 ○○지방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지방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진정인에게 송달되자 진정인은 문서를 유출했다고 소방본부에 항의하여 감찰계에서 조사를 받고 ○○지방법원을 방문하여 제출한 자료를 취소하였다. 진정인이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진정인과 본인만 인지한 것이고, 이미 진정인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통해 개인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방본부 조사자료는 개인정보 유출과 아무 관련이 없다.

다.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

진정인이 소방방재청에 제기한 진정민원에 대하여 피진정인 1과 관련된 주변인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 및 진정인에게 회신하였다. 또한 청와대 진정민원건이 ○○경찰서에 이첩되어 ○○경찰서 수사협조의뢰 공문을 접수하고 ○○경찰서측에 직접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방문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서 수사와 경사 백○○로부터 안전감찰팀에서 조사한 진정민원서류를 지참하고 출두하라는 전화를 받은 피진정인 1은 안전감찰팀을 방문하여 문서의 외부유출 금지 당부사항을 듣고 문서를 받아갔다. 진정인으로부터 문서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진정인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하고, 피진정인 1에 대한 문서유출 경위조사를 하였고, 피진정인 1이 보관중인 복사문서 1부를 회수하고 법원에 소송답변서 첨부물 철회서를 접수하도록 하였다. 피진정인 1에게 문서의 외부유출 금지 당부사항을 주지시켰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줄 몰랐고, 문서를 철저히 봉인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및 피진정인들의 진술, 피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광역시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에서는 진정인이 국민신문고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제기한 진정민원에 대하여 2009. 12. 24. ~ 2010. 1. 4. 소방공무원 3명과 진정인 등 3명을 조사하여 피진정인 1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조사종결하고 2010. 1. 7. 진정인에게 진정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나. ○○경찰서 수사과는 소방안전본부에 수사협조의뢰(수사과-152, 2010. 1. 13.)를 통해 진정민원 조사결과를 송부 요청하였고, ○○경찰서 수사과 경사 백○○은 2010. 2. 16. 피진정인 1에게 출두하기 전에 소방안전본부에 들려 진정민원 관련 처리결과 사본을 가져오라고 전화하였고, 2010. 2. 19. 피진정인 1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진정인 1은 2010. 2. 18. 소방안전본부 안전감찰팀을 방문하여 피진정인 2로부터 진정민원 관련 처리결과 사본을 전달받았고, 이 때 피진정인 2는 피진정인 1에게 위 문서를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다.

라. 피진정인 1은 2010. 2. 19. 13:00경 ○○경찰서 앞에서 진정민원 관련 처리결과 사본을 열람하고 3부 복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답변서 첨부물로 2부를 사용하고 1부는 피진정인 1이 보관하였다.

마. 소방안전본부 안전감찰팀은 진정민원 관련 처리결과 자료가 유출되었음을 인지하고 2010. 3. 5. 피진정인 1에게 자료 유출경위에 대한 문답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바. 피진정인 1은 2010. 3. 8. ○○지방법원에 피진정인 1이 제출했던 소송관련 첨부서류 철회서를 제출하였다.

5.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52조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정해진 사항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그의 소관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알게 된 개인의 비밀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인 피진정인 1, 2는 위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등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비록 유출된 내용이 비밀로 분류된 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문서에는 진정인 및 참고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관련인의 내연관계와 유착 주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이었다. 따라서 관련 문서를 전달함에 있어 이를 철저히 봉인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복사하여 사용한 피진정인들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장인 ○○광역시장에게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미흡하게 관리한 피진정인들에게 경고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역시 관할 소방서 및 소방안전본부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

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23.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조 국

8

2010. 8. 23.자 10진정0225800결정 [민원제출자 신분
노출에 의한 인권침해]

00군수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피진정인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음.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보보호 의무를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위 법률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진정인의 개인정보, 민원내용 및 신상정보 등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음.

【2】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때문에 사업진행이 지체된다는 이유 등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 피진정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임.

【참조조문】

【진 정 인】 허○○

【피진정인】 1. 정○○

2. 하○○

3. 정○○

【주 문】 ○○군수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과, 피진정인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진정기관을 수차례 방문하여 피진정인들에게 낙동강수계주민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각종 민원을 제기하여 지정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던 중 피진정인들은 2010. 1. 20. ‘○○리 주민지원사업 민원해결 촉구(환경과-1060)’ 공문서에 진정인의 성명을 명기하고, 진정인의 민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공문을 ○○면 ○○리장과 추진위원 등에게 발송하였다. 공문을 받은 이들은 마을주민들에게 공문을 복사하여 배포하면서 진정인으로 인하여 ‘주민지원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들이 민원사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를 여과 없이 마을 사람들에게 유출함으로써, 진정인은 주민들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여 마을을 떠나 이사를 가야 할 정도로 피해를 입고 있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군청 소속)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인한 각종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낙동강수계 및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군 ○○면 ○○리 주민들에게 2003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8년간 2,312백만원의 표고버섯재배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진정인은 ○○군 ○○면 ○○리에 거주하며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진정인 소유의 토지를 계속하여 경작하면서 생업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대상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지원대상자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리 주민 중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등 37명이 진정인의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반대민원을 제기하는 등 주민들간 분쟁 및 내부갈등이 지속되자 피진정인들은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목적으로 부득불 공문에 진정인의 성명을 명시하고 조속한 민원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리장과 추진위원 2명에게 발송하게 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들의 진술서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대상자로 지원받기 위하여 2009. 2. 19. 피진정기관에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고, 같은 해 8.10. 서류를 구비하여 주민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 ○○리 주민 중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등 37명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나. 피진정인들은 주민들간 내부갈등이 심해지자 2010. 1. 20. 진정인의 민원으로 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진정인의 이름을

명기한 ‘○○리 주민지원사업 민원해결 촉구 공문서(환경과-1060)’를 ○○면 ○○리장과 추진위원 등에게 발송하였다.

다.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진정인과 피진정인들간의 다툼은 없다.

5. 판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정보보호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들은 위 법률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진정인의 개인정보, 민원내용 및 신상정보 등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진정인들은 진정인 때문에 사업진행이 지체되다는 이유 등으로 진정인의 개인정보를 누설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진정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군수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과, 피진정인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조 국

9

2011. 3. 14.자 10진정0346700결정 [공무원의 개인정보보호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진정인이 밝히기를 원치 않는 사생활 관련 정보를 진정인과 이혼한 전처에게 알린 행위는 공무담임자로서 최소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진 정 인】 민○○

【피진정인】 김○○

【주 문】 ○○○○시 ○○구청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10. 6.경 진정인은 ○○3·4동주민센터에 본인과 자녀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구청 생활복지과 직원이었던 피진정인은 진정인 자녀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의 전 부인에게 업무와는 관계없는 진정인의 수감사실을 알려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10. 6.경 진정인은 자녀와 동일 주소 2인 세대로 ○○34동주민센터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였다. 진정인 자녀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부양의무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진정인의 전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양의무자 조사관련 서류인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아 등기우편으로 전처에게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하였다.

전처가 공문을 받고 일자불상에 전화를 하여 진정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게 된 사유 및 해당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 이유 등을 물어서, 그 사유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진정인의 수감사실을 이야기하였다.

대부분의 출소자의 경우, 부양의무자와 관계단절 및 연락두절이 많으며 진정인의 경우 출소 후 자녀와 2인 세대로 경제적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신청서류 중 부양의무자 제출서류가 누락되어 접수처인 ○○ 34동주민센터에서 부양의무자 조사에 관한 안내가 이미 되어 있음을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업무처리상 적합했다 해도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상 긴급을 요하는 생계, 의료문제 해결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이 과정에서 민원인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뜻하지 않게 유출될 수 있음을 유념하고, 향후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하겠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 답변서 등을 종합할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2010. 6. 10. ○○3·4동주민센터에 진정인 본인과 자녀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신청을 하였다.

나. 당시 ○○구청 생활복지와 통합복지조사팀에 근무하고 있던 피진정인은, 진정인 자녀의 수급권자 신청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진정인과 이혼한 자에게 유선상으로 진정인의 수감사실을 이야기하였다.

5. 판단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를 통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누설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피진정인에게,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따라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 자녀의 수급권자 신청건의 조사와 관련하여 실제 부양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인 진정인의 전처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진정인의 수감사실을 알리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자녀의 수급권자 해당여부는 부양의무자인 진정인과 전처의 부양능력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각 부양의무자가 서로의 상황이나 입장을 인지 또는 이해하여야 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비록 고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 으로서는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진정인과 이혼한 전처에게 알린 행위는 공무담임자로서 최소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헌법」 제17조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3. 1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최윤희 위원 김양원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정보보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

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학교에서의 체벌 및 두발단속

1

2009. 10. 12.자 09진인2034결정 [교사의 체벌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각서, 체벌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2】** 충북○○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게 경고조치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은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기압 등의 체벌을 가하는 등 피진정인의 행위가 학생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어 피해자의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함.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등 학생지도에 필요한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자퇴를 서약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서가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학교장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음.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또한 피진정기관은 2008년 이후 상벌제(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기압 등 체벌을 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임.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19조

【진 정 인】 ○ ○ ○

【피 해 자】 ○ ○ ○

【피진정인】 ○ ○ ○

- 【주 문】 1.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각서, 체벌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2. 충북○○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에게 경고조치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해자는 충북○○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으로 2009. 6. 9. 다니던 학교 인근 아파트(청주시 ○○동 소재)에서 투신자살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보충수업에 늦게 참석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럴 때마다 담임교사인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무모한 언사와 체벌을 가하였다. 사고 당일에도 피해자가 학교에 늦게 갔다는 이유로 아침 보충수업을 받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복도에서 기합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이 일로 인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학교를 자퇴하라는 각서까지 쓰게 하고 부모님 확인까지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결과 피해자는 자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충북○○고등학교 교사)

본인은 평소 학생들에게 보충수업이 08:30분에 시작되므로 08:23분까지 등교 하라고 주시시켰고, 사고 당일인 2009. 6. 9. 피해자는 08:35분정도에 등교하였다. 이에 피해자에게 약 10분 정도 교실 옆 복도에서 팔을 뻗고 엎드린 자세로 있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폭언이나 체벌은 하지 않았다. 이후 오전 보충수업이 끝나는 09:20분경 2009. 4. 21.에 썼던 것과 같은 내용(양식)의 각서와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주고 써 오도록 지시하였다. 본인은 평상시에도 늦게 등교하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복도에서 10분~50분 정도 팔을 뻗고 엎드린 자세로 있게 하였고,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아침등교시간에 늦을 경우 이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같은 날 08:44분경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친구들과 택시를 타는 시간이 08:00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집에서 07:10분에 나와서 택시를 타기 전까지 30~40분 정도 길거리에서 배회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내일부터 늦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알겠다.”고 답변하였다.

3. 관련규정

가.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 경찰에 의한 현장 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조사결과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은 체벌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2008년 이후 상벌제(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벌관련 규정을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진정기관에서는 체벌이 금지되고 있으나 2009. 6. 9. 08:35분경 피진정인은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인 ○○○에게 약 10분 동안 학교 복도에서 팔을 뻗고 엎드려 있도록 하는 벌을 세웠다.

나. 2009. 6. 9. 08:44분경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지각 사실을 알렸고, 오전 보충수업이 종료된 후에는 피해자에게 각서와 반성문 용지를 주면서 보호자 서명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다. 각서양식은 피진정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각서의 내용에는 '위 학생은 교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함은 물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며, 본 각서를 보호자 연서로 제출합니다.(본 각서는 위 학생의 졸업 때까지 유효함)'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서명(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다. 2009. 6. 9. 피해자는 피진정인으로부터 기합을 받은 것과 피진정인이 피해자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인해 친구들에게 "죽고 싶다."고 말하였다.

라. 2009. 6. 9. 피해자는 수업 종료 후 동료 학생 4명과 하교하였고, 같은 날 20:10분경 ○○아파트(충북 청주 소재) 14층에서 가방과 신발을 벗어놓고 교복을 입은 상태로 투신자살하였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피해자 가방에서는 당일 피진정인이 요구한 각서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일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통상의 반성문 내용을 넘어서는 내용을 담은 각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기압 등의 체벌을 가하는 등 피진정인의 행위가 학생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심리적 부담을 주어 피해자의 자살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각서 내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교칙을 다시 위반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스스로 자퇴할 것을 서약’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등 학생지도에 필요한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자퇴를 서약하도록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각서가 학교장의 승인 없이 학교장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피진정기관은 2008년 이후 상벌제(그린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기압 등 체벌을 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2조에 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감에게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각서, 체벌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의 감독자인 충북○○고등학교장이 피진정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 것과 기압 등 체벌을 한 행위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하고 유사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근무하고 있는 충북○○고등학교 직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한다.

2009. 10.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2

2009. 12. 28.자 09진인4912·09진인4889·09진인
4873·09진인4940·09진인4939·09진인4843·09진
인4842·09진인4841(병합)결정 [학생 두발단속과정에
서의 인권침해]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두발 단속 시 강제이발과 같은 인권침해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두발의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자유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학교는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가 일정 정도 제한될 수는 있을 것임. 그러나 그 제한방법에 있어 대체수단(그린마일리지 제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학생의 의사에 반하면서 강제이발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지나친 조치였다고 판단됨. 즉 피진정인의 경우처럼 학생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학생의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이익으로 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2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진 정 인】 ○○○ 등 8명

【피진정인】 ○○○

【주 문】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두발 단속 시 강제이발과 같은 인권침
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중학교는 “앞머리는 5cm이고 단정한 머리를 한다.”는 두발규정을 두고 있으며, 위 두발규정에 따라 제물포중학교의 학생부장인 피진정인은 학생들의 두발을 단속하면서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잘랐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중학교 교사 ○○○)의 주장요지

○○○중학교의 학생 두발규정은 ‘앞머리 5cm를 넘지 않아야 하며 전체적으로 단정한 머리로 염색을 하거나 무스를 바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7년 설문조사에서도 본교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 대다수가 현재의 두발 규정에 동의하였다. 본교는 인천서부공단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학생들과 결손가정의 학생들이 다소 있어 방과 후에 PC방과 게임방 등 주변의 유혹과 탈선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바른 길로 지도하는 학생부장으로서 두발 규정과 복장에 대한 지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학기가 되면서 머리에 염색을 하고 무스를 바르고 등교를 하는 특정 학년 학생들의 숫자가 이백여 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두발상태는 복장불량과 수업태도가 나빠지는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들에게 규정에 맞게 자르고 오라고 지도하였으나, 염색을 하고 장발을 하기도 하며, 지도시에 도망가는 학생들도 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라는 의미로 이들 중 일부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본인이 가위로 자른 적이 있다. 두발 문제가 인권위에 진정되었는바, 향후 본 교에서는 2010학년도를 대비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 3주체의 대표를 선정하여 2010년 2월 중순까지 용의복장규정(두발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3. 관련규정

별지 참조

4. 인정사실

진정인들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 중학교의 학생(14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두발단속 관련 설문조사 결과 등의 자료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두발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가 긴 일부 학생들에게 강제이발을 실시한 것이 인정된다.

5. 판단

두발의 자유는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므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자유를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나 학교는 학생의 장래이익 보호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구성원간의 합의에 따라 두발의 자유가 일정 정도 제한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제한방법에 있어 대체수단(그린마 일리지 제도 등)을 이용하지 않고 교사가 직접 학생의 의사에 반하면서 강제이발을 실시하는 것은 교육현실의 어려움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지나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즉 피진정인의 경우처럼 학생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학생의 두발을 자르거나 변형시키는 것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이익으로 하는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학생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두발 단속 시 강제이발과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3

**2011. 2. 17.자 10직권1000·10진정0674100(병합)결정
[고등학교의 학생 체벌]**

○○도교육감에게,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생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체벌 없는 학교’시범학교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해당 학교 교사·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고등학교장에게, 해당 교사들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위원회 조사결과,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떡매’ 또는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하는 행위가 관행처럼 존재해 왔던 것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헌법」 제12조로 보장된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생 체벌행위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진술이 명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체벌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해당 교사들도 ‘떡매’ 또는 신체를 이용한 체벌 행위를 일부 인정하는바, 이러한 행위 역시 「헌법」 제12조로 보장된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

【참조조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1·제27조·제28조·제37조, 「교육기본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등

【피 해 자】 ○○고등학교 학생들

【피조사기관】 ○○고등학교

【주 문】 1. ○○도교육감에게,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생 체벌로 인한 인권침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 학교를 ‘체벌 없는 학교’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해당 학교 교사

-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2. ○○고등학교장에게, 교사 오○○, 임○○, 윤○○, 백○○, 박○○에 대하여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직권조사의 배경

2010. 10. 14. ○○도 ○○시 소재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수업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학생 두 명을 일명 “떡매”로 체벌하여 그 가운데 한 학생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체벌 관행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사건번호 10진정674100)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기하였다.

사건 발생 이후 ○○도교육청은 2010. 10. 22.부터 10. 27.까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였고, 해당 학교당국도 2010. 10. 25. 학교새싹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떡매 회수 및 폐기, 학생 및 교사 인권교육 시행 등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교사들의 학생 체벌 관행이 지역사회와 다른 교사,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학교였기에 이번 사건의 가해교사 및 피해학생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가해 또는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2010. 10. 29.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의 학생 체벌 관행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하였다.

2. 조사의 방법

위원회는 ○○고등학교의 학생 체벌 관행에 대한 전반적 파악을 위하여, 2010. 11. 24.과 같은 달 26. 해당 학교 전체 교사 및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10. 12. 1.부터 같은 달 16.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교장 및 교감, 7명의 교사 대표, 4명의 교사 등을 면담조사하였고, 2010. 12. 3.부터 같은 달 16. 사이 학년별로 2개 학급 총 6개 학급을 선정하여 두 차례 학생들과의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조사 결과

가. 교사 및 학생 설문조사

2010. 11. 24.과 같은 달 26. ○○고등학교 전체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폭력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에서, 학생들은 ‘폭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폭력적 훈육’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사들은 무응답(=응답거부)층이 40% 이상(43.4~47%)을 차지했지만 역시 ‘폭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폭력적 훈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응답과 동의한다는 응답이 양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등학교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 체벌 현황을 묻는 질문에서, 학생의 99.2%가 〈떡매 맞기〉, 〈엉덩이/종아리 회초리 맞기〉, 〈손바닥 회초리 맞기〉, 〈손, 엉덩이, 종아리 이외 부분 회초리 맞기〉 등의 체벌을 경험하였다고 답하였다. 특히 〈떡매 맞기〉의 경우에는 지난 1년 동안 10회 이상 맞아 본 경우가 전체의 8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손이나 주먹으로 얼굴이나 머리 맞기〉,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아무데나 맞기〉, 〈서로 때리기 또는 머리 부딪히기〉 등의 체벌을 경험한 학생도 전체의 1/3이상으로 조사되었다. 교사들은 지난 1년간 직접체벌을 시행한 적이 있는 교사는 72.3%로 나타났으며, 〈떡매 때리기〉를 한 비율이 67.5%로 가장 높았으며 떡매로 10회 이상 체벌한 경우도 전체의 42.2%를 차지하였다.

3) 학생들은 체벌을 당한 사유에 대해 〈학습태도가 나빠서〉와 〈학교에서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수업시간 중에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성적이 나쁘다고〉, 〈선생님의 지시

를 따르지 않았다고》 등의 응답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사들은 학생들을 체벌한 사유에 대해 〈학교질서를 유지하고 일반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와 〈수업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4) 교사들의 체벌 기준에 대해 학생들의 49.5%가 교사들이 일관된 체벌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반면, 교사들은 67.4%는 〈일관된 체벌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체벌 시의 감정개입 여부에 대해 학생의 47.2%가 교사들이 〈감정적으로 체벌을 한다〉고 답한 반면 교사는 1.2%만이 〈감정개입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생의 49.5%가 〈잘못에 비해 체벌이 너무 심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교사의 경우에는 3.6%만이 〈체벌을 심하게 가했다〉고 응답하여 학생과 교사 간에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학생과 교사 모두 대안적인 지도방안 개발과 성적위주의 교육풍토 개선에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5) 체벌이나 단체기합 후 어떤 느낌을 가지느냐는 질문에 대해 학생들의 70.6%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고, 〈학교에 가기가 무섭고 싫었다〉, 〈억울하고 화가 났다〉는 답변의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나. 1차 교사 면담 결과

2010. 12. 1.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실에서 진행된 교사대표 7명과의 면담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떡매”는 알려진 것 보다 얇고 가벼워서 소리만 크고 아프지는 않으며, 줄음을 깨워주는 정도의 타격이어서 어떤 학생들은 스스로 일어나서 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떡매에 의한 체벌은 학교에서 행해지는 일반적인 체벌에 비해 오히려 교사와 학생간의 감정적인 거부감을 줄여주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2) ○○고등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구도심이어서 과거 명성에도 불구하고 입학 시에는 신도시의 신흥명문 학교에 비해 성적이 좋지 않은 학교로 전락하였으나 학교의 엄격한 훈육과 교사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입학 후 1년이 지난 시점의 평가에서는 수원시 내 25개 인문계고등학교 중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대부

분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러한 학교의 규율과 전통을 선호하여 입학하고 있으며, 따라서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를 체벌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해가 된 사안으로 생각한다.

3) 한국사회에서는 고등학교 3년이 사실상 인생을 결정하므로 ‘훗날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지금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과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므로, 이를 일반적 폭력과 같은 범주로 보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며, 특히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선정적으로 발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 학생 면담 결과

2010. 12. 2. 학년별로 2개 학급의 학생들을 ○○고등학교 소강당에 소집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학생들에 대해 1:1 방식으로 면담하였고, 같은 달 16. 다시 2학년 2개 학급의 학생들을 면담하였다. 학생들은 어떤 교사가 어떤 특성의 체벌을 하는지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고등학교의 체벌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교사들이 “떡매”가 알려진 것 보다 얇고 가벼워서 소리만 크고 아프지는 않으며 졸음을 깨워주는 정도의 타격”이라고 말하였다면, 그것은 맞아보지 않아서 하는 얘기이며, 교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3~5대 정도 떡매를 맞으면 거의 예외 없이 맞은 부위에 피멍이 든다.

2) 오○○, 임○○ 교사가 주로 떡매로 체벌을 심하게 가했으며, 윤○○ 교사는 주로 뺨을 때렸으며, 백○○, 박○○ 교사는 주로 손발을 이용해서 심하게 구타하였다. 윤○○, 유○○, 남○○ 교사는 참기 어려운 면박과 모멸감을 자주 주었다. 단지 시험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실업계로 전학 가라”는 비하와 함께 체벌한 경우, 청소시간에 화장실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체벌한 경우,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감독교사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체벌한 경우, 특별한 계기 없이 단체기합을 받은 경우 등의 체벌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3) 체벌을 당한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교사들이 교육적 목적으로 체벌을

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억울하고 분한 느낌이 많았으며 반항심과 증오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라. 2차 교사 면담 결과

2010. 12. 8.과 같은 달 16. ○○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실 등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체벌이 심한 교사로 언급한 오○○, 임○○, 윤○○, 백○○, 박○○ 교사, ○○고등학교장 및 교감을 면담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오○○ 교사는 보통 3대 이내의 락매 체벌을 하였으나, 이○○ 학생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30대 이상 락매 체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임○○ 교사는 통상 3대를 기준으로 락매 체벌을 하였으나, 박○○ 학생에 대해서는 락매로 10대 체벌한 사실이 있고, 문○○, 최○○ 학생에 대해서는 발길질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윤○○ 교사는 야간자율학습시간에 졸거나 떠드는 학생이 있을 경우 세 차례 주의를 주었는데도 시정을 하지 않으면 락매로 1대 정도 체벌을 하였고, 경우에 따라 꿀밤처럼 손바닥으로 머리를 한 두 차례씩 때린 적은 있지만 따귀를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4) 백○○ 교사는 일년에 10회 이내로 주로 손으로 뒤통수를 때렸고, 구체적인 일시는 기억할 수 없지만 주먹과 발로 학생들을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박○○ 교사는 학생들에게 락매 체벌, 가슴 및 어깨 치기 등을 한 사실이 있으나, 복부를 강타한 적은 없으며 발길질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책상을 찬 것에 학생이 맞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6) ○○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은 교사들이 락매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이 적정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교육 목적의 체벌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일명 락매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후 학년부장들에게 체벌 수준을 확인하였는데, 숙제하지 않은 경우 2대, 수업시간에 졸기 3대 등으로 락매를 활용한다고 하여 락매를 회수하였을 뿐 심각한 체벌이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도교육청의 조치 내용

○○도교육청은 2010. 10. 22.부터 같은 달 27.까지 ○○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여, 이번 때때 체벌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간제 교사에게 대해 징계,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 관련 교사들에 대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교육청 감사의 내용은 이번 때때 체벌 사건 피해학생의 1·2차 피해에 대한 조사로 한정되었던 것이어서 ○○고등학교의 체벌 관행 전반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없었다.

5. 판단

가. 기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고,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1은 당사국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등을 포함한 학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제37조는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약내용에 따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1차(1996년) 및 제2차(2003년)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시 부모와 교사들이 체벌을 교육의 수단으로 널리 인식하고 있는 등 체벌이 지속되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최종권 해를 통하여 우리 정부에게 가정, 학교 등에서 체벌을 금지하는 입법적 조치 등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체벌은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을 양성할 위험이 크고 학생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금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2002. 9.).

나. 판단

1) 위원회 조사결과에 기초할 때,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때때 또는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체벌하는 행위가 관행처럼 존재해 왔던 것은 사실로 인정되며, 이는 「헌법」 제12조로 보장된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학교장 및 교감, 그리고 교사들과의 면담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교사들은 체벌이 자율적 주체로서의 학생의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당국의 경우 일명 때때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자 ‘학교쇄신 결의대회’를 열어 때때를 회수폐기하고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 시행 등 나름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준의 대책만으로 오랜 기간 동안 관행처럼 굳어온 체벌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도교육청은 감독기관으로서 ○○고등학교의 체벌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여 올바른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를 지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했을 것이나, ○○○도교육청의 특별감사는 문제제기 된 학생에 대한 체벌정위와 이 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2차 모욕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체벌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는 스스로의 인권과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 및 자발적으로 학교규율을 정하도록 하는 계기를 부여하고, 교사들에게는 학생들을 억압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교육적으로 온당한지를 성찰하는 계기 및 인권친화적면서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고, 학부모에게는 자녀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새기고 학부모로서 견지해야 할 태도와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위원회는 ○○○도교육청이 해당 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학교에서 체벌 관행

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까지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2) ○○고등학교 교사들의 학생 체벌행위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진술이 명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의 학생들이 교사 오○○, 임○○, 윤○○, 백○○, 박○○의 학생 체벌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들 교사들도 때때 또는 신체를 이용한 체벌 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있는바, 교사들의 이러한 행위 역시 「헌법」 제12조로 보장된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체적 체벌행위가 확인된 오○○등 5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처분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2. 1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최윤희 위원 김양원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

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9조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 법정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8조 ②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내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3. 교육기본법

제18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4. 기타

1

2009. 9. 14.자 08진인2316결정 [소방서 구급대원의 의료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 [1]** ○○○○소방서장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 [2]** 피진정인 1의 감독기관인 ○○○○도지사에게 주문 1항의 권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 [3]** 소방방재청장에게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구급차 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피진정인 2가 다른 응급구조사의 탑승 없이 홀로 긴급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2조 제1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참조조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소방기본법」 제35조,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일부개정) 제9조, 「소방공무원법」 제1조 및 제27조

【진 정 인】 남○○

【피 해 자】 안○○

【피진정인】 1. ○○○○소방서장
2. 이○○

【주 문】 1. ○○○○소방서장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 1의 감독기관인 ○○○○도지사에게 주문 1항의 권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한다.
3. 소방방재청장에게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119 구급대원인 피진정인 2는 응급구조사 없이 혼자 출동하여 피해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진정인의 처남인 피해자가 2008. 4. 25. 01:30경 심장병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처인 최○○이 119에 신고를 하여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응급치료사도 없이 운전 소방관 1인만 출동하여 피해자에 대한 산소호흡기 등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10여 분 동안 심장이 멈춰 뇌손상을 입었고 지금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 요지

1) 피진정인 1의 주장요지(○○○○소방서장)

피해자를 이송한 피진정인 2(지방소방장 이○○)는 ○○119지역대에 근무하고 있으며, ○○119지역대는 ○○○○소방서 문의119안전센터 소속의 119지역대로 ○○군 ○○면 및 인근지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다. ○○119지역대는 소방펌프차량과 구급차를 1인이 운영하며, 화재 및 구급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으로 최소한의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다. 현재 119지역대는 응급처치보다는 신속한 이송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며, 소방관 1인이 출동해야 하는 지역 구급대의 한계로 응급처치와 운전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하며 사실상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불가능하다. 사건현장과 가장 가까운 소방서로 응급구조사가 탑승할 수 있는 구급대는 사건현장에서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문의 119안전센터였으며, 사건 당일 시간이 야간인 점을 고려하면 현장도착 시간이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해 ○○119지역대는 현장에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송시간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위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한 이송이 이루어질 수 있었기에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구급대가 출동한 것이다.

2)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소방서 지방소방장 이○○)

피해자를 이송한 피진정인 2는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며 화재시 소방차 출동과 응급환자 발생시 구급차 출동을 겸직해야 되는 ‘나홀로 소방관’이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심야 시간대로 취침 중에 상황실 지령을 받고 출동하였으며 현장에 도착하니 피해자가 의식이 명확치 않고 통증에 반응하는 상태였으며 호흡맥박이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자택과 병원간 거리가 25km나 되어 시간을 지체할 경우 심장정지가 예상되는 긴급환자로 판단하였고 혼자서 운전과 응급처치를 병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가능한 최고 속도로 성모병원에 도착하였다. 병원 도착시 피해

자는 심정지 상태였다가 성모병원 의료진의 전문응급 처치술로 심장이 다시 살아난 것을 확인하고 귀소하였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출동·이송기록, ○○○ 소방서가 제출한 전국 및 도내 119지역대 인원 현황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8. 4. 25. 01:54 ○○소방본부는 피해자의 처 최○○의 구급출동 신고를 접수한 후 같은 날 01:55 ○○119지역대에 출동 지령을 내렸다.

나. ○○소방본부로부터 출동지령을 받은 피진정인 2는 2008. 4. 25. 01:56 에 출동하여 같은 날 02:05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를 구급차에 탑승시킨 후 같은 날 02:08 현장을 출발하여 02:30에 ○○○○병원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병원 측에 인계하였다.

다. 사건 당시 피진정인 2는 1인 근무자로 혼자 출동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관계로 이송 도중 피해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했으며, 병원 도착시 피해자는 호흡, 맥박, 혈압 모두 측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병원 의료진의 전문 응급 처치술로 심장이 다시 살아났으나 뇌기능 손상으로 현재까지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라. 2008년도 1월 현재 전국 도단위 119지역대 개수는 총 678개이며, 이 중 1명이 격일로 근무하는 지역대는 108개소이고, 1일 1명이 근무(2교대)하는

곳은 416개소로 ○○119지역대는 1일 1명이 근무하는 지역대에 해당된다.

5.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 2는 다른 응급구조사를 동행하지 않고 혼자 출동함으로써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못하였다.

「소방기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르면 소방대는 화재의 예방·진압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구급차 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2가 다른 응급구조사의 탑승 없이 홀로 긴급 출동한 행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헌법 제12조 제1항,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응급의료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이나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 등에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9. 3. 31.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119지역대 현황을 살펴보면 623개소 중 구급대원 2인 이하가 근무하는 380개소는 격일로 1명이 근무하거나 1일 1인이 교대로 근무하여 구급차 출동 시 불가피하게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하여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119지역대의 운영상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 및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으며, 또한 「헌법」 제34

조 제6항 및 제36조 제3항에서 기인하는 국민의 건강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당시 119지역대 현실이 구급대원 1인이 출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피진정인 2가 출동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신속히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다는 점, 또한 참고인 ○○○○병원 의사가 구급차에서 산소공급 등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제한된 공간과 상황에서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예측할 수 없고 피해자의 호전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어 응급조치 여부와 피해자의 뇌기능 손상과의 객관적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 2 개인에게 과실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권침해행위는 당시 구급대 편성 및 운영 등 제도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었으므로 피진정인 1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소방기관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충청북도지사는 피진정인 1에 대한 권고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소방방재청은 전국 소방기관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 및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9. 14.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가.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1.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3. 「소방기본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5. "소방대"라 함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의무소방원)

다.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용소방대원)

다. 제35조(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기 위하여 구급대를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방기본법 시행령」

가. 제12조(구급대의 편성·운영 등)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역의 인구·소방대상물·재난 발생빈도 및 지역특성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가.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 의무) 구급차 등의 운송자는 구급차등이 출동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켜야 한다. 다만, 의사나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86호, 2006. 6. 30. 일부개정)

가. 제9조(119지역대) ①소방서장은 해당소방서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119지역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119지역대를 설치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소방서·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기준(제5조·제8조 및 제9조 관련)

4. 119지역대의 설치기준

가.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 지역으로 관할면적이 30km² 이상이거나 인구 3천명 이상 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나. 농공단지·주택단지·문화관광단지 등 개발지역으로 인접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와 1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도서·산악지역 등 119안전센터의 신속한 출동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8. 소방공무원법

가.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27조(소방방재청장의 지휘감독)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지휘 감독한다.

2

2009. 10. 26.자 09진인1542·1543·1545·1546·1547·
1548(병합)결정 [명찰 고정 부착 신상노출 등 인권침해]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국 각 시·도교육감에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이 시정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함.

【2】 ○○중학교 등 6개 학교장에게,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명찰을 착용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큼. 따라서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므로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함.

【참조결정】 헌법재판소(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 판례 참조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7조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별지 피진정인 목록 기재와 같다.

【주 문】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전국 각 시도교육감에게,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이 시정되고 이와 관련된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이 개선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한다.

2. 피진정인들에게,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들은 학생들의 교복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고정식 명찰(이하 “고정명찰”이라 한다) 부착으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 밖에서까지 본인의 이름이 외부에 공개되어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이를 시정해주시기 바란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가. 진정인 주장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 주장

학생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이유는 교복분실 방지, 명찰파손 예방, 효율적인 학생생활 지도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 참고인 주장

1) 교육과학기술부

고정식 교복 명찰의 착용 규정이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제·개정되었다면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것은 학교 밖에서 교복 착용 시 학생의사와 상관없이 학생 본인의

이름이 공개되어 유괴·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 ○○광역시교육감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게 할 경우 학교 밖에서 학생의 이름이 밝혀짐으로서 학생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정식 교복 명찰 사용을 지양하라고 관내 학교에 지도하고 있다.

3. 관련규정

가.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사생활의 자유),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개인정보 자기결정권)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또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

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6헌마1401). 따라서 ‘성명’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진정인들은 학생들에게 형견재질의 명찰을 교복의 가슴부위에 고정하여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명찰에 적혀있는 이름은 등·하교 시에도 그대로 외부에 노출되고 있다. 피진정인들은 교복분실 방지, 명찰파손 예방 등의 실용적인 이유를 들어 고정명찰을 착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생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판단컨대, 학교 안에서 교복에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 또한 학생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소지가 있으나 이는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 내에서의 학생 생활지도 및 교육에 필요할 경우로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밖에서까지 고정명찰을 착용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까지 이름이 공개되도록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므로 교복에 고정명찰을 부착하도록 하는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피진정인 ○○중학교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명찰을 고정하여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개정함이 바람직하고, 나머지 피진정인들은 명찰부착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학교규칙 또는 학생생활규정에 위 취지에 맞게 명찰부착 방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향후 학생들의 인권과 관련된 규칙 또는 생활규정을 새롭게 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진정내용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공통된 부분이므로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이 결정의 취지에 맞추어 각급학교를 지도·감독 할 것을 함께 권고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9. 10. 26.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최경숙 위원 유남영 위원 문경란

위원 김태훈 위원 윤기원 위원 정재근 위원 황덕남

위원 조 국 위원 최윤희 위원 김양원

3

2009. 10. 26.자 08진인590결정 [의무사관 후보생 모집 신체검사시 병력공개]

병무청장에게 징병 신체검사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을 통한 검사가 진행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및 제21조(기록 열람 등)는 개인의 질병이 외부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타인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

【2】 2009. 2.월 초 의무사관 후보생 신체검사 시 사람 이름을 호명하며 ‘정신과 전문의의 추가진료를 받으라’ 방송으로 발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신검인의 사생활을 누설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해당 당사자의 정신질환관련 질병 가능성을 불특정 다수의 동종업종 종사자인 병원 또는 의대 출신들에게 누설한 것으로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조조문】 「병역법」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일부개정) 제11조(징병검사), 「의료법」 (법률 제9385, 2009. 1. 30. 일부개정)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진 정 인】 ○ ○ ○

【피 해 자】신검 당시 방송을 통해 호명된 신검자 3인

【피진정인】 1. 병무청장
2. 국군의무사령관

【주 문】 병무청장에게 징병 신체검사 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피진정인 2는 2009. 2.초 의무사관 후보생 신체검사 시 개인의 질병정보를 보호하지 않음으로써 신검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진정인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2009. 2. 초 피진정인 2가 주관하는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신체검사 과정에서 "○○○, ○○○, ○○○씨는 정신과 전문의의 추가 진료를 받으러 검사장으로 오라." 는 방송을 들었다. 당시 개방된 장소에서 한 줄로 선 상태로 신체검사를 받고 있었고, 신체검사를 받던 대상자들은 의대 출신이거나 같은 병원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위의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나. 피진정인 2의 주장요지(국군의무사령부 보건과)

2009. 2. 2.부터 같은 해 2. 7.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의무·수의사관 후보생 2,029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의무·수의사관 입영신체검사의 경우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인원에게 대한 검사를 진행해야하므로 동선을 줄이기 위해 넓은 공간에 모든 과가 함께 위치하여 있었다. 과별로 독립적인 공간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에는 제한되었으나, 정신과의 경우 가림막을 설치하여 개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고, 탈의가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공간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향후 방송을 통해 신검인을 찾을 경우 안내 데스크로 오도록 방송하고, 안내 데스크에서 개인에게 특정과로 가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진정인 주장 및 통화내용, 피진정 기관의 답변, 2009년 의무수의사관 신체검사 진행사진 등의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보면, 진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금지) 및 제21조(기록 열람 등)는 개인의 질병이 외부로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개인의 질병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으로 타인이 알게 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검 진행자 측 담당자는 개방된 장소에서 실시된 신검장에서 신검자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정신과 전문의의 추가진료를 받으러 오라고 방송함으로써 호명된 당사자의 정신질환관련 질병 가능성을 다수의 동종업종 종사자들에게 누설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를 위반함으로써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신체검사의 주관기관인 병무청장에게 징병 신체검사 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9. 10.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병역법」 (법률 제8852호, 일부개정 2008.2.29)

가. 제11조(징병검사)

- ③ 징병검사는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로 구분한다.〈개정 2006.10.4〉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외과·내과 등 신체의 모든 부위(部位)를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검사(임상병리검사)·방사선촬영(방사선촬영)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7.5.17〉

2. 「의료법」 (법률 제9386호, 일부개정 2009.1.30)

가.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나. 제21조(기록 열람 등)

-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30〉

4

2009. 11. 23.자 09진인1874결정 [판사의 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1】 통상적으로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를 나무라며 사용하는 말이며, 비록 진정인이 법정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고, 피진정인(○○지방법원 판사)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40대인 피진정인이 69세인 진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없음

【2】 법정지휘권이라는 것도 공복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공무원이 이를 국민들에 대해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하나, 피진정인은 법정지휘권 행사범위를 벗어난 위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음

【참조조문】

【진 정 인】 ○ ○ ○

【피진정인】 ○ ○ ○

【주 문】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사로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재판장

이었는데 2009. 4. 23. 16:30경 재판이 진행되던 중, 진정인이 법정에서 허락받지 않고 발언하였다는 이유로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 나오느냐”며 질책하였다. 40세가량으로 보이는 피진정인이 69세 노인인 진정인에게 ‘버릇없다’는 표현으로 질책한 것은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 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당시 진정인은 재판장 허락 없이 재판장과 피고대리인의 대화에 끼어들며 말을 하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법정예절을 지키라고 주의를 준 사실이 있다. 진정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었기에 법정예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절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에 엄히 주의를 주었다. 이는 재판장의 법정지휘권 행사이고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다만 진정인이 주장하는 그대로의 표현을 하였는지는 기억할 수 없고 법정예절을 지키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 참고인 ○○○ 변호사

참고인은 진정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당시 법정에 있었기에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 진정인의 주장은 사실 그대로이며 참고인도 당시 피진정인의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매우 불쾌하였다. 피진정인은 40대였고 진정인과 참고인은 70대였는데, 손아래 사람에게나 사용되는 ‘버릇없이’라는 말을 들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이러한 충격과 당시 대응하지 못한 자책감 때문에 참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를 사임하였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09.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호 법정에서 진정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변론이 진행되었는데 당시 재판에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이외에 원고 측 이종욱 변호사, 피고 측 이완근 변호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의 ○○○사무관이 참석하였고, 다른 방청객은 없었다.

나. 이튿날인 2009. 4. 24. 참고인 ○○○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을 사임하였다.

다. 피고 측 ○○○변호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무관은 당시 피진정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진정인은 ‘월간 ○○○○ 2009년 6월호’ 제256쪽에 ‘버릇없는 소송 당사자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수필을 기고하였는데 수필은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신중한 사법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마무리 지어졌다.

4. 판단

진정요지와 같은 진정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진정인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임에도 불구하고 법정예절을 지키지 않은 진정인에게 엄히 주의를 준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발언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과 사건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버릇없다”는 발언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통상적으로 ‘버릇없다’는 표현은 ‘어른에게 예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를

나무라며 사용하는 말이다. 따라서 비록 진정인이 법정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고, 피진정인이 재판장으로서 법정지휘권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40대인 피진정인이 69세인 진정인에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법정지휘권이라는 것도 공복의 위치에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진 권한인 이상 공무원이 이를 국민들에 대해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행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은 법정지휘권 행사범위를 벗어난 위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행정처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재판과정에서 국민들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1. 23.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위원장 현병철 위원 최경숙 위원 유남영 위원 문경란
위원 김태훈 위원 윤기원 위원 정재근 위원 황덕남<불참>
위원 조 국<불참> 위원 최윤희<불참> 위원 김양원

5

2009. 12. 28.자 09진인3871결정 [보호관찰학생 이중처벌에 의한 인권침해]

○○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고등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할 경우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결정요지】

- 【1】** 학생에 대한 보호처분과 징계가 이중처벌인지 여부
 학생(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 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고,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의 장이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임. 따라서 보호처분과 징계는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보호처분과 징계를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함.

- 【2】** 학생선도위원회에 법조인 등 외부인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학생의 징계절차는 학교폭력을 제외한 징계의 경우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 이에 따라 ○○고등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을 내부 교사만으로 구성하는 생활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학생선도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한 것에 잘못이 있거나 학칙인 생활규정이 관련법령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음.

- 【3】** 징계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 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생활규정」은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해당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

다.”(제70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진정한 또는 피해자에게 징계과정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소년법」 제1조(목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자치위원회의 구성), 「초·중등교육법」 제6조(지도·감독),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제20조(관장사무),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경덕공업고등학교 생활 규정」 제70조(징계의 심의)

【진 정 인】 최○○

【피진정인】 1. ○○공업고등학교장
2. ○○광역시교육청 교육감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주 문】 1. ○○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공업고등학교장이 학생을 징계할 경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공업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중 학생에 대한 이중처벌 및 학생선도위원회에 외부인을 두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한다.
3.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 1은 오토바이를 절취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피해자에 게

사회봉사명령을 함으로써 이중처벌을 하였으나, 인성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학생부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광역시교육청 및 교육과학기술부는 ○○공업고등학교가 학칙으로 징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면서도 징벌위원회에 법조인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과 징계위원회에서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이중처벌을 방지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공업고등학교장)

선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 및 학부모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징계처분이 확정적이고 피해자에게 징계가 있을 거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

2) 피진정인 2(○○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학생이 형사입건되어 범죄가 확정되면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학교의 자체 규정에 따라 교육적 차원의 선도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는 이중처벌과는 무관하다. 학교생활규정의 제정은 교육청의 승인사항이 아니고 학교 자율 사항이며, 학생징계절차는 학교폭력 사건의 경우 외부위원이 포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이외의 비행 학생 사건은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처리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공업고등학교측에서 제출한 자료, 사건 관련 교사의 진술서 및 경위서, ○○광역시교육청측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업고등학교는 학교법인 ○○학원이 설립한 사립고등학교이다.

2) 피해자는 2009. 8. 11. 오토바이 절도를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 9. 11.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봉사 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3) ○○공업고등학교 교감 이○○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 및 구두로 징계사실을 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진정인 및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는 제공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공업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므로 피진정인 1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사대상이 아니므로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따라서 피진정인 2는 사립학교장인 피진정인 1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피진정인 1에 의한 징계절차가 적절치 못할 경우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진정인 1의 피해자에 대한 징계조치 및 징계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학생에 대한 보호처분과 징계가 이중처벌인지 여부

학생(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나 지방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이고, 학생에 대한 징계는 학교의 장이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호처분과 징계는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보호처분과 징계를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학생에 대한 보호처분과 징계가 이중처벌이라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학생선도위원회에 법조인 등 외부인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학생의 징계절차는 학교폭력에 관하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며, 학교폭력 이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고 있다. 학교폭력의 경우 학부모, 판사·검사·변호사, 경찰공무원 등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외부위원으로 두도록 규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학교폭력을 제외한 징계의 경우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초·중등교육법」 제18조), 이에 따라 ○○공업고등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을 내부 교사만으로 구성하는 생활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선도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한 것에 잘못이 있다거나 학칙인 생활규정이 관련법령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학생선도위원회에 법조인 등 외부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징계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공업고등학교 생활규정」은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해당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제70조 제2호)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 또는 피해자에게 징계과정에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 및 「○○공업고등학교 생활규정」 제70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적별절차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진정인 1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에게 피진정인 1이 학생을 징계할 경우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공업고등학교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피진정인 3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피진정인 1을 관리·감독할 직접적인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진정인 3에 대한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고, 진정요지 나항 중 학생에 대한 이중처벌 및 학생선도위원회에 외부인을 두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고, 징계 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는 진정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12. 28.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유남영 위원 윤기원 위원 최윤희

【별지】 관련규정 목록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소년법[시행 2008.6.22.] [법률 제8732호, 2007.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 2009.8.9.] [법률 제9642호, 2009.5.8, 일부개정]

제12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③ 〈생략〉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09.8.9] [대통령령 제21675호, 2009.8.6, 일부개정]

제9조(자치위원회의 구성)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
4. 판사·검사·변호사
5.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초·중등교육법[시행 2008. 6.22] [법률 제8917호, 2008. 3.21, 일부개정]

제6조(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8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

교인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시행 2009.11.5] [대통령령 제21809호, 2009.11.5, 타법개정]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퇴학처분

② ~ ⑦〈생략〉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 2008.2.29]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당해 시·도를 대표한다.

제19조(국가행정사무의 위임)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다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 17. 〈생략〉

제35조(교육장의 분장 사무)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임받아 분장한다.

1. 공·사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2.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무

8. ○○공업고등학교 생활규정

제70조(징계의 심의)

1. 학생선도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선도위원회는 대선도위원회와 소선도위원회를 둔다.
 - ① 대선도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한 학생선도위원회로 한다.
 - ② 소선도위원회는 학생부장을 위원장으로 교무부장, 학년부장, 인성교육부장, 전문상담교사, 학생부교사, 해당담임으로 한다.
 - (2) 본 위원회는 정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 (3) 선도위원회의 역할은 사회봉사 이하의 사안은 소선도위원회에서 의결로 하고, 기타사항은 대선도위원회에서 의결한다.
2. 학생선도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해당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6

2010. 1. 25.자 09진인1801 결정 [공무원의 통화내용 무단 녹음]

○○시장에게 녹음용 전화기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피진정인 홍○○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함에 있어 그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음.

【2】 전화 녹음 파일은 진정인의 음성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전화통화 내용은 개인의 사상 및 신조 등 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개인 정보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피진정인이 업무상의 통화 내용을 파일로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후 전화 녹음을 하여야 함이 타당한 바, 피진정인 홍○○가 민원인인 진정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임.

【참조조문】

【진 정 인】 박○○

【피진정인】 1. ○○시장

2. 홍○○

【주 문】 피진정인 1에게 녹음용 전화기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피진정인 2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녹음용 전화기를 구입하여 시청에 비치하고 있다. 진정인은 2009. 5. 26. 09:40분경 ○○시청 직원인 홍○○와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홍○○는 민원인인 진정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 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 요지

녹음용 전화기는 2007. 5.부터 설치하였으며, 민선 이후 다양한 민원 증가 및 해결을 위하여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원의 증가만큼 분쟁의 소지가 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목적으로 시장실, 부시장실, 총무과장, 경제건설국장, 공보 담당 5개 부서에 녹음용 전화기를 설치하였다.

2009. 5. 26. 진정인과 통화 중 통화내용이 거칠어졌고 진정인이 통화 내용을 반복하여 홍○○는 책상 전화기에 설치되어 있는 녹음장치 버튼을 누르게 되었고 녹음 장치 작동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진정인에게 “녹음을 하고 있으니 하지 않은

말은 했다고 하지 말아 달라.”고 말하였다.

개인용 전화의 녹음장치는 쌍방간의 전화통화의 범위이므로 주민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사용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이 제출한 진정서,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및 녹음파일 등의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시청 시장실, 부시장실, 총무과장, 경제건설국장, 공보담당 부서에 녹취용 전화기를 설치하였다.

나. 2009. 5. 26. 진정인은 피진정인 2 와 진정인이 제기한 정보공개 등과 관련하여 전화통화를 하였고, 피진정인 2는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진정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정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5. 판단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파일을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함에 있어 그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의2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집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2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진정인의 동의 없이 진정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들은 개인용 전화 녹음장치이므로 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기관이 설치한 녹음 전화기는 민원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라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며, 피진정인 2가 사용한 전화 녹음장치 또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피진정인 2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 2가 전화 녹음 장치로 녹음한 파일은 진정인의 음성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특히 전화통화의 내용은 개인의 사상 및 신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은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피진정인 2가 업무상의 통화 내용을 파일로 취득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진정인 2가 민원인인 진정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한 행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위반하여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향후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1에게 녹음용 전화기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피진정인 2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2010. 1. 2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장주영

7

2010. 1. 25.자 09진인4026 결정 [공무원의 욕설에 의한 인권침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피진정인의 욕설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격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며,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음.
- 【2】** 사인간의 다툼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욕설이 인권침해와 거리가 먼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사적 다툼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의 구성원임이 분명하고 또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전화한 이유가 정보비공개결정을 통보한 것이 원인이 되어 본인의 재직 중 초과근무 등을 문의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업무수행이 아닌 단순히 사인간의 다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3】** 정당행위인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친절의무,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우발적으로 행한 욕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24초 대화 중 피진정인은 대화 대부분을 욕설로 하였고, 또한 욕설의 종류, 욕설의 내용 등이 진정인의 업무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령상, 업무상 또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

고, 진정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방어하기 위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진정인이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배○○

【주 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의 요지

진정인은 2009. 10. 14. 정보공개를 신청하여 이에 대한 질의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추진단 실무자인 배○○에게 전화하였는데, 배○○가 다짜고짜 “정신병자 아니냐?” 라는 등의 욕설을 퍼부어 진정인의 인격을 모욕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1) 진정인은 2009. 1. 2. 사무보조원으로 채용되었으나 무단결근, 직원과의 마찰, 사무실 근무분위기 저해, 조직의 이미지 훼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같은 해 8. 31. 계약을 해지하였다. 진정인은 계약해지 되기 전부터 행정안전부 소속의 염○○와의 감정싸움 후 행정안전부 복무점검 부서인 조사담당관실에 수

십 차례 전화를 걸어 염○○의 징계 또는 인사조치 등을 요구하여 오다가 2009. 8. 21.부터 무단결근하면서 상급자인 피진정인, 과장, 단장 등에게 대량으로 SMS문자를 발송하는 등 사무실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2) 이에 진정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2009. 10. 22.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복직 결정을 받았고, 2009. 10. 26. 복직된 후 2009. 11. 6. 징계절차를 거쳐 2009. 11. 9.부터 2009. 12. 31.까지 정직처분을 받았다.

3) 진정인은 해고를 당한 후 피진정인 및 관련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 업무방해성 전화를 하였고, 경찰청,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국민신문고 등 법이 허용하는 민원, 진정 등의 제도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제기하였다.

4) 2009. 10. 13.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업무처리가 왜 이렇게 더럽게 늦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2009. 10. 14. 전화를 하여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을 내 놓으라고 소리를 질러댔에 따라 피진정인은 이미 수차례 답변한 바 있는 “출장과 초과근무를 했던 시간과 장소 등의 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자 “공무원과 똑같이 받아야 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진정인은 “한번만 더 업무를 방해하면 부모에게 항의하겠다.”는 뜻을 전하자 진정인이 “협박하느냐?”며 소리를 질러 쌍방간에 전화로 싸움을 하게 된 것이다.

5)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단 한차례의 욕설을 녹취한 것을 근거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인의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우발적으로 행한 단 한차례의 욕설일 뿐이고, 이는 인권침해와 거리가 먼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사적 다툼일 뿐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진정인이 제출한 피진정인과의 24초 분량의 전화통화 녹음파일, 피진정인의 서면진술서, 행정안전부의 제출자료 등의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추진단은(이하 “추진단”이라 한다) 2004. 11. 15. 「○○실무추진단 규정」(대통령훈령 제131호)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속의 임시TF로 설립되었고, 피진정인을 포함한 그 소속원은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이다.

나. 추진단은 ‘사무보조원채용계약’에 따라 진정인을 사무보조원으로 채용하여 2006. 2. 23.부터 2009. 12. 31.까지 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나, 2009. 1. 2. 재계약 후 2009. 8. 31. 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나 2009 10.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복직결정이 있음에 따라 2009. 10. 26. 진정인을 복직시켰고, 2009. 11. 6. 징계결정에 따라 2009. 11. 9.부터 2009. 12. 31.까지 진정인에 대하여 정직처분을 하였다.

다. 피진정인은 2009. 10. 14. 진정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진정인에게 “무슨 민원행위야? 쌍년아, 씨부랄 년, 아니야 이건 완전히 정신병자여 너! 정신병자니까 욕을 하지 이년아! 나 녹음을 하든 지랄을 하든 맘대로 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5. 판단

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격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며,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바, 피진정인의 욕설이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인간의 다툼인지 여부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대한 욕설이 인권침해와 거리가 먼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사적 다툼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진정인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국가기관의 구성원임이 분명하고 또한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전화한 이유가 정보 비공개결정을 통보한 것이 원인이 되어 본인의 재직 중 초과근무 등을 문의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업무수행이 아닌 단순히 사인간의 다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정당행위인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친절의무, 품위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지속적인 업무방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우발적으로 행한 욕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같이 24초 대화 중 피진정인은 대화 대부분을 욕설로 하였고, 또한 욕설의 종류, 욕설의 내용 등이 진정인의 업무방해를 저지하기 위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행위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행위는 법령상, 업무상 또는 사회상규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진정인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방어하기 위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진정인이 「헌법」 제10조

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 2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장주영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국가공무원법[시행 2009.2.6] [법률 제9419호, 2009.2. 6.개정]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규정(대통령훈령 제131호 신규제정 2004. 11. 15.)

제1조(목적)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을 둔다.

제3조(구성 등) ① 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두되, 단장은 행정자치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단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추진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8

**2010. 3. 22.자 09진인5202, 09진인5203, 10진인384,
10진인385, 10진인391(병합)결정 [군의문사진상유가족
에 대한 국회출입금지]**

피진정인에게, 국회청사 출입통제와 관련된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국회의사당에 대하여 청사출입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하더라도 헌법상 대원칙인 법치국가 원리 또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르면 국민들의 국회출입 권리를 제한 또는 통제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기준과 절차 및 통제기간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청사관리 규정」은 출입통제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통제기간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대상자 선정과 출입통제 기간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될 가능성이 높음.

【2】 2009. 9. 23. 고승덕 의원의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된 내용이기에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국회청사관리규정 제3조

【진 정 인】 1. 윤○○ 2. 조○○ 3. 손○○ 4. 이○○ 5. 이○○

【피진정인】 국회사무총장

【주 문】 1. 진정요지 나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에게, 국회청사 출입통제와 관련된 「국회청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출입금지 대상자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출입금지 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은 군경의문사 유가족들에 대하여 국회청사 출입을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및 통제기간도 정하지 않은 채 행하는 국회청사 출입통제는 인권침해이다.

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이 규명된 사망자들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국회의사당은 국가중요시설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회를 가장하여 입청한 후 영업행위를 하거나, 회의장 또는 사무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농성하는 등 청사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청사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가. 2008. 11. 26. 신○○ 국회의원은 “의원사무실 무단침입사건 재발방지대책 수립 요청” 공문을 피진정인에게 발송하면서 2008. 11. 18. 관련자 14명, 2008. 11. 25. 관련자 5명을 선정하여 무단침입자 명단으로 제출하였고 피진정인은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에 대하여 국회청사 출입통제 조치를 취하였다.

나. 「국회청사관리 규정」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는 “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이하 “청사출입 통제”라 한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사출입 통제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기간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다. 실무적으로 의원실 등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청사출입 통제를 요청할 경우 피진정인이 그들에 대한 출입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청사출입 통제를 요청한 의원실 또는 부서에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즉시 출입금지를 해제하고,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차기 국회가 구성되는 시점에 해제하고 있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의 처벌은 형사상의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불이익 또는 고통이 되는 일체의 제재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진정인들에게 국회출입을 통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국회청사관리 규정」은 제3조(청사출입의 통제)에서 “의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사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사출입 통제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실무적으로 의원실 등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청사출입 통제를 요청할 경우 피진정인이 그들에 대한 출입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청사출입 통제를 요청한 의원실 또는 부서에서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즉시 출입금지를 해제하고,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차기 국회가 구성되는 시점에 해제하고 있다. 따라서 진정인들의 경우 최대 2012. 5.까지 국회 출입이 통제될 수도 있다.

국회의사당은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국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청사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청사출입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헌법상 대원칙인 법치국가 원리 또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르면 국민들의 국회출입 권리를 제한 또는 통제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그 기준과 절차 및 통제기간이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청사관리 규정」은 출입통제 대상자 선정기준, 절차 및 통제기간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과 출입통제 기간이 자의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는 「헌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요지 나항은 2009. 9. 23. 고승덕 의원의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된 내용이기예 국회의 입법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가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진정요지 나항은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3. 2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장주영

9

2010. 4. 12.자 09진인752결정 [공직기강교육 장소에서
경위서 및 사유서 낭독 강요 등에 의한 인권침해]

피진정인 및 피진정기관 소속 인사 담당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관이나 윤리적 판단도 포함됨. 양심의 자유에는 자신의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 즉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하고 침묵의 자유는 양심을 언어에 의해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함.

【2】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교육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경위 설명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다짐의 변’을 발표하도록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9조, 「청원경찰법」 제5조,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 제19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2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등

【진 정 인】 하○○

【피 해 자】 구○○

【피진정인】 ○○○○○○○○장

- 【주 문】 1. 피진정인 및 피진정기관 소속 인사 담당 직원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해자는 ○○○○○○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2009. 1. 20.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였는데 피진정인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파면하겠다고 하는 등 강제로 사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사표제출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음에도 의원면직 처리를 하였다.

나. 2009. 2. 초순경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진정인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잘못된 점과 중징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진정인은 이로 인해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다.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건에 대해 직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교육장소에서 사유서를 낭독하도록 강요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청원경찰로 재직 중이었던 피해자는 2009. 1. 19. 심야 취약 근무시간에 동료와 시내 당구장에 가기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복무 담당자에게 적발되었다. 피진정기관은 각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국가예산으로 청원경찰을 배치·운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위 피해자의 행위는 청원경찰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중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로서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사안이나, 피해자는 징계위원회 회부 이전에 의원면직을 선택한 것으로 이는 엄연한 본인의 권리 행사이며 피진정인이 사표제출을 강요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온당치 않다.

2) 이렇듯 중징계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조치에 앞서 피해자의 가정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진정인과의 면담과정을 거치며 피해자의 인사에 관해 심사숙고한 것이다.

3) 기관장으로서 결단을 내리기에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고 재발방지 등을 위하여 복무기강확립교육(당사자의 경위 설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다짐의 변 포함)과 기관장 경고로 이 사건을 일단락 짓기로 결정하고 인사관리계통에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처음에는 수용하는 자세였으나 추후 어떤 사유에서인지 불응하여 교육은 취소되었고, 2009. 3. 5. 피해자에 대하여 의원면직 조치가 완료되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근무시간인 2009. 1. 19. 24시경 〇〇시 〇〇동 소재 당구장에 출입하여 불시 당직 점검에 적발되었다.

나. 위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피진정기관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관련 예규(행안부 206호, 2008.12.5.)」에 의거 국가공무원의 징계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피해자의 행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별표 1〕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직무태만’이나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나,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인 ‘파면’에만 해당되고,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 2에 의거 ‘파면’은 ‘중징계’사안으로 동법 제2조 제5항 및 「국가공무원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피진정인이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되어있다.

다. 2009. 1. 29. 피해자는 사건 경위 및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같은 해 2. 2. 피해자는 ‘본인은 2009. 2. 2.자로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라. 2009. 2. 초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부인인 진정인과 면담을 하였는데 면담 내용은 주로 피해자의 잘못에 관한 것이었다.

마. 2009. 2월 경 피진정인은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진정인에 대한 기관장 경고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직기강교육 석상에서 ‘당사자의 경위 설명과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다짐의 변 등’의 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인사담당 직원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바. 피해자는 위 제안을 거부하였고 2009. 3. 5. 피해자는 앞서 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의원면직 처리되었다.

사. 피해자는 2009. 3. 9. 사표는 강제에 의해 제출된 것이니 사표수리를 취소 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피진정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진정인의 사직서 제출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파면 등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었던 점, 2009. 2. 2. 피해자가 자필로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이에 따라 피진정인이 2009. 3. 5. 피해자를 의원면직 처리한 점, 피해자가

2009. 3. 9.에 발송한 내용증명서는 이미 의원면직 처리된 이후에 발송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 3. 5. 피진정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의원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의원면직 과정에서 피진정인의 강요 등이 있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나. 진정요지 나항에 대하여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배우자인 진정인까지 불러 면담을 한 행위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행위가 중징계 요구 사안이나 직원들의 탄원서 및 중징계 사안이 가족에게도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문제이기에 피해자의 중징계 요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인에게 면담을 요구한 점, 면담 내용은 피해자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것으로 진정인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나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진정요지 다항에 대하여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관이나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에는 자신의 양심을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 즉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하고 침묵의 자유는 양심을 언어에 의해 표명하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말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진정인은 피해자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공직기강교육 석상에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위 설명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다짐의 변’ 등을 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는바, ‘경위 설명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다짐의 변’은 피해자의 내심에 있어서 윤리적 판단 등 ‘양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공직기강교육 자리에서 표명하도록 한

행위는 피해자의 침묵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진정 기관의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은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함께 근무했던 많은 동료들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낱낱이 밝히고 반성하는 다짐까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심한 굴욕감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요구가 피해자에 대한 배려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중징계 결정에 의해 파면당할 수도 있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제안 또는 요구는 사실상 강요하는 효과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교육장소에서 공개적으로 ‘경위 설명 및 잘못된 부분에 대한 다짐의 변’을 발표하도록 요구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12.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장주영

10

2010. 4. 26.자 09진인1359결정 [욕설 및 위협에 의한 인권침해]

○○동 주민센터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친절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및 제55조에는 공무원의 친절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2】 피진정인은 서로 격한 감정에서 막말 등이 오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내가 돈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여 버리고 개 값을 물어 준다”는 등의 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및 제55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지방공무원법」 제51조, 제55조

【진 정 인】 임○○

【피진정인】 이○○

【주 문】 ○○동 주민센터장에게,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친절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4. 17. 오후 4시경 사당역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 거리에 풍조를 버렸다. 피진정인을 포함한 단속 공무원들이 나타나 진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감히 공무원을

데리고 놀아! 너 같은 놈은 뜨거운 맛을 봐야 된다. 경찰에 신고해서 6개월간 구속시켜 버리겠다. 너 같은 시발 놈은 죽여 버려야 된다. 내가 돈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여 버리고 개 값을 물어준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무서운 정부인지 모르냐, 너 같은 새끼는 사람취급도 안 한다. 너 한번 당해봐라”라고 폭언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2009. 4. 17.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진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중, 진정인이 신분증을 미소지 하였다가에 위반 확인서에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진정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단속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맞는지 확인하고자 하였고 피진정인의 공무원증 및 신분증, 팀장의 신분증까지 확인하여 주었는데도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위와 같이 진정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이 오간 것이며, “내가 돈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여 버리고 개 값을 물어준다.”,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무서운 정부인지 모르냐”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서로 격한 감정으로 막말들이 오고 간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2009. 4. 17. 진정인은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였고 ○○구 ○○동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에게 “내가 돈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여 버리고 개 값을 물어준다”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무서운 정부인지 모르냐”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및 제55조에는 공무원의 친절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피진정인은 서로 격한 감정에서 막말 등이 오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내가 돈만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여 버리고 개 값을 물어 준다”는 등의 언사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 및 제55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장인 ○○동 주민센터장에게, 피진정인 및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친절교육 및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장주영

11

2010. 4. 26.자 09진인3039결정 [징병검사기준으로 인한 장애인 인권침해]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징병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개정하여 중증 시각장애인이 다른 중증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서류심사 및 필요시 정밀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병무청장에게 위 병역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중증 시각장애인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징병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중 정밀신체검사를 수행할 경우, 차량편의 제공, 여비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 【1】**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근거리 이동조차도 수월하지 않은 중증의 시각장애인이 일반 징병검사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개인별 심리검사부터 신장·체중 측정과 시력 측정 등의 기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임. 이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범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가 규정한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임. 따라서 시각장애의 특성을 감안하여 징병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할 것임.
- 【2】** 병무청이 시각장애의 경우에만 유독 중증장애인까지 징병검사를 하는 이유는 ‘시각장애 기준과 병역 판정의 기준이 상이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측면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각장애 판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됨.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각장애판정 절차를 탄실히 하도록 노력하거나, 병무청 스스로 병사용 진단서와 관련 의무기록 등 서류심사를 보다 면밀히 시행하고 부정하게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것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병무청이 중증시각장애인에게 까지 기초적인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i)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중 입영판정을 받은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 ii) 그러면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간 동안 부정하게 판정받은 시각장애인이 입영을 면제받은 사례에 관해 최근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상기하면, ‘공정한 병역 처분’이라는 행정목적에 실효성있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참조조문】

【진 정 인】 함○○

【피 해 자】함○○

【피진정인】 병무청장

【주 문】 1. 국방부장관에게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징병검사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개정하여 중증 시각장애인이 다른 중증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서류심사 및 필요시 정밀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2. 병무청장에게 위 병역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도 중증 시각장애인의 자존감을 지키면서 징병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3. 병무청장에게 지방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중 정밀신체검사를 수행할 경우, 차량편의 제공, 여비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1)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 함○○은 이미 6세 때 중증시각장애인으로 판정을 받고 생활해 왔는데, 2009. 8. 피진정인 병무청장(○○지방병무청)이 피해자에

게 징병검사의 수검을 통지해 와서 장애인 카드 및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일반인과 똑같이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여 부당하다.

2) 또한, 피진정인은 병역면제 결정이 필요한 중증 시각장애인의 정밀검사를 위한 검사장비를 사실상 서울 소재 중앙신체검사소에만 구비하고 있어서 지역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부당하다.

2. 각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음.

나. 피진정인

1) 징병검사는 i) 피검자가 개인신상 및 질병상태 정보 등을 등록하고, ii) 병무청 소속 의료종사자가 개인별 심리검사, 방사선 검사, 임상병리 검사, 혈압검사, 신장·체중 측정, 시력 측정 등의 기초검사를 실시하고, iii) 각 과목별로 징병전담의사가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고, iv) 수석 징병전담의사가 각 과목별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v) 적성분류관이 학력, 자격면허 등 자질을 검토하여 군복무 부적격 사유를 확인하고, vi) 징병관이 신체등위, 자질 등을 종합하여 최종 병역처분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2) 시각장애인은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677호) 제93조의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징병검사의 대상이며, 이 규칙의 별표에서 정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판정한다.

3) 시각장애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의 규정에 따라 시력측정(만국식시력표에 의하여 측정된 교정시력) 결과만

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징병검사는 질병원인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등급에 의한 장애 정도와 징병검사의 질병 정도에 따른 등위판정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서 행정처리만으로는 공정한 병역처분이 곤란하다.

3.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

1) 피해자는 시각장애1급(시력 0.02)으로 육안으로 신문이나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할 수 없고, 지팡이 및 유도로 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안내견 등의 도움이 없이는 근거리 이동도 곤란한 수준의 중증장애인이다.

2) 시각장애인에 대한 징병검사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와 기준)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등 15개 유형의 장애인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병역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항 제7호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급 1급부터 6급까지로 등록된 사람은 원할 경우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 정도가 법 제12조 제4항에 따른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징병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병역법 시행규칙 제93조의2는 장애인등록자 중 징병검사 대상자로 지체장애 3~6급과 함께 시각장애 1~6급 만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이외의 장애등급 판정자들은 서류심사만으로 징병검사를 대체하고 있다.

3) 유독 시각장애에 대해서만 중증장애인까지 징병검사를 시행하는 것에 관하여 전문가 자문 결과는,

- ○○○○○○회 이○○회장은 ‘시각장애 기준과 병역판정의 기준이 다르고, 재현성이 있는 검사 결과를 위해서는 동일한 기계와 징병전담의가 측정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은 방식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 ○○대학 ○○○○병원 ○과 성○○교수는 ‘시각장애는 그 특성상 객관적인 소견이 없이도 환자가 주관적으로 안 보인다고 호소하는 경우에는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시유발 전위검사, 빛간섭 단층촬영, MRI, 형광안저 검사, 각막 지형도 검사 등 정밀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최근 시각장애인 등록자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이 적발되어 물의를 일으킨 데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 판정과정이 허술하여 따로 징병검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였다.
- ○○○○○○○○○○회 이○○부장은 ‘1980년대 장애인등록제도가 시작될 당시에는 시각장애인은 다른 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징병검사 대상에 속하지 않았으며, 장애인등록증 부정 발급자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1990년대에는 1차로 4~6급 시각장애인이 검사대상자에 포함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3급 중증 시각장애인까지 징병검사 대상자에 추가 편입되었다.’고 지적하였다.

4) 장애인등록증 부정 발급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판정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2010.1.1. 시행)’을 개정하여 시력측정시 ETRS 시력표나 저시각용 시력표를 사용하도록 한 것, 골드만시야 검사계와 험프리자동시야계 등 동적시야검사를 사용하도록 한 것, 객관적인 눈의 상태에 비해 시력의 현저한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안부 검사, 망막검사, 시신경검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 등 시각장애 판정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였다.

5) 병무청은 지난 2007~2009년 동안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통보한 시각장애인 등록자 849명 중 1~2급 시각장애인은 193명이었고, 이들 중 입영적격판정을 받은 사례는 제출 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을 요구한 사례 1건이라고 진술하였다.

6) 병무청은 지방병무청별 징병검사시 직권으로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정밀하게 다시 검증을 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출장경비는 원칙적으로 장애인이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이 차량편의를 제공하여 검사한 바 있다.

4. 판단

1)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근거리 이동조차도 수월하지 않은 중증의 시각장애인이 일반 징병검사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개인별 심리검사부터 신장·체중 측정과 시력 측정 등의 기초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당사자에게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다. 이는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규범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가 규정한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의 특성을 감안하여 징병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2) 병무청이 시각장애의 경우에만 유독 중증장애인까지 징병검사를 하는 이유는 ‘시각장애 기준과 병역 판정의 기준이 상이하여 별도의 검사가 필요’한 측면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시각장애 판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각장애판정 절차를 탄실히 하도록 노력하거나, 병무청 스스로 병사용 진단서와 관련 의무기록 등 서류심사를 보다 면밀히 시행하고 부정하게 시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것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병무청이 중증시각장애인에게 까지 기초적인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i)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중 입영판정을 받은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 ii) 그러면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간 동안 부정하게 판정받은 시각장애인이 입영을 면제받은 사례에 관해 최근 감사원이 감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상기하면, ‘공정한 병역 처분’이라는 행정목적에 실효성있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4.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장주영

12

2010. 5. 10.자 08진인4868결정 [일제고사 반대 학생 에 대한 인권침해]

피진정인 ○○초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사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1】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표현될 수 있음. 이와 같은 권리의 행사는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음.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학생이 특수한 사회적 신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의 열거된 사유 외에는 학생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하며 특히 학생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과 관련이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폭넓은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2】 수업시간 전에 평화적으로 행한 학생들의 시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문화를 알려준다는 이유만으로 피켓을 학생들의 동의 없이 수거한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21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3조, 제15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제20조

【진 정 인】 유○○

【피진정인】 1. ○○초등학교장
2. ○○초등학교장

3. ○○초등학교장
4. ○○중학교장
5. ○○초등학교장

- 【주 문】** 1. 진정요지 라. 2)항은 각하한다.
2. 피진정인 ○○초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사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3. 나머지 진정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진정인들은 2008. 10. 14.~10. 15.에 있었던 초등학교 및 중학교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2008. 12. 17. ○○시교육청으로부터 파면·해임된 5명의 교사를 지지하고 만나려는 학생들의 표현·집회의 자유, 신체·이동의 자유, 학습권 등을 아래와 같이 침해하였다.

가. 피진정인 ○○초등학교장에 대한 진정 요지

2008. 12. 19. ○○초등학교장 및 교직원들은 박○○ 교사와 함께 교실로 들어가려는 학생들을 제지하여 학생들의 이동의 자유 및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나. 피진정인 ○○초등학교장에 대한 진정요지

피진정인 ○○초등학교장은 2008. 12. 19. 복도 출입구 문을 막음으로써 김○○ 교사를 따라 나서는 학생들을 강제로 제지하였다.

다. 피진정인 ○○초등학교장에 대한 진정요지

1) 2008. 12. 18. 본관 건물의 중앙현관을 비롯해서 출입구 6개를 자물쇠로 봉쇄하고 층계 계단의 방화 셔터를 내림으로써 최○○ 교사와 함께 교실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출입을 막아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 및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학생들이 학교 수업시간 전에 시위를 하려고 만든 피켓을 피진정인 등이 수거하여 찢어버렸다.

라. 피진정인 ○○중학교장에 대한 진정요지

1) 2008. 12. 17. 이후 학교에서는 정문을 잠그고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여 한 명씩 들어가게 하는 등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2) 피진정인은 2008. 12. 17.부터 단축수업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6교시까지 수업을 하는 등 수업시간을 변칙적으로 바꾸어 운영하였고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에게 30분 정도 교실에 더 있다가 나가도록 하였다. 또한 도서관에서 수업을 하며 오후 5시 30분까지 고등학교 원서 작성을 빌미로 하교를 막고, 2008. 12. 19. 원래 가기로 한 체험학습을 갑자기 취소하는 등 변칙적으로 학사운영을 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

마. 피진정인 ○○초등학교장에 대한 진정요지

2008. 12. 17. 징계에 반대하며 탄원서를 냈던 학부모들이 학교에 찾아와서 정○○ 교사가 수업하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학교 측에서 직원들을 동원해서 학부모들의 사진을 찍었다. 학부모들의 요구로 사진을 지우기는 했으나 사진을 찍는 행위는 학부모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초등학교장

박○○ 교사는 2008. 12. 17.자로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교단에 설수 없는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17. ~ 12. 19. 일부 단체의 힘을 빌려 절차를 무시한 채 교실에 들어왔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2) ○○초등학교장

해직교사 김○○는 2008. 12. 17. ○○○○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고 김○○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6학년 4반은 이미 본교 교감이 학급담임을 맡고 있었다. 따라서 김○○ 교사가 6학년 4반을 방문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김○○ 교사는 2008. 12. 19. 그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교실에 입실하여 임시 담임교사의 수업권을 침해하였다. 해직교사 김○○가 교실 밖으로 나오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우르르 따라 나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염려되어 부득이 교실을 나와 복도를 이탈하려는 학생들을 제지하였다. 이는 학교장으로서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 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할수 있는 정당한 조치였다.

3) ○○초등학교장

가) 진정요지 1)항에 대하여

최○○ 교사는 2008. 12. 17. 해임징계 처분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아침 출근 투쟁의 일환으로 전교조 회원 10여명, 학생 8명, 시민단체 회원 약 15명, 보도진 등 상당수의 사람들과 함께 건물 출입구로 몰려왔다. 교장으로서 학교와 나머지 1,500여명의 학생들을 관리해야 했고 전체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혼란을 방지하여야 했기에 출입구를 잠가 이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나) 진정요지 2)항에 대하여

피켓은 교육상 당연히 수거하여 아동들에 대하여 시위문화를 제대로 교육해 주어야한다.

4) ○○중학교장

2008. 12. 16. 파면 집행 공문을 받은 윤○○ 교사는 같은 달 17. 이후 출근 투쟁을 한다며 매일 기자들과 3학년 1반 일부 학생들을 동원하여 함께 교문을 통과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외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것이다.

5) ○○초등학교장

2008. 12. 18. 학교장과 학부모들과의 면담에서 본교 최○○ 지방조무원이 사진 1매를 찍었으나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로 사진을 지우고 이를 확인해 주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 자료, 참고인 전화조사 자료, 해임처분취소 소송 관련 ○○행정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 교육감은 2008. 12. 17. 자료 ○○초등학교 박○○ 교사, ○○초등학교 김○○ 교사, ○○초등학교 최○○ 교사, ○○중학교 윤○○ 교사에 대하여 해임처분, ○○초등학교 정○○ 교사에 대하여 파면처분 등의 징계 처분을 하였다.

나. 2008. 12. 19. ○○초등학교 박○○ 교사는 학생 등과 함께 학교로 들어 가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려는 다른 교사들과 충돌이 있었다.

다. 2008. 12. 19. ○○초등학교 6학년 4반 교실에 들어간 김○○ 교사가 교실 밖으로 나오자 일부 학생들이 따라 나섰고 피진정인 ○○초등학교장은 이를 제지하였다.

라. 2008. 12. 18. ○○초등학교 최○○ 교사는 일부 학부모 및 학생들과 교실로 들어가려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초등학교장은 출입구를 잠가 통제하였으며 중앙 출입구에 학교 소속 교사들을 배치하여 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하였다.

마. ○○초등학교 학생 일부는 수업 시간 이전에 교문 앞에서 ‘선생님을 빼앗지 말아 주세요.’라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였으며, 피진정인 ○○초등학교장은 학생들의 동의 없이 피켓을 수거한 사실이 있다.

바. 2008. 12. 17. ○○중학교 윤○○ 교사는 일부 학생들과 교문을 통과하려고 시도하였고, 피진정인 ○○중학교장은 학교 정문에서 이들의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있다.

사. 2008. 12. 17. ○○초등학교 지방조무원 최○○이 정○○ 교사의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의 사진을 찍었으나 학부모들의 요구로 사진을 삭제한 사실이 있다.

5. 판단

가. 학습권 침해에 대하여

학습권은 「헌법」 제31조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가 규정한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진정요지 다. 2)항에 대하여

「헌법」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표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리의 행사는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학생이 특수한 사회적 신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의 열거된 사유 외에는 학생들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을 의미하며 특히 학생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 등과 관련이 있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폭넓은 의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수업시간 전에 평화적으로 행한 학생들의 시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학교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위 문화를 알려준다는 이유만으로 피켓을 학생들의 동의 없이 수거한 행위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진정요지 마항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초등학교 소속 직원이 일부 학부모의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나 학부모의 삭제요구를 받고 곧바로 해당 사진을 삭제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위 행위가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나머지 진정요지에 대하여

피진정인 ○○초등학교장, ○○초등학교장, ○○초등학교장, ○○중학교장은 2008. 12. 17. 이후 해직된 교사들에 대하여 학교 출입을 제한하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출입 및 이동을 제한하였다.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한지

여부는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고 교사 신분
이 아닌 자가 학교나 교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교를 관리하는 학교장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정당하다.

이러한 절차 없이 행한 해직교사들의 입실행위에 대응하여 학교를 관리할 의무
가 있는 피진정인들로서는 해직 교사들로부터 학생들을 분리하고 각 학급에 임시
배정된 담임교사에 의해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학생들의 이동 및 출입을
제한한 행위가 인권침해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진정요지 라. 2)항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정요지 다. 2)항은 동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나머지
진정은 동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5. 1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장주영

【별지】 관련규정

1.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 구속 · 압수 ·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

을 받지 아니한다.

제21조(집회·결사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b)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제16조(학교 등의 설립자, 경영자) ①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 경영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위한 시설 설비·재정 및 교원 등을 확보하고 운영·관리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①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13

2010. 6. 7.자 09진인4442결정 [과태료 부과처분안내
문 공개로 인한 인권침해]

○○구청장에게 사건 당시의 ○○○동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안내문을 진정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의 공동현관에 공개적으로 부착함으로써 이 출입문을 통해 드나드는 다른 주민들이 진정인의 행위를 모두 알 수 있게 하였음.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같은 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함.

【참조조문】

【진 정 인】 신○○

【피진정인】 ○○구 ○○○동장

【주 문】 ○○구청장에게 사건 당시의 ○○○동장과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향후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09. 10. 22. 쓰레기 불법투기 혐의로 적발되었는데, ○○시 ○○구 ○○○동 단속반원들이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안내문’을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유리문에 게시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진정인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사건 당시 ○○시 ○○구 ○○○동장 ○○○과 담당 공무원 김○○은 희망근로자 정○○, 김○○, 안○○에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업무를 부여하였고, 이들은 진정인의 쓰레기 불법 투기를 적발하여 진정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현관에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안내문’과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통상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안내문’은 쓰레기 불법투기 의심자에게 적발 사실을 전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지의 대문 등에 부착함으로써 인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예고하여 소명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과 더불어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3. 인정 사실

1) 진정인은 ○○시 ○○구 ○○○동 000-00번지 ○○○○빌라에 살고 있으며, 이 건물은 1층은 상가, 2~5층은 오피스텔, 6~8층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1층 유리문 현관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및 계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2) 진정인은 이 건물에서 2년째 살고 있으며, 1층의 4개 상가와 2~8층 14가구가 같은 현관을 사용하고 매월 반상회를 개최하고 있어서 진정인과 이웃 간의 면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3) 피진정인 희망근로자 정○○, 김○○, 안○○은 2009.10.22. 위 건물 앞에서 음식물 혼합배출 및 배출시간 미준수 행위를 적발하고, 불법 투기 의심자인 진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안내문을 현관 유리문에 공개적으로 약 3일간 부착하였으며, 이 안내문에는 진정인의 이름과 아파트 호수, 위반 혐의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진정인은 이 건으로 3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4)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인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 처분 안내장을 사실상 공개하는 관행이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희망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당시 ○○○동 주민센터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업무 담당 공무원 김○○은 진정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사과하였으며, 후임자도 이에 대해 사과하였다.

4.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진정인은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홍보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 하에 과태료 부과처

분 사전안내문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부착해온 관행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을 접수하여 조사하기 전까지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주의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정당한 단속행위를 시행할 경우에도 그 방식에 있어서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점에 대한 관계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쓰레기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안내문을 진정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1층의 공동현관에 공개적으로 부착함으로써 이 출입문을 통해 드나드는 다른 주민들이 진정인의 행위를 모두 알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며 같은 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7.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조 국

14

2010. 6. 30.자 10진인371결정 [부당 해고로 인한 인권 침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결정요지】

【1】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채용하기 전에 진정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에 민원인에 대한 차 접대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채용 후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이를 언급한 적이 없었음. 따라서 진정인이 근무를 하면서 차 접대에 대한 거부감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행위가 채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채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진정인을 부적격 사무보조원으로 판단한 것이 차 심부름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한 후 바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진정인이 불과 4일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근무하는 동안에도 사무실 정리, 차 심부름, 단순 업무보조 등의 업무만을 한 것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진정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판단됨.

【2】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헌법」 제10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조문】

【진 정 인】 김○○

【피진정인】 김○○

【주 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1. 4. ~ 2010. 6. 15.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 장기선거사무보조원(이하 ‘사무보조원’이라 한다)으로 채용되었는데, 2010. 1. 8. 16:00경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차 심부름은 자존심이 상해서 며칠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라고 고충을 토로하였다. 그 후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사무보조원으로 부적격하다며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며 진정인에게 즉시 그만둘 것을 강요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의 주장요지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사무보조원 4명(남자 2명, 여자 2명)을 채용하였다. 채용된 사무보조원들은 각 정당 및 후보자 측 민원인에 대한 선거법 질의·답변 등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이들의 업무를 선거사무보조업무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사무실 환경정리, 방문 민원인에 대한 차 접대, 단순한 전화응대, 기타 선거사무 보조업무를 부여하였다.

진정인은 2010. 1. 4.(월) ~ 1. 8.(금)까지 ○○○선관위에 사무보조원으로 5일간 근무하였다. 진정인은 1. 8. 16:00경 피진정인과 사무보조원 4명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차 접대는 자존심이 상해 힘들다고 말하였고, 문서편집 등 업무에서 잘못을 지적하면 괴로움을 표시하는 등 사무보조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같은 해 1. 10.(일) 15:00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사무실로 불러 진정인의 고충에 대해 면담을 한 후 당일 18:00까지 계속 근무 여부를 통보하라고 하였으나 진정인이 연락을 하지 않았다. 이에 당일 18:10경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자 진정인이 ‘그만 두겠다’라고 말하고 진정인은 이후 출근하지 않았다.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차 접대는 전임직원들도 상시적으로 하는 업무 중 하나이며, 진정인에게만 차 접대를 시킨 것이 아니다. 사무보조원은 전임직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한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무가 폭증하는 시기에 부적격 사무보조원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예산을 낭비할 뿐 아니라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법정선거사무에 차질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동료 근무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었으므로 진정인과 같은 부적격자를 즉시 그만두게 한 것은 부득이한 상황이었다.

3. 인정사실

진정인의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 진정인 및 피진정인 등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은 ○○○선관위 사무국 관리계장으로 인사, 총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며, 2009. 12. 4. ○○○고용센터 등에 선거사무보조원 공개채용을 게시하였다. 당시 위 공개채용 보조원의 지원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18세 이상 45세 이하, 특정 정당·후보자와 혈연 등 이해관계가 없고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 공공기관단체에서 행정업무 담당 경력자 및 통산·정보처리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는 것이었고, 채용방법은 서류 심사 및 면접이었다.

나. 2010. 1. 4. ~ 2010. 6. 15.까지 일용근로자인 사무보조원으로 채용되었던 진정인은 1. 4.(월) ~ 1. 8.(금)까지 5일간 근무하였으며, 근무하는 동안

주로 창고정리, 사무실 환경정리, 차 심부름 등을 하였다. 진정인은 같은 해 1. 8. 16:00경 피진정인과 사무보조원 4명과의 대화의 자리에서 방문 민원인에 대한 차 접대는 자존심이 상해 힘들다고 말하였다. 피진정인은 같은 해 1. 10. 15:00경 진정인을 사무실로 불러 진정인의 고충에 대해 면담하면서 진정인은 자존심이 강해 사무보조원으로 적정하지 않다며 퇴직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정인이 차 심부름을 누구나 해야 하는 것이라면 하겠다고 하자 피진정인은 그럼 좀 더 생각해 본 후 당일 18:00까지 퇴직여부를 피진정인의 휴대폰으로 연락하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전화를 하지 않자 같은 날 18:10경 진정인에게 전화하였고 이 때 진정인은 ‘그만 두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진정인은 출근을 하지 않았다.

다. ○○○선관위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차 접대는 전임직원과 사무보조원들이 남녀 구분 없이 상시적으로 행하는 업무이다. 사무보조원들의 초기업무는 사무실 환경정리, 공보물 배달, 문서 편집 등의 단순 업무이며, 이후 1개월 정도 업무 적응시기를 지나면서 선거대비 각종 법령 숙지, 선거데이터 전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4. 판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기선거사무보조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채용권자가 사무보조원의 채용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해지를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사무보조원으로 채용된 자가 ‘허위로 경력을 제출한 때,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에도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무단으로 3회 이상 결근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채용기관의 위상과 재산 등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때,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채용기간 내에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때, 기타 채용해지조건에 해당된 때’는 당해자의 채용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용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당사자 상호간의 끊임없는 신뢰 관계를 그 존립의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게 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것이 약정해지사유나 법정해지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계약관계를 막 바로 해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3. 24. 선고94다17826판결).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채용하기 전에 진정인이 담당하게 될 업무에 민원인에 대한 차 접대 업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고지한 사실이 없고, 채용 후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이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따라서 진정인이 근무를 하면서 차 접대에 대한 거부감을 공개적으로 표시한 행위가 채용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채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진정인을 부적격 사무보조원으로 판단한 것이 차 심부름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한 후 바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진정인이 불과 4일 밖에 근무하지 않았고, 근무하는 동안에도 사무실 정리, 차 심부름, 단순 업무 보조 등의 업무만을 한 것을 고려해 볼 때,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진정인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장기선거사무보조원 운영지침」에서 규정하는 채용권자의 즉시 채용해지 사유인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3회 이상 시정명령을 하고도 개선이 아니 될 경우에 즉시 채용해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피진정인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정인에게 즉시 해고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헌법」 제10조에 보장하고 있는 진정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선관위 위원장에게 피진

정인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6. 30.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조 국

15

2010. 7. 26.자 10진정0263600결정 [공무원의 폭언에 의한 인권침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기관차원의 대책수립과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피진정인 1.에게 ‘경고’조치하고, 피진정인 2.에게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피진정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진정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국가공무원법」 제59조)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동법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개새끼야 전화 끊어!”, “나중에 전화를 하든지 말든지요”, “내 말투가 어때 서요, 나 원래 이래요.” 등을 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동법 제63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진 정 인】 이○○

【피진정인】 1. 김○○

2. 류○○

【주 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기관차원의 대책수립과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피진정인 1.에게 ‘경고’조치하고, 피진정인 2.에게 ‘주의’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2010. 4. 12.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관실에 전화로 피진정인 1.에게 불법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개새끼야 전화 끊어!”라고 반말을 하였으며,

이에 화가 난 진정인이 다음날인 13. 재차 전화를 걸어 피진정인 2)에게 어제 있었던 피진정인 1)의 행태를 항의하고, 담당과장인 ○○○담당관에게 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한데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자리에 없다고 밝히면서, “나중에 전화를 하든지 말든지요”, “내 말투가 어때 서요, 나 원래 이래요.” 등의 답변으로 진정인을 우롱하고 무시하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

가) 본인이 전화를 받기 전, 같은 과 소속의 직원인 김○○이 당황하는 모습에 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진정인의 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지 경청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언사에 순간적으로 감정이 너무 격하여 하지 말았어야 할 욕설을 하였다.

나) 즉시 진정인에게 전화를 걸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하여 막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구두로 사과와 함께 이메일까지 보내면서 사과를 하였다.

2) 피진정인 2.

진정인이 ○○○담당관에게 전화를 바꿔줄 것을 요청하여, 본인이 부재중이라고 알려주었고, 진정인은 방금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서 믿지 않고 “조금 있다 전화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본인이 “알아서 하시죠”라는 답변에 서로 격양된 대화가 오고 간 것이다. 모든 사항들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정중히 사과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공직자가 되도록 하겠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이메일 기록, 피진정인들의 서면진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비아그라 등을 판매(구입)하는 스팸문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가 없는 불법제품임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2010. 4. 12. 피진정기관으로 전화를 한 것으로, 불법 의약품 등의 판매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소관업무이다.

나. 진정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 다툼이 없고, 피진정인들은 이를 인정한다.

5. 판단

가.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동법 제63조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피진정인은 국가공무원으로 진정인에게 친절하게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국가공무원법」 제59조)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동법 제63조)에도 불구하고, “개새끼야 전화 끊어!”, “나중에 전화를 하든지 말든지요”, “내 말투가 어때 서요, 나 원래 이래요.” 등을 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 및 동법

제63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기관차원의 대책수립과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피진정인 1.에게 ‘경고’조치하고, 피진정인 2.에게 ‘주의’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조 국

16

2010. 7. 26.자 10진정0351600결정 [퇴학 처분에 의한 인권침해]

○○○○○○고등학교장에게 향후 학생징계처리 절차에 정해진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학칙위반행위에 대하여 선도위원회 개최 前 에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징계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선도위원회에도 선도위원만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여 퇴학처분을 한 것은 적절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 및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임.

【참조조문】

【진 정 인】 박○○

【피 해 자】이○○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향후 학생징계처리 절차에 정해진 적절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2010. 6. 11. 음악수업 중에 휴대전화기로 진정인과 문자로 통화를 하다가 선생님에게 적발이 되었고, 피해자는 휴대전화기 수거를 명하는 선생님께서 욕설을 하게 되었다. 당시 진정인은 피해자의 공개수업을 참관하기 위하여 ○

○○○○고등학교 내에서 피해자의 반번호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이에 답장을 하던 피해자가 적발된 것이다.

피진정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달. 14. 피해자에게 퇴학처분을 내리고, 같은 달 22. 재심의에서도 퇴학처분을 강행하였다.

퇴학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와 적절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를 위반한 가혹한 처벌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주기 바란다.

2. 당사자 주장요지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해자는 진정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무단결석 1회, 무단지각 3회, 무단조퇴 3회, 무단결과 6회 등으로 2010. 5. 27.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학부모 상담’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며, 입학 후 4개월간 끊임없이 비행을 저지르고 지도에 불응하는 경우가 많은 학생이었다.

2) 진정원인이 된 음악시간에는 사전에 휴대전화를 수거하여 수업 후 반환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는 휴대전화기 수거를 거부하고 문자로 통화하다 적발이 되자, 이를 수거하고 “수업시간이 지나면 돌려주겠다.”고하였으나, 교과담임(음악)선생님에게 계속하여 전화를 달라고 요구하고, “씨발, 내 돈으로 산건데 왜 안줘”, “씨발, 죽여 버릴라”라고 욕을 하면서 교실을 이탈한 사안으로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다른 학생들에게도 주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2010. 6. 14. 학생징계위원회에서 퇴학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3. 관련규정

별지기재 목록과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서, 피진정인의 진술서, 학생선도규정, 징계위원회 회의록, 참고인 진술서, 전화보고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2010. 3. 1. ~ 5. 15.까지 무단결석 1회, 무단지각 3회, 무단조퇴 3회, 무단결과 6회 등을 위반하여 2010. 5. 27. 제1차 선도위원회에서 ‘학부모상담’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피진정인은 진정원인이 된 사안에 대하여 2010. 6. 14. 제2차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기 前 피해자나 진정인에게 통지절차를 생략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징계위원회 위원들만 참석하여 ‘퇴학처분’과 함께 7일 동안의 가정학습기간을 두고 타 학교 전학 및 진로안내를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진정인과 피해자가 ‘퇴학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을 청구하자, 같은 달 22.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추가위반사항인 무단결과 7회, 흡연 1회 등을 추가하여 ‘퇴학처분’과 함께 3일 동안의 가정학습기간을 두고 타 학교 전학 및 진로안내를 제공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퇴학처분에 따라 2010. 7. 14. 피해자의 이모(부)가 거주하는 충남 ○○군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였다.

5. 판단

가.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학생신분을 박탈하는 가장 가혹한 징계처분으로 학생의 학습권 등을 매우 제한하는 것이므로, 그 학생을 계속 재학하게 하는 것이 교육상 필요 및 학내질서 유지라는 징계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중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은 국가의 모든 공권력의 작용에는 절차상의 적법성 뿐 아니라 법률의 구체적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실체적인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리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원칙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은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립고등학교인 피진정인의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 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처분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에 대한 사전통지의무를,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처분 당사자에 대한 의견제출기회 보장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학칙위반행위에 대하여 선도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징계절차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선도위원회에도 선도위원만 참석하여 심의의결하여 퇴학처분을 한 것은 적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항 및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라. 이와 같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로는, 피해자가 이미 퇴학처분에 따라 학교로 전학이 이루어져 재심의는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향후 학생징계처리 절차에 정해진 적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6.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조 국

17

2010. 9. 15.자 10진정0314700·10진정0283300·10진정0548300(병합)결정 [부당한 학교기숙사 생활규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활규정」 제5조 및 「기숙사생활선도규정」 제13조를 개정하여 방과 후 자율학습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의 기숙사 입실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개정된 규정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을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고등학교 「학칙」과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기숙사생활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하며, ○○○○고등학교 「기숙사생활규정」 및 「기숙사생활선도규정」에 따라 자율학습 시간인 18:25부터 24:00까지 학생들의 기숙사 입실을 제한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과 ‘휴식권 및 수면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진 정 인】 이○○

【피 해 자】 서○○

【피진정인】 ○○○○고등학교장

【주 문】 ○○○○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활규정」 제5조 및 「기숙사생활선도규정」 제13조를 개정하여 방과 후 자율학습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들의 기숙사 입실이 가능하도록 할 것과, 개정된 규정에 대해 지도·감독기관인 서울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의 아들인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해자는 방과 후 자율학습에 참가하지 않는 관계로 수업이 끝나면 기숙사에 입실하여 충분한 수면을 취한 후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기숙사생활규정」 및 「기숙사생활선도규정」을 이유로 18:25부터 24:00까지 학생들의 기숙사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우리 학교는 희망자에 한하여 방과 후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고, 참가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기숙사를 제외한 학교 내 희망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는 교실에서 스스로 자율학습을 하는 것이다.

기숙사 관련 규정은 전체 학생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안전하고 편안한 기숙사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학교로서는 지도교사가 없는 시간대에 학생이 기숙사에 혼자 머무를 경우 발생할지도 모르는 각종 사안에 대처할 수 없으므로 기숙사에서의 자습은 허용할 수 없다.

기숙사는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자 교사들이 매일 초과근무를 하며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호텔이나 집에서처럼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달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이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진술 및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고등학교 2010학년도 2학기 현재 자율학습 참가자와 기숙사 입사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자율학습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 수는 1학년 4명, 2학년 2명, 3학년 1명으로 총 7명이나, 그 가운데 6명은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 기숙사 입사자 가운데 자율학습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은 피해자 뿐이다.

1) 자율학습 참가자 현황

구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재적	361	164	159	38
참가자	354	160	157	37
불참자	7	4	2	1

2) 기숙사 입사자 현황

구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재적	361	164	159	38
참가자	355	160	158	37
불참자	6	4	1	1

나. ○○○○과학고등학교 「기숙사생활규정」 제5조에 의하면 재학생은 18:25부터 24:00까지 기숙사에 잔류할 수 없다. 또한 「기숙사생활선도규정」 제13조 ①별점표에는 “18:25부터 24:00 사이에 허가 없이 기숙사에 남거나 출입하는 경우” 사감부 교사 또는 부사감 교사가 해당 학생에게 별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방과 후 자율학습에 참가하지 않는데도 「기숙사생활규정」 및 「기숙사생활선도규정」에 따라 18:25부터 24:00까지 기숙사에 출입할 수 없어 교실에서 자습하거나 시간을 보낸 후 24:00가 되어서야 기숙사에 입실할 수 있었다.

5. 판단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의 학칙에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고등학교 「학칙」 제27조는 “①학교장은 학생 기숙사를 설치·운영하고, ②기숙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기숙사생활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학칙」과 학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기숙사생활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피진정인이 야간 자율학습을 통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고취, 공동체 생활을 위한 규율준수 등의 교육목적과 더불어 기숙사 운영 및 관리상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기숙사 입실시간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율학습 시간인 18:25부터 24:00까지 기숙사 입실을 제한하는 ○○○○고등학교의 「기숙사생활규정」 및 「기숙사생활선도규정」은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에 장애가 될 정도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보장받을 수 없게 함은 물론, 야간 자율학습 참가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사실상 야간학습을 강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기숙사생활규정」 및 「기숙사생활선도규정」에 따라 자율학습 시간인 18:25부터 24:00까지 학생들의 기숙사 입실을 제한하는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자기결정권’과 ‘휴식권 및 수면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9. 1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최경숙 위원 최윤희 위원 조 국

18

2010. 10. 29.자 10진정0298600결정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한 인권침해]

○○과학고등학교장에게,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에 더하여 자율학습 미참여 학생에 대해서는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서울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을 것을 권고

【결정요지】

-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피진정기관의 「학칙」을 위임받아 제정된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함.
- 【2】** 휴대전화는 학생이 학교에 알리기 곤란하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내용의 통화를 위해, 또는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의 통화수단으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학습 목적이나 단체생활 관계상 불가피한 수업시간, 자율학습시간, 취침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피진정인의 행위에는 과도함이 있다 할 것임.
- 【3】**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진 정 인】 이○○

【피 해 자】서○○

【피진정인】 ○○과학고등학교장

【주 문】 ○○과학고등학교장에게,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에 더하여 자율학습 미참여 학생에 대해서는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서울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피해자는 진정인의 자로서 현재 ○○과학고등학교 2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진정인 ○○과학고등학교장은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을 두어 피해자를 포함한 재학생들의 휴대전화기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후 매일 16:00부터 18:2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업시간 외에는 피해자를 포함한 재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본교에서는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학교 현관 부근에 설치된 보관장에 넣어두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은 평일 방과

후 16:00부터 자율학습이 시작되는 18:30 이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장에서 휴대전화를 꺼내거나 다시 보관하는 일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외출하였던 학생은 귀교 후 자율학습 지도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있다. 생활지도부에서는 매일 18:30에 휴대전화 제출상황을 점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에게는 생활평점제 규정에 따라 벌점 1점을 부과하고 있다.

2) 진정인은 본교의 휴대전화 사용 지도방침이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주장이지만, 본교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교실 주변에 2대, 기숙사에 4대의 수신자 요금부담 전화기를 설치해 놓았으며, 급하게 휴대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생활지도부와 자율학습 교사에게 요청하여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 사실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제출자료, 위원회의 실지조사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기관의 학생들은 「학칙」 제31조에 따라 일과시간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며,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 제3조에 따라 평일 방과 후부터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전까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4조에 따라 외출이나 퇴사를 하지 않는 학생은 휴대전화를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전에 보관장에 넣어야 하고 담당 관리자가 자율학습 시작과 동시에 보관장을 잠그도록 하고 있으며, 외출 후 귀교하는 경우에는 자율학습 지도교사가 휴대전화를 받아 사감부에 인계하고, 사감부에서는 다음 날 등교시간에 생활지도부에 제출하여 보

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은 취침시간인 24:00이므로 기숙사 내의 휴대전화 반입 및 사용도 금지되고 있다.

나. 피진정 기관 재학생의 휴대전화 보관현황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재적	361	164	159	38
보관자	354	160	157	37
미보관자	7	4	2	1

※ 보관자 현황은 기숙사 생활 학생 현황과 동일함.

다. 피진정기관에는 기숙사 내에 4대, 본관 2층 및 3층에 각 1대씩 총 6대의 수신자 요금부담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다.

5. 판단

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진정기관의 「학칙」을 위임받아 제정된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 규정」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나. 피진정기관의 「학생 휴대전화 사용 관리규정」에 따를 경우 피진정기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방과 후부터 자율학습 시작시간 이전까지이다. 피진정인은 학생들이 언제든지 외부와 통신할 수 있도록 교실 주변 및 기숙사에 총 6대의 수신자 요금부담 공중전화를 설치해 두었다고 하지만, 피진정기관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수가 361명임을 감안할 때 학생들이 6대의 공중전화로 수시로 일상적인 통화를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중전화가 설치된 장소 또한 매우 개방된

곳이어서 학생들이 부모 또는 친구들과 사적인 내용의 통화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진정인은 급하게 휴대전화를 받아야 할 경우 생활지도부와 자율학습 교사에게 요청하여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전화를 하는 학부모 등이나 전화를 받는 학생 모두 불편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누구에게 전화가 왔는지 알려지게 됨으로써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다. 휴대전화는 학생이 학교에 알리기 곤란하거나 알리고 싶지 않은 사적인 내용의 통화를 위해, 또는 학부모가 학생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의 통화수단으로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학습 목적이나 단체생활 관계상 불가피한 수업시간, 자율학습시간, 취침시간 이외의 시간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피진정인의 행위에는 과도함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와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제18조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0. 2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조 국 위원 최윤희

19

2010. 11. 29.자 10진정0313700결정 [교사의 체벌 등에 의한 인권침해]

○○○○시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중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교직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함.

【결정요지】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팔, 어깨 등에 체벌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멍 및 부종 등의 후유증을 초래한 것, 피해자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귀 등을 잡아당긴 행위,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돼지처럼 쿵쿵 거리면서” 등의 발언을 한 것, 진정인에 대하여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를 다섯이나 낳고 말이 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참조조문】 「헌법」 제10조·제12조, 「초등교육법」 제18조,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국가공무원법」 제59조·제63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제37조

【진 정 인】 장○○ 외 50명

【피진정인】 ○○시장

- 【주 문】 1. ○○○○시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2. ○○○○중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소속 교직원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피해자 문○○의 어머니이고, 피진정인은 ○○○○중학교 교사로 피해자 문○○의 담임교사이다.

가. 피해자 문○○은 ‘과잉행동집중력장애(ADHD)’가 있어 감정 자극을 받을 경우 행동이 과격해질 수 있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진정인 또한 이러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10. 4. 7.과 같은 달 9일, 그리고 같은 달 12일 교실 열쇠를 복사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체벌을 가하였고, 같은 달 13일에도 피해자에게 “너는 또 왜 왔냐?”고 하며 체벌을 가하였다. 피진정인은 피해자가 잘못했다고 하자 “잘못은 무슨 잘못이나. 엄마가 와서 잘못했다고 해라.”, “돼지처럼 쿵쿵대지 왜 안하냐.”, “애들을 다섯이나 나서 책임도 못 진다.”, “엄마하고 너하고 똑같다.” 등의 인격모욕적인 발언과 심한 체벌을 하였다.

나. 피진정인은 학부모인 진정인에게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를 다섯이나 낳고 말이지.”,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아이가 눈을 그렇게 뜨더니 엄마를 닮았나 보네.” 등의 인격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피해자는 단순히 ‘과잉행동집중력장애(ADHD)’ 증상만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잦은 지각과 무단결석 등 학교생활에 불성실하였고, 교사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같은 반 학생들과의 생활에서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등 대부분 원인 제공을 하는 학생이었다. 이 때문에 2010. 3. 24.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과 면담

하였으나 핵심 없는 말만 계속 반복하여 상담을 종료하였다.

2) 2010. 4. 5. 피해자가 무단으로 결석을 하여 진정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진정인은 다시 전화하겠다고며 급히 전화를 끊은 후 전화를 다시 하지 않아 진정인의 부적절한 태도에 화가 났다. 다음 날인 4. 6. 아침 자습시간에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나무랐더니 피해자는 이에 대한 복수로 일부러 교실 열쇠를 분실하였고,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이 하루 종일 불편을 겪어 피해자에게 열쇠를 찾아오든지 새 열쇠를 복사해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달 8. 피해자는 갑자기 열쇠를 왜 가지고 와야 하나며 태도를 바꾸어 교사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인 진정인이 근무하는 인근의 ○○초등학교로 피해자를 보냈다.

3) 2010. 4. 9. 피해자가 열쇠를 가지고 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여러 차례 지시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 이에 회초리를 가지고 피해자의 자리로 가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씨발”이라는 욕을 하며 회초리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두팔로 막대기를 세게 잡아 팔을 비틀어 회초리를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에 무리가 갔을 수도 있으나 김스를 할 정도로 체벌을 가한 적은 없다.

4) 2010. 4. 12. 피해자가 팔에 김스를 하고 등교하였다. 체벌에 의한 골절이라면 심하게 멍이 들었을 것이나 멍의 흔적이 없었고 일주일 만에 김스를 풀었다. 여전히 피해자의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진정인에게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낸 부모로서 확실한 해결책을 가지고 내교하여 주십시오.”라는 문자를 보냈고, 그제서야 진정인이 내교하였다. 그러나 담임교사와 해결해야 할 일을 절차도 없이 바로 교장실로 가서 피해자와 똑같이 본인이 유리한 말만 하는 진정인의 모습에 감정이 격앙되었으며, 진정인이 “애를 안 키워워서 모른다.”, “그래서 시집을 못 갔다.” 등의 모욕적인 말을 하여 대화가 결렬되었다.

5) 2010. 4. 13.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사과도 없고 문제 학생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학생만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무책임과 무관심에 더 이상 지도할 방법이 없어 다른 교사들이 쓰는 방법대로 진정인에게 “부모의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문제 학생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권고 전학시키기 바람”이란 문자를 보내 전학을 독려하였다. 피해자에게 책상줄을 맞추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아 본인이 직접 줄을 맞추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책상이 넘어졌으며,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피해자를 직접 이동시킬 목적으로 팔 및 귀를 잡은 것 외에 출석부로 때리거나 60대의 체벌을 가한 적은 결코 없다.

6) 교무실에서 진정인이 먼저 본인을 째려봐서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라고 말하였고, “애도 그러는데 부모도 똑같네.”,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를 다섯이나 낳고.”등의 말은 혼자말로 하였다. 학생들이 쪽지상담지에 불편한 점으로 ‘문○○이란 아이가 돼지소리처럼 쿵쿵대는 소리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라고 기재한 것을 보았고, 아이들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돼지처럼 쿵쿵 거리면서”라는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및 피진정인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사진, 실지조사 자료, ○○○○시교육청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에 대한 피진정인의 체벌 여부에 대해서는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주장이 상반되나, ○○○○시교육청 감사실에서 ○○○○중학교 ○학년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표본설문조사 자료에는 피진정인이 막대기와 출석부로 피해자의 팔, 어깨 등에 체벌을 가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2010. 4. 15.자

○○정형외과의원 병원장 진단서에는 ‘우측 전완부, 대퇴부, 등부에 종창과 피부 변색 압통이 보여짐. 예상 치료기간은 2주 진단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0. 4. 20. 진정인이 촬영한 사진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희미하게 멍 자국이 남아 있다.

나. 피진정인의 진술에 의해, 2010. 4. 13. 피진정인이 지시를 불이행하는 피해자를 직접 이동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팔 및 귀를 잡은 행위, 피해자에 대하여 “돼지처럼 쿵쿵거리면서” 등의 발언을 한 것, 진정인에 대하여 “눈 그렇게 뜨지 마세요.,” “애도 그러는데 부모도 똑같네.”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를 다섯이나 낳고 말이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다. 2010. 9. 4. 피해자는 악몽 등 불안 증세를 보여 ○○○○병원 정신과에 입원하여 같은 달 24. 퇴원하였다. 2010. 9. 20. 발급된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이고, 의사소견으로 ‘상기환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되는 과각성 증상, 회피 증상 등이 있으며 일부 재경험 증상도 있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는 향후 수년이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은 현재의 증상 정도로 보아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판단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및 제37조는 ‘모든 아동은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며,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교육적 조치 등이 취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고,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방법으로서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허용되지 않으며, 기타 지도방법으로서도 훈육·훈계가 원칙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체벌은 학생들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사에게 학생에 대한 처벌적 태도보다는 대화협력·건설적 방향으로의 행동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사는 학생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벌을 하지만 당사자인 학생들은 체벌에 대한 불안감, 우울증, 학교강박증, 적개심 등의 부정적 감정을 버리지 못하게 되고 통제와 권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인간으로 양성될 위험이 크므로, 교육공동체는 체벌 없이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팔, 어깨 등에 막대기 등으로 체벌을 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멍 및 부종 등의 후유증을 초래한 것은 체벌의 정도 면에서도 가볍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행위이며, 피진정인 본인이 직접 피해자를 이동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귀 등을 잡아당긴 행위나 학생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돼지처럼 쿵쿵 거리면서”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교육적 지도방법을 벗어난 행위이며, 「헌법」 제10조 인격권 및 제12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하여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를 다섯이나 낳고 말이지.” 등의 발언을 한 것은, 피진정인이 공무원의 친절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규정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와 제63조에 반하여 학부모인 진정인에게 모욕감을 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이는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11. 29.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위원장 장향숙 위원 최윤희 위원 김양원

【별지】 관련 규정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함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생략)

2.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3.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4.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⑦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판 권
소 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제4집
(침해구제분야)

인쇄일 2012년 6월 25일

발행일 2012년 6월 30일

발 행 국가인권위원회

편 집 조사총괄과(02-2125-9652)

인 쇄 문영사(02-2263-5087)

ISBN 978-89-6114-265-6 93330 <비매품>